전근대 수원 자료집(15)

부록 : 18세기 정조의 수원 행차

(실록과 일성록)

2015

목 차

제1차 1789년(정조 13) 10월 6일~9일(3박 4일)

1. 조선왕조실록 ····· 3
2. 일성록 ····· 45

제2차 1790년(정조 14) 2월 8일~12일(3박 4일)

1. 조선왕조실록 ····· 84
2. 일성록 ····· 88

제3차 1791년(정조 15) 1월 16일~18일(2박 3일)

1. 조선왕조실록 ····· 106
2. 일성록 ····· 110

제4차 1792년(정조 16) 1월 24일~26일(2박 3일)

1. 조선왕조실록 ····· 121
2. 일성록 ····· 123

제5차 1793년(정조 17) 1월 12일~14일(2박 3일)

1. 조선왕조실록 ····· 132
2. 일성록 ····· 141

제6차 1794년(정조 18) 1월 12일~15일(4박 4일)

1. 조선왕조실록 ····· 175
2. 일성록 ····· 179

제7차 1795년(정조 19) 윤2월 9일~16일(7박 8일)

1. 조선왕조실록 ····· 237
2. 일성록 ····· 253

제8차 1796년(정조 20) 1월 20일~24일(3박 4일)

1. 조선왕조실록 ····· 302
2. 일성록 ····· 305

제9차 1797년(정조 21) 1월 29일~2월 1일(2박 3일)

1. 조선왕조실록 ····· 310
2. 일성록 ····· 315

제10차 1797년(정조 21) 8월 15일~19일(4박 5일)

1. 조선왕조실록 ····· 338
2. 일성록 ····· 351

제11차 1798년(정조 22) 2월 1일~5일(4박 5일)

1. 조선왕조실록 ····· 365
2. 일성록 ····· 371

제12차 1799년(정조 23) 8월 19일~21일(2박 3일)

1. 조선왕조실록 ····· 383
2. 일성록 ····· 385

제13차 1800년(정조 24) 1월 16일~18일(2박 3일)

1. 조선왕조실록 ····· 391
2. 일성록 ····· 392

제1차 1789년(정조 13) 10월 6일~9일(3박 4일)

1. 조선왕조실록

정치/왕실

정조가 수원을 반룡농주의 형국이라 극찬하고 조심태를 수원부사로 삼다

영우원(永祐園)을 천장(遷葬)할 것을 결정하였다. 상이 원침(園寢)의 형국이 옅고 좁다고 여겨 즉위 초부터 이장할 뜻을 가졌으나, 너무 신중한 나머지 세월만 끌어온 지가 여러 해 되었다. (…) 전에 봉표(封標)해 두었던 곳으로 문의(文義) 양성산(兩星山) 해좌(亥坐)의 언덕은 예전부터 좋다고 운운하는 자리이지만 조산(祖山)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이 흠이어서 답답하게 막힌 기색을 면하지 못하였고 지질과 물이며 용세(龍勢)도 결코 언급할 만한 것이 없다. 장단(長湍) 백학산(白鶴山) 아래의 세 곳은 국세(局勢)가 혹은 협소하기도 하고 혹은 힘이 없고 느슨하기도 하다. 광릉(光陵) 좌우 산등성이 중의 한 곳은 바로 달마동(達摩洞)으로서 문의의 자리와 함께 찬양되는 곳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가운데 한 곳은 바로 절터이니, 신당(神堂)의 앞이나 불사(佛寺)의 뒤나 폐가(廢家) 또는 고묘(古廟)에 묘를 쓰는 것은 옛사람들이 꺼린 바이다. 용인(龍仁)의 좋다고 운운하는 곳도 역시 그러하다. 이밖에 헌릉(獻陵) 국내의 이수동(梨樹洞)과 후릉(厚陵) 국내의 두 곳, 강릉(康陵) 백호(白虎) 쪽, 가평(加平)의 여러 곳들도 마음에 드는 곳이 한 곳도 없다.

그러나 **오직 수원(水原) 읍내에 봉표해 둔 세 곳 중에서 관가(官家) 뒤에 있는 한 곳만이 전인(前人)들의 명확하고 적실한 증언이 많았을 뿐더러 옥룡자(玉龍子)가 이른바 반룡 농주(盤龍弄珠)의 형국이다.** 그리고 연운·산운·본인의 명운이 꼭 들어맞지 않음이 없으니, 내가 하늘의 뜻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를 이름이다. 나라 안에 능이나 원(園)으로 쓰기 위해 봉표해 둔 것 중에서 세 곳이 가장 길지(吉地)라는 설이 예로부터 있어 왔는데, 한 곳은 홍제동(弘濟洞)으로 바로 지금의 영릉(寧陵)이 그것이고, 한 곳은 건원릉(健元陵) 오른쪽 등성이로 바로 지금의 원릉(元陵)이 그것이고, **한 곳은 수원읍(水原邑)에 있는 것이 그것이다.**

수원의 묏자리에 대한 논의는 기해년 『영릉의궤(寧陵儀軌)』에 실려 있는 윤강(尹絳)·유계(兪棨)·윤선도(尹善道) 등 여러 사람과 홍여박(洪汝博)·반호의(潘好義) 등 술사(術士)들의 말에서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시말로 말하면 윤강의 장계(狀啓)와 윤선도의 문집 중에 실려 있는 산릉의(山陵議) 및 여총호사서(與摠護使書)보다 자세한 것이 없다. **내가 수원에 뜻을 둔 것이 이미 오래여서 널리 상고하고 자세히 살핀 것이 몇 년인지 모른다.** 옥룡자의 평(評)이 그 속에 실려 있는데, 그의 말에 '반룡 농주의 형국이다. 참으로 복룡 대지(福龍大地)로서 용(龍)이나 혈(穴)이나 지질이나 물이 더없이 좋고 아름다우니 참으로 천리에 다시 없는 자리이고 천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자리이다.' 하였으니, 이곳이야말로 주자(朱子)가 이른바 종묘 혈식 구원(宗廟血食久遠)의 계책이란 것이다.

대체로 그 형국으로 말하면 비록 범인의 안목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유두(乳頭) 아래 평탄한 곳에 재혈(裁穴)하고 작은 언덕을 안대(案對)해서 좌향(坐向)을 놓으면 바로 이른바 구슬을 안대한다는 것이다. 구슬을 안대하려면 두 봉우리 사이 빈 곳으로 안(案)이 가는데, 이것이 또 이른바 구슬을 안대하면 빈 곳으로 향(向)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금(分金)도 이렇게 재혈하고 이렇게 좌향을 놓고 이렇게 안대할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

의 뜻은 이미 수원으로 결정하였다. 지금 경 등을 대하여 속에 쌓아 두었던 말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 음으로 돕고 신명(神明)이 묵묵히 도운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판중추부사 김익(金熤)이 아뢰기를,
"지금 성상의 분부를 들으니 신도 어슴푸레하게나마 알겠습니다. 옥룡자는 바로 도선(道詵)의 호인데 그의 논평이 이와 같다면 이곳을 버리고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명하여 수원산론(水原山論)을 읽게 하니, 연신(筵臣) 모두가 아뢰기를,**
"옛사람의 논한 바가 이미 이와 같은데 지금에 와서 어찌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해년에 봉표해 둔 곳이 바로 이른바 유두(乳頭)로서, 아래쪽의 낮은 곳에 비하면 너무 올라오고 드러나는 혐의가 없지 않으니, 오직 달무리처럼 둥그렇게 평탄한 곳이 바로 진정한 복룡 길지(福龍吉地)이다. 길일(吉日)이 머지않았으니 오늘날의 급선무로는 그 고장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다음으로 고을을 옮길 계획을 의논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나는 인정이 편안한 뒤에야 지리(地理)도 길해진다고 생각한다. 백성을 옮기는 일에 관해서는 내가 이미 여러모로 계획을 세워 각각 살 곳을 정해 안주하게 하였거니와, 왕명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무마하는 책임을 맡은 나의 신하는 감사와 지방관이 바로 그들이다."
하고, **이어 경기 관찰사 조정진(趙鼎鎭)과 수원 부사 김노영(金魯永)을 내직(內職)으로 옮기고, 서유방(徐有防)을 경기 관찰사로, 조심태(趙心泰)를 수원 부사로 삼았다.** 그리고 상이 이르기를,
"천장해 모시는 일은 사체가 막중하므로, 본원(本園)의 제사 의식도 태묘(太廟)에 버금가는 것으로 대부(大夫)의 예를 사용해서 제사할 것이니 총호사(摠護使)를 차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때에는 삼공(三公)을 의당 갖추어야 할 것이다. 총호사의 임무는 으레 영의정이 관장하는 것이니, 좌상과 우상은 복상(卜相)한 뒤에 가서 봉심(奉審)하라." 하였다.
○乙未/定永祐園遷奉之禮. 上以園寢形局淺挾, 自御極初, 有移奉之意, 而鄭重荏苒, 且有年. (…) 自來封標之處, 文義兩星山亥坐之原, 則自古云云, 而離祖終欠太近, 不免有菀弗之氣, 砂水龍勢, 決難議到. 長湍白鶴山下三處, 則局勢或狹小, 或微緩, 光陵左右岡中一處卽達摩洞, 與文義齊稱之地, 而俱未合意. 其中一處卽寺基, 神前佛後, 廢屋古廟, 古人之所忌, 龍仁云云處亦然. 外此獻陵局內梨樹洞, 厚陵局內二處, 康陵白虎邊, 加平諸處, 無一合意處. **唯水原邑內封標三處, 官家後一處, 多前人明的之證, 況玉龍子所謂盤龍弄珠之形局**. 且年運·山運·本命運, 無不沕合, 予所謂天意者此也. 國中陵園封標中, 三處最吉之說, 自古有之, 一則弘濟洞, 卽今寧陵是也, 一則健元陵右岡, 卽今元陵是也, **一則水原邑也**. **水原山地之論, 觀於己亥『寧陵儀軌』, 如尹絳·兪棨·尹善道諸人及洪汝博·潘好義等術士之言, 可以知之**. 其始末則莫詳於尹絳狀啓·尹善道文集中, 『山陵議』與摠護使書, 而予於**水原**留意已久, 博考而詳察, 不知爲幾年. 玉龍子所評, 詳載其中, 其言以爲: '盤龍弄珠之形, 眞是福龍大地, 而龍穴砂水, 盡善盡美, 誠千里所無, 千載一遇之地.' 此正朱子所謂: '宗廟血食久遠之計也.' 概其形局, 雖凡眼可辨, 穴星則乳頭下坦處, 而坐向則案對小阜, 是謂對珠, 而欲對珠, 則兩峰間空處, 此又所謂對珠, 則向空者也. 且分金則以此穴以此坐以此案亦當決之, **予意已定水原**. 今對卿等, 喩以蘊中之說, 此非天意之所陰騭, 神明之所默佑乎?" 判中樞府事金熤曰: "今承聖敎, 臣亦怳然. 玉龍子卽道詵之號, 所論如此, 捨此何求乎?" **上命承旨, 讀『水原山論』**. 筵臣僉曰: "古人所論旣如此, 到今豈有他說乎?" 上曰: "己亥封標處, 卽所謂乳頭也. 比諸稍低處, 則不無登露之嫌, 惟坦處圓暈處, 是眞正福龍吉地也.吉日不遠, 目下急先務, 最宜安接本土之民, 次議移邑

之計. 予則曰: ‘人情安然後, 地理亦吉.民人遷徙, 則予已有多般經紀, 俾各奠安, 而任予宣布撫摩之責者, 道伯及地方官是也.” 仍命京畿觀察使趙鼎鎭·**水原府使金魯永內移**, 以徐有防爲京畿觀察使, **趙心泰爲水原府使**.上曰: “遷奉之擧, 事體莫重. 本園祭儀, 皆以亞於太廟, 祭以大夫之禮用之, 摠護使當差出.此時三公宜備, 而摠護之任, 自是領相例管, 左右相卜相後, 進去奉審.”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7월 11일(을미) 1번째기사>

정치/왕실
수원으로 영우원을 천장하는 일을 담당한 신하들에게 전교하다
수원의 묏자리를 살피는 여러 신하들에게 전교하였다. “묏자리를 살핀 뒤에 승지가 대신과 더불어 지방의 부로(父老)들을 불러 모아 놓고서 어제의 연교(筵敎)대로 먼저 안심하고 생업(生業)을 즐기라는 뜻으로 되풀이해 타이르고, 이사한 민호(民戶)라 하더라도 조정에서 의당 따로 구휼하는 도리가 있을 것이니 이 내용도 자세히 일러 주라.”
○丙申/**敎水原看山諸臣**曰: “山地看審後, 承旨與大臣, 招集地方父老, 依昨日筵敎, 先以安心樂生之意, 申申曉諭. 雖於移徙民戶, 自朝家當有別般軫恤之道. 此意申諭.”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7월 12일(병신) 1번째기사>

정치/왕실
영의정 김익 등이 수원의 치표한 곳의 형국을 아뢰다
영의정 김익 등이【영의정 김익, 좌의정 이성원, 우의정 **채제공**, 관상감 제조 김종수, 선공감 제조 서유린, 예조 판서 이재간, 도감 제조 이재간·정민시·이문원.】 **수원의 치표(置標)한 곳을 살펴보고서 아뢰었다.**
“지사(地師)들이 모두 말하기를 ‘지극히 길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다. **화산(花山)이 왼쪽으로 돌아 건방(乾方)으로 떨어져서 주봉(主峯)이 되고** 건방의 주산(主山)이 해방(亥方)으로 내려오다가 계방(癸方)으로 돌고 다시 축방(丑方)으로 뻗어오다가 간방(艮方)으로 바뀌면서 입수(入首)하였다. 앞에 쌍봉(雙峯)이 있는데 두 봉우리 사이가 공(空)이 되고, 안에 작은 돈(墩)이 있는데 그 형상이 마치 구슬 같다. 계좌 정향(癸坐丁向)으로 안장(安葬)하면 그 구슬은 턱밑의 구슬이라 할 수 있고 공은 빈 곳을 안대하는 공이라 할 수 있다. 오른쪽으로 건방에서 득수(得水)하고 왼쪽으로 을방에서 득수하며 또 신방(申方)의 물이 오방(午方)에서 파(破)하니, 수법(水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청룡 네 겹과 백호 네 겹이 에워싸 국세(局勢)가 만들어졌는데, 혈(穴)이 맺힌 곳이 마치 자리를 깐 것처럼 평퍼짐하니 혈 자리가 분명하다. 뻗어온 용의 기세가 7백 리를 내려왔는데 용을 보호는 물이 모두 뒤에 모였으며, 현무(玄武)로 입수(入首)하였으니 천지와 함께 영원할 수 있는 더없는 대지(大地)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丁酉/領議政金熤等【領議政金熤·左議政李性源·右議政**蔡濟恭**·觀象監提調金鍾秀·繕工監提調徐有隣·禮曹判書李在簡·都監提調李在簡·鄭民始·李文源】**以水原置標處看審**啓言: “地師皆曰: ‘極吉極吉, 千全萬全. **花山**左轉, 乾峰作主, 乾山下亥轉癸來丑換, 艮入首而前有雙峰, 兩間爲空, 內有小墩, 其形如珠. 癸坐丁向, 則珠可謂領下之珠, 空可謂對空之空, 右得乾水, 左得乙水, 又有申水破於午方, 水法無一小差. 靑龍四重, 白虎四重, 拱抱作局, 結穴之處, 帶褥帶茵, 穴暈宛然. 來龍之勢, 歷七百里, 護龍之水, 皆聚於後, 而玄武入首, 可謂與天地同悠久, 無上大地.” 云.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7월 13일(정유) 1번째기사>

정치/왕실

영우원을 천장하기 위해 수원의 경제 및 군사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묏자리를 살피고 온 여러 신하들을 불러 보고 한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이르기를,

"지금 대신의 장계를 보니 내 마음이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이런 큰 일을 당하여 어찌 마음을 너그럽게 먹고 슬픔을 억제하는 것을 주로 삼아 힘쓰고자 하지 않겠는가마는 종전에 가슴에 맺혔던 것이 나도 모르게 아무 때나 드러난다."

하고, 이어 소견을 물으니, 김익이 아뢰기를,

"위로 주봉(主峯)에서부터 아래로 혈(穴) 자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윗쪽에 있는 혈 자리의 약간 높은 곳에 앉아 국세와 청룡 백호를 둘러보니, 국세가 평탄하고 반듯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청룡 백호가 에워싸지 않은 것이 아니나, 평탄하고 반듯한 속이 너무 넓고 크다는 느낌이 없지 않고, 에워싼 속 역시 견고하게 결속된 형세가 약간 모자랐으며, 안계(眼界) 역시 조밀하고 번잡한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평탄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둘러보니 국세가 평온하고 청룡 백호가 긴밀하며 또 혈 좌우를 매미가 날개를 양쪽으로 펼친 듯한 형국이 있으며, 안계도 매우 조용했습니다. 시야 속에 작은 돈(墩)이 혈 자리와 직선으로 대치해 있는데, 이곳이 본래부터 칭송되어오는 서린 용[盤龍]의 형상이고, 이 돈을 서린 용이 희롱하는 구슬[弄珠]이라고 한 말이 신의 범안(凡眼)으로 보아도 정확한 논평인 것 같았습니다. 대안(對案)으로 말하면 두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서 있는데 만약 봉우리로 향을 놓아 안산(案山)으로 삼으면 두 봉우리의 기세를 다 끌어들일 수 없을 것 같고, 두 봉우리 사이의 빈 곳으로 향을 놓으면 두 봉우리의 기운이 합쳐 하나의 안(案)이 되니, 예로부터 이른바 구슬을 안대해 빈 곳으로 향을 놓는다[對珠向空]는 말이 이런 뜻에서인 듯합니다. 세 지사(地師)의 말이 이미 모두 계좌 정향(癸坐丁向)으로 통일되었으니 바뀔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원을 비록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밤낮으로 상상하면서 마음속으로 헤아린 바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경 등의 말을 내가 헤아린 바와 비교하면 더 보탬은 있고 줄임은 없다고 하겠다."

하였다. 김익이 아뢰기를,

"원소를 이제 이미 결정하였으니, 읍치(邑治) 옮기는 일을 잠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원이 비록 기내(畿內)에서 약간 충실한 고을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나라의 역사를 당했는데 다시 무슨 힘이 있어 고을을 옮길 수 있겠는가**. 옮겨야 할 민가(民家)가 얼마나 되는가?"

하자, 김익이 아뢰기를,

"2백여 호는 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 큰 일에 경비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미 평소부터 품고 있던 생각이니, 이 밖에 무엇을 조처해 주선할 것이 있겠는가. 균역청의 사목(事目)이 본래 엄중한 것은 오로지 백성들의 부역을 막으려는 선대왕의 성덕에서 나온 것이고, 이번에 경비를 낭비하지 않으려는 것도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균역청의 돈 10만 냥을 수원에 떼어주어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고, 서울과 지방의 도감은 10만 냥을 금위영과 어영청에서 가져다 쓰면 좋겠다."
하였다. 김익이 아뢰기를,
"창고의 재물이 임금의 재물이 아님이 없는데, 이런 큰 일을 당하여 무엇 때문에 영문(營門)의 유고(留庫)에 구애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전의 연석(筵席)에서 이미 천하에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어버이에게 박하게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것은 대개 어버이 장례에는 진실로 자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쓰지 않음이 없는 도리에까지 미룬 것이니, 진실로 백성의 힘을 수고롭히거나 경비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면 지극히 아름답게 하여 마지막 일에 정성을 조금이나마 펴보고 싶다.
병신년에 원(園)으로 봉할 때 영릉(永陵)의 옛 제도를 따랐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고사(故事)를 준용(遵用)하였다. 대체로 옛 능에 석물(石物)을 새로 세우는 것과 비기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미 옮겨 모시기로 하였으니 정성을 다해 규례대로 하고자 한다. 그러니 도감으로 하여금 자세히 알게 하라. 석재(石材)는 꾀꼬리봉 및 산성(山城) 밖에 떠내기에 적당한 곳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석재의 품질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양(南陽)·강화(江華) 등지의 석재라야 난간석(欄杆石)과 병풍석(屛風石)의 용도에 합당하니 떠내어 운반해 오는 노력은 따질 겨를이 없다. 나의 정리(情理)는 오직 자주 봉심해 정성을 펴는 데 있을 뿐이니, 여염집들을 다 옮긴 뒤에는 어가(御駕)를 수행하는 백관(百官)들이 한데서 거처하게 될 것을 염려해야 한다. 보존할 만한 관청은 철거하지 말아서 여러 신하들이 들어가서 거처하는 곳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민시가 아뢰기를,
"원소를 완전히 봉안한 뒤에는 **독성 산성(禿城山城)**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산성의 산 꼭대기가 혈(穴) 위에서 바라보면 지극히 가까운 것 같지만 서로의 거리가 10리나 멀리 떨어져 있다. 밥짓는 연기나 닭·개의 소리가 원래 묘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니, 병기(兵器)를 간직해 두는 따위도 이해를 논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산소를 매만져 다듬는 방법은 그 산의 형세를 그대로 따를 뿐이니, 보토(補土)를 고대(高大)하게 하는 것을 나는 옳지 않게 생각한다. 더구나 이 묏자리의 혈체(穴體)는 유두(乳頭) 밑에 웅덩이가 파여 있어 음양이 서로 붙어 있는 데 그 신묘함이 있으니 흙을 파낼 때 유두를 파지 말라. 혈 앞의 남은 기운이 생동해 구르고 있는데 만약 지나치게 흙을 보충하면 천연으로 이루어진 정교함을 잃기 쉬우니 원형 그대로 띠를 입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장릉(章陵)을 천장해 모실 적에 성내(城內)를 경유하도록 길을 냈으니 이번에도 이 전례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비단 조조(朝祖)의 절차가 중대할 뿐 아니라 자궁(慈宮)의 망극하신 심정이 다시 어떠하시겠는가. 천장해 모실 때에는 몸소 가서 보시겠다고 매양 말씀하시므로 현재 마음을 너그러이 먹고 슬픔을 억제하시도록 청하고 있는 참인데 만약 상여(喪輿)가 성내로 지나는 것을 보시게 될 경우 장차 무슨 말로 위로드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러자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분부가 이에 미치셨으니 마땅히 성외(城外)로 길을 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판윤 김문순(金文淳)에게 이르기를,
"내가 즉위한 이후로 한 번도 백성들에게 혜택을 입힌 일이 없는데, 더구나 본원에 관계된

일로 백성들을 수고롭히겠는가. 백성을 수고롭히고 싶어하지 않는 나의 뜻을 경들도 반드시 알 것이다. 상여군이 되는 것이 비록 방민(坊民)들이 응당 행하는 부역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군정(軍丁)을 고용하고자 하니 민역(民役)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모두 줄이도록 하라. 경이 돈체사가 되었으니 나의 뜻을 깊이 헤아리라."
하니, 연석에 참여한 모든 신하가 아뢰기를,
"국전(國典)에도 없는 바이고 체모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上召見看山諸臣, 於邑良久曰: "才見大臣狀啓, 予心一愴一幸. 當此大事, 豈不欲務主寬抑, 而從前結轖之懷, 不覺隨處輒發矣." 仍問所見. 煜曰: "上自主峰, 下審穴處, 而先坐上穴稍高處, 環覽局勢與龍虎, 則局勢非不平正, 龍虎非不拱抱, 而平正之中, 不無闊大之意. 拱抱之中, 差欠緊束之勢, 眼界亦似稠鬧. 及其下坐於所謂坦處, 則局勢蘊藉, 龍虎緊密, 又有穴左右, 蟬翼分開之形, 眼界十分從容. 望中小墩, 與穴處直相待, 對此地素稱盤龍之形, 而此墩爲盤龍之弄珠, 以臣凡眼, 亦似的確之論. 至於對案, 兩峰雙立, 若使向峰作案, 則似不得盡攬兩峰之勢, 就兩峰之間, 空處作向, 則兩峰之氣, 合作一案, 自古所謂對珠向空之說, 似以此意. 坐癸向丁, 三地師之言, 已皆歸一, 似無移易之慮矣." 上曰: "**水原雖未目覩, 夙宵想像, 自有意內商量. 今以卿等之言, 比諸所料, 可謂有增無損**." 煜曰: " 園所今已完定, 邑治移設, 不容少緩." 上曰: "**水原雖曰畿內稍實之邑, 旣當國役, 更有何力, 可以遷邑乎? 民家之當遷爲幾何**?" 煜曰: "似爲二百餘戶矣." 上曰: "今番大事, 不煩經費, 已有素定, 外此有何措辦乎? 均廳事目, 本自嚴重, 先朝聖德, 專出防民役之意, 而今此不煩經費者, 亦爲民也. **以均廳錢十萬兩, 劃給水原, 使經紀凡事, 京外都監, 以十萬兩, 假令取用於禁御兩營好矣**." 煜曰: "未有府庫財, 非其財則當此大事, 何拘於營門留庫乎?" 上曰: "日昨筵中, 已有不以天下, 儉其親之說, 蓋以固所自盡之心. 推以靡不用極之道, 苟非勞民力煩經費者, 務欲極盡其美, 少伸終事之誠. 丙申封園時, 不但永陵仍舊制, 卽仰遵故事, 而大抵舊陵石物之新設, 雖不敢擬議, 今旣遷奉, 欲盡誠如禮. 使都監知悉, 石材則鳳峰及山城外, 聞有可合浮出者, 而石品若不合, 則南陽·江華等處石材, 方合於欄干石屛風石之用, 至於浮出運來之勞, 有不暇計矣. 予之情理, 只在頻頻展誠, 而閭閻旣移之後, 則隨駕百官之露處, 在所當念. 可存之公廨, 不必撤去, 以爲諸臣入接處好矣." 民始曰: "**園所完奉之後, 禿城山城不當仍置矣**." 上曰: "山城蠻頭, 自穴上望見, 雖似至近, 而相距旣十里之遠. 烟火之氣·鷄犬之聲, 元無關涉, 至如兵器藏置, 似無利害之可論矣. 治山之道, 順其勢而已, 補土之必務高大, 予以爲如何. 況此山地穴體, 乳下開窩, 妙在陰陽相傳, 開土之際, 乳頭勿爲穿鑿. 穴脣餘氣, 宛轉生動, 若過爲補土, 則易失天成之巧, 因本形被莎好矣. 章陵遷奉時, 由城內作路, 今當用此例, 而非但朝祖節次之重大, 慈宮罔極之懷, 每以躬駕於遷奉時爲敎, 而方請寬抑. 若値軔行之過城內, 將以何辭仰慰乎?" 兪曰: "聖敎及此, 當以城外作路矣." 上謂判尹金文淳曰: "臨御以後, 無一惠澤之及民, 況於關係本園事, 不欲勞民, 卿等亦必知之. 畢士軍雖係坊民應行之役, 今番欲雇用軍丁, 凡係民役, 一竝除減卿爲頓遞使, 須體予意." 筵臣兪曰: "國典所無, 體貌不當然." 上不許.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7월 13일(정유) 2번째기사>

정치/왕실

정민시와 서유방이 화산의 형세와 수원 행차 노선에 대해 논하다

대신·도감 당상·판윤·경기 감사를 불러 보았다. 상이 정민시(鄭民始)에게 이르기를,
"구슬의 형체는 맑고 밝은 것을 귀하게 여긴다. 나무를 심으면 그늘에 가리기 쉬우니 마주

대한 구슬에 단지 띠만을 입히는 것이 좋겠다."
하니, 민시가 아뢰기를,
"구슬 위에 예전부터 소나무 너댓 그루가 있는데 이것은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신이 일찍이 보건대 정릉(定陵)·화릉(和陵)의 청룡(靑龍) 끝에 모래가 뭉친 곳도 구슬 형상 같았는데 그 위에 소나무가 빙둘러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서유방(徐有防)이 아뢰기를,
"**수원 신읍(新邑)을 이미 팔달산 밑으로 정했으니, 앞으로 원소로 거둥하실 때 지나시는 길의 차례가 대궐 문에서 과천(果川)까지가 30리이고, 과천에서 수원 신읍까지가 40리이고, 신읍에서 원소까지가 20리입니다.** 주정(晝停)과 숙소(宿所)는 본래 정한 곳이 있으니, **미륵당(彌勒堂)**에는 창사(倉舍)만을 세워 검암참(黔巖站)의 예와 같이 임시 머무시는 곳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좋다고 하였다.
○召見大臣·都監堂上·判尹·畿伯. 上謂鄭民始曰: "珠之形體, 以澄澈明朗爲貴. 種樹則易致陰翳, 對珠之上, 只被莎爲好." 民始曰: "珠上舊有松四五株, 此則不必祛之. 臣曾見定·和陵, 靑龍砂端融結處, 亦如珠形, 上有松樹, 圓密成林矣." 徐有防曰: "**水原**新邑, 旣定於**八達山**下, 此後園所幸行時, 輦路次第, 自闕門至果川三十里, 自果川至**水原**新邑四十里, 自新邑距園所二十里. 晝停宿所, 自有元定處, **彌勒堂**則只建倉舍, 以爲臨時駐蹕之所, 如黔巖站例似好矣." 可之.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7월 15일(기해) 3번째기사>

정치/왕실
행행할 때 수원 등의 숙소에서 사용할 그릇을 궁궐에서 보내라고 명하다
경기 관찰사 서유방(徐有防)을 소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과천·수원의 숙소에서 소용되는 그릇을 안에서 내려줄 것이니, 해읍에 그대로 보관하여 영구히 쓸 수 있게 하라.** 금번의 행행에는, 비록 솥 하나라도 민간에서 가져다 씀으로써 폐단을 끼치고 싶지 않다. 원소(園所)에서 소용되는 그릇은 외도감(外都監)에 분부하여 만들어서 진배토록 하였는데, 원관(園官)이 주관하여 길이 본원의 제향 때 사용하는 그릇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辛未/召見京畿觀察使徐有防. 上曰: "果川·**水原**宿所所用器皿, 當內下, 該邑仍爲藏置, 以爲永久之用. 今番行幸, 雖一釜一錡, 不欲取用於民間, 使之貽弊. 至於園所所用之器皿, 分付外都監, 造成進排, 而園官主管, 永作本園祭享時所用之器."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8월 18일(신미) 1번째기사>

정치/왕실
천원도감 제조가 수원부의 잔디가 모화관의 잔디에 못지않다고 아뢰다
천원 도감의 제조 윤숙(尹塾)이 아뢰기를, "모화관(慕華館)의 잔디[莎]를 떠내는 지역이 매우 좁아서 금번 원역(園役)에 필요한 수량대로 떠내기가 어렵습니다. 건원릉(健元陵)은 능 위에만 북녘의 잔디[北莎]를 썼고 병풍석(屛風石) 이하에는 다른 곳의 잔디를 전부 썼습니다. **지금 이 수원부(水原府)의 잔디를 모화관의 잔디에 비교해 볼 때 그다지 우열이 없습니다**. 신은 삼가 생**각건대**, 대성인(大聖人)이 세운 법은 마땅히 만세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니, 재가하였다.
○遷園都監提調尹塾奏曰: 慕華館浮莎處, 地方甚狹, 今當園役, 決難如數浮出. 健元陵陵上, 只用北莎, 屛風石以下, 全用他莎. **今此水原府莎草, 比諸慕華館, 別無優劣**. 臣竊以爲, 大聖

人立法, 當令爲萬世美範矣." 可之.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9월 7일(경인) 3번째기사>

정치/왕실

정조가 영우원에 전배하여 행행에 따른 경비와 호위 문제에 대해 논하다

영우원에 전배하였다. 재실에 나아가 대신과 제신들을 소견하였다. 좌의정 이재협이 아뢰기를,

"계원(啓園)한 후 한 차례 전배하시자 성후(聖候)가 대번에 더치셨는데, 느닷없이 명령을 내려 의위(儀衛)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기에 이르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오늘의 거둥은 실로 성인의 지나친 거조라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달에 들어서는 이제야 비로소 전성(展省)을 하였으니, 이 어찌 정리상 참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어제 『원행정례(園幸定例)』에 관한 일로 주사(籌司)에 하교를 하였다만, 거둥의 큰 폐해는, 하나는 외방 고을의 공판(供辦)이고, 하나는 군병(軍兵)을 마련하는 것이고, 하나는 나루를 건너가는 것이다.

기내(畿內)의 고을들이 모두 쇠잔한 실정인데 원근에서 운반하느라고 민읍이 모두 시달리게 된다. 비록 저치미(儲置米)를 회감(會減)해주는 예가 있기는 해도 유명 무실할 따름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로 양읍(兩邑)의 민력이 아무리 넉넉치 못하다 하더라도, **만약 다른 방식으로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잘못된 규례를 고친다면, 과천(果川)·수원(水原)이 충분히 감당할 것이다.**

도감(都監) 이외 양영(兩營)이 돌아가면서 어가를 수행하는 것은, 비록 정해진 규식이 있기는 하나 또한 폐단이 많으니, 이제 만약 군제(軍制)를 헤아려 정밀하고 간략히 뽑아, 도감의 선상(先廂)은 그 초수(哨數)를 줄이고, 후상(後廂) 군병은 양영(兩營)의 군총(軍摠) 중에서 상황에 따라 서로 바꾸어 연읍(沿邑)에 이송케함으로써 평상시에 단속하는 군대로 만들되, **혹은 경기 관찰사로 하여금 모두 거느리게 하기도 하고 혹은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하여금 거느리도록 한다면, 어가를 호위하는 방책이 양영과 향군(鄕軍)만 못할 것이 없을 듯하다.** 더구나 전에 온천에 거둥할 때 호서 병사(湖西兵使)가 후상 대장이 되었으니, 경기에서 이에 비추어 거행하는 것도 안 될 게 없을 것이다.

선창을 부교(浮橋)로 대신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만전을 보장할 수 있다. 선창은 소용되는 배가 많게는 1천 척 가까이 되는데 부교의 경우는 백 척도 되지 않으니, 이것만 하더라도 폐해를 줄이는 셈인데, 더구나 또 완고하고 견실하기가 육지나 다름없으니, 영구히 준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생각건대, 이 이후로 부교에 드는 경비는 경강(京江)에 전적으로 떠맡기되, 배의 경우는 별도로 작대(作隊)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기에 맞춰 역(役)에 응하도록 하고, 조정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을 깊이 강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익을 입고 힘을 바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외방 기읍(畿邑)의 세곡(稅穀)을 경강의 제선(諸船)에 나눠주어 마치 도감선(都監船)에 운세(運稅)를 원정(元定)하듯이 한다면, 강가의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을 듯하고, 뱃사람들 역시 기꺼이 나설 듯하다. 이밖에 소소한 폐단에 대해서는, 밖으로는 기영(畿營)이, 안으로는 각사(各司)가 일체 절약하고 간략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오랫동안 시행하면서 폐단을 없애고자 하면 거의 될 수 있을 듯하다. 일찍이 듣건대, 세조조(世祖朝) 때 어가를 수행하는 신하들은 각자 밥을 싸가지고 가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좌승지만 혼자서 밥을 지어 먹자 잡

아다 곤장을 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오늘날의 사대부들은 일찍부터 고량 진미에 물들어서 비록 한결같이 밥을 싸가는 법을 따를 수는 없겠으나, 정말로 만약 절약하는 데에 마음을 둔다면 어찌 이익되는 바가 없겠는가. 단지 음식의 경비 뿐만 아니라, 마부들에 대해서까지도 마땅히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辛丑/展拜永祐園. 御齋室, 召見大臣·諸臣. 左議政李在協曰: "啓園後一番展拜, 聖候輒添, 至於倉卒頒令, 儀衛未備. 竊謂今日動駕, 實聖人之過擧也." 上曰: "今月內今始展誠, 是豈情理之堪忍處乎? 昨日以『園幸定例』事, 敎於籌司. 行幸鉅弊, 一則外邑供辦也, 一則軍兵磨鍊也, 一則津路過涉也. 畿內諸邑, 無非殘薄, 而遠近轉輸, 民邑俱困. 雖有儲置會減之例, 有名而無實. 予意則沿路兩邑之力, 雖曰不敷, **若加別般省冗費減謬例之政, 則果川·水原, 足以擔當**. 都監外兩營之輪回隨駕, 雖有定式, 亦多弊端. 今若商量軍制, 精抄簡取, 都監先廂, 減其哨數, 後廂軍兵則就兩營軍摠中, 推移互換, 移送沿邑, 以爲常時團束之軍, **或使畿伯都領, 或使水原倅領付, 則扈駕之方, 似無不及於兩營鄕軍**. 況在前溫幸時, 湖西兵使爲後廂大將. 京畿之照此擧行, 亦無不可. 至於船艙之代以浮橋, 可保萬全. 船艙則所入船隻, 多或近千, 浮橋則不滿百隻, 此已省弊. 況且完固堅實, 無異陸地, 可以永久遵行, 而但念此後浮橋所入, 專責京江, 船隻則別立作隊之制, 使之趁期應役, 深究沾漑之資, 使之蒙利效力爲好. 予意則外方畿邑稅穀, 分授京江諸船, 有若都監船之元定運稅者, 則江民似無稱冤之端, 船漢亦有樂赴之望. 外此小小弊瘼, 外而畿營, 內而各司, 一切以省減簡約爲主, 行之悠久, 期於無弊, 庶乎其可也. 曾聞世祖朝, 有扈駕諸臣各裹飯之令, 而左承旨獨爲炊飯, 至於拿棍. 今日士夫, 夙習膏粱, 雖未必一依裹飯之法, 果欲存心於節損, 則豈無所益乎? 非徒飮食之費, 至於騶率, 亦宜有一定之制限矣."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9월 18일(신축) 1번째기사>

정치/왕실
사도세자의 영여가 수원에 도착하다
영여가 과천으로부터 출발하여 수원(水原)의 신읍(新邑)에 있는 막차(幕次)에 이르러 주정전(晝停奠)을 지낸 다음, 다시 출발하여 원소의 정자각에 도착하였다. 재궁(梓宮)을 받들어 찬궁 안의 탑(榻) 위에 안치하였는데 진설(陳設)은 처음과 똑같게 하였으며 설전(設奠)은 정해진 의식대로 하였다. 석상식(夕上食)·포곡(哺哭)·석전(夕奠)을 겸하여 지냈다.
○戊午/**靈轜自果川進發, 到水原新邑幕次**. 行晝停奠, 進發, 至園所丁字閣. 奉梓宮, 安于攢宮內榻上, 陳設如初, 設奠如儀. 兼行夕上食·晡哭·夕奠.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6일(무오) 1번째기사>

정치/왕실
정조가 사도세자가 온행할 때 주정했던 터를 찾아보고 저녁에 수원부에 머무르다
대가(大駕)가 과천현(果川縣)에서 주정(晝停)하고 **사근현(沙斤峴)**을 넘어 **경진년 온천에 행행하였을 때 주정을 하였던 옛 터를 찾았다**. 주민들 가운데 그때에 행차를 구경했던 사람들에게는 쌀을 지급하도록 경기 관찰사에게 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 **경모궁(景慕宮)의 행차**가 이곳을 지날 때 예교(睿敎)하시기를 '대가(大駕)의 주정소(晝停所)가 저쪽 언덕에 있으니, 어떻게 나의 주정소를 다시 설치할 수 있겠는가.' 하시고는, 이곳에다 옮겨 설치하도록 하셨다. 이 일은 내가 직접 들은 것인데 이제 이곳에 왔

으니 나의 심회를 억제하기 어렵구나. 이후로는 지방관으로 하여금 대충 수리를 하도록 하라."
하였다. 저녁에 수원부(水原府)에 머물렀다.
○大駕晝停于果川縣, 踰沙斤峴, 訪庚辰溫幸時晝停遺址. 居民之曾經仰瞻者, 命畿伯給米. 上曰: "昔年駕過此地也, 睿敎若曰: '大駕晝停所在彼岸, 豈可復設小朝晝停乎?' 仍令移設於此. 此事, 予所得聆. 今臨此地, 予懷難抑. 此後則使地方官, 略加修築." 夕次于水原府.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6일(무오) 2번째기사>

행차가 새 원소에 나가다
행차가 새 원소에 나아갔다. 재실에 들어가 시복(緦服)을 갖춰 입고 정자각까지 걸어가서 재궁을 살펴본 다음, 곡하는 자리에 가서 곡을 하였다. 이어 아침 상식을 절차대로 올리고 수도각(隧道閣)에 나아가 광(壙) 안의 흙 빛깔과 사방 산의 국세(局勢)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총호사 채제공이 아뢰기를, "오늘 아침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으나 유독 수도각 안에만은 한 점의 안개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아침과 썰렁한 밤의 바람 기운이 매섭고 싸늘한 시각에도, 이 각에 들어서면 따뜻하기가 온돌방과 같으니, 상서로운 광채가 모여들고 길한 기운이 스며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걸어서 주산(主山)의 봉우리에 올랐다가 보여(步輿)를 타고 산등성이를 빙 돌아나와 후탁(後托)의 머리를 들이민 지점에 이르러 하교하기를, "이 산의 이름이 화산(花山)이니 만큼 꽃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정자각으로 돌아와서 주다례(晝茶禮)를 친히 거행하였다.
○己未/駕詣新園所. 入齋室, 具緦服, 步詣丁字閣, 奉審梓宮, 出就位, 哭. 仍行朝上食如儀, 詣隧道閣, 詳覽壙中土色, 與四山局勢. 摠護使蔡濟恭曰: "今朝大霧漫蔽之中, 獨於隧道閣內, 無一點霧氣. 且寒朝冷夜風氣栗烈之時, 入此閣中, 則溫如燠室, 祥光所聚, 吉氣所蘊, 於此可見矣." 上步陟主山上峰, 以步輿遶出山脊, 至後托入首處, 敎曰: "此山名是花山, 多植花木好矣." 還詣丁字閣, 親行晝茶禮.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7일(기미) 1번째기사>

재궁에다 '상' 자를 쓰다
재궁에다 '상(上)' 자를 썼다.【서사관(書寫官)은 박명원(朴明源)이었다.】
○書上字于梓宮【書寫官朴明源.】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7일(기미) 2번째기사

석상식·석전·계찬전을 친행하다
상이 석상식(夕上食)·석전(夕奠)·계찬전(啓欑奠)을 친히 거행하였다. 관을 싸매는 의식을 처음에 했던 대로 거행하였다.
○上親行夕上食·夕奠·啓欑奠, 行結裹如初.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7일(기미) 3번째기사>

정치/왕실
사도세자를 수원 화산에 천장한 일과 온행할 때 수원의 일화를 정리하다
장생전 제조가 외재궁(外梓宮)의 밑바닥 판자를 닫고 옻칠한 베로 그 이음새 부분을 둘러쌌다. 영의정 이재협이 봉폐(封閉)하는 것을 감독하였는데, 봉폐관(封閉官) 박성태(朴聖泰)가

“신이 삼가 봉(封)합니다.[臣謹封]” 라고 쓰고 도장을 찍었다. 우의정 김종수가 9삽의 흙을 덮자, 총호사가 역군들을 거느리고 앞쪽에다 회(灰)를 다지는 동시에, 퇴광에 관보다 낮게 회를 채우고 지석(誌石)을 묻었다.
어제(御製) 지문(誌文)은 다음과 같다.
“**현륭원(顯隆園)**은 **수원부(水原府) 화산**(花山)에 있는데 계좌 정향(癸坐丁向)입니다.
기유년 가을에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이 옛 원(園)은 체제상 결함이 많다고 건의하면서 고쳐 쓰자고 청해서, 드디어 **화산**에다 자리를 잡았는데, 점을 친 사람의 말이, 그 곳은 서려있는 용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 형상이라고 하였으며, 대소 관원이 따르고 일반 백성들도 동조하였습니다. 이에 이해 겨울 10월 기미일에 이장(移葬)하고 원의 이름을 ‘현륭’이라고 고쳤습니다. 아, 불효한 이 아들이, 천지에 사무치는 원한을 안고 지금껏 멍하고 구차스럽고 모질게 목석마냥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은, 소자에게 중사를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그 뜻에 보답할 수 있게 되기를 지극한 심정으로 비나니, 아, 하늘이시여.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하늘이 들어주는 것인데, 이 소자는 감히 기필코 이렇게 해야만 소자가 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천하 후세에 떳떳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덕행(德行)을 들어 피눈물을 흘리면서 삼가 현궁(玄宮)에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휘(諱)는 이선(李愃)이고 자(字)는 윤관(允寬)이다. 숙종 원효 대왕(肅宗元孝大王)의 손자이고 영종 현효 대왕(英宗顯孝大王)의 아들로 영빈 이씨(暎嬪李氏) 소생이다.
삼가 행록(行錄)을 상고하건대, 태어나시기 수삼일 전부터 상서로운 빛과 구름이 보이더니, 태어나시자 해와 같은 자표(姿表)가 사람들에게 환히 비치고, 울음소리는 큰 종을 치는 것과 같았다. 이에 영묘(英廟)가 매우 기뻐하시면서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세 종통의 혈맥이 끊어질 뻔하더니, 이제는 죽어 역대 조상들을 만날 면목이 서게 되었다.’고 하시었다. 숙묘(肅廟) 경오년의 고사를 따라 곤전(坤殿)의 아들로 삼아 ‘원자(元子)’로 칭호를 정하도록 하였으니, 이때가 을묘년 정월 21일이었다. 종묘와 사직에 고하고 중외에 대사령(大赦令)을 베풀었다. 뛰어난 자질이 숙성하여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벌써 두세 살짜리 아이와 같았는데, 영묘께서 여러 신하들에게 들어와 보도록 명하시고는, 이어 가까이 모시는 신하더러 ‘성(誠)·경(敬)’ 두 글자를 써서 들어 보여주게 하였더니, 마치 조심스레 받듯이 자세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해 가을에 보양관(輔養官)과 상견하는 예식을 거행하였으며, 《효경(孝經)》의 장구(章句)를 뽑아 좌우의 신하들로 하여금 날마다 앞에서 외워 익히게 하였다.
병진년에 세자로 세웠는데 3월 15일에 의장과 호위를 갖추고 양정합(養正閤)에서 책봉하는 예식을 거행하였다. 연신(筵臣) 조현명(趙顯命)이 아뢰기를, ‘저하(邸下)가 효묘(孝廟)의 모습을 매우 닮았으니 이야말로 종묘 사직의 끝없는 복입니다.’고 하였다. 영묘께서 궁관에게 문왕 세자편(文王世子篇)을 병풍에 써서 올리게 하였는데, 이때에 벌써 글자의 뜻을 이해하여 ‘왕(王)’ 자를 보고서는 영묘를 가리켰으며, ‘세자(世子)’라는 글자를 보고서는 자기를 가리켰다. 그 뿐만 아니라, 천(天)·지(地)·부(父)·모(母) 등 63자를 해득하였다. 정사년에 처음으로 서연(書筵)을 열고 《효경》과 《소학》의 글을 뽑아 강독하였는데, 궁관의 진독(進讀)하는 것을 해득하고는, 손으로 ‘문왕(文王)’이라는 두 자를 궁관에게 짚어보이었다. 궁관이 소리내어 읽어보기를 청하니, 읽는 소리가 또렷하여 몇 줄을 읽도록 착오가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큰 글씨로 다섯 글자를 썼는데 획이 힘차고 바르며 전실(典實)하였다. 궁중(宮中)에서 언젠가 한 번은 팔괘(八卦) 모양의 가루떡을 올렸는데, 이를 들지 않고 말하기를, ‘팔괘를 형상한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 하였으며, 복희도

(宓羲圖)를 찾아보고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앞에 내걸도록 한 다음, 여러 번 절을 하면서 공경심을 나타내었다. 역학(易學)에 깊이 심취한 것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 해 가을에 비로소 사부와의 상견례를 거행하였다. 천자문(千字文)을 읽다가 '사치할 치[侈]' 자에 이르러서는, 입고 있던 반소매 옷과 자줏빛 비단으로 만든 구슬 꾸미개를 장식한 모자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사치한 것이다.' 하고는, 즉시 벗어버렸다. 영묘께서 일찍이 비단과 무명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물으니, 무명이 더 낫다고 대답하였으며, 또 어느 것을 입겠느냐고 물으니, 무명옷을 입겠다고 대답하였다. 영묘께서는 이에 기뻐하시고는 여러 신하들을 대하여 이와 같음을 말하였다. 자란 후에는 항상 무명옷을 입었으니, 검소한 덕행은 타고난 품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역적들의 음모에서는 도리어 화를 뒤집어씌울 계제(階梯)로 삼았으니, 이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다.

어느날 하루는 저녁상을 받다가 영묘께서 부르시자, 입안에 넣었던 밥을 즉시 뱉고는 대답을 하면서 일어났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서두르는가?' 하고 물으니, '《소학》에 이르기를 입에 밥을 물었으면 뱉어야 된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영묘께서는 '이제 겨우 세 살 밖에 안 되었는데도 체인(體認)의 공부를 안다.'고 말씀하였다. 무오년에 영묘께서 빈청(賓廳)의 경연(經筵)에 임어하셨는데, 이조 판서 조현명이 앞으로 나서서 아뢰기를, '신은 빈청의 경연에 참여하는 관리로서 동궁(東宮)에 있는 세자를 바라보니, 슬기로운 자질이 뛰어나고 영특한 기개가 호방하여, 천고에 보기드문 기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하는 방법에서 서두르거나 방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성취에 대한 책임은 전하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고 하였다. 그후 소조(小朝)가 말씀하시기를 풍원(豊原)의 이 말은 나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우를 시종 일관 변함이 없도록 했던 것이다.'고 하였다.

기미년에 영묘께서 묘당에 비망기를 내리어, 을유년의 옛 전례에 따라 임금 자리를 물려주면서 이르기를, '내가 즉위한 지 이제 15년이다. 임금 자리를 마치 초개처럼 여기고 있는데, 다행히도 세자가 벌써 만 5세가 되었다. 내가 비록 자리를 내놓는다고 한들 어떻게 백성들을 홀시하겠는가. 송 태종(宋太宗)의 「나를 어떤 데에다 두려는가.」라는 말4988) 은 이것이 무슨 마음인가.'라고 하였다. 명령이 내리자, 조정 신하들이 극력 간청하였으므로 그만 중지하고는, 이어 세자에게 명하여 시민당(時敏堂)에서 축하를 받게 하였다. 그것은 임금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바로 취소했기 때문이었다. 그해 여름에 왕대비에게 휘호(徽號)를 올렸는데, 법복(法服)을 갖춰 입고 예식을 진행하는 동안, 동작에 법도가 있어 전연 실수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궁중에서 다들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였다. 기주(記注)를 살펴보면, 궁관(宮官) 조중회(趙重晦)가 소를 올려 말하기를, '하늘의 해와 같은 모습을 단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기에 비상하여 의젓하기가 어른과 같으니, 이것은 정말 하늘이 내신 성인(聖人)입니다. 4, 5일에 한 번씩 요속(僚屬)들을 만나며 8, 9일에 한 번씩 빈객을 만나는 것을 규례로 삼으소서.' 하니, 그 의견을 따랐다. 이때부터 늘 서연에 나왔는데, 두어 번도 홅어보기 전에 벌써 암송을 해냈으며 오래도록 잊지 않았다.

임술년에 종묘에 참배하는 예식을 거행하였다. 예식이 끝난 다음 상이 이르기를, '세자가 곁에 있기에 언제 사묘(私廟)에 갈 것인가를 물었더니, 그가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예절을 표시하려고 하였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사묘에 나아가 참배하였는데, 도성 백성들이 슬기로운 모습을 바라보고 춤을 추며 환성을 질렀다. 이에 상이 이르기를 '세자가 예의범절을 익히어 거동함에 착오가 없으니, 신령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는가.'라고 하

였다.
그해 3월에 입학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유생의 옷차림을 하고 문선왕(文宣王)에게 술을 따라 올린 뒤 명륜당(明倫堂)에 이르러, 박사(博士)의 자리 앞에 나아가 《소학》의 제사(題辭)를 강론하였는데, 반수교(泮水橋)를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던 자들이 수없이 많았다. 한 번은 학문을 강론하다가 강관(講官)이 세자에게 평소에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요(堯)·순(舜)을 배우고 싶을 뿐이고 이밖에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강관이 물러나와 말하기를, '삼대(三代) 때와 같은 태평 성대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효제(孝悌)와 성경(誠敬)에 힘쓰라고 권면하는 자가 있자, 즉시 이 네 글자를 써서 자리 곁에 붙여두었다. 강관이, 정성[誠]과 공경[敬]을 공부함에 있어 어느 것이 우선적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를 물으니, '정성과 공경은 수레의 두 바퀴나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둘로 가를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궁관(宮官)이 직접 지은 시를 보자고 청하여, 그 가운데 '해가 동방에 떠올라 온누리를 비추네.'라는 시구가 있는 것을 보고는, 축하하여 말하기를 '이 시구의 기상은 예조(藝祖)의 일출시(日出詩)와 꼭 들어맞는다.'고 하였다.
계해년 3월 17일에 관례(冠禮)를 거행하였는데, 법복(法服) 차림으로 임금을 뵙고, 물러나와 백관의 축하를 받았다. 행록(行錄)을 살펴보면, 언제인가 한 번은 영묘(英廟)를 옆자리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영묘께서, '우리 나라의 조정 관리들은 예로부터 당파의 논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만두게 할 수 있는가?'고 물으니, '똑같이 보고 함께 등용하면 될 것입니다.'고 대답하였으므로, 영묘는 매우 기특히 여기고 기뻐하였다. 영묘께서 정사를 보면서 간혹 밤이 이슥할 때까지 있으면, 반드시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기다린 후에야 잠을 잤다. 또 글을 읽을 때면 반드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으므로, 영묘는 늘 그만하도록 하곤 하였다. 병이 나서 영묘께서 임하여 살피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복을 입고 일어나 앉았으며, 혹시라도 괴로워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궁중기문(宮中記聞)》에 의하면, 갑자년 1월 11일에 혼례(婚禮)를 치렀는데, 영의정인 풍산 홍씨(豊山洪氏) 홍봉한(洪鳳漢)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사흘만에 빈궁(嬪宮)과 함께 임금을 따라 종묘에 참배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에 앞서, 혜성의 이변이 발생하였는데, 혼례를 치를 때가 되자 혜성이 갑자기 없어졌다. 상이 《고경중마방(古鏡重磨方)》의 편제(篇題)를 써서 궁관으로 하여금 진강(進講)하도록 명하였다. 상이 묻기를 '마음을 어찌하여 거울에다가 비기고 정성과 공경을 어찌하여 가는[磨] 일에다 비기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공경은 위와 아래를 관철하는 수양이고, 정성은 진실함을 뜻하는 말로서, 정성과 공경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방도입니다.'고 하였다. 빈객(賓客) 이종성(李宗城)이 이어 이설을 부연(敷衍)해서 대답하였는데, 말이 매우 간절하고 진지하였다. 이때부터 그의 성의에 감동되어 매우 융숭하게 대우를 하였다. 그해 겨울에 상이 편치 않다가 병이 낫게 되자, 진연례(進宴禮)를 거행하였다. 이윽고 강석(講席)에 임하시니, 강관이 묻기를, '서연에 나와 글을 읽는 것과 연회에 참가하여 음악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글을 읽는 것은 이치를 탐구하자는 것이고 음악을 듣는 것은 곧 어른을 모시고 즐기려는 것이니, 글을 읽는 것이 좋은 일임은 분명하고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일이다.'고 하였다. 을축년에 상이 상훈(常訓)을 지어 가지고 읽으라고 명하시고는 말씀하시기를, '글자의 음을 더듬거리지 않고 읽어내고, 부연해서 대답을 하는 말에도 근거가 뚜렷하니, 이야말로 신령이 말없이 돕고 요속(僚屬)된 자들이 잘 인도한 덕분이다.'고 하였다. 그해

봄에 주강(晝講)을 행하여 《소학》을 강론하면서, 북제(北齊)의 태자(太子)가 고윤(高允)을 두둔한 문제를 놓고 궁관에게 이르기를, '태자가 잘못한 것이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어찌 될 법이나 한 일인가. 고윤이 사실대로 쓴 것은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의 원칙이고, 죽일 만한 죄가 아니다. 이러한 뜻으로 두둔하다가 태무(太武)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해도 될 일이다.' 라고 하였다.
병인년 봄에 상을 모시고 후원에서 벼를 심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임금이 묻기를, '농사짓는 일이 어째서 힘들다고들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무더운 여름에 물이 펄펄 끓듯이 뜨거운데도 농사꾼들은 농기구를 가지고 일을 하니 그 고생스러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 하였다. 상이 풍경을 보고 시를 지어보라고 명하시고는, 이어 지은 시를 보고서 말씀하시기를, '수구(首句)는 가뭄을 걱정하여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것이고 낙구(落句)는 나더러 덕을 닦으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내 나이가 벌써 쉰을 넘어섰는데도 세자로부터 더 힘쓰라는 말을 들었으니,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갸륵하기도 하다.' 라고 하였다. 이어 야대(夜對)를 행하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세자의 시를 보니, 뜻이 크고 원대하다. 「큰 비가 내린다.」는 한 구(句)는 대풍가(大風歌)의 기상이 있으니, 나의 마음은 이로부터 믿을 데가 있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한 번은 궁관과 더불어 신축(辛丑)·임인(壬寅)년에 있었던 일을 논하였는데, 의리(義理)의 근원을 환히 변론하였고, 이어 애일잠(愛日箴)을 내리어 자기의 뜻을 표시하였다. 이때 상이 몸조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약원(藥院)의 신하들을 불러 만나보자 부제조(副提調) 홍상한(洪象漢)이 아뢰기를, '어제 세자가 밤이 새도록 곁에서 모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체로 효도라는 것은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것인데, 어린 나이에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실로 종묘와 사직의 복입니다.' 고 하였다. 또 상이 친히 권학가(勸學歌)를 지어 깨우치면서 말씀하시기를, '세자가 근래에 다시 글읽기에 열중하여, 비록 밤이 이슥해진 후에도 일어나 앉아 독서를 하고 있다. 내가 잠이 오지 않을 때 세자의 글읽는 소리를 듣노라면, 기운이 한결 솟는다.' 고 하였다.
정묘년에 궁중에 천연두가 발생하여 경덕궁(慶德宮)에 피우(避寓)하도록 명하였으나, 매양 삼전(三殿)에 오랫동안 문안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염려하며 지냈다. 어떤 연신(筵臣)이 상에게 이 일을 아뢰자,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나이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씨가 갸륵하다.' 라고 하고는, 당장 그날로 임어하였다. 상이 대궐로 돌아올 때 미쳐 또 다시 몸소 문안을 드리겠다고 자주 청하므로, 상이 처소에 돌아오도록 특명하였다. 한 번은 친히 보리를 심으니, 묻기를, '심을 만한 물건들이 많은데 기이한 꽃이나 특이한 나무를 심지 않고, 꼭 보리를 심은 의도는 무엇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보리는 곡물이므로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고 하였다. 이에 상이 매우 기뻐하였다.
이해 5월에 상이 환경전(歡慶殿)에 납시어, 빈객(賓客)·춘방(春坊)·계방(桂坊)의 관원들을 입시하도록 명하여 서연을 열고는 저녁이 다 되도록 강독하고 논란하다가 파하였다. 상이 대단히 기뻐하여 세자궁의 요속들에게 차등있게 상을 내렸다. 겨울에 또다시 경덕궁으로 피접(避接)하였는데, 이듬해 무진년 봄에 이르러 궁관으로 하여금 문안드리겠다고 청하였으나, 상이 그만두라고 유시하였다. 문안을 드리는 궁관이 갈 때마다, 꼭 부주(附奏)하는 것을 으레 하는 일로 삼았다.
궁관 이이장(李彝章) 등이 고사(故事)를 진언하니, 답하기를, '예로부터 훌륭한 임금치고 누구인들 큰 효자가 아니었겠는가마는, 공자께서 유독 우순(虞舜)을 칭찬한 것은, 일반 사람의 심정은 사물의 변천에 쉽사리 동요되지만 우순은 온 천하를 가지고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칭송한 것이다. 거친 밥에 푸성귀를 먹고 살던 때이건, 임금이 되어 비단옷

을 입고 거문고를 뜯던 때이건, 우순에게야 무슨 상관이 있었겠는가.’ 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윤(伊尹)은 이 도(道)로 백성들을 깨우쳤는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곧 요(堯)·순(舜)의 도이다. 요·순은 남보다 먼저 깨달은 자이고 이윤은 요·순보다 늦게 깨달았으며, 백성들은 그보다 더 늦게 깨달았다. 깨닫는 데는 크고 작음과 얕고 깊음이 있으나, 깨달으면 마찬가지이고 도 또한 마찬가지이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백리해(百里奚)가 우공(虞公)에게 간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맹자는 그를 슬기롭다고 칭찬하였으나 **장남헌**(張南軒)은 응당 간해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간하지 않았다면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남의 신하된 자로서 임금을 섬기는 도리는 마땅히 남헌의 설을 옳게 여겨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임금에게 어진이를 좋아하는 성의가 있으면, 한 사람의 군자를 천거하는 것으로 충분히 수많은 소인들을 이겨낼 수 있다. 맹자는 설거주(薛居州)가 외톨이로 되는 것을 걱정하였는데, 군자가 고립하게 되면 걱정스러운 점이 어찌 일개 설거주뿐이겠는가.’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기(氣)는 몸체에 차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잘 가꾸면 요(堯)·순(舜)이 되고 제대로 가꾸지 못하면 도리어 일에 해로우니, 예를 들면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그런 경우이다. 이는 기의 탓이 아니라, 요는 어떻게 가꾸느냐에 달려 있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한 번은 서연에 임어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진 이와 사특한 이가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에는 나라의 흥망이 관계되어 있다. 곁에 있는 여러 대부들과 온 나라 사람들이 다들 말하는 이상, 쫓아내거나 승진시키는 데에 무슨 의심할 게 있겠는가. 그런데도 오히려 신중하게 대하는 것은, 진정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과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을 명백하게 구분하지 않을 경우, 여론의 칭송과 비방을 또한 막아낼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맹자는 뭇사람이 비방하는 중에서도 광장(匡章)을 취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중에서도 중자(仲子)를 비난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의 권도로써 판단을 내리고 취사를 한 다음에야, 주견이 흔들리는 것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지 않으면 태아검(太阿劍)을 거꾸로 잡고 반란을 일으키는 화란이 있게 된다.’라고 하였다.

또 서연에 임어하여 맹자가 논한 바, 신하가 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 강론하면서 말하기를, ‘주(周)나라의 덕이 지극하여 온 천하가 다들 복종하였는데, 이러한 때에 주나라의 신하가 되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 못된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이다. 천리(天吏)된 자로서 어찌 이런 자들을 정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후일의 선비들이 반드시 「주(紂)의 못된 행실을 도와주었다.」거나, 「민심이 상(商)나라를 떠났다.」는 등의 말로 무왕(武王)을 위하여 변명하니, 이는 소견이 좁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선(善)이란 천하의 공리(公理)로서, 성심으로 즐겨 취한다면, 천하의 선은 모두 자기의 것이 된다. 이것은 위대하신 순임금의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이다. 그러나 아는 것이 명백하지 못하면 남의 착한 것을 알 수 없으므로,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식을 넓히는 것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마음이란 한 몸의 주재(主宰)인 셈이니, 잠깐 동안이나마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이 풀어지는 날이면, 무슨 일인들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利)치고 인의(仁義)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것이 《주역(周易)》에서 이른바 ‘의(義)와 이(利)로 천하를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맹자가 인의(仁義)만 얘기하고 이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는 바로 의(義)·리(利)의 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공자(孔子)는 「관중(管仲)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들은 오랑캐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고 하였는데, 맹자는 「관중이 쓰던 패도(覇道)는 증서(曾西) 같은 자도 쓰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때에 따라서 상황에 적절하게

한 말로 각각 일리가 있는 것이지, 공자와 맹자가 어찌 견해가 달랐겠는가. 성인이 아니고서야 어느 누군들 때를 제대로 파악한 그 뜻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해 여름에 화평 옹주(和平翁主)가 죽었다. 이에 앞서 세자가 태어나시던 초기에 상께서 영빈(暎嬪)에게 말하기를, ‘진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는 것이니, 칭호를 정하는 이 초기에 마땅히 그 규모를 크게 하여, 일시의 보고 듣는 것을 존엄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고는, 백일이 지나자 세자에게 명하여 경묘(景廟)께서 전에 거처하시던 전각에 이어하도록 하고, 전각의 이름을 ‘저승전(儲承殿)’이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여관(女官)과 시인(寺人)들은 모두 전에 경묘를 섬기다가 갑진년과 경술년에 내보냈던 사람들로 충당하였는데, 그것은 누명을 벗겨 불안해하는 자들을 안심시킴으로써 화기(和氣)를 끌어들이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도리어 남몰래 자기들이 득세한 점을 다행으로 여기고서, 얼마 지나지 않자 주둥이를 놀리고 손뼉을 치면서 자기들 무리에게 타이르기를, ‘영빈이 비록 세자를 낳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친(私親)이다. 군신(君臣)의 의리가 있는 만큼 자주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만날 때는 반드시 빈(嬪)으로서 정전(正殿)에 나아가 뵙는 예법을 적용하여 예절과 의식 절차 틈바구니에 제약을 받게 해놓았다. 그리하여 영빈은 자주 가보지 못하고 하루에 한 번이나 하루 건너 한 번, 또는 며칠 건너 한 번 가기도 하고, 간혹 한 달에 한두 번 가기도 하였다. 꾀가 이미 이루어지자 이번에는 또 대조(大朝)께서 자주 임어하시는 것을 꺼리어, 궁궐의 골목에다 사람들을 늘여세워 임금의 동정을 엿보았으며, 날마다 허튼소리를 퍼뜨려 현혹을 시켰다. 세자가 이런 상태를 상에게 자세히 아뢰자, 상이 그제서야 후회를 하였다. 그러나 여관과 시인들은 곧 경묘조 때에 있던 오래된 자들이었으므로 차마 사형에 처하지 못하였으나, 상의 뜻은 자연히 전과 같을 수 없었다. 이때에 옹주가 울면서 아뢰기를, ‘일이 경묘와 관계된다는 것은 그 혐의가 매우 적고, 세 종통의 혈맥은 관계된 바가 매우 큰 것인데, 어떻게 일시적으로 혐의를 없애기 위해 사직의 중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두 궁(宮) 사이에는 화기가 점차 삭막해지고 있으니, 당장 통곡을 하며 세상을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고, 또 모빈(母嬪)에게 간절하게 간하였다. 이때 상은 집복헌(集福軒)에 있었는데, 저승전(儲承殿)과의 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정묘년이 되자 경춘전(景春殿)에 옮기도록 명하였는데, 그것은 거리가 가까운 편리함을 취하고 옹주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이때에 와서 옹주는 갑자기 병이 나더니, 일어나지 못하였다. 세자는 몹시 슬퍼하면서 변고에 대처할 방도를 깊이 찾았는데, 이 일을 아는 바깥 조정의 사람들은 다들 세자가 위태롭다고 여기었다. 그리하여 풍원 부원군(豊原府院君) 조현명(趙顯命),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 우빈객(右賓客) 이종성(李宗城) 등이 위기에 임해 적절하게 호위할 것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기사년 봄에 세자에게 서정(庶政)을 대리(代理)하도록 명하였다. 기주(記注)를 살펴보면, 정월 22일 밤 4경(更)에 상이 한 통의 봉서를 승정원에 내려보냈는데, 그것은 내선(內禪)에 관한 일이었다. 승지가 청대하여 되돌려 올리면서 아뢰기를, ‘조금 전에 덕성합(德成閤)을 지나왔는데, 세자가 벌써 등촉을 밝히고 앉아있었습니다. 그 놀라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것이 더욱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윽고 세자가 대조(大朝)의 문 밖에 나아와서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 등이 입시하여 봉서를 뜯어보니, 처음에는 내선에 관하여 얘기했고 다음에는 대리(代理)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이었다. 여러 신하들이 번갈아가며 도로 취소할 것을 청하였는데, 상은 세자더러 앞으로 나오라고 재차 명하였다. 세자가 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목메어 울면서 간곡히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전부터 전례가 있던 일이니 놀라지 말라.’고 하였다. 우의정 조현명이 아뢰기를, ‘신축년에 정사

를 대리하라는 명이 내렸을 때 전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연에 임하였는데, 어찌하여 전하는 그날의 전하 심정을 가지고 세자의 오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자, 임금이 비로소 깨닫고 명을 중지하였다. 이어 현명이 아뢰기를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도로 취소한다는 승인을 받았는데, 비록 두 번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신들이 어찌 감히 받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으나, 상이 들어주지 않았다. 세자가 여전히 엎드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상이 누차 명을 하자 비로소 물러갔다.

그로부터 6일 후에 시민당(時敏堂)에 나아가 대리 조참(朝參)을 행하였는데, 영지(令旨)를 내려 대소 신하들로 하여금 결백한 마음가짐으로 서로 협동하고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보좌하도록 하였으며, 또 제도로 하여금 백성들의 생업을 각별히 보살피도록 하였다. 또 경외의 혼례나 장례를 제 때에 치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관청에서 돌보아주도록 하였다. 우참찬 원경하(元景夏)가 상에게 아뢰기를 '신들이 초연(初筵) 때 내린 영지(令旨)를 보니, 누구인들 서로 전하며 고무되어 결백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합심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으며, 호조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아뢰기를 '대리하라는 어명이 내렸을 때, 세자가 얼굴에 눈물이 가득한 채 의롭게 대처하고 예절에 맞도록 한 일에 대하여, 외부 사람들이 듣고서 다들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세자가 나보다 낫다.' 고 한 상의 하교로 인하여, 문수가 세자를 보살필 데 대한 말을 극력 진술하였으며, 또 며칠 뒤에는 인재를 등용하며 백성을 돌봐주는 문제로써 면대(面對)하고 하교하시어 세자로 하여금 법을 따르게 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제왕가(帝王家)의 가법(家法)은 엄격한 것이 비록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줄곧 너무 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의 가법은 본래부터 이러하다. 옛날에 조심하는 마음을 체득하였기 때문에 나 또한 오늘날이 있게 된 것이다.' 고 하였다. 《궁중기문》을 살펴보면, 서연(書筵)에서 《시경》을 강론하다가 궁관(宮官)에게 말하기를 '척호(陟岵) 편(篇)에서 자기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말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만을 말하였다. 효자는 부모의 심정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으므로 그 말이 이와 같은 것이며, 자기가 부모를 생각하는 심정도 자연히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고 하였다. 또 《상서》를 강론하다가 말하기를 '요(堯)·순(舜)은 큰 성인인데도 그 신하는 오히려 게을리하지 말고 황탄(荒誕)하지 말도록 경계를 하였다. 신하로서 임금에게 충고하는 도리는 응당 어려운 일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니 임금이 요·순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신하가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은(殷)나라의 세 임금과 주(周)나라의 문왕(文王)은 안일하지 아니한 까닭에 나라를 오랫동안 유지하였고, 순임금은 사람을 등용하여 일을 맡긴 까닭에 편안하여 임금 자리에 가장 오래 있었다. 이것이 비록 다른 것 같지만, 안일하지 않아야만 편할 수 있는 법이니, 임금의 도리에 있어 안일하지 않는 것을 제쳐두고 다른 무엇을 취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경오년 8월에 의소 세손(懿昭世孫)이 태어났으므로, 종묘에 고하고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였다. 행록을 살펴보면, 9월에 영묘께서 온천에 거둥하였는데, 그 이튿날 비가 내렸다. 서울에 남아있는 대신(大臣) 영의정 조현명(趙顯命) 등을 불러 이르기를 '대가(大駕)가 떠나자마자 어제 비가 많이 내렸으니, 성상의 체후가 손상되셨을 것이다. 이 때문에 애가 타고 답답하여 경들을 불러 만난 것이다.' 라고 하고는, 이어 서울에 머물러 있는 군사들을 위로하라고 명하였다. 이때로부터 대궐에 돌아올 때까지 거의 20일 가까이, 밤이면 옷을 단정히 가다듬은 채로 아침까지 밤을 새워 걱정하면서, 오랫동안 천안(天顔)을 뵙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밤낮 그리워하며 걸핏하면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곤 하였다. 궁중에서 이를 매우

의아히 여겨 그 까닭을 물었더니, 말하기를 ‘내가 태어난 이후로 부모와 처음 멀리 떨어지고 보니, 어버이가 그리운 마음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상의 수레가 돌아와서, 영묘께서 이 얘기를 듣고는 ‘세자의 일은 늘 상상 밖이다.’고 말씀을 하시었다.

기주(記注)에 의하면, 신미년 가을에 제도에 돌림병이 극성하자, 영지(令旨)를 내리어 방백(方伯)들에게 특별히 보살피고 돌봐주도록 신칙하였다. 임신년 봄에, 대조(大朝)께 존호(尊號)를 올리는 문제로 여러 날 정청(庭請)을 하니, 상이 황단(皇壇)에 나아가 청명(請命)하는 거조를 행하므로, 여러 신하들이 울면서 내전(內殿)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세자가 편복(便服) 차림으로 걸어나가서, 임금 앞에 이르러 울면서 간청해 마지않으니, 자전(慈殿)에게만 존호를 올리라고 명하였다. 상이 내전으로 돌아오자 세자가 명정전(明政殿) 월대(月臺)에 나아가 날이 샐 때까지 합문(閤門)에 엎드려 있었다.

이해 3월에 의소 세손이 죽었는데, 세자는 스스로 마음을 다지어 슬픔을 억제하고, 위로 삼전(三殿)을 위로하였다. 9월에 원손(元孫)이 태어나자 하교하기를 ‘오늘의 경사는 경오년의 경사보다 낫다.’고 하였다. 겨울에 세자에게 홍역의 증세가 있었으므로 약원(藥院)이 직숙(直宿)을 하였는데, 인접할 때이면 반드시 예절을 차리었다. 여러 신하들이 침실에서 누워 접견할 것을 청하자 ‘겹옷 하나 걸치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신하들을 누운 채로 만나겠는가.’고 하였다. 이 무렵 조정의 의논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영묘께서 약을 물리치니, 세자가 승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4년 동안 대리(代理)하면서 성교(聖敎)를 몸받지 못하여 약을 물리치는 일까지 있게 하였으니, 내가 무슨 마음으로 약을 먹겠는가.’라고 하였다. 11월에 상이 어떤 일로 격해져서 전선(傳禪)하겠다는 하교를 내렸다가 금새 도로 취소하였다. 12월에 송현궁(松峴宮)에 행차하여 또 전선(傳禪)을 명하였고, 며칠 후에는 선화문(宣化門)에 나아가 앞서의 명을 다시 선포하였다. 세자가 엎드려 눈물을 떨구면서 머리를 조아리며 청명(請命)을 하였는데, 이마에서 흘러 떨어진 피가 자리를 적시었다. 영의정 이종성(李宗城)이 아뢰기를 ‘세자가 비오듯 눈물을 흘리니, 그 성의와 효성이 지극합니다. 전하께서 이미 취소하도록 허락하신 이상 식언(食言)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감기라도 걸릴까 몹시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중한 병을 앓고 난 후인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종성 등을 중도 부처(中途付處)하라고 명하였다. 이튿날 어가가 육상궁(毓祥宮)에 가니, 세자가 옷자락을 잡고 극력 요청을 하려 했는데, 상은 즉시 행차를 돌려 창의궁(彰義宮)으로 가서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자 이날 밤 세자가 걸어서 대궐문 밖에 나아가 상소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새벽까지 명을 기다리다가 대궐문을 밀치고 들어가 도로 취소하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고는, 서둘러 궁궐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그 다음날 밤에 또 대궐문 밖에 나아가서 엎드려 있었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돈화문(敦化門) 밖에 물러가 거적자리를 깔고 명을 기다렸다. 이렇게 하기를 여러 날 계속하였다. 상이 북한 산성(北漢山城)의 행궁(行宮)으로 가려 하자 세자가 울면서 승지에게 말하기를 ‘나의 죽고 사는 것이야 진실로 돌아볼 것도 못되나, 이처럼 몹시 추운 때를 당하여 성체(聖體)에 바람을 쏘이니, 마음이 칼로 에이는 듯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고는, 즉시 약원(藥院)의 신하로 하여금 상에게 인삼차를 다시 올리게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상이 비로소 대궐로 돌아왔으며, 앞서의 명을 취소하였다.

《궁중기문》을 살펴보면, 이 무렵 화협 옹주(和協翁主)의 상사(喪事)가 있었는데, 애통하고 아쉬움을 억제하지 못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 누이에 대해 각별히 고념(顧念)하는 정이 있는데, 이제 갑자기 죽었으니 이 슬픔을 어디에다 비기겠는가. 직접 가서 슬픔을 쏟아내지

못하는 처지가 나의 지극한 아쉬움이다.’라고 하였다. 계유년 정월에, 영의정 이종성이 탄핵을 당하여 성밖으로 나갔다가,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향리(鄕里)에 돌아갔다. 이때에 문녀(文女)가 잉태를 하였으므로 중외가 뒤숭숭하였는데, 이종성이 호위하자는 논의를 극력 주장하였다. 지난해 겨울에 하마터면 딴 뜻을 품은 자들에 의해 배척을 받을 뻔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너무도 모해(謀害)가 더욱 심해져서 종성은 성문 밖까지 물러나갔으나 끝내 향리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3월 초에 문녀가 딸을 낳자 비로소 말하기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받은 만큼, 시속 사람들이 내쫓으려 한다는 이유로 나의 평소 뜻을 움직일 수는 없다. 설사 주먹질과 발길질을 번갈아 퍼붓더라도 오직 나아가는 것뿐, 물러설 수는 없다. 한 번 죽으면 그만일 따름이다. 이제는 다행히 옹주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내가 귀향할 결심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는, 드디어 글을 올려 향리로 돌아가겠다고 고하였다. 이에 세자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제아무리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더라도 문녀의 일에 대해서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한다.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일월처럼 밝으신 대조(大朝)께서 어찌 준엄한 꾸지람을 내리지 않으리라 걱정하겠는가. 단지 뭇신하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염려를 상신(相臣) 덕분에 진정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해 겨울에 명을 받들어 사형수(死刑囚)들을 세 번 심리하였는데, 죽지 않고 목숨을 보전하게 된 자들이 많았다. 이후로는 해마다 이렇게 하였다. 밤에 궁관을 불러 강론을 하다가 자정이 되자, 공물로 올라온 귤을 궁관에게 하사하였다. 귤을 다 먹자 쟁반 안에 시(詩)가 있었는데, 궁료들이 즉석에서 차운시(次韻詩)를 지어 화답하였다.

갑술년에 각도로 하여금 환곡(還穀)이 많은 데에서 모아 부족한 쪽을 보태주는 정사를 거행토록 함으로써, 백성들의 고통스런 폐단을 없애도록 하였으며, 대동 군포(大同軍布)를 돈으로 대납(代納)하는 방납(防納)은 금지시켰다.

태학(太學)의 유생들이, 재예(齋隷)가 임금이 하사한 은 술잔을 가지고 밤에 나오다가 순찰도는 군졸에게 붙잡혔다는 이유로, 드디어 식당(食堂)에 들어가는 일을 중지하니, 하교하기를 ‘대조(大朝)께서 유생들을 중시하는 덕의(德意)가 얼마나 큰데, 감히 하찮은 일로 소란을 일으키어 성인의 사당에 사람이 없게 해서야 되겠는가. 병조의 장관을 엄중히 문책하겠다.’라고 하고는, 재유(齋儒)들을 권하여 들어가게 하라고 명하였다.

일찍이 《논어》를 강론하다가 삼월 불위(三月不違) 장에 이르러, 강관이 아뢰기를 ‘이는 공자(孔子)의 말씀인 만큼, 안자(顔子)의 이름을 휘(諱)하는 것은 부당합니다.’고 하니, 말씀하기를 ‘공자가 말을 했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은 하대의 사람이다.’ 하고는, 드디어 휘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또 영지(令旨)를 내리어 밖에 있는 서연관들을 모두 참가하게 하고는 사물잠(四勿箴)을 강론하다가 말씀하시기를 ‘대저 사욕(私慾)이 일어나는 데에는 크고 작은 것과 얕고 깊은 것이 있지만, 하찮은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점차 큰 과오를 빚어낸다면, 그 해로움은 마찬가지이다. 소열제(昭烈帝)가 말하기를 「자그마한 악(惡)이라고 해서 그 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야말로 더없이 지당한 말이다.’고 하였다. 상께서 이를 들으시고 가상히 여기어 ‘학문을 강론한 효력이 참으로 얕지 않다.’고 하였다. 또 《소학》을 강론하면서 말하기를 ‘애연(藹然)하게 사단(四端)이 느낌에 따라 나타나는데, 일단 나타나게 되면 넓게 확충해야 되며,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도 모름지기 공경을 위주로 삼는 공부가 있어야 한다. 발로되지 않았을 때에 공경을 위주로 한 다음에야 절도에 알맞게 발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공경한다는 것의 뜻을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손사막(孫思邈)이 이르기를 「마음은 조

심하면서도 담이 커야 한다.」고 하였다. 무왕(武王)이 군사를 거느리고 맹진(孟津)을 건넌 것은 바로 씩씩한 기상이었다. 그런데도 오히려 「밤낮으로 두려운 심정이다.」고 하였으니, 성인의 심소 담대(心小膽大)한 점을 여기에서 역시 알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겨울에 날씨가 추우니, 죄가 가벼운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을해년 역변(逆變) 때 상이 장전(帳殿)에 납시어 죄수들을 국문하면서, 세자더러 옆에서 모시라고 명하고는 하교하기를 '신축년과 임인년에 상소하였던 여섯 명의 역적과 구(耉)·휘(輝)4994) 를 이제야 비로소 역률(逆律)을 소급해 시행하였다. 이제부터 의리가 비로소 밝혀지게 되었으니, 이 점을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강목(綱目)》을 강론하다가 말하기를 '즉묵성(卽墨城)이 굳게 버티어 함락당하지 않은 일은, 위왕(威王) 때 상을 받은 대부(大夫)가 일찍이 보장책(保章策)을 시행한 공이 있어, 이 날에 그 힘을 본 것인 듯하다.' 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임금의 총애를 받는 아홉 신하가 이미 전단(田單)을 참소하였건만, 오직 초발(貂勃)만이 그의 억울함을 해명하고 나섰다. 이때 제(齊)나라 임금은 의당 「전단에게 사심(私心)을 두어 두둔하는 것이 아닌가.」고 의심을 했을 법한데, 의심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등용을 하였으니, 제나라 임금은 참으로 현명한 군주이다.' 라고 하였다. 또 민지(澠池)의 회합에 대하여 논하기를 '협곡(夾谷)에서 만났을 때 공자가 예의로써 임금을 인도한 결과 제(齊)나라 임금이 겁을 먹고 감히 노(魯)나라에 위협을 가하지 못하였다. 과연 상여(相如)가 공자처럼 처음부터 예로 따졌다면 반드시 이와 같이 힘이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어진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황(黃)·로(老)를 숭상하고 상기(喪期)를 단축하는 제도를 정하였으며, 가의(賈誼) 같은 훌륭한 인재가 있는데도 등용하지 못하였으니, 끝내 후세의 기의(譏議)를 면하기 어렵다. 다만 가의의 상소문은 한갓 시정(時政)의 득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본질적인 병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니, 동자(董子)가 주장한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논의」에다 비교할 때 자연히 차등이 있다.' 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당(唐)나라 현종(玄宗)은, 조정의 일은 재상에게 맡기고 변방의 일은 장수한테 맡기고는, 「내가 다시 무엇을 걱정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옛날에 이른바 「어진 인재를 찾아내는 데에 애쓰고,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데서 몸이 편하게 된다.」는 것과 서로 어긋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현종은 어진 이를 찾아내는 데에 애를 쓰지 못하고, 단지 사람에게 맡기면 편하다는 것만을 안 나머지 천보(天寶) 연간의 난리4995) 를 초래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가 한휴(韓休)와 소숭(蕭嵩)을 논할 때 곁에 있던 신하들에게 사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그가 이미 성심껏 어진 이를 좋아하지 못하고 억지로 거스르는 뜻이 있었으니,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만한 방법이 아니다. 그 정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위(衛)나라의 사군(嗣君)은 선대 임금이 물려준 토지를 일개 죄수와 바꾸었는데, 법을 세운 것은 엄격하였으나, 경중을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악의(樂毅)가 제(齊)나라를 정벌할 때, 극신(劇辛)은 고립된 군대를 끌고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논란을 하였다. 그러나 위(魏)나라는 송(宋)나라를 공략(攻略)하고, 조(趙)나라는 하간(河間) 지역을 거머쥐어, 충분히 제나라의 군대를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거에 성공을 하였다. 이 때문에 병법에서는 형세를 살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해 여름에 날씨가 무더우니 궁관이 서연(書筵) 시각을 개정하자고 청하였다. 이에 명령하기를 '아침 저녁에는 조금 선선하므로 글읽기에 알맞을 뿐 아니라, 대조(大朝)께서 한낮에

주강(晝講)을 하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더운 것을 꺼리어 시각을 고치겠는가.’라고 하고는 드디어 허락하지 않았다. 서연관 송명흠(宋明欽)이 현(縣)의 관원이 되어 하직 인사를 하니, 특별히 소대(召對)를 명하여 《대학(大學)》의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내용을 토론하였는데, 조용하게 주고 받는 말이 마치 메아리와 같았다. 송명흠이 말하기를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설을 송(宋)나라 황제는 듣기 싫어하였는데, 저하(邸下)께서는 심오한 뜻을 밝히면서 꾸준히 힘쓰고 게을리하지 않으니, 여기서 저하가 학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고 하였다. 또 《맹자(孟子)》를 강론하다가 궁관에게 말하기를 ‘우(禹)임금이 용사(龍蛇)를 내몰아 진펄에다 살게 하였는데, 우는 어떻게 용사를 내몰았는가. 우가 이미 물길을 터서 길을 뚫음으로써 늪을 진펄로 만들고 나자 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용사가 따라간 것으로서, 이는 저절로 내몰아 쫓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형세가 그러했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성인이 때를 살피고 기미를 살피어 어디를 들어가든지 터득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것도 역시 그 형세에 순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진퇴(進退)와 존망(存亡)의 기미를 아는 것은, 시중(時中)의 성인이다.’라고 하였다.

병자년 5월 낙선당(樂善堂)에 화재가 났다. 기주(記注)를 살펴보면, 세자가 영지(令旨)를 내리어 ‘불초한 내가 외람되게 대리(代理)를 받든 지가 벌써 8년이 되었으나, 어느 일 하나 성상의 뜻을 제대로 받든 것이 없이 늘 성상의 마음에 걱정만을 끼쳐드리며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신하들을 대하기가 참으로 부끄럽다. 다행히 우리 성상의 지극하신 인애(仁愛)에 힘입어 지내고 있는데, 삼가 어제의 하교를 받들자, 감격과 송구스러움이 교차하여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조정에 있는 대소 신하들은 나를 변변치 못하다고 보지 말고, 일에 따라 올바르게 바로잡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상이 그것을 듣고 하교하기를 ‘세자의 자신을 탓한 말이 어찌 덕이 없어서 그리된 것이겠는가. 조상의 신령이 돌보아주심을 받은 셈이니, 대소 신하들은 우리 세자의 이 뜻을 몸받아 지성으로 보좌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궁중기문》에 의하면, 세자가 본디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점은 궁중의 대소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인데, 이때에 그와 상반된 말이 돌았다. 세자는 성인의 가르침에 힘쓰지 못했다는 내용의 지시를 내리어 반성하면서 자책을 하였고, 또한 술을 지나치게 마셨다고 상 앞에 말씀드렸다. 이때 좌우에 있던 신하들이 ‘없는 일을 있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성실하지 못한 것이 된다.’고 말하자, 답하기를 ‘지극히 인자하고 지극히 명철하신 전하께서 스스로 그것의 허실을 판별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스스로 변명하는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겠는가.’고 하였다. 얼마 후에 상이, 세자가 영지(令旨)를 내리어 자신을 책하였다는 것을 듣고는 매우 기뻐하면서 ‘이런 말이 나도는 것은 모두 나의 잘못이다.’고 하면서 누차 감격하고 깨닫는 의사를 드러내 보였고, 그뿐만 아니라 성의(聖意)를 중외에 반시(頒示)하였다.

이에 앞서 화재가 발생한 이튿날 상이 여러 신하들을 꾸짖어 말하기를 ‘근래의 일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조정 신하들 중에 믿을 만한 자가 없다.’고 하니, 적신(賊臣) 김상로(金尙魯)가 대답하기를 ‘세자도 역시 두렵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승지에게 물으니, 승지 이이장(李彝章)이 아뢰기를 ‘세상에 어찌 이런 도리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장차 이런 신하를 어디에다 쓰시렵니까.’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옳다. 승지가 한 말이 과연 옳다.’라고 하였다. 이장이 또 아뢰기를 ‘아비에게 잘못이 있으면 아들이 간하지 않는 적이 없는 법이니, 그래서 옛말에 이르기를 「아비에게 간쟁하는 아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아비로서

나무라지 않는 적이 없는 법이니, 그래서 옛글에 이르기를 「어진 아버지와 형이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자간에 잘못이 있으면 간하고 나무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이른바 「아비는 아들을 위하여 허물을 숨겨주고 아들은 아비를 위하여 허물을 숨겨준다.」는 것은, 간쟁하고 책망을 하되 다른 사람들이 그 간쟁하고 책망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허물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신 말씀은 실로 성인의 「허물을 숨겨준다.」는 말과는 어긋나는 점이 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였다. 상이 드디어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아뢴 말은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다. 승지 같은 사람은 이처럼 걱정을 하지만, 고약한 무리들은 반드시 듣고서 기뻐할 것이다.' 고 하였다. 이장은 오히려 본사(本事)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만 아뢰고 말았던 것이다. 세자의 영지(令旨)가 먼저 내리고 임금의 전교(傳敎)가 뒤이어 내리자, 궁중과 외정(外廷)에서 이를 들은 사람들은 서로를 축하하여 말하기를 '감동하고 깨닫게 된 것은 성상의 인자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감동하고 깨닫게 만든 것은 역시 세자의 효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영지(令旨)를 내리어 올곧은 말로 극력 간할 것을 구하였으며, 중외에 신칙하여 농사를 장려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으며 백성들의 고충을 알아보았다. 이해 겨울에 두환(痘患)을 앓다가 회복되자, 축하를 올리고 사면령을 반포하였다.

정축년 2월에 정성 왕후(貞聖王后)가 세상을 떠나자, 세자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슬퍼 어쩔 줄 몰랐다. 빈소를 차릴 때부터 발인을 할 때까지 다섯 번의 전(奠)과 일곱 번의 곡(哭)을 할 때마다 죄다 친히 참가하여 그 성의를 나타내었고, 밤낮으로 울음소리를 거의 그치지 아니하였다. 왕실 친척들과 의식을 거드는 집사(執事)들이 다들 감격하여 찬탄하였으며, 중외에서도 이를 듣고 역시 눈물을 훔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상이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슬픔에만 겨워 지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세자가 깊이 슬퍼하는 것을 보니 어찌 슬픔을 누를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판부사 유척기(兪拓基)가 아뢰기를 '지난번 성후(聖候)가 불편하셨을 때 숭문당(崇文堂)에 입시하였다가 삼가 동궁을 우러러보니 밤새도록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큰 병환이 생길까 염려되었습니다. 이제 만약 감정대로 슬퍼하게 놔둔다면, 틀림없이 몸을 손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보살피셔야 될 것입니다.' 고 하였다. 이해 3월에 인원 왕후(仁元王后)가 또 세상을 떠나자, 상이 정도에 지나치게 슬퍼하였는데, 세자가 곁에서 모시면서 정례(情禮)를 다하여 위로를 하였다. 6월에 정성 왕후를 발인하였다. 궐문 밖에 이르러 곡을 하면서 하직하였는데, 그 슬퍼함이 좌우를 감동시켰으며, 서울의 사녀들이 서로들 모습을 보려고 눈물을 훔치며 앞을 막았다. 길잡이들이 그들을 밀쳐내자, 사람을 다칠까 싶으니 그만두라고 지시하였다. 우반(虞返) 때가 되자 교차(郊次)에서 신연(神輦)을 맞이하여 한동안 슬피 곡을 하였는데 자리에 눈물을 비오듯이 흘렸고, '장례 행렬이 나의 의장(儀仗)과 서로 막히어 바라볼 수가 없으니, 대오를 나누어서 가게 하라.' 고 하였다. 유궁(幽宮)의 지문(誌文)을 친히 지어 간직해 두었는데, 바깥 신하들은 모두들 그 일을 알지 못하였다. 그 뒤로 본래 앓던 병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을 무릅쓰고 두 혼전(魂殿)에 일곱 번의 우제(虞祭)와 삭망제(朔望祭)를 거행하였는데, 병이 위독해질수록 슬픔도 더욱 더하였다. 이때 보덕 윤동승(尹東昇)이 보살피면서 주선한 힘이 매우 컸는데, 매번 말하기를 '동승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나의 정리를 환히 드러낼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였다.

기주(記注)를 살펴보면, 무인년 가을에 상이 혼전(魂殿) 뜰에 엎드리어 구두로 주달(奏達)하였는데, 감히 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이어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쓰게 하였으며, 영의

정 이천보(李天輔)를 파직시키라고 명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에 도승지 **채제공(蔡濟恭)** 등이 여러 승지와 사관들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전하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신하된 자로서 감히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차마 보지 않아야 하는 일이니, 누가 감히 붓을 잡고 기주(記注)에 옮겨 적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되돌려 올리고, 물러가 엎드리어 처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이어 소매 속에서 구두 주달(奏達)의 등본(謄本)을 꺼내어, 무릎을 꿇고 상의 앞에 놓았다. 한참 지난 후에 상이 이르기를 '말인즉 옳다. 내가 마땅히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였다.

이달 그믐에 상이 명정전(明政殿) 월대(月臺)에 임어하였는데, 세자는 시민당(時敏堂) 뒷뜰에 거적자리를 깔고 대죄(待罪)하였다. 영부사 이종성(李宗城)이 구대(求對)하여 아뢰기를 '전하께서 40년 동안 학문에 힘쓰고도 이제 군신 부자간에 처신을 이렇게 하시니, 이것을 신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제 또 나를 탓하니, 나는 장차 물러가겠다.' 라고 하면서 이어 일어서려고 하였다. 대신이 영부사가 한 말이 뜻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품고 있는 생각을 다시 진술하게 할 것을 청하자, 종성이 다시 말하기를 '신의 말이 뜻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신하로서의 의(義)는, 대조(大朝)에 있으면 임금의 잘못에 대하여 충고하고, 소조(小朝)에 있으면 세자의 잘못에 대하여 충고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에 대하여, 신들의 심정은 물론이고 비록 모든 군사와 만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목을 빼고 죽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은, 그가 우리 임금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에게 종묘 사직과 신인(神人)이 의탁해 있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바라는 것은 오직 과실(過失)에 대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불행하게 과실이 있더라도 또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니, 이는 천리나 인정상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는 이유를 말할 것 같으면, 바로 그가 우리 임금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전하와 동궁은 바로 한 몸이나 같은데 어떻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몸을 둘로 나누어 보시니, 이것을 신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고는, 이어 간사한 자들을 멀리하고 참소하는 자들을 물리칠 데 대하여 말머리를 꺼낸 후, 다 마치지 않은 채 물러갔다. 제공이 여러 대신들과 함께 시민당 뜰에 돌아와서 세자를 만나니, 세자가 자신을 탓하고 도움을 바라는 하교를 내리므로, 종성과 제공이 성의를 쌓아 임금의 마음을 돌려세울 방도에 대하여 번갈아가며 진술하였다.

《궁중기문》에 의하면, 이듬해 정월 영부사 이종성이 죽었는데, 죽을 무렵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제대로 죽을 수 없게 될 듯하다. 낙선당(樂善堂)에 입시하여 죽음으로써 스스로 밝히려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명정전(明政殿)에 입시하여 또 죽음으로써 통렬히 진술하려 하였으나 그만 지레 물러나왔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 살아서는 나라를 저버린 사람이 되었으니, 죽어서는 눈을 감지 못하는 원혼(冤魂)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보고가 들어가자, 상이 놀라면서 오랫동안 슬퍼하고 아깝게 여기었다. 세자는 흰 띠를 두르고 소선(素膳)을 들었으며, 성복(成服)하는 날까지 고자(孤子)를 보살피고 제수(祭需)를 하사하기를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 하였다. 기묘년에 세손(世孫)의 책례(冊禮)를 행하였고, 중궁(中宮)의 책례를 행하였다. 행록(行錄)에 의하면, 세자는 중궁을 정성 왕후(貞聖王后)와 똑같이 섬겼으므로 궁중에서 모두들 효성(孝誠)이 독실하다고 우러러 보았으며, 영묘는 감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세자가 내전(內殿)을 모시는 것을 보니, 참으로 사람들이 트집을 잡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였는데, 이 때문에 내전도 더없이 세자를 사랑하였다.

이 해에 훈국(訓局)에 《무기신식(武技新式)》을 반포하였다. 《궁중기문》을 살펴보면, 세자는 유년 시절부터 지도(志度)가 이미 뛰어나 놀이를 할 때면 반드시 병위(兵威)를 진설하

곤 하였다. 상이 시험삼아 그의 소질을 떠보려고 물어보면 조목조목 대답을 해내곤 하였는데 매우 상세하였다. 일체의 행동 거지와 임기 응변하는 방도를 모두 손으로 그리고 입으로 대면서 혹시라도 어긋나는 경우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병가(兵家)의 서적을 즐겨 읽어, 속임수와 정당한 수법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묘리(妙理)를 은연중에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효묘(孝廟)께서 일찍이 무예를 좋아하여 한가한 날이면 북원(北苑)에 납시어 말을 달리며 무예를 시험하곤 하였는데, 그때에 쓰던 청룡도(靑龍刀)와 쇠로 주조한 큰 몽둥이가 여직껏 저승전(儲承殿)에 있었다. 그것을 힘깨나 쓰는 무사들도 움직이지 못하였건만, 세자는 15, 16세부터 벌써 모두 들어서 썼다. 또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여 화살을 손에 쥐고 과녁을 쏘면 반드시 목표를 정확히 맞췄으며, 고삐를 잡으면 나는 듯이 능숙하게 말을 몰았고, 사나운 말도 잘 다루었다. 그러자 궁중에서 서로들 말하기를 '풍원군(豊原君)이 연석(筵席)에서 효묘(孝廟)를 빼닮았다고 한 말에는 과연 선견 지명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때 장신(將臣)들이 무예에 익숙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여, 책 하나를 엮어 이름을 《무기신식(武技新式)》이라고 달아 반포하였다. 이는 대체로 척계광(戚繼光)의 책에 실려 전하는 무예가 단지 여섯 가지 기예뿐으로서 곤봉(棍捧)·등패(籐牌)·낭선(狼筅)·장창(長槍)·당파(鐺鈀)·쌍수도(雙手刀)인데, 연습하는 규정에 그 방법이 대부분 잘못되었으므로, 옛책을 가지고 모조리 고증하여 바로잡았다. 또 죽장창(竹長槍)·기창(旗槍)·예도(銳刀)·왜검(倭劒)·교전 월도(交戰月刀)·협도(挾刀)·쌍검(雙劒)·제독검(提督劒)·본국검(本國劒)·권법(拳法)·편곤(鞭棍) 등 열두 가지 무예를 새로 만들어 도식을 그려가지고, 찌르고 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 책을 전서(全書)로 편찬하여 훈국(訓局)에 주어 연습하게 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좁아서 군사를 쓸 땅이 없다. 그러나 동쪽으로는 왜(倭)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오랑캐와 이웃하였으며, 서쪽과 남쪽은 큰 바다이니, 바로 옛날의 중원(中原)인 셈이다. 지금은 비록 변경에 경보가 없지만, 마땅히 위험에 대비하는 태세를 구축하여야 한다. 더구나 효묘(孝廟)께서 뜻하신 일을 실현할 데가 없는 데다가, 북쪽 동산[北囿]의 한 자 되는 단(壇)은 나를 자다가도 탄식하게 한다. 아, 병기(兵器)는 비록 아무 걱정거리가 없이 편안한 시기라고 하더라도, 성인들은 오히려 만들어 둠으로써 갑작스런 외적을 대처하였는데, 하물며 우리 나라에는 효묘께서 결심하신 일까지 있는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였다. 그리고 도간(陶侃)이 매일 벽돌 1백 장씩을 날랐다는 말4996) 을 외울 때마다 고요한 밤 한가한 때이면, 문득 스스로 시험하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의술이라는 것은 의심을 하는 것이다. 사람의 장부(臟腑)와 심장·간장을 비록 모조리 알기는 어렵지만, 모색(摸索)하고 유추(類推)하면 역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 나라를 치료하는 수법은 논할 것도 없거니와, 진실로 약재(藥材)의 성질을 대강 알고 맥(脈)의 이치를 약간 안다면, 하루에 한 사람을 고치고 이틀에 두 사람을 고치면서 점차 숙련되어 자연히 한때의 명의가 될 것이다. 선비들의 학문도 의심을 가지는 데로부터 의심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더구나 의원이 의심을 가지고 의심을 풀어나가는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로부터 처방만 내리면 당장 효험을 보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찮은 재주라고 하여 유의하지 않았다.

또 말하기를 '옛날에는 의복 제도가 각기 상징하는 것이 있었다. 지금 말하는 창옷[氅衣]과 소매가 둥근 옷[圓袂衣]을 나는 일찍부터 싫어했다. 창옷은 세 면이 막히고 뒤폭만 터졌는데, 그 형상이 음에 속한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중국은 양에 속하고 이적(夷狄)은 음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나라의 창옷 제도가 나오자 비로소 북쪽으로 건주위(建州衛)와 통하는 조짐이 발생하였다. 둥근 소매 옷은, 앞면은 두 폭을 겹치고 뒤에는 한 폭을 늘어뜨

렸으니, 이 역시 남쪽을 향하고 음을 등지는 뜻이 아니다.' 하였다. 한가롭게 지낼 때이면, 반드시 와룡관(臥龍冠)을 쓰고 학창의(鶴氅衣)를 입는데, 학창의는 사마광(司馬光)의 심의(深衣)를 모방한 것이었다. 또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정복(正服)은 깃이 둥근 옷[團領]과 철닉[帖裏]인데, 깃이 둥근 옷은 바로 제왕들이 회동(會同)할 때 입는 옷이고, 철닉은 바로 황제(黃帝)의 의복 제도이다. 군복(軍服)의 경우, 소매가 좁은 것은 모두 옛 제도를 숭상한 것이고 싸울 때에 입는 옷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근래의 습속(習俗)에서는 미리 마련해두는 계책과 근검 절약하는 도리를 모른다. 미리 마련해두면 걱정이 없어지고, 검박하게 지내면 재물이 넉넉해진다. 지금의 의복과 그릇들 가운데, 화려하여 사치스런 감이 있거나 산뜻하여 몸에 편리한 것들을 나는 가까이한 적이 없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궁궐 안의 사람들 가운데 자기네들의 잘못을 나에게 와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기에, 고발한 사람과 고발당한 사람을 서로 대질시켜, 만약 증거가 없을 경우 고발한 사람을 죄주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반드시 양쪽을 다 다스리게 하였다. 이로부터 남의 허물을 고자질하는 일이 조금 가라앉았다.'라고 하였다.
사직(司直) 박치원(朴致遠)이 글을 올려 힘쓸 것을 진언하니, 너그러운 비답을 내려 답하였다. 후에 중신(重臣) 서지수(徐志修)가 연석(筵席)에서 진계(陳戒)한 것과 관련하여 말하기를 '이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전후로 세자의 덕(德)에 관련된 말을 한 자들은 다들 장려하는 말씀을 받았다.
일찍이 계방(桂坊)의 나삼(羅蔘)이 전에 서연(書筵)에서 입바르고 강직한 말이 많았다 하여 후에 궁료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안부를 묻곤 하였다. 하루는 궁관(宮官)이 시사의 염려스러운 것에 대하여 물어보는 자가 있자, 매우 엄하게 나무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 두 궁(宮)을 이간시키는 것이다. 도적이란 지목은 바로 이런 무리들을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기주(記注)에 의하면, 이때에 대궐 하인들 중에 영(令)이 내렸다는 핑계하에 민간에 나가 횡포를 부리는 자가 있었는데, 그 일이 드러나자 즉시 유사(有司)에게 넘기게 하고는, 이어 영지(令旨)를 내리기를 '근래에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는데, 이후로도 이런 폐단이 없을지 알 수 없다. 다시 범하는 자가 있으면 법사(法司)가 곧장 스스로 판단하여 잡아다 다스리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경진년 가을에 상이 경희궁(慶熙宮)에 이어(移御)하였다. 7월에 온천에 행행하였다가 8월에 환궁하였다. 행록을 살펴보면, 이때에 세자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으므로 영묘께서 온천에 가서 목욕하라고 명하였다. 행차가 강가에 이르니 물이 불어나서 뱃길이 안전하지 않으므로, 날이 저문 후에야 비로소 건넜다. 배 위에서 궁관 이수봉(李壽鳳) 등과 함께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는 설(說)을 강론하였다. 그 이튿날 **수원부(水原府)**에 이르렀다. 부의 소재지 북쪽에 **화산**(花山)이 있었는데, 바로 기해년에 영릉(寧陵)을 표지해 둔 곳이었다. 거기에 올라가서 두루 둘러보고 좋은 곳이라고 감탄을 한참 하다가 처소에 돌아왔다. 산성에서 무예를 열병하였다. 행차가 지나는 길가에서, 부로들이 에워싸고 막아서서 다투어 바라보면, 번번이 행차를 멈추고 질고를 물어보고는 조세와 부역을 감해주라고 명하였으므로, 일로가 크게 기뻐하였다. 어느 호위 군사의 말이 달아나 콩밭에 들어가서 마구 짓밟고 뜯어먹었는데, 지방관을 불러 밭 주인에게 값을 후하게 갚아주라고 하였으며, 호위 군사의 죄를 다스렸다. 고을 안의 나이 많은 자들을 돌봐주었으며, 시골에 파묻혀 있는 선비들을 간곡히 불렀다. 온천에 도착하여서는 날마다 강론하는 자리를 열었는데, 역대 임금들이 온천에 갔을 때에 옥당의 관원을 소대하던 옛 일을 따른 것이었다. 절구시(絶句詩) 1수

를 내리어 궁관에게 화답하라고 지시하였다.
달이 바뀌자, 망궐례(望闕禮)를 행하는 것의 당부(當否)를 궁료에게 묻고, 이어 말하기를 '오랫동안 서울 궁궐을 떠나 있자니, 그리운 심정을 견디기 어렵다.' 고 하였다. 이날 드디어 행차를 돌렸으며 곧바로 경희궁에 나아가 문안 인사를 올리려 하였는데, 영묘가 지신(知申)을 보내어 성밖에서 마중하여 유시(諭示)하기를 '앓고 난 뒤에 말을 달려 왔으니 마땅히 바로 돌아가서 몸조리를 하고, 조금 지난 후에 차차 와서 만나도록 하라.' 고 하였다. 상신(相臣)이 나아가 뵙고 아뢰기를 '학어(鶴御)가 한 번 임하자, 호중(湖中)의 인사들이 비로소 세자의 덕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부로나 서인들치고 덕의를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야말로 신민의 행복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번 행차 때 궁궐에서 나갈 때부터 행차가 돌아올 때까지 번번이 수봉(壽鳳)으로 하여금 경과하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타이르는 한편 농사에 손상을 입힌 것을 살피도록 하였다. 또 날씨가 몹시 무더운 때였으므로 약원(藥院)에 명하여 약을 조제하여 도중에서 더위를 먹은 장수와 병졸들을 구료하게 한 결과 돌아온 뒤에 한 사람도 앓는 자가 없었다.
신사년에, 당시에 조치해야 될 계책에 대해 대신들에게 문의하니, 대신들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드디어 관서(關西)의 고을에 행차하게 되었는데, 이는 상에게 명을 청하여 도적들의 모의를 저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적신(賊臣) 홍계희(洪啓禧)가 내부에서 변란을 저지르려 하자, 세자가 그 소식을 듣고 말을 재촉하여 곧장 돌아왔다. 이때 한 승지가, 상에게 아뢰어 조정 신하가 세자에게 올린 글을 볼 것을 청하였다. 이에 사태가 급박하게 되었는데, 세자가 몸소 임금 앞에 나아가, 변란을 처리하려 했던 본의를 빠짐없이 고하니, 상이 그제서야 의심이 풀렸다. 후에 세자가 빈연(賓筵)에 임어하였을 때 상이 말하기를 '세자 또한 임금이다. 명색은 신하로서 섬긴다고 하면서 간악한 음모를 품어서야 되겠는가.' 하고는, 역적 계희(啓禧)가 무엄하다는 내용의 하교를 잇따라 내리어 한(漢) 무제(武帝) 때의 간신 강충(江充)에게 비기었다. 이때로부터 음모가 더욱 긴박해졌다.
임오년 5월에 적인(賊人) 나경언(羅景彦)이 복주(伏誅)되었다. 기주(記注)와 《궁중기문(宮中記聞)》에 의하면, 경언이 형조에 글 한 통을 투서하였는데, 그 글에는 '전하의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이 모두 불충한 생각을 품고 있어 변란이 눈앞에 닥쳐왔다.' 는 말이 있었다. 이에 형조의 관리가 본조의 좌석으로부터 그 글을 소매 속에 넣고 청대를 하였는데, 이때 역적 계희는 기백(畿伯)으로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상이 모두에게 입시하라고 명하였고, 이어 형조의 관리가 그 글을 상에게 고하자, 상이 크게 놀라서 내시에게 묻기를 '경언은 대궐 하인 나상언(羅尙彦)의 족속인가?' 라고 하니, 내시가 대답하기를 '상언의 형으로서 전에 대궐 하인으로 있던 자입니다.' 고 하였다. 상이 역적 계희에게 묻기를 '궁성을 호위해야 하겠는가?' 라고 하니, 역적 계희가 앞에 나와서 아뢰기를 '나라에 변고가 있으면 궁성을 호위하는 일은 무신년에도 이미 행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상이 즉시 성문을 닫고 군사를 동원하여 궁문을 파수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사복시에 나아가 경언을 국문하자 경언이 옷의 솔기 안에서 또 하나의 봉서를 꺼냈는데, 길이는 5치를 넘고 둘레는 한 줌이 차는 것이었다. 그것을 올리니, 상이 보고 나서 좌상(左相)에게 보였는데, 좌상이 겨우 두어 줄을 보자마자 소리를 내어 울면서 말하기를 '신이 먼저 죽어야 하겠습니다. 동궁이 만약 이 소식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신이 가서 위로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판의금부사 한익모(韓翼謀) 등이 말하기를 '경언이 흉악한 말을 지어내어 상을 속여 세자를 핍박하게 만들었으니, 그 죄 죽여야 마땅합니다. 엄하게 국문하여 법대로 다스리소서.' 라고 하니, 상이 비로소 형장을 가하라

고 명하였다. 그러자 사서(司書) 임성(任珹)이 분연히 나서서 익모에게 말하기를 ‘흉악한 말을, 어찌 경언이 스스로 지어낸 것이겠는가.’라고 하니, 익모가 또 사주한 자를 한시바삐 사핵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노하여 익모의 관직을 파면시키고, 대사간 이심원(李心源)이 익모를 두둔하자, 그도 파직시켰다.

익모 등이 이미 쫓겨난 다음, 경언이 세자를 무함하였다고 자복을 하였다. 그러자 여러 신하들이 이구 동성으로 극률에 처할 것을 청하였다. 동의금 이이장(李彝章)이 말하기를 ‘여느 사람을 무함해도 오히려 역적이 되는데, 더구나 세자를 무함한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흉악한 말은 이미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죄인이 이미 자복을 하였으니, 이러한 역적과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서서 극력 말하였는데, 책망하는 하교가 누차 내렸건만 말은 갈수록 강직하여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때 세자가 대궐문 밖에 걸어가서 대명(待命)하고 있다가, 상이 들어오라고 명하자 드디어 대궐 뜰에 나아와 엎드렸는데, 흐르는 눈물이 도포자락을 적시니 여러 신하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였다. 날이 밝을 무렵에 정휘량(鄭翬良)이 비로소 접견을 청하여 아뢰기를 ‘죄인이 이미 세자를 무함했다는 네 글자를 가지고 자복한 이상 그 죄를 단 하루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상이 이에 경언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하였다. 이튿날 아침에야 비로소 세자가 환궁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울면서 말하기를 ‘지극하신 자애심 덕분에 함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해 윤 5월 21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궁묘(宮墓)의 호칭을 ‘수은(垂恩)’이라고 내려주었다. 7월 23일에 양주(楊州)의 배봉산(拜峰山) 갑좌(甲坐)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장사 지내는 날에 상이 광중(壙中)에 임어하여 어필로 신주를 썼다. 그 다음달에 조재호(趙載浩)를 북쪽 변방에 귀양보내었고 또 그의 조카인 조유진(趙維鎭)이 죄에 연루되어 옥에 갇혔는데, 대신(臺臣)이 법대로 처단하자고 청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저 동룡(銅龍)4999) 을 쳐다보면 나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여러 신하들로서는, 마땅히 차마 말하지 못하는 나의 심정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는, 즉시 그 일을 그만두라고 명하였고, 이어 말한 자에게 죄를 주었다. 유진은 여러 번 고문을 받았으나 항언을 하면서 두말을 하지 않았고, 원지(遠地)에 유배되어 가던 도중에 죽었다. 기주(記注)를 살펴보면, 윤 5월 13일에 검열 윤숙(尹塾)이 대궐 뜰에 내려가 이마를 두드리니 피가 흘러 얼굴을 덮었다. 그리고 호위 구역 밖으로 뚫고 나가 의관(醫官)을 불러 약을 구해 가지고는 소조께 올렸다. 이때에 여러 대신들이 합문(閤門) 밖에 있으면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윤숙이 호위 군사들을 꾸짖고 몸을 빼어 뛰쳐나가서는 대신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왔다. 윤숙이 신만(申晩) 등을 꾸짖어 말하기를 ‘이처럼 위급한 시기에 대신들이 대궐 섬돌에 머리를 찧고 죽기로 작정하면서 힘껏 간하지 않는다면, 장차 대신을 어디에다 쓰겠는가.’라고 하였다. 적신(賊臣) 구선복(具善復)과 홍인한(洪麟漢) 등이 각기 음흉한 꾀를 부리는 바람에, 윤숙은 마침내 흑산도(黑山島)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상은 오히려 이 사람이 아깝다고 연신 말을 하였다.

분사(分司)의 한림 임덕제(林德躋)가 뒤이어 뜰 아래에 엎드린 채 곁에서 떠나지 않으니, 상이 끌어내라고 명하였다. 그런데도 땅에 버티어 앉은 채 일어나지 않자 호위 군사가 끌어내려 했는데, 덕제는 꾸짖어 말하기를 ‘나의 손은 사필(史筆)을 잡는 손이다. 이 손을 잘릴지언정 끌릴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정의현(旌義縣)에 유배하라고 명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윤숙과 덕제를 석방하라고 명하였고, 후에 덕제를 등용하였다.

궁관 임성(任珹)·권정침(權正忱) 등은 한사코 나가지 않았으며, 분주서(分注書) 이광현(李

光鉉)도 몸을 빼어 뛰쳐나가 의관을 데리고 들어왔다. 도승지 이이장(李彝章)은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사코 간쟁을 하니, 상이 노하여 군문(軍門)에 넘겨 효수하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일단 나갔다가 다시 문을 밀치고 들어와서 땅에 엎드려 통곡을 하였다. 전교(傳敎)를 쓰라고 명하자, 울면서 말하기를 '신은 마땅히 죽어야 하겠습니다. 감히 명을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는, 나가 금오문(金吾門) 밖에서 처분을 기다렸다. 패초(牌招)를 명하였으나 끝내 나아오지 않았다. 후에 묘소의 공사를 감독하는 직임에 임명하라고 명하였는데, 송영중(宋瑩中) 등이 대간(臺諫)으로서 다른 말을 꾸며 규탄을 하니, 상이 영중 등을 엄하게 배척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즉시 그의 아들을 녹용하라고 명하였으며, '나라가 어지러우니 어진 정승이 생각난다.' 는 하교가 있었다.

분사(分司)의 제조 한광조(韓光肇)는 대궐문을 밀어젖히고 들어와서 관을 벗고 울부짖으니, 상이 파직시키라고 명하였다. 이에 광조가 말하기를 '신은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신이 한 마디 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또 끌어내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광조는 통곡을 하면서 기어나갔다. 그의 아비는 말하기를 '머리를 부딪쳐 죽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조신(朝臣)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고는, 드디어 반교(頒敎)하는 데에 불참하였다. 광조는 대정현(大靜縣)에 귀양갔다가 곧이어 석방되었다. 후에 상이 말하기를 '얼마 전의 처분을 내 자신이 뉘우친다.' 라고 하였다. 광조가 세상을 떠나자 친히 제문(祭文)을 지었는데, 그 제문에는 '부자가 함께 조정에 있으면서 뜨거운 충성을 다하였다.' 고 하였으며, 이어 그의 아들을 녹용(錄用)하였다.

승지 조중회(趙重晦)는 눈물을 흘리면서 극력 진술하니, 섬에 유배시키라고 명하였다가 곧이어 도로 취소하였다. 중회는 또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어 항언하며 굽히지 않다가, 원지(遠地)에 귀양을 당하였다. 후에 '매서운 바람이 불어야 꺾이지 않는 굳센 풀을 알 수 있다.' 는 하교가 있었으며, 누차 승진을 시키어 이조 판서로 임명하였다.

제학 한익모는 소명을 다섯 번이나 어기면서 교문(敎文)을 짓지 않으니, 하교하기를 '명분과 의리상 그럴 수 있는 것이니, 부르지 말라.' 고 하였다. 또 치사(致詞)를 지어 올리라고 명하였으나, 소패(召牌)가 모두 여덟 번이나 내렸어도 끝까지 나아오지 않고, 의금부에서 짚자리를 깔고 대죄하다가 삭직을 당하였다. 후에 누차 그를 칭찬하였으며, 발탁하여 영의정에 임명하였다.

승지 이익원(李翼元)은 극력 항거하면서 전교를 쓰지 않았으며, 승지 정순검(鄭純儉)은 전각(殿閣) 위에 올라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신을 죽여 주소서. 신이 비록 죽을지언정, 감히 이 하교를 반포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가, 파직을 당하였다. 총관 이태화(李泰和)는 관을 벗고 머리를 부딪치면서 극력 간하였는데, 후에 특별히 명하여 가자하였다.

갑신년 가을에 입묘례(入廟禮)를 행하였는데, 상이 임어하여 살펴보았다. 을유년 5월에 제삿날을 하루 앞두고 시사(視事)를 정지하도록 명하고, 조정 신하들에게 윤음을 내리기를 '작년 이후 처음으로 이날을 맞는다. 경연을 정지하는 것이, 어떻게 스스로의 편함을 위한 것이겠는가. 아, 마음이 이와 같지 않다면 부모가 아닐 것이고, 또 어떻게 영혼을 위로하겠는가. 아, 신하들이 80을 바라보는 자기 임금의 오늘 심정을 알고 신하로서의 분수를 지킨다면, 부산을 떨고 세력 다툼을 벌이는 마음은 마치 봄눈이나 봄얼음과 같이 저절로 풀릴 것이다.' 고 하였다. 대신 등이 정섭(靜攝) 중에 계신 만큼 즉시 상선(常膳)을 드시라고 청하였다. 그 이튿날 또 수은묘(垂恩墓)의 헌관 홍낙인(洪樂仁)에게 명하여, 제사를 행한 후에 국내(局內)를 간심하고 돌아와 아뢰도록 하였다. 낙인이 연석(筵席)에 오르자,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를 상세하게 물었다.

가을이 되자, 상이 어의궁(於義宮)에 행차하여 세손(世孫)더러 사당에 가서 참배하라고 명하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보내고는 옛일을 추억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 이어 후원의 기슭에 걸어 올라가서, 담장에 기대어 한동안 멀리 바라보았다. 이후로는 매일 밤중에 번번이 문지방을 두드리면서 한탄하기를 '옛적에 사자궁(思子宮)과 망사대(望思臺)가 있었는데 내가 어찌 스스로 이런 처지를 당할 줄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라고 하였다. 또 연신(筵臣)에게 말하기를 '그때의 조정 신하들 가운데 과연 안금장(安金藏)5000) 과 같은 충성심을 가진 자가 있었던가. 이제 와서 협잡하여 다시 제기하는 것은 억하 심정인가.' 라고 하였다.

무자년에 상이 전각 뜰에서 향 지영례(香祇迎禮)를 행하였는데, 효장묘(孝章廟) 이하 각묘의 향축(香祝)에 대하여, 여러 신하들이 압존(壓尊)이라는 이유로 즉시 몸을 굽히지 않자, 상이 성난 소리로 배참(陪參)한 신하들을 파직시키라고 명하고, 이어 병조 판서와 시위(侍衛)한 신하들을 잡아들이도록 하였다. 하교하기를 '아, 한 모퉁이의 푸른 언덕[靑丘]은 바로 조선이다. 세자의 신령을 맞이하는 의식을 여러 신하들이 어떻게 감히 하지 아니하는가. 아, 수은(垂恩)아. 오늘의 여러 신하들 중에는 10년 동안 신하로서 섬기던 자가 많으니, 세자가 죽어서 무심하다고 말하지 말라. 무심 두 글자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자정전(資政殿)에 돌아와 대신과 제신들을 전각 앞에 불러놓고, 칙유(飭諭)를 내리어 10년 동안 신하로서 섬긴 의리를 알도록 하였다.

그 이튿날에 대정(大政)을 행하였는데, 또 대소 신료들에게 하교하기를 '아, 임오년의 일을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자질(姿質)이 훌륭하였건만, 내가 정말 인자하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다. 경인년에 왕부(王府)에 임어하여 하교하기를 '지난 일을 새삼스레 제기하여 나에게 들리도록 하는 것은 반역하는 심보이다.' 라고 하였다.

갑오년 여름에 가뭄이 들었는데 친히 묘소에 나아가 제문을 친제(親製)하고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세손(世孫)이 뒤를 따라갔다. 여러 신하들을 돌아보면서 이르기를 '오늘 단비가 내릴 것이다.' 고 말하고는, 이어 찬례(贊禮) 이하 행차를 따라간 근신들에게 차등있게 상을 내리라고 명하였다.

병신년 봄에 이르러 《정원일기(政院日記)》와 공가(公家)의 문적 중 정축년부터 임오년까지의 차마 말하기 곤란한 점이 있는 내용은 모두 세초(洗草)하라고 명하면서 하교하기를 '세손(世孫)의 이 상소문을 보고 특별히 그의 청을 허락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의 마음은 슬픔을 견딜 수 없다.' 라고 하고는, 옥루(玉淚)를 비오듯이 떨구었다. 또 전교를 쓰라고 명하면서 이르기를 '지금 내가 밤낮으로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조종(祖宗)이 물려준 나라에 있다. 금번의 이 조처는 실로 나이 어린 아들을 위한 것이다. 아, 임오년 윤5월의 일기에 대하여 사도(思悼)가 까마득한 저승에서나마 아는 것이 있으면 틀림없이 눈물을 삼키면서 「내가 장차 여한이 없게 되었다.」고 여길 것이다. 그 때의 일기를 실록의 규례에 따라 승지와 주서가 함께 차일암(遮日巖)에 가서 세초하도록 하라. 아, 내가 덕이 없는 탓에 만고에 없는 일을 당하였는데 말세의 인심이 수선을 떨고 있다. 비록 일기를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문자(文字)를 다시 제기하고 나선다면, 마땅히 무신년 못된 무리들의 잔당으로 쳐서 엄하게 징치할 것이다. 더구나 훗날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후로 임오년의 일을 언급할 경우, 마땅히 역률로 논죄할 것이니, 모두가 이것을 듣고 나라의 법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어린 아들이 이미 면유(面諭)를 받들었으니, 내 이제는 마음놓고 편한 잠을 자게 되었다.' 고 하였다.

그 이튿날 또 세손(世孫)에게 명하여, 묘소에 가서 전배(展拜)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

다. 또 하교하기를 ‘누워서 세손의 오늘날 심정을 생각해 보건대, 어찌 다만 어린 자식의 심정뿐이겠는가. 나의 심정 또한 어떻겠는가. 오늘날처럼 마음이 괴롭기란 진실로 태어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라 하였다.

《궁원의(宮園儀)》를 살펴보면, 병신년에 ‘장헌(莊獻)’이라는 시호(諡號)를 소급하여 올리고, 궁호(宮號)를 ‘경모(景慕)’, 원호(園號)를 ‘영우(永祐)’라고 고치었다. 계묘년에 존호를 소급하여 올려 ‘수덕 돈경(綏德敦慶)’이라고 하였으며, 갑진년에 또 존호를 소급하여 올려 ‘홍인 경지(弘仁景祉)’라고 하였다. 사당 내의 제례(祭禮)는 태묘(太廟)보다 한 등급 낮추었으며, 원의(園儀) 또한 이에 준하였다.

행록을 살펴보면, 2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의소세손(懿昭世孫)으로서 휘(諱)가 이정(李琔)이고, 차남은 바로 소자로서 이름은 이산(李祘)이다. 딸들은 광산(光山) 김기성(金箕性)과 오천(烏川) 정재화(鄭在和)에게 출가하였다. 서자가 3명 있는데 이인(李裀), 이진(李禛), 이찬(李禶)이고, 서녀 하나는 당성(唐城) 홍익돈(洪益惇)에게 시집갔다고 한다. 자손들에 대한 기록은 우선 옛 행장을 따라 간략히 쓰니, 오르내리는 신령이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바이다.”

○亥時, 下玄宮. 遷奠時至, 行禮如儀. 遷園都監陳素儀仗·各色燭籠, 如發靷儀. 方相氏至退壙上, 以戈擊四隅而出. 陳贈玉·贈帛於隧道閣內東南. 攝相禮跪, 贊請陞輴. 舁梓宮官率助舁, 武臣奉梓宮陞輴, 詣隧道閣, 陞轆轤車,【轆轤車, 舊有回梁拘捧機制, 見《五禮儀》. 至是, 另創一制. 先置左右臺, 長九尺, 廣九寸, 厚六分. 臺兩頭, 皆植柱, 高二尺六寸, 入於臺, 廣五寸五分·厚二寸五分. 柱上端刳作縱橫二括, 縱深五寸, 其底圓以受軸, 橫深一寸五分, 以受橫架. 軸長九尺, 圓尺二寸, 貫前後柱端. 縱括之仰圓竅, 軸當竅處, 刳減二寸五分, 左右柱端橫括, 所以牽聯四柱兩臺也. 句鐵爲方鉤, 俗名爲鐙子鐵. 兩股插于臺, 股間容綍, 其數八, 左右相對. 一臺四鉤, 間一尺. 鐵筒, 俗名套手鐵, 周箍方鉤之上, 寬其內圍, 使遊移活轉. 左右軸, 皆竪鐵牙, 其長寸許, 二牙爲比, 其間亦容綍. 一軸八牙, 其位照方鉤, 綍以布爲之. 四端縱摺而縫, 凡八重. 兩端反屈爲句子, 以木簪橫貫, 以貫餘兩端, 搭左鐵牙, 向下, 貫左方鉤·右方鉤, 挨當鉤上鐵筒, 向上, 搭右鐵牙. 餘三綍同. 軸兩端交午貫兩輻, 爲十字輪輻, 四端以紅線絛聯絡之, 如繅車. 安兩臺於壙上左右來往板, 板兩端着隱釘, 以防游動旋轉. 十字輪四輪齊力, 緩緊徐疾, 毋相先後. 向外旋則繅解而下垂, 向裏旋則綍纏而上收. 臺裏端折隅當方鉤處, 剡使圓, 便綍之往來, 柱端闊括, 厚塗脂蠟, 取其潤滑不聲軋也.】降安于退壙輪對板, 解結褁. 長生殿提調李文源, 開假下隅板, 淨拭外梓宮, 內執事者撤棺衣, 拭梓宮官金鍾秀, 以巾拭之, 內侍以遺衣安于上. 執事者以三重棺衣覆冒之, 銘旌加於其上, 黼翣·黻翣·畫翣, 畫于棺衣左右. 時至, 下玄宮如儀. 上行哭辭禮, 就傳玉帛位. 奉贈玉官李晩秀·奉贈帛官徐邁修, 各以玉帛跪進, 親傳于領議政李在協, 在協跪受奠于退壙之西.【禮有服玩明器, 而今不用.】哭盡哀, 贊拜. 長生殿提調, 閉外梓宮下隅板, 以漆布匝其縫. 領議政李在協監封閉, 封閉官朴聖泰書臣謹封, 署押. 右議政金鍾秀覆土九鍤, 摠護使率役夫, 築前面旁灰, 仍實退壙灰比下玄宮, 埋誌石. 御製誌文曰

顯隆園在**水原府**之**花山**癸坐丁向. 己酉秋, 錦城尉朴明源建言舊園體制多疵類, 請改厝, 遂卜于**花山**. 卜云盤龍弄珠之象. 卿士從, 庶民從, 乃移葬于是年冬十月己未, 改上園號曰顯隆. 嗚呼! 小子不肖, 抱徹天極地之冤, 不死至于今, 冥然苟然頑然如土石者, 且有待於錫胤而托重, 得遂誕報之大願至祝. 天乎天乎! 人欲天從, 小子敢於此, 取必焉. 夫然後, 小子之生, 始可永有辭於天下後世也耶? 仍擧狀德之狀, 泣血謹識于玄宮狀曰, 諱愃, 字允寬. 肅宗元孝大王之孫, 英宗顯孝大王之子, 暎嬪李氏所誕也. 謹稽行錄曰: “自誕前數日, 有星雲之瑞, 及誕, 日表照人,

聲音如洪鍾．英廟喜甚，謂大臣曰：‘三宗血脈將絶，今則有歸拜列祖之顔矣．’ 命遵肅廟庚午故事，坤殿取以子之，定號爲元子，卽乙卯正月二十一日也．告廟社，大赦中外．睿質岐嶷，未踰數月，已如二三歲兒，命諸臣入瞻，仍令近侍，書誠敬二字，擧而示之，諦視若謹受者．秋，行輔養官相見禮，命抄《孝經》章句，使左右日誦習于前．丙辰，立爲世子，以三月十五日，備儀衛行冊禮于養正閤．筵臣趙顯命曰：‘邸下克肖孝廟典型，實宗社無疆之休也．’ 英廟命宮官書《文王世子篇》于屛以進之．及是，已解字義，見王字，指英廟，見世子字，自指之．又解天地·父母等六十有三字．丁巳，始開書筵，講《孝經》·《小學》，抄解宮官進讀，仍手拈文王二字，以示宮官．請授音，讀聲明亮，至數行無錯，又寫五大字，心畫强正典實．宮中嘗以八卦粉糕進，不御曰：‘形象八卦，其可食乎?’ 尋見《宓羲圖》，命左右，揭于前，屢拜而致敬．邃於《易學》，權輿乎此．秋，始行師傅相見禮．讀《千字文》，至侈字，指所御半臂衣及紫羅珠帽曰：‘此侈也’，卽去之．英廟嘗問紬與綿孰勝，對曰：‘綿勝．’ 又問服何者，對曰：‘當服綿．’ 英廟喜而對諸臣言如此．及成長，常御綿衣，昭儉之德，根自天稟，而賊謀反以爲媒禍之階，此國人之所共知也．一日，對夕饌，英廟命呼，卽吐哺，應聲而起．左右曰：‘何遽也?’ 曰：‘《小學》曰：「食在口則吐之．」’ 英廟曰：‘年纔三歲，能識體認之工矣．’ 戊午，英廟御賓筵，吏曹判書趙顯命進曰：‘臣待罪賓僚，瞻望東宮，睿質絶異，英儁豪爽，有凌駕千古之象．蒙養之方，宜不激不隨，將來成就，責在殿下．’ 後小朝敎曰：‘豐原此語，有心界之脗合者．所以眷待之終始靡替也．’ 己未，英廟下備忘記于廟堂，準乙酉舊典，行內禪之擧，敎曰：‘予卽位今十五年．九五之位，視若草芥．幸有元良，已滿五歲．予雖釋負，豈忽元元?宋太宗置朕何地之說，是何心也?’ 命下廷臣，力請乃止．仍命小朝受賀于時敏堂．蓋因內禪之旋寢也．夏，上徽號於東朝，具法服行禮，進退有度，未或失儀，宮中咸嘖嘖．” 按記注曰：“宮官趙重晦疏言：‘天日之表，一瞻可知．視瞻非常，儼然若成人，此實天縱之聖．請以四五日一接僚屬，八九日一接賓客爲式．’ 從之．自是，每臨講筵，未過數遍，已成誦，久而無遺．壬戌，行廟見禮．禮罷，上敎曰：‘元良侍傍，問以私廟之行，將在何日?彼八歲猶欲伸禮．’ 後數日，詣私廟，展拜．都民仰瞻睿姿，蹈舞歡呼．上曰：‘世子禮容閑習，儀度無錯，陟降豈不悅豫乎?’ 三月，行入學禮．御儒衣冠，酌獻于文宣王，至明倫堂，就博士席，講《小學》《題辭》，環橋而觀者，凡千萬計．嘗講學，講官仰問平日所欲學者，答曰：‘願學堯·舜，外此則不知已．’ 講官退語曰：‘三代之盛，可復見也．’ 又有以孝悌誠敬仰勉者，卽書四字，付之座右．講官質以誠敬用功之先後，答曰：‘誠敬如車輪鳥翼，不可分而二之也．’ 宮官請見睿藻詩中，有日出東方明四海之句，宮官賀曰：‘此詩氣像，同符藝祖日出詩．’ 癸亥三月十七日，行冠禮，以法服，朝謁于大朝，退受百官賀．” 按行錄曰：“嘗侍英廟坐，英廟問曰：‘我朝搢紳，自古有黨論，何以則已乎?’ 對曰：‘一視竝用則可．’ 英廟大加嘉歎．英廟視事，或至夜分，必整衣端居，候就寢乃寢．每讀書，必竟晷忘倦，英廟常令止之．有疾，英廟若臨視，必進衣起坐，未或以憊色，見於外．” 按《宮中記聞》曰：“甲子正月十一日，行嘉禮．娶領議政豐山洪公鳳漢之女．粤三日，與嬪宮，從上行廟見禮．先是，有星孛之異，至嘉禮時星忽不見．上書《古鏡重磨》方篇題，命宮官進講．上問曰：‘心何比於鏡，誠敬何比於磨?’ 對曰：‘敬爲徹上徹下之工，誠是眞實之謂也，誠敬，乃治心之方也．’ 賓客李宗城，仍敷衍以對，言甚懇摯．自是，感其誠意，際遇甚隆重也．

冬，上違豫，及瘳，行進宴禮．旣而臨講，講官仰問曰：‘臨筵讀書，與參宴聽樂，孰好?’ 答曰：‘讀書，所以窮理；聽樂爲是侍懽．讀書固好，聽樂亦自爲好也．’ 乙丑，上製常訓，命進讀，敎曰：‘字音能續，數對有據，寔賴陟降之陰隲，爲僚屬者，亦善導也．’ 春，行晝講，講《小學》．北齊太子救高允事，謂宮官曰：‘太子非矣．以子而欺父，烏乎可也?高允之直書，

史體也，非可死之罪．以此意救之，太武如不從，涕泣而諫亦可．’ 丙寅春，陪上觀種稻于後苑．上問曰：‘稼穡奚謂艱難?’ 對曰：‘盛暑水熱如湯，而農人襏襫耕鋤，艱難可想也．’ 上命以卽景賦詩，敎曰：‘首句卽憫旱望雨，落句卽勉予修德．予年已踰五旬，而得元良加勉之語，可愧亦可嘉也．’ 仍行夜對，敎曰：‘今日見東宮詩，意思宏遠．’ 大雨行’ 一句，有大風歌氣象，予心自此有所恃也．’ 嘗與宮官，論辛・壬事，洞卞義理源頭，仍下《愛日箴》以示意．上在靜攝，召接藥院諸臣．副提調洪象漢曰：‘昨見世子達夜侍側．夫孝者，百行之源，而沖年能如此，實宗社之福也．’ 上親製《勸學歌》以諭之，仍敎曰：‘元良近又勤讀，雖於夜深之後，起坐讀書．予無寐，時聞元良讀書聲，氣益勝矣．’ 丁卯，宮中有痘患，命避寓于慶德宮，每以久曠三殿起居爲憂．筵臣有以白上者，上敎曰：‘沖年愛親之心可尙’，卽日駕臨．及還宮，又以躬詣承候，屢請，上特命還次．嘗親自種麥，上問曰：‘物之可種者多，不種奇花異木而必種麥，其義何取?’ 對曰：‘以其爲穀而欲觀其成實也．’ 上大喜．五月，上御歡慶殿，命賓客・春・桂坊入侍，開書筵，講讀論難，竟夕而罷．上大悅，賞賜宮僚有差．冬，又移寓于慶德宮，至翌年戊辰春，令宮官，請承候，上諭止之．每於問安，宮官之行，輒附奏以爲常．宮官李彛章等，進故事，答以：‘自古聖王，孰非大孝，而鄒聖之獨稱大舜者，常人之情，易隨物遷，而舜則以天下不移也，故稱之．飯糗而茹草，被袗衣鼓琴，舜何與焉?’ 又曰：‘伊尹，以斯道覺斯民，道也者，卽所謂堯・舜之道．堯・舜，覺之先者也．伊尹之覺，後於堯・舜，而斯民又晩覺者．覺有大小淺深，覺則一也，道亦一也．’ 又曰：‘百里奚不諫虞公，而孟子稱其智，然張南軒謂使在當諫之地而不諫，是爲不忠．人臣事君之義，當以南軒之說爲正．’ 又曰：‘人君有好賢之誠，則擧一君子，足以勝衆小人．孟子以薛居州孤立無助爲憂，君子孤立，則可憂者，豈獨一居州也?’ 又曰：‘氣，體之充也．善養則爲堯・舜，不善養則反爲害事．如漢武是已．此非氣之罪也．要在養之如何耳．’ 嘗臨筵敎群臣曰：‘賢邪進退，係國興喪．左右諸大夫・國人固言之矣，黜之・陟之，更有何疑，而猶且難愼者，苟不明辨於好惡與公私之分，則輿誦衆謗，亦不可泥看．此孟子所以取匡章於衆謗之中，譏仲子於輿誦之際也．須以吾之權度，裁制取捨，然後庶可免於搖奪．不如是則太阿將倒柄矣．’ 御書筵，講孟子論攸不爲臣之義，敎曰：‘周德至矣，天下咸服．當是時，不爲周臣者，是皆稔惡害民者也．爲天吏安得不征之? 後儒必以助紂・離商等語，爲武王分疏，其見局矣．’ 又曰：‘善者，天下之公理，誠心樂取，則天下之善，莫非已有．此大舜至公無私之心也．然知不明則無以知人之善．故爲學必先致知．’ 又曰：‘心者，一身之主宰，不可斯須放失．此心一放，甚事可做?’ 又曰：‘利莫大於仁義．此《易》所謂：「美利利天下也」 孟子言仁義而不言利，政謂美利之利也．’ 又曰：‘孔子則曰：「微管仲，吾被髮左衽」，孟子則曰：「管仲，曾西之所不爲」，隨時立言，各有所當．孔・孟豈有異哉? 非聖人，孰能知時之義乎?’ 是年夏，和平翁主卒．先是，誕彌之初，上敎暎嬪曰：‘不重則不威．當此定號之初，宜大其規模，以尊一時瞻聆．’ 過百日，乃命小朝，移御于景廟舊御之殿，殿名曰儲承也．女官・寺人，皆以逮事景廟，而迸出於甲辰・庚戌者，悉充之．蓋滌染汚安反側，以導迎和氣也．此輩乃反陰幸其得志，居無何，鼓吻抵掌，戒其徒曰：‘暎嬪雖誕世子，卽私親也．有君臣之義，勿使之頻見’，見必用嬪御謁正殿之禮，以拘制於禮數儀節之間．於是，暎嬪不能頻造，或日一至，或間日間數日至，或月一再至．計旣成，又忌大朝之頻臨，列人宮巷中，覘上動靜，日以蜚語眩惑之．小朝以此狀，細陳於上，上始悔之．然女官・寺人，卽景廟朝舊物，不忍窴之辟，而聖意自不得若常也．時，翁主泣陳曰：‘事關景廟，其嫌甚少，三宗血脈，所係甚大．豈可以一時銷刻，不念宗社之重乎? 以是兩宮之間，和氣漸至索然，直欲痛哭而溘然也．’ 又切諫於母嬪．

是時，上在集福軒，與儲承殿，距甚遠．及丁卯，命移次于景春殿，蓋取其便近而從翁主請也．

至是，翁主忽有疾不起．小朝痛悼盡傷，深究處難之方．外廷之知此事者，莫不爲東宮危之．豐原府院君趙顯命・靈城君朴文秀・右賓客李宗城等，發臨機衛護之議．

己巳春，命小朝代理庶政．按記注曰：“正月二十二日夜四更，上下一封書于政院，蓋內禪事也．承旨請對繳還曰：‘俄過德成閤，東宮己明燭而坐．其驚隕罔措，尤當如何?’ 已而，邸下進至大朝戶外，俯伏涕泣．領議政金在魯等入侍，坼見封書，卽首擧內禪，次及代理也．諸臣迭請還寢．上命邸下來前者再．邸下進伏於御座前，嗚咽垂涕請懇，上曰：‘自有古例，須勿驚也.’ 右議政趙顯命曰：‘辛丑聽政命下之時，殿下垂涕臨筵，何不以殿下其日之心，度東宮今日之心乎?’ 上始感悟，止命代理．顯命曰：‘第一件幸蒙還收，而雖第二件，臣等豈敢奉承?’ 上不聽．邸下猶俯伏涕泣，上屢命，始退．粤六日，御時敏堂，行代理朝參，下令旨，俾小大臣工，精白寅協，一心輔國．又令諸道，懷保民生．又令京外婚葬過時者，自官顧恤．右參贊元景夏白上曰：‘臣等見初筵令旨，孰不相傳鼓舞，而思所以精白寅協之道耶?’ 戶曹判書朴文秀曰：‘代理命下之時，東宮涕泣滿面，處義中節，外人聞之，皆以爲慶幸矣.’ 後數日，因上敎中元良勝予之敎，文秀力陳調護之說．又數日，請以用人恤民等事，願賜面敎，使小朝遵法．後又言：‘帝王家家法嚴截，雖美事，不可一向太嚴矣.’ 上曰：‘我朝家法，本自如此．體昔年小心，予亦至于今日.’” 按《宮中記聞》曰：“書筵講《詩經》，敎宮官曰：‘陟岵，不言己之思親，只言親之念己．孝子以父母之心爲心．其說如此，而自己思親之情，自在其中’ 講《尙書》，敎曰：‘堯・舜，大聖也，其臣猶以無怠無荒戒之．人臣告君之道，宜主責難．況不及堯・舜，而臣無讜直，其可爲國乎?’ 又曰：‘殷三宗・周文王，所其無逸而享國長久，帝舜，逸於任人，而歷年寔多．雖若異然，無逸而後乃逸．人君之道，捨無逸奚以?’ 庚午八月，懿昭世孫誕生，告廟頒赦.” 按行錄曰：“九月，英廟幸溫泉，其翌日雨．召留都大臣領議政趙顯命等敎曰：‘大駕纔發，昨日雨甚，聖候不瑕有損，用是燥鬱，召見卿等矣.’ 仍命勞留都軍兵．自是至還宮，幾近二旬，夜必整衣達朝，以久違天顔，日夕慕戀，輒不禁涕下．宮中甚訝之，問其故．敎曰：‘自余生來，初當遠離，思親之心，不得不然.’ 及回鑾，英廟聞此，敎曰：‘元良事，每出意想之表.’” 按記注曰：“辛未秋，以諸道癘疫之熾盛，下令旨，飭方伯，別加周恤．壬申春，以大朝上號，庭請屢日，上詣皇壇，有請命之擧，諸臣泣請還內，不許．小朝便服步出，至上前，泣懇不已．命只行慈殿進號．上還內，小朝詣明政殿月臺伏閤，至明發．三月，懿昭世孫薨逝．小朝克自寬抑，上慰三殿．九月，誕元孫，敎曰：‘今日之欣慶，勝於庚午.’ 冬，睿候有紅疹之漸，藥院直宿，引接必備儀．諸臣請於臥內召接，敎以 ‘着一重衣何難，而臥接臣隣乎?’ 時，廷議岐貳，英廟却藥，小朝謂承旨曰：‘余代理四年，不能仰體聖敎，至有却藥之擧，余何心服藥乎?’ 十一月，上因事激惱，下傳禪之敎，旋卽還寢．十二月，幸松峴宮，又命傳禪．過數日，御宣化門，復宣前命．小朝俯伏涕泣，稽首請命，額血沾于席．領議政李宗城曰：‘東宮泣涕滂沱，誠孝極至．殿下旣許反汗，不可食言．如此深冬，觸寒甚悶．況重病之餘乎?’ 命宗城等中途付處．翌日，駕臨毓祥宮，小朝將執裾力請．上旋駕臨彰義宮，閉閤．是夜，小朝步至宮門外，上疏不答，待命至曉，排闥入請還寢，不從，仍促命還宮．及翌夜，又詣宮門外俯伏．上不許，退至敦化門外，席藁待命．如是者屢日．上將臨北漢行宮，小朝涕泣謂承宣曰：‘余之死生，固不足恤，當此嚴冱，聖體觸冒，中心如割，不能按住’，卽令藥院之臣，更進蔘茶於上．過數日，上始還宮，寢前命.” 按《宮中記聞》曰：“時有和協翁主之喪，慟惜不自勝．敎曰：‘吾於此姊，別有顧念之情，而今忽奄逝，此慟何比? 無以躬臨洩哀，卽余至恨.’ 癸酉正月，領議政李宗城遭彈出城，至三月始還鄕里．時文女有娠，中外遑遑，宗城力主衛護之論．前年冬，幾爲異志者所擠，至是下石益急，宗城退至城外，終不還鄕．至三月初，文女生女，始曰：‘吾家世受國恩，不可以時人之欲逐，動吾素志．雖拳踢交加，惟知有進無退，一死而已．今幸聞翁

主生，自此吾可決歸.，遂上書告退還鄉里．小朝曰：‘百人雖言，文女之事，余則曰決無是．設有之，以大朝日月之明，豈患其不賜嚴斥乎？但群下依違之計，賴有相臣得以鎭安’ 云．

冬，承命行三覆決死囚，全活者多．自後每歲如之．夜，召宮官，講論至漏分，賜貢橘于宮官．橘盡，盤中有詩，宮僚卽席拚和．甲戌，令諸道還穀，行裒益之政，俾除小民切痼之瘼，禁大同軍布代錢防納．太學儒生，以齋隸持御賜銀盃而夜出，爲邏卒所捕，遂捲食堂，敎曰：‘大朝重儒之德意何如，敢因微事起鬧，致令聖廟無人可乎？重推本兵長’，仍命勸入齋儒．嘗講《論語》，至三月不違章，講官奏曰：‘此孔子言也，顔子名不當諱也.’ 敎曰：‘孔子雖言之，讀之者，後人也’，遂諱而不名．下令旨，在外書筵官幷敦勑赴召，講《四勿箴》，敎曰：‘夫私慾之發，有大小淺深，而略於小失，馴致大過，則其害均耳．昭烈曰：「勿以惡小而爲之」，此誠至言.’ 上聞之嘉賞曰：‘講學之力，誠不淺.’ 講《小學》，敎曰：‘藹然四端，隨感而見，旣見則擴充之，未見時，亦須有主敬工夫．未發時，主敬然後，可以發皆中節．敬之旨，先要分明識得.’ 又曰：‘孫思邈云：「心欲小而膽欲大.」 武王師渡孟津，政是發揚奮勵氣象，而猶曰：「夙夜祗懼」，聖人之心小膽大，此亦可見.’ 冬以日寒，放輕囚．乙亥逆變，上御帳殿鞫囚，命小朝侍坐，敎曰：‘辛壬疏下六賊及耇・輝，今始追施逆律．自此義理始明，不可不知也.’ 講《綱目》，敎曰：‘即墨之堅守，不下，似是《威王》時受賞之大夫，嘗有保障之功，得力於是日矣.’ 又曰：‘幸臣九人，旣讒田單，惟貂勃訟其冤．齊君宜疑以有私乎田單，而不但不疑，乃反用之，齊君誠賢矣.’ 又論澠池之會曰：‘夾谷之會，孔子以禮導君，齊君慴服不敢有加於魯．果使相如以禮爭之於初，則必不如是費力也.’ 又曰：‘漢文帝可謂賢君，而尙黃・老制短喪，有賈誼而不能用，終難免後世譏議．但賈誼之疏，徒規規於時政得失，不及本源之病，較諸董子正君心之論，自有差等矣.’ 又曰：‘唐玄宗謂，朝事付宰相，邊事付將帥，朕復何憂?’ 此與古所云勞於求賢，逸於任人者，似不相悖，而玄宗則不能勞於求賢，但知逸於任人，馴致天寶之亂，可不懼哉？且其論韓休・蕭嵩時，私語左右者，己不能誠心樂賢，有勉强拂戾之意，此非可繼之道，可知其治之不終矣.’ 又曰：‘衛嗣君，以祖宗土地，易一胥靡，立法則嚴矣，謂之知輕重則未也.’ 又曰：‘樂毅伐齊，劇辛以孤軍深入難之．然魏略宋地，趙收河間，足以牽制齊師，一擧成功．是故兵貴審勢.’ 夏甚熱，宮官請改書筵時刻，令曰：‘早暮稍涼，正宜誦習，且大朝晝講以午時，余何敢憚熱而改時乎?’ 遂不許．書筵官宋明欽，以縣官陛辭，特命召對，討論《大學》誠正之義，從容咨訪，酬酢如響．明欽曰：‘誠正之說，宋帝之所厭聞，而邸下闡發微奧，亶亶不倦，此可見睿學之實心用工矣.’ 講《孟子》，敎宮官曰：‘禹驅龍蛇而放之菹．禹何以驅逐龍蛇耶？禹旣疏水通道，瀦爲沮澤，則水之所歸，龍蛇隨之，自然有驅逐之勢也．故曰勢而已．聖人審時察幾，無入而不自得者，亦惟曰順其勢．知進退・存亡之幾者，時中之聖人也.’ 丙子五月，樂善堂火.” 按記注曰：“下令旨曰：‘余不肖，濫承代理已八年，無一事仰體聖意，每貽憂於聖心，至于今日，實羞對臣僚．幸賴我聖上至慈至仁，伏承昨日下敎，感惶交極，不覺涕下．在廷大小臣僚，勿以余不敏，隨事匡救.’ 上聞之，敎曰：‘元良責己之言，豈否德攸致？荷陟降之眷佑．大小臣工，體我元良此意，至誠輔導.’” 按《宮中記聞》曰：“小朝素不近杯酌，宮中大小之所知，而時有相反之說．小朝以聖訓無勉之意，下旨反躬自咎，亦以過飮，告于上前．左右以無是，而曰有是，反爲不誠．答以：‘至慈至明，自可辨燭其虛實，我何敢以自明之說，發諸口乎?’ 俄而，上聞下旨責躬，甚嘉悅，敎曰：‘此等辭說之流行，皆予之過.’ 屢示感悟之意，又下傳敎，示聖意於中外．先是，火起之翌日，上責群下曰：‘近來事，無人告予，朝臣無可恃矣.’ 賊臣金尙魯對曰：‘小天亦可畏，故不敢矣.’ 次詢承旨，承旨李彛章奏言：‘世豈有如此道理？殿下將安用如此之臣乎?’ 上曰：‘是矣．承旨言果是矣.’ 彛章又言：‘父有過失，子未嘗不諫，故古語曰：「父有爭子.」 子有過

失，父未嘗不敎責，故傳曰：「人樂有賢父兄.」 父子間有過，諫之責之，固也，而聖人所謂父爲子隱，子爲父隱者，諫之責之，而使外人不知其諫其責，是之謂隱.

今朝辭敎，實有違於聖人一隱字，此何事耶?' 上遂怡然曰：'所達出於至誠．如承旨者，如是憂之，而不逞輩必聞而喜之.' 彝章猶不悉本事，故所奏止於此．及令旨先降，傳敎繼降，宮中與外廷聞者相賀曰：'感悟由於聖慈，所以感悟，亦由於睿孝' 云．又下令旨，求直言極諫，飭中外勸農賑乏，咨訪民隱．冬，患痘候，及平復，陳賀頒赦．丁丑二月，貞聖王后昇遐，小朝號呼攀擗，皇皇若靡洎．自殯至靭，五時之奠，七時之哭，罔不躬將而致其誠，曉夜朝晡，幾不撤聲．戚畹・執事者，皆感激讚歎，中外聞之，亦莫不揮涕．上敎諸臣曰：'予則無所疚懷，而今見元良哀毁之狀，將何以抑遣乎?' 判府事兪拓基奏曰：'向來聖候未寧，入侍崇文堂，竊仰東宮，達曙焦熬，或慮有大病患．今若任情哀疚，則傷損必至．惟望聖念之加護也.' 至三月，仁元王后又昇遐，上哀毁逾節，小朝左右寬譬，情禮咸備．六月，貞聖后靭啓，至闕門外哭辭，哀動左右，都人士女，爭覩容光，掩泣攔前．前驅辟之，令曰：'止之．恐傷人也.' 至虞返，迎神輦于郊次，哀哭移時，涕流席如雨．敎曰：'廠儀與余儀仗相隔，無以瞻望，其令分隊而行.' 親撰幽宮之文以藏之，外臣皆不得知之．自後寢疾甚篤，而力疾行兩魂殿七虞及朔望祭，疾愈篤而哀愈毁．時，輔德尹東昇調護周旋之力居多，每敎曰：'非東昇，曷勝導達昭暴乎?'" 按記注曰：“戊寅秋，上俯伏魂殿庭口奏，卽不敢聞之敎．仍命史官書之，命罷領議政李天輔職．翌朝，都承旨**蔡濟恭**等率諸承旨・史官奏言：'殿下何爲而有此擧耶？爲臣子者，不特不敢見，亦當不忍見，孰敢搦管移書於記注乎？臣等冒萬死繳還，退伏鈇鉞之誅.' 仍自袖中，奉出口奏謄本，跪置于上前．良久，上曰：'言則是矣．予當受之.' 至是月晦，上御明政殿月臺，小朝席藁時敏堂後庭．領府事李宗城求對言:殿下典學四十年，而今乃處君臣父子之間如此，此臣之所痛心也.' 上曰：'今又責予，予將退歸矣'，仍欲起立．大臣奏以領府，辭不達意，請令更陳其所懷．宗城曰：'臣之言，非辭不達意也．人臣之義，在大朝，則責難於大朝，在小朝則責難於小朝．今日之事，毋論臣等之心，雖六軍萬民，莫不延頸願死者，爲是吾君之子也．惟其有宗社神人之托，故日夜所冀望，惟願過失之無聞，不幸有過失，亦不欲彰著者，卽天理人情之自然．若言其所以然之由，卽是爲吾君之子也．殿下之於東宮，卽是一體，何可分而二者耶？以一體而分以二，視之，此臣之所痛心也.' 仍以遠佞斥讒之意發端，語未卒而退．濟恭與諸大臣，還至時敏堂庭進對， 小朝下責躬求助之敎， 宗城・濟恭迭陳積誠回天之方." 按《宮中記聞》曰：“翌年正月，領府事李宗城卒，臨死語人曰：“吾恐死不得其所矣．樂善堂入侍，欲以死自明而不得，明政殿入侍，又欲以死痛陳而徑退．今已矣．生爲負國之人，死爲不瞑之鬼.' 報聞，上驚悼嗟惜久之．小朝御素帶素膳，至成服日，恤孤賜祭需，終三年．己卯，行世孫冊禮，行中宮殿冊禮." 按《行錄》曰：“小朝事中宮，一如貞聖王后，宮中咸仰誠孝之篤．英廟歎曰：'予見元良事內殿，誠無間然.' 以是內殿，亦備盡慈愛.

是年，頒《武技新式》于訓局." 按《宮中記聞》曰：“小朝自幼時，志度已英爽，遊嬉必陳兵威．上試叩其所存，有問輒條對甚悉．凡坐作進退，緩急虛實之方，皆手劃口授，無或差爽．又喜讀兵家書，奇正變化之妙，無不默識精通．孝廟嘗喜武技，暇日御北苑，輒馳馬試藝，所御靑龍刀・鐵鑄大椎，尙在儲承殿．武士之有膂力者，莫能運，小朝自十五六歲，已皆擧而用之．又善射御，執矢發鵠，發必中心，臨轡飛轡，悍馭亦馴．宮中相語曰：'豐原筵奏，克肖孝廟之說，果有先見' 云．至是，憂將臣之不閑武技，編成一書，名以《武技新式》以頒之，蓋戚光所載武技所傳者，只六技．曰棍捧・曰藤牌・曰狼筅・曰長槍・曰鎲鈀・曰雙手刀，而演習之制，多失其方，就舊書悉證正之．又以竹長槍・旗槍・銳刀・倭劍・交戰月刀・挾刀・雙劍・提督劍・本國劍・拳法・鞭棍凡十二技，創演爲圖，以示擊刺之勢．彙成全書，付之訓局，使肄習之．嘗敎

曰: “我國偏小, 用武無地. 然東接倭, 北隣胡, 西南大洋, 卽舊時中原. 今雖邊塞無警, 宜講苞桑之謀. 況孝廟志事, 無處可伸, 而北囿尺壇, 愾我寤歎. 噫! 兵器雖在安謐無虞之時, 聖人猶且制置, 以待暴客, 況我國地方, 兼有孝廟志事乎?” 每誦陶侃日運百甓之語, 靜夜宴閒,輒自試之. 又敎曰: ‘醫者, 疑也. 人之臟腑·心肝, 雖難盡知, 而摸索推類, 亦可理會. 醫國之手, 尙矣, 苟能粗解藥性, 稍辨脈理, 一日醫一人, 二日醫二人, 漸就鍊熟, 自當爲一時名醫. 儒者之學, 自有疑求無疑. 況醫家之以疑決疑者乎?’ 自是, 凡有指畫, 莫不立效. 然以其小技, 不屑留意也. 又敎曰: ‘古者衣服之制, 各有攸象. 今所謂氅衣與圓袂衣, 余嘗惡之. 氅衣則塞三面而通後幅, 其象屬陰. 古人云: 「中國屬陽, 夷狄屬陰.」 東國氅衣之制出, 而始有北通建州之漸. 圓袂衣則前疊二幅, 後拖一幅, 亦非面南背陰之義也.’ 宴居必御臥龍冠·鶴氅衣, 而鶴氅, 倣司馬光深衣之制也. 又敎曰: ‘我國正服, 是團領與貼裏團領, 乃王朝會同之服也. 貼裏, 卽黃帝衣裳之度也. 至於戰服狹袖, 俱是尙古制而禦戎事之衣也.’ 又敎曰: ‘近俗不知備豫之謨, 節儉之道. 豫則無憂, 儉則裕財. 今之服着器用, 華睆而近奢, 捷利而便體者, 余未嘗近之.’ 又敎曰: ‘宮中人, 有以自中過失, 來告余者, 輒使告人·被告人, 相與辨質, 若無驗則罪告人, 雖或有實, 必兩治之, 自是告訐者小息.’ 司直朴致遠上書陳勉, 優批答之. 後因重臣徐志修筵席陳戒, 敎曰: ‘是, 誠愛我.’ 前後以睿德言事者, 咸被嘉奬之敎. 嘗以桂坊羅蔘, 曾於胄筵, 多有鯁直之言, 後對宮僚, 必問安否. 一日宮官, 有以時事之憂虞仰問者, 大加嚴責曰: ‘此間我兩宮也. 宵小之目, 政謂此輩.’ 按《記注》曰: “時, 掖隷有憑藉下令, 橫濫民間者, 事覺卽令出付有司, 仍下令旨曰: ‘近來紀綱解弛, 此後之無此弊, 未可知. 更有犯者, 法司直爲自斷捕治.’ 庚辰秋, 上移御慶熙宮. 七月, 幸溫泉, 八月還宮.” 按《行錄》曰: “時, 小朝久有寢疾, 英廟命浴溫井. 駕到江頭, 水漲, 船路不固, 至晩始渡. 在船上, 與宮官李壽鳳等, 講君舟民水之說. 翌日, 至水原府. 府治之北, 有花山, 卽己亥寧陵置標地也. 登臨周覽, 嘆賞良久, 還次山城, 閱武技. 輦路所過, 父老擁遮爭瞻, 輒住駕, 詢疾苦, 命減征徭, 一路大悅. 有一衛士馬, 逸入菽田, 蹂且吃, 招地方官, 厚償田主, 治衛士. 存恤邑中高年, 敦召遺逸之士. 及到溫泉, 逐日開講筵, 遵列朝溫幸時, 召對玉堂官故事也. 下絶句一篇, 命宮官和之. 及月, 改行望闕禮當否, 詢于宮僚, 仍敎曰: ‘久離京闕, 慕戀難耐.’ 是日, 遂還駕, 將直詣慶熙宮承候. 英廟遣知申, 迎諭于城外曰: ‘病餘驅馳, 宜直還調養, 竢間來見.’ 相臣進對奏曰: ‘鶴御一臨, 湖中人士, 始識睿德之度越, 父老·士庶, 莫不讚頌德意, 實臣民之幸也.’ 是行自出宮至還駕, 輒令壽鳳馳還, 所過地方, 慰諭居民, 仍察傷稼. 又以時值極暑, 命藥院劑藥, 以救將卒之在道中暍, 及還, 無一人病者. 辛巳, 問時措之策于大臣, 大臣不能對. 遂有西邑之行, 蓋欲請命於上, 以沮賊謀也. 賊臣洪啓禧欲從中構亂, 小朝聞之, 促御徑還. 時有一承宣, 白於上, 請覽廷臣章疏之上小朝者. 事機急迫, 小朝躬詣上前, 悉告以處變之本意, 上始釋然. 後小朝臨賓筵, 敎曰: ‘儲君, 亦君也. 名以臣事, 包藏奸謀可乎?’ 仍以逆禧之無嚴, 荐下嚴敎, 比之江充. 自是謀益急. 壬午五月, 賊人羅景彦伏誅.”

按《記注》及《宮中記聞》曰: “景彦投呈一狀于刑曹. 狀中有殿下肘腋之臣, 皆懷不忠, 變在呼吸之語. 刑官自曹坐, 袖其狀請對時, 逆禧以畿伯, 先爲來待. 上竝命入侍, 刑官以狀告. 上大驚, 問內侍曰: ‘景彦, 是掖隷尙彦之族乎?’ 內侍對以卽尙彦之兄, 而曾屬掖隷者. 上問逆禧曰: ‘宮城扈衛可乎?’ 逆禧進前奏曰: ‘國家有變, 扈衛宮城, 戊申亦已行之.’ 上卽命閉城門, 發兵把守宮門. 仍御太僕, 鞫景彦. 景彦自衣縫中, 又出一封書, 長過五寸, 圍盈一握. 因上之, 上覽已, 示左相. 左相纔見數行, 失聲號泣曰: ‘臣請先死. 東宮若聞此, 當作何心? 臣請往慰之.’ 上曰: ‘唯.’ 判義禁韓翼謇等言: ‘景彦譸出凶言構誣, 上逼東宮, 其罪當戮. 請嚴鞫正法.’ 上始命加刑. 司書任珹, 奮然謂翼謇曰: “凶言, 豈景彦所自爲耶?” 翼謇又請

亟覈指嗾．上怒罷翼彗職．大司諫李心源救翼彗，又罷職．翼彗等旣黜，景彦以誣陷東宮，服．於是，諸臣同聲請置極律．同義禁李彛章曰：‘誣人猶當爲逆，況誣貳君乎？凶言旣皆歸虛，罪人今已輸款，不可與此賊俱生’，進前力言．責敎荐下，而言愈截直，不少沮．時，小朝步往胥命于闕門外，上命入來，遂進伏于庭，涕淚沾袍，群下莫敢仰視．夜將曉，鄭翬良始請對奏曰：‘罪人旣以四字自服，罪不可一日容貸．’ 上乃命景彦正刑．翌朝，小朝始還宮，泣謂諸臣曰：‘賴有止慈，得免駭機．’ 閏五月二十一日，薨逝，賜謚思悼，賜宮・墓號曰垂恩．以七月二十三日，葬于楊州拜峰山甲坐之原．葬之日，上臨壙，以御筆題主．翌月荐棘趙載浩于北邊，其姪維鎭株連繫獄，臺臣請寘法．上敎曰：‘瞻彼銅龍，予意若何？在諸臣，宜思不忍言之心．’ 命亟停，仍罪言者．維鎭屢被拷掠，抗言無二辭，遠配道死．” 按《記注》曰：“閏五月十三日，檢閱尹塾下庭叩額，血流被面，潰出衛外，招醫官，持藥以進．時諸大臣在閤外，不得入．塾叱衛士，挺身躍出，執大臣手偕入．塾責申晩等曰：‘當此危急之時，大臣不能碎首天陛，以死力爭，將焉用大臣爲哉?’ 賊臣具善復・洪麟漢等，各逞凶圖，塾竟坐謫黑山島，而上猶稱此人可愛可愛．分司翰林林德躋隨伏庭下，不離左右．上命逐出，猶據地不起，衛士曳而黜之，德躋叱曰：‘吾手秉史筆．此手可斷，不可曳也．’ 命竄旌義，尋命塾與德躋放宥．後，德躋甄用．宮官任珹・權正忱等，拚死不出．分注書李光鉉，亦挺身率醫官以入．都承旨李彛章，叩頭涕泣，抵死爭難．上怒命付軍門梟首．旣出，又排閽以入，伏地痛哭．命書傳敎，泣曰：‘臣當就死，不敢聞命’，趨而出，俟命于金吾門外．命牌招，終不進．後命差墓所敦匠之任．宋瑩中等，以臺諫構他語，彈之，上嚴斥之．及卒，卽命錄用其子，有國亂思良相之敎．分司提調韓光肇排闥直入，免冠號泣，上命罷職．光肇曰：‘臣不惜死，臣有一言．’ 又命推出．光肇痛哭匍匐而出．其父曰：‘未能碎首辦死，何以參班?’ 遂不參須敎．光肇坐謫大靜，尋放．後，敎曰：‘頃者處分，予自悔矣．’ 及卒，親製文，祭之曰：‘父子同朝，一片忠赤’，仍錄其子．承旨趙重晦涕泣力陳，命島配旋寢．重晦又進伏，抗言不撓，坐遠竄．後，有烈風知勁草之敎，屢陞爲冢宰．提學韓翼彗，五違召命，不製敎文，敎曰：‘分義似然，其勿招．’ 又命製進致詞，召牌凡八下，終不進．席藁金吾坐削職．後，屢加嘉歎，擢拜上相．承旨李翼元，力抗不書傳敎．承旨鄭純儉，上殿大聲曰：‘請殺臣．臣雖死，不敢頒此敎．’ 坐罷職．摠管李泰和免冠叩頭極爭，後，特命加資．甲申秋，行入廟禮，上臨視．乙酉五月，忌辰前一日，命停視事．下綸音于廷臣，若曰：‘昨年後初當此日．停經筵，豈自便也？嗚呼！心不若此，非慈也，又何以慰靈？吁嗟臣工，知望八其君今日之心，而若有臣分，浮囂躁競之心，若春雪春氷自消解．’ 大臣等，仰請靜攝中卽進常膳．翌日，又命垂恩墓獻官洪樂仁，行祀後看審局內回奏．及登筵，詳詢樹木長養．

至秋，上幸於義宮，命世孫，往拜廟宮，垂涕送之，多有追思之敎．仍步登苑麓，倚墻遙望者移時．自後，每於中夜，輒叩閾歎曰：‘古有思子宮・望思臺，予豈料自踐斯境乎?’ 又敎筵臣曰：‘伊時廷臣，能有安金藏之忠乎？到今挾雜更提，抑何心腸乎?’ 戊子，上御殿庭，行香祗迎禮．至孝章廟以下各廟香祝，諸臣以壓尊，不卽鞠躬，上厲聲，命陪參諸臣罷其職，仍命拿入兵曹判書及侍衛諸臣．下敎若曰：‘嗚呼！一隅靑丘，卽朝鮮而已．貳君祗迎，諸臣焉敢不爲？吁嗟垂恩，今日諸臣，十年臣事者多，莫曰無心．無心二字，此等處，豈宜恕乎?’ 還御資政殿，召大臣・諸臣於殿前，飭諭以俾知十年臣事之義．粵二日，行大政．又諭大小臣僚曰：“嗚呼！忍說壬午事乎？姿質美而予實不慈矣．’ 庚寅，御王府，敎曰：‘追提往年事，使予聞之，逆心也．’ 甲午夏旱，親臨墓所，親製文行奠酌禮，世孫隨焉．顧敎諸臣曰：今日，當得甘雨矣．’ 仍命贊禮以下隨駕近臣賞賜有差． 至丙申春， 命《政院日記》及公家文蹟之自丁丑至壬午事關不忍言之文字，竝洗草，敎曰：‘聞世孫此疏，特許其請．此時予心，不堪傷惻，’ 仍玉淚汍瀾．命書傳敎曰：‘今予夙夜一心，在於宗國．今者此擧，寔爲沖子．嗚呼！壬午閏五月日記，思悼冥冥有

知，必也飮涕，以爲余將無恨’ 云．其時日記，依實錄例，承旨注書同詣遮日巖洗草．嗚呼！因予涼德，遭萬古所無之事，而末世人心浮囂．雖及見日記者，更提文字，則當以戊申梟獍餘種嚴懲．況他日乎！此後語及壬午事，當以逆律論，咸須聽此，莫犯邦憲．沖子旣承面諭，予將高枕矣．翌日又命世孫，往墓所，展拜行祭．敎曰：‘臥思世孫今日之心，豈特沖子心？予心若何？今日用心，果生來初也．’” 按《宮園儀》曰：“丙申，追上謚號曰莊獻，改宮號曰景慕，園號曰永祐．癸卯，追上尊號曰綏德敦慶．甲辰，又追上尊號曰弘仁景祉．廟中祭禮，降太廟一等，園儀亦準此．” 按《行錄》曰：“有二男二女．長懿昭世孫，諱琁，次卽小子祘．女嫁光山金箕性，烏川鄭在和．有庶男三，裀·禛·禶．庶女一，適唐城洪益惇云．子孫錄姑從舊狀，以待陟降之垂隮．”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7일(기미) 4번째기사>

정치/왕실

현궁을 내려놓을 때 정조의 격기가 심해졌고 다음날 수원을 출발한다고 명하다

관원을 파견하여 후토(后土) 귀신에게 사례하고, 정자각(丁字閣)에 돌아와 우제(虞祭)를 지냈다. 상이 비로소 친히 헌작을 하였는데, 이는 전(奠)을 바꾸기 때문이었다. 대축(大祝)이 지방 상자를 받들어 담장 동쪽에 묻었다. 상이, 재궁(梓宮)이 상여에 오를 때부터 가슴을 치며 슬피 운 나머지, 격기(膈氣)가 치밀어 올랐는데, 현궁(玄宮)을 내려놓은 뒤에 이르러서는 격기가 더욱 심하게 치밀어 오르므로 좌우의 신하들이 겨드랑이를 부축하고 겨우 배례를 행하였다. 여러 신하들의 주달하는 말이 있었는데도, 가슴이 막혀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부축하여 소차에 돌아왔으며, 우제의 예식을 마친 다음 재실로 돌아왔다. 하교하기를,

“대례를 이미 잘 마치었으니, 이제는 자궁을 들어가 뵙는 것을 한 시각도 지체할 수 없다. **내일 아침 일찍 수원의 신읍(新邑)을 출발하여, 과천의 숙소에서 주정(晝停)을 하고 모래 환궁하겠다.**” 하였다. 이날 밤에 상은 다시 원상(園上)에 나아가 친히 공사를 살피었다.

○遣官謝后土，還虞于丁字閣．上始親獻，以易奠也．大祝奉紙榜箱，瘞于曲墻東邊．上自梓宮陞輴時，叩擗哀號，膈氣衝亘，**及至下玄宮後，氣益瀼綴**，左右挾腋，僅行拜禮．諸臣有奏達，而臆塞不能答．諸臣等扶護，還小次．虞祭禮畢，還齋室，敎曰：“大禮，今已克襄．此時入覲慈宮，不可一時遲留．明日，**早發水原新邑**，晝停果川宿所，再明日還宮．” 是夜，上再詣園上，親審工役．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7일(기미) 5번째기사>

정치/왕실

원소에 나가 공사를 감독하고 수원향교에서 유생들에게 학문을 권면하다

날이 채 밝기 전에 상이 재차 원소에 나아가 공사를 감독하였다. 수도각(隧道閣)의 판위(版位)에 나아가, 원소를 하직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재실에 돌아와 평소의 융복(戎服)을 갖춰 입고 출발하였다. **수원의 향교 앞에 이르자, 유생 10여 명이 맞이하므로, 불러 만나보고 학문에 힘쓰라고 권하였으며, 이어 수원의 행궁에 들어갔다**. 경기 감사와 **수원 부사**에게 명하여, 부로(父老)·교속(校屬)들을 데리고 와서 기다리도록 하고는, 호조 판서 서유린(徐有隣)에게 명하여 위로하고 돌봐주게 하였다. 저녁에 과천 행궁에서 묵었으며, 백성들에게 선유하였다.

○庚申/天未明，上再詣園上董役．詣隧道閣版位行辭園禮，還齋室，具平戎服進發．**至水原鄕校**

前，儒生十餘人祗迎，召見勸學，仍入水原行宮. 命畿伯·本府使，率父老·校屬來待，命戶判徐有隣，勞問存恤. 夕次于果川行宮，宣諭民人.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8일(경신) 1번째기사>

윤행임을 규장각 직각으로 삼다
윤행임(尹行任)을 규장각 직각으로 삼았다.
○以尹行任爲奎章閣直閣.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8일(경신) 2번째기사>

천원에 동원된 군병에 대해 은전을 베풀도록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감정을 억누르면서 수레를 돌리자니, 추모하는 심정이 끝이 없다. 정신을 가다듬기는 비록 어렵지만, 지금의 허전한 마음을 어디에 붙일 곳이 없고, 오직 은혜를 널리 베푸는 한 가지 일만이 있을 따름이다. 그 일을 감독하고 이런 뜻을 기념하기 위하여 수원과 과천 두 읍에 금방 별도로 내린 전교가 있었다. 이번 원(園)을 옮길 때에 위사(衛士)·군병(軍兵)과 영가(靈駕)를 배종한 경외의 장졸(將卒) 및, 각종 명색의 시험에 응시해야 될 자들에게 마땅히 별도로 시재(試才)를 해야겠다. 이는 중한 바가 자별하니, 시재의 명칭을 '영가배종장사 관무재(靈駕陪從將士觀武才)'라고 일컫고, 날짜는 다음달 초순으로 가리도록 하라.
경중(輕重)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일부터 9일까지 날마다 거둥하고 하루에 두 번씩 행차하기도 하여, 그 거리가 거의 5백 리(里)는 되었다. 매번 군사들이 애쓰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을 더욱 풀 수 없었다. 이제는 이미 예식을 마치었으니, 그들에게 애쓴 공을 갚아줄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가를 수행한 군병들에게 별시사(別試射)의 예대로 시취(試取)를 함으로써 이 원(園)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대해 위로를 해주는 나의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영가(靈駕)를 배종하는 것은 사체가 특별한 것이다. 비록 군사라고 하더라도 모두 초시를 면제시켜주고 응시하게 허락하는 규정을 해조로 하여금 품지토록 할 것이며, 별시사(別試射)의 경우는 초시를 면제할 것인지를 전례에 따라 구별하되, 이 역시 전례를 상고하여 초기(草記)하도록 하라. 관무재(觀武才) 때에는, 경진년에 배종하였던 무신으로서 아직껏 생존한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응시하도록 허락하라. 영여(靈輿)를 받들고 나아갈 때 말[語]을 전달한 군사·척후병·복병 등의 장졸(將卒)들에게는, 각기 해당 지방에서 시사(試射)토록 하라." 하였다.
○敎曰: "抑情旋駕, 孺慕靡極. 神思雖難作氣, 以今廓然之思, 無處可寓, 惟有廣惠一事. 所以董其事識此意, 水·果兩邑, 纔有別下傳敎, 而今番遷園時, 衛士·軍兵·靈駕陪從京外將卒及各項名色應赴試者, 當別試才, 而所重自別, 試才名號, 以靈駕陪從將士觀武才稱之, 日字, 以來月初推擇. 輕重雖間, 自初一至初九日, 逐日動駕, 日或再爲, 道里恰滿半千. 每見軍兵之矻矻, 心愈不能弛. 今旣禮成之後, 渠輩酬勞之方, 亦不可不念. 隨駕軍兵, 以別試射例試取, 以示予凡屬本園, 必欲事事慰悅之意." 又敎曰: "靈駕陪從, 事體自異. 雖軍兵, 幷除初試, 許赴規矩, 令該曹稟旨, 別試射則初試除否, 當依前區別, 亦爲考例草記. 觀武才時, 如有庚辰陪從武臣生存人, 一體許赴. 靈輿奉詣時傳語軍·斥堠·伏兵·將卒, 令各該地方試射."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8일(경신) 3번째기사>

원의 이장에 소요된 경비

원(園)을 이장할 때 소요된 총 경비는, 돈이 18만 4천 6백여 냥, 쌀이 6천 3백 26석, 목면이 2백 79동 남짓, 베가 14동이었다.

○遷園時經用摠數, 錢十八萬四千六百兩零, 米六千三百二十六石, 木綿二百七十九同零, 布十四同.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8일(경신) 4번째기사>

환궁하다

환궁하였다.

○辛酉/還宮.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9일(신유) 1번째기사>

총호사, 도감의 당상·당하관들에게 원상 공사에 정성들일 것을 유시하다

총호사, 도감의 당상관·당하관들에게 유시하였다.

"슬픔을 억누르며 길을 떠나자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되돌아보곤 하였다. 지금의 미치지 못하는 허전한 서글픔을, 경들도 내심 알고 있으리라 여긴다. 원상(園上)의 공사가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총호사는 며칠 쯤에나 복명할 것인가. 여러 당상이 성심껏 애쓰는 것이야 어찌 나의 말을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마는, 더욱더 정성을 쏟고 부지런히 하도록 하라."

○諭摠護使·都監堂郎曰: "忍抑前發, 步步回瞻. 此時廓然莫逮之慟, 卿等想默認. 園上工役, 今爲幾許, 摠護使何日復命, 諸堂誠勤, 豈待予言, 而益加恪勤."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9일(신유) 2번째기사>

고 영중추부사 정홍순에 치제를 하다

고 영중추부사 정홍순(鄭弘淳)에게 치제(致祭)를 하였다. 하교하기를, "현궁(玄宮)을 들어내, 판자에 칠한 옻의 색깔과 나무의 결이 튼튼하고 좋은 것을 보니, 전에 들은 얘기가 틀리지 않았음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상여를 부여잡고 가슴을 치는 슬픔 속에서도, 이 덕분에 마음이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더구나 전고(殿庫)에 나무토막을 저장하여 후일의 증거에 대비한 것은, 그 사려의 치밀하기가 옛 대신의 일처리에 비해도 손색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그 덕분에, 덧칠을 하는 데에 힘이 들지 않았다. 이제 다행히 큰일을 무난히 치르었는데, 아쉽게도 고상(故相)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여 직접 만나 고마운 심정을 말할 수 없다. 고 영부사 정홍순의 집에 승지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고, 그의 아들·사위·아우·조카들 중에서 적임자에게 관직을 제수하라." 하였다.

○致祭于故領中樞府事鄭弘淳. 敎曰: "玄宮奉出, 見板漆色光, 木理堅好, 益覺前聞之不爽. 雖在攀擗之中, 賴以慰心. 況木端之貯在殿庫, 以備後日之徵信者, 思慮之縝密, 無愧古大臣處事. 且況賴是加漆不費力. 今幸大事克襄, 惜乎故相之不在世, 不能面說感謝之情. 故領府事鄭弘淳家, 遣承旨致祭, 其子壻弟姪中除職."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9일(신유) 3번째기사>

정치/왕실

수원 등 세 읍의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윤음을 유시하다

수원 등 세 읍의 백성들에게 유시하기를,

"이 고을의 **화산(花山)**은 원래부터 영기(靈氣)가 모인 곳으로서, 그 형상은 서린 용(龍)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고, 그 땅은 천리를 가다가 한 번이나 만날까말까 한 곳이어서, 원침(園寢)으로 의논하여 정하고 드디어 천봉하는 예식을 거행하였다. 따라서 이 고을은 바로 나의 조상이 묻혀 있는 고을이고, 너희들은 이 고을의 백성들이다. 나는 너희들을 마치 한 식구처럼 여기면서 먹을거리를 넉넉하게 하고 산업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생활에 안주하고 생업을 즐기는 방도를 알게 해줘야, 나의 책임을 다하고 나의 생각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전할 지역으로 정한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끼친 수고 또한 크다고 여긴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몸은 대궐에 있은들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새 고을 소재지에 이르러 경영한 것을 두루 둘러보건대, 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거리가 질서 정연하여 엄연히 하나의 큰 도회를 이루었으니,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또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여느 행차 때에도 오히려 은택을 베푸는 법인데, 하물며 이 고장의 이 백성들에게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원소 부근의 면리(面里) 및 이사한 백성들에게는 10년 동안 급복(給復)하고 새 환자(還子)를 탕감하며, 수보미(需保米)도 수량을 나누어 탕감하고 그 나머지는 돈으로 대신 받아들이도록 허락하라. 그리고 모든 면리(面里)에 1년 동안 급복하고, 오래된 환곡(還穀) 가운데 가장 오래된 3년 조는 탕감하고, 수보미(需保米)도 수량을 나누어 탕감하도록 하라. 부로 가운데 온천의 행차를 재차 맞이한 자와, 조관(朝官)으로서 나이가 70 이상인 자와, 서인 가운데 나이가 80 이상인 자에게는 가자토록 하고, 경내의 유생(儒生)과 무사(武士)들에 대해서는 내년 봄 전성(展省)하는 행차를 기다려 설과(設科)하여 시취(試取)하고자 하며, 교속(校屬)으로서 오래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직을 제수하거나 조천(調遷)시키고 도목 정사 때마다 주의하도록 허락한다.

금번의 이 명이 어찌 다만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겠는가. 너희들은 나의 무마하는 고심과 지성을 알고, 힘과 마음을 합쳐 함께 원(園)을 보호하면서 영원토록 변치 말지어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수원**의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풀라는 윤음을 방금 내렸다. 그런데 이 고을은 전에 경모궁께서 온천으로 행차하였을 때 숙소로 삼았던 곳이고, 금번에 영구 행차가 지날 때에도 묵은 곳이다. 나는 또 이 고을에 이르러 부로들을 불러 옛 사적을 묻고 그 대답을 듣고부터 더욱 서글픔을 누르지 못하였다. 더구나 행차가 머물렀을 때 베풀었던 혜택에 대하여 고을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말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감히 경모궁의 뜻과 일을 만분의 일이라도 이어나가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과천현의 부로 가운데 온천 행차와 영구 행렬을 바라본 자들로서 조관(朝官)은 나이 70세 이상, 일반인은 80세 이상인 자에게 모두 가자하고, 예전의 환곡 가운데 가장 오래된 2년조에 한하여 탕감하고, 수보미(需保米)는 수량을 나누어 탕감하거나 수량을 나누어 대봉(代捧)하며, 두 해 동안 행차가 지나간 길가의 민호들에 대해서는, 1년간 급복(給復)하도록 하라.

광주(廣州)는 수원과 과천 사이에 끼여 있고, 사천(沙川) 역참이 영여(靈輿)가 머물렀던 곳이니, 어떻게 이 곳만 홀로 빠지게 할 수 있겠는가. 부의 행차가 통과한 연로 면에 대해서는, 묵은 환곡 1년 분을 탕감해 주고, **사천창(沙川倉)** 근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분의 요역(徭役)을 면제하라."

하고, 하교하기를,
“큰 예식을 치른 후에 혜택을 널리 베풀기에 힘을 쓰는 이 한 가지 일은 첫째도 선왕(先王)의 뜻을 이어나가는 것이고, 둘째도 선왕의 뜻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세 읍의 백성들에게도 오히려 혜택을 베풀었는데, 하물며 도하(都下)의 공인(貢人)과 시인(市人)들에게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지시를 받아 원소(園所)에서 대령했다가 공물을 바친 공납인들에 대해서는 전부터 남아있는 것 가운데 3천 석(石)에 한하여 탕감을 해 주되, 대령한 공납인들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탕감을 해 주도록 하라. 대여(大輿)와 견여(肩輿)를 앞뒤에서 끈 군사들과 각전(各廛)의 시민들에게는 요역을 20일에 한하여 면제해 주고, 각 차비(差備) 시민들에 대해서는 10일에 한하여 면제해 주고 반인(泮人)들의 현방(懸房) 속전은 10일에 한하여 면제해 줌으로써, 조정이 소중히 여기는 뜻을 보여 주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관리영(管理營)과 진무영(鎭撫營)의 장교(將校)·군졸(軍卒)들 중에 금번에 영악전(靈幄殿)과 숙소참(宿所站)에 편 장막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 수신(守臣)으로 하여금 사방(射放)을 시험보이고, 그 명중한 수효를 뒤에 기록하여 장문(狀聞)토록 하라.”하였다.
○癸亥/諭水原等三邑民人曰: “是府花山，鍾靈有自，其象則盤龍弄珠，其地則千里一逢，議定園寢，遂擧遷奉之禮，是府，卽予松楸之鄕，爾等，是鄕之民也. 予之視爾等，如視家人，裕其食足其産，俾知安生樂業之方，庶可以盡予責寬予思. 矧自卜移之初，貽勞於爾等者，亦云鉅矣. 每一念至，廈氈何安? 行到新治，周覽營始，屋閭櫛比，阡陌綺錯，儼然成一大都會，爾等之積費勤苦，亦足推想. 尋常蹕路，猶施恩澤，況是鄕是民乎? 園所附近面里及徙居民人，給復十年，新還上蕩減，需保米亦許分數蕩減，餘捧代錢. 通一邑面里，給復一年，舊還餉最久三年條蕩減，需保米亦許分數蕩減. 父老之再瞻溫幸羽旄者，朝官年七十以上，士庶年八十以上人，加資. 境內儒·武，俟來春展省之行，欲設科試取. 校屬之久勤除遷，亦許每都政注擬. 今玆之命，豈但爲爾等? 爾等知予撫摩之苦心至誠，一乃心力，共護園寢，永世毋替.” 又敎曰: “水原民人施惠，纔有綸音，而是縣，昔於溫幸爲宿所，今於鞫路，爲宿所. 予又臨是縣，招問古蹟於父老，聞來益不禁愴慟. 況駐蹕時恩澤，邑人至今傳誦，予烏敢不仰述志事之萬一? 果川縣父老之瞻望溫幸鞫行者，朝官年七十以上，士庶年八十以上，竝加資. 舊還最久條，限二年蕩減，需保米分數蕩減，分數代捧，兩年輦路民戶給復一年. 廣州，介在水·果間，沙川站爲停轝所，豈可使之獨漏? 府輦路面，舊還一年條蕩減，沙川倉底居民當年徭役除減.” 敎曰: “克襄之後，惟孳孳於廣惠一事，一則仰述，二則仰述. 三邑民人，猶且施惠，況都下貢市人乎? 園所待令進排各貢貢人舊遺在，限三千石蕩減，待令貢人，從優蕩減. 大轝·肩轝前後引軍·各廛市民徭役，限二十日蠲減，各差備市民，限十日蠲減，泮人懸房贖，限十日蠲減，以示朝家爲所重之意.” 敎曰: “管理營·鎭撫營校卒等，今番靈幄殿·宿所站布帳領來人，令該守臣，試射放，以其得中數爻，後錄狀聞.”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11일(계해) 1번째기사>

정치/왕실

새 원소의 지방관인 수원부사 조심태에게 가자하다

천원 도감과 원소 도감의 당상, 낭청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하였다. (…) 옛 원소(園所)의 지방관인 양주 목사 임시철(林蓍喆), 숙소의 지방관인 과천 현감 윤행임(尹行任), 연도의

지방관인 광주 부윤 민태혁(閔台爀), **새 원소의 지방관인 수원 부사 조심태(趙心泰)에게는 가자하였다.**(…)
○乙丑/遷園園所兩都監堂郎以下施賞有差. (…) 舊園所地方官楊州牧使林薈喆·宿所地方官果川縣監尹行任·沿道地方官廣州府尹閔台爀·**新園所地方官水原府使趙心泰加資.**(…)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13일(을축) 1번째기사>

2. 일성록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6일(무오)
강영여(靈轝)가 과천(果川)에서 출발하여 새 원소(園所)에 머물렀다.
묵○ 조곡(朝哭)과 조전(朝奠), 조상식(朝上食)을 모두 의주(儀註)와 같이 행하였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규례와 같이 삼취(三吹)를 진달하였다. 출발할 때가 되자, 섭상례(攝相禮)가 신여(神轝)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신여에서 내려 신련(神輦)에 타기를 찬청(贊請)하였다. 대축(大祝)이 지방상(紙牓箱)을 받들어 신련에 안치하였다. 섭상례가 재궁(梓宮)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대여(大轝)에 오르기를 찬청하였다. 좌의정이 여재궁관(舁梓宮官)을 거느리고서 재궁을 받들어 대여에 올리되 머리를 남향으로 하고, 명정(銘旌)과 삽(翣)을 차례로 진열하였다. 섭상례가 지방련(紙牓輦) 앞과 대여 앞으로 나뉘어 나아가서 출발하기를 찬청한 뒤에 부복(俯伏)하고 물러났다. 의위(儀衛)와 도종(導從)을 처음과 같이 하였다. 모두 4차에 걸쳐 교대로 운구(運柩)하여 **사근현(沙斤峴)**에 이르렀다. 대여와 신련을 받들어 잠시 막차(幕次)에 머무르게 하고, 여사군(轝士軍)에게 밥을 먹인 뒤에 즉시 출발하였다. 모두 3차에 걸쳐 교대로 운구하여 **수원(水原)** 새 읍(邑) 안의 막차에 도착하여 주정전(晝停奠)을 행하고, 즉시 출발하였다. 모두 6차에 걸쳐 교대로 운구하여 원소의 정자각(丁字閣) 정계(正階) 앞에 이르렀다. 섭상례가 대여에서 내리기를 찬청하였다. 좌의정이 여재궁관을 거느리고서 재궁을 받들어 찬궁(欑宮) 안의 탑상(榻上)에 안치하였다. 섭상례가 지방련 앞으로 나아가 신련에서 내려 신여에 오르기를 찬청하였다. 대축이 지방궤(紙牓櫃)를 받들어 요여(腰轝)에 안치하여 유문(帷門) 안에 이르렀다. 섭상례가 신여에서 내려 영좌(靈座)에 오르기를 찬청하였다. 대축이 지방궤를 받들어 영좌에 안치하였다. 내시가 영좌의 오른쪽에 명정(銘旌)을 세우고, 소선(素扇)과 소개(素蓋)를 좌우로 나누어 세우고, 길의장(吉儀仗)과 흉의장(凶儀仗)을 유문 안으로 물려 머무르게 하였다. 전(奠)을 의주와 같이 설행하고, 석상식(夕上食), 석곡(夕哭), 석전(夕奠)을 겸행(兼行)하였다. 네 번째 가칠(加漆)을 행하였다. 별군직(別軍職)과 별간역(別看役)이 결과(結裹)를 풀었다. 도감의 당상과 낭청이 일제히 봉심(奉審)해 보니, 하우판(下隅板)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은 거의 다 깨끗하게 마르고, 복금(複衾)은 그다지 축축이 젖지 않았으며, 홍전금(紅氈衾)은 처음부터 습기가 없었다. 하괴목(下塊木)을 상괴목(上塊木)보다 낮게 설치하였는데, 이는 하교로 인한 것이다. 별간역 등이 또 뾰족한 대나무를 하우판의 봉합한 곳에 꽂자, 얼마 지나서 약간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있었다. 장생전 제조(長生殿提調)가 칠공(漆工)을 거느리고서 가칠을 하였으나, 하우판의 방울방울 물이 떨어진 곳은 아직 칠포(漆布)를 쓰지 않았는데, 이는 밤사이에 방울방울 물이 떨어지는지를 징험해 보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내시가 찬궁의 좌우에서 수직(守直)하고, 종척집사(宗戚執事)와 도감의 당상·낭청이 중배설청(中排設廳)에서 돌

아가며 수직하였다.

강靈輿自果川進發次新園所

목行朝哭朝奠及上食竝如儀宣傳官跪達三呎如例進發時至攝相禮進當神輿前跪贊請降輿陛輦大祝捧紙牓箱安于輦攝相禮進當梓宮前跪贊請陛大輿左議政帥舁梓宮官奉梓宮陛大輿南首銘旌及翣以次陳列攝相禮分詣紙牓輦前大輿前贊請進發俯伏而退儀衛導從如初凡四次遞運至沙斤峴奉大輿神輦暫住於幕次輿士軍饋飯後仍卽進發凡三次遞運到水原新邑內幕次行晝停奠訖仍卽進發凡六次遞運至園所丁字閣正階前攝相禮贊請降輿左議政帥舁梓宮官奉梓宮安于欑宮內榻上攝相禮詣紙牓輦前贊請降輦陛輿大祝捧紙牓置安于腰輿至帷門內攝相禮贊請降輿陛座大祝捧紙牓置安于靈座內侍立銘旌于靈座之右素扇 素蓋分左右吉凶儀仗退住帷門內設奠如儀兼行夕上食哺哭夕奠行四度加漆別軍職 別看役解結裹都監堂郎一齊奉審下隅板 點滴之水幾盡乾淨複衾不甚淋濕紅氈衾初無濕氣設下塊低於上塊因下敎也別看役等又用竹尖奉插于下隅板合縫處少頃略有點滴長生殿提調率漆工加漆而下隅板點滴處則姑不用漆布欲驗夜來點滴故也內侍守直于欑宮左右宗戚執事都監堂郎輪直于中排設廳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6일(무오)

강**수원부(水原府)**에 머물렀다.

목○ 평융복(平戎服)을 갖추고 교(轎)를 타고 빈양문(賓陽門)을 나갔다. 수궁 각신(守宮閣臣) 이복원(李福源), 약원의 도제조 이성원(李性源), 우의정 김종수(金鍾秀)가 앞으로 나아와 아뢰기를, "대여(大輿)를 어제 오후에 과천(果川)의 숙소(宿所)로 받들고 나아갔다고 하였는데, 이제 벌써 날이 밝았으니 이미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한결같이 평온하게 봉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정(軍丁)도 한 사람도 탈이 없었다고 하니, 서글프면서도 다행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상의 마음도 이에 대해 조금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어 문안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어제저녁 비가 내리려는 기미가 상당히 농후하였기 때문에 마음으로 몹시 걱정을 하였는데, 미처 신시(申時)도 되기 전에 숙소로 받들고 나아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나의 마음이 조금 놓였다. 자궁(慈宮)의 환후(患候)는 위태하여 어제에 비해 차도가 없으나, 오늘은 곁을 떠나가는 나의 심정을 너그럽게 해 주기 위하여 애써 미음 따위를 드셨으니, 나의 격기(膈氣)가 아무 때나 심해졌다 덜해졌다 하는 것은 어찌 말할 겨를이 있겠는가." 하니, 이복원 등이 아뢰기를, "오늘 대가(大駕)의 숙소를 과천으로 정하였는데, 어찌 이른 아침에 동가(動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가 미처 하유(下諭)하지 못하였다. 안절부절못하는 나의 마음으로는 일단 궐문을 나가게 되면 나는 듯이 급히 가고 싶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과천에서 묵게 되면 다음 역참(驛站)이 상당히 멀어서 반드시 새벽에 길을 떠나야 다음 날 아침에 원소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수고는 우선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백관과 군병이 여러 날 밤을 계속 고달프게 노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오늘 과천에서 주정(晝停)하고 그대로 전진하여 수원 새 읍에서 지숙(止宿)하려고 하니, 이제 별도로 전교를 내릴 필요 없이 우상(右相)이 이러한 내용으로 수가(隨駕)하는 영문(營門)과 수가하는 백관에게 통지하라." 하였다.

이어 이복원에게 이르기를, "경은 분제조(分提調), 분승지(分承旨)와 함께 한곳에 있으면서 자주 자궁께 문안하고 계속해서 즉시 치보(馳報)하기를 한결같이 전날처럼 하라." 하였다. 명정문(明政門)을 나가 교에 말을 매고 홍화문(弘化門)을 나갔다. 이현(梨峴)과 흥인지

문(興仁之門), 왕십리(旺十里)를 거쳐 둑도(纛島)의 부교(浮橋)를 건넜다. 사평점(沙坪店) 앞길에 도착하였을 때, 인의(引儀) 김사설(金思卨)·성은주(成殷柱) 2인이 앞에 있다가 가전(駕前) 시위(侍衛) 속에 뒤섞여 들어갔으나 즉시 말에서 내리지 못하였으므로 잡아들이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이처럼 슬프고 황급한 때에는 매사를 자세히 살피지는 못하지만, 너희 같은 미관(微官)이 어찌 감히 시위하는 반열(班列)에 난입하는가." 하고, 끌어내라고 명하였다. 이어 태거(汰去)하였다. 과천의 현문(縣門)에 이르러 교에서 말을 풀고 행궁(行宮)으로 들어갔다. 하교하기를, "날이 아직 이르니, 한나절의 시간일지라도 어떻게 기다리겠는가. 오늘 숙소를 **수원**의 새 읍참(邑站)으로 당겨서 정하라." 하였다. 교를 타고 행궁을 나왔다. 이성원과 약원 제조 윤숙(尹塾)이 앞으로 나아와 향귤차(香橘茶)를 바쳤으므로 마셨다.

내가 이르기를, "계속해서 총호사(摠護使)의 장계를 받아 보니, **수원**에서 주정전(晝停奠)을 거행한 뒤의 군령(軍令)이 오시(午時) 정(正) 3각(刻)에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지금은 벌써 원소로 받들고 나아갔을 것이다."

하니, 이성원이 아뢰기를, "오늘 날씨가 어제에 비해 더욱 따뜻하여 대여를 받들고 나아가는 절차를 기대했던 것처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다한 군인(軍人)들도 모두 병이 없다고 하니, 일마다 모두 천우신조(天祐神助)가 아님이 없습니다." 하였다. **사근현(沙斤峴)** 아래에 이르렀을 때 교(轎)에 맨 말이 누차 넘어졌다. 승지 신기(申耆)가 아뢰기를, "막중한 교에 매는 말을 전혀 가려서 세우지 않았으니, 해당 사복시(司僕寺)의 관원(官員)을 엄하게 감처(勘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원(本院)이 추고하기를 청하는 것 외에는 달리 시행할 만한 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러한 때에 어찌 거조(擧條)를 낼 필요가 있겠는가. 우선 환궁(還宮)하기를 기다리라." 하였다. 사복시 제조를 체차하라고 명하였다. 또 병조 판서 윤숙은 입시하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경을 사복시 제조로 삼았으니 경은 각별히 검칙(檢飭)하라." 하였다. 이어 말을 골라서 교에 매도록 준비하라고 명하였다. 마침내 교에서 내려 말을 타고 사근현을 넘어 교를 타려고 할 때, 내가 이르기를,

"옛날 경진년(1760, 영조36) 온행(溫幸)[1] 때 주정소(晝停所)가 이곳에 있었으니, 내가 직접 살펴보려고 한다." 하였다. 마침내 교로 옮겨 타고서 나아가니, 옛터가 길 오른쪽의 밭 두둑에 약 두서너 칸쯤 남아 있었는데, 계단의 형태만 희미하게 남아 있고 잡초(雜草)가 덮혀 있었다. 내가 신하들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이곳은 두어 칸에 불과한데, 그 당시에는 주정소를 어떻게 배설(排設)한 것인가?" 하였다. 이어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은 이곳에 거주하는 백성으로서 일찍이 경진년에 행차를 목격한 적이 있는 자를 거느리고 와서 대령하라고 명하였다. 서유방이 3인을 거느리고 와서 대령하여 앞으로 나아와 아뢰기를, "3인 중 1인은 과연 경진년에 행차를 목격한 자이고, 2인은 나이가 연로하기는 하나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 하고, 기영(畿營)에서 쌀을 주라고 명하였다. 내가 또 이르기를, "옛날에 이곳을 지날 때에 예교(睿敎)하기를, 대략 '대가의 주정소가 저 언덕에 있으니, 어찌 소조(小朝)의 주정소를 다시 설치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이곳에 옮겨 설치하게 하였다. 이 일은 내가 직접 들었던 것인데 이제 이곳에 오게 되니, 나의 마음을 억제하기가 어렵다. 차후에 지방관으로 하여금 대략이라도 수축(修

---

1) 경진년 온행(溫幸) : 사도세자(思悼世子)가 왕세자(王世子)일 때 온천욕(溫泉浴)을 하기 위해 온양(溫陽)으로 행행(行幸)한 일을 가리킨다. 《承政院日記 英祖 36年 7月 17日·19日, 8月 1日》

築)하게 하라.” 하였다.
이어 김종수에게 이르기를, “저기 바라다 보이는 늘어서 있는 곳이 경의 집안 선영(先塋)의 안산(案山)이라고 하던데, 그러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이성원이 아뢰기를, “이곳은 김씨(金氏)의 선영으로, 대대로 정승을 배출하여 평소에 오봉산(五峯山)의 명묘(名墓)라고 불려집니다.” 하였다. 이어 교를 타고 출발하여 **수원** 새 읍의 관문(官門)에 도착하여 말을 풀고 행궁으로 들어갔다. 경기 감사 서유방, **수원 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心泰)**, 광주 부윤(廣州府尹) 민태혁(閔台爀), 과천 현감(果川縣監) 윤행임(尹行任)을 소견하여 이르기를,
“오늘 어찌 소견할 겨를이 있겠는가만, 대가를 평온하게 봉안하였으니 내 마음이 슬프면서도 다행스럽다. 도백(道伯)과 지방관을 위로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되므로 이처럼 소견한 것이다. 행차가 지나올 때 사근천(沙斤川)의 창사(倉舍)가 새롭게 탈바꿈한 것을 바라보았는데, 광윤(廣尹)의 노고가 많았다.”
하니, 민태혁이 아뢰기를, “전임 수령이 재임 중일 때 공사가 거의 반 이상 진행되었고 신은 벽을 칠한 것에 불과할 뿐이니, 무슨 노고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향귤차 1첩(貼)을 달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대여가 원소에 이른 뒤 배종(陪從)하는 각영(各營)의 현등(懸燈)·폐문(閉門)·정경(定更) 절차는 규례대로 거행하라는 뜻을 선전관 1원(員)으로 하여금 총호사에게 달려가서 전유(傳諭)하게 하라.” 하였다.

강駕次**水原府**

목具平戎服乘轎出賓陽門守宮閣臣 李福源 藥院都提調 李性源 右議政 金鍾秀進前曰伏聞大輿已於昨日午後奉詣果川宿所今已平明想已進發一向穩奉軍丁亦無一人有頉云下情不勝愴幸伏想聖心於此少加寬念矣仍爲問候予曰昨晚雨意頗緊故心切悶慮未及申時伏聞奉詣宿所之報予懷少紓慈候凜綴比昨無減而今日爲寬予離側之情事勉進米飮之屬予之膈氣苦歇無常何暇言乎福源等曰今日大駕宿所定以果川則何必侵早動駕乎予曰予未及諭之矣以予憧憧之心一出闕門便欲奮飛且今日宿果川則前站頗遠必也侵曉發行然後明早可詣園所予之勞頓姑勿言百官軍兵之連夜勞憊亦可念今日欲晝停於果川仍爲前進止宿**水原**新邑今不必別下傳敎右相以此意知委隨駕營門及隨駕官仍謂福源曰卿與分提調 分承旨同在一處頻頻承候于慈宮續卽馳報一如前日爲也出明政門駕馬出弘化門由梨峴興仁之門 旺十里渡蠶島浮橋至沙坪店前路引儀 金思喬 成殷柱二人在前混入於駕前侍衛中未卽下馬命拿入敎曰當此悲遑之中每事雖不致察如爾小官安敢攔入衛班乎命拿出仍爲汰去至果川縣門稅駕入行宮敎曰日勢尙早雖半日之頃何以遲待今日宿所進定於**水原**新邑站乘轎出行宮性源及藥院提擧 尹塾進前以香橘茶奉進進御訖予曰連接總護使狀啓**水原**晝停奠後軍令在於午正三刻云伏想此時已爲奉詣于園所矣性源曰今日日氣比昨益暄大輿奉詣之節如期許多軍人亦皆無病云事事莫非天祐而神隲矣至**沙斤峴**下轎馬屢跌承旨 申耆曰莫重駕轎馬全不擇立當該司僕寺官員所當重勘而本院請推之外無他可施之罰何以爲之乎予曰此時何必出擧條姑俟還宮可也命司僕提調許遞又命兵判 尹塾入侍曰以卿爲之卿其各別檢飭仍命選馬以備駕遂降轎乘馬踰**沙斤峴**將乘轎予曰昔在庚辰溫幸時晝停所在於此地予將親審矣遂移駕就之舊基在路右田畔約數三間許微有堦形雜草被之予顧謂諸臣曰此地不過數間伊時晝停排設何以爲之耶仍命京畿監司 徐有防率此地居民曾經庚辰仰瞻者來待有防以三人來待前奏曰三人中一人果於庚辰年得瞻羽旄者二人年雖老而不得詳記云矣予曰無怪其然矣命畿營給米予又曰昔年駕過此地睿敎若曰犬駕晝停所在彼岸豈可復設小朝晝停乎仍令移設於此此事予所得聆今臨此地予懷難抑此後則使地方官略加修築仍謂鍾秀曰彼相望而列立者卽卿家先塋案山云然否對曰然矣性源曰此卽金氏先塋而世世出相素稱五峯山名墓也仍乘轎進發至**水原**新邑官門稅駕入行宮召見京畿監司 徐有防 **水原府使** **趙心泰** 廣州府尹 閔台爀 果川縣監 尹行任曰今日豈

有召接之暇而大輿穩奉予心悲幸道伯及地方官不可無慰勞之擧故玆召見矣行過時望沙斤川倉舍一新廣尹之勞多矣台嫌曰前倅在任時役幾過半臣不過塗塹而已何勞之有予命香橘茶一貼煎入予曰大輿至園所後陪從各營懸燈閉門定更節次依例爲之之意使宣傳官一員馳往傳諭于總護使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6일(무오)

강입직

목대교 김조순(金祖淳)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7일(기미)

강5차의 가칠(加漆)을 행하였다.

목○ 총호사(摠護使) 이하 배종하는 백관이 조곡(朝哭), 조전(朝奠)을 의주(儀註)와 같이 행하였다. 장생전 제조(長生殿提調)가 칠공(漆工)을 거느리고서 5차의 가칠을 행하였다. 도감(都監)의 당상과 낭청이 일제히 봉심(奉審)해 보니, 하우판에서 밤새도록 방울방울 떨어진 물이 한 종지쯤을 채우지 못하였다. 뾰족한 대나무를 사용했던 부분은 숯가루를 옻에 타서 골고루 뒤섞어 발라서 메우고, 이어 칠포(漆布)를 붙였다.

강駕次水原府

목具平戎服乘轎出賓陽門守宮閣臣 李福源 藥院都提調 李性源 右議政 金鍾秀進前曰伏聞大輿已於昨日午後奉詣果川宿所今已平明想已進發一向穩奉軍丁亦無一人有頉云下情不勝愴幸伏想聖心於此少加寬念矣仍爲問候予曰昨晩雨意頗緊故心切悶慮未及申時伏聞奉詣宿所之報予懷少紓慈候凜綴比昨無減而今日爲寬予離側之情事勉進米飮之屬予之膈氣苦歇無常何暇言乎福源等曰今日大駕宿所定以果川則何必侵早動駕乎予曰予未及諭之矣以予憧憧之心一出闕門便欲奮飛且今日宿果川則前站頗遠必也侵曉發行然後明早可詣園所予之勞頓姑勿言百官軍兵之連夜勞憊亦可念今日欲晝停於果川仍爲前進止宿水原新邑今不必別下傳敎右相以此意知委隨駕營門及隨駕官仍謂福源曰卿與分提調 分承旨同在一處頻頻承候于慈宮續卽馳報一如前日爲也出明政門駕馬出弘化門由梨峴興仁之門 旺十里渡蠶島浮橋至沙坪店前路引儀 金思喬 成殷柱二人在前混入於駕前侍衛中未卽下馬命拿入敎曰當此悲遑之中每事雖不致察如爾小官安敢攔入衛班乎命拿出仍爲汰去至果川縣門稅駕入行宮敎曰日勢尙早雖半日之頃何以遲待今日宿所進定於水原新邑站乘轎出行宮性源及藥院提擧 尹塾進前以香橘茶奉進進御訖予曰連接總護使狀啓水原晝停奠後軍令在於午正三刻云伏想此時已爲奉詣于園所矣性源曰今日日氣比昨益暄大輿奉詣之節如期許多軍人亦皆無病云事事莫非天祐而神隲矣至沙斤峴下轎馬屢跌承旨 申耆曰莫重駕轎馬全不擇立當該司僕寺官員所當重勘而本院請推之外無他可施之罰何以爲之乎予曰此時何必出擧條姑俟還宮可也命司僕提調許遞又命兵判 尹塾入侍曰以卿爲之卿其各別檢飭仍命選馬以備駕遂降轎乘馬踰沙斤峴將乘轎予曰昔在庚辰溫幸時晝停所在於此地予將親審矣遂移駕就之舊基在路右田畔約數三間許微有堦形雜草被之予顧謂諸臣曰此地不過數間伊時晝停排設何以爲之耶仍命京畿監司 徐有防率此地居民曾經庚辰仰瞻者來待有防以三人來待前奏曰三人中一人果於庚辰年得瞻羽旄者二人年雖老而不得詳記云矣予曰無怪其然矣命畿營給米予又曰昔年駕過此地睿敎若曰犬駕晝停所在彼岸豈可復設小朝晝停乎仍令移設於此此事予所得聆今臨此地予懷難抑此後則使地方官略加修築仍謂鍾秀曰彼相望而列立者卽卿家先塋案山云然否對曰然矣性源曰此卽金氏先塋而世世出相素稱五峯山名墓也仍乘轎進發至水原新邑官門稅駕入行宮召見京畿監司 徐有防 水原府使 趙心泰 廣州府尹 閔台嫌 果川縣監 尹行任曰今日豈有召接之暇而大輿穩奉予心悲幸道伯及地方官不可無慰勞之擧故玆召見矣行過時望沙斤川倉舍一新廣尹之勞多矣台嫌曰前倅在任時役幾過半臣不過塗塹而已何勞之有予命香橘茶一貼煎入予曰大

輿至園所後陪從各營懸燈閉門定更節次依例爲之之意使宣傳官一員馳往傳諭于總護使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7일(기미)

강새 원소(園所)에 나아갔다.

목○ 평융복(平戎服)을 갖추고 교(轎)를 타고 행궁(行宮)을 나갔다. 약원 도제조 이성원(李性源), 제조(提調) 윤숙(尹塾), 우의정 김종수(金鍾秀)가 앞으로 나아와 문안하고, 이어 향귤차(香橘茶)를 올렸으므로 마셨다. 하교하기를, "새벽이 되면 즉시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수가(隨駕)하는 군병이 백리 길을 달려온 끝일 뿐만 아니라 또 숙참(宿站)을 당겨서 정하였기 때문에 모두 피곤할 것이니, 조금 기다려야 할 형세이다. 일일이 밥을 먹이고 전진하더라도 오시(午時)를 넘지는 않을 것이니, 조상식(朝上食)의 예를 행하는 것은 우선 기다리라. 총호사는 이리 알라."

하고, 이어 주마(走馬)로 달려가서 하유(下諭)하라고 명하였다. 날이 밝은 뒤에 안개가 점점 짙게 껴서 거의 눈앞을 분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성원이 교의 창문을 닫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상**유천**(上柳川)과 하**유천**(下柳川), 세람교(細藍橋)를 거쳐 재실(齋室)의 앞에 이르러 교에서 말을 풀고 재실로 들어가니, 안개가 깨끗이 걷히고 해가 환히 비추었다.

강詣新園所

목具平戎服乘轎出行宮藥院都提調 李性源 提調 尹塾 右議政 金鍾秀進前問候仍以香橘茶奉進進御訖敎曰待曉欲卽發而隨駕軍兵百里驅馳之餘又因宿站進定無不憊頓勢將稍待一一喫飯前進不至過午朝上食行禮姑待事總護使知悉仍命走馬馳諭天明之後霧氣漸濃殆不卞咫尺性源請掩轎窓不許由上下柳川 細藍橋至齋室前稅駕入齋室霧快收而日已舒矣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7일(기미)

강조상식(朝上食), 주다례(晝茶禮), 석상식(夕上食), 석전(夕奠)을 친히 행하였다.

목○ 시복(緦服)으로 갈아입고 재실(齋室)을 나와 원상(園上)에 나아갔다. 새 원소에 배설(排設)한 옹가(甕家)와 수도각(隧道閣)은 모두 구(舊) 원소와 같았으나, 포성(布城)의 둘레가 비교적 넓었다. 포장(布帳)으로 외작문(外作門)을 만들고 재실이 그 안에 있으며, 정자각 좌우에서 홍살문(紅箭門)까지 포장을 설치하여 내작문(內作門)을 만들었다. 도감과 각사(各司)의 가가(假家)가 정자각의 오른쪽, 외포성(外布城)의 안에 있었다. 내가 홍살문에 이르러 여(輿)에서 내려 걸어서 정자각 안으로 나아가 들어가서 찬궁(欑宮)을 살피고, 나와서 자리로 나아가 부복(俯伏)하여 곡을 하였다. 다시 찬궁으로 나아가 동쪽 문을 거쳐 소갑장(素甲帳)을 걷고 들어가서 현궁(玄宮)을 살폈다. 도감의 당상 김이소(金履素) 등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찬궁을 지은 것이 구 원소에 비해 비교적 널찍하고 정교하며 정자각을 조성(造成)한 것도 전혀 흠잡을 곳이 없으니, 경들의 노고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였다. 또 총호사 **채제공(蔡濟恭)**에게 이르기를, "5차의 가칠을 진시(辰時)에 과연 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진시에 5차의 가칠을 하고, 하우판(下隅板)의 뾰족한 대나무를 사용한 곳에는 숯가루와 옻으로 발라서 메운 뒤에 칠포로 봉합(縫合)하고 다시 한번 칠광(漆光)을 입히니, 환하게 빛나는 것이 칠포의 색과 하우판의 칠 빛깔이 같았습니다." 하였다.

내가 직접 살펴보았다. 이어 의주(儀註)와 같이 조상식을 행하였다. 걸어서 가가의 안으로 나아가 연마(鍊磨)한 혼유석(魂遊石)을 만져 보았다. 대신들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앵봉(鶯峯)의 석질(石質)이 어찌 강화(江華)의 석질만 못하겠는가. 이곳에 이러한 석재(石材)가

있는 것은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이어 옹가 안으로 나아가 제도(制度)를 두루 살펴보았다. 김이소 등에게 이르기를, "수도각과 옹가를 지은 것도 구 원소에 비해 훨씬 낫다." 하니, 도감의 당상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재목(材木) 등의 물품을 모두 외읍(外邑)에서 사다 썼기 때문에 경사(京司)보다는 다소 쉬워서 그런 것입니다." 하였다.

퇴광(退壙)의 옆으로 나아갔다. 도청(都廳)과 도감의 낭청 각 1인, 별간역(別看役) 정우태(丁遇泰) 등은 퇴광 네 모퉁이의 포장을 들어서 열라고 명하였다. 흙 색깔을 상세히 살폈다. 내가 이르기를, "종전에 흙을 가져다가 색깔을 살펴본 것은 많아도 1궤(櫃)나 1함(函)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순황자금색(純黃紫金色)이 이와 같이 기이할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 하니, **채제공** 등이 아뢰기를,

"형국(形局)이 더할 나위 없는 길지(吉地)라는 것은 오히려 술가(術家)의 말에 속하는 것이지만, 흙 빛깔이 순전히 길한 것을 직접 보니 이는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며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종사(宗社)의 무궁한 경사가 실로 이에서 시작될 것이니, 기쁜 마음을 어찌 이루 다 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짙은 안개가 잔뜩 끼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수도각 안에만 한 점의 안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매서운 때에도 이 수도각 안에만 들어오면 더운 방처럼 따뜻하였으니, 상서로운 빛이 모여 있으며 길한 기운이 모여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옹가 안의 동쪽을 거쳐 병풍석(屛風石), 난간석(欄干石), 지대석(地臺石), 인석(引石), 가석(架石)을 두루 살펴보았다. 정민시 등에게 이르기를, "석물(石物)의 기화(起畵) 솜씨는 어떠한가? 일찍이 정우태(丁遇泰)로 하여금 장릉(長陵)에 가서 석물의 제도를 살피게 하여 일일이 그대로 본받게 하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였는지 모르겠다."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장릉의 석물은 신들도 봉심(奉審)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석물의 기화는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였다. 옹가의 안에서 나와 수도각 남쪽 처마의 섬돌 위에 앉았다. 대신과 신하들은 앞으로 나아와서 각각 소견(所見)을 분명하게 아뢰라고 명하였다. 이때에 4개의 주형(珠形)이 포성에 의해 가려졌으므로, 선전관(宣傳官)은 임시로 철거하라고 명하였다. 4개의 주형이 뚜렷이 드러나서 남향한 수도각의 한 중앙과 정면으로 마주 대하였고, 하늘을 향하고 있는 두 봉우리의 안산(案山)을 또 분명히 볼 수가 있었다. 내가 이르기를,

"이제 주봉(主峯)을 봉심할 것이니, 연로한 대신과 걷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뒤에 남아 있으라."

하였다. 이어 걸어서 옹가의 후면으로 올라가 주산(主山) 중봉(中峯)에 올라가서 한참 동안 두루 살폈다. 발길을 돌려 주봉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하였는데 원상에서 거리가 상당히 멀었으므로 도감의 당상, 승지와 사관(史官), 각신(閣臣)이 보여(步輿)에 타기를 청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발길을 돌려 후탁(後托)의 산맥(山脈)과 국세(局勢)를 살펴보려고 한다. 나는 피곤한 줄을 모르겠으나, 경들의 말이 매우 간절하니 그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마침내 보여를 타고 주봉을 따라 내려와 산등성이를 빙 돌아서 나와 후탁의 입수(入首)한 곳에 이르러 여에서 내려 평좌(平坐)하였다. 상지관(相地官) 박대량(朴大良)·주남술(朱南述)·채윤전(蔡潤銓)·김양직(金養直)은 앞으로 나아와 각각 소견을 진달하라고 명하였는데, 대략 이미 올린 산론(山論)과 같았다. 내가 이르기를, "이 산의 이름이 **화산**(**花山**)이니 화목(花木)을 많이 심는 것이 좋겠다."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백호(白虎)의 안쪽과 안양리(安陽里)에 약간의 민가(民家)가

있으나, 이는 화소(火巢)의 안에 해당이 되므로 뒤에 철거하겠습니다."
하였다. 내가 보여를 타고 원소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다시 도착하여 여에서 내려 정자각 서쪽의 소차(小次)로 들어갔다. 주다례(晝茶禮)를 거행할 때가 되자, 나와서 자리로 나아갔다. 일찍이 춘방(春坊)과 계방(桂坊)을 거친 사람 중에서 실직(實職)이 없는 사람을 모두 참석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의주(儀註)와 같이 예를 행하고, 이어 소차로 들어갔다. 승지와 사관, 도청은 앞으로 나아오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새 원소에서 성빈(成殯)을 하고 난 뒤의 준여(餕餘)를 상산군인(上山軍人)·산역군인(山役軍人)과 원소도감(園所都監) 소속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받들어 두었으니, 가까이는 빈궁(殯宮)을 시위(侍衛)한 신하들로부터 포성의 환위군(環衛軍)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나누어 주어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또 별군직(別軍職) 이유경(李儒敬) 등은 분배하여 두루 나누어 주라고 명하였다. 석곡(夕哭)을 행한 뒤에 '상(上)' 자 쓰는 일을 행하였다. 대전관(代奠官)이 영좌(靈座)의 왼쪽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고문(告文)을 읽고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다. 도감의 당상과 낭청, 장생전 제조 및 서사관(書寫官)인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이 올라가서 빈궁 앞으로 나아가 자세히 살피고, 박명원이 이금(泥金)으로 재궁의 상우판(上隅板)에 '상' 자를 썼다. 사자관(寫字官) 홍경운(洪慶運)과 화원(畵員) 허감(許礛)은 나아와 광칠(光漆)을 하라고 명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이금에 생강즙을 타면 빛이 잘 난다고 들은 적이 있으니, 도감의 당상은 나가서 받들어 올리라."
하였다. 도감의 당상 서유린(徐有隣)이 명을 받들고 받들어 올렸다. 내가 별간역 정우태는 생강즙을 금자(金字)의 획 위에 골고루 섞으라고 명하였다. 또 질화로에 숯불을 담아 멀리서 비추어 말리니, 금자가 매우 정밀하고 좋았다. 총호사 이하가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다. 내가 나와서 판위(板位)로 나아가 부복하여 곡을 하고 재배(再拜)하였다. - 자리에 있는 자들도 모두 똑같이 행하였다. - 이어 석상식(夕上食)과 석전(夕奠)을 의주와 같이 행하였다. 정자각 서쪽의 소차에 나아갔다.

강親行朝上食晝茶禮夕上食夕奠

목改具緦服出齋室詣園上新園所排設甕家與隧道閣一如舊園所布城周圍較濶遠以布帳作外作門而齋室在其內丁字閣左右設以布帳至紅箭門作內作門都監各司假家在丁字閣之右外布城之內予至紅箭門降輿步詣丁字閣內入審梓宮出就位俯伏哭復詣欑宮由東邊門捲素甲帳入審玄宮訖顧謂都監堂上金履素等曰欑宮制度比舊園較倣較精丁字閣造成無一虧欠處多感卿等之勞矣又謂總護使 **蔡濟恭** 曰五度加漆辰時果已爲之耶對曰辰時進五度加漆而下隅板竹尖所用處以炭末與漆塗塡後用漆布合縫更加一番漆光則澄然照影漆布之色與板漆同矣予親審訖仍行朝上食如儀步詣假家內摩視魂遊石之鍊正者顧謂諸大臣曰罵峯石品何遽不若江華石乎此地有此石材豈非天耶仍詣甕家內周審制度謂履素等曰隧道閣甕家制度比諸舊園亦復大勝矣都監堂上鄭民始曰材木等物皆從外邑貿用故稍易於京司而然矣進詣退壙傍命都廳都監郎廳各一人別看役 丁遇泰等揭開退壙四隅布帳詳覽土色訖予曰從前土色之取見者多不過一櫃一函故猶未料純黃紫金色之如是奇異矣濟恭等曰形局之爲無上吉地猶屬術家之言而目見土色之純吉曾是所未覩所未聞宗社無彊之慶實基於此下情欣忭何可勝達今朝大霧漫蔽之中惟此隧道閣之內曾無一點霧氣且於寒朝冷夜風氣栗烈之時入此閣中則溫如燠室祥光所聚吉氣所蘊於此可見矣由甕家內東邊周視屛風石欄干石地臺石引石架石謂民始等曰石物起畵手法何如曾使丁遇泰往審長陵石物制度使之一一依倣矣未知果然否民始曰長陵石物臣等亦嘗奉審而今此石物起畵少無不及矣出自甕家內坐隧道閣南簷階上命大臣諸臣進前各以所見指奏于時四珠之形爲布城所隔命宣傳官權撤之四箇珠形歷歷呈露正對隧道閣南向正中而兩峯向空之案又分明可見

矣予曰今當奉審主峯年老大臣及不嫺步履之人落後可也仍步上甕家後面陟主山中峯移時周審轉向主峯最高處去園上頗遠都監堂上承史 閣臣請御步輿予曰將欲轉尋後托山脈及局勢予雖不覺爲疲卿等言甚懇當從之矣遂乘步輿從主峯而下遶出山脊至後托入首處降輿平坐命相地官 朴大良 朱南述 蔡潤銓 金養直進前各陳所見大略與所進山論同予曰此山名是花山多植花木好矣民始曰白虎內及安陽里有若干民家而此則當爲火巢內從當撤去矣予乘步輿還到園所相望處降輿還丁字閣西邊小次晝茶禮時至出就位命曾經春桂坊中無實職人竝令入參行禮如儀仍御小次命承史 都廳進前敎曰新園所成殯以後餕餘分饋上山軍山役軍人及園所都監所屬而奉置矣近自殯宮侍衛諸臣至于布城環衛軍一一分饋俾無一人或漏又命別軍職 李儒敬等分排遍饋行哺哭後行書上字 代奠官進靈座之左跪讀告文訖降復位都監堂郎長生殿提調及書寫官 錦城尉朴明源陞詣殯宮前審視明源以泥金書于梓宮上隅板命寫字官 洪慶運畵員許礛進光漆予曰曾聞泥金和以薑汁則善爲發光云都監堂上出去奉進可也都監堂上徐有隣承命奉進予命別看役 丁遇泰匊拌于金字晝上又以土罏盛炭火遠遠照乾訖金字十分精好總護使以下降復位予出就板位俯伏哭再拜在位者皆同仍行夕上食夕奠如儀詣丁字閣西邊小次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7일(기미)

강계빈(啓殯)을 하고 결과례(結裹禮)를 행하였다.

묵○ 계빈을 할 때가 되자, 계빈전(啓殯奠)을 의주와 같이 행하였다. 내가 판위에 부복하여 가슴을 치며 곡을 하였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홍낙성(洪樂性)이 앞으로 나아와서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매번 이처럼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시어 지나치게 슬퍼하십니다. 어제 자궁(慈宮)께 하직 인사를 드릴 때 아마도 슬픔을 억제하시겠다는 뜻으로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와 같이 슬퍼하시니, 어찌하여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시어 지나치게 슬퍼하시는 것은 자궁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총호사 **채제공**과 우의정 김종수가 아뢰기를, "결과(結裹)하는 절차와 찬궁(欑宮)을 여는 절차에는 시간이 소비될 터인데, 이와 같이 하는 사이에 정시(正時)가 벌써 지났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내가 마침내 재배례(再拜禮)를 행하였다.

채제공이 아뢰기를, "예판(禮判)이 병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우선 체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정창순(鄭昌順)을 예조 판서로, 이문원(李文源)을 공조 판서로 삼았다. 빈궁 안으로 나아가서 찬궁의 동쪽에 섰다. 정창순이 홀기(笏記)를 읽자, 결과 집사(結裹執事) 변세의(卞世義)·정우태(丁遇泰)·이예보(李禮輔)·정여연(鄭汝淵), 종척 집사(宗戚執事) 김기성(金箕性)·홍수영(洪守榮), 검교직각 정동준(鄭東浚)이 총호사 이하와 함께 찬궁 안으로 나아가 결과례를 행하되, 모두 구 원소에서 결과할 때의 의절(儀節)에 따라 하였으나, 복금(複衾)만 사용하고 홍전금(紅氈衾)과 유둔(油芚)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현궁(玄宮)에 내릴 때 결과를 푸는 절차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대관의(大棺衣)를 덮고, 다음으로 소금저(素錦褚)를 덮고, 홍면포대(紅綿布帶)와 백면포대(白綿布帶)를 사용하여 좌우로 두루 묶었다. 총호사 이하가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다. 내가 자리로 나아가 곡을 하고 재배하였다. - 자리에 있는 자들도 모두 똑같이 하였다. - 천전(遷奠)을 거행할 때가 되자, 의주와 같이 예를 행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재궁을 원소에 올릴 때 진열하는 것은 과연 모두 규례대로 날이 저물기 전에 하였는가?" 하니, 정민시 등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벌써 규례대로 진설하였습니다." 하였다.

이때에 원소 도감이 미리 퇴광의 안팎을 정결하게 하고 차장(遮帳)과 병석(屛席)을 원상각(園上閣)과 수도각의 안에 설치하였으며, 사롱(紗籠) 2쌍(雙)과 유촉대(鍮燭臺) 2쌍에 촛불을 켜서 광상(壙上)에 설치하고, 또 촉롱(燭籠) 2쌍을 수도각에 설치하였다. 도감의 제조와 장생전 제조가 공작(工作)을 거느리고 먼저 퇴광에 나아가 외재궁(外梓宮)의 가하우판(假下隅板)을 개탁(開坼)하고 정제(整齊)하여 대령하였다. 우의정 김종수가 동쪽 계단으로 들어가서 찬궁의 남쪽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무릎을 꿇고 예문(禮文)과 같이 찬궁을 열겠다고 진달하였다. 집사자(執事者)가 나아가 찬궁을 철거하였다. 내시(內侍)가 명정(銘旌)과 소선(素扇), 소개(素蓋) 및 받침을 철거한 뒤 이를 공경히 받들고 앞서 떠났다. 천원도감(遷園都監)의 당상과 낭청이 방상시(方相氏)를 이끌고 퇴광 위에 이르러 창［戈］으로 퇴광 안의 네 모퉁이를 치고 나왔다. 총호사가 여재궁관(舁梓宮官)을 거느리고서 예문과 같이 재궁을 받들어 순(輴)에 올렸다. 내가 재궁을 붙잡고 호곡(號哭)하는 사이에 격기(膈氣)가 치밀어 올랐으며, 순을 따라 정자각 남쪽에 이르자 갑절로 정신이 혼몽하여 섬돌 위에 부복하였다. 이성원이 즉시 담강차(淡薑茶)에 소합원(蘇合元) 5환(丸)을 타서 올렸으나, 내가 미처 반종지도 마시지 못하고 물리치며 이르기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 결코 목으로 넘길 가망이 없으니, 그만두라.”

하였다. 이성원이 또 강차(薑茶)에 청심원(淸心元) 1환을 타서 올렸으나, 내가 겨우 몇 모금을 마시고 돌려주며 이르기를,

“이러한 때에 약을 복용하는 것은 정리(情理)로 볼 때 매우 난감하니, 경들은 다시는 억지로 권하지 말라.”

하였다. 이어 곡을 하며 순을 따라 봉사위(奉辭位)에 이르렀다. 문무백관(文武百官)이 반열(班列)을 이루어 곡을 하며 따르고, 순을 받든 군인(軍人)과 원상(園上)의 역부(役夫), 호위(扈衛)하는 장사(將士)가 모두 곡을 하였다. 용순(龍輴)이 수도각에 이르자, 총호사가 여재궁관을 거느리고서 재궁을 녹로거(轆轤車)로 받들고 나아가 퇴광의 산륜(散輪) 위에 안치하였다. 장생전 제조 이문원이 퇴광 안으로 내려가서 가하우판을 개탁하고, 이어 지장(紙帳)을 내렸다. 대내왕판(大來往板) 2립(立)을 퇴광 위에 설치하고, 대내왕판 위에 철녹로기판(鐵轆轤機板)을 설치하였으며, 좌우 녹로기판 위의 양 끝에 동자기둥［童子柱］ 4개(箇)를 세웠다. 동자기둥 안쪽 철녹로기판 위에 윤통철(輪筒鐵)과 각 4거리(巨里)의 관포줄(貫布茁)을 못으로 박았으며, 그 위에 회량(回樑) 2주(株)를 더하고, 각각의 끝에 살목(箭木) 2개를 십자형(十字形)처럼 꽂았으며, 홍색 향사(紅色鄕絲) 세겹바(三甲所)로 살목 끝을 빙 둘러서 묶었다. 회량에 원정(圓釘) 각 8개를 박고, 백세포편결줄(白細布編結茁) 4거리로 각각 잠목(簪木)의 끝에 매어 회량의 원정 사이에 걸었다. 또 동자기둥의 회량 위에 가로로 중방목(中防木) 2개를 더하였다. 또 철녹로기판을 설치한 대내왕판 위에 가로로 소방목(小防木) 5개를 두었으며, 양 끝에 구멍을 뚫고 숙마(熟麻) 세겹바 2거리로 1척(尺) 5촌(寸) 간격으로 양 끝을 구슬 꿰듯이 두루 묶고, 사이에 산륜목(散輪木) 1개를 두었다. 구봉기(拘捧機) 좌우의 기둥 바깥에 소장산이(小獐山伊) 각 2좌(坐)를 설치하고, 내왕판(來往板) 2립을 더하였다. 퇴광 위의 내왕판에서 수도각까지 20척쯤 되는 곳에 또 장산이(獐山伊) 4좌를 설치하고, 그 위에 가로로 대방목(大防木) 2개를 두었으며, 또 대내왕판 2립을 더하고, 대내왕판 위에 분칠산륜목(粉漆散輪木) 15개를 배치하되 견여기(肩轝機)의 끝과 서로 비슷하게 연접(連接)하도록 하였다. 원소 도감의 당상과 낭청 이하가 별간역과 장수(匠手)를 거느리고서 기다렸다.

강啓殯行結裹禮

목啓殯時至行啓殯奠如儀予俯伏板位哭擗領敦寧 洪樂性進前奏曰殿下之任情過哀每每如此昨日拜辭慈宮之際伏想以節抑之意仰奏而今又如此獨不念徑情過哀非所以慰慈心乎總護使 **蔡濟恭** 右議政 金鍾秀曰結褁節次及啓欑節次當費時刻如是之際正時已過殿下何不念及於此乎予遂行再拜禮濟恭曰禮判以病不得進參請姑許遞從之以鄭昌順爲禮曹判書以李文源爲工曹判書詣殯宮內立于欑宮東昌順讀笏記結褁執事卞世義 丁遇泰 李禮輔 鄭汝淵 宗戚執事 金箕性 洪守榮 檢校直閣 鄭東浚與總護使以下進詣欑宮內行結褁禮一依舊園所結褁時儀節而只用複衾紅氊衾及油芚則不用爲便下玄宮時解褁節次也次覆大棺衣次覆素錦褚用紅白綿布帶左右周結訖總護使以下降復位予就位哭再拜在位者皆同遷奠時至行禮如儀予曰梓宮上園時陳列果皆依例未暮前爲之乎民始等還奏曰已依例陳設矣于時園所都監前期淨潔壙內外設遮帳屛席於園上閣及隧道閣內以紗籠二雙鑰燭臺二雙燃燭設於壙上又設燭籠二雙於隧道閣都監提調及長生殿提調率工作先詣退壙坼開外梓宮假下隅板整齊以待右議政 金鍾秀入自東階詣欑宮南北向跪達啓欑宮如禮執事者進撤欑宮內侍撤銘旌素扇蓋及趺奉持前行遷園都監堂郎引方相氏至退壙上以戈擊壙內四隅而出總護使率舁梓宮官奉梓宮陞輴如禮予攀號之際膈氣衝亘隨輴至丁字閣南邊一倍昏綴俯伏階上性源 卽奉淡薑茶和蘇合元五丸以進予進御未及半鍾却之曰臆塞氣短萬無下咽之望其止之性源又以薑茶和淸心元一丸以進予纔數呷還給曰此時服藥情理難堪卿等勿復强勸也仍哭隨輴至奉辭位文武百官成班哭從奉輴軍人及園上役夫扈衛將士皆哭龍輴至隧道閣總護使率舁梓宮官奉梓宮以轆轤車進安于退壙散輪上長生殿提調 李文源下退壙內開坼假下隅板仍下紙帳設大來往板二立於壙上板上設鐵轆轤機板左右板上兩頭立童子柱四箇童子柱內機板上釘輪篇鐵各四巨里貫布迭其上加回樑二株各端插箭木二箇如十字形以紅色鄕絲三甲所圍結箭端回樑釘圓釘各八箇以白細布編結迭四巨里各繫簪木之端掛於四樑園釘間又於童子柱回樑上橫加中防木二箇又於鐵轆轤來往板上橫置小防木五箇兩端穿孔以熟麻三甲所二巨里間一尺五寸編結兩頭如連珠間置散輪木一箇拘捧機左右柱外設小獐山伊各二坐加來往板二立自壙上來往板至隧道閣二十尺許又設獐山伊四坐其上橫置大防木二箇又加大來往板二立板上排置粉漆散輪木十五箇與肩輿機頭連接相等園所都監堂郎以下率別看役及匠手以俟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7일(기미)

강현궁(玄宮)에 내리고 우제(虞祭)를 행하였다.

목○ 내가 금정기(金井機)의 좌우와 사방을 봉심하고, 나와서 수도각 동쪽의 소차에 나아갔다. 금루관(禁漏官)은 물이 떨어지는 양을 알려 오는 대로 시간을 계산하라고 연이어 신칙하였다. 또 승지와 각신 등에게 명하기를, "밤중에 시각을 계산하여 정하는 것은 가장 신중히 살펴야 하는 것이니, 경들은 돌아가면서 금루(禁漏)에 가서 상세히 살피라. 우상은 현재 운관(雲觀)의 제조를 맡고 있으니 몸소 나아가서 상세히 보고하라."

하였다. 이윽고 금루관이 현궁에 내릴 정시의 1각(刻) 전이라고 들어와서 아뢰었다. 내가 수도각 안의 전옥백위(傳玉帛位)에 나아가 북향하고 섰다. 집사가 각각 옥함(玉函)과 백함(帛函)을 받들고 차례로 무릎을 꿇고서 근시(近侍)에게 주자, 근시가 남향하여 무릎을 꿇고 올렸다. 내가 차례로 받아서 영의정 이재협(李在協)에게 전하니, 이재협이 차례로 무릎을 꿇고 받아서 퇴광의 서쪽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바쳤다. 내가 다시 포장 밖으로 나가 노좌(露坐)하였다. 금루관이 현궁에 내릴 정시라고 들어와서 아뢰었다. 이에 원소 도감이 먼저 첩목(貼木) 3개를 외재궁 안에 설치하였는데, 1개는 북쪽에 가로로 놓고 2개는 동쪽과 서쪽에 세로로 놓았다. 또 소목(槊木)을 이용하되, 그 끝의 약간 얇은 곳이 북쪽을 향하도록 하여 양쪽 첩목의 아래에 세로로 놓았다. 관축목(貫軸木)을 퇴광 윤여(退壙輪轝)의 북쪽 끝에 좌우 각각 1개씩 설치하였는데, 길이가 1척 4촌이고, 북쪽 높이가 6촌이다. 그 사이에 너비

가 2촌, 높이가 4촌인 둥근 구멍을 뚫고, 위와 아래에 각각 1촌씩 남겨 두었으며, 바깥은 그 남쪽을 점점 줄어들게 하여 2개의 쇠못〔鐵釘〕을 박았다. 발〔簾〕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생긴 허리가 가는 소윤축(小輪軸)을 만들고, 둥근 쇠못 2개로 좌우의 관축목을 관통시켰다. 또 소목환(小木丸) 4개를 두 윤축(輪軸)의 상하에 나누어 놓았다. 홍사(紅絲)로 끈을 만들어 가운데를 굽혀서 재궁의 남쪽 끝을 향하여 둘둘 감고, 그 양쪽 끝을 각각 좌우 윤축의 허리에 감아서 그 끝을 끌어냈는데, 또 별간역 몇 사람으로 하여금 돕게 하였다. 이때에 총호사와 내외 도감의 당상·도청, 삼물소 낭청(三物所郎廳) 이명걸(李命杰)·이지원(李祉源),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 종척 집사(宗戚執事), 별간역은 옹가의 안에 있고, 나머지 관원은 참석하지 못하였다. 종척 집사가 소금저를 제거하고 결과를 풀고, 녹로(轆轤)의 숙마(熟麻)를 싼 백저포줄(白苧布紲) 2거리와 철녹로(鐵轆轤)의 백세포편결줄(白細布編結紲) 4거리로 재궁을 받들어 조금 들어 올린 뒤에 결과한 것과 소방목, 산륜목을 철거하고 서서히 받들어서 내리고, 또 퇴광 위에 배설한 철녹로와 내왕판을 철거하였다. 종척 집사가 대관의(大棺衣)를 철거하였다. 우의정 김종수가 층계를 거쳐 퇴광 안으로 내려가서 설면자(雪綿子)와 면주건(綿紬巾)을 향온소합수(香醞蘇合水)에 적셔서 재궁을 깨끗하게 닦았다. 유의(遺衣)는 미리 재궁 위에 봉안하였고, 명정을 관의(棺衣) 위에 꿰맸으며, 보삽(黼翣)과 불삽(黻翣) 각각 2개씩을 이금(泥金)으로 그려서 관의의 좌우에 꿰매서 붙였다. 총호사 이하가 초계석(初階石)의 밖으로 물러나 엎드려서 슬픔을 다하여 곡을 하였다. 내가 몸부림치며 호곡(號哭)하는 사이에 격기가 치밀어 올랐다. 시원임 대신, 승지, 사관, 각신이 놀라서 황급히 앞으로 나아와 곡을 중지하기를 힘껏 청하였으나, 기도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여 대답할 수가 없었다. 장생전 제조 이문원이 지기목(支機木)을 이용하여 재궁의 하우판을 등에 짊어지고 시한에 맞추어 받들고 들어온 뒤에 재궁 안에 배설한 솔목(笠木)과 격목(隔木) 등 따위를 철거하였다. 총호사 이하가 또 초계석의 밖으로 물러나 엎드려서 곡을 하고 재배하였다. 내가 기운이 더욱 위태로워지자 좌우에서 팔짱을 끼고 겨우 재배례(再拜禮)를 행하였다. 시원임 대신, 승지, 사관, 각신, 별군직이 앞으로 나아와서 부축하여 소차로 돌아왔다. 도감의 제조와 장생전 제조가 하속(下屬)들을 거느리고서 외재궁 정하우판(正下隅板)을 가져다가 합치고, 봉합한 곳을 옻칠한 세포(細布)로 둘러 감았다. 영의정 이재협과 집의 박성태(朴聖泰)가 현궁의 문에 봉표(封標)하는 것을 감독하였다. 삼물소 낭청 이정회(李廷恢)가 두꺼운 종이〔厚紙〕를 하우판의 한 중앙에 아교로 붙이고, 박성태가 '신이 삼가 봉함〔臣謹封〕'이라고 썼다. 우의정 김종수가 흙 9삽(鍤)을 덮고, 도감의 당상과 낭청이 공작을 거느리고서 먼저 이회(泥灰)로 좌우의 장(墻 관의 옆 널)의 회를 보축(補築)하였다. 광중 남쪽의 3척 떨어진 곳에 가로로 격판(隔板)을 설치한 뒤에 회(灰)를 3장(墻)과 같이 쌓고, 반부형(半釜形)을 보축하였다. 옹가의 왼쪽에 땅을 청소하고, 관상감(觀象監)이 의주와 같이 후토(后土)에게 제사하였다. 불에 태울 기구(器具)들을 백성(栢城) 안의 경지(庚地)에서 불살랐다. 우제를 거행할 때가 되자, 전폐례(奠幣禮)와 초헌례(初獻禮)를 친행(親行)하였다. 판중추부사 김익(金熤)과 영의정 이재협이 아헌례(亞獻禮)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였다. 대축(大祝)이 지방궤(紙牓櫃)를 받들어 요여(腰輿)에 안치하고, 도감의 당상과 본원(本園)의 관원, 승지 이집두(李集斗)가 같이 배진(陪進)하여 곡장(曲墻) 안에 매안(埋安)하였다. 내가 정자각 동쪽 섬돌 아래에서 지송(祗送)하고, 걸어서 홍살문(紅箭門)을 나와 보여를 타고 재실로 돌아왔다.

하교하기를, "대례(大禮)를 이제 완성하였으니, 이러한 때 입궐하여 자궁을 뵙는 것은 일시라도 지체하며 미루어서는 안 된다. 내일 일찍 출발하여 **수원** 새 읍에서 주정(晝停)하고,

과천 숙소에서 머무르고, 모레 환궁(還宮)할 것이니, 병조로 하여금 노정(路程)을 즉시 다시 마련하게 하라. 내일 군령(軍令)은 진시(辰時) 정(正)으로 하라." 하였다. 이날 밤에 보여를 타고 원소에 나아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역사(役事)를 직접 살폈다.

강下玄宮行虞祭

목予奉審金井機左右四方訖出就隧道閣東邊小次連飭禁漏隨告漏籌又命承旨 閣臣等曰夜中定時最宜審愼卿等輪回往禁漏詳細看審右相方帶雲觀提擧躬詣詳報已而禁漏以下玄宮正時前一刻入奏予詣隧道閣內傳玉帛位北向立執事各捧玉帛函以次跪授近侍近侍南向跪進予以次受之傳于領議政 李在協 在協以次跪受入跪奠于退壙之西予還就布帳外露坐禁漏以下玄宮正時入奏於是園所都監先以貼木三置于外梓宮內一橫置于北二縱置于東西又用槊木以其末端稍薄處向北縱置於兩傍貼木之下設貫軸木於退壙輪輿之北端左右各一長一尺四寸北高六寸圓鑿其間濶二寸高四寸上下各留一寸外則殺其南着兩鐵釘造小輪軸細腰如揭簾所用者用園鐵釘二通貫於左右貫軸木又以小木丸四分置於兩輪軸上下以紅絲爲索而中屈之向梓宮南端環繞以其兩端各繞左右輪軸之腰引出其端又令別看役數人助之時總護使內外都監堂上都廳 三物所郎廳 李命杰 李祉源時原任大臣宗戚執事 別看役在甕家內餘外官員無得入參宗戚執事去素錦褚解結裹以轆轤熟麻裹白苧布紵二巨里鐵轆轤白細布編結紵四巨里奉梓宮稍陞後撤去結裹及小防木散輪木徐徐奉下又撤去壙上所排鐵轆轤及來往板宗戚執事撤大棺衣右議政 金鍾秀由層階下退壙中以雪綿衣綿紬巾漬香醞蘇合水淨拭梓宮而遺衣先已奉安于梓宮上銘旌縫綴于棺衣上黼翣 黻翣各二以泥金畫棺衣左右總護使以下退伏初階外哭盡哀予卽擗之際膈氣衝亘時原任大臣承史 閣臣驚遑進前力請止哭而氣結臆塞不能答長生殿提調 李文源以支機木背負梓宮下隅準限奉入後撤梓宮內所設笆木隔木等屬總護使以下又爲退伏於初階外哭再拜予氣益凜綴左右挾掖僅行再拜禮時原任大臣承史 閣臣及別軍職進前扶護還小次都監提調及長生殿提調率其屬取外梓宮正下隅板合之其合縫處周回以漆塗細布領議政 李在協 執義 朴聖泰竝監封標玄宮門三物所郎廳 李廷恢將厚紙膠貼下隅板正中聖泰署以臣謹封右議政 金鍾秀覆土九鍤都監堂郎率工作先以泥灰塡補左右墻灰壙中南距三尺橫置隔板築灰如三墻補築半釜之形除地於甕家之左觀象監祠石土如儀燒火諸具於栢城內庚地焚之虞祭時至親行奠幣禮初獻禮判府事 金煜 領議政 李在協行亞終獻禮訖大祝捧紙牓櫃安於腰輿都監堂上及本園官承旨 李集斗同爲陪進埋安於曲墻內予祗送於丁字閣東階下步出紅箭門乘步輿還齋室敎曰大禮今已克襄此時入覲慈宮不可一時遲留明日早發<u>水原</u>新邑晝停果川宿所再明日還宮令兵曹路程卽爲改磨鍊明日軍令以辰正爲之是夜步輿詣園所親審役事凡二次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7일(기미)

강입직

목대교 김조순(金祖淳)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8일(경신)

강원소(園所)에 나아가 역사(役事)를 독려하였다.

목○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다시 보여(步輿)를 타고 원소에 나아갔다. 홍살문에 이르러 여에서 내려 걸어서 옹가(甕家) 안으로 나아가 역부(役夫)를 지휘하였다. 총호사 <u>채제공(蔡濟恭)</u>에게 이르기를, "어제 아침에 들으니 안개가 잔뜩 끼었을 때 옹가 안에는 한 점의 안개도 없이 맑았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그러하였는가? 일찍이 을묘년(1735, 영조11) 정월 22일에도 안개가 끼었다고 들은 적이 있지만, 어제 안개가 낀 것도 기이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이어서 **채제공**에게 물러나 쉬라고 명하였다. 걸어서 작문(作門) 밖으로 나와 여를 타고 재전(齋殿)으로 돌아왔다. 잠시 뒤에 다시 옹가 안으로 나아가 역사를 독려하고, 역부에게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물자를 주라고 신칙하였다. **채제공**이 또 재전으로 돌아갈 것을 힘써 청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강詣園所董役

목天未明復以步輿詣園所至紅箭門降輿步詣甕家內指揮役夫謂總護使 **蔡濟恭**曰昨朝聞霧氣漫蔽之時甕家內明淨無一點云果然否嘗伏聞乙卯正月二十二日亦有霧氣云昨日之霧不亦異乎仍命濟恭退憩步出作門外乘輿還齋殿尋復詣甕家內董役飭饋役夫以禦寒之資濟恭又力請還御齋殿從之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8일(경신)

강과천현(果川縣)에 머물렀다.

목○ 시복(緦服)을 갖추고 보여를 타고 홍살문 밖에 나아가 여에서 내렸다. 수도각(隧道閣)의 판위(版位)에 나아가 사원례(辭園禮)를 행하고, 옹가 안으로 나아가 살폈다. 도로 홍살문 밖으로 나아가 보여를 탔다. 승지 이집두(李集斗)는 원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반월형(半月形)이 지평(地平)에 이르고 퇴광(退壙)에 회(灰)를 쌓기를 기다려 초계석(初階石)을 봉심(奉審)한 뒤에 뒤따라오라고 명하였다. 재실(齋室)로 돌아와 평융복(平戎服)으로 갈아입고 교(轎)를 타고 재실을 나왔다. **상류천**(**上柳川**)과 **하류천**(下**柳川**)을 거쳐서 **수원(水原)** 새 읍의 향교(鄕校) 앞에 이르니, 유생(儒生) 10여 인이 길 오른쪽에서 지영(祗迎)하였다. 작문(作門)을 열라고 명하고 소견하였다.

이어서 하유(下諭)하기를, "내년 봄 원행(園行) 때에 과거를 설행하여 선비를 시취(試取)할 것이니, 부지런히 학업을 닦아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승지 신기(申耆)가 아뢰기를, "교에 매는 말에 대해 신칙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지금 또 전처럼 삼가지 않았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본시(本寺)의 제조(提調)를 엄중히 감처(勘處)해야 하나 본원(本院)이 추고(推考)하기를 청하는 것 외에는 달리 시행할 만한 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여, 엄하게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사복시 일제조(司僕寺一提調)는 그의 뜻에 따라 체차(遞差)해 주고, 제조는 체차하며, 사복시의 내승(內乘)과 첨정(僉正)은 모두 태거(汰去)하라." 하였다.

수원부(水原府)의 관문(官門)에 이르러 교에서 말을 풀고 행궁(行宮)으로 들어갔다. 경기감사와 **수원 부사(水原府使**)는 부로(父老)와 장교(將校) 등을 거느리고 와서 대령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호조 판서 서유린(徐有隣)은 입시하여 하교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내가 즉위한 이후로 그대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베풀지 못하여 마음에 항상 부끄럽게 여겼다. 하물며 금번 천봉(遷奉)하는 예(禮)는 국가의 막중한 대사(大事)이며 과인(寡人)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맺혀 있던 뜻이었으므로,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 없이 인정과 예의를 다하기 위하여 그대들로 하여금 옮겨 거주하게 하는 노고를 끼쳤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대들이 떳떳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 재차 옮기는데도 노고를 꺼리지 않았으나, 내 마음에는 어찌 일찍이 조금이라도 편한 적이 있었겠는가. 이제 다행히 대례(大禮)가 완성되고 장례에서 정성을 폈으나, 경진년(1760, 영조36)의 지난 일을 소급하여 생각해 보면 나의 마음은 갑절로 억제하기가 어렵다. 이 지역 이 백성은 내 어버이 무덤이 있는 고장 사람이다. 예사롭게 동가(動駕)하는 곳일지라도 오히려 부담을 경감하여 보살펴 주는 일이 있는데, 하물며 그대들을 돌보아 주는 나의 마음으로 볼 때 무슨 은택인들 아낄 것인가. 바야흐로 급복(給復)이나 환자(還上)를 정퇴(停退)하는 등의 일, 장보(章甫)에게 과거를 설행하

는 일, 무사(武士)를 시사(試射)하는 일 등 약간의 조령(條令)에 대해 환궁(還宮)한 뒤에 윤음(綸音)을 별도로 내리려고 하니 그대들은 그리 알라. 그대들은 만일 진달할 만한 폐막(弊瘼)이나 원통한 일이 있으면 각각 하나하나 진달하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천봉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을 삼가 보았으니, 비록 어리석은 마음으로도 또한 몹시 기쁩니다. 원소의 역사는 모두 몇 날과 몇 달이 걸렸으나, 군인(軍人)에게는 고가(雇價)를 후하게 주었고 점막(店幕)에 대해서는 착취하는 것을 거듭 금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주(移住)한 백성들의 경우에는 갑절이나 되는 은택을 치우치게 입어, 지금은 집을 짓고 창문을 막고 문을 발라서 각각 편안하게 거주하며 생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살 곳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었으며 모두가 삶을 즐겁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 또 어찌 진달할 만한 폐막이나 원통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서유린 등이 돌아와서 백성들이 아뢴 말을 아뢰자, 내가 본부(本府)의 부사(府使)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먼저 물러나서 다시 남은 뜻을 거듭 선포하라고 명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수원**의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푸는 윤음을 환궁한 뒤에 써서 내릴 것이니, 감영(監營)과 고을이 상의하여 행궁에 게판(揭板)하고 이어 방곡(坊曲)에 선포하여 각각 잘 알게 하라." 하였다. 이어 속미음(粟米飮) 1첩(貼)을 달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속미음을 먹고 하교하기를, "**수원**의 주정참(晝停站)에서 과천의 숙소참(宿所站)에 이를 때까지는 금위대장(禁衛大將)이 마병(馬兵)과 기사(騎士)를 거느리고 선상(先廂)이 되며, 금군 별장(禁軍別將)이 선대 금군(先隊禁軍)과 후대 금군(後隊禁軍)을 모두 영솔하여 후상(後廂)이 되고, 훈련대장(訓鍊大將)이 두 영(營)의 보군(步軍)을 거느리고 후상의 미국(尾局)에서 약간 사이를 두고 대오(隊伍)를 짓되 사이가 끊어지는 것에 구애받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천천히 행군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수원** 관사와 과천 관사의 숙소(宿所)를 앞으로 동가할 때에는 품처(稟處)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라고 기영(畿營)에 분부하라." 하였다. 승지 홍인호(洪仁浩)가 아뢰기를, "초취(初吹)가 울리기도 전에 시위(侍衛)가 지레 앞서 자리를 떠났으니, 해당 병조의 당상을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체차하라고 명하였다. 교를 타고 재실을 나와 교에 말을 매고, 공조 판서 이문원(李文源)을 소견하였다. 일용면(日用面)을 거쳐 사천점(**沙川**店)에 이르러 광주(廣州)의 창사(倉舍)로 들어가 교에서 내려 조금 머물렀다. 교를 타고 창사를 나와 은행정(銀杏亭)을 거쳐 과천의 현문(縣門)을 들어가 교에서 말을 풀고 행궁으로 들어갔다.
하교하기를, "내국(內局)의 도제조(都提調)는 병이 있다고 하니 그의 뜻에 따라 체차해 주고, 먼저 즉시 집으로 돌아가 안심하고 조리하라고 사관(史官)을 보내어 전유(傳諭)하게 하라." 하였다.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과 과천 현감(果川縣監) 윤행임(尹行任)은 백성을 거느리고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조금 전에 **수원**의 백성들에게 선유(宣諭)한 하교를 가지고 기백(畿伯)과 본읍(本邑)의 수령이 일일이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서유방 등이 명을 받들어 선포한 뒤에, 물러가라고 명하였다.
강駕次果川縣

목具緦服乘步輿詣紅箭門外降輿詣隧道閣版位行辭園禮進審甕家內還就紅箭門外乘步輿命承旨 李集斗仍留園所以待半月形地平退壙築灰一階奉審後追到還齋室改具平戎服乘轎出齋室由上下**柳川**至**水原**新邑鄕校前儒生十餘人祗迎道右命開作門而召見仍諭以明春園行時設科試士勤修學業以爲觀光之地承旨 申耆啓言駕轎馬申飭非止一再而今復如前不謹事甚駭然本寺提調所當重勘而本院請

推外無他可施之罰何以爲之命從重推考又敎以司僕一提調許副提調遞差司僕內乘 僉正竝汰去至水原府官門稅駕入行宮命京畿監司 水原府使率父老校屬來待仍命戶曹判書 徐有隣入侍以下敎傳布民人曰自予御極以後無一惠澤及於爾等心常愧忸況今遷奉之禮國家莫重之大事也寡人結轖之宿心也他不暇顧爲盡情禮使爾等有遷徙之勞爾等雖以秉彝之心不爲重遷而憚勞在予心何嘗少弛今幸大禮克完終事伸誠追惟庚辰往事予懷一倍難抑是地是民卽予松楸桑梓之人也雖於尋常動駕之所尙有蠲恤之擧況以予顧恤爾輩之心何恩可惜方以給復停還等事章甫設科武士試射等略干條令欲於還宮後別下綸音爾等知悉爾等如有弊瘼及冤菀之可達者其各一一陳之民人等對曰仰覩遷奉順成雖以蠢蠢之心亦切歡忭園所役事凡幾日月而軍人則厚給雇價店幕則申禁徵求至於遷徙之民偏蒙加倍之澤今方結構屋宇墐塞向戶各安居而專業曾無失所之患擧懷樂生之心又安有弊瘼之可陳冤菀之可達乎有隣等回奏予命本府使率民人先退更將餘意申布予曰水原民人惠恤綸音還宮後當書下營邑相議揭板于行宮仍布坊曲俾各知悉仍命粟米飮一貼煎入進御敎曰自水原晝停站至果川宿所站時禁衛大將率馬兵騎士爲先廂禁軍別將 都領先後隊禁軍爲後廂訓鍊大將率兩營步軍後廂尾局稍間作行勿拘絕阻務從緩行又敎曰水原 果川官舍宿所處此後動駕時勿稟仍用事分付畿營 承旨 洪仁浩啓言初吹未下之前侍衛經先離次當該兵曹堂上請推考命遞差乘轎出齋室駕馬召見工曹判書 李文源由日用面至沙川店入廣州倉舍降轎小駐乘轎出倉舍由銀杏亭入果川縣門稅駕入行宮敎曰內局都提調聞有所愼許副先卽還第安心調理事遣史官傳諭命京畿監司 徐有防 果川縣監 尹行任率民人入侍予曰俄者水原民人處宣諭之敎畿伯與本倅一一曉諭有防等承命宣布後命退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8일(경신)

강윤행임(尹行任)을 직각(直閣)으로 삼았다. 전망(前望)이다.

목○ 목(目)이 없는 기사임

강以尹行任爲直閣 前望也

목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8일(경신)

강천원도감(遷園都監)의 당상과 낭청 이하에게 모두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목○ 하교하기를, "천원도감의 당상과 낭청 이하에 대한 별단(別單)을 먼저 서계(書啓)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정관(政官)을 패초(牌招)하여 정사를 열어서 도감에 대한 상전(賞典)을 오늘 정사에서 하비(下批)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천원도감 총호사(遷園都監摠護使)인 판부사 김익(金熤)과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는 각각 안구마(鞍具馬) 1필(匹)을 면급(面給)하고, 봉증옥백관(奉贈玉帛官)인 영의정 이재협(李在協)에게는 숙마(熟馬) 1필을 면급하며, 제조(提調)인 호조 판서 서유린(徐有隣), 병조 판서 윤숙(尹塾), 전(前) 판서 이재간(李在簡)은 가자(加資)하고, 예조 판서 정창순(鄭昌順)에게는 별도로 상전이 있었으니 반숙마(半熟馬) 1필을 사급(賜給)하라. 도청 낭청인 규장각 직각 이만수(李晩秀)와 병조 정랑 이익운(李益運)은 모두 가자하라. 낭청인 부사과 이명걸(李命杰), 호조 정랑 홍이호(洪彝浩), 예조 좌랑 연동헌(延東憲), 부사과 윤희후(尹羲厚)·윤광석(尹光碩), 상의원 첨정 이항연(李恒演)은 모두 승서(陞敍)하라. 공조 정랑 조정현(趙廷鉉)은 날짜가 얼마 안 되었고, 돈녕부 도정 이창회(李昌會)는 이미 승자(陞資)하였으니 각각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라. 감조관(監造官)인 제용감 직장 이시원(李始源), 부사용 신광하(申光河)·박수형(朴壽亨)·박일원(朴日源), 내외 별공작(內外別

工作)인 선공감 봉사(繕工監奉事) 서유병(徐有秉), 감역관(監役官) 송재위(宋載緯)는 모두 승륙(陞六)하라. 지방소 감조관(紙牓所監造官) 서욱수(徐郁修)는 승서하되, 이미 승서하였으면 준직(準職)에 제수하고 이미 준직을 거쳤으면 다시 계품(啓稟)하라. 분장흥고 봉사(分長興庫奉事) 홍낙정(洪樂正), 분전설사 별검(分典設司別檢) 황인도(黃仁燾)는 모두 승서하라. 재궁 상자 서사관(梓宮上字書寫官)인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 광중 명정 서사관(壙中銘旌書寫官)인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는 각각 안구마 1필을 사급하라. 표석 대자전문 서사관(表石大字篆文書寫官)인 판돈녕(判敦寧) 윤동섬(尹東暹), 음기 서사관(陰記書寫官)인 봉조하(奉朝賀) 조돈(趙暾), 행로 명정 서사관(行路銘旌書寫官)인 판돈녕 이명식(李命植), 지방 서사관(紙牓書寫官)인 부사직 윤사국(尹師國)은 모두 가자하되, 그 가운데 이미 보국대부(輔國大夫)로 승진한 사람에게는 숙마 1필을 사급하라. 식재궁관(拭梓宮官)인 우의정 김종수(金鍾秀), 솔여재궁관(帥舁梓宮官)인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을 사급하라. 대전관 겸 수빈관(代奠官兼守殯官)인 안춘군(安春君) 이침(李)은 가자하되, 이미 자궁(資窮)이 되었으면 숙마 1필을 면급하라. 돈체사(頓遞使)인 한성부 판윤 김문순(金文淳), 배왕 대장(陪往大將)인 부호군(副護軍) 임률(任嶪)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을 사급하라. 배왕 대장 이주국(李柱國)은 새 원소와 구 원소에서 모두 이 일을 감독하였으니, 이번에 특별히 제수하는 것은 그 뜻이 어찌 우연히 하는 것이겠는가. 숙마 1필을 면급하라. 고계원 대축(告啓園大祝)인 응교 이경오(李敬五), 개봉관(開封官)인 집의 박성태(朴聖泰), 출납 대축(出納大祝)인 부사과 이제만(李濟萬), 봉폐관(封閉官)인 집의 박성태(朴聖泰), 섭상례(攝相禮) 권유(權裕)·박장설(朴長卨), 성빈전(成殯奠)부터 계빈전(啓殯奠)까지 각 전(奠)의 통례(通禮)인 박황(朴鍠)·여만영(呂萬永)은 모두 가자하라. 재궁을 닦을 때 새 원소와 구 원소의 집건 집사(執巾執事), 집수 집사(執水執事), 봉증옥백 집사(奉贈玉帛執事), 섭사복시정(攝司僕寺正), 만장 서사관(挽章書寫官)에게는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옥백거안 집사(玉帛擧案執事), 욕석 집사(褥席執事), 상 차비(箱差備), 파 차비(帕差備), 좌자 차비(坐子差備), 탁 차비(卓差備), 관의함 차비(棺衣函差備), 명정함 차비관(銘旌函差備官), 우보 봉지관(羽葆奉持官) 등에게는 각각 한 자급(資級)을 더하되, 자궁이 된 자는 대가(代加)하라. 여재궁관(舁梓宮官)인 선전관 이백연(李栢然)·심영(沈鍒)은 상당직(相當職)에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승서하라. 여사 종사관(輦士從事官)인 전(前) 첨정(僉正) 원영주(元永胄), 전 도사(都事) 오철상(吳徹常)은 승서하고, 찬의(贊儀) 이형필(李衡弼)은 외직(外職) 4품에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제수하라. 섭전의(攝典儀) 김동람(金東覽)은 승서하고, 동창 인의(東唱引儀)와 서창 인의(西唱引儀)에게는 각각 한 자급을 더하되, 자궁이 된 자는 대가하라. 명정 봉지(銘旌奉持)인 충의(忠義) 박창수(朴昌壽)는 수위관(守衛官)에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제수하라. 분승지(分承旨) 박종악(朴宗岳)·신광리(申光履)는 모두 가자하고, 분사관(分史官) 유한우(兪漢寓)·박윤수(朴崙壽)·이상황(李相璜)은 모두 승륙하라. 분병조 참지(分兵曹參知) 정존중(鄭存中), 분부총관(分副摠管) 한광계(韓光棨)·임률(任嶪)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을 사급하라. 분병조 정랑(分兵曹正郎) 윤득부(尹得孚), 분도총부 도사(分都摠府都事) 신광로(申光輅), 오위장(五衛將) 김항주(金恒柱)·홍병은(洪秉殷)에게는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되, 직임이 없는 자는 복직(復職)시키라. 무겸(武兼)과 일산사지(日傘事知)에게는 상현궁(上弦弓) 1장(張)을 사급하고, 신련 시위(神輦侍衛)와 대여 시위(大轝侍衛)인 별군직(別軍職) 이유경(李儒敬)·임성열(任聖說)·전문현(田文顯)·한광제(韓光濟)·이요헌(李堯憲)·왕한정(王漢禎)에게는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결과(結裹)할 때 진관의 종척집사(進棺衣宗戚執事)인 광은부위(光恩副尉) 김기성(金箕性), 성주 목사(星

州牧使) 홍수영(洪守榮), 결과 집사(結裹執事) 이유경(李儒敬)·임성열(任聖說)·이석(李晳)·오의상(吳毅常)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을 사급하라. 현궁(玄宮)에서 들어낼 때와 현궁에 내릴 때, 결과할 때의 집사인 별간역(別看役) 전 현감(縣監) 이예보(李禮輔), 전 찰방(察訪) 정여연(鄭如淵), 전 첨사(僉使) 변세의(卞世義)·정우태(丁遇泰)는 공로가 많았으니, 모두 수령(守令)에 제수하라. 현궁에서 들어낼 때의 집사인 별간역 가선대부(嘉善大夫) 정도홍(鄭道弘), 전 별장(別將) 이대번(李大蕃)은 모두 가자하라. 택일관(擇日官)인 전 감목관(監牧官) 지일빈(池日賓), 전 별제(別提) 지경철(池景喆)은 감목관이나 찰방(察訪) 중에서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서 조용(調用)하라. 평구 찰방(平丘察訪) 김희경(金喜慶)은 승서하고, 주시관(奏時官) 윤도홍(尹道弘)은 상당직에 조용하라. 상지관(相地官) 박흥수(朴興壽)는 본 아문(衙門)으로 하여금 고품(高品)에 부료(付料)하게 하라. '상' 자에 광칠(光漆)을 한 화원(畵員) 허감(許礛), 보획 사자관(補畫寫字官) 홍경운(洪慶運)은 변장(邊將)에 제수하라. 본도(本道)의 관찰사 서유방(徐有防)에게는 숙마 1필을 면급하라. 구 원소의 지방관인 양주 목사(楊州牧使) 임시철(林蓍喆), 숙소(宿所)의 지방관인 과천 현감(果川縣監) 윤행임(尹行任), 연도(沿道)의 지방관인 광주 부윤(廣州府尹) 민태혁(閔台爀), 새 원소의 지방관인 **수원 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心泰)**는 모두 규례대로 가자하라. 그 나머지 패장(牌將), 화원, 사자관(寫字官), 계사(計士), 원역(員役), 공장(工匠) 등에게는 별단에 대해 판하(判下)한 대로 해조(該曹)로 하여금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게 하라." 하였다.

○ 하교하기를, "천원(遷園) 때의 종척 집사인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에게는 숙마 1필을 면급하고, 광은부위(光恩副尉) 김기성(金箕性), 행 부사직(行副司直) 김노영(金魯永), 목사(牧使) 홍수영(洪守榮), 주부(主簿) 홍최영(洪最榮), 동지(同知) 이인강(李仁康)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을 사급하라. 현령(縣令) 김노성(金魯成), 판관(判官) 황기옥(黃基玉), 영(令) 서정순(徐鼎淳), 참봉(參奉) 홍취영(洪就榮), 사용(司勇) 김노경(金魯敬)·홍후영(洪後榮)은 모두 승서하되, 아직 승서되지 않은 자는 승륙하라. 직장(直長) 김재창(金在昌)에게는 아마 1필을 사급하라." 하였다.

○ 하교하기를, "길지(吉地)로 천봉(遷奉)하는 데에는 도위(都尉)의 공로가 막중하였으니, 그 공로를 갚으려고 하면 무슨 상인들 아낄 수 있겠는가. 예사롭게 힘을 쓴 공로에 대해서도 오히려 철권(鐵券)을 내려 주고 전민(田民)을 더해 주는데, 하물며 막중하고 막대하며 매우 존귀하고 경건한 일이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사체가 각각 다르므로 공훈(功勳)에 대해서는 진실로 갑자기 의논할 수가 없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기쁨을 기념하는 거조(擧措)를 특별히 보여 주어야 한다. 금성위 박명원에게 전(田) 10결(結), 종 10구(口), 계집종 10구, 은자(銀子) 100냥(兩), 안구내구마(鞍具內廐馬) 1필 등을 특별히 사급하라. 이에 따라 정원으로 하여금 왕패(王牌)를 작성해 주고 승지를 보내어 전유(傳諭)하게 하라." 하였다.

○ 하교하기를, "어제(御製)의 사체가 자별하므로 새기는 일을 친림(親臨)하여 독려하였으니, 그 일을 중히 여기는 방도로 볼 때 별도로 나의 뜻을 보여 주는 일이 있어야 한다. 하물며 외도감(外都監)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처리한 적이 있었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지문 감각 당상(誌文監刻堂上)인 공조 판서 정창순(鄭昌順)에 대한 상전은 가자로 시행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부교(浮橋)를 설치한 일은 국조(國朝)에 처음 있는 일로,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왕명을 봉행하였으니, 이에 대해서도 포상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영가(靈駕)를 받들고 나아갈 때 매우 평온하였으니, 그 노고에 대해서는 더욱 기념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종1품에 제수하고 오늘 정사에서 의망(擬望)하여 들이라."

하였다. 이어 지석 감각 낭청(誌石監刻郎廳)인 호조 좌랑(戶曹佐郎) 김봉현(金鳳顯)을 승서

하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빈궁소 제조(殯宮所提調)는 이번에 공동으로 역사(役事)를 감독하였으니 상전은 거론하지 말라. 도청(都廳) 이익운(李益運)은 가자하고, 낭청 윤광석(尹光碩)·이항연(李恒演), 별공작(別工作) 서유병(徐有秉), 감조관 이시원(李始源)은 모두 승서하라. 사알 백경현(白景炫)·임흥수(林興壽)는 모두 상가(賞加)하고, 그중 본궁(本宮)에서 전에 벼슬한 별감(別監) 등에게는 해조로 하여금 첩가(帖加)를 작성해 주게 하고, 그 나머지 액례(掖隷)와 원역 등에 대해서는 별단에 대해 판하한 대로 등급을 나누어서 시상하게 하라.” 하였다.
○ 하교하기를, “빈궁 차지(殯宮次知)인 중관(中官) 이한겸(李漢謙)에게는 숙마 1필을 면급하고, 도설리(都薛里) 박상연(朴尙衍)·김성엽(金聖燁), 지방 승전색(紙牓承傳色) 정국윤(鄭國允), 진지 장번(進止長番) 김우장(金佑章), 종사관(從事官) 김귀덕(金歸德), 설리 겸 주방(薛里兼酒房) 도국필(都國弼)·박정희(朴廷熙), 명정 차비(銘旌差備) 이성흡(李性洽)은 모두 가자하라. 진지 차비(進止差備) 백상채(白尙采)·한창규(韓昌奎)·이춘행(李春行)·조명순(趙命純)에게는 반숙마 1필을 사급하고, 소선 차비(素扇差備) 박봉우(朴鳳遇)·윤인호(尹仁豪), 소개 차비(素蓋差備) 신익철(申益喆)·윤흥신(尹興莘), 영좌 차비(靈座差備) 탁종한(卓宗漢)·손중희(孫重熙), 곡 차비(哭差備) 전세흥(全世興) 등 12원(員), 나배 차비(羅排差備) 이춘식(李春植) 등 8원에게는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되, 그중에서 김창복(金昌福)·김응석(金應碩)·전유성(田有成)·강상오(姜尙吳)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을 사급하라.” 하였다.
○ 하교하기를, “이번에 영여(靈輿)를 편안히 봉안한 것은 모두 군인(軍人)과 두목(頭目)이 정성을 다해 거행하였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노고가 가장 많았던 사람에게는 첩가를 작성해 주고 성명을 도감으로 하여금 서계(書啓)하게 하라. 부교와 선창(船艙)의 경우에도 그러하니 모두 이 규례에 의거해서 거행하고, 이어 성명을 해조로 하여금 오늘 안으로 써서 들이게 하라. 검칙(檢飭)한 공조의 낭청과 감역관(監役官)은 승서하고, 집선 차원(執船差員) 김주연(金珠淵)·유득공(柳得恭)도 승서하라. 비록 근무한 일수가 얼마 안 되었으나 정일(正日)에 주관을 하였으니, 남이오(南履五)에게 반숙마 1필을 사급하라. 삼도(三道)의 선척(船隻) 중에서 영솔해 오지 못한 곳은 거론하지 말고, 영솔해 온 곳의 곤비(閫裨)에 대해서는 일체 이름을 물어서 초기(草記)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하교하기를, “이번 상전은 한 사람이 몇 가지 일을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전을 중첩하여 주지 말고, 당하관(堂下官)으로서 가자된 사람 중에 만일 아직 준직을 거치지 않은 자가 있으면 구애받지 말고 의망하여 들이라고 해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 이조가 전 응교 이경오(李敬五)가 현재 문외출송(門外黜送) 중에 있다고 아뢴 데 대해, 탕척(蕩滌)하라고 명하였다. 또 봉상시 정(奉常寺正) 서욱수(徐郁修)가 준직을 거쳤다고 아뢴 데 대해, 가자하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비록 저와 같이 천한 자들일지라도 그 노고가 이와 같았으니, 목수(木手) 윤득신(尹得莘), 석수(石手) 김대휘(金大輝), 칠장(漆匠) 박세득(朴世得), 대여 변수(大轝邊首) 김창려(金昌麗), 사토장(沙土匠) 편세운(片世雲)은 모두 해조로 하여금 오늘 안으로 첩가를 작성해 주게 하고, 이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면천(免賤)시켜 주라. 사지 수복(事知守僕) 박창언(朴昌彦)에게도 첩가를 작성해 주게 하고, 일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면천시켜 주라. 본궁(本宮)과 본원(本園)의 행수 수복(行首守僕)에게도 첩가를 작성해 주게 하고, 그 나머지 원소에 대령했던 서울과 지방의 수복과 옮겨온 원군(園軍) 등에게는 해조로 하여

금 전례를 참고하여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하교하기를, “나라에 일이 있으면 어느 때인들 노고하지 않았겠는가만, 공인(貢人)이 장시간 대령할 때와 각종 물품을 진배(進排)할 때 폐해를 입힌 것이 적지 않았고 시민(市民)이 100여 리(里)를 받들고 나아갈 때 인예(引曳)하는 일로 수고를 끼친 것도 컸으니, 공인의 이름과 시전(市廛) 상인의 이름을 구별하여 환궁(還宮)한 뒤에 즉시 별단으로 써서 들이라.” 하였다.
○ 천원도감의 별단은 다음과 같다.
○ 사초(莎草)를 떠내어 영운(領運)한 패장(牌將) 하한도(河漢圖)는 변장(邊將)에 제수하는 것으로 승전(承傳)하였고, 이현창(李顯昌) 등 2인은 가자하였으며, 계사(計士) 이문옥(李文玉)은 고품에 부료하였다.
○ 대여(大轝)를 간역(看役)한 패장 이원성(李元盛)에게는 반숙마 1필을 사급하였고, 대여의 담배군(擔陪軍)을 영솔한 패장 이현창(李顯昌)은 이미 가자하였으므로 거론하지 말도록 하였으며, 이춘기(李春琦) 등 4인은 상가(賞加)하였다. 한덕증(韓德增)·이동필(李東馝)은 선천(宣薦)이라고 하므로, 도목 정사(都目政事)에서 출륙(出六)시켜야 할 여섯 사람의 자리 중에서 두 사람을 먼저 사과(司果)에 붙이고, 오늘 정사에서 의망하여 들였다. 유치호(劉致豪) 등 8인은 상가하되, 박창화(朴昌華)는 이미 가자하였으므로 거론하지 말도록 하였다. 검칙 패장(檢飭牌將) 이형도(李亨道) 등 14인, 전인군 패장(前引軍牌將) 하한도(河漢圖) 등 3인, 후인군 패장(後引軍牌將) 김종섭(金宗燮) 등 3인, 마목군 소침군 패장(馬木軍小枕軍牌將) 이언신(李彦藎) 등 2인, 층교군 우비군 봉지낭군 패장(層橋軍雨備軍奉持郎軍牌將) 현상조(玄商祚), 내왕판군 지목군 패장(來往板軍支木軍牌將) 전덕행(全德行), 산륜군 소윤축군 내지목군 패장(散輪軍小輪軸軍內支木軍牌將) 이기정(李基定) 등 2인, 전후난간군 족대목군 패장(前後欄干軍足臺木軍牌將) 최도지(崔道祉) 등 2인, 장횡강군 단횡강군 패장(長橫杠軍短橫杠軍牌將) 조윤복(曺潤福) 등 2인, 윤대판군 소금저군 패장(輪臺板軍素錦褚軍牌將) 나필행(羅必行), 가윤대판군 가소금저군 패장(假輪臺板軍假素錦褚軍牌將) 김명한(金鳴漢), 예비군 우비군 패장(預備軍雨備軍牌將) 정재수(鄭再秀), 향정자군 패장(香亭子軍牌將) 이호만(李好萬), 예비장강군 패장(預備長杠軍牌將) 오수복(吳壽福), 화철촉롱군 패장(火鐵燭籠軍牌將) 변성대(邊成大) 등 2인은 신해년(1731, 영조7)의 전례를 참고하여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였다. 견여군(肩轝軍)과 담배군을 영솔한 패장 박만영(朴萬榮)은 좋은 곳의 변장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조용하도록 하였고, 이원철(李元喆) 등 11인은 상가하였다. 검칙 패장 황처심(黃處心) 등 14인, 전인군 패장 최성륜(崔成崙) 등 3인, 후인군 패장 김재택(金在澤) 등 2인, 마목군 소침목군 패장 손봉엽(孫鳳燁) 등 2인, 내왕판군 지목군 패장 신한제(申漢濟), 층교군 우비군 봉지낭군 패장 윤은상(尹殷相), 예비횡강군 격판군 패장(預備橫杠軍隔板軍牌將) 조윤신(曺潤身), 예비군 우비군 패장(預備軍雨備軍牌將) 장계주(張繼胄), 신련담지군 패장(神輦擔持軍牌將) 손세대(孫世大), 삼색촉롱군 패장(三色燭籠軍牌將) 김중려(金重麗)·임흥수(任興修), 신여 담배군 패장(神轝擔陪軍牌將) 이동제(李東齊), 삼색촉롱군 패장 최중현(崔重賢) 등 2인, 증옥 증백 채여군 패장(贈玉贈帛彩轝軍牌將) 유성익(劉聖益), 향정자 패장(香亭子牌將) 이춘헌(李春憲), 지석 채여군 패장(誌石彩轝軍牌將) 고용득(高龍得), 평교자군 패장(平轎子軍牌將) 정치상(鄭致祥), 죽산마청자수안마안롱군 패장(竹散馬靑紫繡鞍馬鞍籠軍牌將) 김수인(金壽仁) 등 4인, 방상시거자군 패장(方相氏車子軍牌將) 이윤철(李潤喆) 등 2인, 만장군 패장(輓章軍牌將) 신응조(辛應祚) 등 4인, 길의장군 패장(吉儀仗軍牌將) 최문성(崔文盛) 등 4인, 소의장군 패장(素儀仗軍牌將) 강위흥(姜渭興) 등 2인, 소

선급부군 패장(素扇及趺軍牌將) 최덕중(崔德重), 소개급부군 패장(素蓋及趺軍牌將) 주덕광(朱德光), 행로명정군 패장(行路銘旌軍牌將) 박동윤(朴東潤), 영좌제구급교의군 패장(靈座諸具及交椅軍牌將) 한두완(韓斗完) 등 2인, 상탁군 패장(床卓軍牌將) 이정신(李廷臣) 등 2인, 찬실제구군 패장(欑室諸具軍牌將) 이문섭(李文燮) 등 2인, 목합대군 패장(木盒臺軍牌將) 이희우(李羲遇) 등 2인, 병풍군 패장(屛風軍牌將) 조한웅(曺漢雄) 등 4인, 우산군 패장(雨傘軍牌將) 김홍인(金弘仁), 대등군 패장(大燈軍牌將) 문정환(文廷煥), 방등군 패장(方燈軍牌將) 피종후(皮宗厚), 장생전 거자군 패장(長生殿車子軍牌將) 최운규(崔雲奎), 어간내왕판군 패장(御間來往板軍牌將) 이경희(李景禧) 등 2인, 배안상군 패장(排案床軍牌將) 고도완(高道完) 등 2인, 구원소 소화물종 패장(舊園所燒火物種牌將) 백태기(白兌起), 과천 소화물종 패장(果川燒火物種牌將) 김종엽(金宗燁), 향로(香爐)와 향합(香盒)을 가져간 패장 조한윤(曺漢胤), 도유군 패장(都遊軍牌將) 이세충(李世忠) 등 2인, 대여 앞 고훤 패장(考暄牌將) 김진성(金振聲), 견여 앞 고훤 패장 김세완(金世完), 신련 앞 고훤 패장 이광연(李光淵), 상의원군 패장(尙衣院軍牌將) 양성희(梁聖希) 등 5인, 분장흥고군 패장(分長興庫軍牌將) 윤징(尹徵) 등 3인, 분전설사군 패장(分典設司軍牌將) 김성대(金聖大) 등 3인, 도청(都廳)의 수직(守直)에 대령한 포도 군관(捕盜軍官) 이흡(李洽) 등 2인, 일방(一房)의 수직에 대령한 포도 군관 윤상신(尹商莘) 등 2인, 분장흥고에 대령한 포도 군관 장경제(張景濟), 분전설사에 대령한 포도 군관 윤도표(尹道標), 이상은 신해년의 전례를 참고하여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였다.

○ 오색촉롱 패장(五色燭籠牌將) 김창겸(金昌謙) 등 11인에게는 다른 패장에게 시상한 규례에 의거하여 신해년의 전례를 참고해서 시상하였다.

○ 경패장(京牌將)인 금위영 별무사(禁衛營別武士) 이문섭(李文燮)은 가자하였고, 별기위(別騎衛) 백태기(白兌起)는 좋은 곳의 변장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서 조용하도록 하였으며, 병조의 당상 군관(堂上軍官) 조한윤(曺漢胤), 수어청 교련관(守禦廳敎鍊官) 박창화(朴昌華), 어영청 교련관(御營廳敎鍊官) 김종엽(金宗燁), 좌포청 군관(左捕廳軍官) 형재흡(邢載洽), 우포청 군관(右捕廳軍官) 김학렴(金學濂), 향패장(鄕牌將)인 경기감영 교련관(京畿監營敎鍊官) 노세갑(盧世甲), 양주 장교(楊州將校) 함덕신(咸德新)은 모두 가자하였다.

○ 지방서사 보획 사자관(紙牓書寫補畫寫字官) 이명예(李命藝), 명정(銘旌)의 전자(篆字)에 초차 보획한 화원(畫員) 최득현(崔得賢), 재차 보획한 화원 오완철(吳完喆)에게는 모두 첩가를 작성해 주고, 관의(棺衣)에 기화(起畫)한 장시흥(張始興)에게는 미(米) 10두(斗)와 목(木) 3필(疋), 신한평(申漢枰)에게는 미 3두와 목 1필, 허감(許礛)에게는 미 1석(石)과 목 5필, 한종일(韓宗一) 등 8인에게는 각각 미 3두와 목 1필을 주었다.

○ 도청(都廳)인 녹사(錄事) 최윤희(崔允禧), 계사 이경로(李景老) 등 3인, 서리(書吏) 윤인환(尹仁桓) 등 8인, 서사(書寫) 장재연(張載淵), 고지기(庫直) 진필주(陳弼周) 등 2명(名), 사령(使令) 박세근(朴世根) 등 10명, 궐하(闕下)에 대령한 서리 김계박(金繼朴), 일방 서리(一房書吏) 조상환(趙尙煥) 등 6인, 서원(書員) 신성표(申聖杓) 등 2인, 고지기 김광현(金光鉉), 사령 장한익(張漢益) 등 4명, 이방 서리(二房書吏) 김덕로(金德老) 등 4인, 서원 한광유(韓光裕) 등 2인, 고지기 김성련(金聖璉), 사령 이성운(李成雲) 등 4명, 삼방 서리(三房書吏) 윤수택(尹修宅) 등 4인, 서원 염기서(廉祺瑞) 등 2인, 고지기 최명장(崔鳴璋), 사령 정인세(丁仁世) 등 4인, 지방소 서원(紙牓所書員) 강계성(姜繼聖), 고지기 하도희(河道熙), 사령 김창득(金昌得), 내별공작(內別工作)인 계사(計士) 이명철(李命喆), 서원 임덕관(林德觀) 등 2인, 고지기 최갑득(崔甲得), 사령 지흥득(池興得), 분장흥고 서원 김복

영(金福永), 고지기 문효복(文孝福), 사령 최덕량(崔德良), 분전설사 서원 김복겸(金福兼), 고지기 정대범(鄭大範), 사령 김놈(金老味), 배왕대장 서리(陪往大將書吏) 김경일(金慶一) 등 6인, 서원 고익겸(高益謙) 등 3인, 사령 김중택(金重澤) 등 5명은 전례를 상고하여 시상하였다.

○ 원역 윤득신(尹得莘) 등 4인, 목수 김창려(金昌麗) 등 6명, 소목장(小木匠) 김용득(金龍得), 야장(冶匠) 이창빈(李昌彬) 등 3명, 박배장(朴排匠) 이덕신(李德臣), 병풍장(屛風匠) 임우춘(林遇春), 연석장(硯石匠) 김도산(金道山), 석각수(石刻手) 이동식(李東植) 등 4명, 사자관(寫字官) 홍태운(洪泰運) 등 4인, 화원 이종근(李宗根) 등 3인, 소목장 김중득(金重得) 등 3명, 목수 장덕주(張德周) 등 8명, 소인거장(小引鉅匠) 김흥이(金興伊) 등 2명, 줄장(茎匠) 김복대(金福大), 석각수 이제송(李濟松) 등 5명, 옥장(玉匠) 이광진(李光震) 등 2명, 야장 김중철(金重喆), 목수 이우춘(李遇春) 등 20명, 소목장 윤세필(尹世必) 등 8명, 야장 박영지(朴永枝) 등 5명, 대인거(大引鉅) 이덕량(李德良) 등 12명, 소인거(小引鉅) 김수명(金守命) 등 9명, 거거장(巨鉅匠) 김명산(金命山) 등 5명, 기거장(岐鉅匠) 민오종(閔五宗) 등 2명, 조각장(雕刻匠) 최풍득(崔豐得) 등 10명, 관자장(貫子匠) 송복득(宋卜得), 우산장(雨傘匠) 최계손(崔繼孫) 등 3명, 목혜장(木鞋匠) 김춘성(金春成) 등 2명, 줄장 이의빈(李儀彬) 등 9명, 매집장(每緝匠) 장흥복(張興福) 등 2명, 천혈장(穿穴匠) 김만재(金萬才) 등 2명, 마경장(磨鏡匠) 김막금(金莫金) 등 3명, 두석장(豆錫匠) 고지성(高枝成) 등 5명, 조과장(造戈匠) 이만주(李萬柱) 등 2명, 마조장(磨造匠) 이계철(李啓喆) 등 8명, 궁인(弓人) 황정욱(黃廷郁) 등 5명, 가칠장(假漆匠) 홍대성(洪大成) 등 6명, 거장(車匠) 박후종(朴厚種) 등 5명, 안자장(鞍子匠) 박지경(朴枝敬), 사립장(斜笠匠) 이창대(李昌大), 박배장 박만손(朴萬孫) 등 3명, 침선비(針線婢) 용분이(龍分伊) 등 5명, 칠장(漆匠) 김수해(金守海) 등 5명, 다회장(多繪匠) 최수륜(崔守崙) 등 5명, 납장(鑞匠) 이득이(李得伊) 등 2명, 주렴장(朱簾匠) 채인명(蔡仁明) 등 3명, 선장(船匠) 육중강(陸重康) 등 5명, 각수장(刻手匠) 박창복(朴昌福), 병풍장 김재한(金再漢) 등 3명, 동장(銅匠) 김인득(金仁得) 등 3명, 석수(石手) 안옥경(安玉景) 등 2명, 석각수 이태익(李太益) 등 16명, 도자장(刀子匠) 지순재(智順才) 등 25명, 줄장 김인손(金仁孫), 옥장 이인득(李仁得), 진칠장(眞漆匠) 김순명(金順命) 등 2명, 쇄약장(銷鑰匠) 정거복(丁巨福), 죽산마장(竹散馬匠) 김진빈(金鎭彬) 등 3명, 유골장(柾骨匠) 김치복(金致福), 마조장 이우춘(李遇春) 등 2명, 과피장(裹皮匠) 문상희(文尙禧), 방상시장(方相氏匠) 함삼득(咸三得), 모절장(旄節匠) 정세풍(鄭世風), 우보장(羽葆匠) 김덕인(金德仁), 안자장(鞍子匠) 박치경(朴致敬), 인장(茵匠) 이지운(李枝云) 등 2명, 안갑장(鞍匣匠) 한국량(韓國良), 피장(皮匠) 강선흥(姜善興) 등 5명, 조승장(造繩匠) 오일득(吳一得)은 모두 전례를 상고하여 시상하였다.

○ 대여를 각각 운반한 서부 별계 두목(西部別契頭目)인 양인(良人) 김선(金繕), 동부 성균관계 두목(東部成均館契頭目)인 양인 정태악(鄭泰岳), 차지 검칙(次知檢飭)인 가선대부 이봉소(李鳳燾), 남부 별계 두목(南部別契頭目)인 양인 박삼태(朴三泰), 북부 사재감계 두목(北部司宰監契頭目)인 양인 김구성(金九成), 이상은 첩가를 작성해 주었다. 서부 별계 지차(西部別契之次) 정세득(鄭世得), 동부 성균관계 지차(東部成均館契之次) 안광복(安光復), 남부 별계 지차(南部別契之次) 김춘대(金春大), 북부 사재감계 지차(北部司宰監契之次) 이문택(李文澤), 이상은 각각 목 1필과 포(布) 1필을 제급(題給)하였다.

○ 견여를 각각 운반한 서부 별계 두목인 양인 황옥(黃玉), 북부 사재감계 두목인 양인 이정현(李廷鉉), 중부 별계 두목(中部別契頭目)인 양인 이윤복(李允福), 이상은 첩가를 작성

해 주었다. 서부 별계 지차 김해상(金海尙), 북부 사재감계 지차 강위득(姜渭得), 중부 별계 지차(中部別契之次) 김이금(金二金), 이상은 각각 목 1필과 포 1필을 제급하였다.
○ 견여를 담배(擔陪)한 무예청(武藝廳)의 김철대(金哲大) 등 108명, 부책(扶策)한 무예청의 정덕희(鄭德禧) 등 20인에게는 미와 포를 각별히 넉넉한 수량으로 시상하였다.
○ 빈궁소의 별단은 다음과 같다.
○ 계사 이사일(李思一)·이노헌(李魯憲), 구료관(救療官) 이세형(李世珩)은 본 아문으로 하여금 고품에 부료하게 하였다.
○ 서리 이도영(李道英) 등 6인, 서원 엄필규(嚴弼奎) 등 2인, 서사 용계상(龍啓祥), 고지기 손세영(孫世榮), 사령 강세광(姜世光) 등 3명, 수직 군사(守直軍士) 봉재(奉才) 등 2명, 포도 군사(捕盜軍士) 진동(震東) 등 2명, 별공작 서원(別工作書員) 이덕래(李德來) 등 2인, 고지기 정창희(鄭昌禧), 사령 이성득(李聖得) 등 2명에게는 전례를 상고하여 시상하였다.
○ 원역 윤득신(尹得莘) 등 3인, 목수 염덕기(廉德起) 등 7명, 야장 박덕흥(朴德興) 등 2명, 목수 이복만(李福萬) 등 11명, 야장 박중발(朴重發), 목수 지태근(池泰根) 등 14명, 야장 김인대(金仁大), 박배장 고득도(高得道), 소인거 허흥손(許興孫) 등 6명, 걸거장(乞鉅匠) 권유재(權有才) 등 8명, 대인거장 김덕봉(金德奉) 등 5명, 병풍장 강덕주(姜德柱) 등 3명, 기거장 한귀금(韓貴金) 등 2명, 선장 유정빈(劉丁彬) 등 6명, 목혜장 장한필(張漢弼) 등 3명, 석수 안옥경(安玉景), 사토장(莎土匠) 김정엽(金廷燁) 등 3명, 이장(泥匠) 인광세(印光世) 등 7명, 줄장 채흥명(蔡興明) 등 4명, 가칠장 함운성(咸雲成), 마장(磨匠) 우민순(禹民順), 조과장 고득인(高得仁), 우산장 이득이(李得伊), 소목장 조덕순(趙德順) 등 2명, 이상은 전례를 상고하여 시상하였다.
○ 자색(炙色) 문복기(文復基) 등 6명, 다색(茶色) 최윤경(崔潤景) 등 2명, 증색(蒸色) 고도천(高道天) 등 2명, 탕색(湯色) 강이득(姜二得) 등 2명, 별사옹(別司饔) 유한복(劉漢福) 등 2명, 상배색(床排色) 유흥창(柳興昌), 포장(泡匠) 차정생(車正生)에게는 각각 목 1필과 포 1필을 주었다.
○ 반감(飯監) 이흥택(李興澤)·이수관(李壽寬)에게는 첩가를 작성해 주었고, 전리(奠吏) 홍하주(洪夏疇)·김정복(金鼎福)은 서제(書題)에 제수하는 것으로 승전하였으며, 고성상(庫城上) 이영일(李永一)·유종현(兪宗顯)에게는 첩가를 작성해 주었다.

강 遷園都監堂郎以下竝施賞有差

목 敎曰遷園都監堂郎以下別單先爲書啓又敎曰政官牌招開政都監賞典今日政下批事分付又敎曰遷園都監總護使 判府事 金熤 左議政 **蔡濟恭**各鞍具馬一匹面給奉贈玉帛官 領議政 李在協 熟馬一匹面給提調 戶曹判書 徐有隣 兵曹判書 尹塾前判書 李在簡加資禮曹判書 鄭昌順別有賞典半熟馬一匹賜給都廳郎廳 奎章閣直閣 李晩秀 兵曹正郎 李益運竝加資郎廳副司果 李命杰 戶曹正郎 洪彝浩 禮曹佐郎 延東憲 副司果 尹羲厚 尹光碩 尙衣僉正 李恒演竝陞敍工曹正郎 趙廷鉉日淺敦寧都正 李昌會已陞資各兒馬一匹賜給監造官 濟用直長 李始源副司勇申光河 朴壽亨 朴日源內外別工作 繕工奉事 徐有秉 監役官 宋載緯竝陞六紙牌所監造官 徐郁修陞敍已陞敍準職除授已準職更稟分長興奉事 洪樂正 分典設別檢 黃仁燾竝陞敍梓宮上字書寫官 錦城尉朴明源壙中銘旌書寫官 左議政 **蔡濟恭**各鞍具馬一匹賜給表石大字篆文書寫官 判敦寧 尹東暹陰記書寫官 奉朝賀趙曮行路銘旌書寫官 判敦寧 李命植紙牌書寫官 副司直 尹師國竝加資其中已陞輔國人熟馬一匹賜給拭梓宮官 右議政 金鍾秀帥舁梓宮官左議政 **蔡濟恭**各半熟馬一匹賜給代奠官兼守殯官 安春君彪加資已資窮熟馬一匹面給頓遞使 漢城府判尹 金文淳 陪往大將 副護軍 任徹各半熟馬一匹賜給陪往大將 李柱國新舊園皆董是事今番特除意豈偶然熟馬一匹面給告啓園大祝 應敎 李敬五 開

封官 執義 朴聖泰出納大祝 副司果 李濟萬 封閉官 執義 朴聖泰 攝相禮 權裕 朴長卨成殯至啓殯各奠通禮 朴錕 呂萬永竝加資拭梓宮時新舊園執巾執水執事奉贈玉帛執事攝司僕正挽章書寫官各 兒馬一匹賜給玉帛擧案執事褥席執事箱差備帕差備坐子差備卓差備棺衣函差備銘旌函差備官羽葆奉持官等各加一資資窮者代加舁梓宮官 宣傳官 李柏然 沈鐸相當職待窠陞敍輿士從事官前僉正元永胄前都事 吳徹常陞敍贊儀 李衡弼外四品待窠除授攝典儀 金東覽陞敍東西唱引儀各加一資資窮者代加銘旌奉持忠義朴昌壽 守衛官待窠除授分承旨 朴宗岳 申光履竝加資分史官 兪漢寓 朴崙壽 李相璜竝陞六分兵曹參知 鄭存中 分副總管 韓光肇 任崔各半 熟馬一匹賜給分兵曹正郎 尹得孚 分都總都事 申光轄 五衛將 金恒柱 洪秉殷各兒馬一匹賜給無職者復職武兼及日傘事知上弦弓一張賜給神輦大輿侍衛別軍職 李儒敬 任聖說 田文顯 韓光濟 李堯憲 王漢禎各兒馬一匹賜給結褭時進棺衣宗戚執事 光恩副尉金箕性 星州牧使 洪守榮結褭執事李儒敬 任聖說 李晳 吳毅常各半熟馬一匹賜給出玄宮下玄宮結褭時執事別看役前縣監 李禮輔前察訪 鄭如淵前僉使 卞世義 丁遇泰效勞旣多竝守令除授出玄宮時執事別看役嘉善鄭道弘前別將 李大蕃竝加資擇日官前監牧官池日賓前別提 池景喆 監牧官 察訪中待窠調用平丘察訪 金喜慶陞敍奏時官 尹道弘相當職調用相地官 朴興壽令本衙門高品付料書上字光漆畵員許礛補畫寫字官 洪慶運邊將除授本道觀察使 徐有防 熟馬一匹面給舊園所地方官楊州牧使 林耆喆宿所地方官果川縣監 尹行任沿道地方官廣州府尹閔台燁新園所地方官**水原府使** **趙心泰**竝依例加資其餘牌將畵員寫字官 計士員役工匠等依別單判下令該曹分等施賞〇敎曰遷園時宗戚執事 錦城尉朴明源 熟馬一匹面給光恩副尉金箕性 行副司直金魯永 牧使 洪守榮 主簿 洪最榮 同知 李仁康各半熟馬一匹賜給縣令 金魯成 判官 黃基玉令徐鼎淳 參奉 洪最榮 司勇 金魯敬 洪後榮竝陞敍未陞敍者陞六直長 金在昌 兒馬一匹賜給〇敎曰遷奉吉地都尉之功重且大矣欲酬其功何賞可斬尋常效力之勞猶且錫之鐵券加以田民況莫重莫大至尊至敬之擧乎事面各異勳固未可遽議外此宜有另示識喜之擧錦城尉朴 明源田十結奴十口婢十口銀子一百兩鞍具內廐馬一匹等特爲賜給因令政院成給王牌遣承旨傳諭〇敎曰御製事體自別刻役躬臨董飭其在重其事之道宜有別般示意況外都監亦有如是區處者誌文監刻堂上工曹判書 鄭昌順賞典不必以加資爲之今番浮橋之役國朝初有其竭心對揚亦宜褒嘉況奉詣靈駕時十分穩好其勞尤可紀特授從一品今日政擬入仍命誌石監刻郎廳戶曹佐卽金鳳顯陞敍〇敎曰殯宮所提調則今番通同董役賞典勿論都廳李 益運加資郎廳尹光碩 李恒演 別工作 徐有秉 監造官 李始源竝陞敍司謁 白景炫 林興壽竝賞加其中本宮前仕別監等令該曹帖加成給其餘掖隷員役等依別單判下分等施賞〇敎曰殯宮次知中官 李漢謙 熟馬一匹面給都薛里 朴尙衍 金聖燁紙牓承傳色 鄭國允進止長番金佑章 從事官金歸德 薛里兼酒房都國弼 朴廷熙銘旌差備李性洽竝加資進止差備白尙采 韓昌奎 李春行 趙命純半熟馬一匹賜給素扇差備朴鳳遇 尹仁豪素蓋差備申益喆 尹興莘靈座差備 卓宗漢 孫重熙哭差備全世興等十二員羅排差備李春植等八員各兒馬一匹賜給其中金昌福 金應碩 田有成 姜尙吳各半熟馬一匹賜給〇敎曰今番靈輿安奉莫非軍人頭目竭誠擧行之致其中效力最多人帖加成給姓名令都監書啓浮橋與船艙亦然竝依此例擧行姓名仍令該曹今日內書入檢飭工郎及監役官陞敍執船差員 金珠淵 柳得恭亦爲陞敍雖日淺旣管正日南履五 半熟馬一匹賜給三道船隻中未領來處勿論領來處闕裨一體問名草記事分付〇敎曰今番賞典一人雖兼數事毋得疊授堂下加資人如有未經準職者勿拘擬入事分付該曹〇吏曹以前應敎 李敬五方在門黜啓命蕩滌又以奉常正 徐郁修已經準職啓命加資〇敎曰雖如渠賤類其勞旣如此木手尹得莘石手金大輝漆匠朴世得大輿邊首金昌麗沙土匠片世雲竝令該曹今日內帖加成給仍爲從自願免賤事知守僕朴昌彥亦爲帖加成給一體從自願免賤本官本園行首守僕帖加亦爲成給其餘園所待令京鄕守僕移來園軍等令該曹參考前例分等施賞事分付〇敎曰國有事爲何時不效力而貢人之長時待令與各種進排之際受弊不少市民之百餘里奉詣時引曳之役貽勞亦大矣區別貢名廛名還宮後卽爲別單書入〇遷園都監別單涉浮出領運牌將河漢圖邊將承傳李顯昌等二

人加資計士　李文玉高品付料〇大輿看役牌將李元成　半熟馬一匹賜給大輿擔陪軍領去牌將李顯昌已加資勿論李春琦等四人賞加韓德增　李東秘聞是宣薦云都政窠應出六人二人先付司果今日政擬入劉致豪等八人賞加朴昌華已加資勿論檢飭牌將李亨道等十四人前引軍牌將河漢圖等三人後引軍牌將金宗燮等三人馬木軍小枕軍牌將李彦蠹等二人層橋軍雨備軍奉持郎軍牌將玄商祚來往板軍支木軍牌將全德行散輪軍小輪軸軍內支木軍牌將李基定等二人前後欄干軍足臺木軍牌將崔道祉等二人長橫扛軍短橫扛軍牌將曺潤福等二人輪臺板軍素錦褚軍牌將羅必行假輪臺板軍假素錦褚軍牌將金鳴漢預備軍雨備軍牌將鄭再秀　香亭子軍牌將李好萬預備長扛軍牌將吳壽福火鐵燭籠軍牌將邊成大等二人參考辛亥前例分等施賞肩輿擔陪軍領去牌將朴萬榮善地邊將待窠調用李元喆等十一人賞加檢飭牌將黃處心等十四人前引軍牌將崔成崙等三人後引軍牌將金在澤等二人馬木軍小枕木軍牌將孫鳳燁等二人來往板軍支木軍牌將申漢濟層橋軍雨備軍奉持郎軍牌將尹殷相預備橫扛軍隔板軍牌將曺潤身預備軍雨備軍牌將張繼胄神輦擔持軍牌將孫世大三色燭籠軍牌將金重麗　任輿修神輿擔陪軍牌將李東齊三色燭籠軍牌將崔重賢等二人贈玉贈帛彩輿軍牌將劉聖益　香亭子牌將李春憲　誌石彩輿軍牌將高龍得　平轎子軍牌將鄭致祥　竹散馬靑紫繡鞍馬鞍籠軍牌將金壽仁等四人方相氏車子軍牌將李潤喆等二人輓章軍牌將辛應祚等四人吉儀仗軍牌將崔文盛等四人素儀仗軍牌將姜　渭輿等二人素扇及趺軍牌將崔德重素蓋及趺軍牌將朱德光行路銘旌軍牌將朴東潤靈座諸具及交椅軍牌將韓斗完等二人床卓軍牌將李廷臣等二人櫝室諸具軍牌將李文燮等二人木盒臺軍牌將李羲遇等二人屛風軍牌將曺漢雄等四人雨傘軍牌將金弘仁大燈軍牌將文廷煥方燈軍牌將皮宗厚　長生殿車子軍牌將崔雲奎御間來往板軍牌將李景禧等二人排案床軍牌將高道完等二人舊園所燒火物種牌將白兌起果川燒火物種牌將金宗燁　香爐　香盒領去牌將曺漢胤都遊軍牌將李世忠等二人大輿前考喧牌將金振聲肩輿前考喧牌將金世完神輦前考喧牌將李光淵　尙衣院軍牌將梁聖希等五人分長興庫軍牌將尹徵等三人分典設司軍牌將金聖大等三人都廳守直待令捕盜軍官李洽等二人一房守直待令捕盜軍官尹商莘等二人分長興庫待令捕盜軍官張景濟分典設司待令捕盜軍官尹道標以上參考辛亥前例分等施賞〇五色燭籠牌將金昌謙等十一人依他牌將參考辛亥前例施賞〇京牌將禁衛營別武士　李文燮加資別騎衛　白兌起善地邊將待窠調用兵曹堂上軍官曺漢胤　守禦廳敎鍊官　朴昌華　御營廳敎鍊官　金宗燁　左捕廳軍官邢載洽　右捕廳軍官金學廉鄕牌將京畿監營敎鍊官　慮世甲　楊州將校　咸德新幷加資〇紙牓書寫補畫寫字官　李命藝銘旌初次篆字補畵畵員崔得賢再次補畵畵員吳完喆幷帖加棺衣起畵畵員張始興米十斗木三疋申漢枰米三斗木一疋許礛米一石木五疋韓宗一等八人各米三斗木一疋〇都廳錄事　崔允禧　計士　李景老等三人書吏尹仁桓等八人書寫　張載淵庫直陳弼周等二名使令朴世根等十名闕下待令書吏金繼朴一房書吏趙尙煥等六人書員申聖杓等二人庫直金光鉉使令張漢益等四名二房書吏金德老等四人書員韓光裕等二人庫直金聖璉使令李成雲等四名三房書吏尹修宅等四人書員廉猜瑞等二人庫直崔鳴璋使令丁仁世等四人紙牓所書員姜繼聖庫直河道熙使令金昌得內別工作　計士　李命喆書員林德觀等二人庫直崔甲得使令池興得　分長興庫書員　金福永庫直文　孝福使令崔德良　分典設司書員　金福兼庫直鄭大範使令金老味　陪往大將書吏金慶一等六人書員高益謙等三人使令金重澤等五名考例施賞〇員役尹得莘等四人木手金昌麗等六名小木匠金龍得冶匠李昌彬等三名朴排匠李德臣屛風匠林遇春硯石匠金道山石刻手李東植等四名寫字官　洪泰運等四人畵員李宗根等三人小木匠金重得等三名木手張德周等八名小引鉅匠金興伊等二名甃匠金福大石刻手李濟松等五名玉匠李光震等二名冶匠金重喆木手李遇春等二十名小木匠尹世必等八名冶匠朴永枝等五名大引鉅李德良等十二名小引鉅金守命等九名巨鉅匠金命山等五名岐鉅匠閔五宗等二名雕刻匠崔豊得等十名貫子匠宋卜得　雨傘匠崔繼孫等三名木鞋匠金春成等二名甃匠李儀彬等九名每緝匠張興福等二名穿穴匠金萬才等二名磨鏡匠金莫金等三名豆錫匠高枝成等五名造戈匠李萬柱等二名磨造匠李啓喆等八名弓人黃廷都等五名假漆匠洪大成等六名車匠朴原種等五名鞍子匠朴枝敬斜笠匠

李 昌大朴排匠朴萬孫等三名針線婢龍分伊等五名漆匠金守海等五名多繪匠崔守崙等五名鑞匠李得伊等二名朱簾匠蔡仁明等三名船匠陸重康等五名刻手匠朴昌福屛風匠金再漢等三名銅匠金仁得等三名石手安玉景等二名石刻手李太益等十六名刀子匠智順才等二十五名㙟匠金仁孫玉匠李仁得眞漆匠金順命等二名銷鑰匠丁巨福 竹散馬匠金鎭彬等三名杻骨匠金致福磨造匠李遇春等二名裹皮匠文尙禧方相氏匠咸三得旄節匠鄭世風羽葆匠金德仁鞍子匠朴致敬茵匠李枝云等二名鞍匣匠韓國良皮匠姜善興等五名造繩匠吳一得竝考例施賞○大輿各運西部別契頭目良人金繕 東部 成均館契頭目良人鄭泰岳次知檢飭嘉善李鳳燽 南部別契頭目良人朴三泰 北部 司宰監契頭目良人金九成以上帖加成給次西部別契之次鄭世得 東部 成均館契之次安光復 南部別契之次金春大 北部 司宰監契之次李文澤以上各木一疋布一疋題給次○肩輿各運西部別契頭目良人黃玉 北部 司宰監契頭目良人李廷鉉 中部別契頭目良人李允福以上帖加成給次西部別契之次金海尙 北部 司宰監契之次姜渭得 中部別契之次金二金以上各木一疋布一疋題給次○肩輿擔部武藝廳 金哲大等一百八名扶策武藝廳 鄭德禧等二十人米布各別優數施賞○殯宮所別單 計士 李思一 李魯憲 救療官 李世珩令本衙門高品付料○書吏李道英等六人書員嚴弼奎等二人書寫 龍啓祥庫直孫世榮使令姜世光等三名守直軍士奉才等二名捕盜軍士震東等二名別工作書員李德來等二人庫直鄭昌禧使令李聖得等二名考例施賞○員役尹得莘等三人木手廉德起等七名冶匠朴德興二名木手李福萬等十一名冶匠朴重發木手池泰根等十四名冶匠金仁大朴排匠高得道小引鉅許興孫等六名㘴鉅匠權有才等八名大引鉅匠金德奉等五名屛風匠姜德柱等三名岐鉅匠韓貴金等二名船匠劉丁彬等六名木鞋匠張漢弼等三名石手安玉景莎土匠金廷燁等三名泥匠印光世等七名㙟匠蔡興明等四名假漆匠咸雲成磨匠禹民順造戈匠高得仁 雨傘匠李得伊小木匠趙德順等二名已上考例施賞○炙色文復基等六名茶色崔潤景等二名蒸色高道天等二名湯色姜二得等二名別司饔 劉漢福等二名床排色柳興昌泡匠車正生各木一疋布一疋○飯監 李興澤 李壽寬帖加成給奠吏洪夏疇 金鼎福書題承傳庫城上李永一 兪宗顯帖加成給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8일(경신)

강다음 달 초에 영가(靈駕)를 배종(陪從)한 장사(將士)의 관무재(觀武才)를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하교하기를, “감정을 억제하고 어가를 돌리니 추모하는 마음 끝이 없다. 기운을 내어 정신을 가다듬기가 어려우나, 지금은 허전한 마음을 어디에도 붙일 데가 없으니, 은혜를 널리 베푸는 일만이 그 일을 중히 여기고 이러한 생각을 기념하는 방법이다. 수원(水原)과 과천(果川) 두 읍(邑)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교를 내렸으나, 이번에 천원(遷園)할 때 위사(衛士)와 군병이 노고한 것으로 말하면, 옛날에도 어찌 이런 경우가 있었겠는가. 영가를 배종한 서울과 지방의 장졸(將卒)과 각종 명목의 응시해야 할 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재(試才)를 해야겠으나, 소중히 여기는 바가 자별하니 어찌 예사로운 별시사(別試射)로 거행할 수 있겠는가. 시재의 명호(名號)를 ‘영가 배종 장사 관무재’로 부르고, 날짜는 다음 달 초로 잡으라고 예조와 병조에 분부하라.

경중(輕重)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일부터 9일까지 날마다 동가(動駕)하고 하루에 두 번씩 동가하기도 하여, 거리를 통틀어 계산해 보면 거의 500리에 가까웠으니, 군병들이 고생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을 더욱 늦출 수가 없었다. 이제 대례(大禮)가 이루지고 난 뒤에는 그들의 노고를 갚을 방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수가한 군병에 대해서는 별시사의 규례에 의거하여 시취(試取)하되, 날짜는 하교하기를 기다리라고 일체 분부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본원(本園)과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마다 그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 주려는 나의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 하였다.

강命以來初設靈駕部從將士觀武才

목敎曰抑情旋駕孺慕靡極神思雖難作氣以今廓然之思無處可寓惟有廣惠一事所以董其事識此意水果兩邑纔有別下傳敎而今番遷園時衛士軍兵之效勞古豈有是靈駕陪從京外將卒及各項名色應赴試者當別爲試才而所重自別豈可以尋常別試射爲之試才名號以靈駕陪從將士觀武才稱之日子以來月初推擇事分付禮兵曹輕重雖間自初一至初九日逐日動駕日或再爲道里恰滿半千每見軍兵之矻矻心愈不能弛今旣禮成之後渠輩酬勞之方亦不可不念隨駕軍兵以別試射例試取日子待下敎事一體分付以示予凡屬本園事必欲事事慰悅之意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8일(경신)

강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김이소(金履素), 참판 김희(金憙), 참의 조윤대(曺允大), 병조 판서 윤숙(尹塾)이 나왔다.

목○ 하교하기를, "숙배 단자(肅拜單子)를 아직 내려 주지 않은 대간(臺諫)들을 모두 체차(遞差)하고, 오늘 정사에서 승륙(陞六)한 사람으로 의망하여 들이라." 하였다.

○ 송전(宋銓)을 집의로, 윤행진(尹行晉)을 헌납으로, 김효건(金孝建)을 지평으로, 이상황(李相璜)·유한우(兪漢寓)를 정언으로, - 이상황·유한우·박윤수(朴崙壽)는 모두 신통(新通)이다. - 이병정(李秉鼎)을 우윤으로, 박종악(朴宗岳)을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로, - 박종악은 신자(新資)이다. - 이속(李涑)을 진안 현감(鎭安縣監)으로, 홍낙성(洪樂性)을 내국(內局)의 도제조(都提調)로, 조규진(趙圭鎭)을 부총관(副摠管)으로 삼았다.

강有政 吏曹判書 金履素 參判 金憙 參議 曺允大 兵曹判書 尹塾進

목敎曰肅拜未下諸臺竝許遞今日政以陞六人擬入○以宋銓爲執義 尹行晉爲獻納 金孝建爲持平李相璜 兪漢寓爲正言 相璜 漢寓 朴崙壽竝新通也 李秉鼎爲右尹 朴宗岳爲同義禁 宗岳新資也 李涑爲鎭安縣監 洪樂性爲內局都提調 趙圭鎭爲副總管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8일(경신)

강총호사(摠護使) <u>채제공(蔡濟恭)</u>이 원소(園所)의 사역(事役)에 대해 치문(馳聞)하였다.

목○ 장계(狀啓)에, "퇴광 안에 삼물회(三物灰)를 다져 쌓아서 천회(天灰)가 정광(正壙)과 가지런하게 되었고, 전면의 석물(石物) 공사를 이제 막 시작하였습니다. 정자각의 대홍살문(大紅箭門)을 철거한 뒤에 영구히 배설할 홍살문도 세웠습니다." 하였다.

강 總護使 <u>蔡濟恭</u>以園所事役馳聞

목狀啓以爲退壙內三物灰杵築天灰與正壙均齊而前面石物今方始役丁字閣大紅箭門撤去後永排紅箭門亦爲竪立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8일(경신)

강천원도감이 불태운 물품의 별단을 올렸다.

목○ 별단은 다음과 같다.

구외재궁 횡대판(舊外梓宮橫臺板), 궤(櫃)가 갖추어진 구증백(舊贈帛), 광중(壙中)의 구관의(舊棺衣), 구삽선(舊翣扇), 유의함(遺衣函)이 갖추어진 구명정(舊銘旌), 찬궁(欑宮)에 배설한 돗자리〔席〕가 갖추어진 지의평상(地衣平床), 유둔(油芚), 노점(蘆簟), 등괴(凳塊), 평괴(平塊), 관의함(棺衣函), 복금함(複衾函), 욕석(褥席)이 갖추어진 퇴광(退壙)의 회남수평상(回南首平床), 돗자리가 갖추어진 내왕판(來往板), 욕석이 갖추어진 윤대판(輪臺板), 인출삭(引出索), 산륜목(散輪木), 지래목(支來木), 정자각(丁字閣)의 재목(材木), 욕석이

갖추어진 지의평상, 주렴(朱簾), 난렴(亂簾), 노점, 죽삭(竹索), 홍살문, 이상은 구 원소에서 불태운 물품이다.
찬궁에 들어간 돗자리가 갖추어진 각종 평석(平席), 앙장(仰帳)이 갖추어진 소악(素幄), 소장(素帳), 노점, 죽점(竹簟), 유둔, 대청(大廳)의 백목 앙장(白木仰帳), 하배지의(下排地衣), 이상은 과천(果川)에서 불태운 물품이다.
대여(大轝)의 상장(上粧)·하장(下粧)과 복색(服色), 장강(長杠)·기횡강(機橫杠) 등 제구(諸具), 지내목(支乃木), 금야지목(金也只木), 소침목(小枕木), 층교(層橋), 마목(馬木), 담줄(擔迸), 재궁 인예삭(梓宮引曳索), 각종 영삭(領索), 욕석이 갖추어진 윤대판, 산륜(散輪), 대(臺)가 갖추어진 목함(木檻), 노우비(露雨備), 견여(肩轝)의 상장·하장과 복색, 장강·기횡강 등 제구, 지내목, 소침목, 마목, 담줄, 각종 영삭, 산륜, 돗자리가 갖추어진 정자각(丁字閣) 정문(正門)과 간문(間門)의 내왕판, 노우비, 백릉모(白綾冒)가 갖추어진 소금저(素錦褚), 초석(草席)이 갖추어진 죽산안마거자줄(竹散鞍馬車子迸), 청수안(靑繡鞍), 자수안(紫繡鞍), 방상시거자(方相氏車子), 방상시교의(方相氏交椅), 초석이 갖추어진 방상시가면줄(方相氏假面迸), 병죽줄(柄竹迸)이 갖추어진 우보기(羽葆機), 받침이 갖추어진 소선(素扇), 받침이 갖추어진 소개(素蓋), 강(杠)·받침·줄·이두(螭頭)·축(軸)이 갖추어진 행로 명정(行路銘旌), 병죽(柄竹)이 갖추어진 행로 삽선(行路翣扇), 병죽과 통(桶)이 갖추어진 만장축(輓章軸), 화철촉롱(火鐵燭籠), 대등(大燈), 방등(方燈), 찬궁에 배설한 욕석이 갖추어진 지의평상, 욕석이 갖추어진 회남수평상, 삼문 홍초장(三門紅綃帳), 채화붓심(彩花心), 백릉붓심(白綾心), 평괴, 등괴, 산륜, 치미추(雉尾箒), 대청의 앙장(仰帳), 하배지의, 복건(覆巾)과 휘장(揮帳)이 갖추어진 영좌만정골(靈座滿頂骨), 욕석이 갖추어진 지의평상, 병풍(屛風), 교의(交椅), 복보(覆袱), 좌자(座子), 의자(倚子), 채화방석(彩花方席), 결과할 때의 복금(複衾), 홍전금(紅氈衾), 유둔, 초관의(初棺衣), 대관의(大棺衣), 대교삭(大絞索), 소교삭(小絞索), 홍면포석(紅綿布席), 백면포석(白綿布席), 지환(紙環), 식건(拭巾), 채화 지의(彩花地衣), 가칠(加漆)할 때의 소금저, 갑금(甲衾), 식건, 설면자(雪綿子), 칠괴(漆塊), 목화로(木火爐), 설자(煮), 보자기가 갖추어진 증옥 외궤(贈玉外櫃), 보자기가 갖추어진 증백 외궤(贈帛外櫃), 보자기가 갖추어진 지석 외궤(誌石外櫃), 보자기가 갖추어진 광중 명정함(壙中銘旌函), 보자기가 갖추어진 유의함(遺衣函), 죽피방상자(竹皮方箱子), 제지방탁(題紙牓卓)에 배설한 가주보(假紬袱), 욕석이 갖추어진 평상, 자릉침(紫綾枕), 신련(神輦) 안의 격유보(隔襦袱), 유결홍주(維結紅紬), 욕석이 갖추어진 봉안 평상(奉安平床), 각종의 우비(雨備), 좌면지(座面紙), 옥등함(玉燈函), 옥등 현삭(玉燈懸索), 상(上) 자를 쓸 때의 식건, 계빈(啓殯)할 때의 식건, 띠가 갖추어진 외재궁 여휘장(外梓宮轝揮帳), 전촉롱(前燭籠), 후촉롱(後燭籠), 영좌 평상(靈座平床), 횡강(橫杠)과 줄이 갖추어진 가자(架子), 대여의 아래에 배설한 지의(地衣), 견여(肩輿)의 아래에 배설한 지의, 신련(神輦)의 아래에 배설한 지의, 평교자(平轎子)의 아래에 배설한 지의, 채여(彩轝)의 아래에 배설한 지의, 지방(紙牓)을 매안(埋安)할 때 배설한 지의, 배위청(拜位廳)의 지의, 배위(拜位)의 백문단석(白紋單席), 준소(尊所)의 지의, 관세위(盥洗位)의 지의, 이상은 새 원소에 도착하여 불태운 물품이다.
습의(習儀)할 때의 가소금저(假素錦褚), 명정을 서사(書寫)할 때의 채화단석(彩花單席), 이상은 도감 안에서 불태운 물품이다.
○ 정우판(正隅板)을 결과(結裹)하는 데 들어갔던 물품과 잡물(雜物)로 불에 태운 것에 대한 장생전(長生殿)의 별단은 다음과 같다.

홍전(紅氈) 2립(立), 백목 유갑보(白木襦甲袱) 1건(件), 유둔 2건, 초석 6립, 숙마(熟麻) 세겹바(三甲所) 2거리(巨里), 포줄(布茁) 1간의(艮衣), 격목(隔木) 1쌍(雙), 송죽목(松竹木) 1쌍, 지기목(支機木) 1부(部), 홍향사(紅鄕絲) 대(大)·중(中)·소(小) 세겹바 3거리, 홍함(紅函) 1부, 가우판(假隅板) 1부, 벽훤목(壁楦木) 3개(介), 동자목(童子木) 1개, 윤여(輪轝) 1부, 포줄 4거리, 침목(枕木) 2쌍, 윤대판(輪臺板) 1부이다.

○ 하교하기를, "낭청 1원과 당상이 함께 입회하여 깨끗한 곳에서 불태운 뒤에 초기(草記)하라." 하였다.

강 遷園都監進燒火別單

목別單舊外梓宮橫臺板舊贈帛櫃具壙中舊棺衣舊翣扇舊銘旌遣衣函具欑官所排地衣 平床席具油芚蘆簟凳塊平塊棺衣函複衾函退壙回南首平床褥席具來往板席具輪臺板褥席具引出索散輪木支來木丁字閣材木地衣 平床褥席具朱簾亂簾蘆簟竹索紅箭門以上舊園所燒大欑宮所入各種平席席具素幄仰帳具素帳蘆簟竹簟油芚大廳白木仰帳下排地衣以上果川燒火大輿上下粧及服色長杠機橫杠等諸具支乃木金也只木小枕木層橋馬木擔茁梓官引曳索各樣領索輪臺板褥席具散輪木槾臺具露雨備肩輿上下粧及服色長杠機橫杠等諸具支乃木小枕木馬木擔茁各樣領索散輪正間來往板席具露雨備素錦褚 白綾冒具竹散鞍馬車子茁草席具靑紫繡鞍方相氏車子交椅假面茁草席具羽葆機柄竹茁具素扇趺具素蓋趺具行路銘旌杠趺茁螭頭軸具行路翣扇柄竹具輓章軸柄竹桶具火鐵燭籠大燈方燈欑官所排地衣回南首平床褥席具三門紅綃帳彩花衷心白綾衷心平塊凳塊散輪雉尾箒大廳仰帳下排地衣靈座滿頂骨覆巾揮帳具地衣 平床褥席具屛風交椅覆袱座倚子彩花方席結裹時複衾紅氈衾油芚初棺衣大棺衣大小絞索紅栢綿布席紙環拭中彩花地衣加漆時素錦褚甲衾拭巾雪綿子漆塊木火爐乭煮贈玉外櫃袱具贈帛外櫃袱具誌石外櫃袱具壙中銘旌函袱具遣衣函袱具竹皮方箱子題紙牓卓所排假紬袱平床褥席具紫綾枕神輦內隔襦袱維結紅紬奉安平床褥席具各樣雨備座面紙玉燈函懸索書上字時拭巾啓殯時拭巾外梓官輿揮帳帶具前後燭籠靈座平床架子橫杠茁具大輿下排地衣肩輿下排地衣神輦下排地衣 平轎子下排地衣 彩輿下排地衣紙牓埋安時所排地衣拜位廳地衣拜位白紋單席尊所地衣盥洗位地衣以上到新園所燒火習儀時假素錦褚銘旌書寫時彩花單席以上都監內燒火○長生殿正隅板結裹所入及雜物燒火別單紅氈二立白木襦甲袱一件油芚二件草席六立熟麻三甲所二巨里布茁一艮衣隔木一雙松竹木一雙支機木一部紅鄕絲大中小三甲所三巨里紅函一部假隅板一部壁楦木三介童子木一介輪輿一部布茁四巨里枕木二雙輪臺板一部敎以郎廳一員與堂上眼同淨處燒火後草記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8일(경신)

강천원(遷園) 때 쓴 경비의 총 수효이다.

목○ 전(錢)은 18만 4600냥(兩) 남짓 - 대내(大內)에서 내려 준 것이 11만 6500냥이고, - 10만 냥은 <u>수원(水原)</u>에, 1만 냥은 기영(畿營)에, 3000냥은 과천(果川)에, 2000냥은 도감(都監)에, 1500냥은 훈조계(燻造契)에 내렸다. - 호조에서 3만 9360냥을, 선혜청(宣惠廳)에서 2484냥을, 진휼청(賑恤廳)에서 1100냥을, 병조에서 500냥을, 훈련도감(訓鍊都監)에서 1000냥을, 금위영(禁衛營)에서 2000냥을, 어영청(御營廳)에서 2만 700냥을, 사복시(司僕寺)에서 1000냥을 마련하였다. - 이고, 미(米)는 6326석 - 호조에서 1100석을, 선혜청에서 596석을, 진휼청에서 1630석을, 금위영에서 1500석을, 어영청에서 1500석을 마련하였다. - 이고, 목(木)은 279동(同) 남짓 - 호조에서 70동을, 선혜청에서 1동 38필을, 병조에서 50동을, 훈련도감에서 10동을, 금위영에서 15동을, 어영청에서 15동을, 평안 감영(平安監營)에서 30동을, 병영(兵營)에서 25동을, 전라 감영(全羅監營)에서 13동을, 경상 감영(慶尙監營)에서 20동을, 통영(統營)에서 30동을 마련하였다. - 이고, 포(布)는 14동 - 함경 감영(咸鏡

監營)에서 10동을, 남병영(南兵營)에서 4동을 마련하였다. - 이다.

강遷園時經用總數

목錢十八萬四千六百兩零內下十一萬六千五百兩十萬兩水原一萬兩畿營三千兩果川二千兩都監一千五百兩燻造契戶曹三萬九千三百六十兩宣惠廳二十四百八十四兩賑恤廳一千一百兩兵曹五百兩訓鍊都監一千兩禁衛營二千兩御營廳二萬七百兩司僕寺一千兩米六千三百二十六石 戶曹一千二百石宣惠廳五百九十六石賑恤廳一千六百三十石禁衛營一千五百石御營廳一千五百石木二百七十九同零 戶曹七十同宣惠廳一同三十八疋兵曹五十同訓鍊都監十同禁衛營十五同御營廳十五同平安監營三十同兵營二十五同全羅監營十三同慶尙監營二十同統營三十同布十四同 咸鏡監營十同南兵營四同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8일(경신)

강입직

목대교 김조순(金祖淳)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9일(신유)

강창덕궁(昌德宮)으로 돌아왔다.

목○ 평융복(平戎服)을 갖추고 교(轎)를 타고 행궁(行宮)을 나와 교에 말을 매었다. 화락동(和樂洞)과 사평리(沙平里), 압구정(狎鷗亭)을 거쳐 둑도(纛島)에 이르렀다. 부교(浮橋)를 건너 교에서 내려 주정소(晝停所)에 임하였다. 잠시 뒤에 교를 타고 왕십리(旺十里)를 거쳐 흥인지문(興仁之門)을 들어왔다. 가전(駕前)과 가후(駕後)의 군병들을 위로하고, 이현(梨峴)을 거쳐 홍화문(弘化門)을 들어와 교에서 말을 풀었다. 협양문(協陽門)을 거쳐 대내(大內)로 돌아왔다.

강駕還昌德宮

목具本戎服乘轎出行宮駕馬由和樂洞 沙平里狎鷗亭至纛島渡浮橋降轎臨晝停所少頃乘轎由旺十里入興仁之門勞問駕前駕後諸軍由梨峴入弘化門稅駕由協陽門還內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9일(신유)

강총호사(摠護使)와 도감(都監)의 당상들에게 신칙하여 하유(下諭)하였다.

목○ 하교하기를, "'슬픔을 억제하고 앞서 떠나오며 걸음걸음마다 돌아보았는데, 이러한 때 허전하고 안타까운 나의 슬픈 심정을 경들도 묵묵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 원상(園上)의 공역(工役)을 오늘은 얼마나 하였으며, 총호사는 언제쯤 복명하겠는가? 당상들이 성실히 애쓰는 것도 어찌 내가 말을 해야만 그리 하겠는가. 다만 더욱더 조심하고 성실히 하여 이러한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원소도감 총호사 이하에게 전하라." 하였다.

강飭諭總護使及都監諸堂

목敎曰忍抑前發步步回瞻此時廓然莫逮之慟卿等想默認園上工役今日幾許爲之總護使何日當復命諸堂之誠勤亦豈待予言而益加恪勤以體此意事傳于園所都監總護使以下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9일(신유)

강도감의 의궤(儀軌)를 될 수 있으면 자세하게 기록하라고 명하였다.

목○ 천원도감(遷園都監)이 올린 의궤 사목(儀軌事目)으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이번 의궤

는 될 수 있으면 자세하게 기록하여 연설(筵說)에서 의절(儀節)까지, 또 각항의 조성(造成) 제도(制度)와 척수(尺數)에서 내력(來歷)과 의의(意義)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하라. 이러한 내용을 경도감(京都監)과 향도감(鄕都監)으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 하였다.
○ 하교하기를, "이번 각 도감의 의궤는 될 수 있으면 매우 정밀하고 상세하게 기록하라는 뜻으로 방금 사목에 대해 판하(判下)하였으나, 당상과 낭청의 차출을 어찌 전례에 구애받을 것인가. 경도감은 호조 판서 서유린(徐有隣)이 당상을 맡고, 도청(都廳)은 이만수(李晩秀)·이익운(李益運)이 분장(分掌)하여 직접 편집(編輯)하라. 외도감(外都監)은 행 부사직(行副司直) 정민시(鄭民始)가 당상을 맡고, 낭청은 누가 적합한지 모르겠으니 주관하는 당상으로 하여금 2, 3인을 차정(差定)하게 하되, 총호사에게 가서 의논한 뒤에 초기(草記)하여 계하(啓下)받게 하라. 경도감과 외도감 모두 다음 달 안으로 의궤의 수정(修整)을 마치고 입계(入啓)하게 하고, 또 후일에 상고할 규식을 간단하게 뽑아서 내각(內閣)으로 보내어 《일성록(日省錄)》에 기재하게 하라." 하였다.
강命都監儀軌務從纖悉
목因遷園都監儀軌事目敎曰今番儀軌務從纖悉自筵說至儀節及各項造成制度尺數以至來歷意義無不一一備載事令京鄕都監知悉○敎曰今番各都監儀軌致精務詳之意纔有判下於事目而堂郎差出何拘前例京都監則戶曹判書 徐有隣爲堂上都廳 李晩秀 李益運分掌親自編輯外都監則行副司直 鄭民始爲堂上郎廳則未知誰某之可合令主管堂上差定二三人就議總護使草記啓下皆令來月內畢修整入啓仍又單抄後考之式送于內閣載之日省錄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9일(신유)
강장생전 도제조(長生殿都提調) 이하에게 모두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목○ 하교하기를, "장생전 도제조인 판부사(判府事) 김익(金熤)에게는 구마(廐馬) 1필(匹)을 면급(面給)하고, 영의정 이재협(李在協)에게는 반숙마(半熟馬) 1필을 면급하며, 제조(提調)인 행 호조 판서(行戶曹判書) 서유린(徐有隣), 행 예조 판서(行禮曹判書) 이재간(李在簡), 공조 판서 정창순(鄭昌順)에게는 반숙마 1필을 사급(賜給)하고, 도청 낭청(都廳郎廳)인 호조 좌랑(戶曹佐郎) 윤달동(尹達東), 예조 좌랑(禮曹佐郎) 이상운(李尙運), 공조 좌랑(工曹佐郎) 서교수(徐敎修)는 모두 승서(陞敍)하며, 호조 정랑(戶曹正郎) 이주헌(李周憲)은 근무한 일수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상현궁(上弦弓) 1장(張)을 사급하고, 계사(計士), 원역(員役), 공장(工匠) 등에게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규례를 상고하여 시상하게 하라." 하였다.
강 長生殿都提擧以下竝施賞有差
목敎曰長生殿都提調領議政 金熤 厩馬一匹面給領議政 李在協 半熟馬一匹面給提調行戶曹判書 徐有隣 行禮曹判書 李在簡 工曹判書 鄭昌順 半熟馬一匹賜給都廳郎廳戶曹佐郎 尹達東 禮曹佐郎 李尙運 工曹佐郎 徐敎修竝陞敍戶曹正郎 李周憲日淺上弦弓一張賜給計士員役工匠等令該曹考例施賞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9일(신유)
강금성위(錦城尉)의 집에 줄 전결(田結)을 즉시 정하여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목○ 하교하기를, "금성위는 선조(先朝)의 의빈(儀賓)으로서 외정(外廷)의 신하와는 사체가 자별하니, 이번에 줄 전결을 다른 궁방(宮房)에 사여(賜與)할 때의 규례에 따라 그대로

면세(免稅)하라. 본 토지(土地)에 대해 만약 후보지를 뽑아 올릴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지체되는 것이 고민스럽고, 양안(量案)에 올라 있지 않은 전결의 경우에는 허실이 서로 뒤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과 고을에 폐해를 끼치는 것도 자연히 많게 된다. 그러니 관둔전(官屯田)이나 영둔전(營屯田)을 막론하고 호판으로 하여금 주가(主家)와 의논하여 즉시 정하여 지급하라. 그리고 면세와 아울러 대(代)가 다한 뒤일지라도 세금을 내지 않게 하여, 영구히 대대로 전하는 장토(莊土)로 삼도록 하며, 노비(奴婢)에 대해서도 의논하여 즉시 정해서 보내 준 뒤에 전결과 노비에 대한 어람용(御覽用) 성책(成冊)을 초기를 갖추어 수정하여 입계하게 하라고 호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강命錦城尉家所授田結劃卽定給

목敎曰錦城尉卽先朝儀賓與外廷臣事面自異今番所授田結當依他宮房賜與例仍爲免稅本土地若待望呈遲滯可悶至於量外虛實不但相混民邑自多貽弊無論官屯營屯令戶判往復主家劃卽定給竝與免稅而雖代盡之後勿許出稅永作傳世之庄土奴婢亦令往復卽爲定送後以田結奴婢御覽成冊具草記修整入啓事分付戶曹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9일(신유)

강승지를 보내어 고(故) 영중추부사 정홍순(鄭弘淳)에게 치제(致祭)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하교하기를, "현궁(玄宮)에서 받들고 나와 하우판(下隅板)에 옻칠한 색깔과 나뭇결이 견고하고 좋은 것을 보니, 전에 들었던 말과 다르지 않음을 더욱 깨달았다. 내가 현궁을 부여잡고 가슴을 치며 호곡(號哭)하는 중이었으나 이에 힘입어서 마음에 위로를 받았다. 더구나 나무토막을 전고(殿庫)에 보관해 둠으로써 후일의 증명에 대비하였으니, 이는 사려가 주밀한 것으로 옛날 대신의 일 처리에 손색이 없다. 재실(梓室)을 봉심(奉審)할 때 벌써 이러한 뜻으로 총호사에게 언급하였다. 하물며 이에 힘입어서 가칠(加漆)하는 데 힘을 낭비하지 않았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제 다행히 대사(大事)를 완성하였으나, 고 상신(相臣)이 이 세상에 없어서 얼굴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애석하다. 고 영부사 정홍순의 집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제문(祭文)은 직접 짓겠다. 그의 아들, 사위, 아우, 조카 중에서 관직을 제수하되, 만일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이조로 하여금 본가(本家)에 물어서 말을 잘 만들어 초기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命遣承旨致祭于故領府事 鄭弘淳

목敎曰玄宮奉出見板漆色光木理堅好益覺前聞之不爽雖在攀擗之中賴以慰心況木端之貯在殿庫以備後日之徵信者思慮之縝密無愧古大臣處事梓室奉審時已以此意言於總護使且況賴是加漆不費力今幸大事克襄惜乎故相之不在世不能面說感謝之情故領府事 鄭弘淳家遣承旨致祭祭文當親撰其子壻弟侄中除職如無可爲之人令吏曹問于本家措辭草記事分付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9일(신유)

강분참지(分參知) 정존중(鄭存中)에게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목○ 하교하기를, "이번 상전(賞典)은 모두 전례를 원용(援用)하여 조금이나마 표창(表彰)하는 의미를 부여하였으나, 근거로 삼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새로 만들어서 시작하기도 어려워서 처음에는 주저하였다. 그래서 일찍이 서연관(書筵官)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어가를 배종(陪從)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에 대해, 한 명은 승선(承宣)으로 승자(陞資)시켰으나 한 명은 홀로 누락 되었다. 이에 앞서 일찍이 계방(桂坊)을 거쳤으나 승자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도 오히려 가자하게 하였는데, 하물며 이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있

겠는가. 분참지 정존중을 현재 비어 있는 부총관(副摠管)의 자리에 해조로 하여금 구전(口傳)으로 의망(擬望)하여 들이게 하고, 하비(下批)하기를 기다려 패초(牌招)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라." 하였다.

강命分參知 鄭存中加資

목敎曰今番賞典無不援例以寓一分表異之意而太難考據處亦難創始始未免趦趄以曾叨挾册之官復當陪駕之任一則以承宣陞資一則獨漏前此曾經桂坊之未陞資者猶令加階況此人乎分參知 鄭存中副總管現窠令該曹口傳擬入待下批牌招察任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9일(신유)

강찰방(察訪) 최대규(崔大奎)를 수령(守令)에 조용(調用)하라고 명하고, 이어 각 도(道)의 역마(驛馬)는 돌아갈 양식을 주어 내려보내라고 신칙하였다.

목○ 하교하기를, "이번에 기읍(畿邑)의 역마가 고생한 것은 역참(驛站)을 설치한 이후로 드물게 있는 일이었으니, 별도로 진휼(軫恤)하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폐막(弊瘼)을 제거하여 소생시키겠는가. 차사원(差使員) 중에서 찰방 최대규는 가장 수고하여 특별히 제수한 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수령에 조용하라. 그 나머지의 찰방에게는 각각 현궁(弦弓) 1장을 하사하라. 역참에 소속된 사람을 보살펴 줄 방도에 대해서는 즉시 도백(道伯)으로 하여금 물정(物情)을 세밀히 살핀 뒤에 이치를 따져 장문(狀聞)하게 하라고 기백(畿伯)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 하교하기를, "이번에 천원할 때 올라온 각 도의 역마를 오늘 안으로 내려보내라. 여러 날을 지체하며 머무르는 것은 폐해를 끼치는 것이 적지 않으니, 병조와 사복시로 하여금 돌아갈 양식을 주어 본역(本驛)으로 돌려보내게 하라. 그런 뒤에 도백으로 하여금 구별하여 뽑아서 올해의 신역(身役)이 있으면 특별히 탕감(蕩減)해 주고 신역이 없으면 이에 준하여 견감(蠲減)해줄 수 있는 방도에 대해 이치를 따져 장문하게 하되, 먼저 거행한 뒤에 등문(登聞)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하교하기를, "이제는 원소의 역사(役事)가 완료되었으니, 발마(撥馬)를 내일부터 해산하여 각 역참으로 돌려보내라고 기영(畿營)에 분부하라. 이어 도감으로 하여금 그리 알게 하라." 하였다.

강命察訪 崔大奎守令調用仍飭各道驛馬給糧下送

목敎曰今番畿邑驛馬之勞困卽設驛以後罕有之擧若無別般軫恤何以蘇弊捄瘼乎差使員中察訪 崔大奎最效勞不負特除之意守令調用其餘 察訪各賜弦弓一張顧恤驛屬之方卽令道伯細察物情論理狀聞事分付畿伯○敎曰今番遷園時上來各道驛馬今日內下送多日滯留貽弊不少令兵曹 司僕給回糧還本驛後仍令道伯區別抄出如有當年身役特爲蕩減無則準此蠲惠之方論理狀聞先擧行後登聞事分付○敎曰今則園役告完撥馬自明日解送各驛事分付畿營仍令都監知悉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9일(신유)

강관무재(觀武才)는 초시(初試)를 면제하고 유생 정시(儒生庭試)를 대거(對擧)로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하교하기를, "영가(靈駕)를 배종(陪從)한 장사(將士)는 관무재에 응시해야 하고 수가(隨駕)한 장사는 별시사(別試射)에 응시해야 하는데, 관무재나 별시사를 막론하고 군병의 경우에는 으레 먼저 초시를 설행하는 규례가 있다. 그러나 영가를 배종하는 것은 사체가 자별하니, 군병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초시를 면제하여 관무재에 응시하도록 허락하되, 관무재

의 규구(規矩)는 해조로 하여금 초기하여 품지(稟旨)하게 하라. 별시사의 경우에는 초시를 면제할지의 여부를 전례에 따라 구별해야 하니, 이에 대해서도 전례를 상고해서 초기하여 품지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영가가 강을 건널 때의 가전(駕前)의 초요기 대기치 전배군(招搖旗大旗幟前排軍)에 대해서는 배종한 군병에 대한 규례에 따라 초시를 면제해 주라. 각영(各營)의 영도기고군(迎導旗鼓軍)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야 하니, 수가한 군병에 대한 규례에 따라 초시를 설행하고 별시사에 응시하게 하라. 이어 각 해당 영문(營門)과 경도감, 향도감으로 하여금 그 실제의 숫자를 가지고 소명 성책(小名成冊)[2]을 수정하여 해방(該房)에 바치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예조가 아뢰기를, "영가를 배종한 장사에 대해 관무재를 설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전부터 관무재를 설행할 때에는 으레 문신 정시(文臣庭試)와 유생 정시를 돌아가며 대거로 시행하였는데, 이번에는 유생 정시를 설행할 차례이므로 이로써 마련하되, 유생 정시는 관무재를 종일 설행하니 또한 이대로 마련합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이대로 마련하라. 날짜가 다음 달 초이니, 즉시 발마로 행회(行會)하여 모두 기일에 맞추어 응시하게 하라." 하였다.
○ 하교하기를, "이번에 영여를 배종한 장사에 대해 관무재를 설행할 때, 만일 경진년(1760, 영조36)에 배종했던 무신(武臣)으로서 생존한 사람이 있으면 일체 응시하도록 허락하라고 병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 하교하기를, "이번에 영여를 받들고 나아갈 때 기내(畿內)의 각무 차사원(各務差使員)에 대해서는 공로의 대소를 구별하고, 영읍(營邑)의 비장·장교(將校)·이례(吏隷)·군졸(軍卒) 등에 대해서도 등급을 나누어 기백으로 하여금 장문하게 하고, 장문이 올라오거든 환궁한 뒤에 즉시 등문하라. 전어군(傳語軍), 척후병(斥候兵), 복병(伏兵) 등의 장졸(將卒)에 대해서도 각 해당 지방으로 하여금 활쏘기나 총쏘기나 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기(一技)로 시취(試取)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장문하게 하라. 이에 대해서도 기백으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 하였다.

강命觀武才除初試儒生庭試對擧設行

목敎曰靈駕陪從將士當赴觀武才隨駕將士當赴別試射無論觀武才別試射軍兵則例有先設初試之規而靈駕陪從事體自異雖軍兵竝除初試許赴規矩令該曹草記稟旨別試射則初試除否當依前區別亦爲考例草記稟旨事分付○靈駕渡涉時駕前招搖旗大旗幟前排軍依陪從軍兵例除初試各營迎導旗鼓軍宜有差等依隨駕軍兵例設初試赴別試射仍令各該營門及京鄕都監以其實數修整小名成冊呈于該房事分付○禮曹啓言靈駕陪從將士觀武才事命下矣自前觀武才時例以文臣與儒生庭試輪回對擧今番則儒生庭試當次以此磨鍊而儒生庭試則觀武才終日設行今亦依此磨鍊乎敎曰依此爲之日子當在來月初卽爲撥馬行會皆令趁期觀光○敎曰今番靈輿陪從將士觀武才時如有庚辰陪從武臣生存人一體許赴事分付兵曹○敎曰今番靈輿奉詣時畿內各務差使員區別效勞淺深營邑裨校吏隷軍卒等亦爲分等令畿伯狀聞還宮後卽爲登聞傳語軍斥候伏兵將卒亦令各該地方射放間從自願一技試取狀聞事亦令畿伯知悉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9일(신유)

강부교를 조성할 때 동원된 선박을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에 대해 결론

2) 소명 성책(小名成冊) : 어떤 사안에 따른 인적 사항이나 세부 조목 등을 분류하여 정리한 성책을 말한다.

을 지어 회계(回啓)하라고 명하였다.

목○ 하교하기를, “경강(京江)에 부교를 조성하는 공사는 이번에 처음 시행한 것으로, 무지개 다리가 강에 걸쳐 영여가 건너는 길이 육지가 되었다. 일을 감동(監董)한 신하들에게는 어제 대략 상전을 시행하였으나, 내년 봄의 행행(幸行)이 해동(解凍)하기 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람의 기세도 추위를 재촉하는 기미가 있으니, 지금 선박을 해산하여 보냈다가 봄이 되거든 다시 설치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부교를 조성한 선박은 그대로 머물게 하고 예비한 선박은 즉시 해산하되, 대략 1, 2척만 철거하여 물위로 땔나무를 수송하는 길은 통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가? 연일 노고한 것 때문에 꺼려하여 대충대충 회계하지 말고 상세히 묻고 헤아려서 결론을 지어 초기하라고 본감(本監)의 두 제조(提調)와 기백으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 예비한 선박은 초기에 대해 재결(裁決)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내려보낸 뒤에 초기하거나 장문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命造橋船隻仍留便否指一回啓

목敎曰京江浮橋之役今番創行而虹架亘江輿路成陸董事諸臣昨已略施賞典而明年春幸當在解凍前且今風氣不無催寒底意及今解送待春更設爲好耶造橋船隻則仍留預備船隻則卽放略撤一二隻以通水上柴路爲好耶勿以連日憊勞爲憚草草回啓詳問細量指一草記事令本監兩提擧及畿伯知悉預備船隻不待草記回下卽爲下送後草記或狀聞事分付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9일(신유)

강경진년 온행(溫幸) 때 머물렀던 옛터에 토축(土築)을 쌓은 뒤에 때때로 소제(掃除)하라고 명하였다.

목○ 하교하기를, “교(轎)를 타고 **미륵당(彌勒堂)** 앞길을 지날 때 양조(兩朝 영조(英祖)와 사도세자(思悼世子))께서 온행하실 때 주정(晝停)했던 옛터를 보았는데, 길 왼쪽은 경오년(1750, 영조26)에 주필(駐蹕)했던 곳이고 길 오른쪽은 경진년에 주필했던 곳이었다. 그래서 교를 돌려 옛터를 찾아보고, 수가한 대신들과 시간을 보내며 옛일을 이야기하며, 부로(父老)를 불러다가 고사(故事)를 자세히 물어보았는데, 옛일에 대한 나의 감회가 더욱더 슬프고 가슴이 아팠다. 경오년에 어막(御幕)을 설치했던 옛터는 토축이 완연하였으나, 경진년에 머물렀던 기지(基址)는 천변(川邊)의 밭두둑에 있어서 보기에 매우 구차하였다. 지방관으로 하여금 옛터에 토축을 쌓고 앞으로는 때때로 소제를 하게 하여 전처럼 되지 않게 하라. 동가(動駕)를 거듭 목격한 사람을 소견한 뒤에 미(米)를 하사하라고 명하였으니, 이에 대해서도 도백으로 하여금 거행한 뒤에 장문하게 하라.” 하였다.

○ 하교하기를, “과천(果川)의 숙소참(宿所站)을 개문(開門)하고 폐문(閉門)할 때, 영문의 취고수(吹鼓手) 등에 대해서는 호조로 하여금 해영(該營)과 해읍(該邑)에 물어서 미와 포(布)를 나누어 주게 하라. 그중 과천의 읍교(邑校)로서 경진년 온행 때의 차비수(差備手)를 맡았던 자가 있다고 하니, 이름을 물어 첩가(帖加)를 작성해 주게 하라.” 하였다.

강命庚辰溫幸時駐駕舊址土築後時加掃除

목敎曰駕過**彌勒堂**前路見兩朝溫幸時晝停舊基路左庚午駐蹕處路右庚辰駐蹕處回轎尋舊基與隨駕大臣移時話舊招致父老細問故事顧予感舊之懷深增痛傷庚午御幕舊址土築宛然而庚辰停駕基址在川傍田畔所見甚屑越令地方官就舊址土築此後時加掃除俾勿如前再經動駕人召見後旣有賜米之命亦令道伯擧行後狀聞○敎曰果川宿所站開閉門時營門吹鼓手等令戶曹問于該營該邑分給米布其中果川邑校有已經庚辰溫幸時差備手者云問名帖加成給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9일(신유)

강경기의 연분 장계(年分狀啓)를 하루 이틀 안으로 작성하여 올리라고 신칙하였다.

목○ 하교하기를, "겨울이 깊어 가는데 도내(道內)를 순행(巡行)하는 일을 아직까지 지체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연분(年分)에 관한 대정(大政)을 아직도 의논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민사(民事)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겠는가. 기백이 능침(陵寢)을 봉심하러 가는 길에 자연히 헤아린 것이 있었을 것이니, 우선 개략적인 상황을 가지고 대략 분등(分等)하여 하루 이틀 안으로 연분 장계를 작성하여 올리게 하라. 이러한 뜻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기백에게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

강飭畿路年分一兩日內修啓

목敎曰冬序向深行部尙遲因此年分大政姑未議到是豈民事不可緩之義乎陵寢奉審之行自有商量者先就槪狀略綽分等一兩日內使之修啓此意令廟堂分付畿伯處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9일(신유)

강이기(李夔)를 승지로 삼았다가 곧이어 체차하고, 이경오(李敬五)를 임명하였다. 전망(前望)이다.

목○ 목(目)이 없는 기사임

강以李夔爲承旨尋遞以李敬五代之前望也

목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9일(신유)

강정사가 있었다. 이조 참판 김희(金憙), 참의 조윤대(曺允大)가 나왔다.

목○ 하교하기를, "대신(大臣)의 장계로 인하여 승지를 체차하였으니, 처의(處義)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한다. 해당 병조의 당상을 모두 체차하라. 단자(單子)를 올리려 한다고 하니 호조 참판 이헌경(李獻慶)을 체차하라. 모두 오늘 정사에서 신자(新資)를 받은 사람으로 의망하여 들이게 하고, 하비(下批)하기를 기다려 패초(牌招)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라." 하였다.

○ 하교하기를, "좌승지를 체차하고, 그 후임을 오늘 정사에서 신자를 받은 사람으로 이미 통의(通擬)되었거나 아직 통의되지 않았거나 간에 구애받지 말고 의망하여 들이라고 해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 이만수(李晩秀)를 승지로, 한광계(韓光棨)를 좌윤으로, 조종현(趙宗鉉)을 호조 참판으로, 신광리(申光履)를 병조 참판으로, 이익운(李益運)을 병조 참의로, 이제만(李濟萬)을 참지로, 박장설(朴長卨)을 형조 참의로, 서욱수(徐郁修)를 공조 참의로, 이형필(李衡弼)을 양근 군수(楊根郡守)로 삼았다.

강有政 吏曹參判 金憙 參議 曺允大進

목敎曰因大臣狀啓承旨旣遞則處義宜無異同當該兵曹堂上竝許遞聞欲尋單戶曹參判 李獻慶 許遞竝令今日政以新資人擬入待下批牌招察任○敎曰左承旨許遞其代今日政以新資人勿拘已通未通擬入事分付該曹○以李晩秀爲承旨 韓光棨爲左尹 趙宗鉉爲戶曹參判 申光履爲兵曹參判 李益運爲兵曹參議 李濟萬爲參知 朴長卨爲刑曹參議 徐郁修爲工曹參議 李衡弼爲楊根郡守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9일(신유)

강호서(湖西)의 도신(道臣), 수신(帥臣), 수령을 감죄(勘罪)하도록 한 것은 모두 거론하지

말고, 선박의 일로 죄를 입은 사람은 모두 탕척(蕩滌)하라고 명하였다.

목○ 비국이 아뢰기를, "호서의 병선(兵船)과 방선(防船)을 올려보낼 때 매일 2승(升)의 양식만을 지급한 일, 동의(冬衣)를 애당초 만들어 지급하지 않은 곡절, 승선(乘船)하지 않은 수군(水軍)에게서 돈을 징수한 일이 있는지 여부와 징수한 돈의 액수에 대해 관문(關文)을 보내어 조사하였습니다. 방금 충청 감사 권엄(權)의 장계를 보니, '양식을 지급한 일로 말하면, 해미(海美) 1현(縣)만 하루에 3승을 지급하였고, 그 밖의 여러 읍진(邑鎭)과 수영(水營), 행영(行營)은 처음부터 2승만을 제급(題給)하였다가, 다시 본도(本道)가 보낸 관문으로 인하여 1승을 추가로 지급하되 작전(作錢)하여 추후에 보내 주었습니다. 옷감을 보조해 준 일로 말하면, 남포(藍浦)와 소근(所斤) 두 읍진은 미리 만들어서 준비하였다가 배를 출발시킬 때 주어서 보냈고, 서산(瑞山), 서천(舒川), 당진(唐津), 결성(結城), 해미 등의 읍은 8월 보름에서 20일 사이에 육지를 통해 수송하였으며, 보령(保寧), 비인(庇仁), 한산(韓山), 면천(沔川), 홍주, 태안(泰安), 수영, 행영은 고을에서 옷값을 마련하고 이교(吏校)를 정하여 보내어 서울 가게에서 사 주도록 할 계획이었고, 평신(平薪)과 서천포(舒川浦)는 쇠잔한 진이므로 본도에서 배가 정박한 곳으로 영비(營裨)와 영교(營校)를 보내어 사 주게 하였습니다. 돈을 징수한 일로 말하면, 각 읍이 전례가 있다고 하였으며, 임천(林川), 서천, 보령, 행영, 태안, 서산, 한산, 평신, 서천포 등의 읍진은 징수한 돈의 수량이 같지는 않으나 모두 돈을 징수한 일이 있으며, 홍주(洪州)는 패선(敗船)의 감관(監官)이 갇혀 있을 때 개인적으로 돈을 징수하여 양식 비용으로 삼았습니다. 소근진(所斤鎭)의 경우에는 애당초 돈을 징수한 일이 없었으나, 색리(色吏)가 뇌물을 받은 데다가 심지어 격졸(格卒)을 풀어서 돌려보내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색리를 다시 중도에 압송(押送)하게 되었는데, 색리가 이 때문에 유감을 품고 이미 지급한 겨울옷을 감추어 두고 터무니없이 날조하여 반드시 본진(本鎭)에 말썽이 생기게 하려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사(水使) 유문식(柳文植)이 처음부터 살펴 신칙하지 못하였으니 그 죄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동안 칙교(飭敎)가 얼마나 엄중하였습니까. 그런데도 이번에 호서의 해읍이 양식미를 처음부터 넉넉히 보조해 주지 않고 동의도 만들어 주지 않은 것은 너무도 태만하고 소홀히 한 것이며, 추후에 추가로 보내 준 것과 옷값을 지급해 준 것으로는 죄를 용서할 단서가 되지 못합니다. 돈을 징수한 일로 말하면, 1명에게서 거둔 것이 많게는 1냥(兩) 5전(錢)이 되기도 하고 적어도 3, 4전 이상이었으니, 이는 더욱 대단히 놀랍습니다. 승선한 격졸에게 자금을 대준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집에 있는 군민(軍民)에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알고도 고의로 범한 것은 이미 말할 것도 없거니와 흐리멍덩하여 살피지 못한 것도 엄한 감처(勘處)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징수한 읍진의 수령과 변장(邊將)을 모두 나문(拿問)하여 엄히 감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근진 색리가 진장(鎭將)을 무함한 일은 매우 놀랍고 통분스럽습니다. 본도로 하여금 다시 사실을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히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식미와 동의를 처음부터 넉넉히 지급하지 않은 것은 영곤(營閫)이 잘 신칙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지급하였으니 돈을 징수한 일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해당 수령과 변장을 모두 함사(緘辭)로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군과 관계된 일은 수곤(水閫)이 전적으로 관장하여 거행하는데, 종전에 거행할 때 조심하지 못한 것은 우선 그만두고라도 읍진의 범죄가 이와 같이 낭자한데도 규찰(糾察)하여 엄히 단속하지 못하였으니, 해당 수사 유문식을 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내의 일은 감사가 통솔하는데도 곤

읍을 검칙하지 못하였으니, 견책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도신을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대례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나니, 울부짖어도 소용없는 나의 애통한 마음으로도 오히려 기쁘고 다행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영이 내리기 전에 있었던 사소한 사단을 가지고 추후에 감처할 필요 없으니, 이 초기 중에서 도신, 수신, 수령을 논죄(論罪)한 것은 모두 거론하지 말라. 남포 현감(藍浦縣監) 박명구(朴命球)는 치적(治績)이 있는 것 외에도 이번에 거행한 것이 매우 가상하니, 승품(陞品)시킬 수 있는 수령의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즉시 조용(調用)하라고 전조(銓曹)에 분부하라. 감죄(勘罪)한 해서의 수령과 변장 중에서, 조니 만호(助泥萬戶)가 30년 가까이 금군(禁軍)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만호로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체차되는 것은 매우 가련하니, 병판으로 하여금 그리 알고 뒤에 빈자리의 여유가 있거든 즉시 수용(收用)하게 하라. 그리하여 저와 같은 무리들조차도 이번에 혜택을 널리 베푸는 뜻을 기억하게 하라. 선박의 일로 죄를 입은 사람들도 모두 탕척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命湖西道 帥臣守令勘罪竝勿論船隻事被罪人幷蕩滌
록 備局啓言湖西兵防船上送時給糧每日二升衣袴之初不造給委折及不騎船水軍處收斂有無多少發關查問矣卽見忠淸監司 權橃狀啓則以爲給糧事只海美一縣一日三升其外列邑鎭及水營行營初以二升題給更因本道行關加給一升作錢追送衣資助給事藍浦 所斤兩邑鎭預爲造備發舡時給送瑞山 舒川 唐津 結城 海美等邑八月望念間由陸輸送保寧 庇仁 韓山 沔川 洪州 泰安 水營行營自官措備價直定送吏校以爲買給京隷之計平薪 舒川浦係是殘鎭自本道發送裨校於舡泊處使之買給收錢事各邑謂有前例 林川 舒川 保寧行營泰安 瑞山 韓山 平薪 舒川浦等邑鎭多寡雖不同俱有收斂洪州則敗舡監官在囚時私捧錢兩以爲糧資至於所斤鎭初無收斂之事而因色吏之收賂至有格卒之放還故更爲押送於中路則色吏以此含憾藏置旣給之冬衣白地構虛必欲生事於本鎭云而該水使 柳文植初不察飭之罪請令廟堂稟處矣前後飭敎何等申嚴而今此湖西該邑初不優助糧米亦不造給衣袴已極慢忽而追後之加送與買給不足爲恕罪之端至於收斂一端一名所收多或爲一兩五錢少不下三四錢者尤萬萬驚駭雖云資給於騎舡之格卒旣多貽害於在家之軍民知而故犯已無可言矇然不察亦難道重勘收斂邑鎭守令邊將請竝拿問嚴勘所斤鎭吏之構誣鎭將極爲駭痛令本道更爲査實照法嚴處糧米衣袴之初不優給由於營閫之不善提飭而旣有末後追給則視諸收斂不無差間當該守令邊將竝緘辭推考事關舟師水閫專管擧行從前擧行之不謹姑捨是邑鎭罪犯若是狼藉而不能糾察嚴束該水使 柳文植拿問處之道內之事監司統率而閫邑之不能檢飭不可無責請該道臣從重推考敎曰大禮順成以予莫逮之慟猶不禁歡幸之情令前些少事端不必追勘此草記中道帥臣守令論罪竝勿論藍浦縣監 朴命球治績之外今番擧行極爲嘉尙待守令陞品窠卽爲調用事分付銓曹 海西守令邊將勘罪中助泥萬戶之以禁軍近三十年久勤纔赴旋遞極爲可矜令兵判知悉從後待窠裕卽爲收用雖如渠之輩亦識今番廣惠之意以舡隻事被罪人亦竝蕩滌事分付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 10월 9일(신유)
강천원도감(遷園都監)이 대령한 각 공인(貢人)과 각 시전(市廛)에 대한 별단(別單)을 올렸다.
록○ 별단은 다음과 같다.
○ 천원 때 대령한 각 공인은 군자감 공인(軍資監貢人), 압도계 공인(鴨島契貢人), 삭계 공인(索契貢人), 지의계 공인(地衣契貢人), 광흥창 공인(廣興倉貢人), 거계 공인(車契貢人),

마계 공인(馬契貢人), 자문감 군계 공인(紫門監軍契貢人), 도안청 군계 공인(都案廳軍契貢人)이다.
○ 진배(進排)한 각 공인은 제용감 공인(濟用監貢人), 의영고 공인(義盈庫貢人), 사섬시 공인(司贍寺貢人), 장흥고 공인(長興庫貢人), 송연계 공인(松烟契貢人), 장목계 공인(長木契貢人), 정철계 공인(正鐵契貢人), 속줄계 공인(束茁契貢人), 풍저창 공인(豐儲倉貢人), 죽계 공인(竹契貢人), 탄계 공인(炭契貢人), 사재감 공인(司宰監貢人), 내섬시 공인(內贍寺貢人), 내자시 공인(內資寺貢人), 예빈시 공인(禮賓寺貢人), 봉상시 공인(奉常寺貢人), 장원서 공인(掌苑署貢人), 갈계 공인(葛契貢人), 수리계 공인(修理契貢人), 사포서 공인(司圃署貢人), 사도시 공인(司導寺貢人), 칠계 공인(漆契貢人), 마피계 공인(馬皮契貢人), 와서 공인(瓦署貢人), 판계 공인(板契貢人), 주토 공인(朱土貢人), 정분 공인(丁粉貢人), 삼록 공인(三碌貢人), 염계 공인(染契貢人), 뇌록 공인(磊碌貢人), 돌곶이정 공인(乭串丁貢人), 몽동이 공인(夢同伊貢人), 숙마 공인(熟麻貢人)이다.
○ 대여 전인군(大擧前引軍)·대여 후인군(大擧後引軍) 이하 각 차비(差備)를 거행한 시전은 다음과 같다. 대여 전인군은 입전(立廛)과 백목전(白木廛)이고, 대여 후인군은 면주전(綿紬廛)과 지전(紙廛)이다. 견여 전인군(肩擧前引軍)은 저포전(苧布廛)과 내어물전이고, 견여 후인군(肩擧後引軍)은 외어물전(外魚物廛), 모자전(帽子廛), 포전(布廛)이다. 만장군(輓章軍)은 하미전(下米廛), 연초전(烟草廛), 내세기전(內貰器廛), 다래전(月乃廛)이다. 각 차비 인예군(引曳軍)은 발리전(鉢里廛), 화피전(樺皮廛), 문외미전(門外米廛), 의전(衣廛), 혜전(鞋廛), 내시소전(內匙召廛), 진사전(眞絲廛), 어염전(魚鹽廛), 양태전(凉臺廛), 상미전(上米廛), 인석전(茵席廛), 생선전(生鮮廛), 내장목전(內長木廛), 잡곡전(雜穀廛), 잡철전(雜鐵廛), 청밀전(淸密廛), 외시소전(外匙召廛), 승혜전(繩鞋廛), 철물전(鐵物廛), 칠목기전(漆木器廛), 외세기전(外貰器廛), 치계전(雉鷄廛), 연죽전(烟竹廛), 은곡전(銀曲廛), 초물전(草物廛), 염해전(鹽醢廛), 마포미전(麻浦米廛), 도자전(刀子廛)이다.

강 遷園都監進待令各貢各廛別單

목別單遷園時待令各貢軍資監貢人鴨島契貢人索契貢人地衣契貢人廣興倉貢人車契貢人馬契貢人紫門監軍契貢人都紫廳軍契貢人○進排各貢濟用監貢人義盈庫貢人司贍寺貢人長興庫貢人松烟契貢人長木契貢人正鐵契貢人束茁契貢人豐儲倉貢人竹契貢人炭契貢人司宰監貢人內贍寺貢人內資寺貢人禮賓寺貢人奉常寺貢人掌苑署貢人葛契貢人修理契貢人司圃署貢人司導寺貢人漆契貢人馬皮契貢人瓦署貢人板契貢人朱土貢人丁粉貢人三碌貢人染契貢人磊碌貢人乭串丁貢人夢同伊貢人熟麻貢人○大輿前後引軍以下各差備擧行廛大輿前引軍立廛白木廛後引軍綿紬廛紙廛肩輿前引軍苧布廛內魚物廛後引軍外魚物廛帽子廛布廛挽章軍則下米廛烟草廛內貰器廛月乃廛各差備引曳軍鉢里廛樺皮廛門外米廛衣廛鞋廛內匙召廛眞絲廛魚鹽廛凉臺廛上米廛茵席廛生鮮廛內長木廛雜穀廛雜鐵廛淸密廛外匙召廛繩鞋廛鐵物廛漆木器廛外貰器廛雉鷄廛烟竹廛銀曲廛草物廛鹽醢廛 麻浦米廛刀子廛

강입직

목대교 김조순(金祖淳)

정조 13년 기유 (1789, 건륭54)10월 9일(신유)

제2차 1790년(정조 14) 2월 8일~12일(3박 4일)

1. 조선왕조실록

정치/왕실

현륭원 원행을 하고 수원에서 과거를 설행한다는 하교

하교하였다. "천봉(遷奉)을 한 뒤에 처음으로 신정(新正)을 맞게 되니, 어린애나 다름없는 그리움이 더욱 깊어진다. **19일에 출궁(出宮)하여 생신(生辰)에 맞춰 현륭원(顯隆園)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다가 수원(水原)의 새 고을에 머무는 날에 수원 등 세 읍(邑)의 유생과 무사들에게 과거를 설행하여 시취(試取)하겠다.** 이로부터 해마다 빠짐없이 원행(園幸)을 할 것이다. 갖가지 폐단을 덜어주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강구하여 정한 규정이 있으니, 그대로 거행하여 털끝만큼이라도 폐단을 끼치지 않도록 경외(京外)에 신칙하라."

○敎曰: "遷奉之後, 初當新正, 孺慕采深. 十九日出宮, 趁誕辰, 詣園所行祭, **還次水原新邑日, 水原等三邑儒武, 當設科試取**. 自此每歲園幸, 豈可或闕? 諸般省弊之端, 已有講定之定例, 依此擧行, 俾無一毫貽弊事, 申飭京外."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1월 1일(임오) 3번째기사>

정치/왕실

거둥할 때 수원과 과천에서 준비하던 음식물 공급을 모두 폐지하라고 명하다

하교하였다. "풍덕(豊德)에 있는 제릉(齊陵)과 후릉(厚陵), 여주(驪州)에 있는 영릉(英陵)과 영릉(寧陵)에 행행(幸行)할 때와 온천에 행행할 때, 연로(沿路)의 각 고을에서 으레 아침 저녁의 찬공(饌供)과 주물상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조(先朝)께서 여주에 행행하였을 때와 경오년에 온천에 행행하였을 때로부터 모두 없애도록 명하고, 서울에서 적당히 날라다가 거행하였었다. 더구나 본원(本園)에 거둥할 때에는 매사에 폐단을 모두 줄이려고 하는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금번의 거둥 때부터 수원·과천 두 고을에서 준비해 오던 음식물 공급은 전부 다 없앨 것이며, 혹시라도 이를 위배(違背)하는 경우에는, 지방관과 도백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본부(本府)는 새로 창설한 고을이어서 모든 것이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였으니, 비록 선비를 시험보이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남한 산성(南漢山城)이나 송도(松都)의 규례를 적용하겠는가.

경신년의 행행 때 풍덕 부사가 과외(科外)로 공급한 일로 처분이 지엄하였다. 이것 또한 선대의 뜻을 계승하는 일단(一端)이다. 더더구나 어공(御供)조차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 신하들에게 사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 점을 묘당으로 하여금 엄히 신칙하고 해당 도백 및 부사에게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乙酉/敎曰: "如豐德齊·厚陵, 驪州英·寧陵幸行及溫幸沿路各邑, 例有朝夕饌供·晝物等措備. 自先朝驪州幸行時, 庚午溫幸時, 皆命除之, 自京從便輸置擧行. 況本園擧動, 每事皆欲省弊者乎? 自今番擧動, **水原**·果川兩邑待令饌供, 一竝除之. 一或違越, 地方官及道伯, 難免其責. 本府以新創之地, 凡百姑未就緖, 雖試士日, 豈用南城·松都之例乎? 庚申幸行時, 以豐德府使之科外供饋, 處分至嚴, 此亦仰述之一端. 且況御供猶勿措備, 至於諸臣私饋, 尤豈可擧論? 令廟堂嚴飭, 行會該道伯及府使處."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1월 4일(을유) 1번째기사>

정치/왕실

정조가 수원부에 머무르다

어가(御駕)가 **수원부(水原府)에 머물렀다.**

○己未/**駕次水原府**.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8일(기미) 1번째기사>

현륭원에 전배하고 작헌례를 행하다

현륭원(顯隆園)에 전배(展拜)하고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걸어서 원(園) 위로 올라가 좌우 산기슭을 두루 살펴보았다.

○庚申/展拜于**顯隆園**, 行酌獻禮. 步詣園上, 徧審左右岡麓.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9일(경신) 1번째기사>

정치/왕실

수원의 동헌, 내사, 사정의 이름을 짓고 현판을 쓰다

수원(水原)의 동헌(東軒)을 장남헌(壯南軒)이라 이름짓고, 내사(內舍)를 복내당(福內堂)이라고 이름지었으며, 사정(射亭)은 득중정(得中亭)이라고 이름지었는데, 모두 임금의 글씨로 현판(懸板)을 썼다.

○**名水原東軒曰壯南軒, 內舍曰福內堂, 射亭曰得中亭, 皆御筆**.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9일(경신) 2번째기사>

운주당에 이르러 산성의 부로들을 위로하다

어가(御駕)가 **독성 산성(禿城山城)**에 나아가 장대(將臺)에 올라갔다. **운주당(運籌堂)**에 이르러 산성의 부로(父老)들을 불러 위로하기를, "그대들 중에는 나이 많은 노인이 많으니 경진년에 어가가 머물렀을 때 구경한 사람이 있겠구나." 하니, 부로들이 아뢰기를, "경진년에 온천에 행차할 때 어가가 **운주당**에 머물러 숙소(宿所)로 삼았는데, 신들은 거의 다 의장(儀仗)들을 반갑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때의 일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는가?" 하니, 부로들이 일제히 아뢰기를, "어가가 머무른 날에 친히 백성들의 고충을 물어보고 창고의 곡식을 풀어 내려주었으며, **진남루(鎭南樓)**에 올라 과녁을 쏘아 연거푸 4발을 맞추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내가 31년 만에 이 산성에 올라 이 집에 앉아서 백성들을 불러 예전 일을 묻노라니, 슬픈 감회를 누를 수 없다. 뜰 안에 들어온 부로(父老) 가운데 온천 행차 때 은전(恩典)을 입은 사람은, 승려이건 속인(俗人)이건 간에 나이를 따지지 말고 특별히 한 자급(資級)씩 올려주고, 성 안의 민가에는 매 호(戶)마다 쌀 한 섬씩을 주어, 이날의 감회가 깃든 뜻을 표시하라."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득중정(得中亭)**에 들러 각신(閣臣)·장신(將臣)들과 더불어 과녁을 쏘았다. 상이 다섯 발을 쏘아 네 발을 맞히고는,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오늘 활을 쏜 것이 마침 경진년의 옛 일과 똑같으니, 마땅히 뜻을 보이는 일이 있어야 하겠다." 하고, 지방관 **조심태(趙心泰)**에게 금갑(金甲) 한 벌을 내려주었다.

○辛酉/駕詣**禿城山城**, 臨將臺, 至**運籌堂**, 召慰山城父老曰: "爾等多耆耇, 其有庚辰駐駕時瞻

望者乎?” 父老等奏曰: “庚辰年溫幸時, 駕次**運籌堂**爲宿所, 臣等擧皆欣瞻羽旄矣.” 上曰: “伊時事, 汝能記乎?” 父老等齊奏曰: “駐駕日, 親問疾苦, 發倉穀以賜之, 臨**鎭南樓**射帿, 連獲四矢.” 上曰: “今予於三十一年之後, 臨此城坐此堂, 召見民人, 問故事, 不覺愴感. 入庭父老, 溫幸時蒙恩典者, 不拘僧俗·年齒, 特加一資, 城內民戶, 戶給斛米, 以示是日寓感之意.” 還次**得中亭**, 與閣臣·將臣射帿, 上五發四中. 謂左右曰: “今日射, 適符庚辰故事, 當有示意.” 賜地方官**趙心泰**金甲一具.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10일(신유) 1번째기사>

문과·무과 별시를 설행하다
문과(文科)·무과(武科) 별시(別試)를 설행하였다. **수원(水原)** 사람 3인과 과천(果川)·광주(廣州) 사람 각 1인씩을 뽑으라고 명하여, 이덕승(李德升) 등 5인을 뽑았다. 유생(儒生) 신덕우(辛德羽)·김성운(金星運)·조만원(趙萬元) 등이 처음에 **수원** 사람으로서 합격을 하였으나 호적(戶籍)이 없었다.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모두 빼내어 충군(充軍)할 것을 청하니, 상이 난처하게 여겼다. 판중추부사 서명선(徐命善) 등이 모두 법은 신용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고, 대사간 홍문영(洪文泳)은 계사(啓辭)를 올려 극력 쟁집하였다. 이에 상이 그들의 이름을 빼버릴 것만을 명하였다.
○壬戌/設文武科別試. 命**水原**取三人, 果川·廣州各取一人, 取李德升等五人. 儒生辛德羽·金星運·趙萬元等, 始以**水原**入格而無籍. 左議政**蔡濟恭**請竝拔去充軍, 上難之. 判中樞府事徐命善等皆言法不可不信, 大司諫洪文泳發啓力爭, 上只命拔去.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11일(임술) 1번째기사>

어가 옆을 지나는 서북 지방 유민들을 위로하다
서북 지방의 유민 수십 명이 어가가 지나는 길 옆을 지나가니, 상이 길을 멈추고 그들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이제 너희들의 부역과 환곡을 면제해줬으니, 너희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라.”하고는, 이어 **장용영(壯勇營)**에서 돈과 베를 주고 진휼청에서 증명첩을 주어 호송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有西北流民數十人過輦路傍, 上駐蹕慰之曰: “今蠲汝徭糴, 汝等歸故土奠居也.” 仍命壯營給錢布, 賑廳給帖護送.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11일(임술) 2번째기사>

경기 관찰사와 수원 부사에 사민들을 위해 유시하다
경기 관찰사와 **수원 부사**에게 유시(諭示)하였다.
“이번 행차에 본부(本府)를 둘러보니, 새 고을의 관사(官舍)는 비록 틀이 잡혔으나 민가(民家)는 아직 두서(頭緖)가 없다. 그 가운데 이른바 약간 지어놓은 집이라는 것은, 땅굴도 아니고 움막도 아니어서 달팽이 껍데기 같기도 하고 게딱지 같기도 하다. 지금 짐작에는, 집들이 줄지어 서고 거리가 번창하여 엄연히 서울 근처의 큰 도회지가 되기란, 본래 짧은 시일에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만약 별도로 방안을 강구하여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어 모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마음을 놓고 생각을 늦출 수 있겠는가. 어가를 옮기는 날에 가마를 멈추고 부로들을 불러 물어보았지만 백성들이 어리석어 대답할 바를 몰랐다. 새 고을의 소재지가 옛적 고을보다 낫게 되자면, 오직 조정에서 꾸려나가기에 달려 있으니, 묘당의 신하들은 십분 토의하여 빈대(賓對) 때에 아뢰도록 하라.

사람들을 모아들이려면 우선 생활할 수 있게 꾸려주어야 하고, 생활을 꾸려주자면 우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이 생업에 재미를 붙이게 해줘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의 구획을 정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은 힘써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 반복해서 생각해도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원소(園所)의 국내(局內)·국외(局外)에 토지의 지가(地價)를 너무 바듯하게 정해서 백성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지 않다고 한다. 이것은 지방관이 별도로 조사해내어 여유있게 운영하여, 조금 완전히 모여들고 자리를 잡게 되기를 기다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힘껏 농사를 짓도록 해주는 외에 다시 직접 장사하여 이익을 보게 한다면, 장차 집집마다 면모가 달라지는 성과가 있게 될 것이다. 숙소에 나아가 있으면서 이 일이 잊혀지지 않아서, 이에 또 촛불을 가져오라고 하여 거듭 유시하는 것이니, 지방관은 공경히 받은 후에 부로들을 모아놓고 일일이 깨우치도록 하라.
소민(小民)은 쉽게 다룰 수가 있으므로 이상과 같이 한다면 혹 안정을 시킬 수가 있을 듯하고, 대민(大民)들이 가게[廛]를 받으려는 바람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억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방관에게도 즉시 알려주어서, 본부의 사민(士民)들을 위해 항시 잊지 않고 있는 나의 고심과 지극한 뜻에 부응토록 하라."
○諭京畿觀察使·**水原府使**曰: "今幸周覽本府, 新治官廨, 雖成規模, 民家未就頭緖. 其中所謂若爾造舍者, 非窖非卡, 則似蝸殼似蟹匡. 以今所料, 度屋閭之櫛比, 街巷之繁庶, 儼然爲畿輔大都會, 固難期以時月. 若不別講另究, 其興勸萃集之方, 予豈可便心而弛思乎? 遷駕之日, 駐轎召問父老, 民之蚩蚩, 不知所對. 新治之勝於舊邑, 惟在朝家措劃, 廟堂之臣, 十分商確, 賓對時敷奏. 大抵欲募入則宜先制産, 欲制産則宜先悅其心樂其生. 太上經界, 其次懋遷, 反覆思惟, 無出於二者. 園所局內外, 新屬土地地價, 過於撙節, 民情不無抑鬱云. 此則地方官別般查出, 優加拮据, 而稍待完聚定居, 又使力作之外, 更售手販之益, 則將有比屋改觀之效. 進住宿次, 餘意憧憧, 玆又呼燭申諭, 地方官祗受後, 聚會父老, 一一曉告. 小民易爲力如右, 則或可安頓, 大民受廛之願, 非可指的, 而驅勒地方官亦卽傳知, 以副予爲本府士民, 惓惓懃懃之苦心至意."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11일(임술) 3번째기사>

과천현에 머무르다
저녁에 과천현(果川縣)에 머물렀다. 아헌(衙軒)을 부림헌(富林軒)이라고 이름짓고, 내사(內舍)를 온온사(穩穩舍)라고 이름지었는데, 어필(御筆)로 현판(懸板)을 썼다.
○夕次果川縣. 名衙軒曰富林軒, 內舍曰穩穩舍, 御筆.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11일(임술) 4번째기사>

환궁하다
관왕묘(關王廟)에 들러 돌아보고 환궁(還宮)하였다.
○癸亥/歷臨關王廟, 還宮.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12일(계해) 1번째기사>

창빈·고 영의정 정태화·고 충신 이복남·고 충목공 이상집의 묘소와 청해백 이지란의 사당에 치제를 명하다
창빈(昌嬪)의 묘소와 고(故)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고 충신(忠臣) 이복남(李福男), 고 충목공(忠穆公) 이상집(李尙집)의 묘소와 청해백(靑海伯) 이지란(李之蘭)의 사당에 치제(致

祭)하라고 명하였다. 연로(輦路)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차천로(車天輅)의 묘소가 과천현에 있다는 말을 듣고 하교하기를,

“그는 글을 잘 지을 뿐 아니라, 또 특이한 공로가 있다. 연전에 이미 그의 유집(遺集)을 찾아내어 내각(內閣)으로 하여금 인쇄하게 하였다.”

하고는, 이어 천로와 복남의 자손들을 찾아 물어서 아뢰라고 명하였다.

○命致祭于昌嬪墓及故領議政鄭太和·故忠臣李福男·故忠穆公李尙집(香+集)墓·靑海伯李之蘭祠, 以距輦路近也. 又聞車天輅墓在果川縣, 敎曰: “文章之外, 且有殊勞. 年前已搜訪遺集, 令內閣入印.” 仍命天輅·福男子孫訪問以啓.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12일(계해) 2번째기사>

2. 일성록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8일(기미)

강어가(御駕)가 **수원부(水原府)**에 나아갔다.

목○ 융복(戎服)을 갖추고 교(轎)를 타고 선화문(宣化門)을 나가 건양문(建陽門)과 홍화문(弘化門)을 거쳐 흥인지문(興仁之門)을 나가 부교의 막차(幕次)에 이르러 각신(閣臣)을 소견하고 선찬(宣饌)하였다. 말을 타고 부교를 건너 10여 리를 갔다. 군복(軍服)으로 갈아입고 과천현(果川縣)에 나아가 주정(晝停)하였다. 다시 교를 타고 행궁을 나왔다. 전교하기를, “이곳의 향교(鄕校)는 그대로 지나칠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또한 교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다. 제신(諸臣)은 굳이 말에서 내릴 필요가 없다.” 하였다.

향교를 지나서 교에서 내려 말을 타고 사근천(沙斤川)에 이르러 행궁에 들렀다. 제조(提調), 병판(兵判), 각신을 소견하고 선찬한 뒤에 말을 타고 나와서 **수원**과 5리 정도 되는 곳에 이르러 융복으로 갈아입고 행궁에 들어갔다.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 지방관 **조심태(趙心泰)**, 양주 목사(楊州牧使) 이유경(李儒敬)은 군례(軍禮)로 갑주를 갖추고 참현(參現)하라고 명하니, 참현하였다. 좌상 **채제공(蔡濟恭)**을 소견하였다. 사정(射亭)에 나가 활쏘기를 하니 1순(巡)에 2발을 맞혔다. 해당 부사(府使)가 내가 활쏘기를 하여 맞혔을 때에 대령한 장교를 후록(後錄)하여 장계(狀啓)한 데 대해, 교련관(敎鍊官) 최치기(崔致驥) 등 2인에게 첩가(帖加)를 발급해 주고, 내일 숙소에 도착한 뒤에 구전(口傳)으로 하비하라고 명하였다. 군수 고자(軍需庫子) 백봉선(白奉先) 등 3인에게 각각 목(木) 2필, 미(米) 5두를 기영(畿營)으로 하여금 제급(題給)하게 하였다. 군사방 승지(軍士房承旨)를 소견하고, 내일 친제(親祭) 때의 제문(祭文)은 좌상이 지어 올리라고 명하였다.

駕詣**水原府**

목具戎服乘轎出宣化門由建陽門 弘化門出興仁之門至浮橋幕次召見閣臣宣饌乘馬渡浮橋行十餘里改具軍服詣果川縣晝停復乘轎出行宮敎曰此處鄕校旣非戛過故予亦乘轎過去諸臣不必下馬矣過鄕校降轎乘馬至沙斤川歷入行宮召見提調 兵判 閣臣宣饌後乘馬出至**水原**五里程改具戎服入行宮命京畿監司 徐有防地方官**趙心泰** 楊州牧使 李儒敬以軍禮具甲冑參現訖召見左相 **蔡濟恭**詣射亭射的一巡獲二矢該府使以御射得中時待令將校後錄狀啓命敎鍊官 崔致驥等二人帖加成給明日到宿所後口傳下批軍需庫子白奉先等三人各木二疋米五斗令畿營題給召見軍士房承旨命明日親祭祭文左相製進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8일(기미)

강입직

목대교 김조순(金祖淳)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9일(경신)

강**현륭원(顯隆園)**에 나아가 친히 제사 지내고 이어 내외(內外)의 청룡(靑龍)과 백호(白虎)를 친히 살폈다.

목○ 아침에 비가 와서 일찍 출발하지 못하였다. 동헌의 당호(堂號)를 '**장남헌(壯南軒)**', 내아(內衙)의 편호(扁號)를 '**복내당(福內堂)**', - 조충국(趙充國)이 말한 '거조가 외부에서 적합하게 이루어지면 복이 내부에서 생긴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3] - 사정(射亭)의 편호를 '**득중정(得中亭)**'이라고 친히 썼다.

전교하기를, "옛날 선조(先朝) 때 어가가 **수원(水原)**에 머물렀을 적에 어필(御筆)을 현판으로 걸도록 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또 고사를 따라 편호를 써서 내려서 '**장남헌**'을 동헌에 걸며, '**복내당**'을 내아에 걸며, '**득중정**'을 사정에 걸도록 하니, 지방관인 **수원부사**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 문루(門樓)는 '**진남루(鎭南樓)**'로 본부의 부사가 써서 걸며, 중삼문(中三門)은 '익좌문(翊左門)'으로 수가하는 제신(諸臣) 중에 일찍이 부사를 거친 사람이 써서 걸며, 외삼문(外三門)은 '**중약문(重鑰門)**'으로 본도의 도백이 써서 걸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사시(巳時)에 이르러 비가 조금 뜸해졌다. 시위하는 군병은 우구(雨具)를 착용하며, 문관과 음관(蔭官)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검(劍)만 차고, 백관은 삽우(揷羽)는 그만두라고 명하였다. 통례(通禮)가 외판(外辦)을 아뢰었다. 평융복(平戎服)을 갖추고 교(轎)를 타고 재전(齋殿)에 나아갔다. 참포(黲袍)로 갈아입고 여(輿)를 타고 홍살문 밖에 나아갔다. 여에서 내려 판위에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정자각(丁字閣)에 나아가 의주대로 제사를 행하였다. - 아헌관(亞獻官)은 **채제공(蔡濟恭)**이고, 종헌관(終獻官)은 황인점(黃仁點)이고, 대축(大祝)은 유문양(柳文養)이었다. - 백관은 품지(稟旨)를 기다리지 말고 자리에 나아가며, 내일 사원례(辭園禮)에도 참석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어 원상(園上)에 나아가 봉심하였다. 각신(閣臣) 정민시(鄭民始)에게 하교하기를, "석물이 장릉(長陵)에 견주어 어떠한가?"

하니, 정민시가 대답하기를, "약간 작지만 조각한 것은 훨씬 낫습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그렇다면 지금 정우태(丁遇泰)의 솜씨가 옛날 최천약(崔天若)보다 못하지 않겠다." 하였다. 이어 정우태를 불러서 석각이 있는 여러 곳을 봉심하게 하였다. 비각(碑閣)에 나아가 봉심하였다. 원관(園官)들에게 하교하기를, "벽돌 중에 좋지 않은 것은 적절히 고쳐 만들라." 하였다.

정민시가 아뢰기를, "정자각에 철물(鐵物)을 더해서 수개(修改)해야 할 곳이 있고 비각의 좋지 못한 네모난 벽돌을 수개해야 하는데, 이번 한식(寒食)에 고유제(告由祭)와 아울러 거

---

3) 조충국(趙充國)이 …… 것이다 : 조충국은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의 명장으로, 서강(西羌)이 반란을 일으키자 70세의 늙은 나이로 나가 싸워서 이를 평정한 다음 둔전(屯田)을 설치하고 군사를 정돈하여 돌아왔다. 당시 조충국은 누차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출병을 하지 않고 금성(金城) 일대에서 둔전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다. 그 상소 내용에 "군대는 덕을 밝히고 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조가 외부에서 적합하게 이루어지면 복이 내부에서 생기는 법이니 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兵者 所以明德除害也 故擧得於外 則福生於內 不可不愼〕"라고 하였다. 《漢書 卷69 趙充國辛慶忌傳》

행하고, 별간역(別看役) 정우태로 하여금 간검(看檢)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도보로 왼쪽 산등성이를 넘고 여를 타고 재전으로 돌아왔다. 6개 읍의 식목 차사원(植木差使員) 및 원관, 경기 관찰사, 지방관은 모두 즉시 홍살문 밖에 대령하라고 명하였다. 잠시 뒤에 도보로 원상에 나아가 내외의 청룡과 백호를 친히 살폈다. 차사원들에게 나무를 심는 것을 되도록 견고(堅固)하게 하라고 신칙하였다. 원관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이날에 또한 보행(步行)하였으니, 이후로 원관들은 감히 견여(肩輿)로 산을 돌아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어 원복(園僕) 이외의 잡인은 출입하여 왕래하지 못하도록 신칙하였다. 청룡 쪽으로부터 나무 심은 곳을 두루 살폈다. 원관이 청룡에 보토(補土)하는 일로 우러러 아뢴 데 대해, 하교하기를, "이것은 하늘의 조화로 이루어진 것이지 사람이 손상시킨 것이 아니다. 대체로 이번 천원(遷園)은 하늘의 도움으로 된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산리(山理)를 기왕에 적확하게 알기 어렵다면 하늘에 맡기고 사람의 꾀를 쓰지 않는 것이 낫다."
하니, 원관이 아뢰기를, "김양직(金養直)이 마을길로 인해 땅이 파였기 때문에 보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그렇다면 보토하는 것이 무방할 터인데, 되도록 평평하고 둥글게 하게 하여 높거나 낮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원관이 또 아뢰기를, "남산(南山) 빙고(氷庫)의 옛터에 땅이 파인 곳도 응당 흙으로 메워야 한다고 합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즉시 흙을 메워 평평하게 하라." 하였다.
원관이 또 못을 파는 일에 대해 아뢴 데 대해, 하교하기를, "김양직의 말은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곤신방(坤申方)에 방당(方塘)을 파고 중앙에 자그마한 둥근 섬을 설치하는 것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토국(土局)은 원(圓)을 귀히 여기니, 원당(圓塘)만 못할 듯하다." 하니, 대답하기를, "둥근 섬이 바로 토국의 중앙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다시 하교하기를 기다려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백호에 나아가 보토하는 곳을 물었다. 안산(案山)의 봉우리에 나아가 친히 살폈다. 경기 관찰사와 지방관에게 편의(便宜)하게 나무를 심도록 신칙하였다. 하교하기를, "내일 다시 살필 것이니, 원관 및 김양직, 조윤식(曺允植) 등 여러 사람에게 미리 통지하여 대령하게 하라." 하였다.
재전(齋殿)으로 환차(還次)하였다. 백관은 삽우하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원관에게 내하 궁전(內下弓箭)을 각각 1부(部)씩 사급(賜給)하고, 경수복(京守僕), 본원의 수복, 수호군(守護軍)에게 규례를 상고하여 시상하라." 하였다.

강 詣顯降園親祭仍親審內外龍虎

목 朝雨不得早發親書東軒堂號曰**壯南軒**內衙曰**福內堂**取趙充國擧措得於外福生於內之意也射亭曰**得中亭**敎曰昔在先朝駕次**水原**有御筆揭板之擧今又追故事書下扁號以**壯南軒**揭于東軒**福內堂**揭于內衙**得中亭**揭于射亭令地方官**水原府使**知之門樓以**鎭南樓**本府使書揭中三門以翊左門隨駕諸臣中曾經府使人書揭外三門以**重鑰門**本道伯書揭事分付至巳時雨意稍歇命侍衛軍兵雨具文蔭官自今日至明日只佩劍百官除插羽通禮啓外辦具平戎服乘轎詣齋殿改具黲袍乘輿詣紅箭門外降輿詣版位行禮詣丁字閣行祭 亞獻官 **蔡濟恭** 終獻官 黃仁點 大祝 柳文養 如儀訖命百官不待稟旨就次明日辭園禮亦勿入參仍詣園上奉審敎閣臣 鄭民始曰石物比長陵何如民始對曰差小而雕刻則絕勝矣敎李然則今之丁遇泰不下於古之崔天若矣仍召丁遇泰使之奉審石刻諸處詣碑閣奉審敎園官等曰甎甓之不佳者量宜改造民始啓言丁字閣有鐵物添修處碑閣方甎不精者當爲修改今番寒食兼告由擧行使別看役 丁遇泰看檢爲宜從之步踰左岡乘輿還齋殿命六邑植木差使員及園官畿伯地方官竝卽待令於紅箭門外少選步詣園上親審內外龍虎飭差員等植木務令堅固敎園官曰予於此日亦步行此後園官輩宜不

敢肩輿巡山矣因飭園僕外雜人毋得出入來往自靑龍邊周審植木處園官以靑龍補土事仰奏敎以此是天作非人之缺之也蓋此遷園卽天佑非人力也山理旣難的知則莫如付之於天而勿參人謀之爲愈矣園官曰金養直以爲村路所鑿故不可不補云矣敎以然則補土無妨而務令平圓不高不低可也園官又奏南山氷庫舊址穿土處亦當塡補云矣敎以須卽塡平園官又奏鑿池事敎以金養直之言何如對曰坤申方鑿方塘中置小圓嶼爲吉云敎以土局以圓爲貴似不若圓塘矣對曰圓嶼卽土中央之義云矣命更待下敎擧行詣白虎詢補土處詣案珠親審訖飭畿伯地方官植木便宜敎以明日當更審園官及金養直 曹允植諸人預爲知委使之待令還次齋殿命百官插羽敎曰園官內下弓箭各一部賜給京守僕本園守僕守護軍考例施賞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9일(경신)

강입직

목대교 김조순(金祖淳)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10일(신유)

강어가가 독산산성(禿山山城)에 나아갔다가 수원부(水原府)로 환차하였다.

목○ 재전에 나아갔다. 승지 이익운(李益運)과 윤행임(尹行任) 등을 소견하였다. 전교하기를, "절터와 향교 터를 등람(登覽)한 뒤에 남산(南山)으로 방향을 바꾼 다음 산성에 나아갈 것이니, 예방 승지와 병방 승지 이외에 제신은 모두 산성과 5리 되는 곳에서 대후(待候)하게 하고, 시위(侍衛) 및 선상(先廂)·후상(後廂)은 또한 먼저 과천(果川)의 대로(大路)로 향해 가서 유주(留住)하게 하며, 훈장(訓將)은 마병(馬兵) 50인을 거느리고 산성 밖의 조금 넓은 곳에 주둔하고, 산성의 중군(中軍)은 성문 밖에서 지영(祗迎)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원소(園所)의 동구에서부터 흥인지문(興仁之門)에 도착할 때까지[4] 상언(上言)을 받아들이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본원의 지방관인 수원 부사 조심태(趙心泰)에게 표피(豹皮) 1령(令)을,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에게 호피(虎皮) 1령을 모두 규례대로 사급하라."

하였다. 윤행임이 군령(軍令)을 반포하였다. 융복을 갖추고 원상(園上)에 나아가 봉심하였다. 여를 타고 재전을 나와 밭 사이의 소로(小路)를 따라 불사(佛寺)와 부도(浮圖)의 옛터에 나아가 간심하였다. 조윤식(曺允植) 등을 불러서 절을 짓는 데 대한 형편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봉정(峯頂)의 옛터에 절을 지은 지 60년 만에 그대로 황폐해졌는데, 승도(僧徒)가 모두 밭 사이의 평지에 남향으로 고쳐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도형을 들이라고 명하고 도형을 열람하였다. 군복(軍服)으로 갈아입고 여를 타고 원소의 동구에 이르렀다. 별군직(別軍職) 서영보(徐榮輔)와 박사필(朴思弼)을 잡아들이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근밀(近密)한 직책을 띤 자들로 막중한 숙위에 제대로 번(番)을 바꾸어 교대하지 못하여 어젯밤에 전수(全數)가 비어진 때가 있기까지 하였으니, 법을 세우기를 먼저 그대들로부터 시작해야겠다. 선전관 이하는 어찌 책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군직청(軍職廳)의 하례(下隷)를 하나하나 조사해 내어 적발되는 대로 경중(京中)으로 쫓아 보내고, 서영보 등은 조적(朝籍)에서 간삭(刊削)하고 태거(汰去)한 뒤 훈영(訓營)에 넘겨서 환궁할 때 강두(江頭 한강가)에서 회시(回示)하기 위해 대령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향교의

4) 원소(園所)의 …… 때까지 : 원문은 '自園洞口至興仁之門' 인데,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에 근거하여 '園' 다음에 '所' 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옛터에 나아가 두루 살펴보고 남산을 돌아보며 올라갔다. 산 바깥쪽의 사록(砂麓)이 간간이 깎여 나가서 나무를 꽂아 산사태를 방비해야 할 곳이 있었으므로, 원관(園官)에게 내년에 원행(園幸)할 때를 기다려 다시 품주하여 보축(補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두루 살펴본 뒤에 방죽 쪽 길을 따라 대로에 이르러 여에서 내려 말을 타고 독산산성에 이르렀다. 중군이 서문(西門) 밖에서 기고(旗鼓)로 영접하였다. 서문으로 들어가 장대(將臺)에 올라가 경진년(1760, 영조36)에 주가(駐駕)하신 처소를 물으니, 서유방이 대답하기를, "이 아래에 **운주당(運籌堂)**이 있는데 바로 경진년에 주가하신 곳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이어 여를 타고 **운주당**에 이르렀다. 중군 유이주(柳爾胄)는 성중(城中)의 부로(父老) 및 승도를 거느리고 와서 대령하라고 명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그대들은 모두 원래부터 거주하던 백성으로서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는데, 경진년에 주가하셨을 때에 반드시 우러러보고서 기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각기 자세히 진달하라." 하니, 부로들이 일제히 아뢰기를, "경진년에 온천에 행행(行幸)하셨을 때 어가가 산성에 머물렀는데 **운주당**을 숙소로 삼으셨습니다. 신들이 거의 모두 어가를 기쁜 마음으로 우러러보았는데, 더러 몸소 옥음(玉音)을 받든 자도 있었으니,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당시의 사적(事蹟)을 혹 기억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니, 부로들이 일제히 아뢰기를, "주가하신 날에 친히 신들에게 질고(疾苦)를 하문하신 다음 창고의 곡식을 덜어 내어 하사하시고, **진남루**에 올라가 활쏘기를 하여 1순(巡)에 잇달아 4발을 맞히시고, 이튿날 아침에 그대로 출발하셨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대들은 거의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말할 만한 폐막(弊瘼)이 있으면 하나하나 진달하라."

하니, 부로들이 아뢰기를, "혹은 농업에 종사하여 궁핍함을 면하기도 하고, 혹은 상업에 종사하여 생활하기도 하며, 또 혹은 산성에서 일을 맡아 그 요포(料布)로 살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성은(聖恩)이 미치는 곳마다 과분하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성중의 호수를 물으니, 128호라고 대답하였다. 또 활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물으니, 본읍의 장교까지 아울러 활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도합 30여 인이라고 대답하였다.

전교하기를, "옛날 경진년(1760, 영조36)에 온천에 행행하셨을 때 산성의 숙소에 주가하시고 **진남루**에 올라 활을 쏘아 1순에 잇달아 4발을 맞히며 부로들을 불러 질고를 하문하셨다. 지금 내가 31년 뒤에 이 산성에 오고 이 당(堂)에 앉아서 백성들을 소견하고 고사(故事)를 자세히 물었는데, 고사를 듣게 되자 나도 모르게 서글퍼졌다. 나의 선조(先朝)의 뜻을 계술하는 도리에 있어 어찌 감격스러운 뜻을 보여 주는 조처가 없을 수 있겠는가. 뜰에 들어온 부로들은 모두 경진년 온천에 행행하셨을 때 은전을 후하게 받은 자들이니, 승도이건 속인이건, 연치가 많건 적건 간에 구애되지 말고 특별히 한 자급씩 가자하라. 성 안의 민호에게는 가호마다 미포(米包)를 지급함으로써 이날의 감격스러움을 붙인 뜻을 보이도록 하라. 독산산성의 중군 유이주는 상당직(相當職)에 승서(陞敍)하고, 영접한 군교(軍校)는 본도로 하여금 시상하게 하라. 활쏘기를 할 수 있는 부류는 내일 대령하였을 때 과녁을 맞히면 직부인(直赴人)으로 함께 창방(唱榜)해야 할 것이니, 이로써 분부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내일 장옥(場屋)에는 산성의 백성을 위해 응당 특별히 소포(小布)를 설치하여 시사(試射)할 것이니, 이것은 경진년의 옛일을 추념하는 뜻이다." 하였다.

이어 **진남루**에 올라갔다. 지방관 **조심태**에게 하교하기를, "이 누각에 대한 기문(記文)을

지어 내릴 것이니, 본부(本府)에서 편리할 대로 개축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여를 타고 서문을 나와 언덕을 내려와 여에서 내려 말을 타고 **수원**의 **득중정**으로 돌아왔다. 경기 감사 및 지방관을 소견하고, 내일 시험의 문시관(文試官)과 무시관(武試官)을 낙점하였다. **장남헌**에 머물며 판중추부사 서명선(徐命善)을 소견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근래 어승마(御乘馬)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신이 작년 겨울에 연석에서 아뢰어 마의 사복(馬醫司僕) 김여휘(金麗輝)를 절사(節使) 편에 들여보내어 2필을 사 오도록 하였는데, 모두 성질이 온순하고 걸음걸이가 빨라서 애당초 곧바로 탈 수 있는 어승마［直御乘］에 의의(擬議)하였으나 미처 망통(望筒)을 갖추지 못하여 아직까지 그에게 시상하기를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1필은 먼저 어승마로 쓰였고 다른 1필은 또 장차 들여서 쓸 것이니, 격려하고 권면하는 방도에 있어서 김여휘를 그대로 놔두고 논상(論賞)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하여, 하교하기를, "특별히 가자하여 후일을 권면할 수 있도록 하라."하였다.
서영보와 박사필을 다시 잡아들이라고 명하였고, 잡아들이는 것을 지체한 훈련도감의 행수교련관(行首敎鍊官)을 끌어내라고 곧바로 명하였다. 서영보 등에게 어젯밤 환위(環衛)하는 데 궐직(闕直)한 일에 대해 물었다. 이어 이전처럼 훈영(訓營)에 넘겨서 환궁할 때 강두에서 처분하기 위해 대령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다시 **득중정**에 나아가 활쏘기를 하여 4발을 맞혔다. 각신(閣臣), 훈련대장, 중군, 금군 별장, 수어사, **수원 부사**는 시사(侍射)하라고 명하였다. 훈련대장 서유대(徐有大)가 5발을 맞혔으므로 특별히 서영보 등을 풀어 주어서 이전처럼 시위하게 하였다. 해당 부사(府使)가, 내가 활쏘기를 하여 과녁에 맞혔을 때 대령한 장교 등을 후록하여 장계한 데 대해, 전교하기를,
"활쏘기를 하여 우연히 적중시켰는데, 과녁에 4발을 맞힌 것이 마침 경진년(1760, 영조36)의 고사와 부합하였다. 이것은 비록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나의 서글프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한층 더하게 하였으니, 어찌 나의 감격스러운 뜻을 보여 주는 조처가 없을 수 있겠는가. 지방관도 시사의 반열에 참여하였는데, 원역(園役)에 부지런히 힘썼으니 그 노고를 기념할 만하다. 내사 금갑(內賜金甲) 1부(部)를 친히 주게끔 하라. 대령한 장교들에게 가자하되, 이미 가자된 사람은 변장(邊將)에 제수하라. 군사들에게는 기영(畿營)으로 하여금 미(米)와 면(綿)을 넉넉히 지급하게 하라고 회유(回諭)하라."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본부의 어전(御前)에 대령한 순령수(巡令手), 뇌자(牢子), 취수(吹手), 대기수(大旗手)를 모두 본도로 하여금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게 하라. 각 해당 차지 교련관(次知敎鍊官)을 후록하여 장문하면 내하 동개(內下筒箇)를 사급(賜給)할 것이니, 이로써 본부 부사에게 하유(下諭)하라. 이번에 본읍의 이교(吏校)들은 한 사람이 백공(百工)의 일을 겸행하여 비할 데 없이 노고하였다. 세 등급으로 나누어 장문하면 응당 상전(賞典)이 있을 것이니, 이로써 잘 알라고 일체 하유하라."하였다.

강駕詣禿山山城還次**水原府**

록御齋殿召見承旨 李益運 尹行任等敎曰寺址校基登覽後當轉向南山仍詣山城禮兵房承旨外諸臣皆令待候於山城五里地侍衛及先後廂亦令先向果川大路留住訓將率馬兵五十於山城外稍廣處箚住山城中軍門外柢迎又敎曰自園洞口至興仁之門捧上言又敎曰本園地方官**水原府使** **趙心泰** 豹皮一令監司 徐有防 虎皮一令竝依例賜給行任頒軍令訖具戎服訖園上奉審乘輿出齋殿從田間小路詣佛寺浮圖舊址看審召曹允植等詢問建寺形便對以峯頂古址建寺六十年仍爲廢壞僧徒皆以田間平地改構南向爲宜云矣命入圖形覽訖改具軍服乘輿至園所洞口命別軍職徐英輔 朴思弼拿入敎曰爾等以近密之職莫重宿衛不能輪番遞代昨夜至有全數曠闕之時立法先從爾等爲始宣傳官以下何足責哉命軍

職廳下隸一一查出逐送京中英輔等刊名汰去出付訓營使之還宮時江頭回示次待令詣鄕校舊基周覽巡南山而上山外砂麓間間缺剝有插木防汰之處故命園官待來年園幸時更稟以爲補築之地周覽訖從堰邊路至大路降輿乘馬至禿山山城中軍於西門外旗鼓迎接入西門登將臺問庚辰駐駕處所徐有防對曰此下有**運籌堂**郎庚辰駐駕所云矣仍乘輿至**運籌堂**命中軍柳爾胄率城中父老及僧徒來待予曰爾等俱以元居之民已成耆考之人庚辰駐駕時必有瞻望而記憶者其各悉陳也父老等齊奏曰庚辰年溫幸時駕次山城而**運籌堂**爲宿所臣等擧皆欣瞻羽旄或有躬奉玉音者尙今記有矣予曰伊時事蹟或有記誦者乎父老等齊奏曰駐駕日親問疾若於臣等捐出倉穀而賜之登臨**鎭南樓**射布一巡連獲四矢翌日朝仍爲進發矣予曰爾等擧皆業農而何以聊生乎如有弊瘼之可言者一一陳達父老等曰或事農業而得免賈乏或業商賈而籍爲生涯又或有任役於山城以料布資生者聖恩所暨歌詠以過矣予問城中戶數對以一百二十八戶又問能射者幾人對以竝本邑將校操弓者合爲三十餘人矣敎曰昔在庚辰溫幸時駐駕山城宿所登**鎭南樓**臨的一巡連獲四矢召問父老以疾苦今予於三十一年之後臨此城坐此堂召見民人細問故事聞來不覺愴傷在予追述之道豈可無示意之擧入庭父老皆是庚辰年溫幸時厚蒙恩典者不拘僧俗及年齒特加一資城內民戶戶給米包以示是日寓感之意禿山山城中軍柳爾胄相當職陞敍迎接軍校令本道施賞操弓之類趁明日待令得中則當直赴同爲唱榜以此分付又敎曰明日場屋山城人當別設小布此卽追念庚辰舊事之意也仍上**鎭南樓**敎地方官**趙心泰**曰此樓記文當製下自本府從便改構宜矣乘輿出西門岸下降輿乘馬還詣**水原得中亭**召見京畿監司及地方官點下明日文武試官次**壯南軒**召見判府事徐命善　命善啓言近日御乘不備臣於昨冬筵稟入送馬醫司僕　金麗輝於節使之行貿來二匹皆性馴步逸自初擬議於直御乘而未及備望尙不得請賞矣今則一匹先經御坐一匹又將入用其在激勸之道金麗輝不可置而不論敎以特爲加資以勸來後命徐英輔 朴思弼更爲拿入以遲滯拿入都監行首敎鍊官旋命拿出問英輔等以昨夜環衛闕直之事仍命如前出付訓營使之回還時江頭處分次待令復詣**得中亭**射的獲四矢命閣臣　訓將中軍禁軍別將　守禦使　**水原府使**侍射訓將　徐有大五中特釋徐英輔等使之如前侍衛該府使以御射得中時待令將校等後錄狀啓敎曰射革得中偶然而射鵠之獲四矢適符庚辰故事此雖微事增我愴慕豈無示意之擧地方官亦參侍射之列園役勤勞勞可紀也內賜金甲一部使之親授待令將校加資已加資人邊將除授軍士等令畿營優給米綿事回諭又敎曰本府御前待令巡牢吹大旗手皆令本道分等施賞各該次知敎鍊官後錄狀聞當以內下筒箇賜給以此下諭于本府使今番本邑吏校等一人兼百工之事放勞無比分三等狀聞則當有賞典以此知悉事一體下諭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10일(신유)

강장성부(長城府)에 정배된 죄인 구순(具純)을 풀어 주었다.

목○ 목(目)이 없는 기사임

강放長城府定配罪人具純

목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10일(신유)

강입직

목대교 김조순(金祖淳)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11일(임술)

강**득중정(得中亭)**에 나아가 문무과 별시(文武科別試)를 설행하고 과천현(果川縣)으로 환차(還次)하였다.

목○ 융복(戎服)을 갖추고 **득중정**에 나아가 문무과 별시를 설행하였다. 시관(試官) 이하가

뜰에 들어와 예를 행하였다. - 문시관(文試官)은 **채제공(蔡濟恭)**, 정민시(鄭民始), 서유린(徐有隣), 오재순(吳載純), 홍양호(洪良浩), 서정수(徐鼎修), 김재찬(金載瓚), 정동준(鄭東浚), 이만수(李晩秀), 홍문영(洪文泳), 정만시(鄭萬始), 유문양(柳文養), 허전(許㙫), 김조순(金祖淳)이고, 무시관(武試官)은 서명선(徐命善), 이갑(李), 서유대(徐有大), 유효원(柳孝源), 김익빈(金益彬), 조집(趙嶪), 신의현(申義顯)이다. -"고굉군(股肱郡)[5]"으로 부제(賦題)를 삼았다. **수원(水原)**에서는 3인을 취하고, 과천(果川)과 광주(廣州)에서는 각각 1인을 취하라고 명하였다. 광주의 이덕승(李德升)이 삼하(三下)를 받아 거수(居首)하였고, 오성근(吳聖根)이 과천 사람으로 입격하였고, 신덕우(辛德羽), 김성운(金星運), 조만원(趙萬元) 3인이 모두 **수원** 사람으로 입격하였는데, 창명(唱名)하였다. 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이번 별시 때에는 세 번의 식년(式年)에 잇달아 입적(入籍)된 거주자가 아니면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명이 있었는데, 방금 기백(畿伯)의 말을 듣건대, 입격한 5인 가운데 3인은 모두 입적되지 않은 처지로서 함부로 응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길을 한번 열어 놓으면 뒷날의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3인을 모두 방목(榜目)에서 삭제하고 변원(邊遠)에 충군(充軍)함으로써 조정의 명령을 미덥게 하고 분경(奔競)하는 폐단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번 과시(科試)는 다른 과시와는 다르다. 이미 창명하였는데 곧바로 또 삭제한다면 어찌 난처하지 않겠는가. 비록 입적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집을 짓고 거주한다면 의당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도가 있어야 한다.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판중추부사 서명선은 아뢰기를, "이미 명이 있었으면 함부로 응시한 유생을 의당 해당 형률에 처하게 해야 하니, 어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채제공**은 아뢰기를, "연전에 있었던 남한산성(南漢山城)의 별시 때 윤영의(尹永儀)가 한 번의 식년에 호적(戶籍)에 오른 적이 있었지만 또한 이미 방목에서 삭제하였으니, 지금 다르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경들의 말이 비록 이와 같지만, 이번 과시는 남한산성의 과시와 또한 차이가 있다. 재신(宰臣)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재신들이 일제히 아뢰기를, "조정의 명령을 미덥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결단코 관대하게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대사간 홍문영(洪文泳)이 아뢰기를, "과장(科場)의 법의가 얼마나 지엄합니까. 그런데 이번 입격한 사람 가운데 3인이 애당초 입적되지 않았는데 방자하게 함부로 응시하였으니, 과규(科規)를 엄히 하고 뒷날의 폐단을 막는 방도에 있어서 그대로 놔두고 논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신덕우, 김성운, 조만원을 모두 원래의 방목에서 삭제하고 법전에 따라 충군하소서."

하여, 삭제하라고만 명하고, 이어 신덕우 등에게 하교하기를, "그대들이 입적되지 않았는데 함부로 응시하여, 제신(諸臣)들이 법을 의거하여 쟁론하고 또 선비들의 여론이 분분하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삭제하도록 하였지만, 매우 가련하다.[6] 모쪼록 각기 노력해서 뒷

---

5) 고굉군(股肱郡) : 한나라 문제(文帝)가 하동 태수(河東太守)인 계포(季布)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임명하려고 불러들였다가, 또 그가 술주정이 있어 가까이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경사(京師)에 머물게 한 지 한 달 만에 도로 하동으로 돌려보냈다. 이때 계포가 문제에게 나아가 불만스러운 뜻을 나타내자, 문제가 부끄러워하다가 한참 만에 "하동은 나의 고굉군이므로 특별히 그대를 불렀을 뿐이다." 하였다. 고굉군은 경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고을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수원(水原)**, 광주(廣州), 과천(果川) 세 고을을 두고 한 말이다. 《史記 卷100 季布欒布列傳》

날의 과시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다시 이이희(李履熙), 이서조(李瑞朝), 이운행(李運行)을 취하였다. 무과 별시에서 이광춘(李光春) 등 175인을 취하였는데, 창명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이운행 집안에서 몇 대의 무덤을 이장한 것은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해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 매양 몹시 불안하였다. 그런데 서사(筮仕)한 지 오래되지 않아 또다시 등제(登第)하였으니, 가상하게 여긴다.” 하였다.
이어 **채제공** 등에게 이르기를, “처음의 방목이 문제가 있어 재차 성적을 살펴 이운행을 얻었으니, 어찌 천명(天命)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광교(光敎)**[7]의 이씨(李氏) 사람인 그가 이 방목에 오르게 되었으니 이 또한 천리(天理)이다.” 하였다.
이어 방방(放榜)하라고 명하였다. 방방에 대한 진하(陳賀)를 의주(儀註)대로 하였다. 무사(武士) 중에 홍패(紅牌)를 함부로 받은 자를 본부에 넘겨 죄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신은(新恩)에 대한 정사를 당일에 거행하라.” 하였다. **장남헌(壯南軒)**으로 환어(還御)하였다. 평융복(平戎服)으로 갈아입고 교(轎)를 타고 행궁을 나왔다.
승지 윤행임(尹行任)에게 하교하기를, “어제 본부의 부사는 부로(父老)를 거느리고 대령하라고 명하였는데, 과연 이미 와서 대령하였는가?” 하니, 윤행임이 아뢰기를, “본부의 부사가 교를 인도하는 일로 먼저 나아왔는데 부로는 아직 와서 대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승지가 뒤떨어져서 부로를 불러 모아 놓고, ‘이 고을은 바로 나의 선영(先塋)이 있는 고을이니, 백성들을 돌보아 주려는 마음이 다른 곳보다 갑절로 더 든다.’고 효유하라. 이렇게 이사하는 때를 당하여 필시 소란스럽다는 탄식이 많을 것이니, 무릇 폐단이 되는 근원과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도를 그들로 하여금 하나하나 진달하게 하고, 자세히 들은 뒤에 어가가 도착해 있는 곳에서 복명(復命)하라.” 하였다.
이어 출발하였다. 몇 리쯤에 이르니, 양서(兩西)와 동북(東北)의 유민(流民) 수십여 인이 있었다. 향색 제조(餉色提調) 서유린(徐有隣)은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각 사람에게 전(錢) 1냥과 포(布) 1필(疋)을 분급하였고, 그중에 더욱 행색이 남루한 부류들에게는 각각 목(木) 1필을 주었다. 하교하기를, “그대들은 작년의 환자(還上)를 과연 이미 다 납부하였는가?” 하니, 더러 납부하기도 하고 납부하지 못하기도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이와 같다면 그대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필시 많을 것이니, 참으로 이른바 소는 보고 양은 보지 못하였다는 경우이다.[8] 그대들이 아직 납부하지 못한 환곡은 특별히 탕감하게 할 것이고, 각 도에 분부하여 양식을 지급하여 호송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의 신포(身布)와 잡역(雜役)을 모두 제감해 줄 것이고, 또 진청에서 별도로 첩문(帖文)을 발급해 줄 것이니,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 침탈하는 단서가 없을 듯하다. 모쪼록 즉시 내려가서 본토(本土)를 편안히 여기고 정착하도록 하라.” 하였다. 과천현(果川縣)에 이르렀다. 본읍(本邑)의 현감 이명걸(李命杰)을 소견하였다.
이명걸이 아뢰기를, “본읍의 민호(民戶)는 겨우 3370호일 뿐인데, 반호(班戶) 및 제반 잡

---

6) 매우 가련하다 : 원문은 ‘而矜隣極矣’인데,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에 근거하여 ‘隣’을 ‘憐’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7) **광교(光敎)** : **수원부**의 **팔달산(八達山)** 아래의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근처에 **광교산(光敎山)**이 있다. 《日省錄 正祖 13年 7月 23日》
8) 소는 …… 경우이다 : 제 선왕(齊宣王)이 하루는 당상(堂上)에 앉아 있다가 흔종(釁鐘)에 쓰기 위해 끌려가는 소를 보았는데, 그 소가 측은하게 여겨져서 소 대신에 양으로 바꾸어 쓰라고 명한 일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이곳에 모인 곤궁한 유민을 보고 측은하게 여겨지는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백성들이 도처에 많을 것이니 더욱 안타깝다는 뜻이다. 《孟子 梁惠王上》

탈(雜頉)을 제외하면 응역(應役)하는 호수(戶數)가 1천 7, 8백 호에 불과합니다. 양정(良丁)과 사정(私丁)의 군액(軍額)을 통틀어 계산하면 2077명[9]이 되는데, 이 민호를 가지고 저 군정(軍丁)을 비교해 보면 서로 너무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摠戎廳) 및 순영(巡營)의 보인(保人)은 그 수효가 매우 많아서 군액을 실로 채워 넣을 방도가 없고 인족(隣族)은 매양 지탱하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있으니, 대체로 그 보인의 역(役)이 원군(元軍)에 비해 조금 가볍고 서울에 가까운 지역의 백성들이 투탁(投托)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군안(軍案)에 등재되어 있는 군액을 이로 인하여 수효를 충당할 수 없으니, 세 영(營)의 보인을 모두 군정의 여유가 있는 읍에 이정(移定)한다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원군을 이송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 고을이 삼남(三南)의 첫 번째 역참에 위치해 있어 죄인의 왕래가 실로 자주 있는데, 타는 마필(馬匹) 및 호송하는 군인을 어쩔 수 없이 민호에다 책임지우니,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통틀어 계산하면 수백 냥(兩)이 됩니다. 만약 환미(還米) 1000석에 대한 모조(耗條)를 얻어 본 고을에 붙이도록 한다면 민폐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도백(道伯)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상의원(尙衣院)의 노비가 13구(口)가 되는데 물고(物故)가 있을 때마다 본원에서 번번이 탈하(頉下)하기를 꺼리므로 어쩔 수 없이 침징(侵徵)한 자가 3명이 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특별히 탕감하겠다." 하였다.

○ 전교하기를, "이번 원소(園所)에 나무를 심은 여섯 읍의 우열을 우선 알기 어려우니, 내년 행행(幸行)을 기다려 권면하고 징계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기백(畿伯)으로 하여금 잘 알게 하여 내년 전배(展拜)하여 순산(巡山)을 행할 때 제품(提稟)하도록 하라. 그중에 과천이 가장 열등하였는데, 숙소가 있는 지방이라서 사력(事力)이 미치지 못한 바가 있었으니 우선 용서하겠다. 본부가 외촌(外村)의 민력을 쓰면서 고가(雇價)가 또한 너무 적었으니, 이것도 온당하지 않다. 다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고자 하니, 이 뜻으로 하유(下諭)하라. 부지런히 한 사람을 권면하고 게을리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비록 수재(守宰)에게 달려 있기는 하지만, 사역에 애쓴 교리(校吏)는 의당 먼저 시상해야 할 것이니, 각 해당 지방관으로 하여금 미(米)든지 포(布)든지 간에 분급한 다음 후록하여 장문하게 하라고 일체 하유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근래 전해 들은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원속(園屬)이 이미 폐단이 되었으니, 어제 유숙(留宿)하였을 때의 일로 살펴보더라도, 행수 수복(行首守僕)이 홍살문 밖의 매우 가까운 곳에서 담뱃대를 뻗쳐 물어 원관(園官)을 무시하고 또 본관(本官)을 무시하였다. 이러한 완악한 백성은 엄하게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되지만 지금 우선 참작해 줄 것이니, 이후로 원관은 잘 알아서 각별히 단속하라. 또 원속이 혹시라도 규율을 따르지 않는다면 원관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수호군(守護軍)으로 말하면, 어제 적간하였을 때 수호군이 읍리(邑吏)를 구타하였다고 하니, 어찌 이러한 민습(民習)이 있단 말인가. 지방관은 조정에서도 예우하는 대상으로 옛날에 숙배 단자(肅拜單子)를 환급(還給)한 전례가 있었는데, 더구나 저와 같은 군병이 읍리를 구타하였단 말인가.[10] 읍리를 구타한 수호군을 지방관으로 하여금 조사해 잡아 와서 엄

9) 2077명 : 원문은 '二千七十七戶'인데,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에 근거하여 '戶'를 '名'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히 다스린 뒤에 장문하게 하라.
이후로 수복과 수호군을 막론하고 혹시라도 지방관에게 공손하지 않거나 읍속(邑屬)에게 작폐(作弊)하거든 지방관이 잡아 와서 엄히 다스리되, 큰 사안의 경우에는 장문하라. 원소(園所) 근처의 전답에서 경작할 때 및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만약 조금이라도 작폐하거든 또한 지방관으로 하여금 적발되는 대로 잡아 와서 엄하게 다스리게 하라. 이 뜻을 지방관으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 이후로 적간할 때 만약 적발되는 일이 있으면 제대로 검칙하지 못한 원관은 우선 논하지 않더라도, 조정의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덮어 두려고 한 지방관은 어찌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는가. 일체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번 행행 때 본부의 새 치소(治所)를 두루 살펴보건대, 관해(官廨)는 비록 모양새를 갖추기는 하였지만 민가는 아직 두서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중에 이른바 대충 지어 놓은 집이라는 것은 움집이나 움막이 아니면 달팽이 껍데기 같기도 하고 게딱지 같기도 하였다. 지금의 형편으로 헤아려 보건대 집들이 즐비하고 거리가 번화하여 엄연히 서울 근교의 큰 도회지가 되는 것은 진실로 짧은 시일에 기대하기 어려우니, 만약 별도로 백성들을 흥기시켜 모여 살게 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마음을 편히 하고 생각을 쉴 수 있겠는가. 환어하는 날에 교를 멈추고 부로를 불러 물었지만 어리석은 백성이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새 치소를 옛 고을보다 낫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조정의 조치에 달려 있으니, 묘당의 신하들은 십분 상세히 따져서 빈대(賓對)할 때에 품주하라.
대체로 백성들을 모집하여 들어와 살도록 하고자 한다면 의당 먼저 생업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생업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의당 먼저 그 마음을 기쁘게 해 주고 그 삶을 즐겁게 해 주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도는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은 백성들을 힘써 권면하여 교역하도록 하는 것이니, 반복하여 생각해 보더라도 이 두 가지 방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원소의 국내(局內)·국외(局外)에 새로 속하는 토지의 지가(地價)를 너무도 바듯하게 정해서 백성들이 억울해하는 마음이 없지 않다고 한다. 이 문제는 지방관이 별도로 조사해서 넉넉히 마련해 주고, 완전히 모여들어 자리를 잡게 되기를 조금 기다려 또 힘써 경작하게 하는 것 이외에 다시 직접 장사하여 이익을 보도록 한다면 장차 집집마다 면모가 달라지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숙소에 나아가 머물면서 이 일이 잊혀지지 않아서 이에 또 촛불을 밝히라고 하고 거듭 유시(諭示)하는 것이니, 지방관은 유지(有旨)를 수령한 뒤에 부로를 모아 놓고 하나하나 효유하라. 소민(小民)의 경우에는 성과를 거두기가 쉬우니 위와 같이 한다면 혹 안정시킬 수 있겠고, 전(廛)을 받고자 하는 대민(大民)의 바람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몰아붙일 만한 사안이 아니다.[11] 지방관은 연석(筵席)의 하교대로 또한 즉시 백성들에게 전해 알도록 함으로써 본부의 사민(士民)을 위해 항시 잊지 않고 있는 나의 고심과 지극한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본도의 감사와 **수원 부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 전교를 게판(揭板)하고 또 진언(眞諺)으로 번역해 베껴서 고을 주변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원래의 전교 중에 땅값에 관한 일은 즉시 보태어 지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도백과 상의하여 하되, 조윤식(曺允植)을 내일 올려보낼 것이니 그가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기다려 즉시 거행하라. 직접 장사하는 데 관한 일은 바로 부사가 연석에서 아뢴

10) 더구나 …… 말인가 : 원문은 '如渠軍伍乎'인데,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에 근거하여 '渠' 다음에 '況'을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11) 지적하여 …… 아니다 : 원문은 '非可指的而臼勒'인데,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에 근거하여 '臼'를 '驅'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일인데, 이것은 전화(錢貨)를 완전히 모으기를 조금 기다려 구획(區劃)하기 위한 것이다. 연석의 하교대로 전해 알게 하도록 한 일은 바로 부유한 백성이 들어와 살기를 원하여 기와집을 조성하고 토지를 넓게 차지함으로써 읍의 주변을 가옥으로 즐비하게 하고 소민에게까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그 공로에 대하여 응당 별도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사족(士族)의 경우는 만약 기와집이든 떳집이든 참으로 집을 지어서 영구적인 거주지로 삼고, 식솔을 이끌고 와서 농장을 산 자라면 입적(入籍)에 대한 제한에 구애되지 말고 또한 과시를 설치할 때의 원래의 규정에 구애되지 말라. 응당 수년 안으로 이후 혹 머물러 유숙할 때에 읍 주변의 유생과 무사만을 불러들여 문시(文試)와 무시(武試)를 설행하여 기예를 시험하되, 유생은 한두 사람이나 두세 사람을 직부(直赴)하도록 하고, 무사는 시수(矢數)에 따라 아울러 직부하도록 해 줄 것이다. 이와 같이 하였는데도 과거에 입격한 뒤에 즉시 이주하거나 혹은 집은 있는데 거주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다만 임금을 기만한 죄과로 귀결될 뿐이겠는가. 비록 이미 사적(仕籍)에 올랐다 하더라도, 사적에서 삭제하거나 엄히 감처(勘處)할 것이니, 이것도 알도록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 한 가지 일에 대하여 각별히 서울과 지방, 가깝고 먼 지역에 전해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니, 지미(紙尾)에 써서 내린 한 통(通)을 도백에게 기록하여 보내라." 하였다.

강御得中亭行文武科別試還次果川縣

목具戎服御得中亭設文武科別試試官以下入庭行禮訖文試官 蔡濟恭 鄭民始 徐有隣 吳載純 洪良浩 徐鼎修 金載瓚 鄭東後 李晩秀 洪文泳 鄭萬始 柳文養 許曄 金祖淳 武試官 徐命善 李▣ 徐有大 柳孝源 金益彬 趙嶢 申義顯 以股肱郡爲賦題命水原取三人果川 廣州各取一人廣州 李德升三下居首吳聖根以果川入格辛德羽 金星運 趙萬元三人俱以水原入格唱名左議政 蔡濟恭曰今此別試時除非三式年入籍居生者無得赴擧事曾有成命而卽聞畿伯言入格五人中三人俱以無籍冒赴云此路一開後弊難防三人幷爲拔去邊遠充軍以爲信朝令祛紛競之地宜矣予曰此科異於他科旣已唱名旋又拔去豈非難處乎雖云無籍若是築室居生則宜有闊狹之道卿等以爲如何判府事 徐命善曰旣有成命則儒生之冒赴合置當律豈可闊狹乎濟恭曰年前南漢別試時尹永儀有一式年戶籍而亦旣拔去今不可異同矣予曰卿等之言雖如此此科與南漢科亦有異諸宰之意何如諸宰齊奏曰朝令不可不信決難寬恕矣大司諫 洪文泳啓言科場法意何等至嚴而今此入格中三人初不入籍肆然冒赴其在嚴科規社後弊之道不可置而不論請辛德羽 金星運 趙萬元幷拔去原榜依法典充軍只命拔去仍敎德羽等曰爾等無籍而冒赴諸臣據法爭之且聞多士中物情紛紜故不得不拔去而矜隣極矣須各努力以圖後科更取李履熙李瑞朝 李運行武取李光春等一百七十五人唱名訖予曰李運行家屢世移葬雖出於不得已而慮或有害每切耿耿筮仕未久又復登第爲之可嘉仍謂濟恭等曰初榜有故再考而得運行豈非天耶且光敎之李得參此榜此亦理也仍命放榜放榜陳賀如儀武士有冒受紅牌者付本府治罪敎曰新恩政事當日爲之還御壯南軒改具平戎服乘轎出行宮敎承旨 尹行任曰昨命本府使率父老待令矣果已來待耶行任曰本府使以導轎先詣而父老姑未來待云矣敎曰承旨落後招集父老諭以是鄕卽予幸梓之鄕也顧恤元元之心有倍於他方此搬移之時必多騷擾之嘆凡所以爲弊之源爲利之方使之一一陳之詳聞後復命於駕到處可也仍爲進發行到數里許有兩西東北流民數十餘人命餉色提調 徐有隣入侍分給各人錢一兩布一疋其尤甚懸鶉之類各給木一疋敎曰爾等昨年還上果已畢納乎對以或納或未納敎以爾等如此如爾者必多眞所謂見牛未見羊也爾等還穀之未納者特令蕩減分付各道給糧護送今年身布褁役一竝除減又自賑廳別成帖文以給還鄕之後似無侵漁之端須卽下去安土奠居可也至果川縣召見本邑縣監 李命杰命杰啓言本邑民戶只是三千三百七十戶而除班戶及諸般褁頉應役之戶不過一千七八百戶通計良私軍額則爲二千七十七戶以此民戶較彼軍丁太不相當之中守總兩營及巡營保人厥數甚多軍額實無塡充之

道隣族每患難支蓋其保人之役比元軍稍歇而近京之民不難於投托故也案付軍額綠此無以充數三營保人一竝移定於有裕邑則可除難支之弊此與移送元軍有異故敢此仰達矣敎以令廟堂稟處又啓言本縣處於三南初站罪人往來實爲頻數而所騎馬匹及護送軍人不得不責之民戶一年所費通計爲累百兩如得還米一千石耗條付之本縣則可除民弊矣敎以令道伯稟處又啓言尙衣院奴婢爲十三口而若有物故則本院輒斬頃下不得不侵徵者爲三名矣敎以特爲蕩減○敎曰今番園所植木六邑優劣姑難知之欲待來年幸行有所勸懲令畿伯知悉來年展拜行巡山時提稟其中果川最劣以其宿所地方事力有所不逮姑且分揀本府之用外村民力雇價亦太少此亦未妥欲爲更觀前頭以此意下諭勤慢勸懲雖在守宰至於校吏事役勞苦宜先施賞令各該地方米布間分給後錄狀聞事一體下諭又敎曰近以傳聞推之園屬已爲弊端而雖以昨日留宿時觀之首守僕橫竹於紅箭門外至近之地不知園官又不知本官如許頑民不可不嚴懲今姑參酌此後園官知悉各別束濕又或不循穀率園官難免其責又以守護軍言之昨日摘奸時毆打邑吏云寧有如許民習地方官朝家亦所禮待古有肅拜單子還給之例如渠軍伍乎毆打邑吏守護軍令地方官査出捉來嚴治狀聞此後無論守僕守護軍一或不恭於地方官作弊於邑屬地方官捉來嚴治大則狀聞園所近處田畓耕作之除及居民等處若有一毫作弊亦令地方官隨現捉來重治以此意令地方官知悉此後摘奸若有現發則不能檢飭之園官姑無論朝令之下掩置之地方官安得辭其責乎一體知悉又敎曰今幸周覽本府新治官廨雖成規模民家未就頭緖其中所謂若爾造舍者非窖非卡則似蝸殼似蟹匡以今所料度屋閭之櫛比街卷之繁庶儼然爲畿輔大都會固難期以時月若不別講另究其興勸萃集之方予豈可便心而弛思乎還駕之日駐蹕召問父老民之雖雖不知所對新治之勝於舊邑惟在朝家措劃廟堂之臣十分商確賓對時敷奏大抵欲募入則宜先制產欲制產則宜先悅其心樂其生太上經界其次懋遷反復思惟無出於二者園所局內外新屬土地地價過於撙節民情不無抑鬱云此則地方官別般査出優加拮据而稍待完聚定居又使力作之外更售手販之益則將有比屋改觀之效進住宿次餘意憧憧玆又呼燭申諭地方官祗受後聚會父老一一曉告小民易爲力如右則或可安頓大民受廛之願非可指的而曰勒地方官依筵敎亦卽傳知以副予爲本府士民綣綣懃懃之苦心至意事下諭于本道監司 **水原府使**又敎曰此傳敎揭板又以眞諺翻謄分給邑底人民元傳敎中土價事不可不卽爲添給與道伯相議爲之曹允植明日上送待下去卽爲擧行手販事卽府使筵奏之事也此則錢貨稍待完聚區劃次依筵敎傳知事卽富民之願入而造成瓦家廣占土地使邑底櫛比俾小民沾漑其功其勞當有所另酬至於士族若能或瓦或芧眞箇築居以爲永居而挈眷買庄者不拘入籍之限亦不拘設科元規當自數年內以後或於駐宿時只邑底儒武居入設試文武試技儒生則或一二人二三人當賜直赴武士則從矢數竝許直赴如是而占科之後便卽移去或有家而不爲居生則是豈特自歸欺君之科雖已通籍亦當拔去或嚴勘此亦不可不知此一款各別傳知於京外遠近紙尾書下一通錄送道伯處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11일(임술)

강입직

목대교 김조순(金祖淳)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12일(계해)

강어가(御駕)가 창덕궁(昌德宮)으로 돌아왔다.

목○ 과천(果川) 동헌(東軒)의 편액(扁額)을 '부림헌(富林軒)'으로, 내아(內衙)의 편액을 '온온사(穩穩舍)'로 써서 내리고, 이를 판각해 걸라고 명하였다. 좌상 **채제공(蔡濟恭)**을 소견하였다. 이보다 앞서 융복(戎服)의 철릭은 문관과 음관(蔭官)의 경우 옷의 주름이 모두 가늘어서 곧장 아래 테두리에 이르러 앞뒤의 폭(幅)이 서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금지하였다. 군복(軍服)을 갖추고 부림헌을 나와 말을 타고 몇 리를 가니, 유민(流民)

수십 인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러서 전(錢), 목(木), 포(布)를 주고 위유(慰諭)하기를 모두 어제와 같이 하였다. 강두(江頭)에 5리쯤을 미치지 못한 곳에서 융복으로 갈아입고, 강두에 이르러 막차(幕次)로 들어갔다. 시위(侍衛)하는 제신(諸臣)에게 선찬(宣饌)하였다. 말을 타고 부교(浮橋)를 건넜다. 신은(新恩)들은 모두 먼저 나아가라고 명하였다. 관왕묘(關王廟)를 들러서 재배례(再拜禮)를 행하였다. 수직관(守直官)을 변장(邊將)에 제수하고, 수복(守僕) 등에게 해조(該曹)로 하여금 미(米)와 포를 제급(題給)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흥인지문(興仁之門)으로 들어와 이현(梨峴)에 이르렀다. 유도 대신(留都大臣) 이복원(李福源)을 소견하였다. 홍화문(弘化門) 밖에 이르러 신은들을 소견하였다. 홍화문으로 들어와 건양문(建陽門)과 협양문(協陽門)을 거쳐 대내(大內)로 돌아왔다.

강駕還昌德宮

목書下果川 東軒扁額曰當林軒內衛扁額曰穩穩舍命刻揭召見左相 **蔡濟恭**先是戎服貼裏文蔭官則襞積皆細直至下純前後幅不相連至是禁之具軍服出富林軒乘馬行數里見有流民數十人召給錢木布慰諭竝如昨日未至江頭五里許改具戎服至江頭入幕次宣饌於侍衛諸臣訖乘馬渡浮橋命諸新恩竝先詣歷臨關王廟行再拜禮命守直官邊將除授守僕等令該曹米布題給入興仁之門至梨峴召見留都大臣李福源至弘化門外召見諸新恩入弘化門由建陽門 協陽門還內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12일(계해)

강창빈묘(昌嬪墓) 및 고 상신 정태화(鄭太和) 등의 묘와 청해백(靑海伯) 이지란(李之蘭)의 사당에 치제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연로(輦路)에서 창빈묘가 눈에 들어오는데, 판돈녕(判敦寧)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제문(祭文)은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 전교하기를, "우면천(牛眠川)을 지날 때 고 판서 정평공(靖平公) 성석린(成石璘)의 묘가 길가에 있다고 들었다. 지방관으로 하여금 향축(享祝)을 내려보내기를 기다려 치제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전교하기를, "고 충신 증(贈) 판서 이복남(李福男)의 묘지가 길가에 있으니, 어찌 표창하는 거조가 없을 수 있겠는가. 예관(禮官)을 보내어 특별히 치제하게 하라. 이로 인하여 또 들으니, 고 첨정(僉正) 차천로(車天輅)의 묘가 본현의 동쪽에 있다고 한다. 그는 문장에 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공로를 세웠다. 연전에 유집(遺集)을 찾도록 하여 아직도 내각(內閣) 안에 있으니, 내각으로 하여금 잘 알게 하여 속히 인쇄하게 하고, 이복남의 자손까지 아울러 해조(該曹)로 하여금 찾아 물어서 보고하게 하라. 마침 말을 쉬게 하는 틈에 앞의 숲에 대해 물으니, 이는 고 충목공(忠穆公) 이상집(李尙)의 산지(山地)라고 하였다. 또한 관원을 보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 전교하기를, "고 상신 익헌공(翼憲公) 정태화의 산지가 근처에 있으니, 환궁한 뒤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 전교하기를, "지금 듣건대, 청해백의 사당이 **수원**에 있는데 선조(先朝)에 온천에 행행하셨을 때 특별히 치제하라고 명하시고 화상(畵像)을 들여놓았으며 어제찬(御製贊)을 내리셨다고 한다. 그 계술(繼述)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빠뜨릴 수 있겠는가.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고, 이어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사당을 수리한 뒤에 장문하게 하라." 하였다.

○ 승지 이조승(李祖承)이 아뢰기를, "고 정평공(靖平公) 성석린(成石璘)의 묘에 치제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추후에 듣건대, 과천에 있는 묘는 바로 정평공 성석인(成石因)의 묘이고, 성석린의 경우에는 시호가 문정(文靖)으로 묘가 포천(抱川)에 있는데, 읍지(邑誌)에

이름이 잘못 기록되어 이렇게 치제하라는 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히 아룁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그만두라." 하였다.
○ 예조가 아뢰기를, "**수원**에 있는 청해백의 사당에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는 날짜는 이달 18일로 하여 받들었으면 한답니다. 집사관(執事官)을 본도로 하여금 차정(差定)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지방관을 헌관(獻官)으로 삼아 주전(廚傳)의 폐단을 제거할 수 있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과천에 있는 고 충신 증 판서 이복남의 묘에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는 날짜는 이달 20일로 하여 받들었으면 한답니다. 집사관을 본도로 하여금 차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집사관을 기역(畿驛)의 찰방으로 정하여 수령이 고을을 비우는 폐단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광주에 있는 고 충목공 이상집의 묘에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는 날짜는 이달 17일로 하여 받들었으면 한답니다. 집사관을 본도로 하여금 차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날짜는 20일로 하고, 헌관으로는 증 판서 이복남의 묘에 나아가는 예관이 아울러 나아가며, 집사관은 기역의 찰방으로 정해서 수령이 고을을 비우는 폐단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과천에 있는 고 상신 익헌공 정태화의 묘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게 하는 날짜는 이달 16일로 하여 받들었으면 한답니다. 집사관을 본도로 하여금 차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집사관을 기역의 찰방으로 차정하여 수령이 고을을 비우는 폐단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과천의 창빈묘에 판돈녕을 보내어 치제하는 날짜는 이번 18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집사관을 본도로 하여금 차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집사관을 대축(大祝) 이외에는 기역의 찰방으로 차정하여 수령이 고을을 비우는 폐단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강致祭于昌嬪墓及故相鄭太和等墓靑海伯祠

목敎曰輦路入矚昌嬪墓遣判敦寧致祭祭文當製下○敎曰過牛服川聞有故判書 靖平公成石璘墓在路傍令地方官待香祝下送致祭事分付敎曰故忠臣贈判書 李福男墓地在路傍豈可無表異之擧遣禮官特爲致祭因此又聞之故僉正 車天輅墓在縣東云文章之外且有殊勞年前搜訪遺集尙在閣中令內閣知悉斯速入印與李福男子孫令該曹訪問以啓適因憩馬問前林云是故忠穆公李尙▣山地亦令遣官致祭○敎曰故相翼憲公鄭太和山地在近處還官後遣承旨致祭○敎曰今聞靑海伯祠在**水原**地先朝溫幸特命致祭推入畵像下御製贊云其在追述之道豈可闕焉遣官致祭仍令本官修葺後使之狀聞○承旨 李祖承啓言故靖平公成石璘墓致祭事命下矣追後聞之則墓在果川者卽靖平公成石因而成石璘則諡爲文靖墓在抱川地而邑誌中名字誤書有此致祭之命故敢達矣敎以置之○禮曹啓言**水原**地靑海伯祠遣官致祭日子則今十八日祗受云執事官請令本道差定敎曰以地方官爲獻官以除廚傳之弊又啓言果川地故忠臣贈判書 李福男墓遣禮官致祭日子則今二十日祗受云執事官請令本道差定敎曰執事官以畿驛察訪爲之以除守令曠官之弊又啓言廣州地故忠穆公李尙▣墓遣官致祭日子則今十七日祗受云執事官請令本道差定敎曰日子以二十日爲之獻官贈判書 李福男墓進去禮官同爲進去執事官以畿驛察訪爲之以除守令曠官之弊又啓言果川地故相翼憲公鄭太和墓遣承旨致祭日子則今十六日祗受云執事官請令本道差定敎曰執事官以畿驛察訪差定以除守令曠官之弊又啓言果川地昌嬪墓遣判敦寧致祭日子今十八日爲吉云執事官請令本道差定敎曰執事官大祝外以畿驛察訪差定以除守令曠官之弊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12일(계해)

강묘당은 청송부(靑松府)의 환곡의 폐단을 바로잡으라고 명하였다.

목○ 경상 감사 이조원(李祖源)이, 청송 부사 이제만(李濟萬)이 임소(任所)에 도착하였다고 치계한 데 대해, 전교하기를, "어제 연로(輦路)에서 본읍의 백성들을 불러서 폐막(弊瘼)을 상세히 물으니, 본읍의 민폐로 가장 심한 것은 첫째도 조적(糶糴)의 폐단이며 둘째도 조적의 폐단이었다. 환곡을 분급하는 데 따른 폐단의 경우는 많은 곳에서 덜어서 적은 곳에다 보태 주는 것이 진실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환곡을 받아들이는 데 따른 폐단은 더욱 어찌 예사롭게 보아 넘기겠는가. 그동안 연석에서 누차 이 일을 발의하였고 연전에 또한 낱낱이 거론하여 신칙한 일이 있었으나 그 후에 폐단을 바로잡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어제 백성들의 말이 또 이와 같았으니, 만약 특별히 폐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것은 조정이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묘당은 잘 알아서 일찍이 도백이나 수령을 거친 사람과 함께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도를 상의한 뒤에 내일 초기하여 품처함으로써 환곡을 분급할 때나 받아들일 때의 적폐(積弊)를 기필코 시원스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라.

영남(嶺南) 한 도(道)의 환곡의 폐단은 거의 읍마다 그렇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는데, 먼저 연석에서 등문한 곳으로부터 듣는 대로 노력한다면 이 역시 조금씩 조금씩 성과를 쌓아 나가는 방법이니, 어찌 민사(民事)에 보탬이 있지 않겠는가. 그대로 해도(該道)에 행회하여 지방관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모아 놓고 먼저 즉시 효유하게 하고, 비록 초기에 비답을 내린 뒤라 하더라도 만일 특별한 의견이 있다면 낱낱이 도신에게 보고하여 장문할 수 있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命廟堂矯捄靑松府糴弊

목 慶尙監司 李祖源以靑松府使 李濟萬到任馳啓敎曰昨於輦路招致本邑民人詳問弊瘼本邑民弊之最甚者一曰糶糴之弊二曰糶糴之弊分之爲弊裒益固非難事而捧之爲弊尤豈泛看前後筵席屢發此事年前亦有枚擧申飭之擧而伊後未聞釐弊昨日民人之言又如此若不別般矯弊是朝家欺小民以此廟堂知悉與曾經道伯守令人商確矯捄之方明日草記稟處使分時捧時之積弊期於快祛嶺南一道還弊殆乎無邑不然云而先從筵席登聞之處隨聞努力則是亦得尺爲尺豈不有補於民事仍以行會該道令地方官聚會民人先卽曉諭雖於草記批下之後如有別般意見枚報道臣以爲狀聞之地事分付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12일(계해)

강장흥 부사(長興府使) 구담(具紞)을 전직(前職)에 잉임시키라고 명하였다.

목○ 장흥 부사에 구담을 수망(首望)으로 의망해 들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하(批下)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근일 당하(堂下) 무변(武弁)이 적체된 것이 염려스러워 애당초 다시 의망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결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오늘 숙배 단자(肅拜單子)에 지레 먼저 의례적으로 답하였으니, 해당 사알(司謁)을 추고하고, 원래의 망통(望筒)은 시행하지 말며, 구담은 전직에 잉임시켰다가 다른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차송(差送)하라. 본읍은 본래 다스리기 어려우니, 각별히 적임자를 가려 차임하여 내려보내라." 하였다.

강命長興府使 具紞仍任前職

목 長興府使以具紞首擬以入至是批下仍敎曰近日堂下武弁之積滯可悶初欲改望而未果今日肅單徑先例答當該司謁推考原望筒勿施具紞仍任前職待他窠差送本邑自是難治各別擇差下送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12일(계해)

강홍충도 관찰사는 하직 인사를 하라고 신칙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금백(錦伯)의 하직 인사는 잇달아 재계하는 날과 겹쳐서 오래도록 지연될 것이라고 하니, 의당 말과 마부가 오래도록 머무는 폐단을 염려해야 한다. 재계하는 날에 구애받지 말고 수일 안에 거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飭錦伯辭朝

목敎曰錦伯辭朝連直齋日當許久遲滯云宜念夫馬久留之弊勿拘數日內爲之事分付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12일(계해)

강오늘 방목(榜目)에 오른 문과 급제(及第) 이운행(李運行)과 무과 출신(出身) 이성림(李性林)을 내일 정사에서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오늘 방목에 오른 문과 급제 이운행은 바로 **광교(光敎)**의 이씨(李氏)이니, **팔달산(八達山)**의 주인이다. 그 선세(先世)의 특별한 공적은 우선 논하지 않더라도, 작년에 새 치소(治所)의 향교 터를 잡는 것으로 인하여 그 집안에서 대대로 장사 지내던 땅을 옮겼는데, 그가 이번 과시(科試)에서 크게 떨쳤으니, 일이 우연이 아닌 듯하다. 나이가 50세를 넘으면 으레 6품(品)에 오른다고 하니, 내일 정사에서 낭서(郎署)에 조용하여 그로 하여금 사은(謝恩)한 뒤에 내려가게 하라. 무과 출신 이성림은 바로 부사(府使) 이운창(李運昌)의 아들이다. 신수(身手)와 기골(氣骨)이 또한 입격자 전원 중에서 최고가 되니, 또한 내일 정사에서 초사(初仕)에 조용하게 하라.” 하였다.

○ 전교하기를, “서울에 올라온 문무(文武)의 신은(新恩)들이 내려갈 때에 기영(饑營)으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命今榜文及第李運行武出身李性林明月政調用

목敎曰今榜文及第李運行卽光敎之李也八達主人其先世殊異之績姑勿論昨年因新治鄕校占基其家移世葬之地而渠能大闡於此科事若不偶聞年過五十例出六品云郎署明日政調用使之謝恩後下去武出身李性林卽府使 運昌之子身手氣骨亦爲全榜之最初仕亦令明日政調用○敎曰上京文武新恩下去時令饑營給糧資事分付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12일(계해)

강춘도기(春到記)를 설행한 뒤에 유생의 전강(殿講)에 대해 다시 품주하라고 명하였다.

목○ 정원의 계사로 인하여 이렇게 명한 것이다.

강命春到記後更稟儒生殿講

목因政院啓辭有是命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12일(계해)

강사복시 첨정 송지경(宋持敬)을 나처하도록 한 것을 용서하라고 명하였다.

목○ 나처 전지(拿處傳旨)로 인하여 이렇게 명한 것이다.

강命司僕僉正 宋持敬拿處分揀

목因拿處傳旨有是命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12일(계해)

강김희(金憙), 이득신(李得臣), 조연덕(趙衍德)을 승지로 삼았다. 전망이다.

목○ 목(目)이 없는 기사임

강以金憙 李得臣 趙▣德爲承旨 前望也

목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12일(계해)

강원행(園幸) 때 기과(記過)하도록 한 것을 모두 탕척하라고 명하였다.

목○ 목(目)이 없는 기사임

강命園行時記過竝蕩滌

목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12일(계해)

강묘당은 곡산현(谷山縣)에 대한 이속(移粟)의 정사를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목○ 승지 신기(申耆)가 아뢰기를, “신이 곡산의 일에 대해 근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대체로 진정(賑政)은 전적으로 환곡에 의지하는데, 본현(本縣)의 곡총(穀摠)이 1만 석(石)에 불과하여 평년에 환곡을 분급하거나 상환하는 것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여 감영에 보고해 가분(加分)하게 되어 유고곡(留庫穀)이 매우 적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흉년에는 환호(還戶)에게 주는 것을 제외하면 실로 진곡(賑穀)을 나누어 줄 밑천이 없으니, 이속의 정사를 잠시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본현은 세 도(道)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는데, 도내의 이웃한 읍으로 비록 수안(遂安)과 신계(新溪) 두 현이 있기는 하지만 재해를 입은 것이 이미 똑같고 환곡도 많지 않습니다. 이 밖의 읍들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운반할 길이 없습니다. 관서(關西) 한 도는 비록 흉년이 들기는 하였지만 평소 곡부(穀簿)가 더러 여유가 있고 다른 도로 곡식을 이전(移轉)한 것도 전례가 많으니, 지금 방도를 강구함으로써 서민(西民)의 위급한 근심거리를 덜 수 있도록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강命廟堂議谷山縣移粟之政

목 承旨 申耆啓言臣於谷山事竊有所憂悶者敢此仰達矣大抵賑政專靠還穀而本縣穀總不過萬石常年糶糴尙云不足報營加分留庫絶少況玆歉歲除却還戶所授實無俵賑之資移粟之政不容少緩而本縣處在三道交會之地道內隣邑雖有遂安 新溪兩縣被災旣同還穀無多此外諸邑道里隔遠轉輸無路關西一道雖値荒年常時穀簿或有餘裕他道移轉亦多已例不可不及今講究以紓西民危急之憂矣敎以令廟堂稟處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12일(계해)

강한성부(漢城府)가 때를 넘겼는데도 아직 혼인이나 장례를 치르지 못한 부류를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였다.

목○ 전교하기를, “각 부(部)를 엄히 신칙하여 즉시 분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강 漢城府以過期未婚葬之類別單書入

목敎曰嚴飭各部隨卽分給

정조 14년 경술 (1790, 건륭55) 2월 12일(계해)

강입직

목대교 김조순(金祖淳)

제3차 1791년(정조 15) 1월 16일~18일(2박 3일)

1. 조선왕조실록

정치/행정

암행 어사 조진택을 수원에 보내어 민정을 살피게 하다

암행 어사 정동관(鄭東觀)을 과천(果川)·금천(衿川)·수원(水原)·광주(廣州) 등 길을 닦는 여러 고을에 보내어, 민간의 폐단과 고통을 살피게 하였고, 조진택(趙鎭宅)을 수원에 보내 새 고을의 민정을 살피게 하였다.

○遣暗行御史鄭東觀于果川·衿川·水原·廣州等治道諸邑, 察閭里弊瘼, 趙鎭宅于水原, 訪新邑民情.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15일(경인) 2번째기사>

정치/왕실

정조가 수원부에 머무르다

어가가 수원부에 머물렀다. 어가가 막 숭례문을 나왔을 때 비와 눈이 뒤섞여 내리니, 상이 군병들의 옷이 젖는 것을 불쌍히 여겨 관왕묘(關王廟)에 가서 잠시 머무르며 여러 군사들에게 깃발을 길가에 놓고 제각기 비를 피하도록 명하였다.

○辛卯/**駕次水原府**. 方駕出崇禮門也, 雨雪交下, 上悶軍兵霑濕, 詣關王廟, 少駐, 命諸軍竪旗路傍, 使各避雨.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16일(신묘) 1번째기사>

조심태를 승지로, 김사목을 수원 부사로 삼다

득중정(得中亭)에 가서, 여러 장수들을 불러 짝을 지어 활을 쏘도록 하였다. 상이 **수원부**의 고을을 두루 살펴보고 민가가 즐비한 것을 보고서는 부사 **조심태(趙心泰)**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경의 공로이다." 하고, 중비(中批)로 심태를 승지로 삼고, 김사목(金思穆)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御**得中亭**, 召諸將耦射. 上周覽府治, 見閭井櫛比, 謂府使**趙心泰**曰: "此, 卿之勞也", 中批**心泰**爲承旨, 以金思穆代之.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16일(신묘) 2번째기사>

권엄을 공조 판서로 삼다

권엄(權嚴)을 발탁하여 공조 판서로 삼았다.

○擢權嚴爲工曹判書.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16일(신묘) 3번째기사>

현륭원에 가서 작헌례를 거행하다

현륭원에 가서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였다.

○壬辰/詣**顯隆園**, 行酌獻禮.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17일(임진) 1번째기사>

수원부의 새 고을을 조성하는데 따른 민폐를 걱정하다

상이 좌의정 **채제공**에게 이르기를, "조금 전에 새 고을을 지나오면서 보니, 경외인(京外人)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이 많아 지붕이 서로 이어져 번듯한 큰 도시가 되었으니, 매우 다행스럽다. 다만 서둘러 집을 짓느라 그 재산과 생업을 소모하여 내가 집을 지으라고 한 본뜻을 어기지 않았는가 걱정된다."

하니, 제공이 아뢰기를, "크고 작은 것과 사치하고 검소한 것을 제각기 다 힘을 헤아려 했을 것이니, 어찌 본디의 생업을 손상시켰겠습니까." 하였다.

○上謂左議政**蔡濟恭**曰: "俄過新邑, 見京外人築室者甚多, 屋甍相連, 居然爲大都, 殊可幸也. 但恐急於築室, 耗其産業, 有違予勸令築室之本意." 濟恭曰: "大小侈儉, 皆自量力, 豈至於耗損本業乎?"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17일(임진) 2번째기사>

정치/왕실

수원부 내에 집을 지은 유생과 무사를 시험보여 직부전시하게 하다

돌아와 수원부에 머무르면서 수원부 내에 집을 지은 유생과 무사를 시험 보여 수석을 차지한 유생 임희존(任希存)과 무사 이동술(李東述)은 모두 곧바로 전시(殿試)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還次**水原府**, 試府治築室儒武, 居首儒生任希存, 武士李東述, 竝直赴殿試.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17일(임진) 3번째기사>

수령에 의망하는 규정을 고쳐 정하도록 하다

상이 원관(園官)은 오래도록 맡겨야만 성과를 바랄 수 있다 하여, 송사에 연루되었거나 말았거나 6품이 된 뒤로 달수가 찼거나 말았거나 6품 및 수령이 되는 자격을 시험하는 강에 합격되었거나 말았거나를 구애하지 말고 곧장 수령에 의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명하였다.

○上以園官久任然後可以責成, 命勿拘詞訟·出六朔數·六品守令等講, 直擬守令, 著爲式.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17일(임진) 4번째기사>

광주 부윤 홍성연을 가선 대부로 발탁하다

전교하였다. "백 리나 되는 길가에 내가 내 손으로 나무를 심지 못하고 고을 수령에게 내 대신 수고를 하게 하였다. 광주 부윤 홍성연(洪聖淵)은 가선 대부로 발탁하고 그 나머지도 차등있게 상을 주어 그 공로에 보답하도록 하라."

○敎曰: "程途百里, 予未能手自植木, 使邑倅替予勞. 廣州前府尹洪聖淵, 擢嘉善, 其餘施賞有差, 以酬其勞."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17일(임진) 5번째기사>

서유대를 총융사로 삼고, 조심태를 훈련 대장으로 삼다

서유대(徐有大)를 총융사로 삼고, 중비로 **조심태(趙心泰)**를 훈련 대장으로 삼았다.

○以徐有大爲摠戎使, 中批, **趙心泰**爲訓鍊大將.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17일(임진) 6번째기사>

정치/왕실

단종 복호를 주장한 신규의 집이 수원에 있다 하여 그 후손을 장릉참봉에 제수하다

상이 노량(鷺梁)을 지나가는데 사육신의 묘와 사충사(四忠祠) 및 고 충신 박태보(朴泰輔)의 서원이 모두 길가에 있었다. 상이 감회가 일어나 직접 글을 지어 근신(近臣)을 보내 제사를 지냈다. 고 현감 신규(申奎)란 사람이 숙종 24년 무인년에 상소하여 단종(端宗)의 위호(位號)를 회복할 것을 요청한 일이 있는데, **상이 이 때에 이르러 신규의 집이 수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대시(臺侍)를 증직하려 하였다가 어떤 사람이 신규가 이미 승지에 증직되었다고 하자,** 그 후손을 등용하여 장릉 참봉(莊陵參奉)에 제수하였다.

○上過鷺梁, 六臣墓·四忠祠及故忠臣朴泰輔書院, 皆在路傍. 上興感親製文, 遣近臣致祭. 故縣監申奎者, 肅宗戊寅上疏, 請復端宗位號. 至是, **上問奎家在水原**, 特贈臺侍, 有言奎已贈承旨, 乃錄其後孫, 授莊陵參奉.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17일(임진) 7번째기사>

궁궐로 돌아오다

궁궐로 돌아왔다.

○癸巳/還宮.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18일(계사) 1번째기사>

상언 1백 7건을 판하하다

상언(上言) 1백 7건을 판하하였다.

○判下上言一百七度.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18일(계사) 2번째기사>

증 찬성 정뇌경에게 신주를 체천하지 않는 특전을 베풀고 시호를 내리다

예조가 아뢰기를, "홍주(洪州)의 유생 정이원(鄭履元)이 상언하기를 '증 찬성(贈贊成) 정뇌경(鄭雷卿)이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행적은 오달제(吳達濟)·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 등 세 신하와 다를 바가 없으니, 신주를 체천하지 않는 특전을 요청합니다.' 하였습니다.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뇌경의 순결한 충성과 높은 절개는 오달제·홍익한·윤집 등 세 신하와 비교해서 백중을 가리기 어렵다. 그런데 그 마을에 정문을 세우지 않았고 사당의 신주에 훌륭한 시호를 내려주지 못하였으니, 흠이 되는 일을 면할 수 없다. 체천하지 않는 특전은 공신에게 적용하고 충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세 신하는 충신인데도 체천하지 않는 특전을 허락하였으니, 충신을 체천하지 않는 것 또한 근거할 만한 전례가 있는 것이다. 특별히 체천하지 않게 하는 것을 허락한다."

하였다. 이어 대신과 문임(文任)을 맡고 있는 관각(館閣)의 신하에게 정문을 세우고 시호를 내려주는 것을 함께 거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의논하여 아뢸 것을 명하니, 모두 좋다고 하므로 따랐다. 또 특별히 강효원(姜孝元)의 마을에 정문을 세우게 하였다. 효원은 곧 세자시강원의 서리로 뇌경을 따라 함께 죽은 사람이다.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18일(계사) 3번째기사>

정치/왕실

수원부의 유생에게도 떡을 주고 과거시험을 보게 하다

승지를 보내 태학의 유생들에게 떡을 내리고 이어 어제(御題)를 내려 여러 유생들에게 응제(應製)하도록 하였다. 부(賦)에서 수석을 차지한 권황(權熀)과 송(頌)에서 수석을 차지한 김희화(金熙華)는 곧바로 전시(殿試)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상이 경연관에게 이르기를,

"『시경』에 '많은 훌륭한 선비들 덕에 문왕께서 편안하리.[濟濟多士 文王以寧]' 라 하였다. 태학은 곧 어진 선비들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의 원기이다. 사흘동안 술잔치를 베풀어 준 것은 옛날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역대 조정의 경우로 말하더라도 큰 길거리의 백성들에게 음식을 내려 은혜가 부녀자들에게까지 미친 일은 지금까지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유생에게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귤을 나누어 준 것도 한때의 특별한 은전이었으나 그것이 규례가 되어 나중에는 유자를 나누어 주었고 또 황대구(黃大口)를 나누어 준 일도 있었다. 그 뒤에는 감제(柑製)의 전례에 따라 과거 시험을 보인 예도 있었는데, 이제 어찌 떡만 나눠 주고 말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숙종조 때 어필로 등급을 써서 급제시킨 고사를 본떠 장원 시험지에 어필로 등급을 썼다. **수원부의 유생에게도 성균관의 유생들과 똑같이 떡을 나눠 주고 과거 시험을 보였는데,** 송(頌)에서 수석을 차지한 권의(權倚)와 부(賦)에서 수석을 차지한 심휘진(沈徽鎭)을 급제시키고 활쏘기 시험에서 합격한 무사(武士) 임창옥(林昌玉) 등은 곧장 전시에 응시하게 하였다.

○遣承旨, 頒糕太學儒生, 仍下御題, 命諸生應製. 賦居首權熀·頌居首金熙華, 直赴殿試. 上謂筵臣曰: "『詩』云: '濟濟多士, 文王以寧.' 太學, 卽賢士所關, 而且是國家元氣也. 賜酺三日, 古亦有例. 雖以列聖朝言之, 通衢賜饌, 惠及婦孺, 至于今, 傳以爲美事. 在民庶猶然, 況諸生乎? 頒柑, 卽一時特恩, 而仍以爲憲, 其後有頒柚子, 又有頒黃大口後, 依柑製例試取之例. 今豈可只令頒糕乎?" 仍倣肅廟朝御筆書等賜第故事, 壯元試券, 御筆書等. **水原府儒生頒糕試取, 一視泮儒**. 取頌居首權倚·賦居首沈徽鎭賜第, 試射入格武士林昌玉等, 直赴殿試.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6월 18일(신유) 2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에 갔던 암행 어사 조진택이 이목동과 천천리를 일용면에 속하게 하자고 제안하다

수원(水原)에 갔던 암행 어사 조진택(趙鎭宅)이 돌아와 수원에서 시행해야 할 일에 대해 아뢰고, 아울러 아뢰기를, "일용면(一用面)이 광주부(廣州府)에 속해 있을 때는 그 백성들이 부와의 거리가 멀어서 세금을 내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수원의 형석면(荊石面)으로 이사하여 피한 자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수원부로 옮겨 속하게 했으나 잔폐하여 지탱하기 어려우니, 이제 **이목동(梨木洞)과 천천리(泉川里) 두 마을을 함께 일용면에 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좌의정 채제공에게 물었다. 제공이 아뢰기를, "합병하면 형석면에 불리할 테니, 그대로 두소서." 하니, 따랐다.

○水原暗行御史趙鎭宅, **還奏水原便宜事**, 仍奏曰: "一用面在廣州時, 其民以距府遠, 納稅不便, **徙避於水原之荊石面者多**. 今雖移屬, 凋殘不可支, **今以梨木洞·泉川里兩里, 幷屬一用爲便**." 上問左議政蔡濟恭. **濟恭以合幷則不利於荊石, 請置之**, 從之.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20일(을미) 3번째기사>

2. 일성록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6일(신묘)

강**수원부(水原府)**에 나아가 경숙(經宿)하였다.

목○ 군복을 갖추고 교(轎)를 타고 협양문(協陽門)을 나가 돈화문(敦化門)을 거쳐 숭례문(崇禮門)을 나갔다. 지나는 길에 남묘(南廟)에 들러 전교하기를, "빗발이 이러하고 도로가 진창이니 날이 개기를 기다려 출발해야겠다. 군병은 노상에서 유주(留駐)하라." 하였다.

이어서 명하기를, "남묘의 수직관(守直官)을 변장에 조용(調用)하고, 수복과 원역들에게 규례를 상고하여 시상하라." 하였다. 교를 타고 출발하여 주교(舟橋) 북안(北岸)의 홍살문 밖에 이르렀다. 병조 판서 김문순(金文淳)이 무릎 꿇고 승교포(陞橋砲)를 쏠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어가(御駕)가 남안(南岸)의 홍살문에 이르자 김문순이 하교포(下橋砲)를 쏠 것을 계청하였다. 주교사(舟橋司)에 주필(駐蹕)하였다. 잠시 후에 교를 타고[12] 과천(果川) 주정소(晝停所)로 나아가 부림헌(富林軒)에 올랐다. 잠시 후에 승지 유문양(柳文養)에게 명하여 군령을 반포하게 하였다. 군복을 갖추고 말을 타고 출발하여 **수원**으로 나아갔다. **진남헌(鎭南軒)**에 올랐다. 잠시 후에 여(輿)를 타고 **득중정(得中亭)**에 나아가 병조 판서와 훈련대장 및 **수원 부사**에게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정자 동쪽 100보 지점에 사후(射帿)를 설치하고 내가 직접 깍지와 팔찌를 차고 어시(御矢)를 쏘아 3발을 맞혔다. 이어서 여러 장신(將臣)들에게 짝을 지어 쏘라고 명하였다. 여를 타고 **강무당(講武堂)**에 나아가 산형(山形)과 지세(地勢)를 두루 살펴보고 이어서 대차(大次)로 돌아왔다. 승지 서형수(徐瀅修), **수원 부사 조심태(趙心泰)**, 전 **수원 부사** 정동준(鄭東浚)에게 입시하라고 명하고, **조심태**에게 하교하기를,

"작년 봄 이후 지금 처음으로 행행했는데 관사의 장려(壯麗)함과 여염집의 즐비함이 작년 봄에 비하여 여간 달라진 정도가 아니다. 이는 모두 경이 부지런히 노력했기 때문이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이제는 본부(本府)를 설치하는 것이 이미 일의 두서가 잡혔으니 비록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다 하더라도 과연 일이 틀어지고 어긋날 염려는 없지 않겠는가." 하니, **조심태**가 황공하여 기복(起伏)하였다.

정동준이 아뢰기를, "지금은 조치할 모든 일에 거의 기초가 잡혔으니, 뒤에 오는 사람이 살펴서 행한다면 반드시 중도에서 진로를 변경할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수궁 승지를 체차해 주라고 명하였다. 승지 홍인호(洪仁浩), 경기 감사 서정수(徐鼎修), 전 경기 감사 김사목(金思穆)에게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김사목에게 하교하기를, "이번 행행에 경을 꼭 수가하게 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이다. 본부의 체모가 전에 비해 자별하다. 규모가 세워진 뒤에는 매번 이와 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마당이고 고을 수령을 처음으로 바꿨기 때문에 경이 기전(畿甸) 백성들의 사정에 정통하다고 여겨 상격에 구애받지 않고 이번에 특별히 제수(除授)한 것이다. 경은 나랏일에 감히 마른자리와 진자리를 가릴 것인가. 모름지기 성심을 다하여 나의 뜻을 선양하라." 하니, 김사목이 아뢰기를, "신이 조금이나마 성은에 보답하는 길이 실로 여기에 있는데 어찌 감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홍인호에게 명하기를, "새로 제수된 **수원 부사**의 밀부(密符)는 전 부사가 차던 밀부를 그대로 차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작년에 집을 짓도록 권하였는데, 과거는

12) 교를 타고 : 원문은 '乘橋' 인데,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橋' 를 '轎' 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자주 설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가가 본부에 도착하였으니, 새로 집을 지은 자들에 대하여 어찌 시취(試取)를 거행하지 않겠는가. 내일 원소(園所)에 나아갈 때 시제(試題)를 반포하고 시권(試券)을 채점하라. 그런데 명색은 집 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가족을 데리고 온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니, 이미 가족을 데리고 왔는지 아직 데리고 오지 않았는지를 시지(試紙)의 머리에 각각 쓰게 하고, 시지는 대호지(大好紙)를 쓰라. 무사의 경우는 한량(閑良)의 수효가 500명에 가까워서 내일 안으로 시취를 마치기가 어려운 형편이니 모레까지 시취하라. 이미 가족을 데리고 온 자는 유엽전(柳葉箭)에서 2발 이상을 맞힌 사람 및 소포(小布)에서 4발 이상을 맞힌 사람으로, 아직 가족을 데리고 오지 않은 자는 유엽전에서 3발 이상을 맞힌 사람으로 시기(試記)를 작성하라고 분부하라. 유생 시취의 경우에는 시관(試官)으로 홍문관 제학과 예문관 제학이 입시하여 과차(科次)하고, 무사 시취의 경우에는 수가한 장신(將臣) 1원(員)을 시관으로 삼으라고 미리 알려 주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수원**의 전배군(前排軍)에게 작년의 예에 따라 시상(施賞)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홍인호가 아뢰기를, "수가하는 당상의 인원을 갖추지 않을 수 없으니, 아직 차임하지 않은 공조 판서의 후임을 정관을 패초하여 정사를 열어 차출하게 하고, 하비하기를 기다려 패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하교하기를, "이번 새 읍치(邑治) 유생들의 응시 성책을 보니, 한 충정공(韓忠貞公 한광조(韓光肇))의 자손 중에 이사 온 자들이 자그마치 10여 인에 이른다. 일제히 짐을 날라 이사했으니 그 성의가 가상하다. 사복시 판관 한대유(韓大裕)가 바로 충정공의 조카이다." 하고, 이어서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연전에 그대의 집에서 이 땅에 집을 지은 뒤로 안주하는 방도에 대해 영문(營門)으로 하여금 도와주게 하기는 했지만 100리 길을 이사하는 데는 필시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10여 인이 새로 우거하느라 쓴 비용 또한 적지 않았을 터인데 집안의 재력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없었는가?" 하니, 한대유가 아뢰기를, "기유년(1789, 정조13)의 하교를 받은 뒤로부터 이 땅에 집을 지었는데 땔감과 양식에 관한 범절을 영문에서 이미 계속하여 지급해 주었습니다. 성은에 감축하여 **수원**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충정공은 나라에 충성을 바쳤다. 지나간 옛일을 돌이켜 생각하니 내 마음이 서글퍼진다. 그 사우(祠宇)가 읍치 안에 있는가?" 하니, 한대유가 아뢰기를, "사우는 옛집에 있습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처음에는 치제(致祭)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듣건대 사우가 이곳에 있지 않다고 하니 뒷날을 기다리도록 하겠다. 당내(堂內) 자손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한대유가 아뢰기를, "호서(湖西)에도 있고 원주(原州)에도 있으며 서울과 이곳에 있는 자는 단지 3, 4집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대의 당내는 모두 새 고을의 대과와 소과에 응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강詣**水原府**經宿

목具軍服乘轎出協陽門由敦化門出崇禮門歷臨南廟敎曰雨勢如此道路泥濘當待天明進發軍兵則路上留駐仍命南廟守直官邊將調用守僕員役等考例施賞乘轎進發至舟橋北岸紅箭門外兵曹判書 金文淳跪啓請放陞橋砲駕至南岸紅箭門文淳啓請放下橋砲駐蹕舟橋司少頃乘橋詣果川晝停所御富林軒少頃命承旨柳文養頒軍令具軍服乘馬進發詣**水原**御**鎭南軒**少頃乘輿詣**得中亭**命兵判 訓將及**水原府使**入侍設帳於亭東百步予親決拾御矢三中仍命諸將臣耦射乘輿詣**講武堂**周覽形地仍還大次命承旨徐瀅修 **水原府使** **趙心泰前水原府使** 鄭東浚入侍敎**心泰**曰昨春之後今始幸行而官舍之壯麗閭閻之櫛比比之昨春不啻改觀此皆卿勤勞效力之致予甚嘉之今則本府設置旣已就緖雖付之他手果無齟齬之慮否**心泰**惶恐起伏東浚曰今則措置凡百幾皆立定基趾後來者按而行之必無中道改轍之慮矣命守

宮承旨許遞命承旨洪仁浩 京畿監司 徐鼎修前京畿監司 金思穆入侍敎思穆曰今番幸行必使卿隨駕者予意有在矣本府事體視前自別規模旣立之後雖不必每每如此而見今草創之餘初易邑倅故不拘常格以卿爲諳練畿甸民情有此特除卿於國事敢擇燥濕乎須悉心對揚思穆曰臣之一分報效實在於此豈敢不殫心竭誠乎命仁浩曰新除授**水原府使**密符以前府使所佩密符仍佩仍敎曰昨年勸令築室而科擧則雖不可頻設駕到本府新築室者豈無試取之擧明日詣園所時頒題考券而名雖築室挈眷爲主已挈眷未挈眷者紙頭使各書之試紙用大好紙武士則閒良數近半千明日內勢難畢試再明試取已挈眷者柳葉箭二中以上及小布四中以上未挈眷者柳葉箭三中以上修正試記事分付儒生試取則試官弘藝文提學入侍科次武士則隨駕將臣一員爲試官事預令知悉又敎曰**水原**前排軍依昨年例施賞事分付仁浩曰隨駕堂上不可不備員工曹判書未差之代政官牌招開政差出待下批請牌招從之敎曰觀此新治儒生赴試成册韓忠貞子孫之移來者至於十餘人之多一齊搬移其誠可嘉司僕判官 韓大裕則忠貞之侄仍命入侍仍敎曰年前爾家築室玆土之後莫接之方使營門雖有助給而百里移徙勢必多難便十餘人之新寓所費亦當不些家力能無不逮之歎乎大裕曰自承己酉下敎之後築室此土柴糧凡節自營門已有繼給感祝聖恩願爲**水原**之民矣予曰忠貞曾有效忠於國家追念往昔予心感愴其祠宇在於治下乎大裕曰祠宇則在舊廬矣敎曰初欲致祭今聞其祠宇不在此處則容俟後日矣其堂內子孫爲幾許乎大裕曰或在湖西或在原州在京在此者只三四家也敎曰爾之堂內竝赴新邑大小科可也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6일(신묘)

강**조심태**를 승지로, 김사목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목○ 전교하기를, "어가가 본부에 도착했을 때 공해(公廨)와 민호(民戶)를 두루 살펴보니 작년 가을에 보던 것에 비해 갑절이나 낫다. 이는 모두 본부의 부사가 성실하고 부지런한 결과이다. 더구나 재작년 가을부터 전후 수십 개월 동안의 그 노고를 더욱 어찌 이루 다 말하겠는가. 지금은 고을의 일이 두서가 잡혔으니, 어찌 이제는 내직으로 옮겨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수원 부사** **조심태**를 승지로 제수하고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라. 그리고 그 후임은 자력(資歷)이 있고 또 고을 일에 익숙한 자를 차출해 보내야 할 것이다. 공조 판서 김사목을 **수원 부사**로 삼아서 또한 오늘 안으로 패초하여 밀부를 전수하라." 하였다.

강以**趙心泰**爲承旨以金思穆爲**水原府使**

목敎曰駕到本府周覽公廨民戶比昨秋所見倍有勝焉此皆本府使誠勤所暨況自再昨秋首尾數十朔其勞尤豈勝言今則邑事旣就緖豈可不令趁今內還**水原府使** **趙心泰** 承旨除授牌招察任此代當以有資歷且習邑事者差遣工曹判書 金思穆爲**水原府使**亦令當日內牌招傳授密符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6일(신묘)

강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홍양호(洪良浩), 참판 민종현(閔鍾顯), 참의 조윤대(曺允大)가 나왔다.

목○ 권엄(權嚴)을 공조 판서로 삼았다.

강有政 吏曹判書 洪良浩 參判 閔鍾顯 參議 曺允大進

목以權▣爲工曹判書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6일(신묘)

강입직

목검교대교 심상규(沈象奎)

검서관 성해응(成海應)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7일(임진)

강**현륭원(顯隆園)**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냈다.

목○ 융복(戎服)을 갖추고 **진남헌(鎭南軒)**에 올랐다.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 입시하라고 명하고 이어서 응제 유생(應製儒生)들에게 입문(入門)하여 예를 행하라고 명하였다. 홍문관 제학 이병모(李秉模)에게 명하여 어제(御製)를 쓰게 하고 **조심태(趙心泰)**에게 명하여 어제를 내걸게 하고 이르기를, "경은 예문관 제학과 함께 여기 남아서 시권(試券)을 거두고 시장(試場)이 난잡해지는 폐단을 엄히 금칙하라." 하였다. 또 **채제공**에게 명하기를,

"지금 원소(園所)로 나아가려고 한다. 경은 편한 대로 먼저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군복을 갖추고 말을 타고 부(府)의 문을 나가 **현륭원**으로 나아갔다. 강마소(降馬所)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재실(齋室)로 들어가 천담복(淺淡服)에 오서대(烏犀帶)로 갈아입고 여(輿)를 타고 홍살문 밖에 나아가 여에서 내려 판위(板位)로 나아가 재배례(再拜禮)를 행하였다. 이어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가 세 번 향을 올리고 작(酌)을 잡아 작을 올렸다. 대축(大祝)이 축문을 읽었다. 내가 판위로 나아가고, 아헌관(亞獻官) - **채제공**이다. - 과 종헌관(終獻官) - 황인점(黃仁點)이다. - 이 예를 행하였다. 다시 재배례를 행하고 망료위(望燎位)로 나아가 축문을 사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원상(園上)으로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병풍석(屛風石)으로 나아가 원사(園司)에게 묻기를,

"이것이 **화산**석(**花山**石)인가?" 하니, 원사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내가 **채제공**에게 이르기를, "경은 **화산**석을 아는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마치 옥돌 속에 있는 좋은 옥을 하늘과 땅이 몰래 감추어 두었다가 오늘의 쓰임을 기다린 듯하니 참으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감여가(堪輿家)의 말에 본래 아주 어두우나 전일에 들은 말을 가지고 증험해 본다면 청룡과 백호가 둘러싼 것과 조망대가 맑고 고운 것이 평범한 사람의 안목으로 보더라도 매우 범상하지 아니함을 알 것이다."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이는 진실로 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바가 아니고 아마도 성상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결과일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백호 남쪽 향교의 옛터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종래 지사(地師)들의 말은 모두 이곳이 재실 뒤쪽 산기슭보다 낫다고 하였는데, 경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안온하고 수려함이 재실 뒤쪽 산기슭에 비해 훨씬 낫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조금 전에 새 고을 안을 지나오면서 보니, 서울과 지방에서 와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 지붕이 서로 이어져 어느덧 번화한 큰 도시가 되었으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혹시 서둘러 집을 짓느라고 재산을 낭비하고 생업에 손해를 보았다면 이것이 어찌 내가 권하여 집을 짓게 한 본래의 의도이겠는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집을 지을 때에 스스로 그 힘을 헤아려 했을 것이니, 애당초 본래의 생업에 손해를 끼칠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원사(園司)에게 묻기를, "국내(局內)에 심은 소나무와 잡목이 지금 몇 만 그루에 이르는가?" 하니, 원사가 대답하기를, "200만여 그루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이 뒤로는 더 심을 필요는 없고 다만 성긴 곳은 북돋아 주고 조밀한 곳은 솎아 주어 배양하고 보호하는 일에 전념하라." 하였다. 이어서 근시(近侍)에게 명하여 비각을 봉심하게 하였다. 걸어서 홍살문 밖에 이르러 여를 타고 재실로 돌아왔다. 백관에게 깃을 꽂으라고 명하였다. 또 원소의 동구(洞口)로부터 숭례문에 이르기까지 상언(上言)을 받으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여를 타고 재실 북쪽 문을 나가 동쪽 산기슭을 거쳐 구불구불 주봉(主峰)에 올라가서 식목이 잘 되어 있는지를 직접 살펴보았다. 이어서 지나는 길에 용주사(龍珠寺)에 들렀다가 잠시 뒤에 말을 타고 출발하였다. 지나는 길에 본부(本府)의 향교에 들러 명륜당(明倫堂)으로 나아갔다.

승지 유문양(柳文養)에게 명하여 성묘(聖廟)를 봉심하게 하고서 전교하기를, "융복을 입고 전(殿)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니 밖에서만 봉심하라." 하고, 또 면학하는 유생이 모두 몇 사람이며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고 물으니, 서형수(徐瀅修)가 대답하기를, "모두 20여 명인데 모두 응제(應製)하느라 읍내에 있으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였다. 말을 타고 출발하여 **수원부**의 아문 안으로 돌아와 **득중정(得中亭)**으로 나아갔다. 이조 판서 홍양호(洪良浩)에게 입시하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어제 육신묘(六臣墓)를 지나면서 마음속에 깊은 감회가 있어서 방금 육신묘와 사충사(四忠祠) 및 박태보(朴泰輔)의 서원에 치제(致祭)하라고 하교하였으며 제문도 이미 불러 주어 썼기 때문에 경을 불러서 보이는 것이다." 하고, 이어서 승지 서형수에게 명하여 읽게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이것은 갑자기 지은 것인데 과연 흠이 없는가?" 하니, 홍양호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지으신 글이 밝고 뚜렷하며 고금에 없던 포양(褒揚)을 하시니 지하에서도 반드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하였다. 서형수에게 명하여 조금 전에 내린 전교를 홍양호에게 내보이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신규(申奎)가 아직 증직(贈職)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경이 상세히 상고하여 보고 만약 아직 추증(追贈)하지 않았다면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신규 자손들의 이름과 거주지를 사관이 나가서 **수원부사**로 하여금 장두(狀頭)를 불러 묻게 하여 아뢰라." 하였다.

서형수가 돌아와 아뢰기를, "신규의 증손 신응한(申應漢)이 현재 **수원부**의 남쪽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내가 홍양호에게 명하기를, "경은 모름지기 신응한을 불러다 보고 그 사람 됨됨이가 만약 벼슬살이를 할 만하면 뒷날의 정사에서 초사(初仕)로 조용(調用)하라." 하였다.

강詣**顯隆園**親祭

목具戎服御**鎭南軒**命左議政 **蔡濟恭**入侍仍命應製儒生入門行禮命弘文提學 李秉模書御題命**心泰**懸題曰卿則與藝文提學留此收券而場圍雜亂之弊嚴加禁飭又命濟恭曰方欲進詣園所卿則從便先詣好矣具軍服乘馬出府門詣**顯隆園**至降馬所降馬入御齋室改具淺淡服烏犀帶乘輿詣紅箭門外降輿就版位行再拜禮訖仍詣神位前三上香執酌獻酌大祝讀祝文 訖予出就版位亞獻官 **蔡濟恭** 終獻官 黃仁點 行禮訖復行再拜禮詣望燎位望燎詣園上奉審詣屛風石下詢園司曰此是花山石乎園司對曰然矣予謂濟恭曰卿知**花山**石乎濟恭曰有若良玉之在璞天藏地秘以待今日之用誠非偶然矣予曰予於堪輿家言本來茫昧而驗之以前日所聞之言則龍虎之回抱眺臺之明麗雖以凡眼觀之亦知其迥出凡常矣濟恭曰此固非人力所致而抑亦聖孝之攸格也予指白虎南鄕校舊基曰從來地師之言皆以此處爲有勝於齋室後麓卿意則以爲如何濟恭曰穩藉秀麗比之齋室後麓尤勝矣予曰俄過新邑內見京外人來居築室者甚多屋甍相連居然爲通衢大都殊可幸也而但或急於築室至有耗損其產業之患則是豈予勸令築室之本意乎濟恭曰築室之際自量其力而爲之初無耗損本業之慮矣予下詢園司曰局內所植松雜木今至幾萬株乎園司對曰二百萬餘株矣予曰此後不必更事種植但疏者培之密者剔之專意於培護之役可也仍命近侍奉審碑閣步至紅箭門外乘輿還御齋室命百官插羽又命自園所洞口至崇禮門捧上言仍乘輿出齋室北門由東麓逶迤詣主峯親審植木勤慢訖仍歷臨**龍珠寺**少頃乘馬進發歷臨本府鄕校御明倫堂命承旨 柳文養奉審聖廟仍敎曰不可以戎服入殿內只自外奉審又下詢藏修儒生總爲幾人而今在何處瀅修對曰總爲二十餘人而皆以應製在邑內未還云矣乘馬進發還詣**水原府**衙內御**得中亭**命吏曹判書

洪良浩入侍敎曰昨過六臣墓有曠感于中者纔以六臣墓四忠祠及朴泰輔書院致祭事有所下敎而祭文亦已呼寫故召卿示之矣仍命承旨 徐瀅修讀之予曰此是猝構果無疵類乎良浩曰宸章昭回褒揚曠古九地之下亦必感泣矣命瀅修以俄下傳敎出示良浩仍敎曰申奎之未及贈職與否卿須詳細考見如或尙未贈卽爲擧行又敎曰申奎子孫之名字居住史官出去使水原府使招問于狀頭以奏瀅修還奏申奎曾孫申應漢見在府南予命良浩曰卿須招見應漢其爲人如可從宦後日政初任調用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7일(임진)

강진남헌(鎭南軒)에서 유생 응제를 설행하였다.

목○ “문왕 자손은 본종(本宗)과 지서(支庶)가 백세를 누렸도다.[13] [文王孫子本支百世] ” 로 부제(賦題)를 삼았다.

강設儒生應製于鎭南軒

목以文王孫子本支百世爲賦題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7일(임진)

강득중정(得中亭)에 나아가 입격 유생들을 소견하고 대차(大次)에 돌아와 과차(科次)를 행하였다.

목○ 내가 양관(兩館) 제학에게 입시하라고 명하고, 시소 승지(試所承旨)에게 시권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미 가족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시권은 양관의 제학들이 채점하고 아직 가족을 데려오지 않은 사람들의 시권은 이제학(二提學)이 채점하라.” 하니,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신은 지금 외임(外任)을 맡고 있어서 함부로 시권을 채점하는 일을 맡기 어렵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아직 가족을 데려오지 않은 사람들의 시권은 과제(科第)하는 것과는 다르니, 경이 채점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하였다. 과차하기를 마치고 이어서 바로 응시한 유생들에게 선찬(宣饌)하였다. 입격한 사람들에게 차례로 앞으로 나아오라고 명하니, 수석을 차지한 진사 임희존(任希存)이 앞으로 나아왔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네 아비의 아들로서 이곳에서 이번 과거에 입격하였다.[14]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하니 내 마음이 몹시 슬프다. 너의 아비의 사우(祠宇)도 수원 읍치(邑治)에 있느냐?” 하니, 임희존이 대답하기를, “가족은 이미 데려왔지만 사우는 서울에 있는 옛집에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당초에는 치제하려고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 사우가 이곳에 있지 않다고 하니 뒷날을 기다려야겠다.” 하고, 이어서 사악(賜樂)하고 본부의 부사로 하여금 돈 50냥과 쌀 10석을 주게 하여 연수(宴需)를 갖추도록 하였다. 지차(之次)인 진사 심후진(沈厚鎭)이 앞으로 나아왔다.

전교하기를, “삼하(三下) 이상은 모두 급분(給分)할 것이니 그대들은 먼저 나가도록 하라.” 하였다. 이어서 차상(次上)으로 입격한 사람들에게 모두 종이 1권씩을 시상하라고 명하고 대차로 돌아왔다.

○ 전교하기를, “입격한 사람 중에 수석을 차지한 진사 임희존은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

---

13) 문왕 …… 누렸도다 : 《시경(詩經)》 〈문왕(文王)〉의 한 구절이다.

14) 너는 …… 입격하였다 : 임희존(任希存)의 생부(生父)는 임성(任珹)이다. 그는 1762년(영조38)에 사서(司書)로서 나경언(羅景彦)이 세자의 비행을 상주하고 영조가 세자를 죽이려 하자 극력 그 잘못을 빌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세자가 죽은 뒤에는 보필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파직당하였다. 그런데 그의 아들 임희존이 사도세자와 관련 있는 수원에 내려와 살면서 이번 과시(科試)에 응시한 것이다. 《한국인물대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시할 자격을 주고, 지차인 진사 심후진과 유학(幼學) 권경(權警)은 회시(會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지차인 유학 이홍덕(李弘德)·조륜(趙崙)·윤지승(尹持昇)·윤지홍(尹持弘)에게는 각각 2분(分)씩을 주고, 차상인 유학 이회검(李會儉) 등에게는 종이 1권을 사급(賜給)하라." 하였다.

강御得中亭召見入格儒生還詣大次行科次

목予命兩館提學入侍又命試所承旨持試券以入仍敎曰已挈眷軸則兩館提學考券未挈眷軸則二提學考券也鄭民始曰臣方帶外任有難冒當考券之任矣予曰未挈眷軸則旣與科第有異卿雖考券無妨也科次訖仍卽宣饌赴試諸儒命入格人以次進前居首進士任希存進前予曰爾以爾父之子闡是科於此地追念往昔予甚感愴矣爾父祠宇亦在治下乎希存對曰家眷則雖已率來而祠宇則在都下舊廬矣予曰初欲致祭而今聞其祠宇不在此處云容俟後日矣仍賜樂令本府使給錢五十兩米十石以備宴需之次進士沈厚鎭進前敎曰三下以上皆當給分爾等預先出去仍命次上入格人皆以紙一卷施賞還御大次○敎曰入格居首進士任希存直赴殿試之次進士沈厚鎭幼學權警直赴會試之次幼學李弘德 趙崙 尹持昇 尹持弘各給二分次上幼學李會儉等紙一卷賜給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7일(임진)

강원관(園官)을 승서(陞敍)하고 수복(守僕)들에게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이번 원행(園幸)은 바로 경사를 고하기 위해서인데, 묘(廟)와 궁(宮)의 관원을 모두 품계에 따라 승서하였으니 원관도 같은 예(例)로 해야 할 것이다. 원(園)의 영(令) 등은 승서하고, 수복들에게는 첩가(帖加)를 만들어 주고, 그 나머지 경수복(京守僕)과 수호군(守護軍)들에게는 모두 호조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시상하게 하라." 하였다.

강園官命陞敍守僕等施賞

목敎曰今番園幸卽告慶也廟宮官員皆隨品陞敍園官亦當同例園令等陞敍守僕等帖加成給其餘京守僕守護軍等竝令該曹依例施賞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7일(임진)

강원관은 아직 옮겨 의망(擬望)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원관은 구임(久任)한 뒤에야 사무에 전념할 수 있다. 이 뒤로 원관은 사송(詞訟)을 맡은 달수와 출륙(出六)한 달수, 육품강(六品講)과 수령강(守令講)에 모두 구애받지 말고 수령에 의망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고, 시임 원관은 하교하기 전에는 옮겨 의망하지 말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園官命姑勿移擬

목敎曰園官久任然後可以專意事務此後詞訟及出六朔數六品及守令講竝勿拘擬望於守令事定式時任園官下敎前姑勿移擬事分付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7일(임진)

강나무를 심은 수령 이하에게 노고에 보답하는 은전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나무를 심은 수령들의 노고에 대하여 재작년 행행 때부터 이미 앞날의 근만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하교를 한 일이 있는데 오늘 직접 살펴보고 충분히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작년 봄에 가장 수고를 많이 하여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것이 가장 많은 곳은 양성(陽城)이고, 작년 가을에 가장 수고를 많이 하여 가장 견고하게 잘 쌓은 곳은 광주(廣州)이다. 대수롭지 않은 노고에 보답할 때도 오히려 승자(陞資)하는 은전이 있는데 하물며

지극히 귀중하고 지극히 공경해야 할 곳에서 거행한 일이겠는가. 노정이 100리에 가까워서 몸소 감독하고 손수 심지 못하여 각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내 대신 수고를 하게 하였으니 그들의 노고에 어찌 범연히 보답할 수가 있겠는가. 양성 현감 윤광석(尹光碩)은 부사로 오늘 정사에서 조용하고, 전 광주 부윤 홍성연(洪聖淵)은 가자(加資)하라. 그 외에도 수령으로서 작년 봄과 가을에 다음으로 수고한 사람은 **수원 부사**이나 이곳의 지방관이므로 거론하지 말라. 또 그 다음은 남양 부사(南陽府使)이다. 연로한 사람이 두 번이나 인원을 차출하는 일을 주관하였으니 숙마(熟馬) 1필을 사급하라. 안산 군수(安山郡守) 이유칭(李惟稱)과 전 진위 현령(振威縣令) 이협성(李協聖)은 재작년 가을부터 세 번이나 이 일을 주관하였으니 모두 4품직에 승서하라. 또 그 다음인 용인 현감(龍仁縣監) 신석(申昔)은 두 번 이 일을 주관하였으니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고 전 과천 현감(果川縣監) 이명걸(李命杰)은 상현궁(上弦弓) 1장(張)을 사급하라. 홍대영(洪大榮)은 길 닦는 문제는 그만두고라도 이미 나무 심을 때에 그가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근만을 고과한다면 홍대영은 태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처분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니 거론하지 말라. 그 나머지 차사원, 비장, 장교 등에게는 판하(判下)한 대로 시상하라. 자원해서 나무 심는 것을 조령(朝令)으로 금하는 것이지만 조령이 내리기 전에 나무 심은 **수원**의 업유(業儒) 김낙성(金樂成)은 당초에 맨 먼저 물력을 내놓아 심은 것이 자그마치 9만여 그루에 이르고 또한 대부분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으니 오늘 정사에서 오위장에 자리를 만들어 조용하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전에 이미 넉넉하게 값을 쳐 주었으며 간은(干恩)하는 일은 없애야 하니 모두 거론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본부의 출신(出身) 여문영(呂文永)은 1만 그루나 심었고 뿌리를 잘 내린 것이 반을 차지한다. 지난번에 이번 행행에서 상전(賞典)을 내리겠으니 제품(提稟)하라는 명이 있었다. 초사로 병조로 하여금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조용하게 하라." 하였다.

강命施植木守令以下酬勞之典

목敎曰植木守令之勞自再昨年幸行時旣有更考來頭勤慢之敎而今日親審足可領略以昨春首勞完根最多者陽城是也以昨秋首勞堅築最勝者廣州是也尋常酬勞猶有陞秩之典況此至重至敬處擧行之事乎程塗近百里未能躬董而手植使各邑倅爲此替予勞之擧其所酬勞豈可泛然陽城縣監 尹光碩 府使今日政調用廣州前府尹 洪聖淵加資其餘守令昨春與秋次勞爲**水原**而係是地方官勿論又其次南陽府使以年老之人再管差員之役熟馬一匹賜給安山郡守 李惟稱 振威前縣令 李協聖自再昨秋三管是役幷四品職陞敍又其次龍仁縣監 申昔再管是役兒馬一匹賜給果川前縣監 李命杰上絃弓一張賜給洪大榮不待治道已於植木時知其不小心若考勤慢大榮非慢而何處分未久勿論其餘差使員裨將將校等依判下施賞自願植木雖以朝令禁之令前植木人**水原**業儒金樂成當初首先出力所植至於九萬株之多亦多完根今日政五衛將作窠調用其餘人前已優給價本俾除干恩幷無可論其中本府出身呂文永萬株之植根完居半向以今幸當下賞典有提稟之命初仕令該曹待窠調用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7일(임진)

강수가한 군병에게 죽을 쑤어 준 것은 공곡(公穀)으로 회감(會減)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이번에 수가한 군병에게 본부에서 별도로 죽을 쑤어 주었는데, 이는 정례(定例)에 없는 것이니[15], 공곡으로 회감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命隨駕軍兵饋粥以公穀會減

15) 정례(定例)에 없는 것이니 : 원문은 '定係之外'인데,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係'를 '例'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목敎曰今番隨駕軍兵本府別饋粥係是定係之外以公穀會減事分付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7일(임진)

강총융사 이창운(李昌運)을 체차하고 서유대(徐有大)를 임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본부가 총융청에 속하므로 자연 거행할 일이 많을 것인데 총융사가 늙고 병들어 억지로 다그치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그저께 명초(命招)가 내렸을 때 밀부(密符)도 수령(受領)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총융사 이창운을 지금 우선 체차해 주라. 전망 단자(前望單子)를 들이고, 하비하기를 기다려 즉시 패초하여 밀부를 전해 주라." 하였다.

강遞總戎使 李昌運以徐有大代之

목敎曰本府屬於總戎廳自多擧行而總帥之老病勢難强策再昨命招之下密符亦不得祗受云總戎使 李昌運今姑許遞前望單子入之待下批卽爲牌招傳授密符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7일(임진)

강내일 과천에서 주정(晝停)하고 이어서 궁으로 돌아가겠다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오늘 일찍 본부에 돌아온 것은 군병들이 힘들까 염려해서이니 내일 거뜬히 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일 과천에서 주정하고 이어서 궁으로 돌아갈 것이니 병조 판서에게 그렇게 분부하라. 궁으로 돌아가는 군령은 다시 계하(啓下)를 받고, 유도 대장(留都大將)과 주사 대장(舟師大將)에게도 분부하라." 하였다.

강命明日果川晝停仍還宮

목敎曰今日之早還本府爲念軍兵之弊明日還宮足可爲之明日果川晝停仍爲還宮以此分付兵判還宮軍令更爲啓下留都大將 舟師大將處亦爲分付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7일(임진)

강<u>득중정</u> 어사(御射) 때의 장교 이하에게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본부 <u>득중정</u> 어사 때에 절도에 맞게 일을 거행한 본부 장교들에게 동개(筒箇)를 각각 1부(部)씩 사급하고, 군사들에게는 각각 무명 1필(疋)씩을 호조가 시상하라." 하였다.

강命<u>得中亭</u>御射時將校以下施賞

목敎曰本府<u>得中亭</u>御射時得中擧行本府將校等筒箇各一部賜給軍士等各木一疋戶曹施賞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7일(임진)

강육신묘(六臣墓)와 박태보(朴泰輔)의 서원에 치제하고 고 현감 신규(申奎)를 증직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연(輦)을 타고 오는 길에 눈에 들어왔으니 어찌 추모의 감회를 이길 수 있겠는가. 육신묘와 고 충신 박태보의 서원에 모레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원우(院宇)가 그 옆에 있다고 하니 마땅히 감구(感舊)하는 뜻을 표해야 할 것이다. 사충사(四忠祠)에도 승지를 보내어 모레 치제하게 하라. 제문은 더러 거친 데가 많으나 수정할 필요는 없고 지어 내린 것을 모두 향실(香室)에 주어 정서(正書)하게 하고, 승지는 동부승지가 나아가도록 하라. 일전에 연석(筵席)에서, 연을 타고 오는 길에 육신의 사당을 지나게 되어 고 현감 신규가 소를 올려 건의한 일에 대해 감회가 일어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 말한 것이 있다. 옛적 숙묘조(肅廟朝) 때 단묘(端廟)를 복위시키는 예(禮)를 거행하면서 성조(聖祖)께

서 하교하신 것이 분명히 국사(國史)에 실려 있으며, 선조(先朝) 때 또 온릉(溫陵)[16]을 복위하는 예를 거행하였는데 전후의 성대한 의식이 모두 신규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신규에 대해서는 아직도 증직하거나 그의 후손을 등용한 일이 없었으니 이는 아마 겨를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마침 또 **수원**의 여러 선비들이 일제히 호소하는 것을 보았고 그의 사판(祠版)이 본부에 있으나 주인집이 빈한하여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고 향화(香火)를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니 매우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이 든다. 이조로 하여금 특별히 대시(臺侍)로 증직하게 하라." 하였다.

강命六臣墓及朴泰輔書院致祭故縣監 申奎贈職

목敎曰輦路入矚豈勝曠感六臣墓及故忠臣朴泰輔書院再明日遣承旨致祭院宇在其傍宜表感舊之意四忠祠亦爲遣承旨再明日致祭祭文間多潦草不必淘洗皆令以製下者付之香室正書承旨同副進去日前筵中以輦路之過六臣祠起感於故縣監 申奎抗疏建白事有言於入侍諸臣者昔肅廟朝特擧端廟復位之禮聖祖下敎昭載國乘先朝又擧溫陵復位之禮前後盛典皆從申奎之議奎之尙無贈職錄後之事蓋因未遑今日適又見**水原**多士齊籲之擧而聞其祠版在本府以主家之貧寒風雨不蔽香火難繼云甚可矜念令該曹特贈臺侍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7일(임진)

강김기승(金箕昇)을 서용(敍用)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본부의 신접 가옥을 두루 살펴보니 마음을 다하여 집을 지었다. 가장 먼저 응모하고 재력을 들여 집을 짓고 땅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 작년 봄에 이미 가장 많이 수고한 자를 우선적으로 조용하겠다는 영이 있었으니, 영을 믿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날짜를 넘기겠는가. 전 중군 김기승을 병조로 하여금 특별히 거두어 쓰게 하라." 하였다.

강命金箕昇敍用

목敎曰周覽本府新接家舍盡心設施最先應募出力而結構買土昨春旣有首勞者先爲調用其在信令之道豈可踰日前中軍金箕昇令該曹拔例收用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7일(임진)

강**조심태(趙心泰)**를 훈련대장으로 삼았다.

목○ 전교하기를, "행 좌승지 **조심태**를 훈련대장으로 삼으니, 정관을 패초하여 정사를 열라." 하였다.

강以**趙心泰**爲訓鍊大將

목敎曰行左承旨 **趙心泰**爲訓鍊大將 政官牌招開政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7일(임진)

강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홍양호(洪良浩), 참판 민종현(閔鍾顯), 참의 조윤대(曺允大)가 나왔다.

목○ 전교하기를, "아직 숙배하지 아니한 대간을 체차해 주고, 오늘 정사에서 차출하라." 하였다.

○ 엄사만(嚴思晩)을 형조 참판으로, 임희일(任希一)을 장령으로, 윤광석(尹光碩)을 인천 부사(仁川府使)로 삼았다.

강有政 吏曹判書 洪良浩 參判 閔鍾顯 參議 曺允大進

16) 온릉(溫陵) : 중종(中宗)의 비(妃)인 단경왕후(端敬王后)의 능이다.

목敎曰未肅拜臺諫許遞今日政差出○以嚴思晩 爲刑曹參判 任希一爲掌令 尹光碩爲仁川府使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7일(임진)

강입직

목검교대교 심상규(沈象奎)

검서관 성해응(成海應)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8일(계사)

강궁으로 돌아왔다.

목○ 군복을 갖추고 말을 타고 부(府)의 문(門)을 나왔다. 무시소(武試所)가 파한 뒤에 편한 대로 올라오라는 뜻으로 사관을 보내어 좌의정에게 전유(傳諭)하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과천(果川) 주정소(晝停所)로 나아가 부림헌(富林軒)에 올랐다. 잠시 후에 말을 타고 주교사(舟橋司)에 나아가 주필(駐蹕)하였다. 내각 제학 정민시(鄭民始)에게 명하기를, "이곳은 본디 서울 근처에서 경치가 뛰어난 곳으로 일컬어지는데 지금 보니 안계(眼界)가 탁 트이고 강산이 수려하여 과연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였다. 병조 판서 김문순(金文淳)에게 입시하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주사영(舟師營)에서 강을 건널 때 호령하는 것은 모두 북안(北岸)의 홍살문에서 전례대로 하라." 하였다. 또 선상(先廂) 군병에 대해 계엄을 풀고 어영청의 유진(留陣)한 군병으로 선상을 삼으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각신에게 선찬(宣饌)하고, 융복으로 갈아입고 말을 타고 출발하여 주교를 건넜다. 숭례문(崇禮門)을 거쳐 돈화문(敦化門)과 협양문(協陽門)으로 들어와 대내(大內)로 돌아왔다.

강還宮

목具軍服乘馬出府門命武試所罷後從便上來之意遣史官傳諭于左議政仍詣果川晝停所御富林軒少頃乘馬詣舟橋司駐蹕命內閣提學 鄭民始曰此地素稱爲京都近地名勝之區今見眼界之開豁江山之秀麗果不負其名矣民始曰誠然矣命兵曹判書 金文淳入侍敎曰舟師營渡涉號令皆於北岸紅箭門依例爲之又命先廂軍兵解嚴以御營留陣軍兵爲先廂仍宣饌于閣臣改具 戎服乘馬進發渡舟橋由崇禮門入敦化門 協陽門還內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 1월 18일(계사)

강<u>수원부(水原府)</u>에서 무사의 응제(應製)를 설행하였다.

목○ 목(目)이 없는 기사임

강設武士應製于<u>水原府</u>

목

정조 15년 신해 (1791, 건륭56)1월 18일(계사)

강입직

목검교대교 심상규(沈象奎)

검서관 성해응(成海應)

제4차 1792년(정조 16) 1월 24일~26일(2박 3일)

1. 조선왕조실록

현륭원으로 행차하던 중 갈현에서 촌노에게 근심을 묻다

상이 **현륭원(顯隆園)**에 행차하는 도중 **갈현(葛峴)**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서 초상(軺床)에 앉아 마을 노점의 노인들을 불러서 고통스러운 일을 물어보았다.

○甲午/上詣**顯隆園**, 至**葛峴**下馬, 御軺床, 召村店父老, 詢問疾苦.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1월 24일(갑오) 1번째기사>

정치/왕실

정조가 수원부 행궁에 머물며 강무당에 나아가 활을 쏘다

수원부(水原府) 행궁(行宮)에 머물렀다. 강무당(講武堂)에 나아가 활로 과녁을 쏘았는데 한 차례에 두 개의 화살이 맞았고 중포(中布)에는 한 차례에 세 개의 화살이 맞았다. 무장과 병조 판서에게 명하여 각각 한 차례씩 쏘라고 하였다.

○**次水原府行宮. 詣講武堂**, 射貫革一巡, 獲二失, 中布一巡, 獲三矢. 命武將及兵判, 各射一巡.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1월 24일(갑오) 2번째기사>

현륭원을 참배하다

상이 **현륭원**을 배알하고 시신(侍臣)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내가 풍수지리에 대해 비록 상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1백 리의 평야에 이러한 형국이 이루어졌으니 청룡(靑龍)과 백호(白虎)가 둘러싼 것과 조·대산(朝對山)의 밝고 수려한 모습은 비록 평범한 사람의 안목이라도 모두 알 수 있다. 이곳은 효종 때에 표시하여 둔 곳인데, 지금 원침(園寢)이 되었으니, 실로 하늘이 준 것이지 나의 힘이 아니다. 28년 동안 옛 능원(陵園)에 봉안하였다가 다행히도 천지 신명의 도움을 힘입어 내 마음에 여한이 없게 되었으니, 지난 일을 회상하면 슬픔과 기쁨이 교차한다." 하였다.

○乙未/ 上拜**顯隆園**, 顧謂侍臣曰: "予於堪輿家, 雖未詳知, 而百里平野, 有此成局, 龍處之回抱, 朝對之明麗, 雖凡眼, 皆可知之. 此是孝廟朝置標之地, 而今爲園寢, 天實與之, 非予之力也. 卄八年奉安于舊園, 幸賴天地神祇之默佑, 得以無憾於予心, 回思往事, 悲喜交集也.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1월 25일(을미) 1번째기사>

어진을 현륭원 재전에 봉안해 신하들이 퇴궐시 먼저 찾게 하다

어진(御眞)을 **현륭원**의 재전(齋殿)에 봉안하였다. 이는 궁궐을 나올 때에 각신(閣臣)들을 명하여 먼저 가서 봉안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전교하기를,

"남향으로 봉안한 것이 참으로 좋지만 동편의 협실(挾室)에 서향(西向)으로 봉안한다면 능원을 첨앙하는 뜻에 있어서 더욱 정례(情禮)에 적합할 것이다."

하고, 또 능원의 관리에게 전교하기를,

"너희들은 각신(閣臣)과 더불어 입회하여 전봉(展奉)하는 것이 좋겠다. 전봉은 바로 전배(展拜)하는 것이니, 유독 너희들로 하여금 봉심(奉審)하는 절차를 익히게 하는 것뿐만이 아

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뜻을 알라." 하였다.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1월 25일(을미) 2번째기사>

정치/행정

특지로 수원 부사 김사목을 이조 판서로, 여주 목사 이경무를 수원 부사로 삼다

중비(中批)로 **수원 부사 김사목(金思穆)**을 이조 판서로, 여주 목사 이경무(李敬懋)를 **수원 부사**로 삼았다.

○中批, **水原府使**金思穆爲吏曹判書, 驪州牧使李敬懋爲**水原府使**.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1월 25일(을미) 3번째기사>

득중정에서 유생과 무사들을 시험하다

득중정(得中亭)에 나아가 본부(本府)의 유생과 무사들을 시험보였다. 유생으로서 수석을 차지한 진사 임후상(任厚常)은 곧바로 전시(殿試)에 응시케 하고, 무사로서 삼중(三中)5357) 이상은 곧바로 전시에 응시케 하였다.

○御**得中亭**, 試本府儒生·武士. 儒生居首進士任厚常赴殿試, 武士三中以上, 赴殿試.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1월 25일(을미) 4번째기사>

환궁하다

상이 궁궐로 돌아왔다.

○丙申/還宮.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1월 26일(병신) 1번째기사>

수원의 경계인 사근현에서 아쉬움을 달래고, 노역한 백성의 세금을 면하다

어가가 **사근현(沙斤峴)**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잠시 쉴 때에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내가 본래 가슴이 막히는 병이 있어 궁궐을 나올 때에 꽤 고통스러웠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배알하는 예를 마치고 나니 사모하는 마음이 다소 풀리어 가슴 막히는 증세도 따라서 조금 가라앉았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이 지역은 바로 **수원**의 경계이다. 말에서 내려 머무르며 경들을 불러 보는 것은 대저 나의 행차를 지연시키려는 뜻이다."

하고, 인하여 그 지역을 **지지대(遲遲臺)**라고 명명(命名)하였다. 노량진에 이르러 **망해정(望海亭)**에 나아가 금군(禁軍)의 기마병이 먼저 강을 건너가 북쪽 기슭 양편에 배열하여 서라고 명하고, 이어서 선전관에게 명하여 신전(信箭)을 가지고 여러 군사들을 지휘하여 차례로 다리를 건너게 하니, 대오(隊伍)가 정숙하여 감히 이리저리 흩어지거나 뒤지거나 앞서는 자가 없었다.

근신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전일 선창(船艙)을 설치할 때에는 걸핏하면 수만 금을 허비했었는데, 배다리[舟橋]를 설치한 뒤로는 수백 금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대단하게 비용을 줄인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원행(園幸)의 연로(輦路)에 있는 각읍의 농부와 민가에 특별히 금년 가을 환자 모곡을 면제해주라 명하고는 전교하기를, "행차시 1백 리나 되는 연로(輦路)가 숫돌과 같이 평평하고 화살과 같이 곧아서 길닦는 공력을 허비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농부들이 노력을 들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겨울과 봄의 큰 눈이 내린 뒤였음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지방관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효유(曉諭)하도록 하라." 하였다.

○駕至沙斤峴, 下馬少憩, 謂侍臣曰: "予素有膈氣, 出宮時頗覺作苦, 今幸展拜禮成, 孺慕少伸, 膈氣亦隨而稍降. 今當回鑾, 予懷如何? 此地卽水原境也. 下馬駐蹕, 召見卿等, 此蓋遲遲吾行之意也." 仍命其地曰遲遲臺. 至露梁津, 御望海亭, 命禁軍馬兵先渡, 北岸兩旁排立, 仍命宣傳官, 持信箭指揮諸軍, 以次渡橋, 隊伍整肅, 無敢參差後先. 顧謂近臣曰: "在前船艙動費屢萬金, 自設舟橋, 不過數百金, 豈非大段省費乎?" 命園幸輦路各邑田夫民戶, 特除今年秋糴耗, 敎曰: "幸行輦路, 百里如砥如矢, 下費除治之功, 專由田夫之效勞. 況冬春大雪之餘乎? 令地方官, 曉諭民人."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1월 26일(병신) 2번째기사>

129통의 상소문을 판하하다
상언(上言) 1백 29 통을 판하(判下)하였다.
○判下上言一百二十九度.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1월 26일(병신) 3번째기사>

2. 일성록

정조 16년 임자 (1792, 건륭57) 1월 24일(갑오)
강어가(御駕)가 수원부(水原府)에 머물렀다.
목○ 군복(軍服)을 갖추고 교(轎)를 타고 협양문(協陽門)을 나가 돈화문(敦化門)을 거쳐 숭례문(崇禮門)을 나갔다. 주교(舟橋)의 북안(北岸) 홍살문(紅箭門) 밖에 이르자 선전관(宣傳官)이 무릎 꿇고 계품(啓稟)하여 징을 세 번 울리자 행로(行路) 취타(吹打)를 시작하였고, 또 주교에 오르기를 계청하여 포(砲)를 세 번 쏘았고, 또 기(旗)를 올리기를 계청하여 포를 한 번 쏘고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기를 모두 세 번 하니, 주사영(舟師營)도 응포(應砲)를 한 번 쏘고, 북을 치고 꽹과리를 쳤다. 중앙의 홍살문에서 황색과 흑색의 큰 깃발을 올린 뒤에 이어서 강을 건너라고 호령하기를 계청하여 기화(起火) 1지(枝)를 발사하니, 주사영 및 각 영이 모두 기화를 쏘아 응하였다. 선전관이 무릎 꿇고 계청하여 징을 두 번 울려서 대취타(大吹打)하고 북을 두드려 초요기(招搖旗)와 오방기초(五方旗招)를 흔드니, 주사영 및 각 영이 함께 대취타하고 깃발을 흔들고 북을 두드려 응하였다.
이어서 내가 주교사(舟橋司)에 나아가자 선전관이 무릎 꿇고 계청하여 징을 세 번 울려서 취타를 그쳤고 각 영도 함께 징을 울리는 것을 그치고 기를 세웠다. 선전관이 무릎 꿇고 기를 내리라고 호령하기를 계청하여 신포(信砲)를 한 번 쏘고 꽹과리를 치고 북을 치기를 모두 세 번 하였는데, 주사영도 응포를 쏘고 꽹과리를 치고[17] 북을 치고 황색과 흑색의 큰 깃발을 내렸다. 선전관이 무릎 꿇고 주교에서 내리기를 계청하여 신포를 세 번 쏘고 잠시 후 출발하였다. 선전관이 계청하여 징을 두 번 울려서 행로 취타를 시작하였다. 과천현(果川縣)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행궁(行宮)으로 들어갔다. 병조 판서를 신칙하여 시위(侍衛)가 뒤섞이지 않게 하였다.
행궁을 나가 말을 타고 갈현(葛峴)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초상(軺床)에 나아가 점사(店舍)의 부로(父老)들을 불러 만나 보고 고질적인 폐단을 묻자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하였

17) 꽹과리를 치고 : 원문은 '鳴金'인데,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金'을 '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다. 또 환곡을 바칠 때 과다하게 거두어들이는 일은 없는지 묻자, 대답하기를, “정밀하게 거두기 때문에 폐단이 없습니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이곳은 원소와의 거리가 딱 절반이 되는 곳이니, 5, 6칸짜리 창사(倉舍)를 지어 놓으면 행행(幸行)할 때 추위를 만나더라도 군병들이 멈추어 쉴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수원의 수령도 그대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는데, 폐단이 없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창사가 있으면 오히려 의지할 방도가 있을 것인데, 무슨 폐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어 물러나라고 명하고 다시 말에 올랐다. 수원부에 이르러 행궁으로 들어가 융복(戎服)으로 갈아입었다. 경기 감사와 수원 부사, 광주 부윤(廣州府尹)에게 군례(軍禮)를 행하라고 명하였는데, 광주 부윤이 미처 대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기과(記過)하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본부의 유생과 무사를 시취(試取)하라고 명하였다. 유생이 뜰에 들어와 예를 행하였다. “상제가 그 산을 살펴보신다.[18] ［帝省其山］” 로 부제(賦題)를 삼았다. 득중정(得中亭)에 나아갔다. 조금 뒤에 군복으로 갈아입고 강무당(講武堂)에 나아가 활쏘기를 하여 과녁 1순(巡)에 2발을 맞히고 중포(中布) 1순에 3발을 맞혔다. 훈련대장과 금위대장, 병조 판서, 장용영의 병방, 금군 별장에게 각각 1순씩 활을 쏘라고 명하였다.

강駕次水原府

록具軍服乘轎出協陽門由敦化門出崇禮門至舟橋北岸紅箭門外宣傳官跪啓稟鳴金三下作行路吹打又啓請升橋砲放三聲又啓請升旗砲放一聲擂鼓鳴鑼共三通舟師營亦應砲一聲擂鼓鳴鑼中央紅箭門升黃黑大旗後仍啓請渡涉號令放起火一枝舟師營及各營皆起火應之宣傳官跪啓請鳴金二下大吹打點鼓點招搖旗及五方旗招舟師營及各營一體大吹打點旗鼓應之予仍詣舟橋司 宣傳官跪啓請鳴金三下吹打止各營一體止金竪旗宣傳官跪啓請落旗號令放信砲一聲鳴金擂鼓共三通舟師營亦應砲鳴鑼擂鼓落黃黑大旗宣傳官跪啓請下橋砲放信砲三聲小頃進發宣傳官啓請鳴金二下作行路吹打至果川縣下馬入行宮飭兵判使侍衛無得錯亂出行宮乘馬至葛峴降馬御軺床招見店舍父老詢問弊瘼對曰無之又問納糴時無濫捧之事否對曰精捧故無弊矣又曰此地距園所道里恰相半若建五六間倉舍則幸行時雖値日寒軍兵可以止息前水原倅亦有此言於爾等當無弊否對曰若有倉舍則猶或有依賴之道有何弊端乎仍命退出復上馬至水原府入行宮改具戎服命京畿監司 水原府使 廣州府尹行軍禮廣尹未及待令命記過仍命本府儒武試取儒生入庭行禮訖以帝省其山爲賦題詣得中亭少頃改具軍服詣講武堂射貫革一巡獲二矢中布一巡獲三矢訓將 禁將 兵判 壯勇營 兵房 禁軍別將命各射一巡

정조 16년 임자 (1792, 건륭57) 1월 24일(갑오)

록검교직각 서영보(徐榮輔)
검서관 서이수(徐理修)

정조 16년 임자 (1792, 건륭57) 1월 25일(을미)

강현륭원(顯隆園)에 나아가 친히 제사 지냈다.

록○ 군복을 갖추고 말을 타고 진남루(鎭南樓)를 나가 본부(本府)의 민인(民人)을 소견하여 하문하고 이어서 출발하였다. 원소(園所)의 재전(齋殿)으로 들어가 천담복(淺淡服)으로 갈아입고 여를 타고 막차(幕次)에 이르러 여에서 내렸다. 판위(版位)에 나아가 예를 행하고 이어서 친제(親祭)를 행한 뒤에 원상(園上)에 나아가 봉심하였다. 이어서 막차에 나아가 군

18) 상제가 …… 살펴보신다 : 《시경(詩經)》 〈황의(皇矣)〉에 나오는 구절로, “상제(上帝)가 그 산을 살펴보시니 갈참나무와 떡갈나무가 위로 쑥 뻗어 올라가며 송백(松柏) 사이에 길이 통하거늘 상제가 나라를 만들고 담당할 자를 세우시니 태백(太伯)과 왕계(王季)로부터 하셨도다.” 하였다.

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원상에 나아가 원사(園司)는 앞으로 나아오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원상의 사초(莎草)가 이처럼 무성하니, 매우 다행이다. 가석(架石)과 난간석(欄干石) 사이에 유회(油灰)가 벗겨진 흔적이 있는데, 이는 대개 당초에 왼쪽을 비우는 제도를 썼기 때문에[19] 격회(隔灰)를 쓰지 않아 이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대체로 가석은 복첨(覆簷)[20] 모양으로 해서 빗물이 새지 않게 해야 영구히 이런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모쪼록 별간역(別看役)들과 상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도승지는 원소도감(園所都監)의 도청(都廳)을 지낸 공으로 승자(陞資)되었다.[21] 석물의 자획(字畫)이 과연 전혀 흠 없이 새겨졌는가?” 하니, 승지 서매수(徐邁修)가 아뢰기를, “석재의 품질이 애석(艾石)[22]보다 월등하고 자획이 옛날 장인의 솜씨보다 뛰어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앵봉(鶯峯)에 이러한 석재가 있는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 또 혼유석(魂遊石)을 운반해 올리는 날에 마침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나 수레가 순조롭게 움직여 마치 귀신이 실어다 준 것 같았으니, 이 또한 기이한 일이다.” 하였다. 이어서 곡장(曲墻) 밖 청룡(靑龍)[23] 가로 나아갔다. 진위 현령(振威縣令) 조윤식(曺允植)과 광량 첨사(廣梁僉使) 장세환(張世紈)은 와서 대령하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신하들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내가 풍수지리(風水地理)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백 리나 되는 평야에 이렇게 미리 예정된 듯한 형국(形局)이 자리하고 있어 청룡과 백호(白虎)가 둘러싼 것과 조대(朝對 안산(案山))가 맑고 고운 것이 평범한 사람의 안목으로 보더라도 범상치 않음을 모두들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은 효묘조(孝廟朝) 때부터 능침 자리로 치표(置標)해 둔 곳인데 이번에 원소로 만들었으니, 실로 하늘이 도운 것이지 나의 힘이 아니다. 나는 아직도 고(故) 봉조하(奉朝賀) 조돈(趙暾)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그의 말이 속되기는 하지만 잘 비유했다고 할 수 있으니, 지난번 원소를 옮긴 뒤에 아뢰기를, ‘길지(吉地)로 옮겨 봉안하여 **현륭원**의 기상이 높아졌으니, 비유하면 금호문(金虎門)의 수문장청(守門將廳)에서 대명전(大明殿)으로 이어(移御)한 것 같다.’ 라고 하였다. 28년 동안 옛 원소에 봉안하였는데, 다행히 하늘과 땅의 신령의 도움으로 내 마음에 유감이 없게 되었다.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니 희비가 교차한다. 봉조하의 말이 옳지 않은가.”
하고, 또 내가 이르기를,
“재실(齋室) 뒷문에서 정자각(丁字閣)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길을 당초에 작은 길 하나만 열게 했었는데, 이제는 점차 너무 길이 넓어져 눈에 거슬리는 것을 알겠다. 이곳은 내청룡(內靑龍)[24]의 등과 허리에 해당되는 곳이니, 비록 좁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끝내 온당치 못할 듯하다. 모쪼록 즉시 나무를 심어 길을 막아 사람들의 왕래를 금하고, 이후로 전배할 때에는 재실의 뒷문에서 나오게 되면 재실 담장 밖으로 길을 잡아 점차 홍살문 밖에 이르게

19) 당초에 …… 때문에 : 정조가 **현륭원(顯隆園)**을 조성할 당시 혈처(穴處)가 매우 좁아 다른 원(園)의 제도처럼 할 수 없었으므로 한가운데에 광(壙)을 만들고 왼쪽을 비우는 제도를 쓰게 한 바 있다. 《日省錄 正祖 13年 7月 16日》
20) 복첨(覆簷) : 원문은 ‘露簷’인데,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露’를 ‘覆’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21) 도승지는 …… 승자(陞資)되었다 : 도승지는 서매수(徐邁修)로, 1789년(정조13) 7월 11일에 부교리로서 원소도감(園所都監)의 도청(都廳)이 되었고, 그 공으로 10월 13일에 가자(加資)되어 10월 19일에 승지에 제수되었던 것을 말한다. 《日省錄》
22) 애석(艾石) : 검푸른 잔 점이 많고 썩 단단한 화강암으로, 강화도에서 많이 난다.
23) 청룡(靑龍) : 풍수 용어로, 어떤 기지(基地)의 좌향(坐向)에서 좌측(左側)의 산맥을 가리켜 청룡맥(靑龍脈) 또는 청룡등(靑龍嶝)이라고 한다.
24) 내청룡(內靑龍) : 풍수 용어로, 주산(主山)에서 왼쪽으로 갈려 나온 산줄기 가운데 맨 안쪽에 있는 산줄기이다. 단청룡(單靑龍)과 같다.

하는 것도 무방하겠다.” 하였다.
이어서 안산(案山)의 나무들을 가리키며 이르기를, “평야 지대에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하니, 참으로 기이하다.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관등절(觀燈節)[25] 저녁에 관등하는 것 같다.” 하였다. 이어서 곡장 뒤에 나아가 봉심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정자각의 세 면에 드리운 노렴(蘆簾)은 썩기 쉬울 뿐만 아니라 정교하지도 않다. 내 생각에는 정자각 배위(拜位)에 드리우는 발은 말아 올려서 매다는 전례를 쓰지 말고 치밀한 완렴(氈簾)을 가지고 겹쳐서 가리되 조금 기둥 쪽에 가깝게 하여 바람과 비를 막고, 정자각의 문 세 개는 대렴(大簾)으로 가려서 평상시에는 아래로 드리우고 문을 열 때에는 걸어 두는 것이 좋겠다. 원사가 조윤식과 함께 서식을 만들어 내면 마련하여 내려보내겠다.” 하였다.
이어서 여를 타고 백호 아래쪽에 이르러 이르기를, “이곳은 지세가 조금 오목하게 내려간 듯하고 습기도 있으니, 어떻게 하면 평평하게 해서 흠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원사 홍취영(洪就榮)이 아뢰기를, “이곳이 비록 낮고 습하지만 기름진 흙을 가져다 공석(空石 빈 섬)에 담아 메운 다음 그 위에 나무를 심는다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는 무성해져서 울창한 숲을 이루어 오목하게 내려간 근심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이어서 옛 향교(鄕校) 터에 나아갔다.
내가 이르기를, “이곳도 매우 안온하다.” 하니, 훈련대장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안온할 뿐만 아니라 좌우에서 둘러싼 형세도 대단히 범상치 않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혹시 협소할 염려는 없겠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협소할 염려는 조금도 없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혈(穴) 앞에 보토(補土)하려고 하면 역사(役事)를 크게 벌이는 데는 이르지 않겠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아래에서 우러러보면 혈 자리가 매우 높아 보토하고자 하더라도 대단한 데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어좌 자리는 바로 옛날 향교 대성전(大成殿) 터이고 그 아래는 바로 옛날 명륜당(明倫堂) 재실 자리이니, 이곳이 예로부터 전해진 것이 과연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만 향교를 봉안했을 때의 담장 자리에 아직도 윤곽이 있기 때문에 혹 오랫동안 비가 내릴 때에는 갑자기 불어난 물이 고일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새로 물길을 파지는 않더라도 지세를 고르게 하여 흩어져 흐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경의 말이 참으로 좋다. 무릇 물길은 지리(地理)에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이므로 갑자기 의논할 수는 없다.” 하였다. 보여(步輿)로 후봉(後峯)에 올라 국내(局內)를 두루 살펴보고 승지에게 이르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매번 새로 심은 나무를 상하게 하기 쉬우니, 이후에 원행(園幸)할 때에는 화소(火巢) 안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을 일절 엄히 금지시키라고 본부 부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이어서 재전으로 돌아왔다.

강詣**顯隆園**親祭

목具軍服乘馬出**鎭南樓**召見本府民人詢問仍進發入園所齋殿改具淺淡服乘輿至幕次降輿詣版位行禮仍行親祭罷後詣園上奉審仍詣幕次改具軍服復詣園上命園司進前敎曰園上莎草如是數榮極幸矣架石欄干石之間有油灰剝落之痕此蓋當初旣爲虛左之制故不用隔灰其勢不得不如斯大體架石當用露簷樣使雨水無得滲漏然後永無此患爾等須與別看役輩商確以奏予曰都承旨以園所都廳陞資矣石物刻畵果十分無欠乎承旨 徐邁修曰石品大勝於艾石刻畵不讓於古匠矣予曰鶯峰之有此石村誠非偶然且魂遊石連上之日適値天雨路滑而車轍順利有若神輸此亦異矣仍詣曲墻外靑龍邊命振威縣令 曹允植 廣梁僉使 張世紘來待仍顧謂諸臣曰予於堪輿家雖未詳知而百里平野有此成局龍虎之回抱朝

25) 관등절(觀燈節) : 불교에서 석가(釋迦)의 탄일(誕日)인 음력 4월 8일에 온갖 등을 켜서 기념하는 날을 말한다.

對之明麗雖凡眼皆可知之此是自孝廟朝陵寢置標之地而今爲園所天實與之非予之力也故奉朝賀趙暾之言予尙記有其言雖俚可謂善喩矣向於遷園後奏曰遷奉吉地氣象尊嚴比如自金虎門守門將廳移御于大明殿云矣廾八年奉安于舊園所幸賴天地神祇之默祐得以無憾於予心回思往事悲喜交集奉朝賀之言不其然乎予又曰自齋室後門詣丁閣右邊之路初令只開一線小路今則漸覺廣拓所見極礙眼此是內靑龍腰脊雖云微路終恐未安須卽植木遮路禁人往來此後展拜時出自齋室後門則取路於齋室墻外轉至紅箭門外亦無不可矣仍指案山樹木曰平野之地有此葱鬱誠異矣遠望則殆若燈夕日觀燈矣仍詣曲墻後奉審予曰丁字閣三面簾簾非但易朽且不精緻予意則丁閣拜位之簾勿用捲懸之例以細緻氎簾重複遮設稍近楹邊以防風兩丁閣三門遮以大簾常時則下垂開門則懸揭爲好園司與曹允植成出見樣則當措備下送矣仍乘輿至白虎下邊曰此處地勢稍似凹下且有濕氣何以則可平均無欠耶園司 洪就榮曰此地雖單濕取沃土盛空石而塡之其上種得樹木則年久之後可期菀茂而成林得免凹下之患矣予曰依此擧行仍詣舊鄕校基予曰此地亦極穩籍矣訓將 **趙心泰**曰非但穩籍左右拱抱極非凡矣予曰無或狹窄乎**心泰**曰少無狹窄之慮矣予曰穴前若欲補土則不至鉅役耶**心泰**曰自下仰視則穴處甚高雖欲補土不至大段卽今御座處卽舊時鄕校大成殿基其下卽明倫堂齋室舊基矣此地之自古流傳果不尋常而弟緣鄕校奉安時墻垣之基尙有形址故或當久雨之時不無客水渟滀之患雖不新鑿水道而第令平衍其地使之散流好矣予曰卿言儘好凡係水道最關於地理不可遽議矣以步輿上後峯周覽局內謂承旨曰觀光人每易傷損新種之木此後園幸時火巢內觀光人一切嚴禁事下諭本府府使可也仍還御齋殿

정조 16년 임자 (1792, 건륭57) 1월 25일(을미)

강원소의 재전에 어진(御眞)을 봉안하였다.

목○ 궁을 나갈 때 각신 박우원(朴祐源)과 서영보(徐榮輔)에게 어진을 모시고 먼저 원소에 나아가 재전에 봉안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박우원 등에게 이르기를, “남쪽을 향해 봉안하는 것이 진실로 좋으나 만일 동쪽의 협실(挾室)에 서쪽을 향해 봉안한다면 원소를 앙모하는 뜻으로 볼 때 더더욱 인정과 예의에 흡족할 것이다. 즉시 이대로 거행하라.” 하고, 또 원소의 관원에게 이르기를, “배설(排設)하고 이봉(移奉)한 뒤에 그대들이 각신과 함께 입회하여 전봉(展奉)하라. 전봉은 바로 전배(展拜)하는 것이니, 이는 그대들에게 봉심(奉審)하는 절차를 익히게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다. 그대들은 이러한 뜻을 알도록 하라.” 하였다.

강奉安御眞于園所齋殿

목出宮時命閣臣 朴祐源 徐榮輔陪御眞先詣園所奉安于齋殿至是謂祐源等曰南向奉安固好而若以東邊挾室西向奉安則其在瞻依園所之意尤愜情禮卽爲依此擧行又謂園官曰排設奉移後爾等與閣臣眼同展奉可也展奉卽展拜也此非獨使爾等習奉審節次而已爾等知此意

정조 16년 임자 (1792, 건륭57) 1월 25일(을미)

강중비(中批)로 김사목(金思穆)을 이조 판서로, 이경무(李敬懋)를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목○ 승지 이만수(李晩秀)가 아뢰기를, “정관(政官)을 패초(牌招)하여 정사를 열라고 명하셨는데, 이조 판서 김문순(金文淳)이 병 때문에 뒤떨어져 **수원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체차해 주라.” 하니, 이만수가 아뢰기를, “이조 판서의 후임은 대신(大臣)에게 물어 천망(薦望)해야 하는데, 참판 김희(金憙)는 지방에 있고, 참의 심환지(沈煥之)는 유도(留都)하고 있으며, 대신도 현재 왕명을 받들고 **수원부**에 머물러 있으니, 어떻

게 해야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수원 부사** 김사목을 이조 판서에 제수하여 패초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본부의 부사는 한시도 자리를 비워 둘 수 없고, 또 자력(資歷)이 있는 사람으로 각별히 가려 차임해야 한다. 여주 목사(驪州牧使)가 수가(隨駕)하게 하였을 때 일찍이 연석에서 내 뜻을 보였으니, 여주 목사 이경무를 **수원 부사**로 제수하여 먼저 어가를 인도한 뒤에 사은(謝恩)하게 하라." 하였다.

강中批金思穆爲吏曹判書 李敬懋爲**水原府使**

목 承旨 李晩秀啓言政官牌招開政有命而吏曹判書 金文淳以病落留**水原府**何以爲之敎以許遞晩秀曰吏判代當問于大臣薦望而參判 金憙在外參議 沈煥之留都大臣亦方承命留在**水原府**何以爲之敎曰然則**水原府使** 金思穆 吏曹判書除授牌招又敎曰本府府使不可一時曠官且當以有資歷人各別擇差驪牧之使之隨駕曾有示意于筵中驪州牧使 李敬懋 **水原府使**除授先導駕後謝恩

정조 16년 임자 (1792, 건륭57) 1월 25일(을미)

강어가가 **수원부**에 머물렀다.

목○ 군복을 갖추고 말을 타고 재전을 나가 **수원부**에 이르러 **득중정(得中亭)**에 나아가 파주목사(坡州牧使) 이민보(李敏輔)와 금천 현감(衿川縣監) 윤광수(尹光垂)를 소견하였다. 내가 이민보에게 이르기를, "연달아 소견하고자 하였으나 겨를이 없었다. 근래 파주는 전염병의 정도가 어떠한가?" 하니, 이민보가 아뢰기를, "매우 창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였다.
또 윤광수에게 이르기를, "그대를 서흥 현감(瑞興縣監)으로 제수할 것이니, 내려가거든 잘 다스리라." 하였다. **은약헌(隱若軒)**으로 돌아와 **수원 부사** 이경무는 입시하여 병부(兵符)를 받으라고 명하였다. 이경무가 입시할 때 부축을 받았다는 이유로 승지 홍인호(洪仁浩)가 추고하기를 청한 데 대해, 그대로 따랐다.

강駕次**水原府**

목具軍服乘馬出齋殿至**水原府**御**得中亭**召見坡州牧使 李敏輔 衿川縣監 尹光垂予謂敏輔曰連欲召見而未暇矣坡州則時氣近果如何敏輔對曰不甚熾盛矣又謂光垂曰汝將除瑞興下去善爲之也還御**隱若軒**命**水原府使** 李敬懋入侍受符承旨 洪仁浩以敬懋入侍扶腋請推從之

정조 16년 임자 (1792, 건륭57) 1월 25일(을미)

강**수원부** 부치(府治)의 유생과 무사에게 시험을 보여 임후상(任厚常) 등을 발탁하였다.

목○ **득중정**에 나아가 무사에게 시험을 보이고, 이어서 과차(科次)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수원부**의 읍내 유생을 시취(試取)할 때 삼하일(三下一)을 맞은 진사(進士) 임후상은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삼하이(三下二)를 맞은 유학(幼學) 이동영(李東英)과 초삼하(草三下)를 맞은 유학 윤지승(尹持昇)은 회시(會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차상(次上)을 맞은 유학 한용집(韓用鏶)·김식(金栻)·윤연상(尹衍相)에게는 각각 1분(分)씩을 주고, 방외 유생(方外儒生) 가운데 삼하(三下)를 맞은 유학 김종익(金鍾翼)에게는 종이 2권(卷)을, 차상을 맞은 유학 이연량(李延良)에게는 종이 1권을 사급(賜給)하라. 읍내의 무사를 시사(試射)할 때 삼중(三中) 이상은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이중(二中)은 회시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라." 하였다.

강試**水原府**治儒武擢任厚常等

목御**得中亭**試武士仍行科次訖敎曰**水原府**邑內儒生試取時三下一進士任厚常直赴殿試三下二幼學李東英草三下幼學尹持昇直赴會試次上幼學韓用鏶 金栻 尹衍相各給一分方外儒生三下幼學金鍾

翼紙二卷次上幼學李延良紙一卷賜給邑內武士試射時三中以上直赴殿試二中直赴會試

정조 16년 임자 (1792, 건륭57) 1월 25일(을미)

강원사(園司) 홍취영(洪就榮)과 김노경(金魯敬)은 승서(陞敍)하라고 명하였다.

목○ 서계(書啓)로 인하여 이렇게 명한 것이다.

강命園司 洪就榮 金魯敬陞敍

목因書啓有是命

정조 16년 임자 (1792, 건륭57) 1월 25일(을미)

강내일 궁으로 돌아가겠다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군병을 위하여 당초의 군령을 27일에 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써서 냈으나 작년에 이미 이렇게 한 전례가 있고 군사들도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오늘 전알(展謁)하는 예를 행하였고 시사도 마쳤으니, 내일 과천(果川)에서 주정(晝停)한 뒤에 궁으로 돌아갈 것이다. 유도 대신(留都大臣)이 잘 알게 하라. 어영대장은 조식(早食) 전에 한강 가에 나가 대령하고, 유도 대신은 이 전교를 보고, 수궁 승지(守宮承旨)는 각 관사에 분부하라." 하였다.

강命以明日還宮

목敎曰爲軍兵當初軍令雖以廾七日還宮書出昨年旣有已例軍情亦當遄歸今日展謁禮成試事亦竣事明日果川晝停後還宮令留都大臣知悉御將早食前出待江上留都大臣見此傳敎守宮承旨分付各司

정조 16년 임자 (1792, 건륭57) 1월 25일(을미)

강부사직 이치중(李致中)을 의금부로 잡아다 신문하고 승지를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목○ 부수찬[26] 김희순(金羲淳)이 아뢰기를, "어제 새벽 대가(大駕)가 궁을 나올 때 부사직 이치중이 감히 초헌(軺軒)을 타고 승정원과 옥당의 행렬 속을 가로질러 달려갔으니, 무엄하고 불경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찬배(竄配)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여, 전교하기를, "전에 없던 일이니, 기강으로 헤아려 보건대 너무나 놀랍다. 우선 의금부로 잡아다 신문하여 과연 그대의 말대로라면 청한 대로 감률(勘律)하라."

하니, 김희순이 아뢰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의 반수(班首) 및 감찰(監察)에게도 책임을 물어 파직(罷職)하는 법을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 "정원과 옥당의 반열을 스치고 지나갔다고 하니, 옥당이 말한 일은 승지가 살피지 않고 침묵한 것 말고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크다. 해당 승지를 아울러 우선 엄하게 추고하라." 하였다.

강命副司直 李致中拿問推承旨

목 修撰 金羲淳啓言昨曉大駕出宮時副司直 李致中敢乘軺軒橫馳於政院 玉堂班次之間無嚴不敬莫甚於此請施竄配之典敎以事未前聞揆以紀綱萬萬駭然爲先拿問果如爾言依所請勘律 羲淳曰不察之東西班班首及監察亦施譴罷之典宜矣從之敎曰戛過政院 玉堂之班云玉堂所言之事承旨不察含默之外溺職大矣當該承旨竝爲先從重推考

정조 16년 임자 (1792, 건륭57) 1월 25일(을미)

강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김사목(金思穆)이 나왔다.

---

26) 부수찬 : 원문은 '修撰' 인데, 앞뒤 기사에 의거하여 '副修撰' 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목○ 이형원(李亨元)을 여주 목사(驪州牧使)로, 윤광수(尹光垂)를 서흥 부사(瑞興府使)로 삼았다.
강有政 吏曹判書 金思穆進
목以李亨元爲驪州牧使 尹光垂爲瑞興府使

정조 16년 임자 (1792, 건륭57) 1월 25일(을미)
강입직
목검교직각 서영보(徐榮輔)
검서관 서이수(徐理修)

정조 16년 임자 (1792, 건륭57) 1월 26일(병신)
강창덕궁(昌德宮)으로 돌아왔다.
목○ 군복을 갖추고 말을 타고 사근현(沙斤峴)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조금 쉬었다. 각신(閣臣)과 승지를 소견하고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평소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있어서 궁을 나올 때만 해도 자못 고생스러웠었는데, 지금 다행히 전배를 마쳐 앙모하는 마음이 조금 펴지자 답답한 기운도 따라서 조금 내려갔다. 이제는 궁으로 돌아가야 되니, 내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이곳이 바로 수원의 경계 지역인데, 말에서 내려 주필(駐蹕)하고 경들을 소견한 것은 대개 내 행차를 되도록 천천히 하려는 뜻에서였다." 하였다.
과천현(果川縣)에 나아가 주정(晝停)하고 이어서 주교(舟橋)의 대차(大次)에 나아갔다. 망해정(望海亭)에 나아가 병조 판서 이병모(李秉模)에게 이르기를, "금군과 마병은 우선 북안(北岸)으로 건너게 해서 양쪽에 배치하여 세우고 대가가 건너간 뒤에 즉시 계엄을 풀게 하라." 하였다.
이어 선전관에게 명하여 신전(信箭)을 가지고 군사들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때 온화한 봄기운이 막 피어나 날씨가 맑고 좋은 가운데, 그림 같은 주교가 강을 가로질러 놓여 완연히 오색(五色)의 무지개 같았고, 주사(舟師)의 정기(旌旗)가 햇살 아래 바람에 나부끼며 번쩍번쩍 광채를 냈다. 군사들이 차례로 주교를 건너고 말들이 다섯 필씩 줄지어 나아가는데 대오가 정돈되고 엄숙하여 기러기 행렬 같고 물고기 비늘 같이 이어져 감히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으며, 주교 판자 위에는 따그닥따그닥 말발굽 소리만 들렸다. 주사가 기화(起火)를 쏘아 응하니 오종(五綜)이 일제히 기를 휘둘렀다.[27] 내가 승지 서매수(徐邁修)에게 이르기를, "전에는 선창(船艙)에 번번이 십만 금(金)을 소비하였는데 올해는 주교에 쓴 것이 3백 금에 불과하다. 올해에는 오히려 석축(石築)을 개수한 까닭에 소비한 것이 지나치게 많았으나 내년부터는 비용이 2백 금에 불과할 것이니, 어찌 대단히 비용을 줄인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이어서 융복(戎服)으로 갈아입고 말에 올라 출발하였다. 숭례문(崇禮門)과 돈화문(敦化門)을 들어가 협양문(協陽門)을 거쳐 대내로 돌아왔다.
강駕還昌德宮
목具軍服乘馬至沙斤峴下馬少憩召見閣臣 承旨謂諸臣曰予素有膈氣出宮時頗覺作苦今幸展拜禮成孺慕少伸膈氣亦隨以稍降今當回鑾予懷如何此地卽水原境也下馬駐蹕召見卿等此蓋遲遲吾行之意也詣果川縣晝停仍詣舟橋大次御望海亭謂兵判 李秉模曰禁軍馬兵其令先渡北岸兩旁排立大駕渡涉後卽爲解嚴可也仍命宣傳官持信箭指揮諸軍時春氣初藹風日淸美畵橋橫江宛如彩虹舟師施旗颺日

27) 기를 휘둘렀다 : 원문은 '摩旗'인데, 앞뒤의 문맥이 통하지 않아 '摩'를 '麾'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翻風精采燁然諸軍以次渡橋五五齊馬隊伍整肅如鴈行如魚鱗無敢參差先後但聞橋板上洞洞然有馬蹄聲舟師起火應之五艘一齊摩旗予謂承旨 徐邁修曰在前船艙動費十萬金舟橋則今年所費不過三百金今年猶以石築處修改所費過多而明年以後則將不過二百金豈非大段省費乎仍改具戎服上馬進發入崇禮門 敦化門由協陽門還內

정조 16년 임자 (1792, 건륭57) 1월 26일(병신)

강원행할 때의 연로(輦路) 주변 각 읍(邑)의 전부(田夫)와 민호(民戶)는 올해 추환(秋還)에서 특별히 모곡(耗穀)을 제해 주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행행할 때 100리나 되는 연로가 숫돌처럼 평평하고 화살처럼 곧아서 길을 닦는 공력을 들이지 않았는데, 이처럼 정결하고 좋았던 것은 오로지 전부들이 수고한 덕분이다. 더구나 겨울과 봄에 큰 눈이 내린 뒤였으니,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연로 주변 각 읍의 전부와 민호는 올해 추환에서 특별히 모곡을 제해 주고 지방관이 백성들에게 효유(曉諭)하도록 하라. 이는 대개 소중히 여기는 바를 위해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려는 것이니, 이러한 뜻을 도백에게 하유(下諭)하고 이어서 묘당에서 잘 알게 하라.” 하였다.

강命園幸輦路傍各邑田夫民戶今年秋還特爲除耗

목敎曰幸行時贊路百里如砥如矢不費除治之功而若是其潔好者專由田夫之效勞況冬春大雪之餘乎路傍各邑田夫民戶今年秋還特爲除耗令地方官曉諭民人此蓋爲所重欲使惠及小民此意下諭于道伯仍令廟堂知悉

정조 16년 임자 (1792, 건륭57) 1월 26일(병신)

강대사헌 박우원(朴祐源)을 체차하였다.

목○ 박우원이 아뢰기를, “어제 유신이 동가(動駕)하여 궁을 나갈 때 행렬이 가지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반 감찰(押班監察)을 꾸짖어 파직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무릇 백관을 바로잡고 반열을 정돈하여 신칙하는 것은 바로 풍헌관의 직책입니다. 신이 이 직임을 맡고 있으니 어찌 일개 사헌부 감찰에게 죄를 전가하고 홀로 편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차하라고 명해 주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遞大司憲 朴祐源

목 祐源啓言昨日儒臣以動駕出宮時班行不齊至有押班監察譴罷之請凡糾正百僚整飭班聯卽風憲職責臣旣居是任其豈可諉罪於一臺監而獨自晏然乎請命遞斥從之

정조 16년 임자 (1792, 건륭57) 1월 26일(병신)

강입직

목검교직각 서영보(徐榮輔)

검서관 성해응(成海應)

제5차 1793년(정조 17) 1월 12일~14일(2박 3일)

1. 조선왕조실록

정치/왕실

정조가 현륭원에 참배하기 위해 수원 행궁에 이르다

상이 **현륭원**을 뵈러 가는 길에 관왕묘(關王廟)에 들렀다. 과천(果川)에서 주정(晝停)하였다. **인덕원(仁德院)** 들녘을 지나다 길가의 부로(父老)들을 불러서 위로하며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저녁에는 수원 행궁에 머물렀다.**

○丙午/上將謁**顯隆園**, 歷臨關王廟, 晝停于果川. 過**仁德院坪**, 召路傍父老, 勞問詢瘼, 夕次**水原行宮**.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2일(병오) 1번째기사>

정치/군사

수원부를 화성으로 바꾸고 부사를 유수로 승격시키다.

수원부(水原府)의 호칭을 화성(華城)으로 바꾸고 어필(御筆)로 현판을 써서 장남헌(壯南軒)에 걸었다. 부사(府使)를 유수(留守)로 승격시켜 **장용 외사(壯勇外使)**와 **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임하게 하고, 판관(判官) 한 사람을 두어 보좌하게 하였다. **장용영 병방(壯勇營兵房)**을 고쳐 **장용사(壯勇使)**라 하고, 도제거(都提擧)를 두어 호위 대장(扈衛大將)의 관청을 합해서 그를 소속시켰다. 전교하였다.

"왕위에 오른 이후로 재용을 많이 저축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왔다. 그런데 다행히 황천에 계신 조종(祖宗)의 말없는 도움을 입어 용이 서리고 범이 웅크린 듯한 좋은 자리를 잡아 영원토록 천억만년 끝없을 큰 운세를 정하였으니, 이 땅의 소중함은 실로 주(周)나라의 풍(豊)이나 한(漢)나라의 패(沛)와 같이 융성할 것이다. 오직 이 곳을 잘 수호할 방도를 더욱 애써 치밀하게 하여 체모가 존엄하고 제도가 엄숙하여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 소자(小子)의 정리로나 예법으로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비유하자면 마치 종묘의 예절을 두고 먼저 백관(百官)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 소중함에 관계되는 것이 이와 같다.

이곳 수원부는 〈현륭원〉 자리를 마련한 뒤로부터 관방(關防)이 더욱 중하여졌다. 아름다운 이 자연의 요해처에 달마다 꺼내 볼 〈사도 세자의〉 의관(衣冠)들을 길이 봉안하리라. 미리 행궁을 세워 먼저 우러르고 의지하는 생각을 붙였고, 영정을 그려 걸어서 혼정 신성의 정성을 대신하니, 어린애처럼 어버이 사모하는 마음이 가슴에 북받쳐 올라 절제할 줄을 모르겠다. 매년 3백 일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손꼽아 기다리고 바라던 것이 오로지 예를 행하는 하룻동안에 있었기에, 이미 배알을 마치고 환궁하는 길에 **수원부**의 경계가 다하는 고갯마루에 거가를 멈추고 우러러 바라보며 머뭇거리노라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더디어지곤 하였다. 그래서 번번이 수신(守臣)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여 정성을 다해 수호하라는 뜻으로 거듭거듭 당부했었다. 그러나 그의 직책은 한 고을의 원이요 그의 품계를 물어보면 3품직의 자리이다. 적임자를 얻어 그 일을 맡기는 것이야 벼슬의 높낮이에 관계될 것이 아니겠지만, 조정의 거조란 지위가 높지 아니하면 위엄이 서지 못하는 것이다. 관방에 대해서는 우선 제쳐두고라도 나의 행궁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임무를 어찌 3품의 고을 원에게 맡겨둘

수 있겠는가. 그러나 모든 일은 옛날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남한 산성은 단지 방위하는 성의 역할만이 있을 뿐인데도 대신이 사(使)가 되고 유수는 문반의 경재(卿宰)로만 오로지 차임하면서도 방위의 일을 위해서는 무장(武將)이 남한 산성에 통의(通擬)되었다. **그런데 더구나 이 곳 이 수원부의 소중함이겠는가.**

지금부터는 수원 부사를 유수로 승격시키어 장용 외사(壯勇外使)와 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임하게 하고 오직 대신이나 무장으로 특지를 받아 〈유수에 임명하고〉 또 판관(判官)을 두어 보좌하게 하라. **장용영**을 설치한 지는 여러 해가 되었으나 **장용영** 장수의 칭호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은 외사(外使)가 나오기를 기다린 때문이다. **장용영 병방(壯勇營兵房)**을 **장용사(壯勇使)**라 하고 **장용영**의 문서들에는 대장이라고 호칭하기를 마치 어영사(御營使)를 어영 대장이라 호칭하는 것처럼 하며, 도제거(都提擧)를 두어 그 법식을 갖추되 역시 경리영(經理營)의 도제거를 삼공이 예겸하는 것처럼 하고 호위 대장의 관청을 합해서 그를 소속시키라. 그리고 내영(內營)과 외영(外營)의 군수 물자와 군사들의 식량을 마련하고 조처하는 것에는 모두 경비에 의존하지 않게 할 것이니, 이것이 곧 재용을 저축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 까닭이다.

나는 자나깨나 한 마음이 선대를 사모하는 데에 있다. 백성을 보호하는 것도 비록 길은 다른 것 같으나 거기에 쓰여지는 마음은 마찬가지다. 이 백성은 곧 선왕의 백성이다. 그러니 지금 이 백성들을 감싸 보호하려면 의당 먼저 폐단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큰 폐단은 군영(軍營)이 많은 것을 덮을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설날 조참(朝參) 때에 네 가지 항목을 들어 하유하였는데, 네 가지 항목 중에서 군(軍)과 민(民)이 그 두 자리를 차지하였고 그 말을 한 것은 앞으로 행하고자 함에서였다. 선왕이 드나드셨던 문에 임하고 선왕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능히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비록 부덕하지만 욕스럽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으로 하여금 이 전교를 길이 새겨 보고 은미한 뜻을 자세히 헤아려서, 내가 이 일을 경영하여 우리 후인들을 계도해서 우리 국운이 억만년토록 영원하기를 비는 본의를 알게 하라."

○改號**水原府**爲**華城**, 御筆揭額于**壯南軒**. 陞府使爲留守, 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 置判官一員佐之. 改**壯勇營兵房**爲**壯勇使**, 置都提擧, 以扈衛大將合聽屬之. 敎曰: "御極以後, 峙藏儲用, 爲所重也. 幸荷皇天祖宗之默佑, 而龍盤虎踞之宅兆, 永奠千億萬年無疆大曆數, 是地之所重, 實與周之豐·漢之沛, 竝盛而齊隆. 惟其拱護之方, 愈勤而愈密, 使體貌尊嚴, 制度肅虔, 卽予小子情文之所當然, 譬若宗廟之禮, 先言百官之美, 其有關於所重者, 如是矣. 是地**水原府**, 自卜園寢, 關防增重. 美哉! 天作之襟帶, 長奉月出之衣冠. 預建行宮, 先寓瞻依之思, 摸揭圖像, 用替定省之誠, 而孺慕結轖, 迷不知節. 每歲三百日, 無日不屈指而企企者, 亶在於禮行一日, 而旣展省將還駕, 駕住府界峴上, 瞻望躊躇, 不自覺其吾行之遲遲, 輒召(至)[致]守臣於前, 申之以恪謹拱護之義. 顧其職則一邑倅也, 問其品則三品窠也. 得其人任其職, 固不係於爵位, 而朝廷擧措, 不重則不威. 關防, 姑置之, 爲予整理行宮諸務之任, 豈可委諸三品邑倅也?. 然凡事莫若述古. 南城, 只管保障, 而大臣爲使, 居留專差文宰, 而爲保障, 則武臣通擬於南城, 況是地是府之所重乎! 自今**水原府使**, 陞爲留守, 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 惟大臣·武將須特旨, 又置判官以佐之. 壯勇之設營有年, 將臣之稱號未定者, 以待外使之出也. **壯勇營兵房**, 爲**壯勇使**, 而營中文牒, 以大將稱之, 如御營使之稱御營大將, 置都提擧, 備其式, 亦如經理營都提擧之三公例兼, 而扈衛大將合聽屬之. 若內外營軍需·兵食辦備措處, 皆不藉於經費. 此所以爲所重峙藏儲用者也. 予之寤寐一心, 在於慕先, 而保民雖似殊岐, 其用一致. 斯民也,先王之民也. 今欲懷保小民, 宜先蘇弊, 弊之大者, 莫過於軍營之多. 是以, 予於初元朝參也, 擧諭四目,

四目之中, 惟軍與民居其二. 言之將欲行之, 臨先王所御之門, 踐先王所御之位, 而徒言而不能副其言, 予雖否德, 汙不爲此. 使中外熟看此敎, 諦究微旨, 知予經之營之, 啓佑我後人祈永萬億年之本意."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2일(병오) 2번째기사>

정치/군사

장용청 설치 연혁

앞서 임인년에 명하여 무예 출신(武藝出身)과 무예 별감으로 장교를 지낸 사람 30명을 가려서【숙묘(肅廟) 을축년에 무예 별감 30명을 훈련 도감의 국출신(局出身)의 3개 번(番)에 번갈아 임명한 제도를 따른 것이다.】 번을 나누어 명정전(明政殿) 남쪽 회랑에 입직하게 하였다. 그리고 을사년에 장용위라 호칭하고 20명을 늘리니 이것이 장용영이 설치된 시초이다. 이때부터 해마다 인원을 늘려 왔는데, 척씨(戚氏)의 남군(南軍)제도를 본받아 5사(司)에 각기 5초(哨)를 두는 것으로 규례를 삼고 3초는 초마다 1백 15명으로 하였다.【정규 군인 90명, 기총(旗摠) 3명, 대장(隊長) 9명, 서자적(書字的) 1명, 패두(牌頭) 1명, 고수(鼓手) 1명, 인기수(認旗手) 1명, 화병(火兵) 9명이다.】 정미년에 처음으로 27명을 두기 시작해서 무신년에 88명을 증원하여 좌초(左哨)를 만들었고, 신해년에 우초(右哨)를 늘렸으며, 계축년에 중초(中哨)를 늘렸다.

5초는 서울에 있었으니 초마다 1백 23명이었다.【정규 군인·기총·대장은 위와 같고, 복마군(卜馬軍) 9명이 많았다.】 정미년에 전초(前哨)를 처음으로 두고 무신년에 중초와 후초를 늘렸으며 계축년에 좌초와 우초를 늘렸다. 5초는 수원에 있었는데, 기유년에 5초를 처음으로 창설하였는바 전초는 진위(振威)에 있고, 좌초는 양성(陽城)에 있고, 중초는 용인(龍仁)에 있고, 우초와 후초는 광주(廣州)에 있다.

2초는 무신년에 창설했는데, 우초는 고양(高陽)에 있고 후초는 파주(坡州)에 있으며, 3초는 을묘년에 증설했는데, 전초는 안산(安山)에 있고 좌초는 과천(果川)에 있고 중초는 시흥(始興)에 있다. 3초는 무신년에 창설했는데, 전초는 지평(砥平)에 있고 좌초는 양근(楊根)과 가평(加平)에 나뉘어 있고 중초는 양주(楊州)에 있다. 우초와 후초는 을묘년에 증설했는데, 우초는 양주에 후초는 장단(長湍)에 있다.【초마다 정규 군인 90명, 기총 5명, 대장 9명, 서기(書記) 1명, 능마아(能麽兒) 1명, 고수 1명, 인기수 1명, 사후(伺候) 2명, 부엌일하는 사람 1명, 화병 9명, 복마군 9명이다.】 96명은 임인년에 훈국 기예군(訓局技藝軍) 15명이 이속된 것을 비롯하여 을사년에 15명을 증원하고, 무신년에 17명을 증원하고, 기유년에 5명을 증원하고, 경술년에 9명을 증원하고, 신해년에 5명을 증원하고, 임자년에 9명을 증원하고, 계축년에 21명을 증원한 것이다.【원군(元軍)이 85명, 서자적 1명, 패두 1명, 복마군 5명, 회자수(劊子手) 4명이다.】

92명은 임인년에 훈국 기예군 15명이 이속된 것을 비롯하여 을사년에 15명을 증원하고, 무신년에 13명을 증원하고, 기유년에 5명을 증원하고, 경술년에 9명을 증원하고, 신해년에 5명을 증원하고, 임자년에 9명을 증원하고, 계축년에 21명을 증원한 것이다.【원군 이하는 위와 같고 회자수가 없다.】

95명은 정미년에 25명으로 창설하여 경술년에 25명을 증원하고, 계축년에 49명을 증원한 것이다.【원군은 88명이고 서자적 이하는 위와 같다.】

1백 명은 정미년에 28명으로 창설하여 경술년에 23명을 증원하고, 계축년에 49명을 증원한 것이다.【원군은 93명이고 서자적 이하는 위와 같다.】

65명은 무신년에 16명으로 창설하여 신해년에 7명을 증원하고, 계축년에 42명을 증원한 것이다.【원군 51명, 서자적 1명, 패두 1명, 복마군 2명, 원역(員役) 10명이다.】
45명·50명·57명이 있다.【등롱군(燈籠軍) 이하의 세 종류 군대로서 모두 정미·무신년부터 차례로 늘린 것이다.】
별장은 표하군이 40명, 사(司)는 표하군이 30명, 선기장(善騎將)은 표하군이 18명이고, 초관(哨官)·지구관(知彀官)·교련관(敎鍊官)·통장(統長)·장용위의 패두는 모두 사후군(伺候軍)을 두었다. 공장(工匠)의 아병(牙兵)이 29명, 수송을 맡은 복마군이 40명이다.
5초는 6백 5명이고 표하군은 1백 64명이다. 배봉진(拜峰鎭)【기유년에 설치하였다.】은 아병 2초, 표하군 23명, 향취수(鄕吹手) 30명이고, 고성진(古城鎭)은【임자년에 이속되었다.】 아병 2초, 표하군 58명이고, 노량진(鷺梁鎭)【계축년에 이속되었다.】은 좌우 아병 1백 21명, 표하군 23명, 향취수 30명이다.
그리하여 기병과 보병이 총 5천 1백 52명인데, 여기에 도제조【1원.】는 계축년에 처음 두어 대신 중에서 당시 호위 대장을 겸임한 사람을 예겸시키고, 호위청을 장용영에 통합하였다. 향색 제조(餉色提調)【1원.】는 호조나 선혜청의 시임 당상관이나 일찍이 역임한 사람을 갖추어 의망한다. 사(使)【1원.】는 일찍이 장수를 지낸 사람에게 제수한다. 계묘년에 처음으로 둔 병방(兵房)은 장수의 직임이나 포도 대장을 지낸 사람을 일찍이 임명하여 병방이라 이른 것이니, 그것은 정원의 병방 승지가 오위(五衛)의 습조(習操)와 점고를 관장하는 예를 본뜬 것이다. 계축년에 사(使)【문서에서는 대장(大將)이라 칭했다.】로 호칭을 바꾸고 일찍이 장신(將臣)을 지낸 사람을 제수하였다.【으레 군색 제조(軍色提調)를 겸했다.】
종사관(從事官)【1원.】은 정미년에 처음으로 두어 음관(蔭官)으로 임명하였다. 선기 별장(善騎別將)【2원.】은 신해년에 처음으로 두어 아장(亞將)으로 임명하였다. 습진(習陣) 때나 중일 시사회(中日試射會) 때의 행 중군(行中軍)·행 파총(行把摠)【5원.】은 무신년에 처음으로 두어 기유년과 계축년에 증설하였는데, 2품 절도사에서부터 방어사까지의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선기장(善騎將)【3원.】은 정미년에 처음으로 두어 신해년과 계축년에 증설하였는데, 당상 3품관으로 임명하였다.
초관(哨官)【25원.】은 정미년에 처음으로 두어 무신년·기유년·계축년에 증설하였는데, 당하 3품관 이하로 임명하였다. 액외 장용위(額外壯勇衛)【15원.】는 신해년에 처음으로 두어 장수 집안의 자손이나 지벌이 두드러지거나 여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가려서 임명하였다. 그리고 지구관(知彀官) 21원, 무예 통장(武藝統將) 2원, 【무예 별감을 거느려 숙위에 대비한다.】 별부료(別付料) 2원, 【 글을 알고 계산에 밝은 자로 삼아서 본 장용영의 회계를 맡게 한다.】 교련관(敎鍊官) 20원은 본 장용영에 출사하는 것을 면제한다. 패장(牌將) 8원【전각의 계단 아래서 일을 맡는다.】, 약방(藥房) 1원, 침의(鍼醫) 1원, 화원(畵院) 1원, 사자관(寫字官) 1원, 별무사(別武士) 36인, 부료 무사(府料武士) 16인, 서리(書吏) 16인, 서사(書寫) 3인, 대령 서리(待令書吏) 3인, 조보 서리(朝報書吏) 1인, 서원(書員) 7인, 고직(庫直) 13명, 대청직(大廳直) 1명, 도방자(都房子) 4명, 궁시인(弓矢人) 2명, 도변수(都邊首) 2명, 사령(使令) 41명, 구종(驅從) 14명, 우장직(雨裝直) 2명, 다모(茶母) 2명, 의막군사(依幕軍士) 2명, 제약군(劑藥軍) 1명, 문서직(文書直) 12명, 방자(房子) 15명, 소방자(小房子) 22명, 군사(軍士) 5명, 사환군(使喚軍) 30명, 역인(役人) 15명, 복직(卜直) 5명, 사고직(私庫直) 4명, 기영 겸감색(畿營兼監色) 4명, 향군 구관 감색(鄕軍句管監色) 26명이었다.【각 고을의 향무사(鄕武士) 13명, 읍리(邑吏) 13명이다.】
상이 또 군대가 있으면 군량이 있어야 하므로 매번 하나의 영(營)을 둘 때마다 백성들이 그

해를 받아, 훈국을 설치하면서는 3년 동안의 세금으로 2필의 포(布)가 생기었고, 금위영·어영청·수어청·총융청을 설치하면서는 보미(保米)와 보포(保布)가 6도에 편만해졌는데, 지금 다시 각영이 하던 대로 한다면 원대한 도모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었다. 그리하여 이에 내탕전을 내놓아 여러 도에 곡식을 사들여 두게 하고, 내사(內司)의 전장 토지로 조세를 비싸게 받던 것을 폐지시켜서 그들의 요역을 가볍게 해주어 양서(兩西)에 둔전을 설치하였으며, 심지어는 진상품이 첨가된 것과 상격(賞格)이 남용되는 것과 액정서 하례의 남아도는 인원과 군제(軍制)의 법에 어긋난 것들과 선혜청에 저장된 갑주가미(甲冑價米)와 호조에서 가져다가 내사에서 급대(給代)하던 것 등까지를 혹은 바로잡아 떼주기도 하고 혹은 모두를 붙여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유사에게 명하여 이런 종류들을 미루어 찾아보게 하였다. 그리하여 환곡을 많이 나누어 주어 백성들을 괴롭힌 것이 있으면 돈으로 만들어 바치게 해서 그들의 힘을 펴이게 해주고, 유치된 환곡이 많아서 농민들을 손상시킨 것이 있으면 더 나누어 주어 그들의 양식을 넉넉하게 해주며, 혹은 상정(詳定)하여 무역을 하기도 하고 혹은 값을 주고 옮겨오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각 창고의 곡식이 총 43만 1천 6백 91석이었는데, 이를 관서·해서·호서·호남·영남·관동에 나누어 두었고, 3진(鎭)의 곡식은 총 9천 9백 48석이었는데, 매년 한 해에 들어오는 것으로 쌀은 2만 5천 8백 90석이고, 대두는 4천 6백 90석이고, 돈은 7만 8천 8백 95냥이고, 무명은 3백 67동 19필이고, 삼베는 26동 25필이었다.

수원부를 이미 외영(外營)으로 삼고서는 국초에 영안도(永安道)의 마군(馬軍)을 친군위(親軍衛)라고 호칭한 전례에 따라 친군위 3백 6인을 두고 탐라에서 기르던 말을 가져다 한 사람에게 한 필씩을 준 다음 훈국의 말 지급 규정에 비추어 해마다 모자라는 수를 채웠는데, 그 수가 매년 30, 40필을 내리지 않았다.【**화성**의 군제는 끝내 오위의 제도를 본떠 따로 절목을 만들어서 윤하(允下)되었다.】 이것이 내영과 외영의 시말이다.

기유년에 **현륭원**을 옮기고서 옛 원(園)터는 바로 28년 동안 궁검(弓劍)을 모셨던 자리이므로 차마 황폐해지게 버려둘 수 없다 하여 파주(坡州)의 옛 장릉(長陵) 예에 따라 위전(位田)을 백성들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해주고, 진둔 별장(鎭屯別將)을 두어 배봉진이라 칭하여 **장용영**에 소속시켜서 별후사 파총(別後司把摠)으로 삼고 아병(牙兵) 2초를 두었다.

노량(鷺梁)은 **현륭원** 행행의 초입로에 주필하는 곳이므로, 옛날 금위영에 소속되었던 별장을 **장용영**에 이속시키고 군제를 배봉진과 같이 하여 별아병장(別牙兵將)으로 삼았다. 관서의 고성진(古城鎭)은 관방의 중요 지역임에도 피폐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므로, 총융청의 덕지둔(德池屯)의 예에 따라 장영이 스스로 임명하는 자리로 삼아서 네 개 고을의 둔전을 관장하게 하고, 5초의 군교(軍校)를 정하여 별중사 파총(別中司把摠)이라 호칭하였다. 또 지방관으로 박천 군수(博川郡守)를 겸파총(兼把摠)으로 삼아 **장용영**이 스스로 임명하는 자리로 만들었다. 이것이 삼진(三鎭)의 시말이다. 그리고 12년인 무신년에 상이 경기도의 산간 백성들이 처음에는 꿩 사냥에 시달렸다 다시 섣달 멧돼지 사냥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먼저 꿩 사냥을 중지시키고 다음으로 섣달 멧돼지 사냥을 중지시켰다. 그리고 양근(楊根) 등 네 고을의 수어청 둔전 아병 15초에서 매 초마다 25명씩을 떼내서 초를 만들어 몰잇군을 대신하게 하고, 양주와 고양(高陽)에 2초를 설치하고 아울러 둔전을 병사가 있는 고을에 설치하였다. 축령산(祝靈山)과 용문산(龍門山) 두 산을 사냥하는 장소로 삼아 그 산을 봉산(封山)으로 정하고 팻말을 세웠는데, 그것은 군사를 농사에 붙여 두는 뜻에서이다. 장단(長湍)·마전(麻田)·적성(積城)도 사냥을 하던 곳이었으나 세 고을의 경내는 둔전을 설치하기에 합당하지 않아 거기서 가까운 파주에 둔전을 설치하고 군사를 두었다. 을묘년에

수어청이 진영을 두면서 마병(馬兵)은 짐의 양에 비추어서 2천 4백여 명을 줄였으나 속오군은 따지지 않았고 마병 2백 명은 그 대신의 아병으로 대신하고 표하군 8백 명은 일이 헐후한 곳으로 정해서 각 군문에 급대(給代)하였다. 그리고 6초의 군사를 광주(廣州)·안산·용인·시흥·과천 다섯 고을에 그대로 두고 돈 2만 민(緡)을 내주어 그들 군사가 있는 곳에 따라 둔전을 벌여 두도록 했는데, 이것은 향군(鄕軍)의 시말이다.

장용위(壯勇衛)라는 호칭을 내린 것은 오위의 한 위를 본딴 것이고, 삼부(三部)를 설치하지 않고 오사(五司)를 설치하여 서울과 시골에 나누어 둔 것은 〈중국〉 남방의 군제를 본뜬 것이며, 장용위를 혹은 군사들 속에서 뽑고 혹은 취재(取才)하기도 하고 혹은 출신자로 하기도 한 것은 내금위의 국출신(局出身)을 뽑는 데서 본뜬 것이고, 정원 밖에 무반 집안의 자제를 뽑은 것은 장수 재목을 기르기 위해서이며, 선기대(善騎隊)를 혹은 말타는 재간을 가진 자를 뽑고 혹은 특별한 기예를 가진 자를 뽑은 것은 마대(馬隊)에서 본뜬 것이고, 승호군(陞戶軍)을 뽑아 올리게 한 것은 훈국에서 본뜬 것이나 7도(道)에 두루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왕도의 근기(近畿)를 중히 여겨서이며, 장수를 두고서 관직은 사(使)로 일컫고 문서에는 대장으로 일컫게 한 것은 어영을 본뜬 것이고, 내사(內使)를 두고 또 외사(外使)를 둔 것은 용대장(龍大將)과 호대장(虎大將)을 본뜬 것이며, 중군을 두지 않고 별장을 두어 조련할 때의 호령을 승접(承接)한 것은 광묘(光廟) 때의 좌상(左廂)·우상(右廂)과 숙묘(肅廟) 때의 정초청(精抄廳) 제도를 이어받은 것이로되 천총을 두지 않은 것은 중국 남방 군대의 옛 제도를 본뜬 것이고, 강서(講書) 시험에 《병학통(兵學通)》을 사용하고 기예 시험에 《무예보(武藝譜)》를 사용한 것은 영묘(英廟)와 경모궁(**景慕宮**)의 유지를 천명하자는 것이며, 내사와 외사가 차는 부신(符信)과 밀부(密符)는 통용하면서 병부(兵符)만은 특별히 호부(虎符)를 쓰는 것은 잔뜩 성을 내어 으르렁거리는 범에서 뜻을 취함과 동시에 국초(國初)의 일을 이어받자는 데서 온 것이다.【병방을 설치한 초기에 하교하기를, "명소(命召)하는 제도는 특히 삼경 이후에 대신을 부르는 부신(符信)만이 있었다. 그래서 장신(將臣)은 명소패(命召牌)를 차고도 부신(符信)이 없는 데에 대하여 예전부터 경륜 있는 인사들의 의심스럽게 여기는 논의가 있었으니, 지금은 이를 참작해서 호부(虎符) 1개와 전령패(傳令牌) 1개를 만들어 지급해야겠다." 하였다.】

대장은 군색 제조(軍色提調)를 겸해서 병사에 관한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고, 재용에 대해서는 향색 제조(餉色提調)가 주관한다. 이재간(李在簡)·서유린(徐有隣)·김이소(金履素)·정민시(鄭民始)·이명식(李命植)·이시수(李時秀)·서용보(徐龍輔)가 서로 이어 향색 제조가 되었으나, 서유린과 정민시가 가장 오랫동안 맡았으므로 모든 재용에 대한 조치와 계책들이 모두 이들 두 사람에게서 나왔고 이명식이 또 그 다음이었다.

○先是壬寅, 命抄擇武藝出身及武藝別監之間經將校者三十人,【遵肅廟乙丑, 以武藝別監三十人, 交差於訓鍊都監局出身三番之制.】 分番入直於明政殿南廊, 乙巳, 號壯勇衛, 仍增二十人, 此**壯勇營**設施之權輿也. 自是逐年增置, 倣戚氏南軍之制, 以五司各五哨爲例, 三哨每哨一百十五名.【正軍九十, 旗摠三, 隊長九, 書字的一, 牌頭一, 鼓手一, 認旗手一, 火兵九.】 丁未, 創二十七名, 戊申增八十八名爲左哨. 辛亥增右哨. 癸丑增中哨. 五哨在京, 每哨一百二十三.【正軍·旗·隊同上, 惟多卜馬軍九.】 丁未, 創前哨, 戊申增中後哨, 癸丑增左右哨, 五哨在**水原**. 己酉, 創五哨, 前哨在振威, 左哨在陽城, 中哨在龍仁, 右後二哨在廣州. 二哨, 戊申創, 右哨在高陽, 後哨在坡州. 三哨, 乙卯增, 前哨在安山, 左哨在果川, 中哨在始興. 三哨, 戊申創, 前哨在砥平, 左哨分在楊根·加平, 中哨在楊州. 右後二哨, 乙卯增, 右在楊州, 後在長湍.【每哨正軍九十, 旗摠五, 隊長九, 書記一, 能磨兒一, 鼓手一, 認旗手一, 伺候二, 廚役一,

火兵九，卜馬軍九.】 九十六，壬寅，以訓局技藝軍十五名移屬，乙巳增十五，戊申增十七，己酉增五，庚戌增九，辛亥增五，壬子增九,癸丑增二十一.【元軍八十五，書字的一，牌頭一，卜馬軍五，劍子手四.】 九十二，壬寅，以訓局技藝軍十五名移屬，乙巳增十五，戊申增十三，己酉增五，庚戌增九，辛亥增五，壬子增九，癸丑增二十一.【元軍以下同上，無劊子手.】 九十五，丁未創二十五，庚戌增二十五，癸丑增四十九.【元軍八十八，書字的以下同上.】 一百，丁未創二十八，庚戌增二十三，癸丑增四十九.【元軍九十三，書字的以下同上.】 六十五，戊申創十六，辛亥增七，癸丑增四十二.【元軍五十一，書字的一，牌頭一，卜馬軍二，員役十.】 四十五， 五十， 五十七.【燈籠軍以下三色，幷自丁未・戊申次第增置.】 別將標下四十， 司標下三十，善騎將標下十八，哨官・知殼官・教鍊官・統長・壯勇衛牌頭，皆有伺候軍．工匠牙兵二十九，輜重卜馬軍四十．五哨六百五，標下一百六十四．拜峰鎭,【己酉設.】 牙兵二哨，標下二十三，鄉吹手三十．古城鎭,【壬子移屬.】 牙兵二哨，標下五十八.鷺梁鎭,【癸丑移屬.】 左・右牙兵一百二十一， 標下二十三， 鄉吹手三十， 馬步軍摠五千一百五十二． 都提調,【一員.】 癸丑，創以大臣中時帶扈衛大將人例兼，合扈衛廳於壯勇營．餉色提調,【一員.】 以戶・惠堂時任及曾經人備擬，使,【一員.】 以曾經將臣人除授．癸卯創置兵房，以將任及捕將履歷人曾除，謂之兵房，蓋倣政院之兵房承旨，掌五衛習閱之例也．癸丑，改號使,【文牒稱大將.】 以曾經將臣除授.【例兼軍色提調.】 從事官,【一員.】 丁未創， 以蔭官差除．善騎別將,【二員.】 辛亥創，以亞將差除．習陣中日射會時，行中軍・行把摠,【五員.】 戊申創，己酉癸丑增置，自二品節度使，至防禦使人差除．善騎將,【三員.】 丁未創，辛亥癸丑增置，以堂上三品差除．哨官,【二十五員.】 丁未創， 戊申・己酉・癸丑增置， 以堂下三品以下差除． 額外壯勇衛,【十五員.】 辛亥創，以將家子枝及地閥表著身手膂力出類人抄擇差下．知殼官二十一員，武藝統長二員,【統領武藝別監，以備宿衛.】 別付料二員,【有文籌者爲之，自本營會計.】 教鍊官二十員，除本仕．牌將八員,【給事於殿陛下.】 藥房一員，鍼醫一員，畫員一員，寫字官一員，別武士三十六人， 付料武士十六人， 書吏十六人， 書寫三人， 待令書吏三人， 朝報書吏一人， 書員七人，庫直十三名，大廳直一名，都房子四名，弓矢人二人，都邊首二名，使令四十一名，驅從十四名，雨裝直二名，茶母二名，依幕軍士二名，劑藥軍一名，文書直十二名，房子十五名，小房子二十二名，軍士五名，使喚軍三十名，役人十五名，卜直五名，私庫直四名，畿營兼監色四人，鄉軍句管監色二十六人.【各邑鄉武士十三， 邑吏十三.】 上又以有軍則有餉， 而每置一營， 民受其害，訓局設而三年之稅，二疋之布，作禁・御・守・摠設，而保米・保布，遍六道，今若復如各營之爲，則非所以遐圖也．於是，出內帑錢，貿置穀物於諸道，罷內司庄土之厚斂者，輕其徭而設爲屯田于兩西，以至進上之添補者，賞格之侵用者，掖隷之冗額者，軍制之違式者，甲冑價米之藏于惠廳者，內司給代之出於度支者，或釐劃之，或全屬之，仍命有司，推類而求之．還穀有分多而病民， 則作錢以紓其力， 留多而傷農， 則加俵以贍其糧， 或詳定而換貿， 或給價而移來．於是， 各庫穀摠四十三萬一千六百九十一石， 分置關西・海西・湖西・湖南・嶺南・關東．三鎭穀摠九千九百四十八石， 每一歲所入米二萬五千八百九十石零， 大豆四千六百九十石零， 錢七萬八千八百九十五兩零， 綿布三百六十七同十九疋零， 麻布二十六同二十五疋． 水原府既爲外營，依國初永安道馬軍稱親軍衛之例，置親軍衛三百六人，取耽羅牧馬，人授一疋，照訓局給馬之法，歲補其闕，每不下三四十疋.【華城軍制，竟倣五衛之制，別有節目允下.】 此內外營始末也．己酉，遷奉顯隆園，以舊園，卽二十八年弓劍之所奉也，不忍荒棄，依坡州舊長陵例，以位田許民耕農．置鎭屯別將，號曰拜峰鎭，屬壯勇營，爲別後司把摠，立牙兵二哨．鷺梁，園幸初程駐蹕之所也．以別將之舊屬禁衛營者，移屬壯營，而軍制如拜峰，而爲別牙兵將．關西古城鎭，關防重地，而力凋弊轉甚，依摠廳德池屯例，爲壯營自辟之窠，管四邑之屯田，定五哨軍校，號曰別

中司把摠. 又以地方官博川郡守, 爲兼把摠, 作壯勇營自辟窠, 此三鎭始末也. 十二年戊申, 上聞畿峽之民, 始困於獵雉, 再困於臘豬, 乃先罷獵雉, 次停臘豬. 就楊根等四邑守禦屯牙兵十五哨, 每哨減二十五作哨, 以代驅軍, 設二哨於楊州·高陽, 竝置屯田於兵在邑. 就祝靈·龍門二山爲獵場, 封其山而植之, 蓋兵寓於農之意也. 長湍·麻田·積城, 亦行獵處, 而三邑境內, 不合置屯, 就其傍近坡州, 設屯置軍. 乙卯守禦廳出鎭也, 馬兵照卜減額二千四百餘丁, 束伍則勿問, 馬兵二百代其代, 牙兵標下八百, 定歇役, 給代于各軍門, 仍置六哨于廣州·安山·龍仁·始興·果川五邑, 出錢二萬緡, 隨其軍所在, 列置屯田, 此鄕軍始末也. 其錫號壯勇, 取倣于五衛之一也. 不設三部而設五司, 分置京鄕, 取倣于南方之軍制也. 壯勇衛, 或以行伍, 或以取才, 或以出身者, 取倣于內禁衛局出身, 而額外之取武家子, 儲將材也. 善騎隊之或取馬才, 或取別技, 取倣于馬隊也. 陞戶軍之抄上, 取倣于訓局, 而不遍于七道者, 重王畿也. 置將帥官職稱使, 文牒稱大將, 倣御營也. 置內使, 又置外使, 倣龍大將·虎大將也. 不置中軍而置別將, 承接操鍊時號令者, 述光廟時左·右廂, 肅廟時精抄廳, 而不設千摠, 亦南軍之故制也. 試講, 用《兵學通》, 試技, 用《武藝譜》, 闡明英廟暨景慕宮遺志也. 內外使所佩, 符信·密符通用, 而兵符之特用虎符, 取義於闕虓, 而繼述于國初也.【兵房設置之初, 下敎曰: "命召之制, 特三更以後, 召大臣之符契也. 將臣之佩命召而無符信, 自昔經綸之士起疑之論. 今宜參用造給虎符一·傳令牌一."】 大將, 帶軍色提調, 專管兵事, 而財用則餉色提調主之. 李在簡·徐有隣·金履素·鄭民始·李時秀·徐龍輔, 相繼爲餉色提調, 而徐有隣·鄭民始最久任, 凡財用措劃, 皆出於此二人, 而李命植又其次矣.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2일(병오) 3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부 유수를 정경 이상에서, 판관은 5품 음관으로 차임하게 하다
명하여 수원부 유수를 정경 이상으로 의망해 차임하고, 판관은 5품 음관(蔭官)으로 의망해 차임하되, 유수는 기백(畿伯)이 예겸하고, 장용영 도제거는 현재 호위 대장을 겸대한 대신 한 사람만을 추천해 올리는 것을 법으로 정하게 하였다.
○命水原府留守, 以正卿以上差擬, 判官以五品蔭官差擬, 畿伯例兼留守, 壯勇營都提擧, 以時帶扈衛大將之大臣, 單付著爲式.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2일(병오) 4번째기사>

정치/행정
특별히 채제공을 수원유수에 제수하다
특별히 판중추부사 채제공을 수원부 유수로, 전 수원 부사 이경무(李敬懋)를 형조 판서로 삼았다.(…)
○特拜判中樞府事蔡濟恭爲水原府留守, 以前水原府使李敬懋爲刑曹判書.(…)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2일(병오) 5번째기사>

정치/왕실
현륭원에 나아가 작헌례를 하고 수원 행궁에 머무르다
현륭원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고 돌아와 수원 행궁에 머물렀다.
○丁未/詣顯隆園, 行酌獻禮, 還次水原行宮.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3일(정미) 1번째기사>

화성부 유생을 시험보매 윤지승에게 급제를 내리다

화성부 고을의 유생들을 직접 시험보여 우등한 윤지승(尹持昇)에게 급제를 내리고, 무사들은 유수와 훈련 대장과 어영 대장에게 시취하도록 명하여 김진희(金鎭禧) 등 2명에게 급제를 내렸다.

○臨試華城府邑底儒生, 賜優等尹持昇及第, 武士則命留守及訓御兩將試取, 賜金鎭禧等二人及第.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3일(정미) 2번째기사>

수원·광주·금천·과천의 굶주린 백성에게 쌀을 내리다

수원·광주·금천·과천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내렸다.【수원의 굶주린 백성은 1천 1백 40명이고, 금천의 굶주린 백성은 1백 46명이고, 과천의 굶주린 백성은 3백 60명이고, 광주의 굶주린 백성은 1백 명이었다.】

○賜水原·廣州·衿川·果川飢民米.【水原飢民一千一百四十, 衿川飢民一百四十六, 果川飢民三百六十, 廣州飢民一百.】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3일(정미) 3번째기사>

정치/행정

비변사에서 안산군을 합병하여 수원에 이속할 것을 건의하여 그대로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원의 지역이 광활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영읍(營邑)을 설치한 뒤로 모든 조치가 전과 크게 달라졌으니, 근방의 소속된 고을들을 합병시켜 보충시키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군(安山郡)을 합병하여 수원에 이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備邊司啓言: "水原幅員, 非不廣闊, 而營邑設施之後, 凡百措置, 與前大異, 傍近屬邑, 宜有合併添補之道. 請以安山郡合併, 移屬於水原." 從之.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3일(정미) 4번째기사>

전 도백 정민시의 건의로 흉년든 호남에 번의 정지와 대동 면포의 기한 연기 및 흥양·진도의 대동미 절반을 정퇴시키다

명하여 호남에서 상번(上番)할 금위군을 금년에는 번을 정지시키고, 대동 면포는 금년 10월까지로 기한을 물려 납부하도록 하되, 흥양(興陽)과 진도(珍島) 두 고을의 대동미 절반에 대해서는 가을까지 한정하여 정퇴(停退)시키도록 하였는데, 이는 해당 도에 흉년이 들어 전 도백 정민시의 말을 따른 것이다.

○命湖南上番禁衛軍, 今年停番, 大同綿布, 以今年十月退限備納, 興陽·珍島兩邑大同米, 折半限秋成停退. 以該道災荒, 從前道伯鄭民始言也.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3일(정미) 5번째기사>

정치/왕실

정조가 수원 행궁에서 환궁하다

거가가 수원 행궁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과천에서 주정하고 저녁에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상언(上言)한 문건 39가지를 판하하였다.

○戊申/**駕自水原行宮還發**, 晝停于果川, 夕還昌德宮. 判下上言三十九度.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4일(무신) 1번째기사>

정치/군사
경기 좌방영을 남양의 독성으로 옮기고 도포사와 방어사를 겸하게 하다
명하여 경기 좌방영(京畿左防營)을 남양(南陽)의 **독성(禿城)**으로 옮겨 설치하고, 중군이 겸하던 토포사(討捕使)도 새로 설치한 곳의 방어사가 예겸하도록 하였다. **수원을 승격시켜 유수부로 삼은 뒤에** 상이 방어사와 토포사를 어느 고을로 옮겨야겠는가를 묘당에 물은 결과 묘당이 남양에 옮겨 설치하라고 청하자, 그대로 따른 것이다.
○命京畿左防營, 移設於南陽**禿城**, 中軍所兼討捕使, 亦令新設防禦使例兼. **水原**陞爲留府後,上以防禦使討捕使之當移何邑, 詢于廟堂, 廟堂請移設于南陽, 從之.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6일(경술) 2번째기사>

2. 일성록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1월 12일(병오)
강어가가 **수원부**에 머물렀다.
목○ 군복(軍服)을 갖추고 교(轎)를 타고 협양문(協陽門)을 나가 돈화문(敦化門)을 거쳐 숭례문(崇禮門)을 나갔다. 가는 길에 관왕묘(關王廟)에 들러 재배례(再拜禮)를 행하였다. 어가가 주교(舟橋) 북안(北岸)의 홍살문 밖에 이르렀을 때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 승교포(乘橋砲) 쏠 것을 계청하였다. 선전관이 계품(啓稟)하여 신포(信砲)를 세 번 쏘자, 병조 판서가 기(旗)를 올리기를 무릎 꿇고 계청하였다. 선전관이 계품하여 신포를 한 번 쏘고 북치고 꽹과리 치기를 모두 세 번 하니, 주사영(舟師營)이 응포(應砲)를 한 번 쏘고 북을 치고 꽹과리를 쳤다. 중앙의 홍살문에서 황색과 흑색의 큰 깃발을 올리자 선전관이 계품하여 강을 건너라고 호령한 다음 기화(起火) 1자루를 발사하니, 주사영 및 각 영이 기화를 들어 응하였다. 또 계품하여 징을 두 번 울려 대취타(大吹打)하고 북을 두드리며 깃발을 흔드니, 주사영 및 각 영이 대취타하고 북을 두드리며 깃발을 흔들어 응하였다. 어가가 남안(南岸)의 홍살문에 이르렀을 때 또 계품하여 징을 세 번 울려 취타를 그치니 각 영도 일제히 그쳤다. 병조 판서가 기를 내리기를 무릎 꿇고 계청하고, 선전관이 계품하여 신포를 한 번 쏘고 꽹과리 치고 북 치기를 모두 세 번 하니, 주사영도 응포를 쏘고 꽹과리를 치고 북을 쳤다. 병조 판서가 하교포(下橋砲) 쏠 것을 무릎 꿇고 계청하자, 선전관이 계품하여 신포를 세 번 쏘고 징을 두 번 울려 대취타하여 주교 건너기를 마쳤다. 주교사에서 주필(駐蹕)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는데, 병방 승지가 무릎 꿇고 계품하여 1차, 2차, 3차 취라(吹螺)하였다. 선전관이 계품하여 취라를 마치고 교를 타고 출발하였다. 금불현(金佛峴)을 넘어 교에서 내려 말을 탔다. 과천현(果川縣)에서 머무르며 부림헌(富林軒)에 나아갔다가 조금 뒤에 말을 타고 출발하였다. **인덕원(仁德院)** 들녘에 이르러 선전관 윤양검(尹養儉)과 홍순(洪栒)에게 명하여 구경 나온 부로(父老)들을 불러오게 하였는데, 윤양검 등이 제대로 거행하지 못하였다. 이어 윤양검 등을 잡아들이라고 명하고 곧 내보내라고 명하였다. 부로들에게 유시하기를, “작년 농사는 참으로 큰 흉년이었는데 환곡은 다 상납할 수 있었느냐? 또 다른 폐막

(弊瘼)은 없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넉넉히 성은을 입고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니 농사에 흉년이 든 것도 모르겠습니다. 환곡 역시 이미 다 상납하였습니다." 하였다. 출발[28]하여 **수원부(水原府)**에 이르러 **진남헌(鎭南軒)**으로 나아갔다.

강駕次**水原府**

목具軍服乘轎出協陽門由敦化門出崇禮門歷詣關王廟行再拜禮訖駕到舟橋北岸紅箭門外兵曹判書跪啓請乘橋砲宣傳官啓稟放信砲三聲兵曹判書跪啓請陞旗宣傳官啓稟放信砲一聲擂鼓鳴鑼共三通舟師營應砲擂鼓鳴鑼中央紅箭門陞黃黑大旗宣傳官啓稟渡涉號令放起火一枝舟師營及各營擧起火應之又啓稟鳴金二下大吹打點鼓點旗舟師營及各營大吹打點鼓點旗應之駕至南岸紅箭門又啓稟鳴金三下吹打正各營一體止兵曹判書跪啓請落旗宣傳官啓稟放信砲一聲鳴鑼擂鼓共三通舟師營亦應之兵曹判書跪啓請下橋砲宣傳官啓稟放信砲三聲鳴金二下大吹打渡涉訖駐蹕舟橋司待天明兵房承旨跪啓稟初二三吹宣傳官啓稟吹螺訖乘轎進發踰金佛峴降轎乘馬次果川縣御富林軒少頃乘馬進發至**仁德院坪**命宣傳官 尹養儉 洪栻招致觀光父老養儉等不善擧行仍命拿入養儉等旋命拿出諭父老等曰昨年年事實爲大歉還穀其能畢納而無他弊瘼乎對曰厚蒙聖澤安業不知年事之爲歉還穀亦已畢納矣止發詣**水原府**御**鎭南軒**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2일(병오)

강진남헌에서 대신(大臣)과 각신(閣臣) 및 유사 당상, 이조 판서, 병조 판서, 전 **수원 부사**를 소견하였다. 우의정 김이소(金履素), 행 사직 서유린(徐有隣), 이조 판서 정창순(鄭昌順), 병조 판서 이문원(李文源), 어영대장 **조심태(趙心泰)**, 검교직제학 서유방(徐有防), 검교직각 윤행임(尹行任)·서영보(徐榮輔)·남공철(南公轍)이다.

목○ 신료들이 차례대로 나와 부복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수원부**가 이제는 일의 체모가 자별하니 마땅히 승호(陞號)하여 변통하여야 한다. 경들이 상량한 다음 내게 물어 처리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대신 이하는 먼저 물러가라고 명하였다.

강召見大臣閣臣及有司堂上吏兵判**前水原府使**于**鎭南軒** 右議政 金履素 行司直 徐有隣 吏曹判書 鄭昌順 兵曹判書 李文源 御營大將 **趙心泰** 檢校直提學 徐有防 檢校直閣 尹行任 徐榮輔 南公轍

목諸臣以次進伏予曰**水原府**今則事體自別宜有陞號變通之擧矣卿等商量稟處仍命大臣以下先退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2일(병오)

강**수원 부사**를 유수로 승격시켜 **장용 외사(壯勇外使)**와 **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임하게 하고 판관을 두어 보좌하게 하였다. **장용영 병방(壯勇營兵房)**을 **장용사(壯勇使)**로 삼고 도제조를 두며, 호위대장(扈衛大將)은 관청을 합하여 소속시켰다.

목○ 전교하기를, 즉위한 이후 재물을 넉넉히 비축해 온 것은 소중한 일에 쓰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황천(皇天)과 조종(祖宗)의 말 없는 보살핌을 받아 용이 서리고 범이 걸터앉은 듯한 택조(宅兆)에 영원토록 끊이지 않을 큰 운세를 길이 안치하였으니, 이 지역의 소중함은 실로 주(周)나라의 풍읍(豐邑)이나 한(漢)나라의 패읍(沛邑)과 같이 융성할 것이다. 때문에 오직 이곳을 수호하는 방도에 대해 더욱 부지런히 하고 더욱 치밀하게 해서 체모가 존엄하고 제도가 엄숙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 소자에게는 정리(情理)나 예법으로 볼 때 당연한 일이다. 비유하자면 종묘의 예법에서 먼저 백관(百官)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과 같으

28) 출발 : 원문은 '前發'인데, '前' 자 위에 후일 부기(附記)된 것으로 보이는 '止' 자가 가필되어 있다.

니, 이 일이 소중함에 관계되기가 이와 같다.
이곳 **수원부**는 원침(園寢)을 정하면서부터 관방(關防)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하늘이 만든 아름다운 요해처에 선친(先親)의 의관(衣冠)을 길이 봉안하기에 앞서, 미리 행궁(行宮)을 건립해서 먼저 우러러 의지하는 마음을 부치고 영정(影幀)을 모셔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정성을 대신하자니 사모의 정이 북받쳐 올라 억누를 길이 없었다. 매년 3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손꼽아 기다린 것은 오직 예를 행하는 하루였고, 전알을 마친 뒤 환궁할 때 **수원부** 경계의 고갯마루에 어가를 멈추고 바라보며 머뭇거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더디어지곤 하였다. 그래서 그때마다 지방관을 앞에다 불러 놓고 정성을 다해 수호하라는 뜻으로 신신당부하였다. 그러나 그 직책은 일개 고을 수령이고 품계를 물어보니 3품의 자리였다. 적임자를 얻어 그 직임을 맡기는 것이 실로 작위(爵位)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의 거조란 작위가 무겁지 않으면 위엄이 서지 않는 법이다. 관방은 우선 놔두고라도, 나를 위해 행궁의 여러 가지 일을 정리(整理)하는 신하의 직임을 어찌 3품의 고을 수령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모든 일은 옛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 남한산성이 보장(保障)의 역할만 할 때에는 대신을 사(使)로 삼고 유수는 오로지 문관 재신(宰臣)으로 차출했지만 보장이 되고 나서는 무장(武將)[29]을 남한산성에 통의(通擬)하였다. 하물며 **수원부**처럼 소중한 지역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지금부터 **수원 부사**를 유수로 승격시킨 다음 장용 외사와 행궁 **정리사**를 겸하게 하되 오직 대신(大臣)과 무장 중에서 반드시 특지를 내릴 것이고, 또 판관을 두어 보좌하게 할 것이다.
장용영을 설치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아직 장신(將臣)의 호칭을 정하지 못한 것은 외사(外使)가 나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장용영** 병방을 장용사로 삼되 어영사(御營使)를 어영대장이라 칭하듯이 **장용영**의 문서에서는 대장(大將)이라 칭하고, 도제조를 두어 그 법식을 갖추되 역시 경리영(經理營)의 도제조를 삼공(三公)이 예겸(例兼)하는 것처럼 하라. 호위대장은 관청을 합하여 소속시키도록 하라. 내외영(內外營)의 군수(軍需)와 군량(軍糧)을 마련하고 조처하는 일은 모두 경비(經費)에 의존하지 않게 할 것이니, 이것이 소중한 일에 쓰기 위해 재물을 넉넉히 비축해 온 까닭이다.
자나 깨나 한결같은 나의 마음은 선대를 사모하는 데 있다.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비록 방법이 다른 듯하지만 마음 쓰이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 백성은 선왕의 백성이다. 지금 힘없는 백성을 품으려 한다면 먼저 폐단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큰 폐단은 군영(軍營)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즉위하던 원년의 조참(朝參)에서 네 가지 조목을 들어 유시할 때 네 가지 조목 가운데 오직 군(軍)과 민(民)이 그 둘을 차지하였고, 그렇게 말한 것은 행하려 했기 때문이다. 선왕께서 이르렀던 문에 임하고 선왕께서 앉았던 자리에 있으면서 말만 하고 그 말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내 비록 부덕하지만 이렇게 욕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교를 잘 보고 은미한 뜻을 깊이 헤아리게 하라. 그리하여 이곳을 경영(經營)하여 우리 후인들을 계도하고 보우함으로써 억만년토록 우리 국운이 영원하기를 비는 나의 본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

강陞**水原府使**爲留守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置判官以佐之以**壯勇營** 兵房爲**壯勇使**置都提擧扈衛大將合廳以屬之

목敎曰御極以後峙藏儲用爲所重也幸荷皇天祖宗之默佑而龍盤虎踞之宅兆永奠千億萬年無疆大曆

29) 무장(武將) : 원문은 '武臣'인데,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와 목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臣'을 '將'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數是地之所重實與周之豐漢之覇共盛而齊隆惟其拱護之方愈勤而愈密使體貌尊嚴制度肅虔卽予小子情文之所當然譬若宗廟之禮先言百官之美其有關於所重者如是矣是地**水原府**自卜園寢關防增重美哉天作之襟帶長奉月出之衣冠預建行宮先寓瞻依之思摸揭圖像用替定省之誠而孺慕結轖迷不知節每歲三百日無日不屈指而企企者亶在於禮行一日而旣展省將還駕駕駐府界峴上瞻望躊躇不自覺其吾行之遲遲輒召至守臣於前申申以恪謹拱護之義願其職則一邑倅也問其品則三品窠也得其人任其職固不係於爵位而朝廷擧措不重則不威關防姑置之爲予整理行宮諸務之臣豈可委諸三品邑倅也然凡事莫若述古南城只管保障而大臣爲使居留專差文宰而爲保障則武臣通擬於南城況是地是府之所重乎自今**水原府使**陞爲留守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惟大臣武將須特旨又置判官以佐之壯勇之設營有年將臣之稱號未定者以特外使之出也**壯勇營** 兵房爲**壯勇使**而營中文牒大將稱之如御營使之稱御營大將置都提擧備其式亦如經理營都提擧之三公例兼而扈衛大將合廳以屬之若內外營軍需兵食辦備措處皆不籍於經費此所以爲所重峙藏儲用者也予之寤寐一心在於慕先而保民雖似殊歧其用一致斯民也先王之民也今欲懷保小民宜先蘇弊弊之大者莫過於軍營之多是以予於初元朝參也擧諭四目四目之中惟軍與民居其二言之將欲行之臨先王所御之門踐先王所御之位而徒言而不能副其言予雖否德汙不爲此使中外熟看此敎諦究微旨知予經之營之啓佑我後人祈永萬億年之本意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2일(병오)

강수어사 정민시(鄭民始)의 밀부(密符)는 전임인 전라 감사 때의 밀부를 그대로 차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정민시가 전라 감사에서 체차되어 왔기 때문이다.

강命守禦使 鄭民始密符以前任全羅監司密符仍佩

목 民始以全羅監司遞來也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2일(병오)

강**수원부** 유수는 정경(正卿) 이상으로 뽑아 의망하고 아관(亞官)은 음관(蔭官) 가운데 5품의 판관으로 뽑아 의망하되 드러내어 정식으로 삼고, 경기 감사는 유수를 예겸(例兼)하며, **장용영 도제조**는 호위대장의 직임을 맡고 있는 대신으로 단부(單付)하라고 명하였다.

목○ 우의정 김이소(金履素)가 아뢰기를, "원소(園所)를 옮겨 봉안한 뒤 **수원부**의 체모가 매우 존엄해졌습니다. 그런데 관할하는 사람을 간간이 정2품이나 종2품으로 특별히 제수하는 일은 있었지만 작질(爵秩)과 관함(官銜)은 여전히 3품 아문(衙門)에 불과하여, 일의 체모가 끝내 온당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가 내려진 전교를 받드니 참으로 매우 다행이라 여깁니다. 부사를 유수로 승격하고 장용 외사를 겸임하게 한 이상 당연히 먼저 품질(品秩)을 정해야 합니다. 양도(兩都)는 으레 종2품 이상을 뽑아 의망하지만 본부는 양도에 비해 더욱 자별하니 대신과 무장 중에서 특별히 제수하는 조처 외에 문관 재신을 뽑아 의망하는 것도 정2품 이상으로 한정해서 정식을 삼는 것이 사리에 맞을 듯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정경(正卿) 이상으로 정식을 삼되, 이번에는 특별히 제수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부의 아관은 이미 하교로 인하여 판관으로 규식을 정했습니다. 송도(松都)는 문신을 경력(經歷)으로 삼고 강화도는 음관을 경력으로 삼으니, 본부의 판관도 문신과 음관 가운데 정식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러러 아룁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본부는 과거에 판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하고 오랫동안 직임에 있으면서 성심을 다해 종사할 자로는 음관 재신이 제격이다. 5품의 판관으로 정식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부를 이미 유수로 승격했으면 경기 감사가 양도의 규례대로 유수를 예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러러 아룁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장용영의 도제조는 또한 경리청의 도제조를 삼공이 예겸하는 것처럼 하고 호위대장은 관청을 합하여 소속시키라는 내용으로 명하셨습니다. 도제조는 선혜청의 규례대로 삼공이 모두 예겸하게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군문 도제조(軍門都提調)의 규례대로 갖추어 의망한 다음 낙점을 받아야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이는 예겸이니, 호위대장의 직임을 맡고 있는 대신으로 단부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부가 이미 유수로 승격되었으니 시임 부사에 대해 의당 처리할 방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우선 병조로 하여금 오늘 정사에서 군직(軍職)에 붙이게 하라.” 하였다.
○ 이조 판서 정창순(鄭昌順)이 아뢰기를, “장용영 도제조를 차출하는 일에 대해 명하셨습니다. 대신의 좌목(座目)에 따라 의망하여 들여야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현재 호위대장의 직임을 맡고 있는 대신을 단부하라.” 하였다.
강命水原府留守以正卿以上差擬亞官以蔭官中五品判官差擬著爲式畿伯例兼留守　壯勇營都提擧以扈衛大將所帶之大臣單付
목 右議政 金履素啓言園所遷奉之後本府體貌甚尊嚴管轄之人間雖有正從二品特授之事爵秩官銜依舊是三品衙門事面終涉未安今伏承傳敎下者誠爲幸甚府使旣陞留守又兼壯勇外使則當先定品秩兩都則例以從二品以上差擬而至於本府比兩都尤爲自別大臣武將特除外文宰差擬限以正二品以上定式似合事宜矣敎以正卿以上定式今番則當特除矣又啓言本府亞官旣因下敎以判官定制矣松都則經歷用文臣沁都則經歷用蔭官本府判官文蔭間當有定式故仰達矣敎曰本府不但曾有判官小心而久任專意吏治者莫如蔭宰以五品判官定式又啓言本府旣爲留守則畿伯當依兩都例例兼留守故仰達矣從之又啓言壯勇營 都提擧亦如經理廳之三公例兼而扈衛大將合廳以屬之事命下矣都提擧依惠廳例三公皆例兼乎抑依軍門都提擧例備望受點乎敎以此是例兼以扈衛大將所帶之大臣單付又啓言本府旣陞留守時府使宜有區處之道矣敎以先令該曹今日政付軍職○吏曹判書 鄭昌順啓言壯勇都提調差出事命下矣當從大臣座目擬入乎敎以扈衛大將時帶大臣單付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2일(병오)
강장용영 내사(壯勇營內使)와 장용영 외사(壯勇營外使)의 기호(旗號)를 정하였다.
목○ 어영대장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장용영이 내영과 외영이 되었습니다. 장용영 내사의 기호는 ‘장용내군사명(壯勇內軍司命)’이라 칭하고 장용영 외사의 기호는 ‘장용외군사명(壯勇外軍司命)’이라 칭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定壯勇內外使司命旗號
목 御營大將 趙心泰啓言壯勇營今爲內外營壯勇內使旗號稱以壯勇內軍司命壯勇外使旗號稱以壯勇外軍司命恐合事宜從之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2일(병오)
강특별히 채제공(蔡濟恭)을 수원부 유수로, 김지묵(金持默)을 장용영 대장으로 임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영(令)을 처음 시행하므로 더더욱 먼저 체모를 높여야 한다. 행 판중추부사 채제공을 수원부 유수에 임명하라.” 하였다.
강特拜蔡濟恭爲水原府留守 金持默爲壯勇營大將
목敎曰係是令初益當先尊體貌行判中樞府事 蔡濟恭拜水原府留守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2일(병오)
강진남헌(鎭南軒)에서 수원부 유수 채제공, 내각 제학 정민시, 장용영 제조 서유린, 장용영 대장 김지묵, 경기 감사 서정수(徐鼎修), 어영대장 조심태를 소견하였다.
목○ 신료들이 차례차례 나와 엎드렸다. 내가 수원 유수 채제공에게 이르기를, "옛날에는 관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간택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위해 관직을 가설한다고 하겠다."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신은 젊고 기력이 남아도는 나이라도 이처럼 시행하는 초창기에는 식견이 부족하고 재주가 모자라서 감당할 가망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정력이 이미 쇠진하고 병세가 또한 고질이 되었으니 지방관의 중임을 맡게 되면 실로 전하께서 간택하신 뜻을 헛되이 저버리고 나랏일을 그르치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하였다. 승지 이익운(李益運)에게 전교를 읽게 하고 나서 물러나라 명하니, 신료들이 임시로 물러났다.
강召見水原府留守 蔡濟恭 內閣提學 鄭民始 壯勇提調 徐有隣 壯勇大將 金持默 京畿監司 徐鼎修 御營大將 趙心泰于鎭南軒
목諸臣以次進伏予謂水原留守 蔡濟恭曰古者爲官擇人今則可謂爲人設官濟恭曰臣雖在年富力强之時當此設施之初識短才劣無望堪承況今精力已衰病情又痼保釐重任實有辜負聖簡僨誤國事之慮矣命承旨 李益運讀傳敎諭書訖命退諸臣權退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2일(병오)
강조종현(趙宗鉉)을 대사헌으로 삼았다. 전망 단자에서 뽑은 것이다.
목○ 목(目)이 없는 기사임
강以趙宗鉉爲大司憲 前望也
목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2일(병오)
강중비(中批)로 이경무(李敬懋)를 형조 판서로 삼았다.
목○ 목(目)이 없는 기사임
강中批李敬懋爲刑曹判書
목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2일(병오)
강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정창순(鄭昌順), 병조 판서 이문원(李文源)이 나왔다.
목○ 이재학(李在學)을 이조 참판으로, 홍양호(洪良浩)를 사직서 제조로, 김노성(金魯成)을 수원 판관으로 삼았다. 채제공을 행궁정리사 겸 장용외사(行宮整理使兼壯勇外使)로 단부하고, 홍낙성(洪樂性)을 장용영 도제조로 단부하였다.
강有政 吏曹判書 鄭昌順 兵曹判書 李文源進
목以李在學爲吏曹參判 洪良浩爲社稷提調 金魯成爲水原判官 蔡濟恭行宮整理使兼壯勇外使單付 洪樂性 壯勇營都提調單付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2일(병오)
강경성(京城)의 순라(巡邏)는 일찍 시작해서 늦게 파한다는 것을 여항인(閭巷人)으로 하여

금 잘 알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호위청이 아뢰기를, “대가가 거둥한 뒤 도성 각 문을 초혼(初婚)에 닫고 계동(啓東)에 여는 일 및 도성 문을 임시로 닫아 두었다가 궁으로 돌아오는 날 적절히 헤아려서 미리 열어 두고 구경 나온 사람들을 금제하는 일은 이미 병조에서 계하받았습니다. 성문을 일찍 닫고 늦게 열도록 한 이상 순라 역시 일찍 시작해서 늦게 파해야 합니다. 봉화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순찰을 나가고 계동이 되면 마치고 돌아오도록, 이런 내용을 한성부로 하여금 각 부(部)에 잘 알리게 해서 여항인들이 각각 잘 알게 하며, 또한 순라 영문(巡邏營門) 및 좌포청과 우포청, 좌순청과 우순청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命京城巡邏早發晩罷使閭巷人知悉

목 扈衛廳啓言大駕擧動後都城各門初昏閉門啓東開門事及權閉城門還官日量宜預開觀光士女弛禁事已自兵曹啓下矣城門旣已早閉晩開則巡邏亦當早發晩罷待擧烽發巡趁啓東撤還請以此意令漢城府知委各部使閭巷人俾各知悉亦爲分付於巡邏營門及左右捕廳 巡廳允之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2일(병오)

강입직

목검교직각 남공철(南公轍)

검서관 이공무(李功懋)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3일(정미)

강**현륭원**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내고 돌아와 **수원부**에 머물렀다.

목○ 군복을 갖추고 교(轎)를 타고 행궁의 문을 나왔다. 향교 앞길에 이르러 교에서 내려 말을 타고 **배양치(培養峙)**에 이르렀다. 제향의 반열에 참여해야 하는 백관 외에 수가하는 인원은 작문(作門) 안으로 난입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 난후 군병(攔後軍兵)과 취타수(吹打手), 각 영문의 큰 기치(旗幟), 가전 군병(駕前軍兵)과 가후 군병은 모두 뒤처져 있다가 머물러 주둔하라고 명하였다. 원소(園所)에 나아가 말에서 내려 재실로 들어가 천담복(淺淡服)으로 갈아입었다. 여(輿)를 타고 홍살문 밖에 나아가 여에서 내려 판위로 나아가 재배례를 행하였다. 이어 정자각으로 나아가 세 번 향을 올리고 작(爵)을 잡아 작을 올렸다. 대축(大祝) - 수찬 김희순(金羲淳)이다. - 이 나와 축문을 읽었다. 정자각을 나와 판위로 나아가니, 아헌관(亞獻官) - 우의정 김이소(金履素)이다. - 과 종헌관(終獻官) - 창성위(昌城尉) 황인점(黃仁點)이다. - 이 차례차례 의주대로 예를 행한 뒤 재배례를 행하였다. 이어 원상(園上)에 나아가 봉심하고, 내가 원관(園官)들에게 이르기를, “수목이 지금은 거의 제 모습을 찾았지만 안록(案麓)은 그래도 아직 무성하지 못하니 더욱 마음을 기울여 신칙하도록 하라. 눈을 소제할 곳이 너무 넓고 또 눈이 녹은 물은 사초(莎草)에 이롭다고 하니, 차후로는 섬돌 아래 수십 보 밖은 소제하지 말라.” 하였다.

또 근시(近侍)에게 명하여 비각(碑閣)을 봉심하게 하고, 이어 막차(幕次)에 나아가 군복으로 갈아입고 걸어서 홍살문 밖에 나아가 여를 탔다. 서쪽 산기슭을 거쳐 구불구불 소서문(小西門) 터에 나아가 식목이 잘되어 있는지 직접 살펴본 뒤에 여에서 내려 말을 타고 봉안각(奉安閣)에 나아가 말에서 내렸다. 청사에 올라가 각신에게 명하여 춘계 봉심을 행하고 규장각 안에 의장을 배설하게 하였다. 이어 재실에 나아가 말을 타고 출발해서 배양치를 넘어 말에서 내려 교를 탔다. 향교 앞길에 이르러 교에서 내려 말을 타고 **수원부**에 나아가니, 본부의 유수 **채제공**이 큰 기치를 거느리고 노차(路次)에 나와 기다리고 있기에 그대로 전도

(前導)하라고 명하였다.
승지 이서구(李書九)가 아뢰기를, “선전관이 신전(信箭)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후 군병이 뒤처져서 오지 못했으니, 엄하게 감처(勘處)해야 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해당 선전관을 기과(記過)하라.” 하였다. 중약문(重鑰門)으로 들어가 말에서 내려 득중정(得中亭)에 나아갔다가 돌아와 은약헌(隱若軒)에 나아갔다.
강詣顯隆園親祭還次水原府
목具軍服乘轎出行宮門至鄕校前路降轎乘馬至培養峙命應參享班百官外隨駕人員無得攔入作門內又命攔後軍兵吹打手各營門大旗幟駕前駕後竝落後留駐詣園所下馬入齋室改具淺淡服乘輿詣紅箭門外降輿就版位行再拜禮仍詣丁字閣三上香執爵獻爵大祝 修撰 金羲淳 進讀祝文訖出就版位亞獻官 右議政 金履素 終獻官 昌城尉黃仁點 以次行禮如儀後行再拜禮仍詣園上奉審予謂園官等曰樹木今則庶可成樣而案麓猶未茂盛加意申飭掃雪之處太廣且雪水利於莎草云此後則階切石下數十步外勿爲掃除又命近侍奉審碑閣仍詣幕次改具軍服步詣紅箭門外乘輿由西麓逶迤詣小西門基親審植木勤慢後降輿乘馬詣奉安閣下馬陞廳命閣臣行春奉審誤儀仗于閣內仍詣齋室乘馬進發踰培養峙下馬乘轎至鄕校前路降轎乘馬詣水原府本府留守 蔡濟恭領率大旗幟出待路次命仍爲前導承旨 李書九曰宣傳官不傳信箭駕後軍兵落後不來宜有重勘之擧矣予曰當該宣傳官記過入重鑰門下馬詣得中亭還御隱若軒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3일(정미)
강각신에게 봉안각의 춘계 봉심을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검교직제학 서유방(徐有防), 검교직각 윤행임(尹行任)·서영보(徐榮輔)·남공철(南公轍)이 뜰에 들어와 의주대로 예를 행하였다. 서유방이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 향을 피워 올리고 발을 걷으니 각신들이 어진(御眞)을 받들고 전봉(展奉)하였다. 내려와서 자리에 돌아와 처음처럼 예를 행하고, 이어 합문(閤門) 안으로 나아가 어진을 환봉(還奉)하였다. 이어 향로와 향합을 모두 하나의 상에 두고 향관(香串) 1쌍을 두 향좌(香坐)에 나누어 두어 합문 안에 배설하였다. 양산(陽傘) 1개, 산선(繖扇) 1개, 왜장검(倭長劍) 1자루는 왼쪽에 두고 일산(日傘) 1개, 산선 1개, 수정장(水晶杖) 1개, 왜장검 1자루는 오른쪽에 두되, 각각 시렁 1개씩을 만들어 청사 안에 배설한 다음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근 뒤 자리로 돌아와 그대로 물러났다.
강命閣臣行奉安閣春奉審
목 檢校直提學 徐有防 檢校直閣 尹行任 徐榮輔 南公轍入庭行禮如儀有防詣香案前陞爐烟捲簾諸閣臣奉御眞展奉降復位行禮如初仍詣閣內還奉御眞仍以香爐盒幷置一牀香串一雙分置兩香坐設于閤內陽傘一繖扇一倭長劍一在左日傘一繖扇一水晶杖一倭長劍一在右各植一架設于廳中闔門下鑰復位乃退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3일(정미)
강원사(園司)는 승진시켜 서용하고 수복(守僕) 이하는 시상하며 봉안각 겸령(奉安閣兼令)과 위장(衛將)은 궁시(弓矢)를 사급(賜給)하고 하인들은 쌀과 베를 제급(題給)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원사는 승진시켜 서용하고 사지 수복(事知守僕), 원역(員役), 수호군(守護軍) 등은 해당 조(曹)로 하여금 규례를 살펴 시상하게 하며 어진봉안각 겸령(御眞奉安閣兼令)과 위장은 각각 대내에서 내린 궁시 1부(部)씩을 사급하고 하인들은 쌀과 베를 제급

하라.” 하였다.

강命園司陞敍守僕以下施賞奉安閣 兼令衛將弓矢賜給下人等米布題給

목敎曰園司陞敍事知守僕員役守護軍等令該曹考例施賞御眞 奉安閣 兼令衛將各內下弓矢一部賜給下人等米布題給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3일(정미)

강원소 동구에서 숭례문(崇禮門)까지 상언(上言)을 받아들이라고 명하였다.

목○ 목(目)이 없는 기사임

강命自園所洞口至崇禮門捧上言

목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3일(정미)

강예문관 제학 민종현(閔鍾顯)을 체차하고 서유린(徐有隣)을 임명하였다. 전망 단자에서 뽑은 것이다.

목○ 민종현이 찬례(贊禮)로 원소에 나아갔기 때문이다.

강遞藝文提學 閔鍾顯以徐有隣代之前望也

목 鍾顯以贊禮進去園所也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3일(정미)

강**수원부** 유생과 무사에 대한 시취(試取)에서 유학(幼學) 윤지승(尹持昇), 한량 김진희(金鎭禧) 등은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 나머지는 회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시상하였다. 문소(文所)의 시관은 내각 제학 정민시(鄭民始), 홍문관 제학 이병정(李秉鼎), 예문관 제학 서유린(徐有隣), 검교직각 윤행임(尹行任)·서영보(徐榮輔)·남공철(南公轍), 교리 이상황(李相璜), 수찬 김희순(金羲淳)이고, 무소(武所)의 시관은 **수원 유수** **채제공(蔡濟恭)**, 훈련대장 서유대(徐有大), 어영대장 **조심태(趙心泰)**, 병조 정랑 엄기(嚴耆)이다.

목○ 전교하기를, “오늘 **수원부** 유생에 대한 시취에서는 내각 제학과 홍문관 제학, 예문관 제학이 독권관(讀券官)이 되고 검교직각과 수가하는 옥당이 대독관(對讀官)이 되며, 무사에 대한 시취에서는 본부의 유수와 훈련대장, 어영대장이 고관(考官)이 되고 수가하는 병조 낭청과 선전관 두 사람이 참고관(參考官)이 되도록 하라.” 하였다.

○ 내가 본부에서 원소로 나아가려 할 때 시장(試場)을 설치하여 “인정은 성왕의 밭이다.[30] [人情者聖王之田] ”로 부제(賦題)를 삼고 “**수원부**의 사민들이 본부를 승격하여 유수 분사(留守分司)로 삼은 데 대해 사례하는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으라. [擬**水原府**士民等謝陞府爲居留分司] ”로 전제(箋題)를 삼으라고 명하였다. 이어 승지 이익운(李益運)에게 명하여 내각 제학 및 홍문관 제학, 예문관 제학과 함께 시권(試券)을 거두어 기다리라고 명하였다. 돌아올 때 원소에서 **득중정**에 나아가 시권을 과차(科次)하고, 무소 시관에게 명하여 시장을 열고 시사(試射)하게 하였다.

○ 전교하기를, “오늘 **수원부** 읍내의 유생에 대한 시취 때 부(賦)에서 수석을 차지한 유학 윤지승과 표(表)에서 수석을 차지한 유학 조만원(趙萬元)은 모두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30) 인정은 성왕의 밭이다 : 농부가 밭에 파종을 하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임금이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는 의미이다. 《禮記 禮運 第9》

있는 자격을 주라. 유학 이석조(李奭祚)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응제(應製)에 이미 입격한 데다가 오늘 또 방목(榜目)에 들었으니 특별히 어비(御批)를 내리고 일체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라. 부에서 지차(之次)인 삼하(三下)를 맞은 유학 윤광(尹絖)과 표에서 지차인 삼하를 맞은 유학 권우(權佑)는 회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라. 표에서 차상(次上)인 생원 임우상(任禹常), 유학 신백현(申百顯)과 부에서 차상인 유학 김치성(金致聖), 생원 신광식(申光軾), 유학 신욱(申勗)은 각각 종이 1권(卷)씩을 사급하라. 원소 읍내의 무사에 대한 시취 때 한량 김진희는 관(貫)에 1발을 맞히고 변(邊)에 3발을 맞혔으며 정이권(鄭履權)은 관에 1발을 맞히고 변에 2발을 맞혔으니 모두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라. 한량 박치욱(朴致郁)은 관에 2발을 맞히고 박사륜(朴師綸)·임복선(林福善), 장용군(壯勇軍) 지계은(池繼殷)·송복동(宋福東)은 관에 1발을 맞히고 변에 1발을 맞혔으니 모두 회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라. 한량 이도영(李道英)·윤행묵(尹行默)·최서룡(崔瑞龍)·임주범(林周範), 장용군 김창복(金昌福)·최차황(崔次煌)·김종록(金宗祿)은 변에 2발을 맞혔으니 각각 전죽(箭竹) 60개씩을 사급하라." 하였다.

강試水原府儒武幼學尹持昇閑良金鎭禧等直赴殿試其餘直赴會試或施賞 文試官 內閣提學 鄭民始 弘文提學 李秉鼎藝文提學徐有隣 檢校直閣 尹行任 徐榮輔 南公轍 校理 李相璜 修撰 金羲淳 武試官 水原留守 蔡濟恭 訓鍊大將 徐有大 御營大將 趙心泰 兵曹正郎 嚴耆

목敎曰今日水原府儒生試取內閣提學 弘藝文提學爲讀券官 檢校直閣隨駕玉堂爲對讀官武士試取則本府留守 訓御兩將爲考官隨駕騎郎及宣傳官二員爲參考官○予自本府將詣園所時命設場以人情者聖王之田爲賦題擬水原府士民等謝陛府爲居留分司爲箋題仍命承旨 李益運與內閣提學及弘藝文提學收券以待還自園所御得中亭科次試券命武所試官開場試射○敎曰今日水原府邑底儒生試取時賦居首幼學尹持昇表居首幼學趙萬元幷直赴殿試幼學李奭祚年過八十應製旣入格今日又參榜特賜御批一體直赴殿試賦之次三下幼學尹絖表之次三下幼學權佑直赴會試表次上生員任禹常幼學申百顯賦次上幼學金致聖生員申光軾幼學申勗各紙一卷賜給園底邑內武士試取時閑良金鎭禧貫一中邊三中鄭履權貫一中邊二中竝直赴殿試閑良朴致郁貫二中朴師綸 林福善 壯勇軍池繼殷 宋福東貫一中邊一中竝直赴會試閑良李道英 尹行默 崔瑞龍 林周範 壯勇軍金昌福 崔次煌 金宗祿邊二中各箭竹六十箇賜給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3일(정미)

강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준 이석조(李奭祚)에게는 쌀과 고기를 넉넉히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81세의 노인이 스스로 글을 짓고 스스로 글씨를 쓸 수 있을 만큼 정력이 강건하니 '복된 노인'이라 할 만하다.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준 이석조에게는 본부로 하여금 쌀과 고기를 넉넉히 지급하게 하라." 하였다.

강命直赴李奭祚優給米肉

목敎曰八十一歲老人之自作自書精力之强健可謂瑞物直赴李奭祚令本府優給米肉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3일(정미)

강세남교(細南橋)의 큰길은 특교(特敎)가 아니면 눈을 치우고 길을 닦지 말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길을 닦는 역사는 민력을 쓰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것은 눈을 치우는 일이다. 이미 배양치(培養峙)의 지름길이 있으니 세남교의 큰길은 특교가 아니면

눈을 치우지 말게 하고, 또한 길을 닦지 말게 하라는 내용으로 분부하라." 하였다.
강命細南橋大路非特敎勿掃雪治道
목敎曰治道之役不但用民力最難者掃雪旣有培養峙捷路至於細南橋大路則除非特敎勿爲掃雪亦勿治道事分付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3일(정미)
강안산군(安山郡)을 수원부에 옮겨 소속시켰다.
목○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원부를 유수로 승격시키고 또 판관을 두었습니다. 본부의 면적이 광활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영읍(營邑)을 설치한 뒤로 모든 조치가 전과는 크게 달라졌으니, 근방의 속읍(屬邑)에 대해 합병하여 보완하는 방도가 있어야 합니다. 안성(安城)·용인(龍仁)·진위(振威)·과천(果川) 등 읍은 모두 직로(直路)로 통하는 고을이어서 일에 장애가 많으니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고, 오직 안산군(安山郡)은 원래 작은 고을로 근래 조잔해지는 폐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이 지역으로 보완하게 되면 본부의 입장에서 볼 때 크게 이익이 되는 일이고, 거리도 매우 가까워 백성의 입장에서도 난처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안산군을 합병하여 수원부에 옮겨 소속시키고, 창고의 환곡은 전처럼 그대로 두어서 본토의 백성으로 하여금 본토에서 환곡을 받게 하여 왕래하는 근심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移屬安山郡于水原府
목 備局啓言水原府陞爲留守且置判官矣本府幅員非不廣闊而營邑設施之後凡百措置與前大異傍近屬邑宜有合竝添補之道而安城 龍仁 振威 果川等邑俱是直路事多掣礙不可輕議惟安山一郡本以小邑近益凋弊今若以此添補則在本府大有所益道里且甚便近於民亦無難處之端請安山郡合竝移屬於水原府倉庫糶糴依前仍置使本土之民受還於本土俾除往來之患允之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3일(정미)
강수원·광주(廣州)·금천(衿川)·과천의 기민을 가려내어 양식을 백급(白給)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어가가 지나간 뒤에는 은혜로운 정사가 있어야 한다. 더구나 작년 농사에 서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본부 해서(海西)의 민정이 호서와 다르지 않다고 하니 이 밖에 다른 고을 역시 미루어 알 수 있다. 도백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 가장 굶주리고 곤궁한 백성을 가려내어 양식을 백급함으로써, 조정에서 본부의 지방을 위해 고을 백성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뜻을 보이게 하고, 어가가 지나는 광주와 금천 역시 이대로 시행하라. 과천의 길을 닦는 역사는 민력이 배로 들어가는 일이다. 일체 기민을 가려내어 양식을 백급하라는 내용으로 분부하라." 하였다.
강命抄水原 廣州 衿川 果川飢民白給糧資
목敎曰駕過之處當有惠政況昨年穡事本府海西民情之顒頷無異於湖西云外此他面亦可推而知令道伯抄其最飢困者白給糧資以示朝家爲本府地方推及坊內民人之意廣州 衿川輦路面亦依此爲之至於果川治道之役民力倍入一體抄飢白給事分付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3일(정미)
강내일 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작년의 규례대로 내일 궁으로 돌아갈 것이니, 유도(留都)하는 군영으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 하였다.
강命以明日還宮
목敎曰依昨年例明日當還宮令留都營知悉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3일(정미)
강어영청을 대신 영솔하고 있는 중군(中軍) 이응혁(李應爀)을 기과(記過)하라고 명하였다.
목○ 정원이 아뢰기를, "인정(人定)이 지난 뒤에 조두(刁斗)를 치는 것이 군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고(更鼓)가 울리기 전에 어영청이 상께 여쭈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레 먼저 조두를 쳤으니, 전에 없던 일이고 사율(師律)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대신 영솔하고 있는 해당 중군 이응혁을 엄하게 감처(勘處)해야 하는데, 추고하기를 청하는 것 외에 달리 시행할 만한 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우선 기과하라." 하였다.
강命御營代領中軍李應爀記過
목 政院啓言人定後起刁斗軍法卽然而今日更鼓前御營廳不待取稟徑先起刁斗事未前有有關師律當該代領中軍李應爀所當重勘而請推之外無他可施之罰何以爲之敎以爲先記過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3일(정미)
강호남에서 상번(上番)할 금위군(禁衛軍)을 정번(停番)하고, 영남 우심읍(尤甚邑)에서 상번할 군사에 대해서도 묘당에서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 전라 감사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본도의 금위군이 금년에 상번해야 할 차례인데, 기근이 심한 데다 돌림병까지 창궐하고 있습니다. 채비를 차려 올라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막중한 숙위(宿衛)를 맡은 군사인데 정결하지 못한 지역의 허다한 군졸이 올라와 입번(入番)하는 것은 또한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전에는 이와 같을 때 정번한 규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번(一番)은 이미 채비를 차려 올라와 점호(點呼)를 받았으므로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번(二番)부터는 정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묘당에 하문(下問)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정번하라. 영남에도 우심읍에서 올라와야 할 자들이 있는가? 묘당으로 하여금 초기(草記)로 나에게 물어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강命停湖南上番禁衛軍嶺南尤甚邑上番軍亦令廟堂稟處
목前全羅監司 鄭民始啓言本道禁衛軍今年爲上番當次而災荒旣甚時氣又熾非但資裝之難辦此是莫重宿衛之軍則以不淨處許多軍卒上來入番亦甚未安在前如此之時多有停番之例一番則已爲裝發逢點雖無及矣自二番停番似好請下詢廟堂處之敎曰停番嶺南亦有尤甚處上來者乎令廟堂草記稟處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3일(정미)
강흥양(興陽)과 진도(珍島) 두 고을의 대동미(大同米)는 절반까지 가을에 가서 정퇴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 전라 감사 정민시가 아뢰기를, "본도의 우심읍 가운데 흥양과 진도가 가장 심한데, 지금 백성의 형편으로는 대동세를 기한까지 다 납부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병오년(1786, 정조10)의 전례를 가져다 살펴보니, 노령(蘆嶺) 이하 13개 읍의 대동미 3분의 1을 가을에 가서 정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청(京廳 선혜청)의 수용(需用)도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많은 고을을 정퇴하기는 어렵지만 흥양과 진도의 경우 별도로 유념하여 진휼하는 정사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두 고을의 대동미는 절반까지 근래의 규례대로 가을에 가서 정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命興陽 珍島兩邑大同米限折半待秋停退

목前全羅監司 鄭民始啓言本道尤甚邑中興陽 珍島爲最尤甚以今民勢稅大同實無趁限準納之望取考丙午前例有蘆嶺以下十三邑大同米三分一待秋停退之事矣京廳需用亦甚苟艱雖難許多邑停退至於興陽 珍島則宜施別般軫恤之政請兩邑大同米限折半依近例待秋停退從之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3일(정미)

강호남의 사진읍(私賑邑)에 나누어 준 공명첩(空名帖)은 그대로 해당 읍으로 하여금 작곡(作穀)해서 진휼에 보태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 전라 감사 정민시가 아뢰기를, "본도에서 진휼을 설행할 당시의 전례를 살펴보니, 사진읍은 다만 수령으로 하여금 자비(自備)하게 하거나 부유한 백성의 원납곡(願納穀)을 쓰게 했는데, 원납은 많이 구하기 어렵고 수령 역시 넉넉하게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정(賑政)에 늘 부실한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미 사진(私賑)이고 보면 공곡(公穀)을 떼어 넣을 수는 없지만, 공명첩은 곡물과 다르므로 사진읍에 약간 나누어 주어서 보태 쓰도록 해도 무방할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이번에는 공진읍(公賑邑)과 같은 규례를 적용해서 나누어 준 다음 작곡하게 했으니, 이렇게 작곡한 것은 사진을 시행하는 각 읍으로 하여금 그대로 진휼 물자에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命湖南私賑邑所俵空名帖仍令該邑作穀補賑

목前全羅監司 鄭民始啓言考見本道設賑時前例則私賑邑只令守令自備或用富民願納穀而願納旣難多得守令亦難優辦故賑政每有不實之弊旣是私賑則雖不可劃納公穀至於空名帖與穀物有異若干分俵於私賑邑以爲補用之地似無所妨故臣於今番則與公賑邑一例俵給使之作穀此穀則請令私賑各邑仍爲取用於賑資從之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3일(정미)

강호남 여러 읍의 대동면포(大同綿布)는 금년 10월로 기한을 물린 다음 갖추어 납부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 전라 감사 정민시가 아뢰기를, "본도의 목(木)으로 대동(大同)을 상납하는 각 읍[31]에 대해 이미 목을 반만 포함시켜 상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부득이 순전(純錢)으로 상납해야 할 곳은 선혜청과 상의하여 전(錢)으로 대신하게 해 주라고 전교하였습니다. 목을 반만 포함하여 상납하는 것만도 이미 막대한 은택이므로 민정이 모두 감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도는 전에 없이 목에 흉년이 들어 도내가 모두 같은 상황이므로 순전으로 상납하는 것도 실로 구별하여 대상을 고를 방도가 없고, 지금 목이 귀하기 때문에 당년의 대동에 대해 목을 반만 포함시켜 상납하게 해 주어도 반드시 기한까지 다 납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 가운데서 다시 순전으로 상납하라고 명한다면 선혜청의 수용(需用)도 넉넉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 금년에 목으로 대동을 상납해야 하는 읍에 대해 모두 10월로 기한을 물린 다음 갖추어 상납하게 한다면 거의 힘을 덜어주는 도리가 될 것이고 또한 고루

31) 목(木)으로 …… 읍 : 삼남(三南)과 관동(關東)의 산간 지역에 대해서는 대동(大同)을 미(米) 대신 목이나 포(布)로 상납하도록 하였는데, 전라도의 경우 광주(光州), 능주(綾州), 남원(南原), 담양(潭陽), 무주(茂朱), 순창(淳昌), 금산(錦山), 진산(珍山), 창평(昌平), 용담(龍潭), 금구(金溝), 옥과(玉果), 고산(高山), 태인(泰仁), 남평(南平), 구례(求禮), 곡성(谷城), 임실(任實), 진안(鎭安), 동복(同福), 화순(和順)은 목으로 상납하도록 하고, 운봉(雲峯), 장수(長水)는 포로 상납하도록 하였다. 《典律通補 戶典 大同》

은혜를 베푸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감히 이에 우러러 아룁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命湖南諸邑大同綿布以今年十月退限備納

목前全羅監司 鄭民始啓言本道木大同上納各邑旣有木邊參半之命又以如有不得不純錢處往復該廳許令代錢爲敎木邊參半已是莫大之恩澤民情莫不感激而但本道綿紬可謂無前一道同然至於純錢實無區別取捨之道以今木貴當年大同雖許木邊參半必無趁限準納之勢且於此中又有純錢則京廳需用亦當不敷臣意則今年木大同當納者竝以十月退限使之備納則庶爲紓力之方亦爲均惠之道故敢此仰達矣從之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3일(정미)

강전라 감영의 선화당(宣化堂)을 중건(重建)할 때 감독한 비장(裨將)과 장교 등을 가자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 전라 감사 정민시가 아뢰기를, “본도의 선화당 및 행각(行閣) 40여 칸을 모두 신축했는데, 전에 선화당을 중건하고 남문(南門)을 신축할 때 감독한 비장과 장교들에 대해 시상을 청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장계로 보고하지 않았지만 그 일을 감독했던 신[32]이 영솔(領率)한 군관인 절충장군 김학조(金學祖), 장교인 절충장군 김후성(金厚性), 한량 김항성(金恒城)은 모두 노력한 공이 있으니 또한 전례대로 시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감히 우러러 아룁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이미 전례가 있다고 하니 모두 가자하는 상전(賞典)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강命完營 宣化堂 重建時監董裨校等加資

목前全羅監司 鄭民始啓言本道宣化堂及行閣四十餘間一竝新建而在前宣化堂 重建及南門新建時監董裨校有請賞之例矣今番則雖不爲狀聞而臣帶率軍官折衝金學祖將校折衝金厚性閑良金恒城不無效勞亦有前例故敢此仰達矣敎曰旣有前例云竝施加資之典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3일(정미)

강입직

목검교직각 남공철(南公轍)

검서관 이공무(李功懋)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4일(무신)

강대가(大駕)가 창덕궁(昌德宮)으로 돌아왔다.

목○ 군복(軍服)을 갖추고 교(轎)를 타고서 <u>중약문(重鑰門)</u>을 나갔다. <u>수원(水原)</u>의 경계가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u>수원 판관(水原判官)</u> 김노성(金魯成)을 소견(召見)하였다. 내가 김노성에게 이르기를,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유수(留守)와 상의하여 거행하라. 그중에서 변통하여 바로잡을 만한 일은 그대가 모두 사실을 초록(抄錄)하고 여론을 상세히 탐문한 뒤에 서울로 올라와서 대령하라.”

하였다. <u>인덕원평(仁德院坪)</u>에 이르러 교에서 내려 말을 타고 과천현(果川縣)에 이르렀다. 말에서 내려 행궁(行宮)으로 들어갔다. 경기 감사는 각무 차사원(各務差使員)을 거느리고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경기 감사 서정수(徐鼎修), 광주 부윤(廣州府尹) 서유신(徐有臣), 과천 현감(果川縣監) 이지원(李祉源), 금천 현감(衿川縣監) 이낙수(李洛秀)가 차례로 나아와

32) 감독했던 신 : 원문은 ‘臣’인데,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臣’ 앞에 ‘監董之’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엎드렸다. 내가 서유신에게 이르기를, “경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별로 물어볼 만한 것이 없다. 이번 원행(園幸) 때에는 본부(本府)에 별다른 폐단이 없었는가?” 하니, 서유신이 아뢰기를, “진달할 만한 폐단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지원과 이낙수 등에게 이르기를, “그대들이 다스리는 고을에는 무슨 폐단이 있는가?” 하니, 이지원 등이 아뢰기를, “별로 진달할 만한 폐단이 없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대들은 어제 내린 전교를 보았는가? 기민(饑民)을 뽑을 때 가능한 성의를 다하되, 각 면(面) 중에서 가장 심한 곳에는 백급(白給)으로 나누어 주라.”
하고, 이어서 물러가라고 명하였다. 말을 타고 행궁을 나갔다. 남태령(南泰嶺)을 넘어 말에서 내려 교를 타고 금불현(金佛峴)에 이르렀다. 선상(先廂)의 각 군영(軍營)은 주교(舟橋)를 건너지 말고 편리한 대로 남쪽 강가에 머물러 있다가 호령하기를 기다려 주교를 건너라고 명하였다. 망해정(望海亭)에 나아가니,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서 신포(信砲)를 한 번 쏘고 장용영(壯勇營)의 초요기(招搖旗)를 세울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장용영이 신포에 호응하고 초요기에 호응한 뒤에 먼저 북쪽 강가에 도착하여 머물렀다. 다음으로 용호영(龍虎營), 다음으로 별대마병(別隊馬兵), 다음으로 어영청(御營廳)에게 모두 초요기로 차례차례 호령하니, 각 해당 군영이 장용영의 예에 따라 주교를 건넜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서 주교에 오른다는 신호로 신포를 쏠 것을 계청하여 모두 처음과 같이 행하였다. 융복(戎服)으로 갈아입고 말을 타고 부교를 건넜다. 숭례문(崇禮門)을 거쳐 돈화문(敦化門)과 협양문(協陽門)을 들어와 대내(大內)로 돌아왔다.

강駕還昌德宮

목具軍服乘轎出重鎗門至水原終境召見水原判官 金魯成予謂魯成曰凡事毋論大小與留守相議爲之其中可以變通釐正者爾皆抄錄事實詳探物情後上京來待至仁德院坪絳轎乘馬至果川縣下馬入行宮命畿伯率各務差使員入侍京畿監司 徐鼎修 廣州府尹 徐有臣 果川縣監 李祉源 衿川縣監 李洛秀以次進伏予謂有臣曰卿則到任屬耳別無可問之端矣今番園幸本府別無弊端乎有臣曰無弊端之可達者矣予謂祉源 洛秀等曰爾等所蒞之邑有何弊端乎祉源等曰別無弊端可達者矣予曰昨日傳敎下者爾等見之乎抄飢之際務盡誠意各面中最尤甚處分俵白給仍命退出乘馬出行宮踰南泰嶺下馬乘轎至金佛峴命先廂各營不渡舟橋從便扎駐於南岸上待號令渡涉詣望海亭宣傳官跪啓請信砲一聲立壯勇營招搖旗該營應砲應旗先到北岸札駐次龍虎營次別隊馬兵次御營廳竝以招搖旗挨次號令各該營依壯營例渡涉宣傳官跪啓升升橋砲竝如竝改具戎服乘馬渡舟橋由崇禮門入敦化門 協陽門還內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4일(무신)

강승지 이서구(李書九)를 체차하고 서영보(徐榮輔)를 임명하였다. 전망 단자(前望單子)에서 뽑은 것이다.

목○ 대사헌 조종현(趙宗鉉)이 차자를 올려 이서구를 논죄하기를, ‘제향의 반열에 참석할 백관(百官)을 작문(作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잘못 반포하였으니, 책임을 물어 파직하소서.’ 하니, 이서구가 정세(情勢)가 있다고 하면서 나갔다. 정원이 패초(牌招)할 것을 청한 데 대해 전교하기를, “체차해 주고, 병조로 하여금 군직(軍職)에 붙이게 하라.”
하였다. 이어서 전망 단자에 서영보로 비하(批下)하였다.

강遞承旨 李書九以徐榮輔代之前望也

목 都憲 趙宗鉉箚論書九以享班百官毋得入作門誤爲領希請譴罷書九謂有情勢出去政院請牌招敎以許遞令該曹付軍職仍以前望榮輔批下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4일(무신)

강3일간 야금(夜禁)을 해제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대보름을 전후하여 각각 1일씩 야금을 해제하라고 순라영(巡邏營)에 분부하라.” 하였다.

강弛禁三夜

목敎曰上元前後各一日弛禁事分付巡邏營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4일(무신)

강각 해당 관사와 해당 도에 상언(上言) 39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목○ 예천(醴泉)의 유학(幼學) 이병성(李秉誠)의 상언에, “저의 시조(始祖) 희령군(熙寧君) 이타(李柁)의 분산(墳山)이 광주(廣州)에 있는데, 수십 년 전에야 묘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묘소 아래에 사는 백성들이 제멋대로 몰래 매장하고, 심지어 뇌후(腦後 무덤의 뒤쪽)를 누르고 혈(穴)을 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작년 원행(園幸) 때 종족들이 서로 이끌고서 상언하니 판부하기를, ‘왕자(王子)의 분산은 다른 분산과 남다른데 백성들이 바싹 붙은 곳에 매장하였으니 법으로 볼 때 파서 옮기도록 해야 한다. 파서 옮겨야 할 무덤은 파서 옮기고 분산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칙하라고 도신에게 분부하라.’ 하셨습니다. 하교가 이와 같이 엄중하였으나, 그 당시 해당 고을의 수령은 햇수가 오래되어 무덤을 파서 옮길 수 없다고 하면서 글을 작성하여 영문(營門)에 보고하였고, 해당 도신은 수령의 보고가 모두 근거 있다고 판단하여 보고한 대로 시행하라고 본읍에 회답하는 관문(關文)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영문에 누차 정소(呈訴)하였으나, 이미 판결한 송사(訟事)이므로 다시 심리(審理)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삼가 번독스럽게 합니다만, 속히 해당 도로 하여금 몰래 매장한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하는 은덕을 입게 해 주소서.”

하고, 수원(水原)의 동몽(童蒙) 최풍석(崔豐錫)의 상언에, “제가 아비의 상을 당하여 옛날 증조의 무덤으로 썼던 자리의 광중(壙中)에 장사 지내려던 차에 산 아래에 사는 서명인(徐命人)이라는 종이 자기 숙모의 오래된 무덤을 옮겨 그곳에 몰래 매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고을에 정소하여 고을에서 엄히 다스리고 무덤을 파 가게 한 뒤에 저의 아비를 안장(安葬)하였습니다. 그 뒤에 서명인이 관가(官家)에 무소(誣訴)하여 그가 사들인 땅이라고 하면서 예전에 파 갔던 관을 다시 저의 아비 무덤과 바싹 붙은 곳에 몰래 매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을에 정소하니 정소를 물리치고 제사(題辭)를 내려 주지 않았으며, 저의 어미가 이어서 언문으로 된 단자(單子)를 바치니 또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숙부를 형추(刑推)하고 저의 조부를 형구(刑具)를 채워 가두고는 독촉하여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2월에 무덤을 파서 옮기겠다고 억지로 다짐을 바치고서야 풀려났습니다. 그곳은 저희 집안에 3대째 전해 내려오는 땅인데, 서명인이 송사를 제기한 뒤에 그 땅을 매입했다는 말을 만들어 낸 것은 너무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상의 은덕을 입어 서명인의 간악한 정상을 환히 살피시고 엄히 형추하여 정배(定配)하게 해 주소서.”

하고, 용인(龍仁)의 유학 김화건(金華健)의 상언에, “저의 8대조인 증(贈) 영의정 김제갑(金悌甲)의 분묘가 충주(忠州)에 있는데, 재작년에 본주(本州)에 사는 오심(吳深)이 단청룡(單靑龍)의 38보 되는 지점에 그의 외조(外祖)를 몰래 매장하였습니다. 오심은 이가(李哥)의 생질(甥侄)로서 그의 외가에서 생장하였는데, 그의 외조를 몰래 매장할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충신의 분묘에 어찌 몰래 매장할 수 있는가.’ 하자, 오심이 팔을 걷어 붙이며 큰소리치기를,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 하고서는 이회(泥灰)와 격판(隔板)을

사용하였습니다. 맨 나중에서야 변고를 듣고서는 허둥지둥 내려가서 관아에 정소하여 송사를 제기하니, 오심은 스스로 꿀릴 것을 알고 도피하였고 이가의 집에서는 과부라는 핑계를 대고서는 끝내 송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기다려야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하겠습니까? 성상의 은덕을 입어 즉시 본도로 하여금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
하고, 남양(南陽)의 유학 안유손(安有孫)의 상언에, "제가 어미의 상을 당하여 집 뒤의 동산 1000여 보 되는 지점에 장사를 지냈는데, 죽산(竹山)에 사는 홍대진(洪大晉)이 남양 홍가(南陽洪哥)의 종손(宗孫)으로서 입안(立案)으로 인정받은 지역이라고 하면서 홍가들을 거느리고 본부에 송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본부에서 저를 패소(敗訴)하는 쪽에 두고 속히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하였습니다. 성상의 은덕을 입어 안장할 수 있게 해 주소서." 하여, 아울러 전교하기를, "지방관에게 분부하여 공정히 판결해 주게 하라." 하였다.
수원의 유학 이익명(李益鳴)의 상언에, "저는 효령대군(孝寧大君)의 9세손으로, 외아들 이식(李烋)을 두었으나 이식이 자녀를 두지도 못하고 요절하였습니다. 5촌 조카인 이집(李)에게 네 명의 아들이 있어서 그중 셋째인 이덕승(李德升)을 제 죽은 아들의 후사로 삼게 해 달라고 청했으나, 이집의 장자인 이덕수(李德壽)가 자기 어미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한사코 거부하였습니다. 성상의 은덕을 입어 원하는 대로 후사로 삼게 특별히 허락해 주소서." 하고, 수원의 고(故) 생원(生員) 이연태(李延泰)의 처 유씨(柳氏)의 상언에, "저의 남편이 작년 9월 응제(應製)에 입격하여 정시(庭試) 회시(會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얻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피붙이를 두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남편의 4촌형 이연오(李延五)의 넷째 아들인 이신명(李信命)을 후사로 정하려고 합니다만, 집안이 가난하여 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상의 은덕을 입어 후사를 이을 수 있게 특별히 허락해 주소서." 하여, 아울러 전교하기를, "경기 감영에서 예조에 공문을 보내라." 하였다.
덕산(德山)의 유학 이선운(李善運) 등의 상언에, "같은 현에 사는 유학 김재정(金載鼎)은 세력이 있는 대가(大家)의 사람으로서 마구 기세를 부리고 힘으로 억누르는 짓을 행하더니, 향교(鄕校)의 안산(案山)과 객사(客舍)의 안산을 내려다보는 곳에 감히 장사를 지냈습니다. 대체로 향교와 객사의 안산에는 사람들이 감히 장사 지낼 마음을 먹지 못하는데, 김재정이 감히 이곳을 마음에 두고 장사를 지내려고 하자, 그 당시 수령인 정후조(鄭厚祚)가 개인적인 안면 때문에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정후조가 파직되어 돌아간 뒤에야 감영에 정소하니, 면천 군수(沔川郡守) 정동표(鄭東杓)를 사관(査官)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동표가 김재정과 서로 친하였기 때문에 적간(摘奸)한 뒤에 보고한 내용이 사실과 달랐습니다. 저희들이 몹시 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또 영문에 정소하니, 결성 현감(結城縣監) 박상춘(朴尙春)을 사관으로 다시 정하였습니다. 박상춘이 조사하여 보고한 대체적인 내용에, '원고(原告)와 피고(被告)가 보는 곳에서 범철(泛鐵)로 상세히 살펴보니, 김가의 무덤은 사방(巳方)이고 향교는 자방(子方)이었으며, 김가의 무덤은 오방(午方)이고 객사는 자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면에 위치한 안산은 아니지만, 비스듬하게 보인다고 해서 안산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 김가의 무덤을 파서 옮기는 것은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도신이었던 박종악(朴宗岳)의 제사(題辭)에, '산도(山圖)를 상세히 살펴보니 과연 향교와 객사의 안산을 내려다보는 곳이고 향교와 객사에서 바라다보이는 곳이다. 그러나 한 차례 적간한 것만으로 판결할 수가 없다.' 하고서는 태안 군수(泰安郡守) 신상문(申相文)을 사관으로 다시 정하였습니다. 신상문이 조사하여 보고하기를, '객사에서는 앉아서 보거나 서서 보거나 모두 보이고[33] 향교에서는 비스듬히 보입니다. 사람이 거주하

는 큰 마을 안에는 매장을 금한다는 규정이 본래 법전(法典)에 있는데[34], 하물며 읍의 터는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박종악의 제사에, '세 차례 적간하여 두 차례 패소(敗訴)하는 쪽이 되었으니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속히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하라고 수령에게 공문을 보내 즉시 거행하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재정은 무덤을 파서 옮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령 김직휴(金直休)가 부임한 뒤에 즉시 또 정소하니, 박종악이 상당히 엄한 제사를 내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지닌 본성을 들어 책망하며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하였으나, 김재정이 끝내 파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문에 정소하니, 전 도신 박천형(朴天衡)이 엄한 제사를 내려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하고 그의 종을 잡아다가 가두었으나, 김재정은 털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영문에 정소하니, 지금의 도신 이형원(李亨元)의 제사에, '이미 사림(士林)들 사이에서 논의가 제기되었으면 아무 말 없이 무덤을 옮겨야 하는데도 연이어 해를 넘겼다. 사림의 의논과 영읍(營邑)의 신칙하는 제사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원고와 피고가 서로 송사하는 것처럼 하였으니 놀랍기 그지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재정은 미련하여 무덤을 파서 옮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재정은 결코 고을 수령에게 제압당할 자가 아니고 영문의 명령을 따를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이러한 자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김재정이 이치가 어그러지고 말이 꿀릴 경우에는 그를 패소하는 쪽에 두어야 하고, 저희들이 이치가 곧고 명분이 바를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승소 판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엄한 제사를 내려 무덤을 파 가도록 독촉한 것이 결국 용두사미를 면치 못하고 실천이 없는 빈말이 되고 말았으니, 이 무덤을 실제로 파서 옮기게 할 기약이 없습니다. 성상의 판결을 받게 해 주소서." 하여, 전교하기를, "충청도에 분부하여 공정히 판결해 주게 하라." 하였다.

예천의 유학 이홍조(李弘祖) 등의 상언에, "저희들 75인은 모두 희령군 이정공(夷靖公) 이타의 10여 대 후손으로서, 중간에 집안이 화를 당하여 뿔뿔이 흩어져 고립되었다가 2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저희들 몇몇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묘소를 지키지 못하고 종통(宗統)이 전해지지 못하다 보니, 사판(祠版)도 잃어버리고 제사도 오래도록 지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여러 대 동안 끊어졌던 종통을 잇게 해 주시고 유학 이병성(李秉誠)으로 제사를 받들게 하라고 특별히 명하시는 성상의 은덕을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통이 정해졌고 제사를 받들 사람도 생겼으니, 하루라도 사판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선조(先祖)인 이타는 친왕자(親王子)로서 시호(諡號)를 추증받은 공로가 있었으니, 국가의 법을 상고해 보아도 불천위(不遷位)의 제사가 있어야 하고, 사적인 인정으로 헤아려 보아도 영구히 지내는 제향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재차 사판을 만드는 일은 참으로 집안의 변괴이니, 특별히 처분을 내려 주고 사판을 조성하라고 다시 명하시어 인정과 예의를 펼 수 있게 해 주소서." 하여, 전교하기를, "종부시와 의논하고 규례를 상고하여 판결해 주라." 하였다.

○ 이조가 아뢰기를, "광주(廣州)의 유학 윤정구(尹鼎九)의 상언에, '저의 아비 통정대부(通政大夫) 윤천은(尹天殷)은 올해 87세로, 경술년(1790, 정조14) 큰 경사[35] 때 통정대부

---

33) 앉아서 …… 보이고 : 원문은 '望立俱見'인데, 앞뒤의 문맥이 통하지 않아 '望'을 '坐'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34) 사람이 …… 있는데 : 《속대전(續大典)》 〈형전(刑典) 청리(聽理)〉에 보인다.

35) 경술년 큰 경사 : 원자(元子)가 태어난 경사를 말한다. 이때의 원자는 수빈(綏嬪) 박씨(朴氏) 소생으로 창경궁(昌慶宮)의 집복헌(集福軒)에서 출생하였으며, 후일 순조(純祖)가 되었다. 이때 경외의 조관으로서 70세 이상인 사람과 사족이나 서인으로서 80세 이상인 사람에게 각각 한 자급씩을 올려 주었는데, 윤천은(尹天殷)도 이때 첨지중추부사에 단부(單付)되었다. 《日省錄 正祖 14年

로 자급(資級)이 올랐습니다. 예전에 90세가 다 된 노인도 가자(加資)해 주는 경우가 많았으니, 가자해 주는 은전을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사족(士族)이나 서인(庶人)은 나이가 만 90세가 되어야 가자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정식입니다[36]. 그의 아비에 대한 가자는 특은(特恩)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또 나이가 90세가 다 된 사람에게 가자해 주었던 전례를 범범하게 끌어다 대면서 은전을 입게 해 달라고 청한 것은 실로 후일의 폐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의 청을 들어주지 말고 그 외람된 죄를 형조로 하여금 과치(科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촌구석에 사는 사람이 사례를 잘 살피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법전의 규정에 대해 타일러 주고 엄히 신칙하여 풀어 주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양(高陽)의 유학 한응민(韓應敏)은 아비 통덕랑(通德郞) 한박(韓樸)이 80세이고, 공주(公州)의 유학 신대훈(申大勳)은 아비 통덕랑 신돈(申暾)이 82세이므로, 모두 가자하는 은전을 입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족이나 서인으로서 80세가 된 자에게는 한 품계(品階)를 제수하도록 법전에 실려 있으니[37], 모두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인천(仁川)의 유학 이방언(李邦彦)은 아비 장사랑(將仕郞) 이화술(李和述)이 82세이고 신창(新昌)의 유학 유예태(柳禮泰)는 아비 장사랑 유춘관(柳春寬)이 82세이므로, 모두 가자하는 은전을 입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족이나 서인으로서 80세가 된 자에게는 한 품계를 제수하도록 법전에 실려 있는데, 이화술 등은 모두 작년에 80세 이상으로서 그 자식들의 상언으로 인하여 한 품계를 제수해 주는 은전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거듭 가자해 달라고 청하였으니, 이것도 매우 외람됩니다. 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훈련도감의 초관(哨官) 홍보영(洪普泳), 영평(永平)의 양인(良人) 이묵남(李墨男) 등이 자기 아비를 위해서 상언하였으나 기한 안에 현신(現身)하지 않았으니, 상언의 내용은 모두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 예조가 아뢰기를, "서부의 유학 윤도철(尹度喆)의 상언에, '저의 선조인 영원부원군(鈴原府院君) 이호(李壕)의 묘소가 마전(麻田)에 있고, 연안부부인(延安府夫人) 전씨(田氏)의 묘소가 용인에 있습니다. 두 곳의 비갈(碑碣)에는 모두 중종의 어휘(御諱)가 들어 있으므로, 재작년 겨울에 도신이 연석에서 아뢰어 마전의 묘비는 특명으로 비각(碑閣)을 세웠으나, 용인의 묘갈(墓碣)은 본 사안을 미처 아울러 진달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전혀 거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의 체모가 전과 달라서 막중한 어휘가 들어 있는 저 마전의 비갈에 대해서는 비각을 세워 높여 주었으니, 이 성대한 은전을 어찌 이 용인의 비갈에 대해서만 누락할 수 있겠습니까. 도신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도신이 연석에서 진달하여 영원부원군 묘소의 비각을 건립하였으면, 연안부부인 묘소의 비각도 건립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이는 은전과 관계되는 일이므로 상께서 재결(裁決)하시는 것이

6月 18日, 24日》

36) 사족(士族)이나 …… 정식입니다 : 사족이나 서인(庶人)이 노인직(老人職)을 제수받을 수 있는 나이는 시대에 따라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노인직〉에서는 양반이나 천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80세 이상이면 노인직을 제수하도록 하였는데, 《속대전(續大典)》에서는 사족이나 서인의 경우 100세가 되어야 제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의하면 《속대전》의 이러한 규정은 1753년(영조29)에 다시 90세로 수정되었다.

37) 사족이나 …… 있으니 : 《대전통편》 〈이전 노인직〉에 의하면, 사부(士夫)로서 한 차례 이상 벼슬을 받았거나 중서(中庶)로서 동반·서반의 정직(正職)을 받은 자 등에게는 80세가 되면 상언하기를 기다려 가자해 주도록 규정하였다.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이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용인의 묘갈도 비각을 건립하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함흥(咸興)의 성불사(成佛寺) 승려 수경(守敬) 등의 상언에, '본사(本寺)를 중건(重建)하기는 하였으나, 비각은 아직 고쳐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담당 관사로 하여금 비각을 세워 공적을 기록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사찰 건물을 고쳐 세운 것은 전 도신이 연석에서 진달하여 이루어진 일이니, 이번에 비각을 세우는 일도 해당 도신으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거행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본래 소중한 의미가 있으니 도백으로 하여금 다시 새겨서 세우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충주(忠州)의 유학 정운회(鄭運會) 등의 상언에, '저의 선조인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와 경혜공주(敬惠公主 문종(文宗)의 딸)의 분묘가 고양군(高陽郡)에 합장(合葬)되어 있습니다. 그 실상에 대해 즉시 유사(有司)에게 하교하신다면, 후손이 믿고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무덤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도도 될 것입니다. 성상의 은덕을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영양위와 경혜공주를 고양에 합장한 것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공문서와 사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와서는 별로 조정에서 지시할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가 무덤을 영광스럽게 해 달라고 청한 것은 은혜를 요구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모호한 면도 있으니, 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고성(高城) 유점사(楡岾寺)의 승려 종수(宗洙) 등의 상언에, '금강산(金剛山)은 천하의 명산이고 유점사는 금강산의 명찰입니다. 세조대왕(世祖大王)께서 유점사를 원찰(願刹)로 정하고 사찰 건물을 창건하셨으니, 능인보전(能仁寶殿), 명부전(冥府殿), 영산전(靈山殿), 극락전(極樂殿), 무갈전(無竭殿), 범종각(泛鍾閣), 용항전(龍航殿), 해탈문(解脫門), 천왕문(天王門), 해장전(海藏殿), 산영루(山暎樓), 향적전(香積殿), 승사(僧舍) 12방(房)이 그것입니다. 지난 기묘년(1759, 영조35)과 무자년(1768)에 당한 화재는 전에 없던 재앙으로, 1000여 칸의 사찰 건물이 전부 재로 변하였는데, 선대왕(先大王)의 성대한 덕에 힘입어 기축년(1769)쯤에 도신 김효대(金孝大)에게 명하여 중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래되어 서까래가 썩고 기와가 부서져 눈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성상의 은덕을 입어 중건할 수 있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금강산은 명산인 데다가 옛 사적(史蹟)도 있으니, 이를 무너지도록 방치해 두는 것도 본래 애석한 일입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지시하도록 하여 폐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도신에게 분부하여 선조(先朝) 기축년에 중건했던 전례를 상고하여 수리해 주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충주의 진사(進士) 홍종간(洪宗幹)의 상언에, '제가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동성(同姓) 12촌 형인 홍기겸(洪起謙)의 넷째 아들 홍성팔(洪聖八)을 후사로 세우려고 하였으나, 홍기겸 부부가 모두 사망하여 줄 사람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전례만을 따라서 정장(呈狀)하여 예사(禮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조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보은(報恩)의 유학 이겸린(李謙麟)의 상언에, '저의 족제(族弟)인 이자평(李自平)이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보지 못하였는데, 부부가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성 14촌 아우인 이상매(李商梅)의 둘째 아들[38] 이조엽(李朝燁)을 후

38) 둘째 아들 : 원문은 '弟二子' 인데, 앞뒤의 문맥이 통하지 않아 '弟' 를 '第' 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사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이상매 부부도 모두 사망하여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모두 없으므로 일반적인 전례만을 따라서 정장하여 예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조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충주의 유학 홍진보(洪晉輔)의 상언에, '저의 10촌 아우인 홍우보(洪羽輔)가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동성 8촌 형인 홍우보(洪雨輔)의 둘째 아들 홍서호(洪舒浩)를 후사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홍우보 부부가 모두 사망하여 줄 사람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전례만을 따라서 정장하여 예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조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양성(陽城)의 전 첨지(僉知) 오침(吳琛)의 상언에, '저의 동성 10촌 손자인 오윤상(吳允常)이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친아우인 오희상(吳熙常)의 장자 오규증(吳奎曾)을 후사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오윤상 부부가 모두 사망하여 받을 사람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전례만을 따라서 정장하여 예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조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용인의 유학 박정신(朴廷臣)의 상언에, '저의 족질(族侄)인 박시우(朴時遇)가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보지 못하였는데, 부부가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아우인 박시창(朴時昌)의 둘째 아들 박용경(朴龍慶)을 후사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박시우 부부가 모두 사망하여 받을 사람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전례만을 따라서 정장하여 예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조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창평(昌平)의 유학 정표(鄭杓)의 상언에, '저의 족질인 정택환(鄭宅煥)이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동성 12촌 형인 정효환(鄭孝煥)의 다섯째 아들 정재찬(鄭在贊)을 후사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정택환 부부가 모두 사망하여 받을 사람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전례만을 따라서 정장하여 예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조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후사를 세우도록 특별히 허락하라는 수교(受敎)가 있었으니, 모두 허락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서부의 고 선전관 이윤배(李潤培)의 처 황씨(黃氏)의 상언에,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 후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남편의 재종형(再從兄)인 고 학생(學生) 이윤복(李潤馥)에게 네 아들이 있어서 셋째 아들인 이흥석(李興錫)을 죽은 남편의 후사로 세우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이윤복의 처가 끝내 허락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이윤복이 동당(同堂)의 친족으로서 네 아들을 두었는데도 그의 아내가 허락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일의 정황으로 헤아려 볼 때 매우 부당합니다. 시행하도록 허락하여야 할 듯하나 인륜과 관계된 중대한 일이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서부의 고 부사(府使) 조덕순(趙德洵)의 처 심씨(沈氏)의 상언에, '저의 종질(從侄)인 조학민(趙學閔)의 아들 조흥돌(趙興乭)을 저의 아들 조학우(趙學愚)의 후사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덕순의 형인 조덕수(趙德洙)에게 손자 조기인(趙基仁) 형제가 있으므로 조흥돌의 할아비인 조덕동(趙德洞)이 말하기를, 「조기인 형제 중에서 조학우의 후사를 삼아야 한다.」 하면서 끝내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이 일로 성상을 번독스럽게 한 것이 이제 5, 6차례나 됩니다. 대체로 조덕동이 허락하지 않고 질질 끄는 이유는 전적으로 조기인 형제가 혈손

(血孫)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인 형제는 모두 이상한 병이 있고 전후의 해당 당상이 이미 이를 목격하였으니, 심씨가 이들을 후사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조명익(趙明翼)은 재신(宰臣)이었으니, 일의 체모로 볼 때 후사가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시행하도록 허락해야 할 듯하나 인륜과 관계되는 일이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경기 감영이 보내온 공문으로 인하여 이익명의 상언을 보니, 후사를 세우게 해 달라는 일이었습니다. 양자로 대를 잇게 하는 법은 피차가 모두 진정으로 원할 때 가능한데, 생가(生家)에서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억지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집이 생전에 허락하였으므로 시행하도록 허락해야 할 듯하나 인륜과 관계된 중대한 일이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경기 감영이 보내온 공문으로 인하여 이연태의 처 유씨의 상언을 보니, 후사를 세우게 해 달라는 일이었습니다. 이연태가 살아 있을 때에 양자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이연오는 동당의 친족일 뿐만 아니라 아들을 넷이나 두었으니, 그중에서 아들 하나를 양자로 삼도록 허락하는 것은 사리에 있어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가의 허락이 없었고 인륜과 관계된 일이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 병조가 아뢰기를, "의주(義州)의 한량(閑良) 황봉헌(黃鳳憲)의 상언에, '저희들 55명은 고진강(古津江)의 하류(下流)에 거주하고 있는데, 경술년(1790, 정조14) 6월에 동답(垌畓)을 수축(修築)할 때 물을 쏟아붓듯이 큰비가 내려 온 섬이 물에 잠겨서 온전히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절충장군(折衝將軍) 최수웅(崔秀雄)·김채기(金采起), 한량 한금기(韓今琦) 등이 위급한 상황을 목격하고서는 집을 헌 재목으로 뗏목을 엮어서 건져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면임(面任)이 본부에 보고하고 저희들이 순영(巡營)에 가서 호소하니, 「목숨을 걸고 사람을 살렸으니 매우 가상하다.」라고 제사를 써 주었습니다.' 하였고, 김용빈(金龍斌) 등의 상언에, '저희들이 고진강을 지나갈 때 마침 봄비가 내린 데다가 얼음과 눈도 녹아 고진강의 물이 불어나 넘쳤습니다. 그리하여 남녀 70명이 파도 속에 떨어져 있을 때 절충장군 최경심(崔慶心)과 한량 김채철(金采喆)· 김채일(金采一) 형제가 힘을 다해 건져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면임이 본부에 보고하니, 「사실을 탐문하여 처리하겠다.」라고 제사를 써 주었습니다.' 하였으며, 모두 성상의 은덕을 입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목숨을 살려 준 일은 즉시 장계로 보고하라고 연전에 신칙하는 하교를 내린 것이 엄명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수웅 등 3인과 최경심 등 3인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목숨을 살려 준 일은 의심할 것 없이 명백하였으니, 본부가 순영에 보고하였으면 순영이 장계로 보고하여 시상하기를 청했어야 했는데, 지금 해가 지난 뒤에야 성상을 번독스럽게 한 것은 매우 외람된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력하도록 권장하는 방도로 볼 때 외람되다는 이유로 청을 들어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본도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온 뒤에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 형조가 아뢰기를, "안동(安東)의 상인(喪人) 유정조(柳井祚)의 상언에, '저의 아비 유홍춘(柳弘春)이 지난해 10월 29일에 부사 김이익(金履翼)의 가혹한 곤장을 맞고 11월 17일에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의 아비는 고 상신(相臣) 유성룡(柳成龍)의 7대손으로, 관아의 명령을 봉행하면서 감히 게을리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납부해야 할 환조

(還租)도 4섬 남짓에 불과하였는데, 창고를 열고 난 뒤에 먼저 2섬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수량도 갖추어 납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체포해야 할 대상에 갑자기 포함시키고 이어서 관아의 차인(差人)이 집에 도착하였으나, 반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알고서는 돌아가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이익이 크게 노하여 또 별차(別差)를 정하여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비가 그날 새벽에 나머지 수량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자문(尺文)을 가지고 가서 부사 앞에서 모두 납부한 상황을 호소하니, 김이익이 대단히 성을 내며 말하기를, 「네가 전에는 어찌하여 즉시 납부하지 않았느냐.」 하고서는 즉시 15차례 형추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형추를 당한 지 18일 만에 운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미 김씨(金氏)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다가 12월에 결국 자진(自盡)하였습니다. 어미를 염(殮)할 때 옷상자 안에서 혈서(血書) 1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혈서에 이르기를, 「원수를 갚지 못하고 자진하니, 한집안이 협력하여 이 원수를 갚아 주기 바란다.……」 하였습니다. 수십 일 사이에 부모가 모두 비명(非命)에 죽었으니, 어찌 하루라도 이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저마저도 따라서 죽는다면, 차마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원수가 갑자기 죽더라도 손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건대 10월은 환곡의 상환을 마칠 시기가 아니었고 납부를 마친 시기도 아비가 체포되기 전이었으니, 한 대나 반 대의 회초리를 치더라도 오히려 규정 이상으로 형벌을 가한 것인데, 하물며 형살(刑殺)하는 율문(律文)을 적용하였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근래 들어 도내의 관장(官長)들이 공사(公事)를 핑계로 사림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안동이 가장 심하여 안동 경내(境內)에서 느닷없이 재앙에 걸려든 자가 300여 인이나 됩니다. 생원이나 진사로서 곤장을 맞는 치욕을 당한 자도 있고, 임산부로서 발에 채여 죽은 자도 있으며, 100세의 노인과 10세의 아이에게도 곤장을 치니, 온 경내가 시끌시끌하며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집안에서는 저의 아비와 같은 날에 형추를 당한 자가 3인이나 됩니다. 그 까닭을 따져 보면, 성을 낸 원인이 환곡의 상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이익의 전령(傳令)에, 「안동 안에서도 하회(河回)가 더욱 심하다. 기타 이른바 사부(士夫)의 근거지에서도 모두 이를 부러워하고 본받으려고 하여 저절로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되고 말았으니, 이것이 어찌 지금 당장의 걱정일 뿐이겠는가.」 하였는데, 하회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성을 낸 원인이 하회에 있었던 것이지 환곡을 상환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흉인(凶人) 김이정(金履定)의 아우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집안의 전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殺人者死〕」라는 국법이 있으니, 관장으로서 토착민을 죽였더라도 죄가 없는데 규정 이상으로 형벌을 가했다면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치가 없습니다. 이번 김이익의 포학한 행위에 대해 환곡을 상환하는 일 때문이었다고 핑계를 댄다고 하더라도, 저의 아비가 납부를 마치고 난 뒤에 형추를 당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사사로운 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겠으며, 어찌 불법으로 형벌을 남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숙종 때에 유신일(兪信一)이 수령으로서 사람을 죽였다가 옥사(獄事)가 성립되어 끝내 감옥 안에서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에 「유신일이 만약 살아서 감옥 문을 나선다면 나라에 법이 없는 것이다.」라는 성상의 하교가 있었습니다.[39] 전날의 성상과 뒷날의 성상이 헤아리는 것은 동일하니, 김이익에 대한

39) 옛날 …… 있었습니다 : 유신일(兪信一)이 회양 부사(淮陽府使)로 있을 때 길에서 감시(監試)에 응시하러 가던 유생(儒生) 3인과 마주쳤는데, 이들이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구 곤장을 쳐서 그중 이우백(李友白)은 사망하고 나머지 2인도 거의 죽을 정도가 되었다. 사간원에서 유신일을 의금부로 잡아다 신문할 것을 청하여 이 사건이 부각되었는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우백의 사망 원인을 놓고 곤장을 맞아 죽은 것인지 아니면 당시 유행하던 돌림병에 걸려 죽은 것인

사형은 그의 해명하는 말을 다 들어 볼 것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나이가 겨우 16세로, 이처럼 천고에 없던 변고를 당하고서는 혈서를 가슴에 품고서 원통함을 호소하려고 해가 바뀌기 전부터 궐 밖에 와서 엎드려 있었으나, 높은 벼슬아치들이 끊임없이 왕래하였는데도 보지 못한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뢰한 하례(下隷)들 10명이 떼를 지어 「한성 판윤 김문순(金文淳)의 분부이다.」라고 하면서 동대문(東大門) 밖으로 쫓아내어 가게에 가두어 두고서는 물과 불도 넣어 주지 않고 오줌을 누는 것도 금하여 핍박에 못 이겨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하건대, 아비의 원수를 갚지도 못하고 쇠잔한 목숨이 먼저 끊어진다면 불효한 죄는 더욱 용서받기 어려울 듯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서는 변장하고 탈출하여 1월 원일(元日)에 죽음을 무릅쓰고 격쟁(擊錚)하였습니다. 삼가 성상의 은덕을 입어 특별히 하문(下問)을 받고서는 물러 나와 형조에 엎드려서 여러 날 동안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성상의 처분은 더욱 멀어지고 원통함을 씻어 줄 가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피눈물을 흘리며 슬피 호소하니, 삼가 바라건대 사형하는 벌을 속히 거행하여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유정조는 16세의 어린 나이로, 그의 아비가 사망한 뒤로는 슬픔과 원망이 가슴속에 가득하여 김이익을 목숨과도 바꿀 진짜 원수로 알고 반드시 자기 뜻대로 하고야 말려고 하였습니다. 유정조가 종이에 가득 진술한 원정(原情)은 모두 토주관(土主官)을 욕하고 꾸짖는 말이지, 사실에 따라 일을 논하거나 조용히 도리를 설명하는 취지가 아니니, 왕명으로 임명한 벼슬아치를 존중하고 후일의 폐단을 염려하는 방도로 헤아려 볼 때 작은 일이 아닌 듯합니다. 게다가 김이익이 형추를 시행한 것은 유홍춘이 명령을 위반하였기 때문이었고, 신장(訊杖)을 친 것도 15차례에 불과하였으니 본래 목숨을 잃을 만한 단서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상언에 대해 회계(回啓)하라는 명을 받들었으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환곡의 상환을 독촉하는 일 때문에 형장(刑杖)을 쓴 것은 불법이 아닌 것 같으나, 형추를 당한 뒤에 우연히 병을 얻어 죽게 된 것인지 여부를 막론하고 그의 아내마저도 남편을 따라 자결하였으니, 자식 된 자의 마음이 어찌 이와 같지 않겠는가. 다만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가 하소연한 것만으로는 처결할 수가 없으니, 도백을 엄히 신칙하여 도백이 직접 상세히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온 뒤에 내게 물어 처리하라." 하였다.

○ 한성부가 아뢰기를, "면천(沔川)의 유학 이정국(李楨國)의 상언에, '저의 12대조인 고려조(高麗朝)의 명신(名臣) 정언 이존오(李存吾)의 묘소가 개성부(開城府)의 옛 동문(東門) 밖 자좌(子坐)의 언덕에 있었는데, 임진년(1592, 선조25)의 전란 때 자손들이 타향을 전전하느라 중간에 전하지 못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신해년(1791, 정조15) 12월이 되어서야 문장(門長) 이언국(李彦國)이 묘소를 살펴보니, 개성에 사는 박성원(朴性源)이 용미(龍尾)를 훼손하고 계체(階砌)를 부순 뒤 여러 차례 그곳에 매장하였습니다. 나이 많은 노

지가 쟁점이 되었다. 오랜 조사 끝에 의금부의 조사 결과와 대신들의 의견 수렴을 들은 숙종은 유신일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고 명을 내렸다. 그러자 승정원에서 계사(啓辭)를 올려 다시 대신들에게 하문한 뒤에 처리할 것을 청하였는데, 숙종이 "만약 유신일이 의금부의 문을 살아서 나간다면 법이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이니, 조종의 법을 내가 감히 뒤흔들 수는 없다.〔若使信一生出於金吾之門 是無法之國 祖宗之法 予不敢撓改也〕" 하고, 계사를 올린 좌부승지 조태채(趙泰采)와 우부승지 이정겸(李廷謙)을 파직하였다. 《承政院日記 肅宗 25年 4月 19日, 7月 1日・2日・15日・16日, 閏7月 7日・9日》

인들의 말에 의하면 「묘비(墓碑)가 중간이 부러지고 휘자(諱字)만 뚜렷이 남아 있었는데 묘소 아래에다 옮겨 묻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감영에 정소하니, 「묘갈이 나타나야 한다.〔墓碣出現〕」라는 제사가 본부에 도착하였으므로 묘소 아래를 파 보기를 청하였으나, 수령이 고집을 부리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가(朴哥)가 스스로 꿀린다는 것을 알고서는 함께 서로 보호하자는 내용으로 수기(手記)를 작성해 주고, 또한 그에 대한 증명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청하였는데, 이언국이 너그럽게 수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옛 족보의 문적(文跡)이 이미 분명하고 보면, 선조를 위한 자손의 도리에 있어서는 선조의 묘소를 되찾고 남의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하려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성상의 은덕을 입어 속히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존오는 고려 말의 명신인데 후인이 침범하여 매장하고 용미를 훼손하기까지 하였으니, 다른 사람들도 오히려 탄식할 일입니다. 더구나 그 자손의 마음으로는 반드시 옮기게 하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묘갈을 묻어 두었다는 말은 나이 많은 노인이 서로 전하는 말에 근거하였을 뿐이고 보면, 묘갈을 찾아내기 전에는 모두 긴가민가한 말입니다. 후일 묘갈을 찾아내면 즉시 적간(摘奸)하게 한 뒤에 일일이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하라고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문의(文義)의 유학 하도(河櫂)의 상언에, '저의 13대조인 고 영의정 문효공(文孝公) 하연(河演)의 묘소가 인천(仁川)에 있고, 저의 선조와 부인(夫人) 이씨(李氏)의 영우(影宇)도 있으며, 또 효행을 기리는 정려비(旌閭碑)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군에 사는 신숭(申崇)이란 자가 그의 조모를 영당(影堂)의 유지(遺址)에 몰래 매장하였는데, 저의 선조 무덤과의 거리가 97자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에 상언하니 상언을 본도에 내려 조사하여 처리하게 하였는데, 신숭의 집에서 매장한 지가 이제 68년이 되었을 뿐인데 본부가 조사하여 보고하면서 이것을 180년이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조와 현조의 분묘에 자손이 제사를 폐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침범하여 매장하여도 매장을 금하지 않은 채 2, 3년이 지나고 나면 심리(審理)하지 않는다[40]는 구절이 《대전통편(大典通編)》에 명백히 실려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영문에서 「문효공의 위대한 공적을 사람들이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어찌 감히 소홀히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본부는 신가(申哥)에게 속아서 이처럼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신가의 무고(誣告)만을 믿고서 당연히 파서 옮기게 해야 할 무덤을 지금까지 시간을 끌게 하였습니다. 성상의 은덕을 입어 즉시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고 상신 하연의 위대한 공적은 사서(史書)에 실려 있습니다. 신숭은 '매장한 지가 벌써 만 200년이 되었습니다.' 하였고, 하도는 '병오년(1726, 영조2) 이후에 매장한 것입니다.[41]' 하였으니, 신가가 할아비와 증조를 바꾸어 매장한 연도를 조작한 것은 너무도 악랄합니다. 즉시 매장한 연도를 상세히 조사한 뒤에 기간을 정하여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하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침범하여 매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북부의 한량 박서겸(朴瑞謙)의 상언에, '저의 증조 박효건(朴孝健)은 명빈(禛嬪)[42]의 아비입니다. 명빈이 출궁(出宮)한 뒤에 저의 할아비 박창완(朴昌完)을 불러다

40) 고조와 …… 않는다 : 《속대전》 〈형전 청리〉에 보인다.

41) 병오년 …… 것입니다 : 원문은 '庚午以後所埋'인데, 이날 기사에서 하도(河櫂)가 "신숭(申崇)의 집에서 매장한 지가 이제 68년이 되었다."라고 한 말에 의거하여 '庚'을 '丙'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42) 명빈(禛嬪) : 숙종의 후궁으로, 연령군(延齡君)의 생모이다.

가 장흥(長興) 내덕도(來德島)의 면세(免稅)받은 곳을 내주고 도장 도서(導掌圖署)[43]를 써서 내려 주면서 말하기를, 「벼슬을 단념하고 이 땅으로 부모의 제사를 끊어지지 않게 하되, 친형제들이 서로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해 가을에 저의 할아비의 친아우인 박창관(朴昌寬)이 와서 말하기를, 「내덕도의 도장(導掌)은 내가 맡아 직접 가서 거두어들이면 빠뜨릴 우려가 없을 듯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창관을 내려가게 하였으며, 도서도 가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창관이 해마다 거두어들인 세금을 모두 차지하고 보내 주지 않았으며 도서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연령군(延齡君)이 이 일을 듣고서는 박창관을 불러다가 옳지 못함을 책망하고 「목석이나 다름없다.［無異木石］」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는데, 부형(父兄)과 가까운 친족 사이에 서로 송사하는 것도 교화와 관계가 있으므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집안 재물은 다 써서 없어져 명빈의 부모를 제사 지내는 날이 되어도 전혀 제수(祭需)를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6촌인 박경부(朴景孚)가 내덕도의 땅을 명빈방(禛嬪房)으로부터 800냥에 매입한 것처럼 도서를 위조하여 남몰래 모두 팔아 버렸습니다. 명빈이 부모의 제사를 위해 마련해 준 자본을 박경부가 몰래 팔아 버려 거의 제사가 끊어지게 되었고 분묘의 벌목을 금할 수도 없습니다. 성상의 은덕을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박경부가 그 집안의 지손(支孫)으로서 선조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자본을 생각하지 않고, 도장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점차 매매하여 적손(嫡孫)으로 하여금 제사를 폐하고 집안을 패망하게 하였으니, 대단히 통분합니다. 본부에서 각별히 상세하게 조사하여 공정히 판결해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배천(白川)의 유학 김재응(金載凝)의 상언에, '저의 선산(先山)이 본군의 서면(西面)에 있어 9대조로부터 7대조까지 잇대어 매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족인 김성종(金聖宗)이 지파(支派)로서 그동안 2, 3차례 침범하여 매장하였으므로, 저의 아비가 상언하기 위해 왕복하는 도중에 한을 품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김성종은 선조의 패악한 자손일 뿐만 아니라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저의 집안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유사로 하여금 즉시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김재응의 말만 듣고서 갑자기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할 수는 없으니, 다시 도신으로 하여금 사관을 별도로 정하여 공정히 판결해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포천(抱川)의 유학 강필형(姜必亨)의 상언에, '저의 10대조인 반성위(班城尉) 강자순(姜子順)은 문종조(文宗朝)의 부마(駙馬)로서 숙경옹주(淑敬翁主)에게 장가들었는데, 숙경옹주는 후궁(後宮) 양씨(楊氏)의 소생입니다. 옹주가 일찍 사망하여 양주(楊州)의 군장리(群場里)에 장사 지냈으며, 반성위가 귀양 가 있던 곳에서 사망하여 돌아오자 옹주의 묘소에 합장하였습니다. 양씨도 옆의 산기슭에 장사 지냈는데, 짧은 비갈만 있었습니다. 자손이 타향을 전전하며 살았는데, 수십 년 전에 부근에 몰래 매장한 자가 있어서 관아에 정소하여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하였습니다. 연전에 또 용호(龍虎) 안에 몰래 매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양씨의 묘소에서 겨우 30보 떨어진 거리였고 옹주와 도위(都尉)의 묘소에서도 70보 떨어진 거리에 불과하였습니다. 즉시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

43) 도장 도서(導掌圖署) : 도장은 궁방(宮房)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는 전호(佃戶)에게서 소작료를 징수하여 궁방에 바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도장 도서란 이러한 도장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문서를 말한다. 도장의 권리는 타인에게 매매되기도 하였는데, 이를 도장 문기(導掌文記)라고 하였다. 명빈이 도장 도서를 써서 내준 것으로 보아, 내덕도 토지의 소유권을 박창완(朴昌完)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소작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최승희,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95, 454쪽》

옹주와 도위의 분산(墳山)은 일의 체모가 다른 분산과는 남다른데 이처럼 침범하여 매장하는 짓을 하였으니, 완악한 습속이 통분합니다. 우선 적간하여 법에 따라 엄히 감처(勘處)하고 기한을 정해 놓고서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하라고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44]"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남양의 유학 안종천(安宗千)의 상언에, '저희가 여러 대에 걸쳐 본부의 음덕리(陰德里)에 잇대어 매장하였는데, 정신옥(鄭信玉)이 같은 마을에 사는 상놈으로서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는 곳에 그의 어미를 밤을 틈타 몰래 매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령이 적간하여 그림으로 그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영문이 엄히 신칙하여 무덤을 파서 옮기라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무덤을 파서 옮기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성상의 은덕을 입어 즉시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한쪽의 말만 듣고서는 그대로 믿기가 어려우니, 다시 상세히 조사한 뒤에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하라고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파주(坡州)의 유학 이태용(李泰容)의 상언에, '제 아비의 분묘는 본주에 있어 5, 6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해년(1731, 영조7)쯤에 송천민(宋天民)이 뇌후에서 7보 되는 거리에 그의 형수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즉시 수령에게 정소하였더니, 수령이 적간한 뒤에 송천민에게 엄히 곤장을 치니, 송천민이 무덤을 파서 옮기겠다고 다짐을 바쳤으나, 지금까지도 끝내 무덤을 파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성상의 은덕을 입어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한쪽의 말만 듣고서는 신뢰할 수가 없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한 뒤에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判下上言三十九度于各該司該道

목 醴泉幼學李秉誠上言以爲渠之始祖熙寧君祀墳山在於廣州數十年前始乃尋得墓所則其下居民輩任自偸窆甚至於壓腦犯穴昨年園幸時諸宗相率上言則判付內以爲王子墳山與他自別民人逼葬在法當掘掘其當掘之冢飭其守護之事分付道臣之下敎若是申嚴則其時該邑臣則謂以年久不可掘構報營門該道臣則謂以所報俱有所據以此施行之意回關本邑故累呈營門稱以已決之訟不復聽理云冒死仰瀆亟令該道掘移偸窆之塚事乞蒙天恩水原童蒙崔豐錫上言以爲渠遭父喪方營葬於其曾祖墳舊壙墟之際山下居奴屬徐命人爲名漢遷其叔母年久之冢偸埋於其處故卽爲呈官嚴治掘去安葬渠父矣其後命人誣訴官家稱以渠之買得之地又以其前日掘去之棺暗埋於其父冢切逼之地故呈于本官則退斥不題渠母繼呈諺單又爲不受刑推渠之叔父枷囚渠之祖父督令掘移故不得已以二月掘移之意黽勉納侇而蒙放矣此是渠家三代傳來之地乃於起訟之後做出買得之說者萬萬無理特蒙天恩洞燭命人之奸狀嚴刑定配龍仁幼學金華健上言以爲其八代祖贈領議政悌甲墳墓在於忠州地再昨年本州居吳深偸葬其外祖於單靑龍三十八步之內吳深以李哥甥侄生長於其外家偸葬其外祖之時人或謂之曰忠臣墳墓豈可偸葬乎深攘臂大言曰吾必擔當泥灰隔板而用之最後聞變蒼黃下去呈官起訟吳深則自知理屈而逃避李家則托以寡居終不就訟更待何日而掘移乎乞蒙天恩卽令本道掘移南陽幼學安有孫上言以爲渠遭母喪營葬于家後園林千餘步之地矣竹山居洪大晉以 南陽洪哥宗孫稱以立案內率諸洪哥起訟于本府置渠落科速令掘移乞蒙天恩俾得安厝竝敎以分付地方官從公決給水原幼學李益鳴上言以爲渠以孝寧大君九世孫有獨子炔無子女夭死而五寸姪燋有四子故請其第三子德升爲渠亡子之後嗣則燋之長子德壽籍其母之不許抵死防塞乞蒙天恩依願特許水原故生員李延泰妻柳氏上言以爲渠夫昨年九月應製入格直赴庭試會試矣不幸身死無血屬亡夫四寸兄李延五第四子信命欲定嗣續而家力貧殘

44) 기한 …… 어떻겠습니까 : 상언한 사람은 3일 안에 호구 단자(戶口單子)를 가지고 현신해야 한다. 만일 3일 안에 현신하지 않으면 상언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大典通編 刑典 訴冤》

無路得定乞蒙天恩特許繼後竝教以自畿營移文禮曹 德山幼學李善運等上言以爲同縣居幼學金載鼎以大家勢族肆其氣燄挾其武斷乃於鄕校案山處客舍對案處壓臨之地敢爲入葬大抵以鄕校客舍之案山人莫敢生意而載鼎敢於此地生心欲葬則其時本官鄭厚祚以情面而許之始於厚祚罷歸後呈于監營則定査官 沔川郡守 鄭東杓 東杓又與載鼎相親故摘奸後報辭失實渠等不勝憤切又呈營門則更定査官於結城縣監 朴尙春査報大概以爲兩隻所見處泛鐵詳察則金冢巳方而鄕校則子方金冢午方而客舍則子方雖非正案而不可以斜見不謂之案山金冢之掘移斷不可已云云則其時道臣 朴宗岳題辭以爲詳見山圖果是壓臨也望見也然不可以一番摘奸決之更定査官於泰安郡守 申相文 相文査報以爲客舍則望立俱見鄕校則斜見而人居大村內禁葬自有法典況於邑基乎云云則道臣題辭以爲三度摘奸再度落科更無他論斯速掘移之意移文本官卽爲擧行云而載鼎無意掘移縣令 金直休到任後卽又呈訴頗爲嚴題責以秉彝而使之掘去而載鼎終不掘去故更呈于營門則前道臣 朴天衡嚴題使之掘移捉囚其奴而載鼎則不動一髮故又呈于營門今道臣 李亨元題辭有曰旣自士林中發論則但當無一言移遷經歲經年士林之議論也營邑之題飭也不啻屢屢而有若彼此隻相訟者然不勝駭然云而載鼎蠢迷萬無掘去之意終非受制於本官聽令於營門者而以法吏之所以處之者言之載鼎之理屈辭窮則不得不置之落科渠等之理直名正則不得不爲之決給而所謂嚴題督掘者終不免始嚴而終緩空言而無實此冢之掘移實無其期乞蒙睿斷敎以分付該道從公決給醴泉幼學李弘祖等上言以爲渠等七十五人俱是熙寧君 夷靖公衽十餘代遺裔也中罹家禍蕩柝孤孑二百年後始有渠等若爾人丘墓不守宗嗣無傳則祠版失墜香火久闕幸蒙天恩俾繼屢世之絕緒以幼學李秉誠特命承祀宗繼旣定奉祀有人則不容一日無祠版先祖臣祀以親王子有贈謚之功考諸邦典當爲不遷之祀揆以私情合有永世之享而今此累百年之後再造祠版誠是人家之變特施處分更命造成以伸情禮敎以往復宗簿寺考例決給○吏曹啓言廣州幼學尹鼎九上言以爲其父通政天殷今年八十七庚戌大慶陞資通政曾前近九十老人多蒙加資願蒙加資之典云矣士庶年滿九十始許加資乃是定式而其父加資旣出特恩而今又泛引年近九十之例請蒙恩資實關後弊請置之其猥越之罪令該曹科治敎以鄕曲之人不諒事例不是異事曉諭法典嚴飭放送又啓言高陽幼學韓應敏父通德郎樸年八十公州幼學申大勳父通德郎暾年八十二竝願蒙加資之典云矣士庶年八十者除一階事載在法典請竝施行從之又啓言仁川幼學李邦彦父將仕郎 和述年八十二新昌幼學柳禮泰父將仕郎春寬年八十二竝願蒙加資之典云矣士庶年八十者除一階事載法典而和述等昨年俱以年八十以上因其子上言旣蒙除一階則今又疊請亦甚猥越請置之從之又啓言都監哨官 洪普泳 永平良人李墨男等爲其父上言而限內不爲現身請上言內辭緣竝勿施允之○禮曹啓言西部幼學尹度喆上言以爲其先祖鈴原府院君壕墓在麻田 延安府夫人田氏墓在龍仁兩處碑碣俱奉中廟御諱故再昨冬因道臣箋奏麻田墓碑則特命建閣龍仁墓碣以本事之未及竝達尙未一體擧行今則事體異前莫重御諱旣爲尊閣於彼則惟此盛典豈可獨漏於此乎請令道臣修擧云矣鈴原府院君墓碑閣旣因道臣箋達修擧則延安府夫人墓碑閣似當一體修擧而係于恩典請上裁敎以所重一般分付道臣亦爲建閣又啓言咸興成佛寺僧守敬等上言以爲本寺雖已重建而碑閣尙未改竪請令攸司立碑記績云寺宇政建旣因前道臣箋達則今此立碑一欵亦令該道臣從便擧行之意請分付敎以自有所重令道伯重刻竪立又啓言忠州幼學鄭運會等上言以爲其先祖寧陽尉 敬惠公主墳墓合窆於高陽郡其實狀仍卽下敎於有司之臣則非但爲後孫傳信之地抑亦爲聖世榮冢之道乞蒙天恩云寧陽尉 敬惠公主之合窆於高陽雖使有公私文蹟之可信到今別無自朝家指揮之事且其榮冢之請旣係干恩亦涉糢糊請置之從之又啓言高城 楡岾寺僧宗洙等上言以爲金剛山天下名山楡岾寺金剛名刹也 世祖大王定以願刹創建殿宇蓋能仁寶殿冥府殿靈山殿極樂殿無竭殿泛鍾閣龍航殿解脫門天王門海藏殿山暎樓香積殿及僧舍十二房是已向在己卯戊子火變前古所未有之劫運也千餘間殿宇沒入灰燼猥蒙先大王盛德己丑年間命道臣 金孝大使之重建矣今則歲久年深榱桷朽落瓦覆破碎滿目愁慘乞蒙天恩俾得重修云矣旣是名山且有舊蹟一任頹圮亦自可惜請令道臣從便指揮俾無空廢之地敎以分付道伯取考先朝己丑重修已例使之修葺又啓言忠州進士洪宗幹上言

以爲渠嫡妾俱無子其同姓十二寸兄起謙第四子聖八欲爲立後而起謙夫妻俱歿與者無人不得循例呈狀禮斜乞令該曹稟處云又啓言報恩幼學李謙麟上言以爲其族弟自平嫡妾俱無子夫妻俱沒其同姓十四寸弟商梅弟二子朝燁欲爲立後而商梅夫妻亦爲俱沒與受無人不得循例呈狀禮斜乞令該曹稟處云又啓言忠州幼學洪晉輔上言以爲其十寸弟羽輔嫡妾俱無子其同姓八寸兄雨輔第二子舒浩欲爲立後而羽輔夫妻俱歿與者無人不得循例呈狀禮斜乞令該曹稟處云又啓言陽城前僉知 吳琛上言以爲其同姓十寸孫允常嫡妾俱無子其同生弟熙常長子奎曾欲爲立後而允常夫妻俱歿受者無人不得循例呈狀禮斜乞令該曹稟處云又啓言龍仁幼學朴廷臣上言以爲其族侄時遇嫡妾俱無子夫妻俱歿其同生弟時昌第二子龍慶欲爲立後而時遇夫妻俱沒受者無人不得循例呈狀禮斜乞令該曹稟處云又啓言昌平幼學鄭杓上言以爲其族侄宅煥嫡妾俱無子其同姓十二寸兄孝煥第五子在贊欲爲立後而宅煥夫妻俱役受者無人不得循例呈狀禮斜乞令該曹稟處云此等人特許立浚既有受敎請竝許之從之又啓言西部故宣傳官 李潤培妻黃氏上言以爲早年喪夫無一嗣續亡夫再從兄故學生潤馥有四子故懇乞其第三子興錫立爲亡夫之後而潤馥之妻終不冒許故有此呼籲潤馥以同堂之親既有四子則其妻之不冒許與揆以事情極爲不當似當許施而係是人倫重事請上裁從之又啓言西部故府使 趙德洵妻沈氏上言以爲其從侄趙學閔子興乭欲爲立後於其子學愚而 德洵之兄德洙有孫基仁兄弟興乭之祖德洞以爲基仁兄第中當爲學愚之後終不許給故有此呼籲此事之上煩天聽今爲五六次矣大抵德洞之持難專在於基仁兄弟之爲血孫而基仁兄弟俱有奇疾前後該堂既已目見則沈氏之不欲以此立浚不是異事且趙明翼既是宰臣則其在事面恐不可使之絕嗣似當許施而事係人倫請上裁從之又啓言因畿營移文卽見李益鳴上言則爲其立浚事也凡繼後之法彼此俱從情願而生家如或不許則有難勤定而▣既有生前之諾似當許施而係是人倫重事請上裁從之又啓言因畿營移文卽見李延泰妻柳氏上言則爲其立後事也延泰生時雖不定養而延五既是同堂之親且有四子則其中一子之許與事理當然而既無生家之諾事係人倫請上裁從之○兵曹啓言義州閑良黃鳳憲上言以爲渠等五十五名居在古津江下流而庚戌六月修築堌畓山雨如注一島沈水無路全生之際折衝崔秀雄 金采起閑良韓今琦等目擊危急毁舍材木結筏拯出面任報本府渠等往訴巡營以捨生活人極爲嘉尙爲題金龍斌等上言以爲渠等行過古津江時値春雨加以冰泮雪消津江漲溢男女七十名落在波濤之際折衝崔慶心閑良金采喆 采一兄弟盡力拯出面任報本府以採實處之爲題竝得蒙天恩云矣拯活人命之事登時狀聞之意年前飭敎不啻申明而崔秀雄等三人崔慶心等三人之極濟人命明白無疑則本府報巡營當爲狀聞請賞而到今經年之後冒煩天聽極涉猥越而其在勸來後之道不可以猥屑置之請令本道査實狀聞後稟處從之○刑曹啓言安東喪人柳井祚上言以爲其父弘春上年十月二十九日被府使 金履翼毒杖十一月十七日竟至致命矣其父以故相成龍之七代孫凡於奉行官令罔敢或懈而去年當納還祖不過四石零而開倉後先納二石餘數亦將備納矣忽入於推捉之中官差到家知其已納半數以此還報則履翼大怒又定別差使之捉來而其父已於曉頭畢納餘數持尸文面訴畢納之狀則履翼盛怒曰汝前何不卽納卽命刑推十五度殞命於受刑十有八日母金氏勺水不入迺於十二月竟至自盡殮時得一血書於衣篋中其書曰冤讎未報而自盡一家協力願報此讎云云數旬之內父母竝死於匪命豈合一日生世而渠若又從以死則不忍共戴之讎其將溘然而任之乎且念十月非畢糴之時畢納在就捕之前則一箠半楚猶爲濫刑況加以刑殺之律乎蓋自近日道內官長憑托公事毒痛士林最是安東境內橫罹禍殃者至爲三百餘人上舍而被棍辱者有之孕婦而被蹴死者有之十耋之老十歲之兒亦施刑棍一境嗷嗷不保朝夕而其中渠一門與渠父同日受刑者已至三人苟究其故所怒之不在於糴可知履翼之傳令有曰安東之中河回爲尤甚其他所謂士夫盤據處皆欲慕效自歸化外此豈但目前之憂哉云河回卽渠之所居里名也以此觀之所怒之在於河回而不以糴事也明矣渠以凶人履定之弟殺越人命便成家法殺人者死國有三尸若係無罪而濫刑則雖以官長殺土民亦無饒貸之理今此履翼虐毒之擧雖以糴事爲托渠父被刑既在畢納之後則此豈非私事殺人法外用刑者哉在昔肅廟朝兪信一以守令殺人而成獄竟死獄中伊時有信一生出獄門國無法也之聖敎前聖後聖其揆則一履翼之償命必不待渠之畢

說矣渠年纔十六罹此千古所無之變懷抱血書欲爲鳴冤已自歲前來伏闕外而軒貂絡繹視若無睹忽有無賴下隷十輩成群稱以漢城判尹 金文淳分付逐出於東大門外拘囚店舍水火不通便溲亦禁將至逼殺之境竊自念父讎未復殘命先殞則不孝之罪尤所難容計出萬死變服脫身月正元日冒死擊錚伏蒙天恩特垂淸問退伏法曺歷日等候仁天愈邈徹冤無望玆又泣血哀籲伏乞亟行償命之典得報殺父母之讎云矣井祚以十六稚弱之年渠父身死之後哀怨弸中認作眞箇血讎必欲甘心乃已滿紙原情無非詬罵土主之說有非就事論事平說道理之意揆以尊命吏慮後弊之道恐非細故且施刑旣由違令訊杖不過十五則固不足爲致命之端旣承上言回啓之命請上裁敎曰因催科用刑似非法外無論邂逅與否其妻又下從爲其子者之心豈不如此但其事實不可以其所訴決處嚴飭道伯親執詳査狀聞後稟處○漢城府啓言沔川幼學李楨國上言以爲其十二代祖麗朝名正言 李存吾墓在開城府古東門外子坐原壬辰兵燹子孫轉蓬遐鄕中間失傳辛亥十月門長彦國始省塋兆則松都居朴性源毁龍尾破階砌累累入葬而古老有言墓碑中折只有諱字昭然而移埋墓下云故呈于畿營有墓碣出現之題到付本府請其掘見本官堅執不許而朴哥自知理屈同相守護之意成手記亦請對擧文字則彦國以寬恢之意書給而舊譜文跡旣明則爲子孫向先之道不無推墓掘移之意乞蒙天恩亟爲掘移矣李存吾卽是麗季名臣後人犯葬至毁龍尾指點之人猶足咨嗟況其子孫之心宜欲必掘而墓碣埋置之說只憑古老之相傳則墓碣未尋之前俱是依俙之跡日後如得墓碣則卽令摘奸一一掘移之意請分付道臣從之又啓言文義幼學河櫂上言以爲其十三代祖故領議政 文孝公演墓在仁川亦有其先祖及夫人李氏影宇又有孝行旋閭碑郡人申崇者偸埋其祖母於影堂遺址而距其先祖冢爲九十七尺故去年正月上言下本道査處本府査報以申崇家所葬今爲六十八年謂以一百八十年且曰高玄墳墓廢祭而他人侵葬二三年後勿聽之文昭載通編爲報則營門以爲文孝公偉功茂績赫赫照人耳目豈敢歇後云本府則見欺於申哥有此爽實之報矣只信申哥之誣告使當掘之冢遷延至今乞蒙天恩卽爲掘移云矣故相河演之豐功偉烈載在史案申崇則以爲葬埋旣滿二百年河櫂則以爲庚午以後所埋申哥之變幼祖曾進退年條已極痛惡卽令詳査入葬之年條刻期掘移此後則俾無他人犯葬之意請分付道臣從之又啓言北部閑良朴瑞謙上言以爲其曾祖朴孝健卽禛嬪之父也禛嬪出宮後招致其祖朴昌完許給長興 來德島免稅處書下導掌圖暑曰不念仕宦以此不絕父母香火而同生兄弟保存宜當其年秋渠祖同生弟昌寬來言曰來德島導掌吾自往收則似無遺漏之慮云故使之下往而圖暑亦爲持去矣每年收稅都執不給圖暑亦不還送延齡君聞此事招致昌寬責其不義至有無異木石之敎父兄至親間相訟有關風化置之矣渠之家力蕩敗禛嬪父母祭日一不助需其六寸景孚以八百兩買得於禛嬪房樣以僞造圖暑潛自都賣禛嬪爲父母香火之資爲景孚潛賣幾絕香火墳土不能禁伐乞蒙天恩云矣景孚以其支孫不念祖先香火之資所謂導掌仍作已物轉相買賣至使嫡孫廢祭敗家萬萬痛駭請自臣府各別詳査從公決給從之又啓言白川幼學金載凝上言以爲其先山在於本郡西面自九代祖至七代祖繼葬之地而同宗聖宗以支孤前後犯葬至再至三其父上言往來道路飮恨而死聖宗非但爲先祖之悖孫亦爲渠家不共戴天之讎也乞令有司卽許掘移云矣不可以載凝一邊之言遽使掘移請更令道臣 別定査官從公決給從之又啓言抱川幼學姜必亨上言以爲其十代祖班城尉姜子順卽文宗朝駙馬而尙淑敬翁主翁主卽後宮楊氏之所生也翁主早歿葬于楊州群場里班城尉自謫所以喪歸附於翁主墓楊氏亦葬于傍麓只有短碣子孫轉寓他鄕數十年前有偸葬于傍近者至有呈官掘移之擧年前又有一人偸葬於龍虎內距楊氏墓纔爲三十步距翁主都尉墓亦不過爲七十步伏乞卽使掘移云矣翁主都尉之墳山事體與他自別而有此犯葬之擧者頑習可痛爲先摘奸照法嚴勘刻期掘移之意請分付道臣從之又啓言南陽幼學安宗千上言以爲其累代繼葬於本府陰德里 鄭信玉以同里常漢乘夜偸葬其母於坐立俱見之地本官之摘奸圖形營門之嚴飭掘移非止一再而無意掘移乞蒙天恩卽令掘移云矣一邊之說有難準信更爲詳査後掘移之意請分付道臣從之又啓言坡州幼學李泰容上言以爲其父墳墓在於本州五六年無弊守護矣辛亥年間宋天民葬其兄嫂於腦浚七步之內卽呈本官摘奸後天民嚴棍以掘去之意納供矣至今終不掘移乞蒙天恩使之掘去云矣一邊之言不可取信請令道臣詳査後掘移從之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4일(무신)

강형조가 격쟁인(擊錚人)의 원정에 대해 회계(回啓)하였다.

목○ 형조가 아뢰기를, "교하(交河)의 동몽(童蒙) 이언해(李彦海)의 원정에, '저의 아비 이양오(李陽五)는 성종의 여덟 번째 왕자인 익양군(益陽君) 이회(李懷)의 6대손으로,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 봄에 과거에 급제하여 계묘년(1783) 겨울에 선천(宣薦)을 통과하였는데, 정미년(1787)에 선전관청(宣傳官廳)이 교하 풍헌(交河風憲)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선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풍헌의 아들이라는 말도 그럴 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저의 할아비인 학생(學生) 이관일(李貫一)과 군수 김동연(金東淵) 사이에 일찍이 원망을 살 만한 일이 있었는데, 김동연이 보복하는 데 급급하여 저의 할아비를 풍헌으로 차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후손은 귀할 뿐만 아니라 풍헌 따위로 차출할 수 있는 지체가 아니니, 잠시 수령이 분풀이를 했던 일로 문호(門戶)의 흠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술년(1790) 행행(行幸) 때 어가(御駕) 앞에서 원통함을 호소하니 판부하시기를, 「선파(璿派)로서 까닭 없이 선천에서 제외된 것은 원통함을 호소하기에 충분하니[45], 병판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처결해 주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천을 회복시키지 않고 있으니, 지극히 원통한 마음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삼가 호소합니다. 선천을 회복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선전관청이 공론(公論)에 따라 선천에서 제외하였으니, 자기 아비를 위해 원통함을 호소했다고 해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원정은 시행하지 말고 법대로 엄히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안동의 상인(喪人) 유정조의 원정에, '저의 아비 유홍춘이 당연히 납부해야 할 환조의 납부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부사 김이익에게 가혹한 곤장을 맞고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으며, 저의 어미 김씨도 자진하였습니다. 성상의 은덕을 입어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그가 아비를 위해 원통함을 호소하는 마음에서 김이익을 목숨과도 바꿀 철천지원수로 여기고 성상께 하소연하기까지 하였으니, 그가 말을 할 때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곡의 상환과 관계된 일로 처벌할 때는 딱히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를 마친 뒤에 형벌을 시행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애당초 유홍춘이 명령을 어기고 출두하지 않다가 재차 차인을 보낸 뒤에야 왔으니, 수령으로서 일벌백계의 정사를 시행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15대의 신장(訊杖)을 친 것은 목숨을 잃을 정도의 형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전례만을 따라 공초(供招)를 받아들여서 지방관에게도 죄가 있다고 몰아가게 하는 것은 후일의 폐단을 염려하는 방도가 아닌 듯합니다. 게다가 한편으로는 상언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격쟁을 한 것은 매우 무엄한 일입니다. 모두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동래(東萊)의 유학 이명신(李命臣)의 원정에, '본부가 해마다 왜관(倭館)에 지공(支供)하는 가미(價米)가 2000여 섬인데, 1섬당 3냥으로 환산하여 작전(作錢)한 뒤에 온갖 물품을 무역해서 날마다 지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년에는 물가가 전에 비해 치솟았으므로, 한 차례 색리(色吏)와 고자(庫子)의 직임을 거친 자는 누적된 포흠(逋欠)을 감당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환곡에 손을 댑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사이에 가산(家産)을 팔고, 해마다 아전(衙前)과 관노(官奴)에 대한 족징(族徵)이 있는데도 오히려 부

45) 선파(璿派)로서 …… 충분하니 : 원문은 '以璿派稱冤 乃是足矣'인데, 앞뒤의 문맥이 통하지 않아 《일성록》 정조 14년 10월 3일 전교에 '以璿派 無端拔薦 足爲稱冤之端'이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이와 같이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족할 것을 걱정합니다. 그리하여 감옥 안에 오래도록 갇혀 있는 자도 있고, 또 종으로 충정된 자도 있고, 또 목을 매어 죽은 자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더욱 지극히 원통한 일이 있습니다. 쌀 1섬을 3냥으로 작전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부족분에 보충하도록 하였는데, 막비(幕裨) 중에서 차출된 감관(監官)이 그 남는 것을 가져다가 차지합니다. 작전하고 남는 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법은 제도를 처음 만들 당시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만들어진 잘못된 규례입니다. 근래에 쌀값이 비싸진 이후로는 항상 잉여가 생기지만, 막비가 이를 가져가기 때문에 아전과 관노들은 감히 원통하다는 말도 못하고[46] 폐해만 더욱 심해졌습니다. 전 부사 조엄(趙曮)이 아전과 관노의 포흠을 깊이 걱정하여 본미(本米)로 색고(色庫)에 내주어 색고의 원통함을 없애게 하고, 절목(節目)을 작성하여 영구히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를 폐하고 행하지 않아 온갖 폐단이 층층이 발생하였습니다. 변방의 얼마 안 되는 쇠잔한 백성 중에 이로 인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어찌 가엾지 않겠습니까. 저는 70세로, 발을 싸매고 서울로 올라와 작년 봄에 비변사에 정소하니, 비변사에서 신칙하는 관문을 보냈고 본도의 순영에서도 누차 관문을 보내 신칙하였으나, 매번 감관들에게 저지당하여 폐단을 바로잡을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처럼 법가(法駕) 앞에서 호소하니, 일체 고례(古例)에 의거하여 본미를 내주어 폐단 없이 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사(四件事)[47]가 아닌데도 아무렇지 않게 격쟁하였으니, 백성의 습속이 놀랍습니다. 율문을 상고하여 엄하게 감처하되, 본 사안은 백성의 고통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처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영광(靈光)의 임자도(荏子島)에 거주하는 백성 하재홍(河載弘)의 원정에, '임자도는 본래 사복시의 목장(牧場)으로, 기르는 말이 100여 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진(鎭)을 설치한 뒤로 온갖 폐단이 한꺼번에 생겨났습니다. 말을 기르는 곳에 진을 설치한 곳은 이 임자도뿐인데, 둔전(屯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진의 부역(賦役)에 응하고 말을 기르는 사람의 자손으로 수군(水軍)에 충정하니, 이곳에 거주하는 가엾은 백성은 생활할 길이 없습니다. 본도(本島)의 평탄하고 넓은 곳은 주위가 40리로, 논을 만들면 수백 여 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선희궁(宣禧宮)에서 이곳을 절수(折受)받으려고, 말을 압해도(押海島)로 옮기겠다는 뜻으로 사복시 관관에게 수본(手本)을 보냈는데, 압해도의 백성들이 다 말을 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만약 말을 모두 압해도로 옮기기가 어렵다면, 본도와 아주 가까운 곳에 4개의 섬이 있으니 4개의 섬에 나누어 두면 각각 20여 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임자도는 백성들이 경작하여 먹고살도록 허락하는 일에 대해 성상의 은덕을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감히 자질구레한 일을 가지고서 성상께 호소하는 짓을 한 것은 매우 무엄합니다. 율문을 상고하여 감처한 뒤에 도신으로 하여금 본 사안을 상세히 조사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모두 윤허하고 전교하기를, "근래에는 너무도 외람되게 격쟁을 하여 어가 앞의 매우 가까운 곳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소란을 떤다. 멀리 바라다보이는 곳에서 법대로 격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시행하지 말라고 신칙하는 하교가 있었는데[48], 또 어찌하여 이처럼

---

46) 아전과 …… 못하고 : 원문은 '吏民輩莫敢稱冤'인데, 앞뒤의 문맥을 참고하여 '民'을 '奴'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47) 사건사(四件事) : 원래 백성이 신문고(申聞鼓)를 울려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사안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억울하게 형벌을 당한 일, 아비와 자식의 분별에 관한 일, 정처(正妻)와 첩의 분별에 관한 일,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의 판별에 관한 일 등이다. 《續大典 刑典 訴冤》

48) 멀리 …… 있었는데 : 백성들이 사소한 일로도 함부로 격쟁하는 일이 발생하자, 정조가 도성 안

많은 건수를 이송하였는가. 이는 고훤 도사(考喧都事)가 신칙하지 못한 탓인 듯하니, 우선 엄하게 추고하라. 형조의 하속(下屬)들이 받아 갈 때에 또한 어찌 간악한 폐단이 없었다고 장담하겠는가. 경이 사실을 조사하여 징계하라. 이언해의 경우는 매우 외람되기는 하지만, 경이 무장(武將)이므로 공정하게 판결해 주어 더 이상 호소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유정조의 경우는 한 가지 일로 두 차례 바쳤으니, 법으로 볼 때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의 원정을 들어 보니 사정은 딱하다. 상언에 대해서만 회계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해남(海南)의 양인 서성빈(徐聖彬)의 원정에, '저의 외조모 갑진(甲辰)과 어미 택례(澤禮)는 경기에 사는 이동빈(李東彬) 집안의 여종으로, 갑진의 나이 17세가 되었을 때 돈을 바치고 속량(贖良)되어 이제 83세가 되었습니다. 이는 속량을 증명하는 문권과 관아에서 발급한 문서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천만뜻밖에 영암의 노비 색리(奴婢色吏) 김긍철(金亘喆) 등이 호적의 호구를 사사로이 조작하여 관가에 무소하고[49] 온갖 방법으로 침탈(侵奪)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영문에 의송(議送)을 바치니, 영문에서 조사를 행하여 해당 색리를 엄히 가두고 침탈하지 못하도록 신칙하였으며, 「전후의 문권을 즉시 내주라.」라고 제사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체차되어 돌아간 뒤에 끝내 문권을 내주지 않고 돈과 뇌물을 전보다 더 심하게 요구하니, 저희 부자와 형제는 안정하고 살 수가 없어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성상의 은덕을 입어 본도로 하여금 명확히 조사하여 분간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서성빈은 선조(先朝)의 수교(受敎)에 따라 우선 풀어 주었습니다만, 이처럼 공초하였으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해당 도에 분부하여 즉시 공정히 판결해 주게 하라." 하였다.

강 刑曹以擊錚人原情回啓

목該曹啓言交河　童蒙　李彦海原情以爲其父陽五以成廟第八王子益陽君懷六代孫丙申春登科癸卯冬越宣薦丁未年該廳以謂交河　風憲之子至於拔薦蓋風憲之說亦有苗脈其祖學生貫一與郡守　金東淵曾有嫌怨東淵急於報憾差出風憲帖旣是金枝玉葉非風憲相當之地處則暫時官長逞憾之事不當爲門戶之疵而庚戌行幸時駕前鳴冤則判付內有曰以璿派稱冤乃是足矣令兵判査實決處而尙未復薦至冤所在冒死仰籲伏乞使之復薦云矣該廳拔薦宜由公議則不可以爲其父訟冤有所容貸請原情勿施照法嚴處又啓言安東喪人柳井祚原情以爲其父弘春以當納還祖之拒納被府使　金履翼毒杖竟至致命其母金氏又爲自裁乞蒙天恩得報殺父殺母之讎云矣渠以爲父訟冤之心認作血怨骨讎至徹天聽則其所爲說宜無所不用其極而事係捧鞫旣無早晩施刑於畢納之後者雖爲執言之端初旣違令不就始來於再推之後守土之官或施懲一之政者不是異事十五度之訊不是致命之刑則循例捧供以入俾歸之地方官不可無罪之科者恐非慮後弊之道且一邊上言一邊擊錚極涉無嚴請竝置之又啓言東萊幼學李命臣原情以爲本府每年倭館支供價米爲二千餘石而每石以三兩折定作錢貿易百種之物以爲日復日支供矣近年物價比前騰貴色吏庫子一經此任者積逋無以支當不得不犯手於還穀一年之間賣家鬻產吏奴之徵族無年無之猶患不足有獄中久囚者又有爲奴定屬者又有結項致斃者其中尤有所至冤者米一石以三兩作錢而不無餘剩則以此爲無面添補之地而親幕中差出監官取食其剩蓋作錢取剩之法非設立時所定而卽後來之謬規也近來米貴以後無不餘剩以親裨之故吏民輩莫敢稱冤爲弊益深矣前府使　趙曮深念吏奴之逋欠以本米出給於色庫俾除色庫之冤成節目以爲永久施行之地矣其後廢而不行百弊層

에서는 사방으로 통하는 대로(大路) 외에 골목이나 다리 같은 곳에서 격쟁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리고 도성 밖에서는 사건사에 해당하는 상언이나 격쟁이라 하더라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같은 사안으로 재차 상언하거나 격쟁할 경우에는 초계(抄啓)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日省錄 正祖 15年 2月 29日》

49) 관가에 무소하고 : 원문은 '誣訴家官'인데, 앞뒤의 문맥을 참고하여 '家官'을 '官家'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生邊門之數少殘民因此而流亡者首尾相續豈不哀哉渠以七十之年裹足上來昨年春呈備局自備局申飭行關且本道巡營屢次關飭每被監官之沮遏釐弊無期敢此呼籲於法駕之前伏乞一依古例出給本米以爲無弊支供之地云矣事非四件無難鳴金民習駭惋考律重勘而至於本事係是民隱請令道臣詳査決處又啓言靈光荏子島居民河載弘原情以爲荏子島本是司僕寺牧場而牧馬百餘匹矣一自設鎭之後百弊俱生惟此荏子島設鎭於牧馬之處以屯田所出應鎭役以牧子子枝克水軍哀此居民無路生活而本島平衍處幅員爲四十里作畓則當爲數百餘結昨年自宣禧宮將欲折受移馬押海島之意手本本判矣押海民不願盡受故置之若以盡移於押海爲難則本島至近之處有四島分置四島各不過二十餘匹矣荏子島則許民耕食事乞蒙天恩云矣敢將屑越之事至爲籲天之擧者極爲無嚴考律勘處後本事則請令道臣詳査處之竝允之敎曰近來擊錚猥濫太甚駕前咫尺無難喧聒除非遠望處如法爲之者外一竝勿施之意旣有飭敎則又何如是多數移送乎此蓋考喧都事不能申飭之致爲先從重推考曹屬受去之際亦安知無奸弊乎卿其査實懲治而李彦海則猥越雖甚卿是武將從公決給俾無更訴之弊柳井祚事一事兩呈法當勿施聞其原情情則可矜只以上言回啓又啓言海南良人徐聖彬原情以爲其外祖母甲辰母澤禮卽京畿 李東彬家婢子而甲辰年至十七已爲納價贖良今至八十三歲贖券及官斜文蹟昭昭而千萬意外靈巖奴婢色吏金亘喆輩私自花名誣訴家官百般侵漁故不得已呈議送于營門自營門行査嚴囚該吏申飭其侵漁以前後文券卽爲出給題送矣營門遞歸後終不出給文券索錢徵賂有甚於前日渠之父子兄弟不能安土莫知所正乞蒙天恩令本道明査分揀云矣徐聖彬依先朝受敎爲先放送所供如此請上裁敎以分付該道俾卽從公決處

정조 17년 계축 (1793, 건륭58)

1월 14일(무신)

강입직

목검교직각 남공철(南公轍)

검서관 이공무(李功懋)

제6차 1794년(정조 18) 1월 12일~15일(4박 4일)

1. 조선왕조실록

정치/왕실

현륭원에 참배하기 위해 과천 행궁에서 유숙하다

현륭원에 참배하기 위하여 이날 신시에 대궐을 출발하였다. 지나는 길에 관왕묘(關王廟)를 들러 **망해정(望海亭)**에서 조금 머물렀다가 과천(果川)의 행궁(行宮)에 당도하였는데 날이 아직 저물지 않았다. 전교하였다.

"본현(本縣)에서 유숙하여 앉아서 첫닭이 울기를 기다려 떠나려고 하는데, 백성들에 관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더구나 이런 해를 만났으니 당연히 경축하는 뜻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묵은 환곡의 1년 몫을 탕감하여 주도록 하라."

○庚子/將拜**顯隆園**, 是日申時出宮, 歷臨關王廟, 至**望海亭**少駐. 抵果川行宮, 日未暮矣. 敎曰: "宿次本縣, 坐待鷄鳴欲前進, 而一念耿耿於民事. 況逢此年, 當有示意. 舊糴一年條蕩減."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1월 12일(경자) 1번째기사>

정치/군사

장용영·훈련 도감·금위영의 많은 군사들이 반과의 금령을 어겨 문죄하다

장용영·훈련 도감·금위영의 세 군영에 속한 부대에서 반과(盤果)에 대한 금령을 범한 군사가 많았는데, 문관 출신의 비변사 낭청으로서 부정을 사찰하는 사람에게 적발되어 보고되었다. 세 군영의 장신(將臣)들을 잡아들여 매우 심하게 꾸짖고 내보냈다.

○壯勇·訓鍊·禁衛三營, 部曲多犯盤果之禁, 爲文備郎摘奸者所執奏. 拿入三營將臣, 切責退出.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1월 12일(경자) 2번째기사>

정치/왕실

정조가 사천행궁에서 잠시 쉬고 수원행궁에 도착하였다

첫닭이 울자 어가가 과천의 행궁을 떠나 사천(沙川) 행궁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가 수원 행궁에 도착하였는데 날이 아직 밝지 않았다.

○辛丑/鷄初鳴, 駕發果川行宮. **至沙川行宮小憩, 抵水原行宮**, 天未曉矣.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1월 13일(신축) 1번째기사>

정치/왕실

현륭원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다

어가가 **현륭원**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였다. 향(香)을 피우려 할 적에 상이 간장이 끊어질 듯 흐느껴 울었다. 겨우 의식을 마치고 이어 원(園)에 가서 봉심하였는데, 상이 더욱 오열하며 눈물을 줄줄 흘리자 곁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울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영의정 홍낙성과 영중추부사 **채제공**이 나와 아뢰기를, "지금이 바로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 때입니다. 신들이 등으로 업어야겠습니다." 하고는, 그대로 보여(步輿)를 내오자 상이 이를 물

리치고 곁에 모신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원에서 내려와서야 비로소 보여를 타고 재전(齋殿)으로 돌아왔다.
대신·각신과 약원이 의관을 거느리고 들어와 진맥을 하고 소합원(蘇合元)을 드렸다. 낙성이 아뢰기를, "재전은 조섭하는 데에 불편하니 행궁으로 돌아가 지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곳에서 하룻밤 자면서 사모하는 정성을 조금이나마 펴려고 하니 경들은 다시 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점심 때가 지나서 상이 편여(便輿)를 타고 구역 안의 여러 산기슭과 새로 정한 화소(火巢)를 두루 살펴보고 옛 향교의 터에 올라 각신 정민시 등에게 이르기를, "이곳의 지형이 매우 아름답다." 하고, 훈련 대장 **조심태**에게 이르기를, "오늘 여러 산기슭을 살펴보면서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나가며 두루 다 돌아보았는데, 새로 심은 나무들이 거의 모두 울창하게 자랐다. 지금부터는 다시 나무를 심느라 큰 힘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였다.
날이 저물어 재전으로 돌아와서는 예방 승지 이면응(李冕膺)과 대축(大祝) 어용겸(魚用謙)에게 가자하라고 명하였다.
○駕詣**顯隆園**, 行酌獻禮. 將上香, 上摧咽掩抑, 僅成禮. 遂詣園奉審, 上益嗚咽, 玉淚汍瀾, 左右皆泣, 不知所爲. 領議政洪樂性·領中樞府事**蔡濟恭**進曰: "此存亡之秋也. 臣等當背負矣." 仍進步輿, 上却之, 爲左右所扶下園, 乃進輿, 還詣齋殿. 大臣閣臣及藥院, 率醫官入診, 進蘇合元. 樂性曰: "齋殿不便於調攝, 伏願還御行宮." 上曰: "留此一宿, 少伸瞻依之忱. 卿等勿復言." 日過午, 上以便輿, 遍審局內諸麓及新定火巢, 登舊鄕校基, 謂閣臣鄭民始等曰: "此地形局甚佳矣." 謂訓將**趙心泰**曰: "今日看審諸麓, 由左以右, 無處不到, 而新種樹木, 幾皆鬱密. 從此更不以植木大費力矣." 日暮還御齋殿, 命禮房承旨李冕膺·大祝魚用謙加資.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1월 13일(신축) 2번째기사>

정치/왕실

수원 행궁에서 유생과 무사를 시취하여 직부전시하게 하다

수원 행궁으로 돌아와서 본부의 유생과 무사를 시취(試取)하였다. 부(賦)의 제술에서 수석을 차지한 민영조(閔榮祖)와 무예에서 수석을 차지한 송복동(宋福同)을 모두 전시에 곧장 응시하게 하였다.
○壬寅/還次**水原行宮**, 試取本府儒武. 賦居首閔榮祖·武居首宋福同, 竝直赴殿試.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1월 14일(임인) 1번째기사>

정치/군사

비변사 낭청인 홍대협 등이 반과의 금령을 위반한 자를 잡아 보고하다

문관 출신 비변사 낭청인 홍대협(洪大協)·정만석(鄭晩錫) 등이 어가를 수행하는 제사(諸司)에서 마부와 말을 너무 많이 세운 것과 반과에 대한 금령을 위반한 자를 잡아서 보고하자, 유사에게 명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자 내각 제학 정민시가 아뢰기를, "모든 군영의 군사로서 요패(腰牌)만 있고 장표(掌標)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비변사의 낭청이 모두 너무 많이 세운 것으로 논하였는데, 군사들은 요패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장표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장표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세웠다고 한다면 많은 군사들이 누군들 장표가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文備邊郎洪大協·鄭晩錫等, 以隨駕諸司人馬濫把, 盤果冒禁者執奏, 命有司科治. 內閣提學鄭民始奏曰: "諸營軍之有腰牌而無掌牌者, 備郎皆以濫把論, 軍兵有腰牌, 故初不給掌標. 今

以無掌標而謂之濫把, 則許多軍兵, 熟非無掌標乎?"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1월 14일(임인) 2번째기사>

경제/건설

수원성 축조에 대해 하명하다

상이 높은 곳에 올라 고을터를 바라보고 곁에 모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곳은 본디 허허벌판으로 인가가 겨우 5, 6호였었는데 지금은 1천여 호나 되는 민가가 즐비하게 찼구나. 몇 년이 안 되어 어느덧 하나의 큰 도회지가 되었으니 지리(地理)의 흥성함이 절로 그 시기가 있는 모양이다."

하였다. 인하여 **팔달산(八達山)**에 올라 성 쌓을 터를 두루 살펴보고 상이 이르기를,

"이곳은 산꼭대기의 가장 높은 곳을 골라 잡았으니 먼 곳을 살피기에 편리하다. 기세가 웅장하고 탁트였으니 하늘과 땅이 만들어낸 **장대(將臺)**라고 이를 만하다. 지금 깃발을 꽂아놓은 곳을 보니 성 쌓을 범위를 대략 알겠으나 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인가를 철거하자는 의논은 좋은 계책이 아닌 것 같다.

현륭원이 있는 곳은 화산(花山)이고 이 부(府)는 유천(柳川)이다. 화(華) 땅을 지키는 사람이 요(堯)임금에게 세 가지를 축원한 뜻을 취하여 이 성의 이름을 화성(華城)이라고 하였는데 화(花)자와 화(華)자는 통용된다. 화산의 뜻은 대체로 8백 개의 봉우리가 이 한 산을 둥그렇게 둘러싸 보호하는 형세가 마치 꽃송이와 같다 하여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유천성(柳川城)**은 남북이 조금 길게 하여 마치 버들잎 모양처럼 만들면 참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어제 화성과 유천의 뜻을 이미 영부사에게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성을 좁고 길게 하여 이미 버들잎 모양처럼 만들고 나면 북쪽 모퉁이의 인가들이 서로 어울려 있는 곳에 세 굽이로 꺾이어 천(川) 자를 상징한 것이 더욱 **유천**에 꼭들어맞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아(貳衙)**에 이르러 배종하는 시임과 원임의 대신 홍낙성 등을 소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까 **팔달산**에서 멀리 바라보니 영부(營府)가 웅장하고 여염(閭閻)이 즐비하여 참으로 큰 도회지였다. 5, 6년 안에 취락을 이루고 도회지를 형성하는 것이 이렇듯 빨랐으니 내 마음의 기쁨은 진실로 한량없다. 성터의 형세에 대해서는 이제 막 감독하는 당상관에게 하교하였다. 이 성을 쌓는 것은 장차 억만 년의 유구한 대계를 위함에서이니 인화(人和)가 가장 귀중한 것이다. 또 먼 장래를 생각하는 방책을 다해야 하는데, 아까 성터의 깃발 세운 곳을 보니 성 밖으로 내보내야 할 민가가 있었다. 어찌 이미 건축한 집을 성역(城役) 때문에 철거할 수 있겠는가. 이는 인화를 귀중히 여기는 뜻이 아니다. 성지(城池)의 남쪽과 북쪽 사이의 거리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가까운 결점이 있으니, 먼 장래를 생각하는 방도에 있어 더욱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화산과 **유천**이 서로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 나라의 억만 년 유구한 태평 시대를 여는 기업이 될 것이다. 성을 쌓을 때 버들잎 모양을 본뜨고 내천 자의 형태를 모방하여 구불구불 돌아서 기초를 정하고 인가들도 성 안에 들어와 살게 해야 할 터인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낙성 등이 아뢰기를, "전하의 계책은 신들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이아의 뒤에 있는 작은 동산에 올라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평지 가운데서 이 언덕이 갑자기 우뚝 솟아올라 이아의 터를 만들었으니 어찌 기이하지 않은가."

하였다. 이어서 일자문성(一字文星)에 이르러 여러 신하들이 의논드리기를, "이곳의 일자

문성은 겹으로 되어 있고 **용연(龍淵)**의 모래 삼각주[砂角]가 왼쪽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옷깃을 여민 형국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문성(內文星)에 성을 쌓되 성의 형태를 조금 축소하여 모래 삼각주에 뒤지게 하고 외문성(外文星)에는 따로 토성(土城)을 쌓아 내성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유수 **조심태**에게 이르기를,
"이 성을 곧장 외문성에 쌓되 **용연**의 모래 삼각주와 내문성을 넘어가게 해서 모두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좋겠다."
하였다. 인하여 **용연**에 나아가 **귀봉(龜峰)**을 가리키면서 심태에게 이르기를, "오른쪽은 귀봉이고 왼쪽은 **용연**이어서 거북과 용이 서로 마주하고 있으니 그 이름 역시 우연하지 않다."
하였다. 대체로 **용연** 기슭은 앞면이 석벽(石壁)으로 되어 있고 아래에는 작은 소(沼)가 있는데, 그 물은 **광교산(光敎山)**에서 흘러나와 석벽 아래에 이르러 물이 돌아흐른다. 이곳에서 휘돌아나와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읍치(邑治)를 경과하는데, 기슭을 따라가다가 꺾여지는 곳에 장차 다리를 걸쳐놓고 성을 쌓아 수문(水門)을 만들려는 것이다. 상이 심태에게 이르기를, "일자문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 더욱 두껍고 공고한 기상을 보겠고, **용연**의 기슭이 용의 머리로 되어 있고 석벽이 웅크린 것처럼 솟아 있으니 풍기(風氣)가 응결되어 매우 활기찬 기상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겸하여 수해(水害)를 막는 공이 있게 되었으니 마치 이 성쌓는 역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곳인 듯하다. 지리와 지세가 매우 좋아서 오늘 살펴본 뒤로 나의 마음은 매우 만족스럽다. 성을 쌓는 역사의 큰 줄거리는 이러하니, 예컨대 여기에 윤색(潤色)을 더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를 맡아 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미륵당 고개[彌勒堂峴]**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잠시 쉬면서 승지에게 이르기를, "언제나 **현륭원**에 갔다가 돌아올 적에는 나의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더디어지고 **배양재[陪養峙]**를 지나 이 고개에 이르면 절로 고개를 들고 서성거리게 된다."
하였다. **사천(沙川) 행궁**에 이르러 잠시 쉬고 과천 행궁에 이르러 오늘밤부터 내일밤까지 통행금지를 완화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성문은 관광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를 기다려 빗장을 잠그라고 명하였다. 망해정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가 환궁하니 밤 2경이 넘었다.
○癸卯/上登覽邑基, 謂左右曰: "此地本是空曠大野, 人家僅爲五六戶, 而今則千餘民戶, 屋舍櫛比, 不出數年, 居然一大都會. 地理之興旺, 自有其時矣." 仍登**八達山**, 周覽築城基址. 上曰: "此地占得山頂最高處, 便於瞭望. 氣勢雄爽, 可謂天造地設之將臺矣. 今見揷旗處, 則築城範圍, 可以領略, 而至於北里人家毁撤之論, 終非計之得者. 園所, **花山**也; 此府, **柳川**也. 取華人祝聖之意, 名此城曰**華城**, 花與華通. **花山**之義, 蓋以八百峰巒, 拱護一岡, 圓正如花瓣之謂也. 然則**柳川**之城, 南北稍長如柳葉, 則實有意義矣. 昨以**華城**·**柳川**之義, 已有諭及於領府事者, 而此城挾而長, 旣似柳葉, 則於北角人家相錯處, 三曲折以象川字, 豈不尤襯於**柳川**耶?." 至**貳衙**, 召見陪從時原任大臣洪樂性等. 上曰: "俄於**八達山**瞭望, 則營府之雄偉, 閭閻之櫛比, 眞大都會也. 五六年之內, 成聚成都, 如是之速, 予心欣喜, 實爲不淺. 城址形便, 才有下敎於監董堂上者, 築斯城也, 將以爲億萬年悠久之計, 人和爲貴, 且當務盡經遠之謨, 而俄見城址竪旗處, 則民家之當出城外者, 豈可以已建之家舍, 因城役撤去乎? 此非人和爲貴之意也. 至若城池, 南北之相距, 亦有太近之歎. 經遠之道, 尤不當若是. **花山**與**柳川**相望, 爲我家萬億年太平悠久之業. 築城之時, 象柳葉之形, 倣川字之樣, 逶迤定基, 而人家亦宜入諸城內, 卿等以爲如何?" 樂性等曰: "聖籌非臣等所及也." 登衙後小園, 謂諸臣曰: "平地中忽起此阜,

爲貳衙之基, 豈不異哉?" 遂至一字文星, 諸議皆曰: "此處一字文星爲兩重, 龍淵砂角自左內入爲合襟. 築城於內文星, 少縮城形以讓砂角, 而外文星則別築土城, 以護內城爲宜." 上謂留守趙心泰曰: "此城直築於外文星, 跨越龍淵之砂, 與內文星幷入城裏, 則好矣." 仍詣龍淵, 指龜峰, 謂心泰曰: "右爲龜峰, 左爲龍淵, 龜龍相對, 名亦不偶矣." 蓋龍淵之麓, 前面爲石壁, 下臨小潭, 水自光敎山來, 至石壁下滙焉. 迤出自北而南過邑治, 其循麓屈折處, 將跨橋築城爲水門者也. 謂心泰曰: "(文)〔一?〕字文星之兩重, 益見完厚鞏固氣像, 龍淵之麓爲龍頭, 而石壁之蹲峙, 可見風氣鍾結, 甚有精神, 兼有捍水之功, 有若爲此役設施者然. 地理地勢, 十分恰好. 今日看審之後, 予心充然有得矣. 城役之大綱領如此, 若夫潤色之, 則在述者之能耳." 至彌勒堂峴, 下馬少憩, 謂承旨曰: "每於園幸回鑾, 不覺吾行之遲遲, 過陪養峙及此峴, 自爾延佇矣." 至沙川行宮少憩, 至果川行宮, 命今夜至明夜弛禁. 仍命城門, 待觀光人畢入後下鑰. 至望海亭少憩, 還宮, 夜已二鼓矣.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1월 15일(계묘) 1번째기사>

정치/사법

상언한 문건 87통을 결재하다

상언(上言)한 문건 87통을 결재하였다.
○判下上言八十七度.
<정조 39권, 정조 18년 1월 15일(계묘) 2번째기사>

2.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2일(경자)

강중희당(重熙堂)에서 병조 판서 서유방(徐有防)과 유사 당상(有司堂上) 윤행임(尹行任)을 소견하였다.

목○ 내가 서유방에게 이르기를, "신초(申初)에 궁을 나가려고 하니 이런 내용을 알고서 미리 정돈하여 대령하라. 과천(果川)에 도착한 뒤에는 그대로 축시(丑時) 사이에 수원(水原)으로 나갈 계획이니, 군령(軍令) 역시 이렇게 알고서 거행하라."하고, 윤행임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행(園行)에 대해 일념으로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이러한 뜻을 본받아 비변사에서 수가(隨駕)하는 여러 관사를 특별히 더 살피고 신칙해서 《원행정례(園幸定例)》를 어기는 일이 없게 하라."하였다.

강召見兵判 徐有防有司堂上尹行任于重熙堂

목予謂有防曰申初欲出宮知此預爲整待而到果川後仍於丑時間前進水原爲計軍令亦知此擧行謂行任曰予於園行一念洞屬須體此意自備局另加察飭隨駕諸司俾無違越定例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2일(경자)

강수가하는 신하들에게 신칙하여 타일렀다.

목○ 전교하기를, "금년의 원행을 내일 행할 텐데, 당일로 하는 것은 나의 기력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자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밤에 필시 불을 밝히고 출발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궁을 나가는 시각을 오늘로 당겨서 정한 이유이

다. 강을 건넌 뒤 행군(行軍) 절차는 따로 임시에 하교할 것이니, 만약 일일이 영에 따라 즉시 하지 않으면 각 영의 장신(將臣)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 숙소(宿所)를 잠시 계하하지 않았다고 해서 각 군문(軍門)과 각 관사가 수가하는 곳들에 외판(外辦)을 더하고 음식을 준비하여 장대히 유람하는 거둥으로 여긴다면 이는 오늘의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대관(大官)부터 잘 알도록 묘당에서 통지하라. 나루에 나아가기 위해 궁을 나가는 삼엄(三嚴)은 신초 초각(初刻)으로 하라고 역시 분부하라." 하였다.

강飭諭隨駕諸臣

목敎曰今年園幸之行於明日蓋以當日則自顧氣力無以自力而然日子旣定夜必明發此所以出宮時刻之進定於今日也渡涉以後行軍節次自有臨時下敎若不這這隨令卽爲各營將臣難免重勘以今日宿所之姑不啓下各軍門各司隨駕諸處有加外辦備飯供看作張大豫遊之擧則是不知予今日之心者也自大官知悉事令廟堂知委詣津頭出宮三嚴以申初初刻爲之事亦爲分付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2일(경자)

강호남과 호서의 방미방 계본(放未放啓本)을 판하하였다.

목○ 전라 감사 이서구(李書九)가 올린 도내 도류 죄인(徒流罪人)에 대한 방미방 계본에 대해서 전교하기를, "풀어 줄 부류와 여쭈어 결정할 부류는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을 막론하고 모두 풀어 주되 그 가운데 사안이 과장(科場)과 관련된 자는 다른 도의 예에 따라 논하지 말라. 그리고 그대로 정배해 둘 부류 가운데 사도(蛇渡)의 이은복(李殷福)과 장성(長城)의 송흠서(宋欽書)는 풀어 주고, 흥덕(興德)의 윤승동(尹昇東)과 구례(求禮)의 우성겸(禹聖謙)은 모두 도년(徒年)의 형을 받은 죄인이니 역시 풀어 주고, 강진(康津)의 김복선(金福先)과 장흥(長興)의 장운상(張雲翔)과 순천(順天)의 윤성렬(尹聖烈)과 장성의 곽사의(郭思儀)와 장흥의 김성옥(金成玉)과 남평(南平)의 전덕찬(全德燦)과 동복(同福)의 한원중(韓元中)과 순천의 김일봉(金日奉)과 구례의 김종한(金宗漢)과 용안(龍安)의 최종택(崔宗宅)과 만경(萬頃)의 홍치택(洪致澤)과 광주(光州)의 박창문(朴昌文)과 장성의 김광래(金光來)와 해남(海南)의 우복동(禹福同)과 부안(扶安)의 강명의(姜明毅)와 강진의 권운악(權雲岳)과 순천의 이은배(李殷培)는 모두 풀어 주라고 의금부와 형조에 분부하여 잘 알게 하라. 아직 배소에 도착하지 않은 양협(梁峽)의 심유조(沈有祖)와 이인달(李仁達)도 풀어 주라고 병조에 분부하여 잘 알게 하라. 흥덕의 김원신(金元信)과 원주(原州)에서 온 비인(庇仁)의 신운대(辛雲大)는 죄명이 같다고 이를 수 있다. 풍교(風敎)가 비록 무너지기는 하였지만 어찌 이와 같은 범죄가 있단 말인가. 설혹 지은 죄가 비슷하더라도 조율할 때에 하필이면 이와 같이 말을 하는가. 그때의 도신을 엄하게 추고하고 도류안(徒流案)은 말소한 다음 본향(本鄕)에 도로 보내 잘못을 고쳐 선하게 됨으로써 속죄하는 효과가 있게 하라고 일체 분부하라." 하였다.

○ 충청 감사 이형원(李亨元)이 올린 도내 도류 죄인에 대한 방미방 계본에 대해서 전교하기를, "지금 동가(動駕)해야 하는데 사령(赦令)도 중요한 일이니 어찌 회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는가. 서천(舒川)의 김희성(金希成) 등은 장계의 내용대로 풀어 주고, 도년의 형을 받아 으레 풀어 주는 부류는 소관이 의금부인지 형조인지를 막론하고 모두 풀어 주라고 분부하라. 여쭈어 결정할 부류 가운데 공주(公州)의 성언집(成彦楫), 결성(結城)의 박화원(朴華源), 부여(扶餘)의 이황(李潢), 충주(忠州)의 이운춘(李運春), 청주(淸州)의 정동표(鄭東杓) 등은 모두 도년의 형을 받은 죄인이니 역시 풀어 주라. 영동(永同)의 충군 죄인(充軍罪人) 이광섭(李光燮)은 지금 크게 사면의 은전을 베푸는 때이니 용서하고, 평신(平

薪)의 사정환(史廷煥)·석연욱(石鍊郁)·신호상(申好祥)·이태욱(李泰郁)은 법이 이미 시행되었고, 신창(新昌)의 정문재(鄭文在)는 어사의 서계(書啓)와 어긋나지 않고 또한 불법과는 차이가 있으며, 정산(定山)의 송재위(宋載緯)는 작은 과실이니, 모두 풀어 주라는 뜻으로 의금부는 잘 알아서 분부하라.

옥천(沃川)의 중 상희(常喜), 서천의 김덕흥(金德興), 면천(沔川)의 이춘화(李春化), 덕산(德山)의 강선문(姜宣文)은 모두 도년의 형을 받은 죄인에 불과하고, 서산(瑞山)의 안택리(安宅利), 결성의 김용(金瑢), 영동의 최영억(崔永嶷)은 도신이 이미 여쭈어 결정할 부류에 두었으니 모두 풀어 주라는 뜻으로 형조는 잘 알아서 분부하라.

그대로 정배해 둘 부류 가운데 비인의 신운대는 죄목이 매우 옳지 않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50] 보은(報恩)의 전석재(全石才)는 같은 죄를 지은 죄인이 이미 다른 여러 도에서 용서를 받았으니 모두 풀어 주라고 분부하라. 그 밖에 도년의 형을 받은 죄인으로 그대로 정배해 둘 부류에 두기를 청한 해미(海美)의 이인천(李仁千) 등 4명은 이미 중률(重律)과 관계가 없는데 도년의 형을 받은 죄인으로 그대로 정배해 둘 부류에 두기를 청한 것은 사면령을 내리는 때를 만나 사면을 받게 하는 법의가 매우 아니다. 풀어 주지 않고자 할 경우 무기한 정배로 율명(律名)을 고쳐 정해야 할 것이니, 우선 그대로 정배하고 율명을 고쳐서 기록하라. 이후로 여러 도는 이대로 거행하도록 분부하라. 한편으로는 사령(赦令)을 믿게 하고 한편으로는 요행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유배한 죄인 가운데 덕산의 진처곤(陳處坤), 결성의 이성신(李聖臣), 면천의 변대득(卞大得)·도상성(都尙成)은 모두 풀어 주라고 형조에 분부하고 또한 잘 알게 하라." 하였다.

강判下湖南 湖西放未放啓本

목以全羅監司 李書九道內徒流放未放啓本敎以放秩稟秩無論徒與流竝放送而其中事關科場者依他道例勿論而仍秩中蛇渡 李殷福 長城宋欽書放送興德 尹昇東 求禮 禹聖謙皆是徒年亦爲放送康津 金福先 長興 張雲翔 順天 尹聖烈 長城 郭思儀 長興 金成玉 南平 全德燦 同福 韓元中 順天 金日奉 求禮 金宗漢 龍安 崔宗宅 萬頃 洪致澤 光州 朴昌文 長城 金光來 海南 禹福同 扶安 姜明毅 康津 權雲岳 順天 李殷培竝放送事分付禁府 刑曹知悉未及到配之梁垙 沈有祖 李仁達亦爲放送事分付兵曹知悉興德 金元信與原州來庇仁 辛雲大罪名可謂一而二風敎雖壞豈有如許之犯設或近似照律之際爲說何必如是乎其時道臣從重推考徒流案爻周還送本鄕俾有遷善贖罪之效事一體分付○以忠淸監司 李亨元道內徒流放未放啓本敎以今當動駕而赦令亦有所重何可遲待回啓乎舒川 金希成等依狀辭放送徒年例放之類無論禁府 刑曹所管皆放事分付稟秩中公州 成彦樴 結城 朴華源 扶餘 李潢 忠州 李運春 淸州 鄭東杓等皆是徒年亦爲放送永同克軍李光燮當此大需分揀平薪 史廷煥石鍊郁申好祥李泰郁法已行矣新昌 鄭文在繡啓能不差爽亦與不法差間定山 宋載緯微眚也竝放送之意禁府知悉分付沃川僧常喜 舒川 金德興 沔川 李春化 德山 姜宣文皆不過徒罪瑞山 安宅利 結城 金瑢 永同 崔永嶷 道臣旣置稟秩竝放送之意刑曹知悉分付仍秩中庇仁 辛雲大罪目甚不是實有是也報恩 全石才同罪旣宥於諸道竝放送事分付其外以徒年請仍之海美 李仁千等四名旣非關係重律則以徒年請仍殊非遇赦得赦之法意如欲不放以勿限年更定律名可也姑爲仍配律名改錄此後諸道依此擧行事分付一以信赦令一以杜僥倖流配中德山陳處坤結城李聖臣 沔川卞大得都尙成竝放送事分付刑曹亦爲知悉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2일(경자)

---

50) 어찌 …… 말인가 : 원문은 '實有是也'인데, 앞뒤의 문맥이 통하지 않아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實'을 '寧'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강이홍재(李洪載)를 한성부 좌윤으로, 홍의영(洪義榮)을 형조 참판으로, 정치순(鄭致淳)을 형조 참의로, 전망 단자(前望單子)에서 뽑은 것이다. 조윤대(曺允大)를 예조 참판으로 구전정사(口傳政事)로 차출한 것이다. 삼았다.

목○ 목(目)이 없는 기사임

강以李洪載爲漢城左尹 洪義榮爲刑曹參判 鄭致淳爲刑曹參議 前望也 曺允大爲禮曹參判 口傳也

목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2일(경자)

강총관(摠管) 조윤대(曺允大)를 체차하고 정창순(鄭昌順)을 임명하였다. 전망 단자에서 뽑은 것이다.

목○ 조윤대가 예조 당상으로 본사(本司)에 유도(留都)하였기 때문이다.

강遞總管 曺允大以鄭昌順代之前望也

목 允大以禮堂本司留都也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2일(경자)

강궐문(闕門) 밖에서 재실(齋室)의 작문(作門)까지 당마(塘馬)[51]를 안배하여 세우라고 명하였다.

목○ 1당(塘)은 궐문 밖에, 2당은 종각(鍾閣)에, 3당은 남대문(南大門)에, 4당은 석우(石隅)에, 5당은 만천(蔓川)에, 6당은 노량(露梁) 행궁(行宮)에, - 이상은 어영청(御營廳)의 주마 기사(走馬騎士)를 1당마다 3인씩 안배하여 세운다. - 7당은 금불암(金佛巖)인데 - 마병(馬兵) 5명을 안배하여 세운다. - 노량 행궁에서 5리이고, 8당은 사당리(社堂里)인데 금불암에서 5리이고, 9당은 남태령(南泰嶺)인데 사당리에서 6리이고, 10당은 과천(果川)의 작문인데 남태령에서 5리이고, 11당은 냉정(冷井)인데 과천의 작문에서 4리이고, 12당은 **갈산(葛山)**인데 냉정에서 6리이고, 13당은 자잔동(自棧洞)인데 갈산에서 5리이고, 14당은 사근(沙斤)의 종참(終站)인데 자잔동에서 5리이고, 15당은 **미륵당(彌勒堂)**인데 사근의 종참에서 5리이고, 16당은 **진목정(眞木亭)**인데 **미륵당**에서 7리이고, 17당은 **화성(華城)**의 작문인데 진목정에서 7리이고, - 이상은 훈련도감의 별수가 마병(別隨駕馬兵)을 1당마다 3명씩 안배하여 세운다. - 18당은 **상류천**(**上柳川**)인데 **화성**의 작문에서 5리이고, 19당은 고집리(庫執里)인데 **상류천**에서 5리이고, 20당은 **배양동**(培養洞)인데 고집리에서 5리이고, 21당은 재실의 작문인데 **배양동**에서 5리 - 이상은 별대 마병(別隊馬兵)을 1당마다 3명씩 안배하여 세운다. - 이다.

강命自闕門外至齋室作門排立塘馬

목一塘闕門外二塘鍾閣三塘南大門四塘石隅五塘蔓川六塘露梁行宮以上御營廳走馬騎士每塘三人七塘金佛巖馬兵五名自露梁行宮五里八塘社堂里五里九塘南泰嶺六里十塘果川作門五里十一塘冷井四里十二塘**葛山**六里十三塘自棧洞五里十四塘沙斤終站五里十五塘**彌勒堂**五里十六塘**眞木亭**七里十七塘**華城**作門七里以上訓局別隨駕馬兵每塘三名十八塘**上柳川**五里十九塘庫執里五里二十塘培養洞五里二十一塘齋室作門五里以上別隊馬兵每塘三名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2일(경자)

강어가(御駕)가 과천(果川) 행궁(行宮)에 머물렀다.

---

51) 당마(塘馬) : 척후(斥候)의 임무를 띤 기병(騎兵)을 말한다.

목○ 군복(軍服)을 갖추고 교(轎)를 타고 협양문(協陽門)을 나갔다. 돈화문(敦化門)을 경유하여 숭례문(崇禮門)을 나와 관왕묘(關王廟)에 들러 재배례(再拜禮)를 행하였다. 승지 이유경(李儒敬)에게 이르기를, "신위(神位)의 용포(龍袍)를 속히 개조(改造)하라는 뜻으로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남묘(南廟)의 수직관(守直官) - 변장에 제수하였다. - 및 수복(守僕) - 목(木) 2필(疋)을 시상하였다. - 에게 해당 조로 하여금 규례를 살펴 시상하게 하라."
하였다. 관왕묘의 문을 나가 말을 타고 주교(舟橋)를 건넜다. 주사 대장(舟師大將) 서유대(徐有大)가 기고(旗鼓)를 거느리고 영접하였다. 각신, 승지, 사관 이하는 모두 주교의 북쪽 강안(江岸) 홍살문(紅箭門) 밖에 가지런히 정돈하고 있다가 대가(大駕)가 **망해정(望海亭)**에 나아가기를 기다린 뒤에 비로소 주교를 건너라고 명하였다. 대차(大次)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여(輿)를 타고 망해정에 나아갔다. 이날 이른 아침에 선상 대장(先廂大將)과 후상 대장(後廂大將)은 노량(露梁)에 먼저 나아가라고 명하였는데, 궁을 나갈 때에 어영대장 이경무(李敬懋)가 유진(留陣)한 마군(馬軍)과 보군(步軍)을 거느리고 선상과 후상이 되라고 명하였다. 이에 이르러 이경무에게 나루에서 뒤로 떨어져서 도로 유진에 나아가라고 명하였다. 조금 있다가 말을 타고 출발하였다. 협련(挾輦)은 협련군(挾輦軍) 80명으로 마련하고, 금위대장 이한풍(李漢豐)이 금위영의 마병(馬兵) 1개 초(哨), 향군(鄕軍) 2개 초를 거느리고 선상이 되고, - **화성**에 도착하여 뒤로 떨어져 있기 위해서이다. - 위내(衛內)는 **장용영(壯勇營)**의 선기대(善騎隊) 100명, - **화성**에 도착하여 뒤로 떨어져 있기 위해서이다. - 경보군(京步軍) 1개 초를 중사 파총(中司把摠)이 거느리고, 후상은 **장용영**의 경군(京軍)과 향군 각 1개 초씩을 우사 파총(右司把摠)이 거느리고, 그 나머지 장용위(壯勇衛) 100인, 선기대 1개 초, 금군·가전 별초(駕前別抄)·가후 금군(駕後禁軍) 각 50인씩과 난후 마병(攔後馬兵) 50명을 훈련대장 **조심태(趙心泰)**가 모두 거느리고 편리한 대로 과천에 먼저 나아가 밥을 지어 먹고 말을 먹이고서 기다렸다. 대가가 사당현(社堂峴)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려 조금 쉰 다음 고개를 넘어 과천 행궁에 나아갔다. 전교하기를, "날이 저물지 않았는데 이미 과천에 도착하였다. 오늘 숙소는 본현으로 하겠다." 하였다.

강駕次果川行宮

목具軍服乘轎出協陽門由敦化門出崇禮門歷詣關王廟行再拜禮訖謂承旨 李儒敬曰神位龍袍從速改造之意分付禮曹仍敎曰南廟守直官 邊將除授及守僕木二疋令該曹考例施賞出廟門乘馬渡舟橋 舟師大將 徐有大率旗鼓迎接命閣臣 承史以下皆整齊於舟橋北岸紅箭門外待大駕御**望海亭**後始爲渡橋至大次下馬乘輿御**望海亭**是日早朝命先後廂大將先詣露梁出宮時命御將 李敬懋率留陣馬步軍爲先後廂至是命敬懋自津頭落後還詣留陣少頃乘馬進發挾輦則挾輦軍八十名禁將 李漢豐率該營馬兵一哨鄕軍二哨爲先廂到**華城**落後次衛內則**壯勇營**善騎隊一百名至**華城**落後次京步軍一哨中司把總率領後廂則**壯勇營**京鄕軍各一哨右司把總率領其餘壯勇衛一百人善騎隊一哨禁軍駕前別抄駕後禁軍各五十人攔後馬兵五十名訓將 **趙心泰** 都領從便先詣果川炊飯秣馬以待行到社堂峴下馬少憩踰嶺御果川行宮敎曰日未暮已抵果川今日宿所以本縣爲之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2일(경자)

강행궁에서 경기 감사 서용보(徐龍輔), 과천 현감(果川縣監) 이지원(李祉源), 비변사의 문낭청(文郎廳) 홍대협(洪大協)·정만석(鄭晩錫)을 소견하였다.

목○ 내가 서용보와 이지원에게 이르기를, "근래에는 원행(園幸) 때의 모든 일에 대해 이

미 《원행정례》를 완성해서 이를 따라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감사와 현감이 과연 이러한 뜻을 잘 본받는다면 민읍(民邑)에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하니, 서용보가 아뢰기를, "전후로 신칙한 하교가 상세했을 뿐만이 아니니 감히 유념해서 왕명을 제대로 받들지 않겠습니까. 길을 닦는 등의 일 또한 급가(給價)하였으니 실로 한 터럭만큼도 폐단이 없습니다." 하였다. 내가 서용보에게 이르기를, "지방관(地方官 이지원)의 소회(所懷)에, 강도(江都)의 모미(耗米)를 본현에 떼어 주기를 청하였는데, 과연 어떠한가?" 하니, 서용보가 아뢰기를, "강도의 모미 몫을 강도에서 가져다 쓴 지 이미 10년이 찼으니 지금 비록 본현에 떼어 주더라도 강도의 경우에는 그다지 손실이 없을 것이고 본현에는 실로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홍대협과 정만석에게 이르기를, "그대들이 이번 거행에 자못 부지런히 힘썼는데 정만석이 더욱 잘하였다. 전참(前站)의 일 역시 각별히 잘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강召見畿伯 徐龍輔 果川縣監 李祉源文備郎 洪大協 鄭晩錫于行宮

목予謂龍輔 祉源曰近來則園幸時凡事已成定例行之已久方伯守土之臣果能體此意不貽民邑之弊乎龍輔曰前後飭敎不啻縷縷敢不惕念對揚而至於治道等節亦爲給價實無一毫弊端矣予謂龍輔曰地方官所懷江都耗米劃付本縣之請果何如龍輔曰江都米耗條自江都取用已滿十年今雖劃給本縣在江都無甚所失在本縣實爲大惠矣予謂大協晩錫曰爾等今番擧行頗爲勤勵而晩錫尤善爲矣前站事亦須各別善察也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2일(경자)

강과천의 체납된 환곡 1년 치를 탕감하고, 강도의 모미를 본현에 떼어 주며, 지방관 이지원은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목사(牧使)로 올려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본현에서 경숙(經宿)하되 앉아서 첫닭이 울면 떠나려고 한다. 그런데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으니, 어찌 마음이 **현륭원(顯隆園)**에 있다고 해서 혹여 백성들에 관한 이 마음이 해이해지겠는가. 더구나 이런 해를 만났으니 당연히 경축하는 뜻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52]. 체납된 환곡 1년 치를 탕감하여 주고, 강도의 모미 몫을 본현에 떼어 주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공문을 보내 알리게 하라. 지방관 이지원은 본래 막중한 일에 애를 써서 일을 했고 작년과 금년의 행행(幸行) 때에 모두 참(站)을 세우는 일을 관장하였으니 목사의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제수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命果川舊還一年條蕩減江都耗米劃給本縣地方官李祉源待窠陞授牧使

목敎曰宿次本縣坐待雞鳴欲爲前進而一念之耿耿於民事豈以心懸象設其可或弛況逢此年當有示意之擧舊還一年條蕩減江都米耗條許劃本縣令 廟堂行會地方官李祉源本有勞勤於莫重之後昨今年幸行時俱掌立站之任牧使待窠除授事分付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2일(경자)

강장용대장 김지묵(金持默), 훈련대장 **조심태**, 금위대장 이한풍을 잡아들여 부오(部伍)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죄를 엄히 신칙하고서 내보냈다.

목○ 장신(將臣)들을 잡아들인 뒤에 전교하기를, "이번 원행(園幸)에 대해 나의 회포가 어

52) 더구나 …… 것이다 : 1794년(정조18)은 정순왕후(貞純王后)가 쉰 살이 되고 **혜경궁(惠慶宮)** 홍씨(洪氏)가 예순 살이 되는 해로 이달 1일 경사를 합동으로 경축하는 진하(陳賀)를 행하고 중외(中外)에 사면령을 내렸는데, 정조의 생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나이도 60세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현륭원(顯隆園)**에 행행하면서 이를 기념하여 은택을 베푼 것이다. 《日省錄》

떠하였는가. 여러 날 불을 밝히고 출발하느라 기력이 떨어져 매우 피곤한 것을 신하치고 누가 모르겠는가. 반과(盤果)하는 일의 경우 전후로 신칙하는 하교를 내려 신신당부하였을 뿐만이 아니었으니 법령이 이미 시행되어 더 이상 금령을 범하는 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세 군영의 관하(管下)에서 범한 자가 많아 비변사의 문낭청이 적간할 때에 적발되어 붙잡혔다고 한다.

장신의 책임은 나라를 자기 몸처럼 여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니, 체(體)라는 것은 자기 신체(身體)를 말한다. 그대들에게 만일 나라를 자기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차마 부오가 법을 어기는 일을 내버려 두어서 번거롭게도 이런 때에 나에게 수응하도록 하겠는가. 장수(將帥)가 노인이고, 훈련대장은 막중한 일에 공적이 있다. 노인이며 공적이 있는 것은 또 노인이며 공적이 있는 것이고, 기율(紀律)은 또 기율이다. 기율에 관련되는 사안이니 어찌 그대들이라 해서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니, 김지묵 등이 여쭙기를,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들이 어찌 감히 평소에 검칙한 것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군율을 어기는 죄를 지었으니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엄히 곤장을 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우선 참작하겠다." 하고, 이어 잡아 내가라고 명하였다.

강拿入壯勇大將 金持默 訓鍊大將 趙心泰 禁衛大將 李漢豊以不能管束部伍之罪嚴飭退出

목諸將臣拿入後敎曰今番園幸予懷如何屢日明發氣力憊甚群下孰不知之至於盤果一事前後飭敎不啻申申意謂法令已行更無犯禁者矣今聞三營管下多有冒犯現捉於文備郎摘奸云將臣之責體國爲先體者以身體之之謂也爾等苟有體國之心豈忍任他部伍之犯科而致煩予此時酬應乎壯帥老人也訓將有勞績於莫重之役而老人與勞績自老人與勞績紀律自紀律事係紀律豈可以爾等有所撓屈乎持默等奏曰到此地頭臣等豈敢以常時檢飭仰對乎罪犯師律有死而已敎曰事當嚴棍而姑爲參酌仍命拿出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2일(경자)

강입직

목검교직각 남공철(南公轍)

검서관 박제가(朴齊家)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3일(신축)

강수원부(水原府)에 나아갔다.

목○ 축시(丑時)에 군복(軍服)을 갖추고 말을 타고 과천(果川) 행궁(行宮)을 나갔다. 장용위가 협련(挾輦)하고, 훈련대장이 난후 마병(攔後馬兵)과 금군(禁軍) 50인 및 선기대(善騎隊) 2개 초를 모두 거느리고 선상(先廂)이 되고, 금위대장이 본진(本陣)의 마병을 거느리고 후상(後廂)이 되며, 그 나머지 금위영(禁衛營)의 향보군(鄕步軍) 2개 초, 장용영(壯勇營)의 경보군(京步軍) 2개 초·향보군 1개 초는 추후에 화성(華城)에 도착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사천(沙川) 행궁에 이르러 조금 쉰 뒤에 다시 출발해서 수원(水原)의 진목정(眞木亭)에 이르렀다. 장용 외사(壯勇外使) 이명식(李命植)이 입방군(入防軍) 3개 초, 별군관(別軍官) 50인(人), 친군위(親軍衛) 100인을 거느리고 진목정에서 선상을 이었다. 이어 행궁에 나아가 환위(環衛)하라고 명하였다. 내가 진목정에서 교(轎)에서 내려 말을 타고 진남문(鎭南門)으로 들어가 장남헌(壯南軒)에 나아갔다.

강詣水原府

목丑時具軍服乘馬出果川行宮命壯勇衛挾輦訓將 都領攔後馬兵禁軍五十人及善騎隊二哨爲先廂禁

將率領本陣馬兵爲後廂其餘禁營鄕步軍二哨壯營京步軍二哨鄕步軍一哨使之追到**華城**至**沙川**行宮少憩復進發至**水原** **眞木亭** **壯勇外使**李命植率入防軍三哨別軍官五十人親軍衛一百人自**眞木亭**繼先廂仍命詣行宮環衛予自**眞木亭**下轎乘馬入鎭南門御**壯南軒**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3일(신축)

강수궁 승지(守宮承旨) 서미수(徐美修)를 체차하고 이면응(李冕膺)을 임명하였다. 전망 단자에서 뽑은 것이다. 서미수를 가승지(假承旨)로 삼고 그대로 수궁하게 하였다.

목○ 목(目)이 없는 기사임

강遞守宮承旨 徐美修以李冕膺代之前望也以美修爲假承旨仍爲守宮

목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3일(신축)

강**현륭원(顯隆園)**에 나아가 친히 제사 지냈다.

목○ 묘시(卯時)에 군복을 갖추고 말을 타고 행궁을 나갔다. 협련은 가전 별초(駕前別抄)로 마련하고, 선상은 장용대장이 향보군 1개 초를 거느리고 재전(齋殿) 앞에서 작문(作門)하고 환위(環衛)하다가 금위영의 향군이 추후에 도착하거든 서로 연이어 환위하고, 후상은 금위대장이 향군 2개 초와 금군을 모두 거느리며, 본진의 마병은 **화성**에서 뒤에 떨어지고, 그 나머지 협련군 50명은 먼저 나아가고 50명은 추후에 대령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장용위 100인, 선기대 100명은 뒤를 따라 신지(信地)에 나아가서 가전(駕前), 가후(駕後), 금군, 난후 마병과 함께 각각 신지에서 진을 치되, 장용위와 선기대는 **용주사(龍珠寺)** 서쪽 동구(洞口)에서, 가전은 동구 안 삼거리(三巨里)에서, 가후는 고서문(古西門) 큰길 월교천(越橋川) 부근에서, 금군은 **배양교(培養橋)** 부근 주막(酒幕) 앞길에서, 난후 마병은 방축(防築) 앞길에서 진을 치라고 명하였다. 또 **장용영** 향군 1개 초가 먼저 **화성**에 나아가 **배양치(培養峙)**를 넘으라고 명하였다. 각신, 승지, 사관 외에는 모두 말에서 내려 걸어서 뒤를 따르라고 명하였다. 원소(園所)에 나아가 말에서 내려 재실로 들어가 천담복(淺淡服)으로 갈아입고 향축(香祝)을 친압(親押)하였다. 남여(籃輿)를 타고 홍살문 밖에 나아가 여에서 내리고 판위(版位)에 나아가 재배례(再拜禮)를 행하였다. 정자각(丁字閣)에 나아가 세 번 향을 올리려고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슬퍼서 목이 메고 가슴이 막히는 바람에 근근이 예를 이루었다. 대축(大祝) - 부교리 어용겸(魚用謙)이다. - 이 나아와 축문(祝文)을 읽었다. 아헌관(亞獻官) -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이다. - 과 종헌관(終獻官) - 판중추부사 박종악(朴宗岳)이다. - 이 차례차례 마련한 의주(儀註)대로 예(禮)를 행하였다. 내가 원상(園上)에 나아가 봉심하려고 하니, 신하들이 일제히 나아와 번갈아 부축하였다. 홍낙성(洪樂性)과 **채제공**이 아뢰기를, "지금은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 때이니, 신들이 업어야겠습니다."
하였다. 도로 내려오려고 할 때에 신하들이 보여(步輿)를 바쳤는데 내가 이를 물리치고 신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원에서 내려온 뒤에야 보여를 타고 도로 재실(齋室)에 나아갔다.

강詣**顯隆園**親祭

목卯時具軍服乘馬出行宮挾輦則駕前別抄先廂則壯勇大將率鄕步軍一哨齋殿前作門環衛待禁營鄕軍追到相連環衛後廂則禁將率鄕軍二哨又都領禁軍而本陣馬兵自**華城**落後其餘挾輦軍五十名先詣五十名追後待令壯勇衛一百人善騎隊一百名使之隨詣信地與駕前駕後禁軍攔後馬兵結陣於名其信地壯勇衛善騎隊則 **龍珠寺**西邊洞口駕前則洞口內三巨里駕後則古西門大路越橋川邊禁軍則**培養橋**

邊酒幕前路攔後馬兵則防築前路又命**壯勇營**鄕軍一哨先詣**華城**踰**培養峙**命閣臣 承史外皆下馬步隨詣園所下馬入齋室改具其淺淡服親押香祝乘籃輿詣紅箭門外降輿就版位行再拜禮詣丁字閣將三上香之際予不覺摧咽臆塞僅僅成禮大祝 副校理 魚用謙 進讀祝文 亞獻官 領府事 **蔡濟恭** 終獻官 判府事 朴宗岳 以次行禮如儀予將詣園上奉審諸臣齊進迭扶樂性 濟恭曰此存亡之秋也臣等當背負矣將還下諸臣進步輿却之爲諸臣所扶纔下園乃乘步輿還御齋室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3일(신축)

강재실에서 약원(藥院)의 신하들, 대신, 각신을 소견하였다. 약원 도제조 홍낙성, 제조 서유방(徐有防), 영중추부사 **채제공**, 판중추부사 박종악, 우의정 김희(金憙), 각신 정민시(鄭民始)·서정수(徐鼎修)·서용보(徐龍輔)·윤행임(尹行任)·서영보(徐榮輔)·남공철(南公轍)이 입시하였다.

목○ 신하들이 청대(請對)하여 모두 소견한 것이다. 홍낙성 등이 아뢰기를, "방금 전 신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상황은 실로 다 아뢸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어 의관을 거느리고 입진(入診)하기를 청하였다. 의관 주명신(周命新)이 동변(童便)과 교감다(交感茶)를 올리기를 청하여, 내가 이르기를, "격기(膈氣)가 아직도 시원스레 내려가지 않았으니 동변에 소합원(蘇合元)을 조제해서 다시 올리고 그다음에 교감다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니, 홍낙성 등이 아뢰기를, "날이 아직 일러서 재실의 방사(房舍 방)는 조섭하기에 불편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도로 본부의 행궁으로 나아가소서." 하였다. 신하들이 그대로 힘껏 청하는 것을 그만두지 아니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곳에 머물며 하룻밤 자면서 사모하고 의지하는 정성을 조금이나마 펴려고 하니 경들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하였다.

강召見藥院諸臣大臣閣臣于齋室 藥院都提調 洪樂性 提調 徐有防 領府事 **蔡濟恭** 判府事 朴宗岳 右議政 金憙 閣臣 鄭民始 徐鼎修 徐龍輔 尹行任 徐榮輔 南公轍

목諸臣請對竝召見樂性等曰俄者下情罔措之狀實不能盡達矣仍請率醫官入診醫官周命新請進童便交感茶予曰膈氣猶未快下童便調蘇合元更進而次進交感茶好矣樂性等曰日勢尙早齋室房舍不便於調攝伏願還御本府行宮焉諸臣仍力請不已予曰留此一宿少伸瞻依之忱卿等勿復言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3일(신축)

강국내(局內)의 산기슭을 살폈다.

목○ 여를 타고 재실을 나가 장차 국내의 산기슭 및 새로 정한 화소(火巢)를 두루 살피기 위해서 각신 윤행임(尹行任)·서영보(徐榮輔), 승지 이면긍(李勉兢), 안성 군수(安城郡守) 조윤식(曺允植)에게 뒤를 따르라고 명하였다. 또 각신 정민시(鄭民始)·서유방(徐有防)·서정수(徐鼎修)·서용보(徐龍輔)·남공철(南公轍), 훈련대장 **조심태(趙心泰)**, 승지 이유경(李儒敬)은 새로 정한 화소에 가서 대령하라고 명하였다. 청룡(靑龍) 쪽 산기슭을 거쳐 **강무당(講武堂)** 뒤쪽의 기슭에 올라 형국(形局)을 간심하였다. 이어 산등성마루를 따라가다 **성황산**(**城隍山**)의 주봉(主峯)에 올라서 **용주사(龍珠寺)** 뒤쪽 작은 암자(菴子)가 있는 곳을 살피고 마침내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다. **안녕리(安寧里)** 송준재(宋俊載)의 옛 산길에서 독지촌(禿芝村) 뒤를 거쳐 새로 정한 화소를 살펴보았다. 정민시 등이 모두 미리 와서 대령하였는데, 이어 뒤따라온 신하들과 함께 모두 말을 타고 따르라고 명하였다. 큰길을 거쳐 작년에 보토(補土)한 곳에 이르렀는데, 지명(地名)이 무시랑(武侍郞)이었다.

조심태에게 이르기를, "이곳이 조윤식이 보토한 곳인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이곳은 예전부터 시냇물에 침식을 당했는데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무너졌습니

다. 조윤식이 보토한 것을 간검(看檢)하였는데 보토한 곳은 높이가 10여 장(丈)이 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보토한 일은 나 역시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클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 공력이 참으로 작지 않다.” 하였다.
이어 무시랑 기슭을 내려와 대왕교(大王橋)를 거쳐 옛 향교(鄕校)의 터에 올라가 간심하고 정민시 등에게 이르기를, “이 땅의 형국(形局)이 매우 아름답다.” 하였다.
이어 원사(園司) 조경진(趙景鎭)을 불러 이르기를, “그대가 원관(園官)이 된 뒤로 여태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소견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어 앞으로 나가 제정(祭井)에 이르러 간심하고 조윤식에게 이르기를, “제정 가의 물길이 편치 않은 것 같으니 다시 헤아려서 잘 처리하라.” 하고, **조심태**에게 이르기를, “오늘 국내를 간심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두루 다 돌아보았는데, 새로 심은 나무들이 거의 모두 울창하게 자랐다. 이후로 나무를 심는 한 조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힘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였다. 저물녘에 마침내 도로 재실로 들어갔다.

강審局內岡麓

목乘輿出齋室將遍審局內諸麓及新定大巢命閣臣尹行任 徐榮輔 承旨 李勉兢 安城郡守 曺允植隨後又命閣臣 鄭民始 徐有防 徐鼎修 徐龍輔 南公轍 訓將 **趙心泰** 承旨 李儒敬往待於新定火巢由靑龍邊岡麓登**講武堂**後麓看審形局仍遵岡脊而行登**城隍山**主峯審**龍珠寺**後小菴子所在處遂迤下自**安寧里** 宋俊載舊山路由禿芝村後審視新定火巢民始等皆已來待矣仍命與隨後諸臣皆乘馬以從由大路至昨年補土處地名武侍郎謂**心泰**曰此是曺允植所補土乎**心泰**曰然矣此處舊爲溪水所齧年久漸圮允植看檢補土所補處其高爲十餘丈矣予曰補土役事予亦聞知而猶不料其至此之大其功誠不小矣仍下武侍郎麓由大王橋登舊鄕校基看審謂民始等曰此地形局甚佳矣仍召園司 趙景鎭謂曰爾爲園官之後尙未見面故特爲召見矣仍前至祭井看審謂允植曰井邊水道似不便更爲商量善處可也謂**心泰**曰今日看審局內由左而右無處不到而新種樹木幾皆鬱密此後則植木一款更不當費力矣時日勢將暮乃還入齋室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3일(신축)

강본원(本園)의 수복(守僕) 이하에게 규례대로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본원의 수복과 수호군(守護軍)에 대해 해당 조로 하여금 규례대로 시상하게 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오래 수행(隨行)한 수복 박경인(朴景仁)과 유준성(劉俊成)에게는 첩가(帖加)를 만들어 주고, 고지기(庫直) 김재근(金在勤)은 가장 많이 애를 썼으니 역시 첩가를 만들어 주고 수복으로 올려 차하하라. 이후로 태묘 수복의 예에 따라 수복들 가운데 일을 가장 잘 감당할 만한 자를 태묘의 수복으로 겸하여 차하하라. 궁 수복(宮守僕), 향실 수복(香室守僕), 통례원 서원(通禮院書員) 및 숙수(熟手) 등에게도 해당 조로 하여금 시상하게 하라. 원소(園所)의 식목 감관(植木監官) 노대철(盧大喆)[53], 패장(牌將) 안인문(安仁文)에게도 목(木)과 포(布)를 또한 넉넉하게 시상하라. 오늘 어가가 지나간 마을 중 원소 주변에 사는 백성 가운데 또한 가장 가까이 있는 백성과 화소 안에 있는 **안녕리(安寧里)**의 민호에게는 금년의 잡역을 면제해 주도록 본부에 분부하고, 거행한 상황을 장계로 보고하도록 하라고 본부의 유수(留守)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 수복 이하에게는 각각 목 1필씩을, 안산(案山)의 산지기 등에게는 각각 포 1필씩을 규례대로 마련하고, 식목 감관 노대철(盧大喆)과 패장 안인문에게는 각각 목 3필, 포 2필씩을

53) 노대철(盧大喆) : 원문은 ‘盧大哲’인데,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와 앞의 전교 내용을 참고하여 ‘哲’을 ‘喆’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넉넉하게 마련하여 호조에서 제급(題給)하였다.

강命本園守僕以下依例施賞

목敎曰本園守僕守護軍令該曹依例施賞其中最久隨行守僕朴景仁 劉俊成帖加成給庫直金在勤效勞最多亦爲帖加成給陞差守僕此後依太廟守僕例守僕諸人中可堪者兼差太廟守僕宮守僕香室守僕通禮院書員及熟手等亦令該曹施賞園所植木監官 盧大喆牌將安仁文木布亦爲從優施賞今日駕過里中園底居民中亦爲最附近而安寧里民戶之在火巢內者今年除雜役事分付本府擧行形止狀聞事下諭于本府留守處○守僕以下各木一疋案山直等各布一疋依例磨鍊植木監官 盧大哲牌將安仁文各木三疋布二疋從優磨鍊自戶曹題給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3일(신축)

강내일 본읍(本邑)의 유생과 무사를 나누어 시취(試取)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내일 다시 행궁에 돌아간 뒤에 읍내의 유생은 장남헌(壯南軒)에서 시취하되 시관은 영중추부사, 수가(隨駕)한 문임 당상(文任堂上), 검교(檢校) 각신(閣臣), 입직한 옥당이 하고, 읍내 원소 주변의 무사는 유엽전(柳葉箭) 1순(巡)으로 득중정(得中亭)에서 시취하되 시관은 본부의 유수, 병조 판서, 훈련대장, 행수 별군직(行首別軍職), 행수 선전관(行首宣傳官)이 하라. 문소(文所)에는 명관(命官)인 문임이 먼저 나아가고, 무소(武所)에는 훈련대장이 먼저 나아가 가지런히 정돈하고서 대령하라. 별군관(別軍官)과 친군위(親軍衛)는 같이 응시하도록 허락하고, 입방(入防)한 보군(步軍) 3개 초는 궁으로 돌아간 뒤에 유수로 하여금 시방(試放)하고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命明日分試本邑儒武

목敎曰明日還抵行宮後邑內儒生試取於壯南軒而試官 領府事隨駕文任堂上檢校閣臣入直玉堂爲之邑內園底武士柳葉箭一巡試取於得中亭而試官本府留守 兵判 訓將行首別軍職宣傳官爲之而文所則命官文任先詣武所則訓將先詣整齊以待別軍官親軍衛同爲許赴入防步軍三哨還宮後令留守試放狀聞事分付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3일(신축)

강수가한 군교(軍校)는 궁으로 돌아간 뒤에 시사(試射)하고 시방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정성과 예를 행했기 때문에 행장(行裝)을 꾸려 떠날 준비를 하라고 명하였는데, 군병(軍兵)이 밤새 대오를 지어 길을 떠나는 것은 내가 겪는 노고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궁으로 돌아간 뒤에 위내(衛內) 각 영문의 군교는 유엽전과 조총(鳥銃)을 각각 1순(巡)으로 시취하여 1발 이상을 맞힌 자를 취하고, 위외(衛外)는 2발 이상을 맞힌 자를 취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命隨駕軍校還宮後試射放

목敎曰爲伸誠禮俶裝命駕而軍兵之達夜作行若已之勞還宮後衛內各營軍校柳銃各試一巡取一中以上衛外取二中以上事分付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3일(신축)

강예방 승지(禮房承旨) 이면응(李冕膺), 대축(大祝) 어용겸(魚用謙)에게는 가자하고, 원사(園司) 조경진(趙景鎭)·김노경(金魯敬)에게는 모두 품계를 올려 주는 은전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정신이 없어서 미처 하교하지 못했는데 어찌 날을 넘길 수 있겠는가.

예방 승지 이면응, 전사관 겸 대축(典祀官兼大祝) 어용겸에게는 모두 가자하고, 원사인 영(令) 조경진은 4품직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조용하고, 영 김노경은 승진시켜 서용하라." 하였다.

강命禮房承旨 李晃膺 大祝 魚用謙加資園司 趙景鎭 金魯敬幷施陞品之典

목敎曰精神索然未及下敎而豈可踰日乎禮房承旨李晃膺 典祀官兼大祝 魚用謙竝加資園司令趙景鎭四品職待窠調用令金魯敬陞敍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3일(신축)

강배종(陪從)한 백관은 모두 **배양치(培養峙)** 밖에서 주둔하며 밤을 지새라고 명하고, 이어 병조 판서와 경기 감사는 각별히 불조심하라고 신칙하였다.

목○ 목(目)이 없는 기사임

강命陪從百官皆於**培養峙**外留駐經夜仍飭兵判 畿伯各別戒火

목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3일(신축)

강원소 동구에서 숭례문(崇禮門)까지 상언(上言)을 받아들이라고 명하였다.

목○ 목(目)이 없는 기사임

강命自園所洞口至崇禮門捧上言

목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3일(신축)

강재실에서 승지 서영보(徐榮輔)와 이우진(李羽晉)을 소견하였다.

목○ 내가 서영보 등에게 이르기를, "본부의 고취(鼓吹), 전배(前排), 대기수(大旗手) 등에 대한 시상을 규례대로 하라는 뜻으로 경기 감사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또 이르기를, "**안녕리** 주민의 잡역을 면제해 주는 일에 대해 조금 전 전교를 내렸으니, 유수로 하여금 조윤식에게 물어 그 가운데에서 잡역을 면제해 주어야 할 자를 택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강召見承旨 徐榮輔 李羽晉于齋室

목予謂榮輔等曰本府鼓吹前排大旗手等施賞依例爲之之意分付畿伯又曰**安寧里**居民除役事才下傳敎使留守問于曺允植其中擇其當除役者施行可也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3일(신축)

강입직

목검교직각 남공철(南公轍)

검서관 박제가(朴齊家)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4일(임인)

강**현륭원(顯隆園)**에서 돌아와 **수원부(水原府)**에 머물면서 본부의 유생과 무사를 시취하였다.

목○ 군복을 갖추고 재실을 나가 말을 탔다. 협련은 가후 금군(駕後禁軍)으로 마련하고, **장용 외사(壯勇外使)**가 별군관(別軍官) 및 본부의 마군과 보군을 거느리고 오리정(五里亭)에

서 선상(先廂)이 되고, 다음에는 훈련대장이 난후 마병(攔後馬兵)을 거느리고 다음에는 장용대장이 선기대(善騎隊) 1개 초를 거느리고 모두 선상이 되고, 금위대장이 금군진(禁軍陣) 및 가전 별초(駕前別抄)를 거느리고 후상(後廂)이 되고, 그 나머지 **장용영**의 경보군(京步軍)과 향보군(鄕步軍), 금위영의 향군(鄕軍)은 장수가 거느리고 편리한 대로 대오를 지어 길을 떠나라고 명하였다. 내가 **배양치(培養峙)**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한동안 지체하며 머물렀다. 승지 이유경(李儒敬)에게 명하여 산 아래에 사는 백성을 불러 **성황산**(**城隍山**) 뒤쪽 봉우리의 이름을 물으라고 하였다. 말을 타고 **수원부**에 이르렀다. 장용 외사인 유수(留守) 이명식(李命植)이 별군관, 친군위(親軍衛), 입방군(入防軍)을 거느리고 **득중정(得中亭)**의 오른쪽 길에 주둔하고, 장용 내사(壯勇內使)가 각 장수와 기고(旗鼓)를 거느리고 마주 보며 왼쪽 길에 주둔하였다. 내가 원문(轅門)을 경유하여 **득중정**에 나아갔다. 내사와 외사 이하 내외 영문의 장수들이 군례(軍禮)로 반열을 따라 와서 알현하였다. 이어 시장(試場)을 설치하였다. 문시관(文試官) 및 무시관(武試官), 무거자(武擧子)가 마련한 의주(儀註)대로 예를 행하였다. 승지 서영보(徐榮輔)에게 명하여 **장남헌(壯南軒)** 뜰에 유생들을 가지런히 정돈하게 하였다. "풍패(豐沛) 고을인 **수원**에는 공후와 재상감이 많다.[54] ［沛市多公侯相］"로 부제(賦題)를 삼았다. 문시관은 어제(御題)를 받들고 **장남헌**에 나아가 걸라고 명하였다. 유생들이 마련한 의주대로 예를 행하였다.

강還次**水原府**試本府儒武

목具軍服出齋室乘馬挾輦則駕後禁軍**壯勇外使**率別軍官及本府馬步軍五里亭爲先廂次訓將率攔後馬兵次壯勇大將率善騎隊一哨俱爲先廂禁將率禁軍陣及駕前別抄爲後廂其餘壯營京鄕步軍禁營鄕軍將領率領從便作行予行至**培養峙**下馬留連良久命承旨 李儒敬招山下居民問**城隍山** 後峯峯名乘馬至**水原府** **壯勇外使** 留守 李命植率別軍官親軍衛入防軍箚駐於**得中亭**之右路壯勇內使率各將領旗鼓相向箚駐於左路予由轅門御**得中亭**內外使以下內外營將領以軍禮隨班參現仍設試場文試官及武試官武擧子行禮如儀命承旨 徐榮輔整齊儒生於**壯南軒**庭以沛市多公侯相爲賦題命文試官奉御題詣**壯南軒**懸揭儒生行禮如儀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4일(임인)

강**은약헌(隱若軒)**에서 과차(科次)를 행하였다.

목○ 시권(試券)을 거두었다. 시관 **채제공(蔡濟恭)** 등에게 명하여 시권을 채점하여 2인을 뽑게 하고 전교하기를, "**수원** 읍내의 유생을 시취하였을 때 부(賦)에서 삼하(三下)를 맞은 진사(進士) 민영조(閔榮祖)에게는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초삼하(草三下)를 맞은 생원(生員) 신광식(申光軾)에게는 2분(分)을 주라." 하였다.

이어 민영조를 소견하고 묻기를, "그대는 어느 정도 과문(科文)에 대한 공부를 하였는가?" 하니, 민영조가 아뢰기를, "부(賦)를 지은 것이 1000여 수(首)입니다." 하여, 진퇴부(進退賦) 한 구절을 지어 올리라고 명하였다. 민영조가 지어 올리기를, "미천한 이름이 문과방목(文科榜目)에 올라 성상 앞에서 성은을 칭송하네.［微名忝於桂籍 聖恩頌於楓階］" 하였다. 또 묻기를, "그대의 족당(族黨) 가운데 현달한 이가 있는가?" 하니, 민영조가 아뢰기를, "없습니다마는 신의 할아비 민수언(閔洙彦)이 정언이었습니다." 하였다.

채제공이 아뢰기를, "시권들 가운데 '삼공(三公)과 대적할 자가 전혀 없다.［萬無三台作

54) 풍패(豐沛) …… 많다 : 풍패는 한(漢)나라 고조(高祖) 유방(劉邦)의 고향으로 천자의 고향을 말한다. 여기서는 정조가 **수원**에 성곽을 쌓을 예정이었고 **현륭원(顯隆園)**을 모셨으므로 이곳을 풍패로 여겨서 이런 부제(賦題)를 낸 것이다. 《正祖實錄 22年 10月 19日》

對]’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만무(萬無)’라고 한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제학(一提學)이 이른바 ‘이어(俚語 상말)입니다.’라고 한 것이 참으로 옳습니다. 사습(士習)이 매우 놀랄 만하니 이와 같은 부류는 시권의 봉미(封彌)를 뜯어서 경계를 보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허락하였는데 바로 임면철(林勉喆)의 시권이었다. 내가 정민시에게 이르기를, “이 작품은 매우 놀라우니, 해당 유생에게 내주어 앞으로 감히 이와 같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채제공에게 이르기를, “성 쌓을 터는 내일 간심하려고 한다. 오늘 큰길에서 **득중정**을 향해 들어오다 기(旗)를 꽂은 곳을 보니 곧바로 북리(北里) 가운데를 뚫고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하면 북리의 인가(人家)가 많이 철거될 것이니 너무 애석하다. 그리고 **득중정**과의 거리가 1후장(帿場 마장)에 불과하니 참으로 이른바 담장에 얼굴을 딱 대고 서 있는 것과 같다. 내 생각에는 성 쌓을 터를 지금 기를 꽂은 곳에 비해 다소 넓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본부의 장물(長物)이 북리에만 있으니 지금 철거할 경우 어찌 신중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을 지키는 면으로 보면 비록 크게 하는 것이 혐의스럽기는 하나 북쪽을 조금 넓힌들 어찌 지키기 어려울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원소(園所 **현륭원(顯隆園)**)가 있는 곳은 **화산**(花山)이고 이 **수원부**는 **유천**(柳川)이다. 화(華) 땅을 지키는 사람이 요(堯) 임금에게 축원한 뜻[55]을 취하여 이 성의 이름을 **화성(華城)**이라고 하였는데 또 글자의 음이 화(華) 자와 화(花) 자는 통용된다. **화산**의 뜻은 대체로 800개의 봉우리가 이 산 하나를 둘러싸 보호하는데 둥글게 둘러싼 형세가 마치 꽃잎과 같다고 하여 이렇게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유천성(柳川城)**은 남북을 조금 길게 해서 버들잎 모양처럼 만들면 참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이렇게까지 하교하시니 신은 흠앙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강行科次于**隱若軒**

목捧券訖命試官 **蔡濟恭**等考券取二人敎曰**水原**邑內儒生試取賦三下進士閔榮祖直赴殿試草三下生員申光軾給二分仍召見閔榮祖問曰爾之科工幾何榮祖曰做賦千餘首矣命製進進退賦一句榮祖製進曰微名忝於桂籍聖恩頒於楓階又問曰爾之族黨有顯者乎榮祖曰無之而臣祖洙彦爲正言矣濟恭曰諸試券中有以萬無三台作對者萬無云者莫曉其意而一提學所謂俚語云者良然矣士習萬萬可駭如此之類拆名示警恐好矣許之乃林勉喆試券也予謂民始曰此作甚駭然出給該儒生後無敢如是之意嚴飭可也謂濟恭曰城址明將看審而今日自大路迤入**得中亭**見其樹旗處則直爲穿過北里之中若是則北里人家將多毁撤已爲可惜且距**得中亭**不過一帿場眞所謂正墻面予意則城址比今樹旗處稍令廣闊似好濟恭曰聖敎至當本府長物只有北里今若撤毁豈不重難守城雖嫌闊大北邊稍寬豈患難守乎予曰園所**花山**也此府**柳川**也取華人祝聖之意名此城曰**華城**且字音華與花通用也**花山**之義蓋以八百峯巒拱護一岡圓正如花辨之謂也然則**柳川**之城南北稍長如柳葉則實有意義矣濟恭曰聖敎至此臣不勝欽仰矣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4일(임인)

강**은약헌**에서 《원행정례(園幸定例)》의 이정 당상(釐正堂上) 심이지(沈頤之), 유사 당상(有司堂上) 윤행임(尹行任), 훈련대장 **조심태(趙心泰)**, 형조 판서 이득신(李得臣)을 소견하고, 입격(入格)한 무사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목○ 내가 심이지와 윤행임에게 이르기를, “이후로는 **은약헌**의 도배(塗褙)를 예지(例紙)로

55) 화(華) …… 뜻 : 요 임금이 화 지방을 돌아볼 때에 그곳을 지키는 봉인(封人)이 장수하고 부(富)를 누리고 아들을 많이 두기 등 세 가지를 축원한 일이 있다. 《莊子 天地》

간략하게 마련하고, 이 한 조항을 《원행정례》 가운데에 첨가해 넣으라."
하였다. 또 이득신에게 이르기를, "색리(色吏)의 면천(免賤)을 방금 전에 하교한 것이 있으니 훈련대장에게 물어서 첩문(帖文)을 만들어 주라."
하고, 승지 어용겸(魚用謙)에게는 상언(上言)에 대한 판부(判付)를 쓰라고 명하고, **조심태**에게는 입격한 무사에게 상격(賞格)을 나누어 주라고 명하였다.
○ 원래부터 집을 짓고 산 한량(閑良)을 대상으로 한 유엽전(柳葉箭) 1순(巡)에서 **장용군(壯勇軍)** 송복동(宋福同)은 관(貫)에 1발을 맞히고 변(邊)에 2발을 맞혀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한량 박사륜(朴師綸)·김광희(金光希), 장용군 이보적(李普迪)은 변에 3발을 맞히고, 안도관(安道貫)·김홍윤(金弘潤)은 관에 1발을 맞히고 변에 1발을 맞혀 모두 회시(會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윤형동(尹炯東) 등 3인은 변에 2발을 맞혀 각각 장궁(長弓) 1장(張)씩을 주고, 최만빈(崔萬彬)은 관에 1발을 맞히고 이흡(李熻) 등 18인은 변에 1발을 맞혀 각각 목(木) 1필(疋)씩을 주었다.
원저(園底 **현륭원** 주변) 부근 마을의 한량을 대상으로 한 유엽전 1순에서 한량 최도복(崔道福)·최용서(崔龍瑞)·홍만장(洪萬章)은 변에 2발을 맞혀 모두 회시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장용군 노효태(盧孝泰) 등 2인은 관에 1발을 맞히고 김언주(金彦柱) 등 18인은 변에 1발을 맞혀 각각 목 1필씩을 주었다.
별군관(別軍官)과 친군위(親軍衛)를 대상으로 한 유엽전 1순에서 별군관인 출신(出身) 김윤태(金允泰)는 관에 1발을 맞히고 변에 3발을 맞혔으며, 친군위인 자헌대부(資憲大夫) 최도의(崔道義),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받은 최해대(崔海大)는 관에 1발을 맞히고 변에 2발을 맞혀 모두 가자하고, 가선대부(嘉善大夫) 이광현(李光賢)·한량 김성악(金星岳)·출신 한운서(韓雲瑞)는 변에 3발을 맞혀 김성악은 회시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이광현과 한운서에게는 각각 동개(筒箇) 1(部)씩을 모두 외탕고(外帑庫)에서 제급(題給)하였다.
강召見定例釐正堂上沈頤之有司堂上尹行任 訓將 **趙心泰** 秋判 李得臣于**隱若軒**入格武士施賞有差

목予謂頤之 行任曰**隱若軒**塗褙此後則以例紙從略磨鍊此一款添入於定例中又謂得臣曰色吏免賤俄有下敎者問于訓將成給帖文命承旨 魚用謙書上言判付命**心泰**頒給入格武士賞格○原居築室閑良柳葉箭一巡**壯勇軍**宋福同貫一中邊二中直赴殿試閑良朴師綸 金光希 **壯勇軍**李普迪以上邊三中安道貫 金弘潤以上貫一中邊一中竝直赴會試尹炯東等三人邊二中各長弓一張崔萬彬貫一中李熻等十八人以上邊一中各木一疋園底附近里閑良柳葉箭一巡閑良崔道福 崔龍瑞 洪萬章以上邊二中竝直赴會試**壯勇軍**盧孝泰等二人以上貫一中金彦柱等十八人以上邊一中各木一疋別軍官親軍衛柳葉箭一巡別軍官出身金允泰貫一中邊三中親軍衛資憲崔道義直赴崔海大以上貫一中邊二中竝加資嘉善李光賢閑良金星岳出身韓雲瑞以上邊三中星岳直赴會試光賢 雲瑞各筒箇一部竝自外帑庫題給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4일(임인)

강봉안각(奉安閣)의 위장(衛將) 이하에게 규례를 상고하여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목○ 위장 윤치홍(尹致宏)·차도항(車道恒)에게 각각 궁자(弓子) 1장씩을 외탕고에서 제급하고, 겸별감(兼別監) 박경인(朴景仁) 등 4인과 서원(書員) 나문빈(羅文彬) 등 2인에게는 각각 목 1필씩을, 조라치(照羅赤) 박세환(朴世煥) 등 2명에게는 각각 포(布) 1필씩을, 군사(軍士) 이차만(李次萬) 등 2명에게는 각각 미(米) 2말씩을 호조에서 작년의 예에 따라 제급하였다.
강命奉安閣衛將以下考例施賞

복衛將尹致弦 車道恒各弓子一張外帑庫題給兼別監 朴景仁等四人書員羅文彬等二人以上各木一疋照羅赤 朴世煥等二名各布一疋軍士李次萬等二名各米二斗自戶曹依昨年例題給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4일(임인)

강비변사의 문낭청 홍대협(洪大協)과 정만석(鄭晩錫)의 수본(手本)을 판하하고, 병조 판서 서유방(徐有防)은 월봉(越俸) 1등에 처하고 포도대장 조규진(趙圭鎭)은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복○ 홍대협의 수본에, "수가한 사람들 가운데 인마(人馬)를 많이 입파(入把)하거나 반과(盤果)의 금법을 어긴 자들을 적간(摘奸)하기 위해 과천(果川), 금천(衿川), 광주(廣州), 수원(水原) 등지로 나갔는데, 먼저 과천에서 방향을 바꿔 수원 및 원소로 나아갔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을 일일이 붙잡고 아울러 나열하여 기록하니 등급을 나누어 감치(勘治)하소서." 하였다.

○ 별단에, "［인마를 많이 입파한 부류］ 어영청 교련관(御營廳敎鍊官) 권유경(權有經)의 종 억금(億金)은 장표(掌標)가 없었고, 장용위(壯勇衛) 이상교(李相敎)의 종 흥금(興金)은 장표가 없었고, 어영청 별초(御營廳別抄)의 장설 부지군(掌設負持軍) 성돌(聖乭)은 장표가 없었고, 금위영의 복마군(卜馬軍) 김용석(金龍石)·이태(李太)는 모두 요패(腰牌)는 있었으나 장표가 없었고, 장용영의 복마군 이희손(李喜孫)은 요패도 없고 장표도 없었으며, 훈련도감의 복마군 함인익(咸仁益)은 요패는 있었으나 장표가 없었고, 총융청의 복마군 오귀성(吳貴成)은 요패도 없고 장표도 없었으며, 우초 선기대(右哨善騎隊) 이종수(李宗壽)의 부지군 김완국(金完國)은 장표가 없었고, 용호영의 당상 군관(堂上軍官) 이칠진(李七鎭)의 부지군 김순돌(金順乭)은 장표가 없었고, 금군 별장(禁軍別將) 이득제(李得濟)의 여마견부(餘馬牽夫) 채윤득(蔡允得)은 장표가 없었습니다.

［반과의 금법을 어긴 부류］ 훈련도감의 대기수 차지(大旗手次知) 장영(張泳)·한흥국(韓興國), 교련관 안취적(安就績)은 잡탕(雜湯) 1기(器)·산적(散炙)과 계적(鷄炙 닭산적)을 합한 1기·좌반(佐飯) 1기·채(菜) 1기·장(醬) 1기·침채(沈菜) 1기, 장용영의 지구관(知殼官) 황가(黃哥)와 - 이름은 모른다. - 반상지거인(盤床持去人)인 장막군(帳幕軍) 양항겸(梁恒謙)은 잡탕 1기·적 1기·침채 1기·장 1기, 사복시의 장설 차지(掌設次知)인 서리(書吏) 조도(趙燾)는 잡탕 1기·적 1기·침채 1기·장 1기, 금위영 교련관 윤옥(尹沃)의 장설 차지인 등롱군(燈籠軍) 홍수재(洪秀才)는 잡탕 1기·전유(煎油)와 계적을 합한 1기·침채 1기·장 1기를 가져왔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인마를 많이 입파한 부류 가운데 권유경 등 3인은 해당 영으로 하여금 곤장을 쳐서 죄를 다스리게 하고, 김용석 등 5명은 용서하고, 이종수 등 2인은 해당 영으로 하여금 엄히 곤장을 치게 하라. 이득제의 경우 여마(餘馬)가 비록 법전에 실려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장표가 없었으니 살피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려운바 추고하라. 반과의 금법을 어긴 부류 가운데 장영 등 5인은 모두 과천현(果川縣)의 옥에 가둔 다음 해당 영으로 하여금 각별히 곤장을 쳐서 죄를 다스리게 하고, 사복시의 해당 서리는 병조 판서로 하여금 곤장을 쳐서 죄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 정만석의 수본에, "수가한 인원 가운데 인마를 많이 입파하거나 반과의 금법을 어긴 자들을 적간하기 위해 금천에서 차차 방향을 돌려 원소에 나아갔고 돌아서 수원에 도착하였는데 사목(事目)에 따라 법을 어긴 죄인을 붙잡고 열거하니 등급을 나누어 감치하소서." 하였다.

○ 별단에, “〔인마를 많이 입파한 부류〕 포도대장 조규진(趙圭鎭)의 솔거노비(率去奴婢) 만세(萬世)는 장표가 없었고, 어영청 교련관 권유경의 종 순득(順得)은 장표가 없었고, 병조의 당상 군관(堂上軍官) 고경윤(高景胤)의 솔거노비 오흥대(吳興大)는 장표가 없었고, 규장각의 도사령(都使令) 임덕서(林德瑞)의 솔거노비 김삼금(金三金)은 장표가 없었고, 금위영의 복마군 김치원(金致遠)·유득천(兪得千)은 모두 장표가 없었고, 사지청(事知廳)의 복태군(卜駄軍) 정운이(鄭云伊)는 장표가 없었고, 훈련도감의 복마군 김치상(金致祥)은 요패는 있었으나 장표가 없었고, 장용위 조윤문(趙允門)의 솔거노비 김대복(金大卜)은 장표가 없었습니다.

〔반과의 금법을 어긴 부류〕 용호영 교련관(龍虎營敎鍊官) 천기일(千起一)은 밥과 반찬 7기, 내의(內醫) 김제묵(金濟默)·김광국(金光國)·주명신(周命新)·백성일(白成一)·진동수(秦東秀)는 밥과 반찬 6기, 훈련도감의 군색 고지기(軍色庫直) 김치수(金致秀)와 정원의 서리 박홍수(朴弘修)는 2단짜리 대찬합(大饌榼)을 가져왔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인마를 많이 입파한 부류 가운데 만세 등 3인은 해당 영으로 하여금 곤장을 쳐서 죄를 다스리게 하고, 임덕서는 병조 판서로 하여금 엄히 죄를 다스리게 하고, 김치원 등 4명은 용서하고, 조윤문은 해당 영의 대장으로 하여금 엄히 죄를 다스리게 하라. 반과의 금법을 어긴 부류 가운데 천기일은 병조 판서로 하여금 곤장을 치게 하고, 김제묵 등 5인은 해당 서리를 병조 판서로 하여금 곤장을 쳐서 죄를 다스리게 하고, 김치수 등 2인은 반(盤)을 배설(排設)한 것과는 마련한 것이 차이가 나니 각 해당 부처로 하여금 엄히 죄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 다음 날 병조가 비변사 낭청이 적간하였을 때에 붙잡아 온 사람들에게 곤장을 쳤다고 올린 초기로 인하여, 전교하기를, “반과(盤果)의 폐단과 장설(掌設)의 폐습은 자고로 사복시와 내국(內局)보다 심한 곳이 없다. 이는 모두 본시와 본원(本院 내의원(內醫院))이 액정서(掖庭署)와 가깝기 때문이고, 중관(中官)과 별감(別監)들의 구습(舊習)에 대해 아직도 이전의 곤경을 교훈 삼지 못하고는 도리어 주제넘게 흉내를 내려고 해서 그런 것이다. 금령이 내려져서 대관과 경재도 감히 쓰지 못하는데 내국의 하속(下屬)이 어찌 감히 유반(杻盤)과 접시(楪匙)를 쓸 수 있단 말인가. 사복시의 서리가 쓴 것은 오히려 그리 대단치 않은 일에 속한다.

이후로 반탕기(飯湯器) 및 소유기(小柳器) 이외에 여러 기구들을 목반(木盤), 유반(柳盤) 등의 쟁반에 배설(排設)하여 가지고 가는 것은 각별히 엄히 금하고, 범한 자는 모두 관원과 함께 엄하게 감처하라. 이 전교를 내의원과 사복시의 벽에 써서 게시하고, 이어 묘당으로 하여금 또한 써서 붙이게 하라. 그리고 경은 내국과 사복시의 직임을 모두 겸하고 있는데 기일 전에 제대로 단속하였다면 어찌 법을 어기는 일이 있었겠는가. 우선 월봉 1등에 처하겠다.” 하였다.

○ 포도청이 아뢰기를, “장표가 없어서 붙잡힌 사람들에게 각 해당 영으로 하여금 곤장을 치게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의 종 만세에게 곤장 15도(度)를 쳤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경의 종이 무슨 죄인가. 경을 추고하겠다.” 하였다.

강判下文備郎 洪大協 鄭晩錫手本命兵曹判書 徐有防越俸一等推捕將 趙圭鎭

목大協手本以爲隨駕諸人人馬濫把盤果冒禁摘奸事果川 衿川 廣州 **水原**等地出去先自果川轉進**水原**及園所凡係冒犯之人一一執捉竝爲列錄分等勘治人馬濫把秩御營廳敎鍊官 權有經奴億金無掌標壯勇衛 李相敎奴興金無掌標御營廳別抄掌設負持軍聖乭無掌標禁衛營卜馬軍金龍石 李太竝有腰牌無掌標**壯勇營**卜馬軍李喜孫無腰牌無掌標訓鍊都監卜馬軍咸仁益有腰牌無掌標總戎廳卜馬軍吳

貴成無腰牌無掌標右哨善騎隊李宗壽負持軍金宗國無掌標龍虎營堂上軍官李七鎭負持軍金順乭無掌標禁軍別將 李得濟餘馬牽夫蔡允得無掌標盤果冒禁秩訓鍊都監大旗手次知張泳 韓興國 敎鍊官安就績以上雜湯一器散炙雞炙合一器佐飯一器菜一器醬一器沈菜一器壯勇營知穀官黃哥名不知盤床持去人帳幕軍梁恒謙 雜湯一器炙一器沈菜一器醬一器司僕掌設次知書吏趙燾雜湯一器炙一器沈菜一器醬一器禁衛營敎鍊官 尹沃掌設次知燈籠軍洪秀才 雜湯一器煎油雜炙合一器沈菜一器醬一器敎以人馬濫把秩權有經等三人令該營棍治金龍石等五名分揀李宗壽等二人令該營嚴棍李得濟餘馬雖是法典無標難免不察推考盤果冒禁秩張泳等五人竝囚果川縣獄令該營各別棍治司僕該吏令兵判棍治 晩錫手本以爲隨駕人員之人馬濫把盤果冒禁摘奸事自衿川次次轉進于園所回到水原依事目執捉開錄分等勘治人馬濫把秩捕盜大將 趙圭鎭率去萬世無掌標御營廳敎鍊官 權有經奴順得無掌標兵曹堂上軍官高景胤率去吳興大無掌標奎章閣都使令 林德瑞率去金三金無掌標禁衛營卜馬軍金致遠 兪得千竝無掌標事知廳卜馭軍鄭云伊無掌標訓鍊都監卜馬軍金致祥有腰牌無掌標壯勇衛 趙允門率去金大卜無掌標盤果冒禁秩龍虎營敎鍊官 千起一飯與饌七器內醬 金濟默 金光國 周命新白成一 秦東秀以上飯與饌六器訓鍊都監軍色庫直金致秀 政院書吏 朴弘修以上二層大饌楹敎以人馬濫把秩萬世等三人令該營棍治林德瑞令兵判嚴治金致遠等四名分揀趙允門令該營大將嚴治盤果冒禁秩千起一令兵判決棍金濟默 等五人該吏令兵判棍治金致秀等二人與盤排設辦有異令各該處嚴治〇翌日因該曹備郎摘奸時被捉人等決棍草記敎曰盤果之弊掌設之習自古莫甚於司僕 內局此皆由於本寺本院近於掖庭之致中官 別監輩之舊習猶未懲羹反欲效嚬而然禁令之下大官卿宰之所不敢爲者內局下屬焉敢用柮盤及楪匙乎僕吏猶屬餘事此後飯湯器及小柳器外持往木盤柳盤等盤排諸具者各別嚴禁犯者竝與官員重勘以此傳敎書揭該院該寺壁上仍令廟堂亦爲書付而卿俱兼內局 太僕若能先期約束豈有犯科爲先越俸一等〇捕盜廳啓言無掌標被捉人等令名該營決棍有命矣臣奴子萬世決棍十五度敎以卿奴何罪卿推考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4일(임인)

강**은약헌**에서 각신들을 소견하였다.

목○ 제학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이번에 비변사 낭청의 적간 가운데 각 군영의 군사로서 요패(腰牌)만 있고 장표(掌標)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비변사 낭청이 모두 많이 입파한 것으로 논하였습니다. 그런데 군병들은 이미 요패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장표를 만들어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장표가 없다고 해서 붙잡는다면 많은 군병들이 누군들 장표가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상께서 이미 굽어살피셔서 이와 같은 부류가 모두 용서를 받았습니다만, 신의 생각에는 군병에게 장표를 지급하는 것은 실로 염려스럽습니다. 그들이 이미 요패가 있으면 많이 입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 장표를 사적으로 남에게 주어서 몰래 거느리고 오지 않으리라고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검교직각 윤행임(尹行任)이 아뢰기를, “일전에 주원(廚院 사옹원(司饔院))의 아전이 와서 보고 말하기를, ‘매번 원행할 때에 사기(砂器)를 가지고 각 참(站)에서 대령하는데 《원행정례》를 바로잡을 때에 누락되어 장표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엄히 신칙하실 때에는 적간할 때에 쉽게 적발되어 붙잡힐 것이니, 추후라도 1개(箇)를 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라간(水刺間) 소속에게 사기를 대령한 곡절을 물었더니, 2년에 한 번 진배(進排)하는데 오래된 사기는 본원의 하속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과천참(果川站)은 기명(器皿)이 비록 부족하지만 **수원(水原)**은 여유가 있으니, 이후로는 과천참에서만 대령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강召見諸閣臣于隱若軒

목 提學 鄭民始曰今番備郎摘奸中各營軍士之有腰牌而無掌標者皆以濫把論云軍兵旣有腰牌故初無掌標成給之規若以無掌標而捉之則許多軍兵孰非無掌標乎自上己爲俯燭如此之類皆蒙分揀而臣意則軍兵之給掌標實爲可慮渠輩旣知有腰牌之不歸濫把則安知不以掌標私自授人而潛爲率來乎予曰卿言是矣檢校直閣 尹行任曰日前廚院吏來見曰每於園幸時持砂器待令於各站而見漏於定例釐正時掌標不爲磨鍊如今番嚴飭之時易爲現捉於摘奸請追出一箇故問砂器待令之委折於水剌間所屬則間二年進排而舊件則分給於本園下屬云矣予曰果川站器皿雖不足水原則有餘此後使之只於果川站待令好矣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4일(임인)

강수궁 승지(守宮承旨) 정대용(鄭大容)을 체차하고 어용겸(魚用謙)을 임명하였다. 이면응(李晃膺)을 올려서 도승지로 삼고, 정대용을 가승지로 삼아 그대로 수궁의 직임을 살피게 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수궁 승지를 체차해 주라. 가자하는 것은 소중한 분[56]을 위해 하는 것이니 어찌 통의(通擬)하기를 기다리겠는가. 대축(大祝) 어용겸은 빈자리에 제수하고 우승지는 올려서 도승지에 제수한 다음 모두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되 그대로 먼저 입시한 뒤에 사은하게 하라." 하였다.

강遞守宮承旨 鄭大容以魚用謙代之陞拜李晃膺爲都承旨 大容爲假承旨仍察守宮

목敎曰守宮承旨許遞加資爲所重豈待通擬大祝 魚用謙見窠除授右承旨陞拜都承旨竝卽牌招察任仍令先入侍後謝恩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4일(임인)

강주서 서유문(徐有聞), 가주서 정문시(鄭文始)를 일이 끝난 뒤에 의금부로 잡아다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목○ 문시소(文試所)와 무시소(武試所)에 주서는 나뉘어 나아가야 하는데 서유문 등이 즉시 대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命注書 徐有聞 假注書 鄭文始事過後拿處

목文武試所注書當爲分詣而有聞等不卽待令也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4일(임인)

강행궁(行宮)의 각 문을 파수(把守)하는 정식을 엄히 하라고 신칙하였다.

목○ 병조 판서 서유방이 아뢰기를, "행궁은 일의 체모가 매우 특별합니다. 그런데 대가가 원소에 나아간 뒤에 혹 그 사이에 잡인이 외람되게 들어와 구경하는 일이 있기도 하니 참 너무도 놀랄 일입니다. 이후로는 각 문은 본부에서 특별히 더 파수하고 대문 밖에는 본부의 중군(中軍)이 교졸(校卒)을 많이 거느리고 미리 대령하고 있다가 대가가 원소에 나아갈 때 그대로 배치하여 세워서 잡인들을 일절 금지하도록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飭嚴行宮各門把守之式

목 兵判 徐有防啓言行宮事體自別而大駕詣園所後或有聞襍人冒入觀光之事誠極可駭此後則各門自本府別加把守大門外本府中軍多率校卒預爲等待大駕詣園所時仍爲排立襍人一切禁斷事請定式

56) 소중한 분 : 정조의 생부 사도세자(思悼世子)를 가리킨다.

施行允之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4일(임인)

강관동(關東)의 도류 죄인(徒流罪人)에 대한 방미방 계본(放未放啓本)을 판하하였다.

목○ 의금부가 아뢰기를, “본부 소관의 도배 죄인(徒配罪人)으로 간성(杆城)의 이우규(李禹圭), 금성(金城)의 홍경두(洪景斗), 정선(旌善)의 이운행(李運行) 등은 도신이 이미 풀어 줄 부류에 두었으니 모두 풀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형조가 아뢰기를, “본조 소관의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는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되 풀어 줄 부류 가운데 평창(平昌)의 김거(金琚), 평해(平海)의 이병석(李秉碩), 울진(蔚珍)의 종 봉놈(奉老味), 간성의 김치권(金致權), 낭천(狼川)의 이즉기(李卽起), 금성(金城)의 최수대(崔守大) 등은 비록 도년(徒年)의 형을 받았으나 죄명이 심각하고 중하니 무기한으로 정배하는 부류로 옮겨 기록하고, 여쭈어 결정할 부류 가운데 홍천(洪川)의 정성환(鄭誠煥), 이천(伊川)의 황취중(黃就中), 안협(安峽)의 김영조(金永祚) 등은 모두 풀어 주고, 김화(金化)의 김발(金鉢), 양양(襄陽)의 김동수(金同守) 등은 죄명이 다소 중하니 모두 그대로 정배해 두고, 풀어 주지 않을 부류 가운데 삼척(三陟)의 김치흥(金致興), 평해의 한치순(韓致淳), 울진의 한치량(韓致亮), 금성(金城)의 최공대(崔公大), 회양(淮陽)의 최필대(崔必大), 통천(通川)의 김오양(金五陽), 평해의 이양순(李養淳), 간성의 김채려(金采麗), 금성의 이홍엽(李弘燁) 등은 혹은 포흠 내고 혹은 유용하였는데 이러한 죄명은 다른 도에서는 모두 풀려났으니 일체 풀어 주라는 뜻으로 해당 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모두 윤허하고 전교하기를, “이번의 사령(赦令)은 소중한 의미가 있으니 오늘 안에 공문을 보내 알리라.” 하였다.

강判下關東徒流放未放啓本

목 義禁府啓言本府所管徒配罪人杆城 李禹圭 金城 洪景斗 旌善 李運行等道臣旣置放秩請竝放送刑曹啓言本曹所管放未放秩竝依啓施行而放秩中平昌 金琚 平海 李秉碩 蔚珍奴奉老味 杆城 金致權 狼川 李卽起 金城 崔守大等雖係徒年罪名深重移錄勿限年秩稟秩中洪川 鄭誠煥 伊川 黃就中 安峽 金永祚等竝放送金化 金鉢 襄陽 金同守等罪名稍重竝仍配未放秩中三陟金致興平海 韓致淳 蔚珍 韓致亮 金城 崔公大 淮陽 崔必大 通川 金五陽 平海 李養淳 杆城 金采麗 金城 李弘燁等或是逋欠或是那移而此等罪名他道皆已蒙放一體放送之意請分付該道竝允之敎以今番赦令有所重今日內行會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4일(임인)

강노인직을 받을 <u>수원부(水原府)</u>의 노인에게 노인직을 가자하는 것으로 하비(下批)하라고 명하였다.

목○ <u>수원 유수</u> 이명식(李命植)의 장계에, “본부의 세찬(歲饌)을 받을 노인 가운데 해로(偕老)한 자 16인에게 원래의 세찬 외에 사람마다 미(米) 2말, 염(鹽) 1말 대신 미 5되, 대구어(大口魚) 1미(尾) 대신 미 3되씩을 더 지급하고, 사서인으로 80세 미만이지만 부처(夫妻)가 해로한 자는 남녀 모두 128인인데 성명과 나이를 후록(後錄)하고 급히 아룁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구전 정사로 하비하고 그 가운데 실직에 붙인 자 역시 구전 정사로 하비한 다음 모두 오늘 어보(御寶)를 찍어서 유수에게 전하도록 하라고 즉시 분부하라.” 하였다.

○ 후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가 해로한 사람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지의청(池宜淸) - 나이가 70세이고 처 문씨(文氏)는 나이가 71세이며, 박근만(朴根萬)은 나이가 84세이고 처 이씨(李氏)는 나이가 75세이며, 이화영(李華英)은 나이가 78세이고 처 김씨(金氏)는 나이가 77세이며, 정복상(鄭福相)은 나이가 82세이고 처 최씨(崔氏)는 나이가 80세이며, 최엇금(崔嵓金)은 나이가 72세이고 처 김씨는 나이가 71세이며, 송사돌(宋巳乭)은 나이가 80세이고 처 최씨는 나이가 75세이며, 이덕흥(李德興)은 나이가 75세이고 처 김씨는 나이가 74세이며, 김천복(金天福)은 나이가 78세이고 처 김씨는 나이가 72세이며, 신수만(申守萬)은 나이가 81세이고 처 김씨는 나이가 76세이다. - 등 9인에게 가의대부(嘉義大夫)를 가자하고 동지중추부사에 부직(付職)하였으며 처는 남편의 관직에 따라 봉작(封爵)하였다.
첨지(僉知) 김억만(金億萬) - 나이가 84세이고 처 김씨는 나이가 74세이다. 통정대부(通政大夫) 서귀철(徐貴喆)은 나이가 72세이고 처 노씨(盧氏)는 나이가 72세이다. 절충장군(折衝將軍) 박진수(朴震秀)는 나이가 84세이고 처 김씨는 나이가 84세이며, 김덕수(金德守)는 나이가 85세이고 처 이씨는 나이가 85세이다. 통정대부 김석구(金碩九)는 나이가 78세이고 처 양씨(梁氏)는 나이가 71세이다. 절충장군 김선삼(金先三)은 나이가 73세이고 처 김씨는 나이가 73세이며, 배삼재(裵三才)는 나이가 83세이다. - 등 7인은 가선대부를 가자하고 동지중추부사에 부직하였으며 처는 남편의 관직에 따라 봉작 - 배삼재의 처는 사비(私婢)여서 논하지 않았다. - 하였다.
양인(良人) 임호벽(林好碧) - 나이가 75세이고 처 조씨(趙氏)는 나이가 74세이다. 유학(幼學) 유지겸(柳志謙)은 나이가 79세이고 처 신씨(申氏)는 나이가 85세이다. 충의(忠義) 송시광(宋時光)은 나이가 79세이고 처 박씨(朴氏)는 나이가 78세이다. 양인 조엇만(曺嵓萬)은 나이가 73세이고 처 엄씨(嚴氏)는 나이가 72세이며, 김희동(金希東)은 나이가 83세이고 처 천씨(千氏)는 나이가 75세이다. 한량(閑良) 윤태만(尹泰萬)은 나이가 75세이고 처 김씨는 나이가 75세이며, 정동원(鄭東元)은 나이가 78세이고 처 엄씨는 나이가 79세이며, 장대현(張大賢)은 나이가 77세이고 처 서씨(徐氏)는 나이가 77세이며, 이시빈(李時彬)은 나이가 71세이고 처 김씨는 나이가 71세이며, 현성집(玄聖楫)은 나이가 75세이고 처 노씨는 나이가 73세이다. 유학 이세흥(李世興)은 나이가 75세이고 처 유씨(劉氏)는 나이가 74세이며, 이홍세(李弘世)는 나이가 85세이고 처 문씨(文氏)는 나이가 90세이며, 김여일(金麗日)은 나이가 81세이고 처 천씨는 나이가 73세이며, 최명대(崔命大)는 나이가 79세이고 처 노씨는 나이가 79세이다. 업무(業武) 최도성(崔道成)은 나이가 73세이고 처 임씨(林氏)는 나이가 74세이다. 한량 김억만(金億萬)은 나이가 81세이고 처 이씨는 나이가 81세이며, 박구발(朴九發)은 나이가 73세이고 처 최씨는 나이가 73세이며, 예성겸(芮成謙)은 나이가 74세이고 처 이씨는 나이가 74세이며, 김성우(金聖佑)는 나이가 74세이고 처 박씨는 나이가 72세이며, 박한주(朴漢周)는 나이가 76세이고 처 김씨는 나이가 73세이며, 김사영(金士永)은 나이가 78세이고 처 백씨(白氏)는 나이가 73세이며, 최흥제(崔興濟)는 나이가 72세이고 처 김씨는 나이가 71세이며, 김만영(金萬榮)은 나이가 81세이고 처 한씨(韓氏)는 나이가 81세이며, 서유성(徐有成)은 나이가 81세이고 처 선씨(宣氏)는 나이가 81세이다. 유학 한필중(韓必中)은 나이가 73세이고 처 김씨는 나이가 71세이다. 출신(出身) 이진양(李震陽)은 나이가 71세이고 처 이씨는 나이가 73세이다. 업무 장태원(張泰元)은 나이가 73세이고 처 박씨는 나이가 75세이다. 양인(良人) 김순돌(金順乭)은 나이가 81세이고 처 이씨는 나이가 71세이다. 업무 윤성장(尹聖章)은 나이가 76세이고 처 강씨(姜氏)는 나이가 76세이다. 유학 최욱(崔郁)은 나이가 76세이고 처 홍씨(洪氏)는 나이가 76세이며, 엄한은(嚴漢殷)은 나이가 81세이고 처 이씨

는 나이가 79세이며, 임세중(任世重)은 나이가 72세이고 처 장씨(張氏)는 나이가 73세이다. 한량 최한명(崔漢明)은 나이가 75세이고 처 서씨는 나이가 75세이며, 김봉일(金鳳日)은 나이가 72세이고 처 박씨는 나이가 73세이다. 유학 엄신(嚴伸)은 나이가 80세이고 처 고씨(高氏)는 나이가 76세이다. 한량 김진원(金辰元)은 나이가 81세이고 처 양씨(梁氏)는 나이가 81세이며, 정성삼(丁星三)은 나이가 81세이고 처 조씨는 나이가 71세이며, 유원영(兪元英)은 나이가 74세이고 처 황씨(黃氏)는 나이가 74세이다. 유학 이언성(李彦成)은 나이가 76세이고 처 유씨(劉氏)는 나이가 72세이며, 이수증(李壽增)은 나이가 71세이고 처 이씨는 나이가 72세이며, 박상근(朴尙根)은 나이가 71세이고 처 황씨는 나이가 70세이다. 한량 정태운(丁泰云)은 나이가 81세이고 처 김씨는 나이가 74세이며, 김한근(金漢根)은 나이가 82세이고 처 서씨는 나이가 82세이며, 김몽상(金夢尙)은 나이가 81세이고 처 정씨(鄭氏)는 나이가 81세이며, 박대악(朴大岳)은 나이가 74세이고 처 정씨는 나이가 74세이며, 이정회(李廷會)는 나이가 81세이고 처 정씨는 나이가 75세이며, 조운재(趙雲才)는 나이가 77세이고, 양인 이천근(李天根)은 나이가 83세이다. - 등 48인은 통정대부에 초자(超資)하고 첨지중추부사에 부직하였으며 처는 남편의 관직에 따라 봉작 - 조운재의 처와 이천근의 처는 모두 사비여서 논하지 않았다. - 하였다.

강命水原府老職人加資下批

목該留守 李命植狀啓以爲本府歲饌老人中偕老者十六人元歲饌外每人米二斗鹽一斗代米五升大口魚一尾代米三升式加給士庶之未滿八十而夫妻偕老者男女竝爲一百二十八人姓名年歲後錄馳啓敎以口傳下批其中付實職者亦令口傳下批皆於今日安寶傳于留守卽爲分付○夫妻偕老人嘉善池宜淸年七十妻文氏年七十一朴根萬年八十四妻李氏年七十五李華英年七十八妻金氏年七十七鄭福相年八十二妻崔氏年八十崔詮金年七十二妻金氏年七十一宋已乭年八十妻崔氏年七十五李德興年七十五妻金氏年七十四金天福年七十八妻金氏年七十二申守萬年八十一妻金氏年七十六等九人加嘉義付同知妻從夫職封爵僉知 金億萬 年八十四妻金氏年七十四通政徐貴喆年七十二妻盧氏年七十二折衝朴震秀年八十四妻金氏年八十四金德守年八十五妻李氏年八十五通政金碩九年七十八妻梁氏年七十一折衝金先三年七十三妻金氏年七十三裵三才年八十三等七人加嘉善付同知妻從夫職封爵裵三才妻以私婢勿論良人林好碧 年七十五妻趙氏年七十四幼學柳志謙年七十九妻申氏年八十五忠義宋時光年七十九妻朴氏年七十八良人曺詮萬年七十三妻嚴氏年七十二金希東年八十三妻千氏年七十五閑良尹泰萬年七十五妻金氏年七十五鄭東元年七十八妻嚴氏年七十九張大賢年七十七妻徐氏年七十七李時彬年七十一妻金氏年七十一玄聖楫年七十五妻盧氏年七十三幼學李世興年七十五妻劉氏年七十四李弘世年八十五妻文氏年九十金麗日年八十一妻千氏年七十三崔命大年七十九妻盧氏年七十九業武崔道成年七十三妻林氏年七十四閑良金億萬年八十一妻李氏年八十一朴九發年七十三妻崔氏年七十三南成謙年七十四妻李氏年七十四金聖佑年七十四妻朴氏年七十二朴漢周年七十六妻金氏年七十三金士永年七十八妻白氏年七十三崔興濟年七十二妻金氏年七十一金萬榮年八十一妻韓氏年八十一徐有成年八十一妻宣氏年八十一幼學韓必中年七十三妻金氏年七十一出身李震陽年七十一妻李氏年七十三業武張泰元年七十三妻朴氏年七十五良人金順乭年八十一妻李氏年七十一業武尹聖章年七十六妻姜氏年七十六幼學崔郁年七十六妻洪氏年七十六嚴漢殷年八十一妻李氏年七十九任世重年七十二妻張氏年七十三閑良崔漢明年七十五妻徐氏年七十五金鳳日年七十二妻朴氏年七十三幼學嚴伸年八十妻高氏年七十六閑良金辰元年八十一妻梁氏年八十一丁星三年八十一妻趙氏年七十一兪元英年七十四妻黃氏年七十四幼學李彦成年七十六妻劉氏年七十二李壽增年七十一妻李氏年七十二朴尙根年七十一妻黃氏年七十閑良丁泰云年八十一妻金氏年七十四金漢根年八十二妻徐氏年八十二金夢尙年八十一妻鄭氏年八十一朴大岳年七十四妻鄭氏年七十四

李廷會年八十一妻鄭氏年七十五趙雲才年七十七良人李天根年八十三等四十八人超通政付僉知妻從夫職封爵趙雲才妻李天根妻竝以私婢勿論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4일(임인)

강입직

목검교직각 남공철(南公轍)

검서관 박제가(朴齊家)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5일(계묘)

강어가가 창덕궁(昌德宮)으로 돌아왔다.

목○ 궁으로 돌아오는 군령(軍令)을 명하였다. 초취(初吹)는 **팔달산(八達山)**으로, 이취(二吹)는 화청관(華請館)으로, 삼취(三吹)는 **용연(龍淵)**으로 한다. 군복을 갖추고 여(輿)를 타고 **수원(水原)** 행궁(行宮)을 나온다. 협련(挾輦)은 장용위(壯勇衛)로 마련하고, 금위대장은 **장용영(壯勇營)** 및 금위영의 경보군(京步軍)과 향보군(鄕步軍)을 거느리고 잠자리에서 아침을 먹고 날이 밝기 전에 편리한 대로 먼저 과천(果川)의 숙소에 가서 잠시 다리를 쉬되, **장용영**의 향군(鄕軍) 1개 초(哨)는 곧장 행궁에서 풀어 돌려보낸다. **장용 외사(壯勇外使)**는 본부의 군병을 거느리고 **이아(貳衙)**에서 주둔하다가 궁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려 계엄을 푼다. **장용영** 겸 훈련대장 **조심태(趙心泰)**는 **장용영**의 군대를 거느리고 **강무당(講武堂)** 앞길에서 주둔하다가 **팔달산**에서 이아로 들어갈 때에 수가(隨駕)한다. 선상(先廂)은, 장영대장(壯營大將)이 훈국의 마병(馬兵) 및 본영의 선기대(善騎隊)를 겸하여 살피면서 먼저 출발하여 **미륵당(彌勒堂)** 앞길에서 주둔하였다가 어가가 출발하기를 기다려 대오를 지어 출발한다. 후상(後廂)은 금군 별장(禁軍別將)이 본진(本陣)의 금군 및 선상이었던 금위영(禁衛營)의 마병을 거느리고 **진목정(眞木亭)** 앞길에서 주둔한다.

약속을 정하고 나서 각신 윤행임(尹行任)·서영보(徐榮輔), 승지 이면긍(李勉兢), 안성 군수(安城郡守) 조윤식(曺允植)은 뒤를 따르고, 여러 각신과 승지 및 감동 당상 **조심태**는 서문(西門)의 터를 정한 곳에 가서 대령하라고 명하였다. 육면정(六面亭 미로한정(未老閑亭)) 에 올라가 고을의 터를 내려다보며 윤행임 등에게 이르기를,

“이곳은 본디 허허벌판으로 인가가 겨우 5, 6호였는데 지금은 1000여 호나 되는 민가가 즐비하게 찼다. 몇 년이 안 되어 어느덧 하나의 큰 도회지가 되었으니 지리(地理)의 흥성함은 절로 그 시기가 있는 모양이다.”

하니, 윤행임 등이 아뢰기를, “이곳은 매년 상께서 주필(駐蹕)하는 장소가 되어 문과(文科)와 무과(武科)에 급제하는 인재가 배출되는 관계로 고을에 훌륭한 인물이 많아서 평양(平壤)이나 함흥(咸興)과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 지운(地運)이 크게 형통하고 크게 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본부의 유수 이명식(李命植)과 부인(夫人) 심씨(沈氏)에게 옷감과 음식물을 외탕고(外帑庫)에서 제급(題給) 하라고 - 미(米) 2섬, 약삼(藥蔘) 1냥(兩), 화화주(禾花紬)와 면주(綿紬) 각각 5필(疋)씩이다.- 명하였다. 이어 **팔달산**에 올라가 성 쌓을 터를 두루 살펴보았는데, 정민시(鄭民始), **조심태**, 이유경(李儒敬)이 이미 와서 대령하고 있었다.

내가 **조심태**에게 이르기를, “이곳에 장대(將臺)를 쌓을 것인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곳은 산꼭대기의 가장 높은 곳을 골라잡아서 먼 곳을 살피기에 편리하다. 기세가 웅장하고 탁 트였으니 참으로 하늘과 땅이 만들어 낸

장대라고 이를 만하다. 지금 깃발을 꽂아 놓은 곳을 보니 성 쌓을 범위를 대략 알겠으나 북리(北里)의 인가를 철거하자는 의논은 결국 좋은 계책이 아니다. 어제 **화성**(花城)과 **유천**(**柳川**)의 뜻을 이미 영중추부사에게 언급한 바가 있다. 이 성을 좁고 길게 하여 이미 버들잎 모양처럼 만들고 나면 북쪽 모퉁이의 인가들이 서로 어울려 있는 곳에 세 굽이로 꺾여서 천(川) 자를 본뜬 것처럼 되니 어찌 더욱더 **유천**에 꼭 들어맞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어 강무당에 나아가 조금 쉰 후 말을 타고 **이아(貳衙)**[57]에 이르러 배종(陪從)한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을 소견하였다. 홍낙성(洪樂性) 등이 아뢰기를, "어제 원소에서의 제향 때에 성상께서 무궁한 효성으로 지나치게 선군(先君)을 사모하는 바람에 몸이 많이 손상된 상태인데 곧바로 국내(局內) 및 화소(火巢) 내외의 주봉(主峯) 여러 곳을 간심하는 일로 아침부터 저물녘까지 연이어 추위를 무릅쓰고 수고로이 거둥하셨습니다. 그런 데다 오늘 또 본부의 성터 때문에 아침 일찍 산을 오르셨으므로 신들은 애가 타고 답답해서 진달하고 싶은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행(幸行)하신 뒤로 성상께서 마음이 잡히지 않아 밤에도 침수에 드신 적이 없으니 신들은 초조하고 절박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종묘사직의 중함을 깊이 생각하시어 옥체를 보중하고 아끼소서."

하여, 내가 이르기를, "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해의 이달을 만나 삼가 원침(園寢)을 배알하였으니, 스스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굳세지려고 애를 쓴들 되겠는가."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아까 **팔달산**에서 멀리 바라보니 영부(營府)가 웅장하고 여염(閭閻)이 즐비하여 참으로 큰 도회지였다. 5, 6년 안에 이처럼 빨리 취락을 이루고 도회지를 형성하니, 내가 참으로 매우 기쁘다. 성터의 형세에 대해서는 이제 막 감동 당상관에게 하교하였다. 이 성을 쌓는 것은 장차 억만년의 유구한 대계를 위해서이니 인화(人和)가 가장 귀하고 또 먼 장래를 생각하는 방책을 다 꾀해야 한다. 아까 성터의 깃발을 세운 곳을 보니 성 밖으로 내보내야 될 민가가 꽤 많이 있었다. 어찌 이미 지어진 집을 성역(城役) 때문에 철거할 수 있겠는가. 이는 인화를 귀하게 여기는 뜻이 아니다. 성터의 경우 남쪽과 북쪽 사이의 거리 또한 지나치게 가까운 결점이 있으니, 먼 장래를 생각하는 방도에 있어서도 더욱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화산과 **유천**의 뜻을 이미 영중추부사에게 말했는데, **화산**과 **유천**이 서로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억만년 유구한 태평 시대를 여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번에 성을 쌓을 때 버들잎 모양을 본뜨고 또 천(川) 자의 형태를 모방하여 구불구불하게 기초를 정하고 인가들도 성안에 들어와 살게 해야 마땅하다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홍낙성은 아뢰기를, "하교가 참으로 지당하십니다." 하고, **채제공**은 아뢰기를, "신도 감동 당상과 주고받은 말이 있었는데 지금 하교를 받들건대 구구절절이 사리에 꼭 들어맞습니다." 하고, 박종악(朴宗岳)과 김희(金憙) 등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대로 기초를 정하는 것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훈련대장은 본부의 부사로서 고을을 옮길 때에 주관하여 조처해서 수천의 민가를 이와 같이 편히 지내게 하였으니 그 공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였다. **채제공**에게 추후에 올라오라고 명하고 홍낙성에게 먼저 나아가라고 명한 다음 판관(判官) 김노성(金魯成)에게 이르기를, "이번 본부의 입방군(入防軍) 3개 초(哨)는 며칠 밤을 노숙하였

57) **이아(貳衙)** : 판관(判官)이 주재하는 관청이다. 판관은 종5품 관직으로 지방 군현의 수령에 해당하며, 유수(留守)를 보좌하여 유수부의 실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데, 1793년(정조17) 1월 **수원**이 유수부(留守府)로 승격될 당시 **수원** 판관이 설치된 것 같다. 이아는 동헌 건물인 화청관(華請館)을 비롯하여 총 102칸이 넘는 큰 규모인데,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의 〈**화성**전도(**華城**全圖)〉를 보면 **화성(華城)** 행궁(行宮)의 오른쪽 아래에 대규모 건물군으로 위치하고 있다.

다. 그들을 위해 제일 먼저 노고를 위로하니 부디 이러한 뜻으로 유시하고, 각각 미(米) 2말씩을 지급하되 미는 절가(折價)하여 정해진 수량대로 맞추어 지급하라."
하고, 정민시에게 이르기를, "원행할 때에는 경기 감사가 으레 도가(導駕)한다. 그런데 본부가 승격되어 유수가 된 뒤로 경기 감사의 도가가 광주(廣州)에서 그치는 바람에 본부에서 원소에 나아갈 때에 도가의 의식이 미비하게 되었다. 이후로는 유수가 도가하되 만약 유수가 선상의 대장이 되었을 때에는 판관이 도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한 조항을 잘 헤아려 정식으로 삼고 절목을 완성하여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아 뒤의 작은 동산에 올라가서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평지 가운데에 이 언덕이 불쑥 솟아올라 이아의 터가 되었으니 어찌 기이하지 않은가." 하였다. 말을 타고 이아를 나가 일자문성(一字文星)[58]에 이르렀는데, 이곳의 일자문성은 겹으로 되어 있고 **용연(龍淵)**의 사각(砂角)[59]이 왼쪽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옷깃을 여민 형국으로 되어 있었다. 여러 신하들의 논의는, 내문성(內文星)에 성을 쌓되 성의 형태를 조금 축소하여 사각에 뒤지게 하고 외문성(外文星)에는 따로 토성(土城)을 쌓아 내성을 보호하게 하고자 하였다.
내가 **조심태**에게 이르기를, "이 성을 곧장 외문성에 쌓되 **용연**의 사각을 넘어가게 해서 내문성과 함께 모두 성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좋겠다." 하였다. 그대로 **용연**에 나아가 구봉(**龜峯**)을 가리키면서 **조심태**에게 이르기를, "오른쪽은 구봉이고 왼쪽은 **용연**이어서 거북과 용이 서로 마주하고 있으니 그 이름 역시 우연이 아니다." 하였다.
용연의 기슭은 앞면이 석벽(石壁)으로 되어 있고 아래로 작은 못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물은 **광교산**(**光敎山**)에서 흘러나와 석벽 아래에 이르러 물이 돌아 흐른다. 이곳에서 휘돌아 나와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읍치(邑治)를 지나가는데, 기슭을 따라가다가 꺾이는 곳에 장차 다리를 걸쳐 놓고 성을 쌓아 수문(水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조심태**에게 이르기를, "일자문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 더욱 두텁고 공고한 기상을 보겠다. 그리고 **용연**의 기슭이 용의 머리로 되어 있고 석벽이 웅크린 것처럼 솟아 있으니 풍기(風氣)가 응결되어 매우 활기찬 기상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데다 겸하여 수해(水害)를 막는 공까지 있게 되었으니, 마치 이 성 쌓는 역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듯하다. 지리와 지세가 매우 좋으니 오늘 살펴보고 나니까 나의 마음이 매우 흡족하다. 성을 쌓는 역사의 큰 줄거리가 이와 같으니, 예컨대 여기에 윤색(潤色)하는 것은 이를 맡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이어서 말을 타고 출발하여 **미륵당**고개〔**彌勒堂峴**〕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조금 쉬었다. 판관 김노성(金魯成)을 소견하고 이르기를,
"전에 닦은 길이 너무 넓어서 민전(民田)에 해를 끼친다고 이미 신칙하였는데, 융통성을 발휘한 너비가 아직도 많이 고르지 못하고 들쑥날쑥하다. 즉시 경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해서 고르지 못한 폐단이 없게 하라."
하고, 이어 본부의 세악수(細樂手)와 순뢰(巡牢)에게 상으로 지급하는 목(木) 13필(疋), 전(錢) 15냥(兩)을 모두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 외탕고(外帑庫)에서 제급(題給)하였다. - 승지에게 이르기를, "원행하고 돌아갈 적마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더디어지고 배양치(**陪養峙**)를 지나 이 고개에 이르면 절로 고개를 들고 서성거리게 된다." 하였다.
사천(**沙川**) 행궁(行宮)에 이르러 조금 쉬었다. 행궁의 수직관(守直官)은 공궐위장(空闕衛

58) 일자문성(一字文星) : 산 정상이 일(一) 자 모양으로 평평한 것을 말하는데, **수원(水原)** **화성(華城)**의 동남각루(東南角樓)와 봉돈(烽墩)이 있는 지역에 일자문성 산이 있었다.
59) 사각(砂角) : 불룩한 형세를 이룬 것을 말한다.

將)의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제수하고, 고지기(庫直)에게는 목 1필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과천 행궁에 이르러 '행궁에서 주필하였다.［駐蹕行宮］' 라는 내용의 네 글자를 크게 써서 각신 서영보(徐榮輔)에게 주고는 그의 아비 서광윤(徐廣尹)에게 전하여 이 글을 새겨서 사천 행궁의 대문에 달게 하였다.

그리고 이르기를, "이는 어필(御筆)과는 차이가 있으니 굳이 화려하게 꾸밀 것 없이 흰 바탕에 검은 글자로 쓰면 될 것이다." 하였다. 오늘 밤부터 내일 밤까지는 야금(夜禁)을 풀라고 명하고, 이어 오늘 밤 성문(城門)은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기를 기다린 뒤에 자물쇠를 채우라고 명하였다. 유시(酉時)에 출발하였다. 수가하는 군병은 궁을 나올 때의 예(例)대로 대오를 지어 출발하고 각 영(營)의 마병(馬兵)은 먼저 나아가지 말고 각각 신지(信地)에서 행진(行陣)하라고 명하였다. 말을 타고 남태령(南泰嶺)에 이르러 횃불을 켰으며 말에서 내려 교(轎)를 탔다. 노량(露梁)에 이르려고 할 때에 선기대(善騎隊) 및 난후 마병(攔後馬兵)은 먼저 계엄을 풀라고 명하였다. **망해정(望海亭)**에 이르러 조금 쉬었다. 각 영의 군병은 먼저 주교(舟橋)를 건너 북안(北岸)에서 대령하다가 대가가 건넌 뒤에 차례대로 수가하라고 명하였다. 이때에,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빙광(氷光)과 달빛에 위아래가 속이 보일 정도로 맑았으며, 진중(陣中)의 등촉(燈燭)이 한데 모여서 불난 것처럼 환했으니 성상(城上)의 원래 물색(物色)은 참으로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말을 타고서 주교를 건너고 다시 교를 타고서 숭례문(崇禮門), 돈화문(敦化門), 협양문(協陽門)을 거쳐 대내로 돌아왔는데, 밤이 이미 2경(更)이었다.

강駕還昌德宮

목命還宮軍令初吹**八達山**二吹華請館三吹**龍淵**爲之具軍服乘輿出**水原行宮**挾輦則壯勇衛禁將率壯營及該營京鄕步軍蓐食未明從便先往果川宿所歇脚壯營鄕軍一哨直自行宮解送**壯勇外使**率本府軍兵札駐於**貳衙**待還宮解嚴壯勇兼大將**趙心泰**率壯營軍**講武堂**前路札駐自**八達山**入**貳衙**時隨駕先廂則壯營大將兼察訓局馬兵及本營善騎隊先爲進發札駐於**彌勒堂** 前路待駕發作行後廂則禁軍別將率本陣禁軍及先廂禁營馬兵札駐於眞小亭前路約束旣定命閣臣 尹行任 徐榮輔 承旨 李勉兢 安城郡守 曹允植隨後諸閣臣 承旨及監董堂上**趙心泰**往待于西門定基處登六面亭俯覽邑址謂行任等曰此地本是空曠大野人家僅爲五六戶而今則千餘民戶屋舍櫛比不出數年居然一大都會地理之興旺自有其時矣行任等曰此地爲年年駐蹕之所而文武科甲輩出人物邑居之盛可與平壤 咸興相甲乙地運可謂大通大吉矣命本府留守 李命植夫人沈氏衣資食物自外帑庫題給米二石藥蔘一兩禾花紬 綿紬各五疋仍登**八達山**周覽築城基址民始 **心泰** 儒敬已來待矣子謂**心泰**曰此處當築將臺乎**心泰**曰然矣子曰此地占得山頂最高處便於瞭望氣勢雄爽眞可謂天造地設之將臺矣今見插旗處則築城範圍可以領略而至於北里人家毁撒之論終非計之得者昨以花城**柳川**之義已有下敎於領府事者而此城狹而長旣似柳葉則於北角人家相錯處三曲折以象川字豈不尤槪於**柳川**耶仍詣**講武堂**少憩乘馬至**貳衙**召見陪從時原任大臣洪樂性等曰昨於園享時以聖上無窮之孝過加孺慕受損旣多旋以局內及火巢內外主峯諸處看審事自朝至暮連爲冒寒勞動今日又以本府城址事早朝登陟下情悶迫不可勝達自幸行以來聖念憧憧當夜未嘗寢睡下情不勝焦迫伏願聖明深軫宗社之重以爲保嗇之方焉予曰以予心懷逢是年是月祗謁園寢雖欲自强其可得乎予曰俄於**八達山**瞭望則營府之雄偉閭閻之櫛比眞大都會也五六年之內成聚成都如是之速予心欣喜實爲不淺城址形便才有下敎於監董堂上者築斯城也將以爲億萬年悠久之計人和爲貴且當務盡經遠之謨而俄見城址竪旗處則民家之當出城外者頗多豈可以已建之家舍因城役撒去乎此非人和爲貴之意也至若城址南北之相距亦有太近之歎經遠之道尤不當若是**花山** **柳川**之義已言於領府事而**花山**與**柳川**相望爲我家萬億年太平悠久之業今此築城之時象柳葉之形又倣川字之樣逶迤定基而人家亦宜入諸城內云卿等所見以爲如何樂性日下敎誠至當矣濟恭曰臣亦曾有所

酬酢於監董堂上者而今承下敎節節切當矣宗缶意等曰依聖敎定基實爲恰好矣予曰訓將以本府府使主管設始於移邑之時使數千民家如是安堵其功勞可謂不些矣命濟恭追後上來命樂性先詣謂判官 金魯成曰今番本府入防軍三哨累夜露宿爲渠輩最初勞苦須以此意諭之各給米二斗而米則折價準給可也謂民始曰園幸時畿伯例爲導駕而自本府陞爲留守之後畿伯導駕止於廣州自本府詣園時則導駕之儀未備此後則留守導駕而若値留守爲先廂大將之時則判官導駕爲宜此一款商量定式以爲成節目擧行之地好矣登衙後小園謂諸臣曰平地中忽起此阜爲**貳衙**之基豈不異哉乘馬出**貳衙**至一字文星此處一字文星爲兩重**龍淵**砂角自左內入爲合襟焉諸議欲築城於內文星少縮城形以讓砂角而外文星則別築土城以護內城予謂**心泰**曰此城直築於外文星跨越**龍淵**之砂與內文星竝入城裏則好矣仍詣**龍淵**指**龜峯**謂**心泰**曰右爲**龜峯**左爲**龍淵** 龜龍相對名亦不偶矣蓋**龍淵**之麓前面爲石壁下臨小潭水自**光敎山**來至石壁下滙焉迤出自北而南過邑治其循麓屈折處將跨橋築城爲水門者也謂**心泰**曰一字文星之兩重益見完厚鞏固氣象**龍淵**之麓爲龍頭而石壁之蹲峙可見風氣鍾結甚有精神兼有捍水之功有若爲此役設施者然地理地勢十分恰好今日看審之後予心充然有得矣城役之大綱領如此若夫潤色之則在述者之能耳仍爲乘馬進發至**彌勒堂峴**下馬少憩召見判官 金魯成謂曰前以治道之太廣有妨民田已爲申飭闊狹丈尺尙多參差隨卽劃定毋貽不均之弊可也仍命賞給本府細樂手巡牢木十三疋錢十五兩都給外帑庫題給謂承旨曰每於園幸回鑾不覺吾行之遲遲過**陪養峙**及此峴自爾延佇矣至**沙川**行宮少憩命行宮守直官空闕衛將待窠除授庫直給木一疋至果川行宮以駐蹕行宮四大字授閣臣 徐榮輔傳于其父廣尹使之刻揭於**沙川**行宮大門謂曰此與御筆有異不必過加華美以粉質黑字爲之可也命今夜至明夜弛禁仍命今夜城門待觀光人畢入後下鑰酉時進發命隨駕軍兵如出宮例作行各營馬兵則不爲先詣各於信地行陣乘馬至南泰嶺擧火下馬乘轎將至露梁 命善騎隊及攔後馬兵先爲解嚴至**望海亭**少憩命各營軍兵先渡舟橋等候於北岸大駕渡涉後依次隨駕時天無點雲冰光月色上下澄澈陣中燈燭攢簇如火城上元物色洵不易得也乘馬渡舟橋復乘轎由崇禮門 敦化門 協陽門還內夜已二鼓矣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5일(계묘)

강내일 조정(朝廷)의 문안(問安)은 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목○ 목(目)이 없는 기사임

강命明日朝廷問安勿爲之

목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5일(계묘)

강주서 서유문(徐有聞), 가주서 정문시(鄭文始)를 의금부로 잡아다 처리하는 것을 용서하였다.

목○ 목(目)이 없는 기사임

강分揀注書 徐有聞 假注書 鄭文始拿處

목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5일(계묘)

강주교사(舟橋司)의 기군(旗軍)에게 상을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목○ 기군 이종수(李宗壽) 등 54명은 4년 사역(使役)하여 각각 목(木) 1필(疋)과 미(米) 2말씩을, 김계득(金啓得) 등 48명은 3년 사역하여 각각 목 1필씩을, 이창빈(李昌彬) 등 30명은 2년 사역하여 각각 미 5말씩을, 이광득(李光得) 등 84명은 갑인년(1794, 정조18) 1년 사역하여 각각 미 3말씩을 선혜청에서 분급하였다.

강賞給舟橋旗軍有差

목旗軍李宗壽等五十四名四年使役各木一疋米二斗金啓得等四十八名三年使役各木一疋李昌彬等三十名二年使役各米五斗李光得等八十四名甲寅一年使役各米三斗自惠廳分給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5일(계묘)

강주교사의 도감관(都監官)과 수영장(首領將)을 올려 차하(差下)하는 정식을 정하였다.

목○ 주교사 당상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본사의 감관과 영장들이 선척(船隻)을 구관(句管)하여 배설(排設)하는 것을 감동하는 것은 자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그간에 또한 상가(賞加)의 은전을 받았으니 영광이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다만 이미 요포(料布)가 없어서 끝내 귀속시킬 곳이 없으니 자못 권장하는 뜻이 아닙니다. 만 3년 동안 감동한 자 가운데 도감관은 자급(資級)에 따라 옮겨 첨사(僉使)와 만호(萬戶)로 올려 주고, 수영장은 삼군문(三軍門) 가운데 별무사(別武士)로 윤차(輪差)해서 노고에 보답하도록 하고, 이를 정식으로 삼으소서. 현재 도감관과 수영장은 이미 5년이 되었으니 이들에게는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옮겨 차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여,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 "수영장으로 5년 동안 수행한 사람은 금위영의 별무사로 더 뽑아 차정(差定)하고 궐원이 생기거든 올려서 채우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定舟橋 都監官首領將陞差之式

목 舟橋堂上鄭民始啓言本司監官領將輩句管船隻監董排設自是當爲之事間亦蒙被賞加榮已極矣但旣無料布終無歸屬殊非勸奬之意滿三年監董者都監官隨其資級移陞僉使 萬戶首領將三軍門中輪差別武士以爲酬勞之地請以此定式見今都監官首領將已爲五年此則待窠移差爲宜從之敎以首領將五年隨行人禁衛營別武士加出差定侍闕陞實事分付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5일(계묘)

강중희당(重熙堂)에서 승지 서영보(徐榮輔), 각신 서유방(徐有防)·윤행임(尹行任)을 소견하고, 상언(上言) 87도(度)를 판하(判下)한 뒤에 기한 안에 회계하라고 신칙하였다.

목○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前) 양주 첨사(楊州僉使) 김서정(金瑞貞)의 상언에,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에 함경도 영달 만호(永達萬戶)에 제수되었는데 본진(本鎭)은 온성(穩城)에 소속되었습니다. 성터가 붕괴된 지 이미 오래되어서 백성들을 모집하여 수축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흉년이 들어서 봉급을 출연하여 군졸을 구하느라 다른 일은 경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병(土兵)은 500여 명이 모두 도망가서 남아 있는 자들이 겨우 80여 명이었으니, 봉대(烽臺), 발소(撥所), 파수(把守) 등 각양의 많은 수직(守直)에 번차(番次)를 정하기 곤란한 형편이었는데도 이를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본읍(本邑) 봉대의 무사(武士)[60]는 그 수가 매우 많았으니, 모두 같은 읍민(邑民)인데 고락(苦樂)의 정도가 너무도 달랐습니다. 본진의 봉대 한 곳과 파수 한 곳을 본읍에 이속한다면 진졸(鎭卒)이 지탱하여 보전되는 방도가 될 것이기에 여러 차례 순영(巡營)과 병영(兵營)에 보고하여 변통하려고 할 때에 덕포 첨사(德浦僉使)에 올려 제수되었습니다. 경술년(1790) 10월에 이 두 가지 일을 하나하나 들어서 어가 앞에 상언하여 삼가 윤허를 받았습니다. 성을 수축하는 한 조항은 본진이 소관하는 읍과 힘을 합하여 수축하게 하였습니다만, 봉대의 경우는 아직도 거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신칙하는 하교를 내려 주소서. 그리고

60) 무사(武士) : 원문은 '武師'인데, 《일성록》 정조 14년 10월 3일 기사에 나오는 김서정(金瑞貞)의 상언과 뒤의 내용을 참고하여 '師'를 '士'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덕포의 각 진은 전선(戰船)을 수리하여 물에 띄워 둘 방도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여 초루(譙樓 망루)와 치미(鴟尾 망새)와 노장(櫓槳)과 붕(棚 외판(外板)), 삭(索 밧줄)이 혹 깊은 못에 빠져 있기도 하고 무고(武庫)에 보관되어 있기도 해서 전선이 완성되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한 무리의 선척이 갯가의 구덩이에 우뚝 솟아 있어서 조수(潮水)가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만조(滿潮) 때에야 비로소 뜰 수가 있는데, 만조가 되는 것은 3일이나 4일, 18일이나 19일 두 번에 불과할 뿐입니다. 배라는 것은 육지에 두면 바람과 비에 쉽게 썩고 물에 두면 영구히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본영에 관문을 보내어 각 진(鎭)의 전선을 수리하고 완성해서 갯가의 물이 깊은 곳에 영원히 띄워 두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양주(楊州)는 세 길의 요충지로 지지난 경오년(1690, 숙종16)에 총융청(摠戎廳) 소속 방영(防營)을 이곳에 설치하였다가[61] 불과 수십 년 만에 옮겨서 수어청(守禦廳)으로 소속시켰는데 이에 대해 고로(故老)들이 서로 전하면서 탄식해 마지않습니다. 파주(坡州)의 예대로 도로 방영을 설치하면 실로 동북을 방어하는 훌륭한 계책이 될 것입니다. 병오년(1786, 정조10) 봄에 사유를 갖추어 상언하였는데, 비지 안에 순영에서 불러다가 그 방략을 묻고 나중에 어전(御前)에 나왔을 때에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62] 그때 파주는 아직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중지되었는데, 이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파주는 단지 12개 초로 영문을 만들었는데 양주는 본읍의 군병이 이미 16개 초인 데다 수어청 소속의 군병까지 합하면 실상 25개 초가 됩니다. 군제(軍制)로 말하면 본주 소재 수어청의 표하군(標下軍)을 광주(廣州) 소재 전영군(前營軍)으로 충정(充定)하고 그 대신에 양근(楊根), 지평(砥平), 광주(廣州) 부근 여러 읍의 군정(軍丁)을 대신 차출하면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모두 매우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참으로 이른바 고루하고 촌스런 자의 말이다. 북도 영달의 사안은, 봉대 무사가 본읍과 고생을 고르게 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될 게 없을 듯하다. 진(鎭)의 폐단이 이것저것을 막론하고 날로 심해지는 것은 고생하는 것이 현격히 다른데도 서로 상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특별히 진졸(鎭卒)의 폐단을 염두에 두어서 연전에 해서(海西)의 5개 산성과 8개 진부터 폐단을 바로잡게 하였는데, 그 가운데 군정(軍丁)은 읍과 진의 민인을 통틀어 충정하라는 뜻으로 판하하였으니,[63] 북도인들 무엇이 다르겠는가. 비록 양은 보고 소는 보지 않은 것에 가깝기는 하나[64] 마땅히 내게 올린 상언의 내용부터 처분하라고 해당 도에 분부하고,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는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덕포의 사안은, 묘당으로 하여금 관문을 보내 신칙하게 하라. 양주에 방영을 설치하는

61) 양주(楊州)는 …… 설치하였다가 : 고(故) 상신(相臣) 이유(李濡)가 양주 목사(楊州牧使)로 있을 때에 총융청(摠戎廳) 소속의 방영(防營)을 만들었다. 《日省錄 正祖 10年 3月 6日》
62) 병오년 …… 하교하셨습니다 : 1786년(정조10) 3월 6일 성정각(誠正閣)에서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 등을 소견하였을 때 서유방이 아뢴 내용에 보인다. 《日省錄》
63) 특별히 …… 판하하였으니 : 비변사가, 황해 감사 이경일(李敬一)이 작성해서 바친 장본(狀本)의 내용에서 시행할 만한 것은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변사의 의견을 붙여 아뢴 내용이 보인다. 《日省錄 正祖 16年 8月 26日》
64) 비록 …… 하나 : 제 선왕(齊宣王)이 새로 주조한 종에 피를 바르기 위해 끌려가는 소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양으로 바꾸도록 명하였는데, 맹자(孟子)가 제 선왕에게 "죄 없이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소와 양을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제 선왕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맹자가 제 선왕의 행위는 인(仁)을 행하는 방법으로, 끌려가는 소는 보았지만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대신 해명해 주었다. 《孟子 梁惠王上》 여기에서 양과 소가 《맹자》의 원문과 바뀐 것은 의미가 없는 듯하고, 모든 진(鎭)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일은 아니지만 우선 보고된 곳의 폐단이라도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인용하였다.

사안은 어찌 그가 말을 한 뒤에야 알 수 있는 일이겠는가. 그러나 부제조가 이미 목사를 지냈으니 이치를 따져 초기로 회계(回啓)하라.
근래에 외람되고 번잡스레 호소하는 것은 민습과 크게 관계되니 법에 맞지 않는 상언들은 모두 들어주지 말라고 명하였다. 그렇지만 이 상언은 비록 사건사(四件事)[65]는 아니지만 미천한 자가 깊이 생각해서 조리에 맞게 한 말이니 이와 같이 말을 만들어 판하하고, 묘당으로 하여금 불러다 물은 다음에 회계하게 하라." 하였다.
○ 충훈부(忠勳府)가 아뢰기를, "광주(光州)의 유학(幼學) 이영원(李永源)의 상언에, '저의 13대조(代祖) 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는 개국 훈신(開國勳臣)에 기록되었고 그 교서(敎書)가 대대로 전해지는데 성조(聖祖 태조(太祖))께서 손수 짓고 손수 쓴 글씨라고 하였으며 봉사손(奉祀孫)의 집에서 보관하였습니다. 중간에 단성(丹城)에 사는 지손(支孫) 이형렬(李亨烈)에게 빌려 주었는데 이형렬이 고집을 피우며 주지 않고 있으니, 도로 조묘(祖廟)에 보관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사사로이 지손에게 빌려서 보여 주고 감히 찾아서 받아 주기를 조가(朝家 조정)에 청하는 것은 외람된 죄를 참으로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제(御製)는 체모가 중하니, 해당 도 해당 읍에 분부하여 이형렬로 하여금 교서를 본부에 받들고 오게 해서 상세히 봉심하여 과연 상언과 같을 경우 훈신의 봉사손 집에 도로 봉안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영원이 성상에게 번거롭게 아뢴 죄는 이후에 감처(勘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충주(忠州)의 유학 권상중(權相中) 등의 상언에, '지서(支庶) 권양순(權養淳)이 복성군(福城君) 권언(權躽)의 아들 권옥(權沃)의 장손인 것처럼 세계(世系)를 만들어 충훈부에 바쳤기 때문에 분한 마음을 이길 수 없어서 갈문(碣文)과 보첩(譜帖)을 첨부하여 충훈부에 바쳤습니다. 충훈부에서 권양순에게 구전으로 분부해서 본래 들어주었던 것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권양순이 괴이한 말을 만들어 선동하고 말을 퍼뜨렸습니다. 이른바 괴이한 말이란 것은 「복성군이 처가 복씨(卜氏)의 족보 가운데에 언(躽) 자가 언(堰)으로 잘못 쓰여 있으니 애당초 복씨의 사위가 아니다.……」 하고, 또 「복윤명(卜允明)이 복성군의 장인인데 복여(卜予)의 아래에 사위 권언(權堰)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복여도 복성군의 장인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身) 변이 비록 토(土) 변으로 잘못 쓰이기는 하였으나 서로 비슷한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복윤명이 복여가 된 것은 윤(允) 자가 그의 선조(先祖)를 휘(諱)하는 데에 저촉되기 때문에 여로 고친 것이니, 장인과 사위라는 것은 이미 명백합니다. 그런즉 무슨 트집을 잡을 게 있겠습니까. 단지 복성군에게는 처가와 적자(嫡子)가 없다고 하면서 첩의 아들 권일(權佚)로 증명하여 잇게 하고자 한 계책입니다. 엄히 조사하여 바로잡아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 문적(文蹟)을 가져다 살펴보니, 갑인년(1734, 영조10) 족보에서 복성군 권언(權躽)의 아래에 단지 서자(庶子) 권일(權佚) 형제가 쓰여 있었을 뿐이고, 이른바 적자 권옥(權沃)은 별보(別譜)에 기록되어 있고 그 주에 '다시 훗날을 기다려 수정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 족보를 중간(重刊)할 때에 제종(諸宗)의 의견이 이미 결론이 나서 권옥을 원

65) 사건사(四件事) : 상언(上言)이나 격쟁(擊錚)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네 가지 일이라는 뜻이다. 네 가지 일이란 형륙(刑戮)을 당하게 된 경우나 부자(父子)의 분별, 적서(嫡庶)의 분별, 양천(良賤)의 분별을 원하는 경우이며, 지극히 원통한 사정이 있을 때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를 위해, 처(妻)가 남편을 위해, 동생이 형을 위해, 종이 주인을 위해 상언이나 격쟁을 하는 것도 각기 사건사에 준하여 허용되었다. 이 외의 사안이면 외람되이 군 죄에 대해 사불이실률(詐不以實律)로 처벌하였다. 《續大典 刑典 訴冤》 《六典條例 刑典 刑曹 考律司 擊錚》

보(原譜)에 옮겨 써넣어 권언(權堰) 아래에 연계시켰습니다. 그런즉 권양순이 거짓으로 들어간 것은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만 한쪽의 말만 가지고 경솔하게 논감(論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족보가 안동(安東)에 있다고 들었으니 본읍으로 하여금 일을 주관한 사람에게 사실을 조사한 뒤 잘 따지고 살펴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 한성부가 아뢰기를, "서부(西部)의 유학 송지상(宋之庠)의 상언에, '아비 통덕랑(通德郞) 송익운(宋翊運)은 올해 나이가 71세이고 어미 공인(恭人) 황씨(黃氏)는 올해 나이가 70세입니다. 사서인(士庶人)으로 부처(夫妻)가 해로하고 나이가 70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가자하는 은전을 받았는데 저의 부모만 누락되었으니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사서인으로 나이가 80세 미만이지만 부처가 해로한 사람에게 가자하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부에서 80세 미만이지만 해로한 사람들을 초계(抄啓)하였으니 부처 가운데 나이가 70세인 사람은 초계 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송지상의 어미는 나이가 겨우 70세여서 80세 미만의 부류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나이가 비록 80세 미만이지만 해로한 자가 있을 경우 모두 가자하라고 특별히 명하였으니 이는 바로 올해에 70세가 된 자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런즉 이번에 한성부에서 회계한 것을 보건대, 이번의 초계를 71세로 한계를 정했다고 한 것은 이 어찌 하교한 본의이겠는가. 전 판윤은 몹시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니 존년(尊年)에 관계된 일에 대해 왕명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잘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일 처리를 꼼꼼하게 하지 못해서 똑같이 70세 해로한 노인들로 하여금 어떤 이는 가자를 받게 하고 어떤 이는 가자를 받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 어찌 말이 되는가. 상언을 올린 사람 유학 송지상의 부모에 대한 추은(推恩)을 우선 오늘 정사에서 하비하고, 이와 같이 누락된 부류들은 3일을 기한으로 다시 초계하고 초계하거든 정관을 패초하여 즉시 정사를 열어 하비하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진(康津)의 유학 최치흥(崔致興)의 상언에, '9대조 고(故) 교리 최창손(崔昌孫) 3대의 분산(墳山)이 양성(陽城)에 있는데 작년에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밤을 틈타 몰래 매장(埋葬)하였습니다. 제가 이 보고를 듣고 즉시 관(官)에 정소(呈訴)하였더니 관에서 저에게 몰래 매장한 사람을 찾아내어 다시 소송하라는 뜻으로 제사(題辭)를 써 주었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일 년 내내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매장한 묘를 파서 옮기지 않으면 조상 3대가 묻힌 얼마 안 되는 땅을 보유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속히 도신으로 하여금 가까운 시일 안에 관아에서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몰래 매장한 것은 법으로 볼 때에 당연히 파내야 하는데 매장한 사람을 이미 조사해서 찾지 못했으니, 먼 지방의 일이라 멀리서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본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승소(勝訴)로 판결해 주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영광(靈光)의 무학(武學) 김응태(金應兌)의 상언에, '저의 집안이 수백 년 동안 계장(繼葬)해 온 선산(先山)이 본군에 있는데 같은 군에 사는 정수빈(鄭守斌)이 밤을 틈타 용미(龍尾)에서 5보(步) 안이 되는 자리에 몰래 매장하였습니다. 저는 토민(土民)으로 감히 양반인 정가(鄭哥)의 위세에 저항하지 못한 채 본관(本官)에 정소(呈訴)하였습니다. 본관에서 정가를 붙잡으러 왔을 때에 정가는 편히 자기 집에 있으면서 명을 거역하고 나아가지 않았으며, 노비들로 하여금 저를 붙잡아 들여 사사로이 결박하게 하고는 다시 송사를 제기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선조를 위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볼 때에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본도로 하여금 즉시 묘를 파서 옮기게 함으로써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정가가 멋대로 매장한 것은 참으로 매우 놀랄 만하나 한쪽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본관으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여 처결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공주(公州)의 동몽(童蒙) 이창수(李昌守)의 상언에, ‘아비가 타향인 본주(本州)에서 살다가 죽었으므로 김이수(金履修)의 선영(先塋) 가운데 외청룡(外靑龍)에서 305보 거리의 땅을 장사 지낼 묘지로 얻어서 김이수 형제가 일꾼을 거느리고 와 회장(會葬)하였습니다. 작년에 어미의 상을 당해 아비를 장사 지낸 곳에 합장하려고 할 때에 김이수의 아들 김연순(金演淳)이 묘지를 쓰지 못하도록 금해야 하는 선영의 땅이라고 갑자기 일컬으면서 묘를 파서 옮기게 해 달라고 정소하였습니다. 당초에 장사 지낸 땅이 과연 금산(金山)의 장사를 금하는 지역에 해당되었다면 김이수 형제가 어찌하여 못하게 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20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못하도록 금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일컫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상의 은혜를 입어서 본관으로 하여금 적간한 다음 법전에 따라 금하지 못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김이수 형제가 이미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지금 와서 김이수의 아들이 합장하는 것을 못하게 금하고자 하는 것은 사리로 볼 때에 부당합니다. 그렇지만 한쪽의 말만 믿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다시 더 상세히 조사해서 공정하게 처결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부평(富平)의 유학 정집조(鄭集祚)의 상언에, ‘할아비인 고(故) 수사(水使) 정상주(鄭翔周)의 분묘가 통진(通津)에 있는데, 본부에 사는 권주언(權柱彦)이 산내(山內) 백호(白虎)에서 앉아서도 서서도 모두 보이는 지점에 몰래 매장하였습니다. 제가 즉시 송사를 제기하니 전 부사(府使) 이관현(李觀賢)이 권주언을 패소하는 쪽에 두었습니다. 묘를 파서 옮기겠다는 다짐(侤音)을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닌데도 전혀 이장(移葬)할 뜻이 없으니, 묘를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권주언이 멋대로 매장한 것은 이미 너무나도 추악하고, 본도에서 처결한 뒤에 3년이나 질질 끌면서 끝내 이장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쪽의 말만 믿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본관으로 하여금 적간하여 공정하게 처결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동몽 최풍석(崔豐錫)의 상언에, ‘아비의 분산에 상놈이 몰래 매장한 일을 지난해에 호소해서 지방관이 공정하게 판결해 주도록 특별히 명하셨습니다. 지방관이 피고를 붙잡아다 장사 지낸 것을 파 가게 하였는데 용미(龍尾) 뒤쪽의 무덤 하나는 아직도 파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최풍석이 기한 안에 현신(現身)하지 않았으니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함흥(咸興)의 유학 주광복(朱光復)의 상언에, ‘15대조인 개국 공신(開國功臣) 안천군(安川君) 주인(朱仁)은 함흥에서 살았기에 그대로 본부의 주동(州東) 마을에 장사 지냈고, 저의 아비 고 현감 주남술(朱南述)도 선영의 서쪽 기슭 소나무를 기른 곳을 장사 지낼 곳으로 점지해 두었습니다. 아비가 진천(鎭川)의 임소에서 죽어 점지해 둔 곳에 장사를 지내려고 하였더니, 산 아래 북쪽 기슭에 있는 오래된 무덤의 원손(遠孫) 박대명(朴大命) 등이 선산의 내룡(來龍)이라고 일컬으면서 무리를 모아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툴 수가 없기에 임시로 다른 곳에 장사 지냈습니다. 감영의 본관에 정소하여 판결이

나지 않았을 때에 박가(朴哥)가 노송(老松) 50여 그루를 몰래 베고는 그의 족속 무덤 3기(基)를 아비가 점지해 둔 곳에 매장하였습니다. 산의 형세로 말해 보면, 북쪽 산기슭 아래에 박가의 무덤이 있고 박가의 무덤 위에 신씨(申氏), 이씨(李氏), 강씨(姜氏), 김씨(金氏)의 네 무덤이 있으니, 박가가 다른 성씨의 무덤을 넘어 넓게 차지한 것은 이미 너무도 옳지 않습니다. 5, 6년 전에 박가가 강씨 성을 가진 사람과 송사를 벌였는데 그때 도신이 입안(立案)을 만들어 주기를, 「주씨의 시조묘(始祖墓)에는 원래 보수(步數)가 있고, 박가는 이미 보수가 없는 상놈인데 어찌 감히 다른 무덤을 넘어 넓게 차지한단 말인가.」 하고, 그대로 입안하여 경계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 박가가 또 감히 저의 아비가 점지해 둔 곳에 몰래 매장하였고 더구나 또 정경(正卿)의 묘 90보 안인 데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엄히 조사하여 묘를 파서 이장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광복의 선산에 소나무를 기른 곳은 영문(營門)에서 경계로 정해 준 곳인데 더구나 또 중신의 묘와 90보 안에 있는 지점이니, 박가가 나무를 베어내고 몰래 매장한 것은 너무도 근거 없는 짓입니다. 그렇지만 한쪽의 말만 믿기는 참으로 어려우니, 본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처결하게 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개국 공신은 체모가 어떠한가. 의안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 후손의 산송(山訟)에 대한 판부(判付)도 베껴서 해당 도신에게 관문을 보내라. 이뿐만이 아니다. 고 현감 주남술은 연전의 막중한 역사에 그 공이 적지 않았고 그의 지혜는 귀신과 같았다.[66] 그의 공과 지혜에 대해 보답하는 은전이 어찌 산 한 기슭에 그칠 수 있겠는가. 그가 작고(作故)한 뒤에 매번 거두어 녹용(錄用)하려는 뜻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아들이 호소한 내용을 보건대, 송사(訟事)의 심리는 우선 차치하고라도, 이 집안 사람이 전 도신이 이미 판결한 입안에서 패소를 당해 천 리가 족히 되는 거리를 와서 상언을 하게 하였다. 오늘날 수령이 된 자가 만일 조정에서 소중한 일[67]을 위한 성의를 알았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었겠는가. 해당 판관을 우선 파직하고 이어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신문하여 처리하게 하며, 그 후임은 내일 정사에서 차출하게 하라. 송사의 심리는 비록 전 도신이 써서 준 말이 있고 조정에서 지휘할 만한 일이 아닌 점은 있지만 해당 도신에게 분부하여 즉시 판결해 주게 하라. 그리고 고 현감 주남술의 아들 역시 이조 판서로 하여금 불러다 신수(身手)를 본 뒤에 초기하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산(定山)의 유학 이석기(李錫祺)의 상언에, ‘저는 개국 공신인 의안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의 14세손인데, 누대(屢代)의 선영이 이성현(尼城縣) 구고산(九皐山)에 있습니다. 지난 임자년(1792, 정조16)에 본현에 사는 양덕섬(梁德暹)이 그의 아비를 저 이석기의 고조 증 대사헌 이만적(李萬績)의 분산 내룡(來龍)에 장사 지내려고 하였기 때문에 본현에 가서 호소하였습니다. 이성 현감(尼城縣監) 한세유(韓世裕)가 즉시 적간하였는데 법으로 정한, 바로 80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성 현감이, 「80보는 바로 2품이 묻힌 산에 법으로 보수(步數)를 정한 거리의 이내이다.」라고 하면서 양덕섬에게 광중(壙中)을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광중을 옮긴 곳이 몇 발짝 이내에 불과하였기에 제가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순영(巡營)에 가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감사 이형원(李亨元)이, 이

66) 고 현감 …… 같았다 : **현륭원(顯隆園)**의 역사 때에 주남술(朱南述)이 대령하는 상지관(相地官)으로 참여하였는데, 원소도감(園所都監)의 당상과 낭청 이하에 대해서 차등 있게 시상할 때에 지사(地師)인 부사용 주남술은 말이 대부분 신기하게 적중하였으니 곧장 6품의 자리에 제수하라고 명해서 장원서 별제(掌苑署別提)로 삼은 내용이 보인다. 《日省錄 正祖 13年 9月 6日, 10月 13日》

67) 소중한 일 : **현륭원(顯隆園)**의 역사(役事)를 말한다.

미 법으로 한계를 정한 보수 이내인 데다 내룡 지역이니 마땅히 장사 지내는 것을 금해야 하지만 사실을 조사하고 논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산재관(山在官)에게 제사(題辭)를 써서 보냈습니다. 연산(連山)에 송사를 옮기니 연산 현감(連山縣監) 신재유(申在維)는 양덕섬과 친분이 두터운 친구라고 인혐하며 송사를 받지 않고 정산에 옮겨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산 현감(定山縣監) 정양채(鄭亮采)도 미루고 핑계 대며 맡지 않고 이성에 송사를 옮겼습니다. 그런즉 양덕섬이 스스로 이치에 어긋나는 일인 줄을 알고서 송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갑진년(1784, 정조8)에 본현에 사는 남건유(南建維)가 자기 어미를 이 산의 근처에 몰래 매장하였습니다. 저 이석기의 형 이석민(李錫民)이 외람되이 상언하여 판하하신 내용에 따라 남건유는 형추하고 빠른 시일 안에 무덤을 파 가도록 하였습니다.[68] 이번에 양덕섬이 감히 침범하여 장사를 지냈으니 성상의 은혜를 입어서 즉시 파내어 이장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상언의 내용과 같다면 양덕섬은 각별히 엄히 다스리고 속히 파내어 이장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본 송사의 곡직 이외에 지금 도백이 이 송사를 있게 한 것이 너무도 놀랍다. 판부한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여 즉시 알려서 스스로 힘써서 스스로 속죄할 줄을 알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서부(西部)에 사는 업유(業儒) 이렴(李濂)의 상언에, '저의 아비 고 충주 목사(忠州牧使) 이헌진(李憲鎭)의 묘가 광주(廣州) 대왕면(大旺面)에 있습니다. 저의 아비는 한 가문의 종손(從孫)으로 선산에 계장(繼葬)하였는데 지난해 9월 저의 먼 친족 이도빈(李度彬)이 저의 아비의 산혈(山穴 묏자리) 앞 26보(步) 되는 거리로 앉아서도 서서도 모두 보이는 지점에 그의 아비를 몰래 매장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까닭에 미처 못하도록 금하지 못해서 본주에 송사를 제기하였더니 본주에서 적간한 뒤에 파내어 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도빈은 옮겨 이장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순영에 정소하였더니 순영의 제사 역시 엄히 독촉하여 묘를 파서 옮기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도빈은 갈수록 더욱 악독한 성질을 부리며 전혀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굽어살피는 은혜를 입어 즉시 묘를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도빈은 요망한 역적의 매우 가까운 인척으로서[69] 감히 그 아비를 종가(宗家)의 분산 20여 보 내의 장사를 금해야 할 지점에 매장하였고, 순영의 본관(本官)이 처결한 뒤에도 악독한 성질을 부리며 무덤을 파내지 않는 것은 더욱더 매우 놀랍습니다. 본도로 하여금 더욱더 상세히 조사하도록 해서 과연 말한 것과 같으면 각별히 엄히 다스리고 즉각 독촉하여 무덤을 파내게 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서부의 유학 권성(權)의 상언에, '선영이 통진(通津) 봉성면(奉成面) 석탄리(石灘里)에 있는데 수백 년 동안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하여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이기일(李基一)이 임자년(1792, 정조16) 4월에 부모의 분묘 가까운 곳을 침범하여 몰래 매장해서 본관에 정소하여 다짐을 받고 풀어 주었는데 지금까지 명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4, 5십 보의 분묘를 가까이 침범하는 곳에 몰래 매장하는 것은 법에 입각해서 볼 때에 금해야 마땅합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특별히 조사할 관원을 정해서 다시 더 엄히 조사하여 공정

---

68) 지난 …… 하였습니다 : 《일성록》 정조 10년 2월 26일 상언을 판하한 기사 중에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69) 이도빈은 …… 인척으로서 : 이도빈(李度彬)의 아비 이충(李沖)이 적신(賊臣) 정후겸(鄭厚謙)의 매제로서 정후겸과 똑같이 권세를 누리고 악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정배되었기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日省錄 英祖 52年 6月 9日》

하게 판결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승호 포수(陞戶砲手) 김태건(金太巾)의 상언에, '저는 대대로 인제(麟蹄)에 살다가 양구(楊口)로 이사했는데 병오년(1786)에 승호가 되어 상경하였고 인제에 있는 선산은 이성(異姓)의 팔촌 아우 차만보(車萬輔)에게 지키고 보호하며 나무 베는 것을 금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에 고조할아버지와 고조할머니를 주산(主山) 안 50보 지점에 이장하려고 하였더니 같은 마을의 이계인(李戒仁) 삼형제가 외롭고 힘이 약한 저의 처지를 멸시해서 수백 년 동안 길러 온 생송(生松) 1000여 그루를 베어 버리고 고조를 이장하기 위해 파 놓은 광중의 지점에 자기 아비를 억지로 장사 지냈습니다. 작년 10월에 본관에 정소하였더니 곡직도 따지지 않고 산도(山圖)도 보지 않고는 대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 알겠는가. 후임관을 기다려 거행하라.」라고 하였고, 다시 소지(所志)를 올렸더니 목에 칼을 씌우고 단단히 가두었으며, 올린 의송(議送)을 수령하고는 또 송사를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계인이 소나무를 베어 내고 억지로 장사 지낸 것은 너무도 패악한 짓인데 본관이 송사를 심리하지 않았으니 무슨 곡절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더 사실을 조사해서 공정하고 분명히 처결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서부의 양인(良人) 박창복(朴昌福)의 상언에, '부모의 분산이 양주(楊州) 해동촌(海東村)에 있는데 장사 지낸 지 1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신해년(1791,정조15) 4월에 신의철(辛義哲)이 같은 마을의 토반(土班)으로서 자기의 처를 뇌후(腦後) 지척의 지점에 몰래 매장하였습니다. 본관이 적간하고 영문(營門)이 엄히 신칙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신의철은 심상하게 여기고는 묘를 파서 옮기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도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해서 엄히 독촉하여 묘를 파서 옮기게 하라고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양주의 유학 홍형만(洪馨萬)의 상언에, '5대조인 고 승지 홍준(洪遵)의 분묘가 풍덕(豐德) 서면(西面) 중련리(中連里)에 있는데 100여 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읍의 이시철(李時哲)과 양상철(梁相哲) 두 사람이 단출하고 외로운 저의 처지를 멸시해서 단백호(單白虎)와 지척이 되는 지점을 같은 마을의 상놈 임찬옥(任贊玉)에게 몰래 팔아 장사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풍덕에 가서 송사를 제기하였는데 보수(步數)가 70보도 되지 않았습니다. 임찬옥은 스스로 이치에 어긋나는 일인 줄을 알아서 철가(撤家)하여 도피하였고, 이시철과 양상철은 몰래 판 일로 다짐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임찬옥이 또 계장(繼葬)하였기 때문에 다시 풍덕에 가서 다방면으로 호소하였으나 끝내 임찬옥을 붙잡지 못하여 지금 미결(未決) 상태로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임찬옥을 잡아 즉시 무덤을 파내게 함으로써 선영과 위전답(位田畓)을 보전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임찬옥은 스스로 이치에 어긋난 일인 줄을 알아서 숨어 피해 나타나지 않았으면서 또 홍가(洪哥)가 도로 돌아간 틈을 타서 몰래 계장하였으니 너무도 놀랍습니다. 본관으로 하여금 붙잡아 들여 대면하여 시비를 밝히게 한 다음 즉시 독촉하여 무덤을 파내게 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장단(長湍)의 유학 권이(權伊)의 상언에, '11대조인 고 좌랑 권온(權溫)과 10대조 고 부정(副正) 권욱(權旭) 2대의 무덤이 장단 장서면(長西面)에 있는데 대대로 지키고 보호한 지 4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술년(1790, 정조14)에 토착민인 박광혁(朴光

嫩)이 선영의 단안(單案)과 마주 보는 지점에 그의 아비를 몰래 매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관에 정소하여 그가 패소했으므로 독촉해서 무덤을 파내도록 하였더니 시일을 질질 끌며 파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영문에 정소해서 다짐을 받고 독촉해서 무덤을 파내게 하였는데 피하기만 하다가 임자년(1792)에 그가 상언하여 성상을 속였습니다.[70] 영문의 제사(題辭) 안에 이미 이장하라는 뜻이 있었는데 또 상에게 보고하는 일까지 행하여 너무도 놀랍다고 하면서 영문에서 한 차례 형추(刑推)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였더니, 그가 홀연히 도망갔으며 끝내 무덤을 파내어 옮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가(朴哥)가 패소한 뒤에 또 감히 성상께 아뢰었고 심지어 영문에서 엄히 형추하여 징치(懲治)하였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지체하여 이렇게 다시 호소하게 하였으니 너무도 놀랍습니다. 본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적간해서 공정하게 처결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김해(金海)의 생원(生員) 허대희(許大熙)의 상언에, '어미의 분묘를 작년 9월에 본부 생림면(生林面) 나전리(羅田里)로 이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밀양(密陽)에 사는 신국빈(申國賓) 등이 저들의 선산 근처라고 하면서 본부에 거짓으로 속여 정소하였습니다. 도형(圖形)을 헤아려 보건대 내룡(來龍)이 각각 다르고 도국(圖局)도 달랐으며 심지어 보수(步數)는 100보나 되고 그 사이에는 또 김방(金龐)의 무덤이 있습니다. 김방은 지난 을미년(1775, 영조51)에 신국빈과 쟁송(爭訟)하였으며, 신문고(申聞鼓)를 친 일[71]에 대한 판하와 신국빈이 패소한 입안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어미의 분묘는 김방의 무덤 백호(白虎)의 바깥에 있으니 자연히 파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적간한 좌수(座首) 조상문(曺尙文)은 신국빈과 인척이 되는바 본관에 거짓으로 고해서 그대로 패소로 결정하고는 저의 동생을 엄히 가두고 무덤을 파내어 옮기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더 적간하여 공정하게 처결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안동(安東)의 유학 이유묵(李儒默)의 상언에, '9세조(世祖)인 한산도정(韓山都正) 이정(李挺)은 바로 우리 헌릉(獻陵 태종(太宗))의 증손인데 고 판서 문충공(文忠公) 김종직(金宗直)의 당적(黨籍)에 들어가 7부자(父子)가 같은 날에 화를 입었습니다. 중종반정(中宗反正) 뒤에 곧 신원(伸冤)이 되었고 이어 양주(楊州) 불암산(佛巖山) 아래 별비곡(別非谷)에 묘지를 하사받았으니 그 뒤로는 마침내 대대로 장사 지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작년 9월 산 아래에 가 보니, 서울에 사는 전 주서 홍낙안(洪樂安)이 4세(世)의 분산 10보(步)에서 5보 되는 거리의 지점에 자기 어미를 몰래 매장하였습니다. 즉시 본관에 정소하였더니, 목사 이동형(李東馨)이 즉시 대면해서 시비를 논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홍낙안은 세 차례나 명을 거역하고는 지레 순영에 정소하고 이를 첨부하여 양주에 호소하였습니다. 양주 목사(楊州牧使)가 영문에 논하여 보고하기를, 「이유묵의 선조는 무오년(1498, 연산군 4)에 화를 당하고 대대로 명가(名家)가 되었으며 더구나 의관(衣冠)을 간직하는 장지(葬地)

---

70) 임자년에 …… 속였습니다 : 《일성록》 정조 16년 2월 26일 박광혁(朴光赫)의 상언을 판하한 내용 가운데에 보인다. 이 상언에서 박광혁의 아비를 매장한 문제를 가지고 장단부(長湍府)에 사는 권이(權彝)가 관아에 정소하여 패소하였으면서도 백방으로 힘을 써서 송결(訟決)을 뒤집고는 파내라고 독촉하니 공정히 판결해 달라고 청하였다. 박광혁과 권이의 한자가 본문과 일치하지 않으나 확인할 수 없어 원문대로 번역하였다.

71) 신문고(申聞鼓)를 친 일 : 《승정원일기》 영조 51년 4월 29일 기사에, 김해(金海)에 사는 양인(良人) 김방(金龐)이라고 하는 사람 등이 경희궁(慶熙宮) 흥화문(興化門) 서쪽 협문(挾門)으로 들어와 신문고를 쳤다고 하였다.

는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하사한 곳입니다. 그런즉 비록 세력 약한 자손이 타향살이를 하는 바람에 다른 이가 이곳을 침범하여 장사 지내게 된 것이지만, 승소로 정할지 패소로 정할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홍낙안 집안은 조관(朝官)이고 피고로 응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고, 순영의 제김(題音) 또한 상세히 조사하여 처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대면해서 시비를 논란하지 않았고 기타 몇 보 안에 몰래 매장한 것 역시 모두 파 가지 않았습니다.[72]'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원통하다고 거론한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니 다시 더 적간해서 공정하게 처결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서부의 양인 최태광(崔泰光)의 상언에, '30년 전에 여주(驪州) 등신면(登新面)에 아비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본주에 사는 송성(宋姓)의 양반이 토호(土豪)의 세력을 믿고 아비의 분묘 섬돌 아래에 집터를 넓게 차지하였습니다. 고(故) 송생(宋生)이 산 아래 집을 짓는 것이 묘를 지키는 데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거스르고 싶지 않아서 집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10월에 제 아비의 분묘 뇌후(腦後)와 지척이 되는 지점을 이성(李姓)의 양반에게 떼어 팔아서 장사 지내게 하였습니다. 저의 지친(至親) 두서너 사람이 듣고 가서 따졌더니, 결박하여 구타하고 높은 나무에 매달아 놓고는 억지로 장사 지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본주에 정소하니, 제사(題辭) 안에 「집을 짓고 다른 이의 산을 판 것은 사랑(舍廊)을 빌리고는 정실(正室)을 들인 것과 차이가 없다. 사실을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기 위해 대질해서 시비를 논란하라.……」 하였습니다. 가서 제사를 보여 주었더니 도리어 더 성을 내서 또 본주에 호소하였는데 조금도 피고로 응할 뜻이 없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벌초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낫을 빼앗고 쫓아내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송가(宋哥)가 처음에는 집을 짓는다는 말로 꾀고는 산지(山地)를 떼어 팔고, 금단하자 구타하여 나무에 매달고 억지로 장사 지내게 한 것은 참으로 너무도 놀랍습니다. 더구나 송사를 제기한 뒤에도 응하여 변론하지 않은 것은 너무도 못된 짓입니다. 본도로 하여금 엄히 조사해서 속히 무덤을 파내어 이장하게 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평양(平壤)의 김 조이(金召史)의 상언에, '시가(媤家)의 밭 4일 반 갈이〔四日半耕〕가 본부 추완미박가도(秋菀美朴哥島)에 있습니다. 경자년(1720, 숙종46) 물이 몹시 불어서 넘칠 때에 밭이 포락(浦落)하여 진전(陳田)이 되었는데 허복(虛卜)으로 공역에 응한 지 60여 년이 되었습니다. 신축년(1781, 정조5)에 무너져 떨어져 나간 밭을 점점 개간해서 도로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 사는 주일량(朱一良)이 외롭고 힘이 약한 저의 처지를 업신여겨서 거짓으로 자기가 밭의 임자라고 하고는 김원명(金元明)과 결탁해서 김원명에게 헐값에 팔았다는 가짜 문권(文券)을 만든 뒤에 100냥을 받고는 조명월(趙明月)에게 도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본관에 정소하고 비국에 정소하였는데 모두 승소로 판결하는 제사(題辭)를 받았습니다. 갑진년(1784)에 다행히 승소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량은 도로 주겠다는 뜻으로 다짐을 바쳤고 저는 돈 50냥을 내어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량 등이 관아의 판결을 무시하고 이어서 밭을 억지로 빼앗았으며, 주일량의 아들 주처정(朱處正)은 본관에서 패소하여 수기(手記)를 만들어 주었으면서도 곧 약속을 어겼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72) 역시 …… 않았습니다. : 원문은 '亦爲一體掘去' 인데, 앞뒤의 문맥이 통하지 않아 문맥을 살펴 번역하였다.

전후의 문건이 이미 김 여인(金女人)에게 있는 데다 60여 년 동안 세금을 낸 땅이니 그가 본래 주인이라는 것은 이미 논할 것이 없고, 주일량 등이 억지로 빼앗고 주지 않은 것은 참으로 너무도 추악합니다. 본도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승소로 판결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임천(林川)의 유학 이위(李煒)의 상언에, '어미의 장지가 본군에 있는데 당초 장사 지낼 때에 산 아래의 권진형(權震衡)과 권이성(權以成) 등이 자기네 산의 국내(局內)라고 하면서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권진형은 관아에 정소하여 패소하였고, 권이성은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수기를 만들어 주었으니, 안장(安葬)한 지 지금 3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저의 처를 계장하였는데 권이성의 아들 권동언(權東彦)과 권진형의 아들 권상언(權尙彦)이 밤에 저의 어미 무덤을 파내어 널을 끌어다 낭떠러지에 굴리고 관을 묻은 뒤 구덩이 위에 덮는 널조각인 횡대(橫帶)와 관을 담는 곽인 외관(外棺)을 조각조각 깨뜨려 부수었으며 관의 뚜껑이 되는 널인 천판(天板)과 우판(隅板) 역시 부수었고 시체를 범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관아에 정소하고 영문에 보고하였는데 결국 권상언을 조율하는 데에 그쳤으며 도내(道內)의 보은(報恩)에 정배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호소한 내용과 같다면 권가(權哥)가 다른 사람의 널을 도끼로 부순 것이 진실로 매우 놀라우며, 시체를 범하는 데에 이른 것은 극죄(極罪)인데도 해당 도신의 감률(勘律)이 도내에 정배하는 데 그친 것은 매우 의아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쪽의 말만 따라서 믿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직접 상세히 조사해서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온 뒤에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전에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지 못하도록 금한 신칙이 지극히 엄격했으며[73], 다시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는 일을 입계하는 문서에 올리면 도신과 수령은 마땅히 판하했던 대로 처리하겠다는 전교가 있기까지 하였습니다.[74] 이 일이 비록 도신이 아뢴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애당초 미연에 금하지 못하였고 또 이미 사건을 저지른 뒤에도 엄히 처리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해당 도신과 수령을 모두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교하(交河)의 상인(喪人) 신사권(申師權)의 상언에, '제 누대의 선영이 본군에 있는데 9대조인 군수 신용관(申用灌)은 바로 고상(故相) 신용개(申用漑)의 형입니다. 정덕(正德) 기묘년(1519, 중종14)에 처음 장사 지낸 뒤로 자손이 연이어 계장하였고, 묘지기로 하여금 제위전답(祭位田畓)을 책임지고 맡아서 지키고 보호하며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하여 가꾸게 한 지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살림에 일찍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되어 해서 지방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정유년(1777, 정조1) 연간에 처음으로 와서 성묘(省墓)를 하였습니다. 그런즉 묘 아래에 사는 유한천(兪漢天) 등이 자손이 없는 것

---

73) 연전에 …… 엄격했으며 : 정조가 여러 도(道)에서 보고한 방미방 계본(放未放啓本)의 관련 죄인이 대부분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도신이 일벌백계하여 미연에 막지 못한 것을 꾸짖으면서 이후에도 이런 죄인이 많을 경우 도신과 수령을 의금부로 잡아다 처리하겠다고 했으며 여러 도에 신칙하여 범하지 말게 하라고 형조에 지시한 것을 가리킨다. 《日省錄 正祖 14年 4月 9日》

74) 다시 …… 하였습니다 : 형조가, 남성복(南聖福)이 면임(面任)으로 하여금 마을 군졸을 동원해서 어미의 관을 파내어 들에 방치하게 했다는 격쟁인 장덕봉(張德奉)의 원정에 대해 회계하였을 때에,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는 사안에 대해 그토록 신칙하여 금했는데도 다시 이런 일이 생긴 것을 탄식하고 감사로 하여금 각별히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면서 내린 전교 내용이다. 《日省錄 正祖 14年 8月 2日》

을 보고는 멋대로 몰래 매장한 무덤이 6기(基)나 되었는데 용미(龍尾)를 침범하기도 하고 계체석(階砌石)을 파손하기도 하였습니다. 봉축(封築)을 허물어뜨려서 평지를 만들어 놓았으며 묘지기를 쫓아내고는 위전(位田)을 훔쳐 빼앗았습니다. 석인(石人)과 상석(床石)은 굴리고 넘어뜨려 묻어 버렸고, 비문(碑文)과 갈자(碣字)는 쪼고 훼손해서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즉시 본관에 정소하여 무덤 3기를 파내었고, 다시 순영에 정소해서 겨우 무덤 1기를 파냈는데, 그 나머지 무덤 2기는 아직도 파내어 가지 않고 있으며 전해 오던 묘위토(墓位土) 역시 아직 찾아내어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본도에 명하여 유한천은 엄히 형추하여 가두고 무덤 2기를 독촉해서 파내도록 하며, 상석 및 묘위답도 수(數)대로 찾아내어 돌려받도록 함으로써 성상의 은택을 받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신사권이 차지한 산지(山地)는 이미 수백 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면서 계장한 곳이니 유한천이 용미를 침범하여 몰래 매장하고 비석을 묻어 버리고 위답(位畓)을 빼앗은 것은 너무도 추악합니다. 6기의 무덤 가운데 4기를 이미 파내었는데 2기를 아직도 파내어 가지 않으니 그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세로 볼 때에 참으로 당연합니다. 본도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공정하게 결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이전에 판하한 것이 어떠하였는가. 그런즉 또다시 호소하는 것은 필시 상대쪽이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일 것이니, 나라의 기강으로 헤아려 볼 때에 너무도 놀랍다. 도신에게 엄히 신칙해서 분명히 적시하여 처결함으로써 다시 호소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

○ 이조가 아뢰기를, "서부(西部)에 사는 한량 송광록(宋光祿)의 상언에, '저의 아비 가의대부(嘉義大夫) 송한휘(宋漢輝)는 올해 나이가 83세로 세수(歲首)에 가자해 주는 은전을 받았으며, 또 어미와 해로하였는데 이미 가자를 받았다고 해서 해로한 노인 부류에 다시 녹계(錄啓)되지 않았습니다. 부인첩(夫人帖)을 받는 은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해로하였는데 부인첩을 받지 못했으니 원통하다고 말할 단서가 없지 않습니다. 한성부로 하여금 상세히 장적(帳籍)을 상고한 뒤에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이미 세수에 가자되었고 나이가 83세이니 그 처의 나이에 대해 어찌 거짓으로 꾸며 댈 리가 있겠는가. 설령 재취(再娶)라 하더라도 70세나 80세 이후에 또한 어찌 결혼하는 일이 있겠는가. 경이 망설이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니 경을 추고하겠다. 오늘 정사에서 하비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서부에 사는 장사랑(將仕郞) 박이행(朴履行)의 상언에, '저의 아비 전 전옥서 주부(典獄署主簿) 박상기(朴象器)는 나이가 지금 71세입니다. 금년 나라의 경사를 만나 조관으로 나이 70세 이상에 해당하니 규례대로 가자를 받아야 합니다만 한성부의 초록(抄錄)에 누락되었으니 가자하는 은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상기는 이미 조관으로 나이가 70세가 넘었는데 백성들을 똑같이 대해 주는 은택에서 누락되었으니, 그가 호소하는 것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가자하는 은전을 시행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 "오늘 정사에서 하비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춘천(春川)에 사는 양인 최정대(崔貞大), 서산(瑞山)에 사는 유학 정연(鄭沇), 남포(藍浦)에 사는 유학 안돈(安墩) 등의 상언에, 최정대의 아비 동지(同知) 최작돌(崔斫乭)은 나이가 86세이고 그의 어미는 나이가 87세인데 지금 회혼(回婚)의 해를 맞아 가자하는 은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정연의 아비 유학 정진교(鄭鎭僑)는 나이가 지금

83세인데 그의 어미와 해로하였으니 가자하는 은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였으며, 안돈의 아비 유학 안정최(安廷崔)는 올해 나이가 70세이고 그의 어미는 올해 나이가 72세이니 가자하는 은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해로한 노인에 대한 가자는 이미 하교하셨으니, 본도에서 필시 장계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보고하기를 기다려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필시 장계로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니, 가령 장계로 보고하지 않으면 장차 논하지 않을 것인가. 감사에게 조사하도록 하는 것까지도 청하지 않는 것이 너무도 놀랍다. 경을 엄하게 추고하겠다. 한성부의 장적을 상세히 상고해서 어긋나지 않으면 오늘 밤 안에 하비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주(全州)에 사는 충의(忠義) 김하정(金夏鼎)의 상언에, '저의 아비 가선대부(嘉善大夫) 김성철(金聲徹)은 올해 나이가 87세이니 가자하는 은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자해야 할 나이가 이미 찼으니 우선 보고하는 장계를 기다린 뒤에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우선 기다리겠다는 것은 너무 느긋하니, 도리어 관문(關文)을 보내어 물어서 청하는 것보다도 못하다. 장적을 가져다 상고해서 만일 차이 나지 않으면 오늘 밤 안으로 하비하라. 경을 추고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문경(聞慶)에 사는 동몽(童蒙) 우대규(禹大圭)의 상언에, '저의 할아비 우흥(禹興)은 올해 나이가 101세인데 경술년(1790, 정조14) 나라의 경사 때에 장적과 서로 어긋나서 추은(推恩)을 입는 대상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금년 고을의 초록(抄錄)에도 반드시 선발되리라 장담하기 어려우니, 이조로 하여금 장적을 상세히 고찰한 뒤에 가자하는 은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흥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가자를 받지 못한 것은 필시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고찰해서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온 뒤에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100세의 노인이 오히려 추은(推恩)에서 누락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본도에 묻게 되면 자연히 지체하게 될 텐데 노인의 일은 알 수가 없다. 경의 회계에 '본도에 물어서' 라고 한 것은 이전에 판하한 뜻이 전혀 아니니 경을 추고하겠다. 오늘 밤 안에 한성부의 장적을 가져다 살펴서 여러 식년의 장적이 어긋나지 않으면 즉시 하비하고 그 자손에게 면급해서 내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진안(鎭安)에 사는 유학 장일삼(張日三)의 상언에, '저의 할아비 동지 장여군(張汝群)은 올해 나이가 101세이니 직함 하나를 내려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100세 노인에게 숭정대부(崇政大夫)를 곧바로 초자(超資)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시행하도록 허락해야 할 듯하나 나이가 100세가 넘었는지의 여부는 그의 호소만으로는 믿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도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해서 장계를 올리게 하고 장계가 올라온 뒤에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100세 노인에 대해 회계한 일로 조금 전에 문비(問備)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회계에서도 또 관문을 보내어 묻기를 청하니, 한성부의 장적은 장차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가. 경을 추고하겠다. 장적을 가져다 살펴보아 만일 차이 나지 않으면 오늘 밤 안에 하비하라. 그리고 지난 납향일(臘享日) 이후에 매일 밤 수응한 것을 경은 당연히 들어서 알 텐데, 지금 경들이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늘도 밤을 새우게 할 것인가. 양전(兩銓)의 거행이 혹 지체되면 경들은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러한 내용을 잘 알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양주에 사는 유학 박봉모(朴鳳謀)의 상언에, ‘저의 어미는 올해 나이가 90세가 꼭 찼으니 봉작(封爵)의 은전을 입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본도에서 세수에 초계하지 않았으니 필시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상세히 조사해서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온 뒤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어찌 멀리 해당 도에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 즉시 가까이 한성부의 장적을 살펴보고 오늘 밤 안에 하비하라. 경을 추고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송화(松禾)에 사는 유학 강처문(姜處文), 낭천(狼川)에 사는 유학 김계철(金繼喆), 송화에 사는 유학 한종익(韓宗益)·한기형(韓箕亨) 등의 상언에, ‘강처문의 아비 강봉린(姜鳳獜)은 올해 나이가 86세이고, 김계철의 아비 김광열(金光悅)은 올해 나이가 92세이고, 한종익의 아비 첨지(僉知) 한흡(韓潝)은 올해 나이가 86세이고, 한기형의 할아비 한취익(韓就翊)은 올해 나이가 95세이니 모두 가자하고 3대를 추증(追贈)하는 은전을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이미 가자해야 할 나이에 찼으니, 이는 우선 본도에서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오기를 기다린 뒤에 거행하며, 3대를 추증하는 사안은 실직을 거치지 않아서 지금 논할 일이 아니니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우선 기다리겠다고 운운한 것은 지체하고 소홀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경을 추고하겠다. 한성부의 장적을 가져다 살펴본 뒤 오늘 밤 안에 하비하고, 추증하는 한 조항은 본도에 물어서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온 뒤에 거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산청(山淸)의 유학 심사대(沈師大), 부평(富平)의 유학 원경익(元卿翼), 이천(利川)의 유학 김중희(金重禧), 낙안(樂安)의 유학 강흥주(姜興周), 흥양(興陽)의 유학 한광덕(韓光德), 영광(靈光)의 유학 김상화(金象華), 포천(抱川)의 유학 이정억(李鼎億)[75]·홍성문(洪聖文), 순천(順天)의 유학 이언신(李彦信), 금천(金川)의 유학 김덕실(金德實), 전주(全州)의 유학 홍인동(洪仁東) 등의 상언에, ‘심사대의 아비 동지 심도주(沈渡舟), 원경익의 아비 동지 원성휘(元聖輝), 김중희의 아비 동지 김시흥(金時興), 강흥주의 아비 동지 강위태(姜渭泰), 한광덕의 아비 동지 한한주(韓漢周), 김상화의 아비 동지 김수욱(金守旭), 이정억의 아비 동지 이춘무(李春茂), 홍성문의 아비 동지 홍정구(洪正九), 이언신의 아비 동지 이섬(李暹), 김덕실의 아비 동지 김득성(金得聲), 홍인동의 아비 동지 홍한상(洪漢相)은 모두 단부(單付)된 동지로 선대를 추증하는 은전을 입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양반으로 단부된 동지에게 3대를 추증하는 것은 이미 도신의 장계로 인하여 모두 거행하였습니다. 그런즉 지금 이렇게 호소한 것은 필시 양반이 아닌데도 요행을 바라서 나온 계책일 것이니 매우 외람된 일입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양반인가의 여부를 어떻게 추측해서 결정할 수 있겠는가. 조사할 것을 청하지 않고 곧바로 들어주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경사를 함께 누리는 뜻이겠는가. 경을 추고하겠다. 해당 도에 물어서 즉시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온 뒤에 하비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북부(北部)에 사는 양인 나익성(羅翼盛)의 상언에, ‘저의 아비 내궁방(內弓房) 궁인(弓人) 나윤복(羅允福)은 궁인에 소속되어 전후로 수고한 지 20년이 되었고, 만들어서 바친 활의 수효가 이미 1000장(張)이 찼습니다. 전(前) 궁인 최태륜(崔泰崙)·이중

75) 이정억 : 원문은 ‘李鼎德’인데, 앞에 나온 《일성록》 기사와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 등을 참고하여 ‘德’을 ‘億’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번(李重蕃) 등의 예대로 가자하는 은전을 입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20년 복역(服役)하고 만든 활이 1000장인 내궁방 궁인에게 첩가(帖加)를 만들어 주는 것은 이미 정식으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궁방에 물었더니, 나윤복이 과연 내궁방 소속이었고 복역한 지 20년이 되었으며 만든 활이 1000여 장에 꼭 찼다고 하였습니다. 첩가를 만들어 주는 은전을 시행해야 될 듯한데, 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1000장을 만들면 첩가하는 것이 비록 고례(古例)에 있기는 하나 내궁방에 물었다고 하는 것이 어찌 말이 되는가. 경을 우선 엄하게 추고하겠다. 이후로는 더 이상 이와 같이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아래의 내용을 정식으로 삼으라. 지궁품 당상(知弓品堂上)이 각각 궁인의 이름 아래에 만든 활의 수효를 기록하여 병조에 보고하면 병조는 1000장이 넘은 자를 기록해 두고, 가령 당사자가 병조 판서에게 와서 고하면 병조 판서가 성책(成冊)과 지궁품 당상이 계하받을 단자(單子)를 가져다 살펴보아서 과연 차이 나지 않으면 초기하여 논상(論賞)하라. 이번에는 우선 병조 판서로 하여금 각 사람을 불러다 묻고 지궁품 당상이 계하받을 단자를 가져다 살펴본 뒤에 초기하게 하라. 이로 인해 또 정식으로 삼을 것이 있다. 지궁품 당상이 내궁방에 들어가 앉아서 활을 당겨 보고 등급을 매기는 것 역시 내외(內外)를 엄격히 하는 뜻이 아니다. 이후로는 병조에 앉아서 입직 당상, 입직 낭청과 함께 거행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 호조가 아뢰기를, “무안(務安)의 유학 정상렬(丁相烈)의 상언에, ‘저의 아비는 나이가 90세이고 어미는 나이가 80세로 경술년(1790, 정조14)과 신해년(1791)에 동지중추부사에 추은하는 은택을 이미 받았는데 가세(家世)가 매우 궁핍하니 작은 은혜를 받아 부모를 봉양할 수 있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미 수직(壽職)으로 가자하여 추은하는 은택을 여러 차례 입은 데다 세초에 또 부처(夫妻)가 해로한 노인에게 세찬(歲饌)을 더 지급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해당 도에서 필시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거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 지방의 백성이 감히 이렇게 무엄한 내용으로 성상을 번거롭게 하였으니 민습(民習)이 매우 놀랍습니다. 상언은 들어주지 말고 그의 죄상을 도신으로 하여금 각별히 징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그를 어찌 꾸짖을 필요가 있겠는가. 애당초 정원이 뽑아서 내릴 때에 살피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렵다. 계하한 것은 무효화하고 해당 승지는 추고하며, 상언을 올린 사람도 엄히 신칙해서 내려보내라. 100세 가까운 노인으로 해로한 자가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도록 조처하지 못하는 것은 수령의 죄이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노인을 우대하는 의리를 특별히 생각하게 하라. 도내 90세 이상 100세 가까운 노인 가운데 가난하여 스스로 콩과 물처럼 소박한 음식도 마련할 수 없는 것은 어찌 아이를 버리는 것에 견줄 수 있겠는가. 말쌀이라도 많이 지급한 뒤에 기록하여 장계로 보고하도록 여러 도에 일체 분부하라.” 하였다.
○ 예조가 아뢰기를, “중부(中部)의 동몽(童蒙) 이영(李英)의 상언에, ‘5대조 증(贈) 이조 판서 이신선(李信瑄)은 바로 연호궁(延祜宮) 정빈(靖嬪)[76]의 할아비입니다. 저는 직계로서 정빈 부모의 사우(祠宇)에 대한 제사를 받들어 지내는데 이장옥(李長玉)의 제사를 받들 후손이 없어서 제가 또 제사를 받들어 지냅니다. 그런데 가난하여 집도 없어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빠뜨리는 탄식이 없지 않습니다. 삼가 도움을 받아 영원히 제사 지낼 수 있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76) 연호궁(延祜宮) 정빈(靖嬪) : 영조의 후궁이자 진종(眞宗)으로 추존된 효장세자(孝章世子)의 사친이다.

은택을 구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지적해서 진술한 것도 없으니 지금 우선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작호(爵號)를 잘못 썼는데 - 원래의 상소에 잘못 썼다. - 어찌하여 규례대로 회계하는가. 경을 우선 엄하게 추고하겠다. 그는 본래 꾸짖을 필요가 없고 호소한 내용 또한 괄시할 수 없으니 병조로 하여금 일내 금군(一內禁軍) 한 자리에 먼저 붙여서 습사(習射)하여 녹을 받을 수 있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충청도 유학 이진중(李鎭中) 등의 상언에, '고 순변사(巡邊使) 이빈(李贇)이 임진년(1592, 선조25) 왜란 때 세운 공훈(功勳)에 대해 시호를 내려 주는 은전을 시행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빈의 충의와 공훈이 기념할 만큼 뛰어나서 추증해 주는 은전으로 또한 정경의 품계가 되었는데, 추증해 준 품계에 시호를 내려 주기를 곧바로 청하는 것은 법례(法例)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니,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경기 유생 이지석(李智錫) 등의 상언에, '지평(砥平)의 고 사인(士人) 양침(梁棽)은 효행이 뛰어나서 지난 임인년(1782, 정조6)에 도신 이형규(李亨逵)가 장계로 보고하였는데 아직까지도 포상하는 은전을 입지 못했습니다. 규례대로 정문(旌門)을 내려 포상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도신이 보고하는 장계에 과연 들어 있었으니 정문을 내려 주는 은전을 시행해도 너무 지나치지는 않을 듯한데, 은전에 관계된 일이니 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대신에게 의논한 다음 내게 물어 처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지석 등의 상언을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은 병으로 헌의(獻議)하지 못하였고, 좌의정 김이소(金履素)와 우의정 김희(金憙)는, 모두 양침은 효행이 뛰어나니 현직(顯職)을 추증하는 것이 공정할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대신의 논의대로 증직(贈職)의 은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인천(仁川)의 유학 신재년(申在年)의 상언에, '할아비인 고 학생 신광두(申光斗)의 효행에 대해 정문을 내려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은전을 시행해 주소서.' 라고 하였고, 온양(溫陽)의 유학 남급(南汲) 등의 상언에, '본군의 고 사인 강제신(姜濟身)과 그의 처 이씨(李氏)의 효행과 열행(烈行)에 대해 정려(旌閭)의 은전을 시행해 주소서.' 라고 하였고, 언양(彦陽)의 유학 김옥형(金玉亨) 등의 상언에, '본현의 첨지 공대집(孔大緝)의 효행에 대해 포상하여 기리는 은전을 시행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효행과 열행이 이처럼 뛰어나다면 해당 도신이 당연히 그 사실을 조사해 상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식에 따라 지금은 우선 들어주지 말고, 본조에서 해당 도(道)에 관문(關文)을 보내 신칙하여 보고할 만한 것은 세수가 되거든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모두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흥양(興陽)의 유학 강필제(姜必齊)의 상언에, '본현의 고 효자 증(贈) 주부(主簿) 장명주(張命周)와 그의 처 황씨(黃氏)는 모두 효행으로 지난 계묘년(1783, 정조7)에 도신 박우원(朴祐源)이 사람들의 칭송을 널리 모아 장계로 보고해서 장명주는 이미 증직의 은전을 입었는데 황씨는 포상하는 은전을 받지 못했으니 정문을 내려 주는 은전을 시행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보고하는 장계에 들어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시행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시행하지 않은 것은 실로 은전에 흠이 되는 일입니다. 정려하는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일은 아닌 듯한데, 은전에 관계되는 일이니 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

교하기를, “대신에게 의논하고 내게 물어 처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필제의 상언을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영의정 홍낙성은 병으로 헌의하지 못하였고, 좌의정 김이소와 우의정 김희는 모두 정려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가볍지 않으니 급복(給復)의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논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기와 충청 두 도의 유학 김치봉(金致鳳) 등의 상언에, ‘고 사인 민휘계(閔徽繼)의 충효에 대해 정려하여 표창하는 은전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경솔히 의논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다시 실제의 자취를 찾아내어 세수가 되거든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온 뒤에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과천(果川)의 유학 신주권(申周權) 등의 상언에, ‘고 충의공(忠毅公) 최몽량(崔夢亮)을 만부(灣府 의주부(義州府))의 충렬사(忠烈祠)에 추배(追配)하는 일을 해당 조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최몽량은 의주 판관(義州判官)으로 정묘호란(丁卯胡亂) 때에 순절(殉節)하여 조정에서 포상하는 은전을 이미 받았습니다. 만부의 사우(祠宇)에 추배하는 일은 사안이 가볍지 않은 데다 또 은전에 관계되어 경솔히 의논해서는 안 되니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청주(淸州)의 진사(進士) 이현문(李顯文) 등의 상언에, ‘괴산(槐山)의 고 주부(主簿) 신광섭(申光燮)의 처 이씨(李氏)는 아비를 위해 손가락을 짓이겼고, 시아비를 위해 종기를 빨았으며, 지아비를 위해 죽음을 맹세한 자취가 있습니다. 이는 한 가지 선행이 있고 한 가지 능력이 있는 자와 견줄 뿐만이 아니니 표창하여 기리는 은전을 시행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씨의 효행과 열행이 이처럼 뛰어나다면 해당 도신이 당연히 그 사실을 조사해 상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새로 반포한 정식에 따라 지금은 우선 들어주지 말고, 본조에서 해당 도에 관문을 보내 신칙하여 보고할 만한 것은 세수가 되거든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전라도 유학 김종신(金宗信) 등의 상언에, ‘고 현감 송제(宋悌), 고 부사 송덕일(宋德馹) 및 송제의 처 구씨(具氏)의 충성과 열행에 대해 정문을 내려 기리는 은전을 입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송제 부처(夫妻)와 숙질 두 사람의 충성과 한 사람의 열행에 대해서는 이미 진실을 입증할 문서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문을 내려 기리는 은전을 입지 못한 것은 실로 은전에 흠이 되는 일입니다. 다만 대번에 시행하도록 허락할 수가 없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공의(公議)를 조사해서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온 뒤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경상도 도내 유학 박세표(朴世杓) 등의 상언에, ‘밀양(密陽)의 사인 김하정(金夏鼎)과 그의 처 박씨는 부모를 섬기는 데에 효도를 다해서 부모에게 병이 있자 함께 아비의 똥을 맛보고 함께 어미의 종기를 빨았으니 특별히 정문을 내려 기리는 은전을 시행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김하정과 처 박씨의 효행이 이와 같이 뛰어나다면 해당 도신이 당연히 그 사실을 조사해 상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새로 반포한 정식에 따라 지금은 우선 들어주지 말고, 본조에서 해당 도에 관문을 보내 신칙하여 보고할 만한 것은 세수가 되거든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

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통진(通津)의 유학 공상인(孔常仁) 등의 상언에, '병자호란 때에 본부 교궁(校宮)의 재임(齋任) 이윤(李胤), 김계남(金啓楠) 2인이 선성(先聖)의 위판(位版)을 메고 피란하여 문수산성(文殊山城)에 봉안하였다가 난리가 평정된 뒤에 구전(舊殿)에 도로 봉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을 표창하는 은전을 받지 못하였고 그들의 자손 역시 천역(賤役)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태학과 부평(富平)에 공을 칭찬하여 상을 내리고 선행을 표창한 은전에 따라 성상의 은택을 입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윤과 김계남 등이 어찌할 수 없이 매우 급작스러운 때에 선성의 위판을 메고 가서 다른 곳에 봉안하였다가 도로 구전에 봉안한 것이 비록 매우 가상한 일이지만 오래전의 일이어서 진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도신으로 하여금 실제의 자취를 상세히 조사하게 한 뒤에 천역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들 자손은 탈급(頉給)해 주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경주(慶州)의 유학 김건항(金健恒) 등의 상언에, '저의 시조 경순왕(敬順王)의 전우(殿宇)가 월성부(月城府)의 동쪽 금학산(琴鶴山)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세가 위태롭고 험하여 큰물이 날 때마다 모래와 돌이 무너져 사태가 나는 바람에 사옥(祠屋)이 거의 무너질 지경입니다. 한결같이 숭덕전(崇德殿)을 고쳐서 건립한 전례에 따라 옮겨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에 대해서 성상의 은택을 입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전우가 세워져 있는 곳에 과연 무너질 염려가 있다면 조속히 옮겨 건립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안 될 이유가 없을 듯한데, 일의 체모가 중대하여 경솔히 허락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본주에 분부하여 형편을 잘 살피게 한 뒤에 장계로 보고하게 해서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마땅히 도백으로 하여금 봄에 순행할 때에 지방관과 함께 간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온 뒤에 내게 물어 처리하도록 청했어야 하는데 회계하는 내용이 엉성하고 거치니 경을 추고하겠다. 도신으로 하여금 직접 살펴본 뒤에 의견을 갖추어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유학 고봉정(高鳳禎)의 상언에, '본주의 교우(校宇)를 옛터에 도로 옮기고, 또한 재사(齋舍)를 나누는 일로 호소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향교를 옮겨 건립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중대하고 또 금령(禁令)이 있으며, 재사를 나누게 해 달라고 청한 것 역시 외람된 일이니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남부(南部)의 사역원(司譯院) 전함(前銜) 박명후(朴明垕)의 상언에, '효묘조(孝廟朝)의 어제(御製)와 어필(御筆)을 보배로 여겨 사실(私室)에 잘 보관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으니 받들어 들일 수 있게 허락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세간에 남아 있는 어필과 어제는 예로부터 있었는데, 아뢰어 받들어 들이기를 청한 것은 은택을 요구하는 일이니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청주의 유학 김보연(金普淵)의 상언에, '저는 늙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동성(同姓)의 육촌 동생 김복연(金復淵)의 둘째 아들 김능대(金能大)로 후사를 세우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김복연이 자식을 편애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려고 하지 않으니, 해당 조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대를 잇는 법은 생가(生家)와 양가(養家) 피차가 모두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데 생가에서 혹시라도 허여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김복연이 사촌 형제간이면서도 후사가 끊어지는 것을 좌시하고 허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인정을 벗어난 행동이

니 시행하도록 허락해야 합당할 듯하지만, 인륜의 중대한 일에 관계된 사안이니 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남부의 고 학생 조세근(曺世根)의 처 김씨(金氏)의 상언에, '남편이 불행히도 일찍 죽어서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동성 팔촌 형 조익진(曺翼振)은 아들 4인이 있어서 그의 셋째 아들 조노길(曺老吉)을 취하여 후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익진 부처가 모두 죽어서 받을 곳이 없어 규례대로 정장(呈狀)할 수가 없으니 예조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조노길을 후사로 세우는 것을 특별히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창평(昌平)의 유학 양제인(梁濟仁)의 상언에, '당질(堂姪) 양회정(梁會綎)은 누대의 종손(宗孫)인데 본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서 재종형(再從兄) 양회복(梁會福)의 셋째 아들 양우수(梁又壽)로 대를 이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모두 죽어서 규례대로 정장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모두 없으니 시행하지 말아야 하는 사안이지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후사를 세우도록 특별히 허락한 수교(受敎)가 이미 있으니, 후사를 세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충주(忠州)의 유학 김제훈(金濟勳)의 상언에, '동성 칠촌 조카 김치경(金致敬)은 누대를 봉사(奉祀)한 사람으로 본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습니다. 이에 22촌 아우 김치대(金致大)의 다섯째 아들 김응달(金應達)로 후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부모가 모두 죽어서 규례대로 정장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행하지 말아야 하는 사안이지만 이미 수교가 있으니 후사를 세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의성(義城)의 유학 이원발(李元發)의 상언에, '저의 동성 육촌 아우 이성운(李聲運)은 누대를 봉사한 사람으로 본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을 두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둘째 아들 이팔복(李八福)으로 후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성운 부처가 모두 죽어서 받을 사람이 없는 바람에 규례대로 정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조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한쪽의 부모가 모두 없으니 시행하지 말아야 하는 사안이지만 이미 수교가 있으니 이팔복을 특별히 후사로 세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고양(高陽)의 유학 이욱권(李郁權)의 상언에, '외할아버지 양두서(梁斗瑞)는 본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가(梁家)의 문장(門長)과 의논하여 양두서의 동성 26촌 동생 양처하(梁處廈)의 셋째 아들 양형유(梁亨裕)를 후사로 세우고자 하는데 부처가 모두 죽어 규례대로 예사(禮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특별히 후사를 세우도록 허락한 수교가 이미 있으니, 특별히 후사를 세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청주의 전 부장(部將) 봉치규(奉致珪)의 상언에, '11세조 고 병조 판서 정난 공신(靖難功臣) 강성군(江城君) 봉석주(奉石柱)는 정경(正卿) 반열의 훈신(勳臣)으로 시호를 하사하는 은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이 이리저리 흩어진 데다 봉사마저 끊어졌으니, 훈신의 적자를 세우는 것은 다른 것과는 자별합니다. 시호를 하사하고 대를 이을 아들을 들여세우는 두 사항을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시호를 하사하기를 청한 것은 시행하도록 허락해야 될 듯하나, 은전을 구하는 일이니 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를 이을 아들을 들여세우는 문제의 경우. 비록 지적한 것은 없지만 훈신의 봉사는 자별하니 문장(門長)으로 하여금 이름을 지적하여 정단(呈單)하

게 한 뒤에 다시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진천(鎭川)의 고 학생 신여복(愼汝復)의 처 이씨(李氏)의 상언에, '남편이 불행히도 죽었는데, 동성의 사촌 형 신여덕(愼汝德)에게 두 아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정해 후사로 삼게 해 달라고 백방으로 애걸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여덕의 처 한씨(韓氏)는 빈궁한 것을 이유로 고집을 피우며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를 잇는 법은 생가와 양가 피차가 모두 진정으로 원해야 하니 강제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신여덕이 사촌 형제간이고 이미 두 아들이 있는데 허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인정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한 아들을 후사로 삼는 것을 시행하도록 허락해야 합당할 듯한데, 이름을 지적하지 않았으니 문장으로 하여금 이름을 지적하여 정단하게 한 뒤에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북부(北部)의 유학 이택진(李澤鎭)의 상언에, '12대조 고 영의정 문경공(文景公) 이직(李稷)은 양조(兩朝 태조와 태종)의 원훈(元勳)으로 조정에서 부조(不祧)하라고 특별히 명하셨고, 저의 몸에 이르도록 제사를 받드는 일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독자(獨子) 이우원(李右源)이 불행히도 죽어서 아들이 없습니다. 선조의 자손 가운데 고 도정(都正) 이규휘(李奎徽)의 손자 이중원(李重源)에게 아들 4인이 있어서 셋째 아들 이증을(李曾乙)을 죽은 아들 이우원의 후사로 정하는 일을 가지고 백방으로 애걸하였는데, 이중원이 허락하지 않아 이렇게 호소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중원이 비록 지파(支派)이기는 하나 후손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이니 한 아들을 허여하여 부조의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양주(楊州)의 유학 박광신(朴光愼)의 상언에, '12대조 평양부원군(平陽府院君) 문숙공(文肅公) 박석명(朴錫命)의 7세손 박계주(朴繼胄)는 후사가 없으니, 재종질(再從姪) 박세진(朴世珍)을 봉사손으로 정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신위를 옮기지 않는 훈신의 대를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되니 후사를 세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여주(驪州)의 유학 송광진(宋光鎭)의 상언에, '백부 송하상(宋夏相)이 일찍 죽어 아들이 없어서 저로 대를 이었고, 생부 송하형(宋夏亨)은 당질 송상진(宋常鎭)을 자식처럼 길렀는데 예사(禮斜)를 받기 전에 송하형과 송상진이 죽었습니다. 규례대로 예사를 만들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송상진을 비록 생전에 자식처럼 길렀지만 죽은 뒤 나중에 예사를 내주는 것은 상격(常格)에 어긋나니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청주의 유학 이만근(李萬根)의 상언에, '9대조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의 봉사손(奉祀孫) 이희원(李禧元)이 요절하였는데, 방조(旁祖)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의 제사를 한 사당에서 합제(合祭)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의 봉사는 종중(宗中)에서 의견을 모아 이희원의 아비 이문규(李文奎)의 생가 형 이익규(李益奎)의 둘째 아들 이지원(李祉元)을 이문규의 아들로 이어서 금성대군의 제사를 받들게 해 주소서. 안평대군의 제사의 경우는, 비록 이지원을 후사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두 대군의 제사를 받들기는 어려우니 이문규의 사촌 아우 이동규(李東奎)를 뽑아서 안평대군의 제사를 받들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금성대군의 봉사는 청한 대로 이지원을 후사로 삼게 하지만, 안평대군의 제사의 경우는 이미 합제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제사를 나누어서 받들겠다는 청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들

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금천(衿川)의 유학 오언장(吳彦長)의 상언에, '저의 외가 9대조 전성군(全城君) 이한원(李翰元)의 9세손 이언겸(李彦謙)은 불행히도 후사가 없으니, 종인(宗人) 이한수(李漢秀)의 둘째 아들 이광보(李光普)를 봉사손으로 삼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전성군이 이미 훈신이니 대가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청한 대로 입안(立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 병조가 아뢰기를, "면천(沔川)의 유학 이영록(李永祿)의 상언에, '할아비 이동형(李東馨)은 올해 나이가 108세로 자헌대부까지 올라 이미 동지중추부사에 추증하는 은전을 받았고, 아비 이정설(李廷卨)은 올해 나이가 81세입니다. 할아비를 실직에 특별히 제수하는 일로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동형은 108세이고 아들 이정설은 81세로 부자의 나이가 거의 200세에 가까우니 매우 드문 일입니다. 다만 문관, 음관, 무관을 막론하고 4품의 실직을 거치지 않으면 지사(知事)로 허락할 수 없는 것이 원래 정사의 체례(體例)이니, 이 경우는 의망에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00세 되는 사람에게 품계를 초자하는 것은 따로 근례(近例)가 있으니 똑같이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이정설의 나이가 이미 81세이니 본도에서 자연 사실에 근거하여 장계로 보고할 것입니다. 그러니 장계가 올라오거든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라는 뜻으로 이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광(靈光)의 유학 이흥석(李興錫), 창평(昌平)의 유학 이경오(李敬五), 담양(潭陽)의 유학 박태주(朴泰疇), 강릉(江陵)의 유학 허영(許泳) 등의 상언에, '이흥석의 아비 이춘엽(李春曄)은 올해 나이가 99세이고, 이경오의 아비 이주익(李胄益)은 올해 나이가 93세이고, 태혁(泰爀)의 아비 태빈(台彬)은 올해 나이가 91세로 모두 경술년(1790, 정조 14) 나라의 경사[77] 때에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가 되었는데, 신해년(1791)에는 단지 가선대부로만 오르고 실직 및 추증의 은전은 입지 못했습니다. 속히 해당 조로 하여금 동지중추부사의 실직에 붙이고 이어 추증하는 일에 대해서 성상의 은혜를 받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각 사람들은 모두 경술년 나라의 경사 때에 노인직을 가자받은 사람이니 그때에 유독 동지중추부사에 혹여 단부되거나 의망되지 못한 것은 필시 누락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바친 호적(戶籍) 및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펴보건대, 나이가 100세를 바라보고 부처가 해로한 것은 의심할 것 없이 명백합니다. 노인을 우대하는 도리에 있어서 고르게 시행하는 은전이 있어야 할 것이니 모두 다른 예에 따라 동지중추부사의 직함에 단부하고, 이어 이조로 하여금 한성부의 장적을 살피도록 해서 추은하게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호소한 것은 모두 외람된 일이 아니다. 실직에서 홀로 누락된 점이나 고르게 시행되어야 할 추증의 은전을 입지 못한 것은 충분히 억울하다고 할 만하니, 또한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모두 오늘 정사에서 이조와 함께 즉시 하비하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마전(麻田)의 유학 안봉상(安鳳祥)의 상언에, '저의 늙은 아비는 올해 나이가 92세인데 경술년(1790)에 특별히 은전을 입어 가선대부로 자급이 올랐습니다만 실직을

77) 경술년 나라의 경사 : 훗날 순조(純祖)가 되는 원자(元子)가 1790년(정조14) 6월 18일에 탄생한 일을 가리키며, 이 경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6월 24일 자전과 자궁에게 하례를 행하였고, 중외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윤음을 내려 대사면령(大赦免令)을 내리고 여러 도의 체납된 환곡을 면제해 주고 과거를 설행해서 인재를 뽑고 조관(朝官)과 사서인에게 한 자급씩 가자하되 100세가 넘은 노인에게는 쌀과 고기를 더 지급한다고 하였다. 《日省錄 正祖 14年 6月 18日, 24日》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9월에 내리신 전교를 삼가 듣건대, 경술년에 가자된 양반으로 자급이 가선대부에 이르렀는데 실직을 거치지 않은 자는 각 읍에 공문을 보내 알려서 명단을 받아 장계로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78] 저는 기묘명현(己卯名賢) 좌의정 안당(安瑭)[79]의 후손으로 보고하는 장계에서 누락되었으니 삼가 바라건대 똑같은 은전을 특별히 내리시어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80]
안봉상이 기한 안에 현신(現身)하지 않았고 아비의 이름자도 쓰지 않았으니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남부의 양인 문성전(文性全)의 상언에, '아비 문서규(文瑞圭)는 신해년(1791, 정조15)에 동임(同任 동료)인 서리(書吏) 장운성(張雲成)[81]과 함께 균청미(均廳米)를 옮겨 바친 죄로 모두 중형을 받아서 장운성은 장흥(長興)에 정배되었고 아비는 종이 되어 고성(固城)에 정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운성이 이미 석방되었으니, 똑같이 대해 주는 은택을 입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당초의 판부에 '백성을 학대하고 이익을 챙겼는데, 백성의 재물을 좀먹는 도적 같은 공인(貢人) 중에 문가(文哥)가 장가(張哥)보다 더 심하다.' 라는 전교가 있기까지 하였습니다.[82] 그런즉 장운성이 석방된 것은 이미 특별한 은혜인데 이번에 문서규의 아들이 또 같은 죄로 석방해 주기를 청한 것은 너무나도 무엄한 짓이니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관에서 허여하지 않았다면 서리가 어떻게 농간을 부렸겠는가. 이것이 해당 낭청을 수령에 의망하지 말라고 한 이유이다. 지금 크게 사면의 은전을 베푸는 때에 한 사람은 풀어 주고 한 사람은 그대로 정배해 두어서는 안 되니 특별히 풀어 주고 더 이상 균역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형조가 아뢰기를, "순천(順天)의 유학 김여흥(金麗興)의 상언에, '아들 김창윤(金昌允)이 뜻밖에 살옥을 만났으니[83] 다시 조사하도록 해서 살길을 얻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김창윤이 엇단(菱丹)을 묶어 놓고[84] 때려서 결국 목숨을 잃게 하였는데 실인(實因)과 사증

---

78) 작년 …… 내용이었습니다 : 단부(單付)로 동지가 된 사람은 추증을 허락하지 못하도록 한 정식이 있지만 명색은 단부일지라도 신분은 양반이니 은전을 받고자 하는 것은 사리상 당연하다고 하면서 해당 도신에게 분부해서 양반을 뽑아내어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온 뒤에 실동지(實同知)의 예대로 함께 추증하게 하라고 전교한 내용이 보이는데, 이를 가리키는 듯하다. 《日省錄 正祖 17年 9月 5日》
79) 기묘명현(己卯名賢) 좌의정 안당(安瑭) : 기묘명현은 1519년(중종14) 기묘사화로 화를 입은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사류(士類)를 일컫는다. 이때 안당은 영의정 정광필(鄭光弼)과 함께 조광조 등을 변호하여 구원하고자 하다가 대간으로부터 탄핵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좌의정이 되었으나 대간으로부터 계속 탄핵을 받았다. 《한국인물대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80) 성상의 …… 하였습니다 : 원문은 '得蒙天恩 又啓言' 인데, 문맥을 살펴 '又啓言' 을 연문(衍文)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81) 장운성(張雲成) : 원문은 '張雲成' 인데, 《일성록》 정조 15년 9월 4일과 6일 기사에는 장운상(張雲翔)으로 되어 있다. 동일인으로 보이지만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어 원문대로 번역하였다.
82) 당초의 …… 하였습니다 : 문서규(文瑞圭)와 장운성을 다시 공초한 다음 내린 전교에 나오는 내용이다. 《日省錄 正祖 15年 9月 4日》
83) 아들 …… 만났으니 : 김창윤(金昌允)의 옥사를 말한다. 이 옥사는 사비(私婢) 엇단(菱丹)이 김창윤의 화처(花妻)의 추한 행실을 폭로해서 화처가 독극물을 먹고 죽자, 김창윤이 엇단을 발로 차고 구타하여 6일 만에 죽게 한 사건으로, 신축년(1781, 정조5) 9월에 옥사가 성립되었다. 《국역 심리록 4 제24권 계축년 전라도》
84) 묶어 놓고 : 《국역 심리록》 4 제24권 〈계축년 전라도 김창윤의 옥사〉에는 '발로 차고 [

(詞證)이 모두 분명합니다. 작년 겨울 심리에 대해 도신이 동추(同推)하기를 청했기에 본조도 엄히 형신하여 공초를 받는 것으로 복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아직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아비로 하여금 사실을 이랬다저랬다 종잡을 수 없게 해서 멋대로 호소하도록 한 것은 너무도 방자한 일이니 들어주지 말고 조율하여 감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공주(公州)의 금위군(禁衛軍) 조영달(趙永達)의 상언에, '조모 시금(時今)은 본래 연기(燕岐)의 노비안(奴婢案)에 들어 있는 내비(內婢)인데 노비안에서 누락되어 공주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정축년(1757, 영조33) 추쇄(推刷)할 때에 박세장(朴世長)과 김진우(金振禹) 등이 누락된 내노비를 아뢴 공으로 시금 및 시금의 첫째 아들 남종 정숙(丁淑), 둘째 딸 여종 고읍정(古邑丁), 셋째 아들 남종 정운(丁云), 넷째 딸 여종 순단(順丹), 다섯째 아들 정태(丁泰), 여섯째 아들 정건(丁巾) 등 7구(口)를 법전에 의거하여 상으로 받았습니다. 그 뒤에 어람하는 도안(都案) 가운데에는 현탈(懸頉)로 하고 따라서 양역(良役)을 실행한 지 3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경술년(1790, 정조14) 어느 날 갑자기 연기 관아에서 정태를 추쇄하여 붙잡고는, 내노비라고 하면서 시금의 내외 자손으로 도로 기록하고 공전(貢錢)을 납부하기를 독촉하였습니다. 그래서 계하받은 속권(贖券) 및 장례원(掌隷院) 보충대(補充隊)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본조(本曹)에서 증명하여 작성해서 준 문안(文案)을 즉시 바쳤더니,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서 고을에 비치해 둔 것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상언한 내용과 같다면 그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즉시 사실을 조사하여 속히 탈급(頉給)하도록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연전에 고부(古阜)의 사안에 대한 처분이 어떠하였는가.[85] 그런데 또 감히 이렇게 법을 벗어나는 일이 있단 말인가. 참으로 호소한 내용과 같다면 너무도 놀랍다. 강제로 징수한 곡절을 도백으로 하여금 직접 엄히 조사해서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봉산(鳳山)의 유학 박춘발(朴春發)의 상언에, '아비 박종세(朴宗世)가 홍올금(洪亶金)의 철편(鐵鞭)에 의해서 타살된 지 지금 3년이 되었습니다.[86] 아비의 원수를 갚지 못했으니 즉시 아비를 죽인 이들을 죽여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옥사는 해당 도에서 이제 겨우 본조에 녹계(錄啓)하여 회계하려고 하던 참이니, 복수하기를 청한 것이 비록 지극한 마음에서 나온 일이기는 하나 지레 먼저 호소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선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召見承旨 徐榮輔 閣臣 徐有防 尹行任于重熙堂判下上言八十七度飭限內回啓

踢]' 로 되어 있는데, 확인할 수 없어 원문대로 번역하였다.

85) 연전에 …… 어떠하였는가 : 고부(高阜)의 한량(閑良) 이원엽(李元曄)이 격쟁하여, 할머니가 상의원(尙衣院)의 노비안(奴婢案)에 소속된 계집종이었는데, 이미 죽은 누이의 신공(身貢)을 아비 이중기(李中己)가 대신 떠맡는 바람에 가산(家産)을 모두 탕진하고 품은 한이 병이 되어 죽었으며, 본인도 이미 죽은 이들의 공포(貢布)를 대신 내게 되었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서 정조가 내노비와 시노비를 막론하고 노공(奴貢)을 강제로 징수하거나 백징(白徵)을 한 경우 해당 도백으로 하여금 읍재를 엄히 신칙하여 폐단을 바로잡게 해서 안렴사(按廉使)의 행차에 숨기고 있던 범죄 사실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전교하였는데, 이를 가리킨다. 《日省錄 正祖 12年 5月 1日, 6月 12日》

86) 아비 …… 되었습니다 : 홍올금(洪亶金)의 옥사를 말한다. 이 옥사는 홍올금이 관차(官差)로서 심전(沈全)을 잡으려 했는데 박종세(朴宗世)가 숨기고 내주지 않자 철편(鐵鞭)으로 박종세를 마구 때려 22일 만에 죽게 한 사건으로, 임자년(1792, 정조16) 11월에 옥사가 성립되었다. 《국역 심리록 5 제26권 갑인년 황해도》

목 備邊司啓言楊州前僉使 金瑞貞上言以爲丙申年除咸鏡道永達 萬戶本鎭屬於穩城城址崩頹已久方欲募民修築而適値凶歉捐俸捄卒不遑營他且土兵五百餘名擧皆逃躲見存者僅八十餘烽臺撥所把守各樣守直衆多而困於番次莫可收拾矣本邑烽臺武師其數夥然均是邑民而苦樂迥殊若以本鎭烽臺一處及把守一處移屬本邑則可爲鎭卒支保之道屢報巡兵營方欲變通之際移陞德浦僉使庚戌十月枚擧此兩件仰瀆法駕之前伏承允許築城一節使本鎭與所管邑合力修築至於烽臺尙不擧行云伏乞更下飭敎且德浦各鎭戰船修裝浮置之方全不加意譙樓鴟尾櫓槳棚索或埋於深淵或藏於武庫未成全體一團船圍巋然於浦邊一坎潮水懷襄之時始得浮焉不過一朔初三初四十八十九兩站而已大抵船之爲物置諸陸則風雨易朽置諸水則可以永久莫若行關於本營各鎭戰船裝成全體永爲泛置於浦邊水深處且楊州爲三路要衝二去庚午設置總戎防營不過數十年移屬守禦廳故老相傳竊歎不已依坡州例還設防營則實爲東北防禦之大策丙午春具由仰達於法駕之前批旨內自巡營招問其方略日後登對時稟處爲敎其時以坡州之尙未定規模仍爲寢止而此有不然者坡州則但以十二哨作營楊州則本邑軍已爲十六哨又合守禦所屬軍則實爲二十五哨以軍制言之本州所在守廳標下軍以廣州所在前營軍充定其代以楊根 砥平 廣州附近數邑軍丁代差則以此以彼俱極便好敎以眞所謂蒭蕘之說也北道 永達事烽武士之與邑均勞似無不可大抵鎭弊之無論彼此所以日甚者由於懸殊不相干涉而然特軫鎭卒之弊年前先從海西五山城八鎭釐弊事其中軍丁邑鎭民人通融充定之意判下北道何異雖近於見羊未見牛宜從登徹者處分分付該道依此擧行當否論理狀聞德浦事令廟堂關飭楊州設防營事何待渠言而知者然副提擧旣經牧使論理草記回啓近以呼籲之猥雜大關民習諸般法外上言皆命勿施此則雖非四件言出於一得如是措辭判下令廟堂招問後回啓○忠勳府啓言光州幼學李永源上言以爲渠之十三代祖興安君李濟錄開國勳其敎書世傳謂聖祖親製親筆而藏於主祀孫家矣中間借給於丹城居支孫亨烈而亨烈堅執不給請令還藏祖廟事也私自借示於支孫敢請推尋於朝家者猥濫之罪固所難免而御製體重請分付該道該邑使亨烈奉來臣府詳細奉審果如上言則使之還奉於勳臣主祀之家李永源猥煩天聽之罪從後勘處從之又啓言忠州幼學權相中等上言以爲其支庶養淳以福城君軀之子沃之長孫樣修呈世系于勳府故不勝憢惋以碣文譜帖粘呈勳府 養淳之口傳分付本聽勿施則做出怪說煽動傳播所謂怪說者福城君聘家卜氏譜中軀字誤書以堰則初非卜氏之壻云云又曰卜允明爲福城君翁而卜予之下錄女壻權堰則卜予亦非福城之翁云云而身邊雖誤土邊不過字相似也卜允明之爲卜予以允字之觸諱於其先祖故改之以予翁壻旣明白則有何執頉乎只欲使福城謂無聘家與嫡子而證其以妾子佚相繼之計也請嚴査釐正爲言矣取考其文蹟甲寅譜福城君權軀下但書庶子佚兄弟而已所謂嫡子沃則載錄於別譜而註曰更俟後日斤正云云而新譜重刊之時諸宗之議已爲歸一以沃移入原譜係於權軀之下則養淳之冒屬無復可疑而不可以一邊之言輕易論勘聞其譜在於安東地請令本邑査問其事實於主事人處憑考處之從之○漢城府啓言西部幼學宋之庠上言以爲其父通德郎翊運今年七十一母恭人黃氏今年七十凡諸士庶人夫妻偕老年七十以上皆蒙加資之恩而渠之父母則獨爲見漏不勝抑鬱之忱乞蒙天恩云矣士庶之年未滿八十而夫妻偕老人加資事有命故自臣府未滿八十偕老人抄啓則夫妻中年七十人不當入於抄啓中今此宋之庠母年纔爲七十不可入於未滿八十秩請置之敎以年雖未滿八十若有偕老者特命一幷加資卽指自今年爲七十之謂則觀此卿府回啓今番抄啓以七十一歲爲限云者是豈下敎之本意乎前 判尹以篤老侍下之人凡係尊年之事其所對揚宜倍他人而行此不當爲之綜核使同是七十偕老之群老未免或爲而或否是豈成說乎上言人幼學宋之庠父母推恩爲先今日政下批諸如此類之見漏者限三日更爲抄啓待抄啓政官牌招卽爲開政下批又啓言康津幼學崔致興上言以爲其九代祖故校理 昌孫三代墳山在陽城昨年不知何許人乘夜偸葬渠得聞此報卽爲呈官則官題使渠推尋偸葬之人以爲更訟之地首尾周歲終未推尋若不能掘移則祖先三世一坏之土將不得保有亟令道臣不日內自官掘移云矣偸葬則在法當掘而偸葬之人旣未査得則遠外事有難遙度自本官依法次給之意請分付從之又啓言靈光武學金應兌上言以爲渠數百年繼葬之先山在於本郡同郡居鄭守斌乘夜偸葬於龍尾上五步之內渠以土民不

敢抗衡於鄭哥兩班之威勢呈訴本官自本官捉來鄭哥則鄭哥偃處其家拒逆不就使其奴屬捉去渠身私自結縛更勿起訟爲言其在爲先之至情不可泯默特使本道卽刻掘移乞蒙天恩云矣鄭哥之肆然偸葬誠極痛駭而一邊之言不可偏信令本官嚴覈決處之意請分付道臣從之又啓言公州童蒙　李昌守上言以爲其父寓居本州而身死占得一葬之地於金履修先塋外靑龍三百五步之地履修兄弟領軍會葬矣昨年遭母喪合窆于父葬之際履修之子演淳忽稱先塋當禁之地呈訴掘移當初入葬之地果是金山當禁之地則履修兄弟何不禁斷今於二十年後始稱當禁云者其可成說乎乞蒙天恩令本官摘奸後依法典勿禁云矣金履修兄弟旣許入葬而到今履修之子欲禁合窆者事理不當而一邊之言有難取信更加詳査從公決處之意請分付道臣從之又啓言富平幼學鄭集祚上言以爲其祖故水使　翔周墳墓在於通津本府居權柱彦偸葬於山內白虎坐立俱見之地渠卽爲起訟則前府使　李觀賢置柱彦於落科捧掘移侇音非止一再頓無移葬之意乞蒙使之掘移云矣權柱彦之恣意偸葬已極無狀本道決處之後延拖三年終不移葬萬萬痛駭而一邊之言有難取信令本官摘奸公決之意請分付道臣從之又啓言**水原**童蒙　崔豊錫上言以爲其父墳山常漢偸葬之事呼籲於去年特命地方官從公決給矣地方官捉致訟隻掘去其葬龍尾後一冢尙不掘去云矣豊錫限內不爲現身請勿施從之又啓言咸興幼學朱光復上言以爲其十五代祖開國功臣安川君仁居在咸興仍葬於本府州東光復父故縣監　南述占置身後之地於先塋西麓養松處矣南述死於鎭川任所將爲營葬於所占處則山下北麓古冢遠孫朴大命等稱以其先山來龍聚黨作變故不能相爭權窆於他處呈于營本官立落未決之際朴哥潛斫古松五十餘株偸葬渠族三冢於其父所占處以山形言之其北麓下有朴冢而朴冢之上有中李姜金四冢則朴哥之越他姓廣占者已極非理五六年前朴哥與姜姓人接訟則其時道臣立案成給曰朱之始祖墓自有步數朴哥旣是無步數常漢則何敢越他冢廣占乎仍爲立案定界而渠又敢偸葬於其父所占處又況正卿墓九十步之內乎伏乞嚴査掘移云矣朱光復之先山養松之地營門定給界限況且重臣墓九十步內則朴哥之伐木偸葬極爲無據而一邊之言實難準信請令本官詳査決給之意分付道臣敎以開國勳臣體貌何如義安大君後孫山訟判付謄關該道非特此也故縣監　朱南述年前莫重之役其功不些其知如神以其功與知其所酬報之典豈止於一麾而作故之後每有收錄之意矣今見其子所訴訟理姑舍是使此家之人見屈於前道臣已決之案裹足千里呼籲駕側爲今日守令者若知朝家爲所重之誠意寧有是也當該判官爲先罷職仍令該府拿問處之其代明日政差出訟理則雖有前道臣題語有非自朝廷所可指揮者分付該道俾卽決給故縣監　朱南述之子亦令吏判招見身手草記又啓言定山幼學李錫祺上言以爲渠以開國功臣義安大君和之十四世孫屢代先塋在於尼城縣九皐山去壬子年分本縣居梁德暹營葬其父於錫祺之高祖贈大司憲　萬績之墳山來龍故往訴於本縣該縣監　韓世裕卽爲摘奸則乃爲八十步該縣監以爲八十步乃二品山法步之內也使德暹移壙而所謂移壙不過數武之內渠不勝冤枉往訴巡營則監司　李亨元以爲旣是法步定限之內又是來龍之地則係是當禁査實論報之意題送于山在官移訟于連山則該縣監　申在維以親厚德暹之故引嫌退訟移査於定山則該縣監　鄭亮采亦以推諉不當移訟於尼城則德暹自知理屈不爲就訟往在甲辰本縣居南建維偸葬其母於此山近處錫祺之兄錫民猥瀆天聽因判下辭意刑推建維不日掘去今此德暹乃敢犯葬乞蒙天恩卽爲掘移云矣果如上言辭緣則德暹各別嚴治斯速掘移之意請分付敎以本訟曲直之外以今道伯俾有此訟萬萬駭然枚擧判辭卽爲行會知所自勵而自贖又啓言西部居業儒李濂上言以爲渠父故忠州　牧使　憲鎭墓在於廣州大旺面渠父以一門從孫繼葬先山而去年九月渠遠族李度彬偸葬其父於渠父山穴前二十六步坐立俱見之地渠以居京之致未及禁斷起訟本州則自本州摘奸後使之掘去則度彬無意遷移又爲呈訴於巡營則營題亦爲嚴督掘移而度彬去益肆惡了無聽令乞蒙俯燭卽令掘移云矣李度彬以妖逆切姻乃敢偸葬其父於宗家墳山二十餘步當禁之地而營本官決處之後肆惡不掘者尤萬萬痛駭請令本道更加詳覈果如其言則各別嚴治卽刻督掘之意分付道臣從之又啓言西部幼學權▣上言以爲其先塋在於通津奉成面石灘里累百年禁養隣居李基一壬子四月偸葬其親山壓腦處呈訴本官捧侇音放送而至今拒逆云矣四五十步壓腦偸葬在法當禁請令道臣　別定査官更加嚴査公決之意分付從之又啓言陞戶砲手金太巾

上言以爲渠世居麟蹄移去楊口丙午年陞戶上京其先山之在麟蹄者使異姓八寸弟車萬輔守護禁伐昨年春欲爲移葬其高祖父母於主山內五十步之地同里李戒仁三昆李蔑視孤弱斫伐累百年長養之生松千餘株勒葬其父於其高祖營葬穿壙之地昨年十月呈于本官則不問曲直不見山圖直曰吾何知之待後官擧行云更呈所志則着枷牢囚呈議送到付則又不聽理云矣李戒仁之斫松勒葬萬萬痛惡本官之不爲聽理有何委折更加查實公明決處之意請分付道臣從之又啓言西部良人朴昌福上言以爲其父母墳山在楊州海東村入葬十餘年之久矣辛亥四月辛義哲以同里土班偸葬其妻於腦後咫尺之地本官摘奸營門嚴飭非止一再義哲視若尋常頓無掘移之意云矣請令本道詳查嚴督掘移事分付道臣從之又啓言楊州幼學洪馨萬上言以爲其五代祖故承旨遵墳墓在於豊德　西面中連里百餘年守護矣本邑李時哲　梁相哲兩人蔑其孤單咫尺單白虎之地偸賣於同里居常漢任贊玉處使之入葬故急投豊德起訟則未滿七十步矣贊玉自知理屈撤家逃避時哲　相哲以偸賣事納侘音昨年七月贊玉又爲繼葬故再往豊德萬端呼訴終不捉贊玉今在未決之中伏乞捕得贊玉使卽掘去以保先塋及位田畓云矣任贊玉之自知理屈隱避不現又乘洪哥之還歸暗地繼葬極爲痛駭請令本官捉致對卞卽爲督掘之意分付道臣從之又啓言長湍幼學權伊上言以爲其十一代祖故佐郎　溫十代祖故副正　旭兩代冢墓在於長湍長西面世世守護四百年之久矣庚戌年土人朴光嫺偸葬其父於其先塋單案對沖之地故卽爲呈官落訟使之督掘則延拖不掘更呈營門捧侘音督掘而專事規避壬子年欺罔天聽營題內旣有移窆之意又作登聞之擧者極爲痛駭刑推一次懲礪則渠忽逃躲終不掘移爲言矣朴哥見落之後又敢猥越天聽至有營門之嚴刑懲治而尙今遷就有此更籲極涉痛駭請令本官詳細摘奸從公決處之意分付道臣從之又啓言金海生員許大熙上言以爲其母墳上年九月移葬於本府生林面羅田里矣密陽居申國賓等謂以渠之先山近處誣呈本府尺量圖形則來龍各異圖局又別步數至於百步之遠其間又有金龐之冢蓋金龐去乙未年與國賓爭訟至於擊鼓判下落訟立案尙存況其母墳在於金龐之冢白虎外則自當不掘而摘奸座首曹尙文與國賓爲姻族瞞告本官仍爲落訟嚴囚其同生使之掘移云矣更加摘奸從公決處之意請分付道臣從之又啓言安東幼學李儒默上言以爲其九世祖韓山都正挺卽我獻陵曾孫而入於故判書　文忠公金宗直黨籍七父子同日被禍逮我中宗改玉之後卽爲伸冤仍賜冢地於楊州　佛巖山下別非谷其後遂爲世葬之所前年九月來到山下則京居前注書　洪樂安偸葬其母於其四世墳山十步五步之間卽訴本官則牧使　李東馨卽使對卞而三次拒逆徑訴巡營貼呈該邑該牧使論報營門曰李儒默之先祖被禍於戊午爲世名家況其衣冠之藏別是恩賜之地則縱因殘孫之流落以致冒犯入葬立落較然而洪家係是朝官不爲應訟云云巡營題音亦以詳查決處爲言而終不對卞其他數步內偸埋者亦爲一體掘去云矣其所稱冤不是異事更加摘奸從公決處之意請分付道臣從之又啓言西部良人崔泰光上言以爲三十年前葬其父於驪州登新面矣本州居宋姓兩班藉其土豪之勢廣占家基於其父墳階砌下故宋生以爲造家山下不害爲守墓云故不欲見忤許令作家矣再昨年十月其父墳腦後咫尺之地割賣於李姓兩班使之入葬渠之至親數三人聞知往責則結縛毆打懸於高樹抑勒以窆以此呈于本州題辭內造舍而賣他山無異於借舍廊而入正室查實嚴處次對卞云云往示題辭則反加咆喝又訴本州少無應訟之意昨秋伐草次下往則奪鎌驅逐使不得接足云矣宋哥之初以造家誘說割賣山地及其禁斷毆打懸樹抑勒入葬者誠極駭然起訟之後亦不應卞萬萬痛惡請令本道嚴覈卽速掘移之意分付道臣從之又啓言平壤金召史上言以爲其舅家田四日半耕在於本府秋菀美朴哥島而庚子大漲田入於浦落陳耕虛卜應役者六十餘年矣辛丑年壞落之田浸浸還起本府居朱一良欺侮孤弱假稱田主符同金元明詐作斥賣於元明之文記捧價百兩轉賣於趙明月處故呈本官呈備局皆得決題甲辰年幸以得決而一良以還給之意納侘音渠出錢五十兩墾土作農矣一良等不有官決仍爲勒奪一良之子處正落訟於本官成給手記族卽背約云矣前後文券旣在於金女且是六十餘年納稅之地則其爲本主已無可論朱一良等之勒奪不給者誠極無狀請令本道詳查決給從之又啓言林川幼學李煒上言以爲其母葬在於本郡而當初入葬時山下權震衡　權以成等稱以渠山局內欲爲禁葬震衡則呈官落訟以成則許葬之意成給手記安葬者今爲三十餘年之久上年十一月繼葬其妻則以成之子東彥　震衡之子

尙彥夜掘其母冢曳柩轉厓橫帶外棺片片破碎天板隅板亦爲被斫至於犯屍故呈官報營畢竟照律止於尙彥而定配道內報恩云矣果如所訴則權哥之斧斫人柩固萬萬驚駭而至若犯及屍體係是極罪該道之勘律止於道內定配者事甚訝惑而一邊之言有難準信請令道臣親執詳查狀聞稟處年前以私掘事飭禁極其嚴截至有更以私掘事登諸入啓文字則道臣守令當依判下處之之敎此雖與道臣 登徹有異初未禁戢於未然之前又未嚴處於已犯之後誠極未安該道臣守令請幷從重推考從之又啓言交河喪人申師權上言以爲渠之累代先塋在於本郡而九代祖郡守用灌卽故相用漑之兄也正德己卯始葬之後子孫連爲繼葬使墓直次知祭位田畓守護禁養者至于數百年渠以零丁早孤漂泊于海西矣丁酉年間始來省掃則墓下居僉漢天輩瞰其子孫之無肆然偸埋者至于六冢而或壓龍尾或犯階砌殘夷封築便作平地驅逐墓直盜奪位田石人床石轉仆埋之碑文碣字剝琢滅之故卽呈本官掘其三冢更呈巡營纔掘一冢其餘二冢尙未掘去傳來墓位亦未推還特命本道僉漢天嚴刑囚禁督掘二冢床石及墓位畓如數推還事乞蒙天恩云矣申師權所占山地旣是數百年守護繼葬之地則 僉漢天之壓龍尾而偸葬埋碑碣奪位畓者極爲無狀六冢內四冢旣掘二冢之尙不掘去其所稱冤事勢固然請令本道詳查公決敎以前此判下何如則又復煩籲者必由於彼隻頑拒之致揆以國綱萬萬駭然嚴飭道臣指一決處俾無更訴之弊○吏曹啓言西部居閑良宋光祿上言以爲渠父嘉義漢輝以今年八十三歲首得蒙加資之典且與其母偕老而以已蒙加資更不錄啓於偕老老人秩願蒙夫人帖之典云旣已偕老而未受夫人帖不無稱冤之端請令該府詳考帳籍後擧行敎以夫旣加資於歲首年爲八十三則其妻年歲寧有冒稱之理乎設令後娶七十八十以後亦豈有嫁娶之擧乎卿之持疑可謂理會不得卿則推考今政下批又啓言西部居將仕郎朴履行上言以爲渠父前典獄主簿 象器年今七十一歲矣今年邦慶當以朝官年七十以上依例加資而見漏於該府抄出中願蒙加資之典云朴象器旣是朝官年過七十而見漏於一視之澤則其所呼籲不無所據似當施以加資之典請上裁從之敎以今政下批又啓言春川居良人崔貞大 瑞山居幼學 鄭沆 藍浦居幼學安墩等上言以爲崔貞大父同知 耆耋年八十六其母年八十七今當回婚之年願蒙加資之典鄭沆父幼學鎭僑年今八十三歲與其母偕老願蒙加資之典安墩父幼學廷最今年七十其母今年七十二願蒙加資之典云偕老老人加資已有下敎自本道必當狀聞請姑待報來擧行敎以必當狀聞爲言如不狀聞其將勿論乎幷與查問而不請者極爲駭然卿則從重推考詳考京兆帳籍如不相左今夜內下批又啓言全州居忠義金夏鼎上言以爲渠父嘉善聲徹今年八十七歲願蒙加資之典云年歲已滿應資請姑俟狀聞後擧行敎以姑俟太泄泄反不如關問之爲請取考帳籍如或不差今夜內下批卿則推考又啓言聞慶居童蒙 禹大圭上言以爲渠祖禹興今年一百有一而庚戌年邦慶時以帳籍之相左未免見漏則今年邑抄亦難保其必爲令該曹詳考帳籍後願蒙加資之典云禹興之年過百歲而尙未蒙一資者必有委折請令道臣詳考狀聞後稟處敎以百歲老人之尙漏推恩其可成說乎問于本道自當稽滯老人事有未可知卿之回啓問于本道云者殊非前此判下之意卿則推考今夜內取考京兆帳籍屢式不差卽爲下批面給其子孫下送又啓言鎭安居幼學張日三上言以爲渠祖同知汝群今年百有一歲許畀一職之銜云百歲老人之直超崇政旣有已例似當許施而年歲之過百與否以渠呼籲有難準信請令該道詳查狀聞後稟處敎以以百歲老人回啓事才有問備之擧而此回啓又請關問京兆帳籍將用於何處乎卿則推考取考帳籍如或不差今夜內下批去臘享日以後每夜酬應卿當聞知今以卿等之不能擧職又將徹夜乎兩銓擧行若或遲滯卿等難免重勘以此知悉又啓言楊州居幼學朴鳳謨上言以爲渠母今年恰滿九十願蒙封爵之典云本道之不爲抄啓於歲首必有委折請更爲詳查狀聞後稟處敎以何必遠問該道須卽近考京兆今夜內下批卿則推考又啓言松禾居幼學姜處文 狼川居幼學金繼喆 松禾居幼學韓宗益 韓箕亨等上言以爲姜處文父鳳獜今年八十六金繼喆父光悅今年九十二韓宗益父僉知瀜今年八十六韓箕亨祖就翊今年九十五竝願蒙加資與三代追榮云年歲已滿應資之年此則姑待本道狀聞後擧行而至於三代追榮則未經實職今非可論請置之敎以姑待云云稽忽一也卿則推考取考京籍今夜內下批追榮一款問于本道狀聞後擧行又啓言山淸幼學沈師大 富平幼學元卿翼 利川幼學金重禧 樂安幼學姜興周 興陽幼學韓光德 靈光幼學金象華 抱川幼學李鼎億 洪聖文 順天

幼學李彥信　金川幼學金德實　全州幼學洪仁東等上言以爲沈師大父同知渡舟元卿翼父同知　聖輝金重禧父同知 時興 姜興周父 同知 渭泰 韓光德父同知 漢周 金象華父同知 守旭 李鼎德父同知 春茂 洪聖文父同知 正九 李彥信父同知 暹 金德實父同知 得聲 洪仁東父同知 漢相俱以單付同知願蒙追榮之典云班族單付同知之三代追榮已因道啓俱爲擧行則今此呼籲必是非班族冀僥倖之計極甚猥越請置之敎以班族與否何以臆決不請查問直曰勿施此果同慶之意乎卿則推考問于該道使卽狀聞後下批又啓言北部居良人羅翼盛上言以爲渠父內弓房弓人允福入屬於弓人前後效勞爲二十年造進弓數已滿千張依前弓人崔泰崙 李重蕃等例願蒙加資之典云內弓房弓人服役二十年造弓千張者帖加成給旣有定式矣問于內弓房則羅允福果是內弓房所屬而服役爲二十年造弓恰滿千餘張云似當施以帖加成給之典請上裁敎以千張帖加雖有古例問于內弓房云者是豈成說乎卿鄕則爲先從重推考此後則勿復如是自今定式知弓品堂上各於弓人名下載錄造弓數爻報于兵曹 兵曹錄置過千張使當者來告兵判 兵判取考成册及知弓品堂上啓下單子如果不差草記論賞今番則爲先令兵判招問各人取考啓單後草記因此而又有定式者知弓品堂上之入坐內弓房挽弓等第者亦非嚴內外之意此後坐於兵曹與入直堂郎眼同擧行事分付〇戶曹啓言務安幼學丁相烈上言以爲渠之父年九十母年八十庚戌辛亥已蒙同樞追榮之恩而家世至窮乞得斗水之惠以爲父母之養云渠之父母旣以壽職屢蒙加資追榮之恩歲初又有夫妻偕老人加給歲饌之命該道必當奉朝令擧行遐土小民敢以此等無嚴之說至煩天聽民習痛駭上言勿施其罪狀請令道臣各別懲治敎以渠何足責當初政院之抄下難免不審啓下則爻周當該承旨推考狀者嚴飭下送近百歲老人之偕老者俾不至不飢不寒守令之罪也分付道臣特念及老之義道內九十以上近百歲老人之貧不能自辦菽水者豈比於遺棄兒乎多給米斗後錄狀聞諸道一體分付〇禮曹啓言中部童蒙　李英上言以爲其五代祖贈吏判信瑄卽延祐宮　靖嬪自家之祖也渠以直派奉祀靖嬪父母祠宇李長玉奉祀無後渠又奉祀而貧窶無家不無闕祀之歎伏乞得賴永享云矣非但事係干恩亦無指的陳請今姑置之敎以爵號誤書原上言誤書何可循例回啓卿則爲先從重推考渠固不足責而所訴亦不可恝視令兵曹先付一內一窠俾得習射霑祿之地又啓言忠淸道幼學李鎭中等上言以爲故巡邊使　李贇壬辰功勳請施易名之典云矣李贇之忠義勳勞卓卓可紀貤贈之典亦爲正卿之秩而若以贈秩而直請易名則有違法例請置之從之又啓言京畿儒生李智錫等上言以爲砥平故士人梁梈孝行卓異去壬寅年道臣　李亨逵狀聞而尙未蒙褒賞之典請依例旌褒云矣果八於道臣狀聞中則施以棹楔之典恐未太過而事係恩典請上裁敎以議于大臣稟處又啓言李智錫等上言議于大臣領議政　洪樂性病未獻議左議政　金履素　右議政　金憙俱以爲梁梈孝行卓異贈以顯職恐爲稱停云矣請上裁敎以依大臣議施以贈職之典又啓言仁川幼學申在年上言以爲其祖故學生光斗孝行請施旌表之典溫陽幼學南汲等上言以爲本郡故士人姜濟身及其妻李氏孝烈請施旌閭之典彥陽幼學金玉亨等上言以爲本縣　僉知　孔大緝孝行請施褒美之典云矣孝烈若是卓異則該道臣自當採取登聞依新定式請姑置之自臣曺關飭該道可以登聞者則使之待歲首擧行竝從之又啓言興陽幼學姜必齊上言以爲本縣故孝子贈主簿 張命周其妻黃氏俱以孝行去癸卯年道臣 朴祐源博採輿誦狀聞命周則已蒙贈職黃氏則未蒙褒尙請施棹楔之典云矣果入於狀聞中而一施一否實爲欠典施以旌閭之典恐非太過事係恩典請上裁敎以議于大臣稟處又啓言姜必齊上言議于大臣則領議政洪樂性病未獻議左議政　金履素　右議政　金憙俱以爲旌閭事體不輕施以給復之典恐爲的當云矣請上裁敎以依大臣議施行又啓言京畿　忠淸兩道幼學金致鳳等上言以爲故士人閔徽繼忠孝請施旌褒之典云矣事係久遠有難輕議請令道臣更摭實蹟待歲首狀聞後稟處從之又啓言果川幼學申周權等上言以爲故忠毅公崔夢亮請追配於灣府　忠烈祠事乞令該曹稟處矣崔夢亮以義州　判官殉節於丁卯之難已蒙朝家褒尙之典而至於灣上祠宇之追配事係不輕且關恩典不可遽議請置之從之又啓言淸州進士李顯文等上言以爲槐山故主簿　申光燮妻李氏爲父碎指爲舅吹癰爲夫矢死之跡非特一善一能之比乞施褒尙云矣李氏孝烈若是卓異則該道臣自當採取登聞依新頒定式今姑置之請自臣曺關飭該道可以登聞者則使之待歲首擧行從之又啓言全羅道幼學金宗信等上言以爲故縣監

宋悌故府使 宋德馹及宋悌妻具氏忠烈請蒙旌褒矣宋悌夫妻叔姪之二忠一烈旣有徵信文字尙未蒙旌褒之典實爲欠典而不可遽然許施請令道臣採取公議狀聞稟處從之又啓言慶尙道內幼學朴世杓等上言以爲密陽士人金夏鼎與其妻朴氏事父母盡孝父母有疾同嘗父糞同吹母癰乞蒙特施旌褒云矣金夏鼎與妻朴氏孝行若是卓異則該道臣自當採取登聞依新頒定式今姑置之請自臣曺關飭該道可合登聞者則使之待歲首擧行從之又啓言通津幼學孔常仁等上言以爲在丙子之亂本府校宮齋任李胤 金啓楠二人擔負先聖位版避亂奉安於文殊山城而平定後還安舊殿尙未蒙褒功之典其子孫亦不免賤役依太學 富平償功褒善之典乞蒙天恩云矣李胤金啓楠等倉卒之際擔負先聖位版還奉舊殿者雖甚嘉尙而久遠之事有難徵信請令該道臣詳考實蹟後其子孫之名編賤役者分金健恒付頉給從之又啓言慶州幼學等上言以爲渠之始祖敬順王殿宇建在月城府東琴鶴山下山勢岌嶪每値遼水沙石崩汰幾致祠屋之頹壓一依崇德殿改建前例俾得移建事乞蒙天恩云矣殿宇妥侑之所果有頹圮之慮則許令趁早移建恐無不可而事體重大有難輕許請令道臣分付本州審察形止後狀聞以爲稟處之地敎以當令道伯春巡時與地方官眼同看審狀聞後稟處爲請而回啓措語未免草率卿則推考令道臣親審後具意見論理狀聞事分付又啓言濟州幼學高鳳禎上言以爲本州校宇還移舊基亦爲分齋事呼籲矣鄕校移建事體重大且有禁令至於分齋之請亦涉猥越請置之從之又啓言南部 司譯院前銜朴明垕上言以爲孝廟朝御製御筆寶藏私室已多年所許令奉入云矣宸藻寶墨落在人間者從古有之則陳請奉入事涉干恩請置之從之又啓言淸州幼學金普淵上言以爲渠身老而無子同姓六寸弟復淵第二子能大乞爲立後則復淵只以愛子之偏情不肯許給請令該曹稟處矣凡繼後之法彼此俱從情願而生家如或不許則有難勒定復淵以同堂之親坐視其絕嗣不肯許與者乃是人情之外似當許施而事係人倫重事請上裁從之又啓言南部故學生曺世根妻金氏上言以爲其家翁不幸早死未有嗣續家翁同姓八寸兄翼振有子四人取其第三子老吉欲爲立後而翼振夫妻俱沒無處可受不得循例呈狀乞令該曹稟處矣請老吉特許立後從之又啓言昌平幼學梁濟仁上言以爲其堂姪會椻以累代宗孫嫡妾俱無子其再從兄會福第三子又壽方欲繼後而父母俱沒不得循例呈狀爲言矣父母俱無事當勿施而此等人特許立後旣有受敎請令立後從之又啓言忠州幼學金濟勳上言以爲其同姓七寸姪致敬以累代奉祀之人嫡妾俱無子其二十二寸弟致大第五子應達欲爲立後而父母俱沒不得循例呈狀爲言矣事當勿施而旣有受敎請令立後從之又啓言義城幼學 李元發上言以爲渠之同姓六寸弟聲運以累代奉祀之人嫡妾俱無子身死故渠之第二子八福欲爲立後而聲運夫妻俱歿受者無人不得循例呈狀乞令該曹稟處矣一邊父母俱無事當勿施而旣有受敎請八福特爲立後從之又啓言高陽幼學李郁權上言以爲其外祖梁斗瑞嫡妾俱無子與梁家門長議以斗瑞同姓二十六寸弟處廈第三子亨裕欲爲立後而夫妻俱歿不得循例禮斜爲言矣此等人特許立後旣有受敎請特爲立後從之又啓言淸州前部將 奉致珪上言以爲其十一世祖故兵判靖難功臣江城君石柱以正卿勳臣當有贈諡之典而其家散落又爲絕祀勳臣立嫡與他自別易名立嗣兩項事請令稟處爲言矣易名之請似當許施而係干恩典請上裁至於立嗣雖無指的勳臣奉祀自別請使其門長指名呈單更爲稟處從之又啓言鎭川故學生愼汝復妻李氏上言以爲家翁不幸身死同姓四寸兄汝德有二子請其中一人定爲後萬端哀乞而汝德妻韓氏以貧窮之致堅執不許爲言矣繼後之法彼此俱從情願有難勒定而汝德以同堂之親旣有二子不肯許與乃是人情之外一子似當許施而旣無指名使其門長請指名呈單後稟處從之又啓言北部幼學李澤鎭上言以爲其十二代祖故領議政 文景公稷兩朝元勳朝家特命不祧至于渠身香火不絕有獨子右源不幸身死而無子先祖子孫中故都正奎徽之孫重源有子四人以第三子曾乙定爲其亡子右源之後事萬端哀乞而重源不諾有此呼籲矣重源雖曰支派同是後孫則許與一子以奉不祧之祀似合事宜請上裁從之又啓言楊州幼學朴光愼上言以爲其十二代祖平陽府院君文肅公錫命七世孫繼胄無後請以其再從姪世珍定爲奉祀云矣勳臣不遷之位不可絕嗣請令立後從之又啓言呂州幼學宋光鎭上言以爲其伯父夏相早歿無子以渠繼後其生父夏亨收養其堂姪常鎭未及禮斜而夏亨及常鎭作故請如例成出禮斜云矣常鎭雖是生前收養而死後追出有違常格請勿施從之又啓言淸州幼學李萬根上言以爲其九代祖

錦城大君瑜奉祀孫禧元夭逝旁祖安平大君瑢之祀已有合祭一祠之成命而錦城奉祀宗中收議以禧元父 文奎生家兄益奎第二子祉元繼爲文奎之子以奉大君祀安平之祀雖以祉元繼定難奉兩大君之祀故以文奎之從第東奎擇奉安平祀爲言矣大君奉祀依所請以祉元爲後至於安平之祀旣有合祭之成命則分奉之請事涉未安請勿施從之又啓言衿川幼學吳彦長上言以爲渠外九代祖全城君 李翰元九世孫彦謙不幸無後請以宗人李漢秀第二子光普爲奉祀孫云矣全城君旣是勳臣不可絕嗣請依所請立案成給從之○兵曹啓言沔川幼學李永祿上言以爲其祖東馨今年一百八歲陞至資憲而已蒙同樞追榮之典其父廷卨今年八十一歲矣其祖特授實職事乞蒙天恩云矣李東馨之一百八歲其子廷卨之八十一歲父子年紀殆近二百尤係希有而第毋論文蔭武未經四品實職則不得許知事自是政例此則無以擬議而至於百歲人超秩自有近例一體許施恐合事宜廷卨年旣八十一則本道自當據實狀聞待其來到稟處之意請分付吏曹又啓言靈光幼學李興錫 昌平幼學李敬五 潭陽幼學朴泰疇 江陵幼學許泳等上言以爲興錫父春曄今年九十九歲敬五父胄益今年九十三歲泰嫾父台彬今年九十一歲皆於庚戌邦慶時爲折衝僉知辛亥只陞嘉善未蒙實職及追榮之典亟令該曹付同樞實銜仍爲追榮事乞蒙天恩云矣各人等俱是庚戌邦慶時以老職加資之人其時獨未蒙同樞之或單付或望擬必是見漏之致況以其呈納戶籍及情願觀之其年紀之望百夫妻之偕老明白無疑其在優老之道宜有均施之典幷依他例單付同樞之御仍令東銓考出京兆帳籍許令推恩恐合事宜請上裁敎以所訴俱非猥越實職之獨漏追榮之均施足爲稱屈亦當從願皆令今日政與吏曹卽爲下批又啓言麻田幼學安鳳祥上言以爲渠之老父今年爲九十二歲而庚戌年特蒙恩典嘉善陞資而未經實職矣昨年九月得伏聞傳敎下者班族之庚戌加資陞至嘉善而未經實職者行會各邑受單狀聞而渠以己卯名賢左議政 琠之後見漏於狀聞中伏乞特降一體恩典事 得蒙天恩又啓言安鳳祥限內不現身不書其父名字請勿施從之又啓言南部良人文性全上言以爲其父瑞圭辛亥年與同任書吏張雲成均廳米移納罪俱被重刑雲成定配長興其父爲奴定配於固城而雲成旣蒙放釋乞蒙一視之澤云矣當初判付至有虐民射利蟊賊貢人文哥甚於張哥之敎則雲成之蒙放已是特恩今此瑞圭之子又以同罪請放極其無嚴請置之敎以官不許施吏何容好此所以該郎勿擬守令者也當此大霈不可一放一仍特爲放送更勿接跡於該廳事分付○刑曹啓言順天幼學金麗興上言以爲其子昌允橫被殺獄乞令更查俾得生路云矣金昌允之縛打囊丹竟至致命實因詞證俱爲明的昨冬審理道臣以同推爲請臣曺亦以嚴訊取服覆啓蒙允曾未數朔使其父變幻事實肆然號籲者極涉放恣請勿施照律勘處從之又啓言公州 禁衛軍趙永達上言以爲其祖母時今本以燕歧案付內婢漏落居生矣丁丑推刷時朴世長 金振禹等以陳告漏落內奴婢之功時今及一所生奴丁淑二所生婢古邑丁三所生奴丁云四所生婢順丹五所生奴丁泰六所生奴丁巾等七口依法典受賞後御覽都案中懸頉隨行良役者三十餘年之久矣庚戌年分忽自燕歧官推捉丁泰謂以內奴婢還錄時今之內外子孫督納貢錢故啓下贖劵及掌隷院補充隊本曹斜給文案現納則歸之不分明竝奪官上云矣果如上言內辭意則其所稱冤不是異事卽爲査實從速頉給事請分付道臣敎以年前古阜事處分何如則又敢有此法外之擧乎誠如所訴萬萬痛駭其勒徵委折令道伯親執嚴査狀聞又啓言鳳山幼學朴春發上言以爲其父宗世爲洪吾乙 金之鐵鞭打殺至今三年未復父讎卽爲償命云矣此獄該道纔已錄啓本曹而將回啓則復讎之請雖出至情呼籲之擧亦涉徑遽請今姑置之從之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5일(계묘)

강수원 유수(水原留守) 이명식(李命植)이, 김흥손(金興孫)의 상언은 해당 도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충국(張忠國) 등의 상언은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급히 장계하였다.

목○ 수원 유수의 장계에, "원소(園所)를 행행할 때에 목천(木川)의 동몽(童蒙) 김흥손이 아비가 심복영(沈福永)에게 구타당하여 그대로 죽게 된 일[87]로 상언한 데 대한 판부에, 해

당 도에 분부해서 상세히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온 뒤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문을 해당 도에 보내 상세히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였고 김흥손 또한 해당 도에 보냈습니다. 충주(忠州)의 안재득(安載得)이 전답에 관한 일과 자기 아비를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로 상언한 데 대한 판부에, 해당 도로 하여금 조사하여 처리하게 해서 다시 호소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청안(淸安)의 장충국이 족형(族兄) 장문환(張文煥)의 둘째 아들 장익방(張翊邦)을 양자로 삼게 해 달라는 일로 상언한 데 대한 판부에, 분부하여 내린 상언을 해당 조에 올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안재득과 장충국을 읍 주변에서 찾아내어 물었더니 일정하게 머물러 사는 곳이 없었고, 상언한 지 3일이 지났는데도 현신(現身)하지 않는 경우는 들어주지 않는 것이 원래 법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상언은 모두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충청 감사 이형원(李亨元)의 장계에, "**수원 유수**가 보내온 공문을 보건대, 목천 김흥손의 상언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서 장계로 보고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심복영은, 김본이(金本伊)가 말쌀을 빌려 주지 않고 말을 불손하게 하는 것에 격분하여 가래를 들어다가 때려서 그날로 목숨을 잃게 하였습니다. 신문(顖門 숫구멍)의 골절이 바로 즉사한 형증(形症)이니, 비록 확정할 만한 공증(公症)은 없지만 심복영이 정범(正犯)인 것은 지난번에 심리(審理)하고서 장계를 작성하여 올렸을 때에 이미 의견을 갖추어 조목조목 나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조정에서 회답하는 처분을 받들지 못했으니 지금은 더 이상 조사할 단서가 없습니다." 하였다.

강 **水原留守** 李命植以金興孫上言令該道詳查狀聞張忠國等上言勿施馳啓

목該留守狀啓以爲園所幸行時木川 童蒙 金興孫以其父被打於沈福永仍爲致死事上言判付內分付該道詳查狀聞後稟處矣移關該道使之詳查狀聞金興孫亦爲起送該道忠州 安載得以田畓事爲其父訟冤事上言判付內令該道査處俾無更訴之弊淸安張忠國以其族兄文煥之第二子翊邦爲養子事上言判付內分付狀者呈于該曹事分付矣載得忠國搜問邑底無住接處上言之過三日不爲現身者勿施自是法典請二人上言一竝勿施敎以依狀請施行○忠淸監司 李亨元狀啓因**水原留守**移文木川 金興孫上言有詳查狀聞之命矣沈福永逞憤於金本伊之靳貸租斗不遜語言擧鍤撞打當日致命而▣門骨折卽速死之形症雖無公症可定福永之正犯向於審理修啓時已爲具意見條列姑未承回下處分今無更查之端

정조 18년 갑인 (1794, 건륭59) 1월 15일(계묘)

강입직

목검교직각 정대용(鄭大容)

검서관 박제가(朴齊家)

87) 아비가 …… 일 : 심복영(沈福永)의 옥사를 말한다. 이 옥사는 심복영이 김본이(金本伊)가 벼를 대여해 주지 않는 데에 성이 나서 가래로 때려 그날로 죽게 한 사건으로, 임자년(1792) 9월에 옥사가 성립되었다. 《국역 심리록 4 제24권 갑인년 충청도》

제7차 1795년(정조 19) 윤2월 9일~16일(7박 8일)

1. 조선왕조실록

정치/왕실

혜경궁을 모시고 현륭원에 행행하다

상이 **혜경궁**(**惠慶宮**)을 모시고 **현륭원**(**顯隆園**)에 행행하였는데, 두 군주(郡主)5806) 가 따라갔다.

○辛卯/上陪**惠慶宮**, 幸**顯隆園**, 兩郡主從焉.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9일(신묘) 1번째기사>

정치/왕실

용양 봉저정에서 점심을 들고 시흥의 행궁에서 유숙하다

용양(龍驤) 봉저정(鳳翥亭)에서 잠시 머물러 점심 수라를 들고, 시흥(始興)의 행궁(行宮)에서 유숙하였다. 예조 판서를 보내어 공자(孔子)의 영전(影殿)에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게 하였다.

○晝停于**龍驤鳳翥亭**, 駕宿始興行宮. 遣宗伯, 行酌獻禮于夫子影殿.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9일(신묘) 2번째기사>

각신, 승지 등을 나누어 보내 민회묘와 연령군 등의 묘소에 제사를 올리게 하다

각신(閣臣)·승지·사관·종신(宗臣)·재신(宰臣)·무신을 나누어 보내, 민회 묘(愍懷墓)와 연령군(延齡君)·명빈(褓嬪)·양녕 대군(讓寧大君)·후령군(厚寧君)·수천군(秀川君)·청기군(靑杞君)·함천군(咸川君)·창원군(昌原君)·덕진군(德津君)의 묘소 및 김간(金幹)의 묘, 그리고 충현 서원(忠賢書院)·매곡 서원(梅谷書院)·명고 서원(明皐書院)과 청해백(靑海伯)의 사당 및 **팔달산**(**八達山**) 처사(處士)의 묘에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分遣閣臣承旨·史官·宗臣·宰臣·武臣, 致祭于愍懷墓延齡君·褓嬪·讓寧大君·厚寧·秀川·靑杞·咸川·昌原·德津君墓及金幹墓·忠賢·梅谷·明皐書院·靑海伯祠宇·**八達山**處士墓.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9일(신묘) 3번째기사>

정치/행정

시흥 현령 홍경후에게 3품의 직책을 제수하라고 명하다

시흥 현령(始興縣令) 홍경후(洪景厚)에게 3품(品)의 직책을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命始興縣令洪景厚三品職除授.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9일(신묘) 4번째기사>

화성/원행

사근의 행궁에서 점심을 들고 화성의 행궁에 머물렀는데 비온 것을 기뻐하다

사근(肆勤)의 행궁에서 잠시 머물러 점심 수라를 들고 화성(華城)의 행궁에 머물렀다. 이날 비가 왔는데, 험한 길이 나오기만 하면 상이 번번이 말에서 내려 자궁(慈宮)의 가마 앞으로

나아가 안부를 묻곤 하면서 옷이 비에 젖는 줄도 깨닫지 못하였다. 저녁 때 **유여택(維與宅)**의 집에 머물렀는데, 시신(侍臣)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오늘 온 비에 군병들의 옷이 젖은 것은 민망한 일이다마는, 이번의 행차야말로 지극히 성대한 거조이고 이 예(禮)야말로 크나큰 의절(儀節)이니, 일마다 완전히 원만하게 되기만을 구할 필요는 없다. 잠깐 비가 왔다가 바로 개면서 앞길을 깨끗이 청소해 주었으니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더구나 농삿일이 시작될 즈음에 토지를 적셔 주었으니 어찌 농부에게 기쁜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壬辰/晝停于**肆覲行宮**, 駕次**華城行宮**. 是日雨, 凡遇路險處, 上輒下馬, 進慈宮駕轎前問候, 不覺御衣之沾濕. 夕次**維與宅**, 顧謂侍臣曰: "今日之雨, 軍兵沾濕雖悶, 此行至盛擧也, 是禮大儀節也, 事事不必求十分圓滿. 乍雨旋晴, 以淸蹕路, 庸何傷乎? 況田事將始, 畦塍霑潤, 豈非農夫之慶耶?"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윤2월 10일(임진) 1번째기사>

화성/원행

화성의 성묘를 참배하고 사서 삼경 및 노비를 내려주다

화성(華城)의 성묘(聖廟)를 참배하고 새로 간행한 사서(四書) 삼경(三經) 및 노비를 내려주었다.

○癸巳/謁**華城**聖廟, 賜新印四書三經及臧獲.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윤2월 11일(계사) 1번째기사>

문화/사상

우화관에서 선비를 시취하고 낙남헌에서 무관을 시취하다

우화관(于華觀)에서 선비를 시취(試取)하고 **낙남헌(洛南軒)**에서 무관을 시취하였다. 이어 친림(親臨)한 자리에서 급제자를 발표하였는데, 문인 중에서는 최지성(崔之聖) 등 5인을 뽑고 무인 중에서는 김관(金寬) 등 56인을 뽑았다.

○試士于**于華觀**, 試武于**洛南軒**. 仍臨軒唱第, 文取崔之聖等五人, 武取金寬等五十六人.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1일(계사) 2번째기사>

화성/원행

현륭원에 참배하고 성조와 야조를 살펴본 뒤 화성의 축성공사에 대해 하교하다

상이 **혜경궁(惠慶宮)**을 모시고 **현륭원(顯隆園)**에 나아가 참배하는 예식을 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화성 서쪽의 장대(將臺)에 올라 성조(城操)와 야조(夜操)를 살펴보았다**. 어제(御製)로 오언(五言)의 4운(韻) 율시(律詩)를 내리고 신하들에게 화답하는 시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 하교하기를, "**화성의 축성 공사를 착수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국가의 재정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는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지난 겨울 이후에 또한 당분간은 서서히 하면서 재물을 모은 뒤에 다시 시작하려 했던 것도 모두가 스스로 생각해서 중도에 맞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남쪽과 북쪽의 성루(城樓) 및 수각(水閣)·장대(將臺) 등을 보건대 날아갈 듯 아름답고 깍아지른 듯 가파르게 잘 쌓았으니, 어찌 삼보(三輔)의 중요한 요새지만 될 뿐이겠는가.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비석을 세워 사실을 기록하고 공사를 감독한 여러 사람들의 성명을 나열해 써서 만년토록 역사 속에 기억되도록 하라." 하였다.

○甲午/上陪**惠慶宮**, 詣**顯隆園**, 行展拜禮, 還御**華城西將臺**, 閱城操·夜操. 下御製五言四韻律, 命諸臣賡進. 敎曰: "**華城城役**之決意築斯, 其費不煩於經用, 昨冬以後之亦欲姑徐, 而鳩財復始者, 皆自以爲秤錘中出來, 而今行見南北城樓·水閣·將臺等處, 翬飛輪奐, 雉譙崢嶸, 豈特三輔關防之重? 稍待事功之告竣, 竪碑記其實, 列書董功諸人姓名, 以爲萬年不朽之資."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2일(갑오) 1번째기사>

정치/왕실

봉수당에 나아가 혜경궁을 위해 연회를 베풀다

봉수당(**奉壽堂**)에 나아가 **혜경궁**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하루 전에 상침(尙寢)이 소속 인원을 이끌고서, 자궁(慈宮)의 자리를 행궁(行宮)의 내전(內殿) 북쪽 벽에 남쪽으로 향하게 설치하고, 인안(印案)을 자리 동쪽에 설치하고 향안(香案) 두 개를 앞 기둥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자궁의 자리 동쪽에 어좌(御座)를 설치하고, 섬돌 위에 북쪽을 향하게 배위(拜位)를 설치하고, 내전 안쪽 한중앙에 북쪽을 향해서 욕위(褥位)를 설치하였다.

전찬(典贊)이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의 시위(侍位)를 앞 기둥의 발[簾] 안쪽에 북쪽을 위로 해서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고, 배위(拜位)를 내전의 앞쪽 오른편과 왼편에 설치하고, 외위(外位)를 뜰 중앙에 설치하였는데 모두 북쪽을 향하고 서로 대칭되게 하였다. 또 의빈(儀賓)과 척신(戚臣)의 시위(侍位)를 앞 기둥의 발 바깥쪽 좌우에 설치하였는데 북쪽을 위로 해서 서로 마주보게 하였으며, 배위(拜位)를 내전의 앞쪽 좌우에 설치하면서 북쪽을 위로 하고 서로 대칭되게 하였다.

전의(典儀)가 모시고 따라온 백관들에게 음식상을 차려 줄 자리를 **중양문**(**中陽門**) 밖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였는데 북쪽을 위로 하고 서로 마주보게 하였으며, 배위(拜位)를 길의 서쪽에 북쪽을 향해 서로 대칭되도록 설치하였다. 그리고 인의(引儀)가 의빈과 척신의 외위(外位)를 **중양문** 밖에 설치하고, 모시고 따라 온 백관의 외위를 **좌익문**(**左翊門**) 밖에 설치하였다.

이날에 이르러 여관(女官)이 사찬(司贊)·전빈(典賓)·여관의 자리를 발을 드리운 안쪽에 설치하였는데 전찬은 남쪽으로 조금 뒤에 있게 하였다. 여집사(女執事)가 좌통찬(左通贊)·우통찬(右通贊) 및 치사(致詞)를 대신 읽을 여집사의 자리를 섬돌 사이에 설치하고 찬창(贊唱)의 자리는 그 남쪽으로 조금 뒤에 설치하였는데 동쪽과 서쪽으로 나눈 뒤 모두 북쪽을 위로 삼게 하였다.

또 악장(樂章)을 선창(先唱)하고 후창(後唱)하는 여악공(女樂工)의 자리를 발의 바깥쪽으로 북쪽을 향하게 설치하고, 여집사 및 정재(呈才)5808) 담당 여악공의 자리를 동쪽과 서쪽 모서리의 섬돌 부근에 설치하였는데, 여집사는 좌우로 나뉘어 북쪽을 위로 해서 서로 마주보게 하였고 여악공은 북쪽을 향하게 하면서 서로 대칭되게 하였으며 박자를 맞추는 여악공은 또 그 앞쪽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여집사와 여악공의 외위(外位)를 뜰 한복판에 장막으로 막아 설치하고, 악공의 자리를 장막 밖에 설치하였다.

여관이 자궁의 술그릇 탁자를 앞 기둥의 발을 드리운 안쪽에서 남쪽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상의 술그릇 탁자를 자궁의 술그릇 탁자의 동쪽 앞에 설치하고, 명부(命婦) 및 의빈(儀賓)·척신(戚臣)의 술그릇 탁자를 시위(侍位) 남쪽에 설치하였다.

또 꽃을 바칠 때 올려놓는 탁자를 발 안의 동쪽에 설치하고, 휘건함(揮巾函)을 올려놓은 탁자를 그 다음에 설치하고, 꽃을 흩뿌리는 소반을 올려놓은 탁자를 발 바깥의 서쪽에 설치하

고, 꽃병을 올려놓은 탁자를 섬돌 위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고, 치사(致詞)를 올려놓은 상을 임금의 배위(拜位) 오른쪽에 설치하였다.
때가 되자 **정리소**의 대신 이하가 융복(戎服)을 갖추어 입고 제위(諸衛)를 독촉하여 내전의 문 바깥쪽 뜰에 벌여 세웠으며, 내전의 뜰 왼쪽과 오른쪽에 의장(儀仗)을 설치하였다. 산선(繖扇)·청개(靑蓋)·홍개(紅蓋)·정절(旌節)·봉선(鳳扇)·작선(雀扇)을 각각 두 개씩 앞 기둥의 발 바깥쪽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였다.
행사 시작 3각(刻) 전에 여관·여집사·여악공 등이 각기 복장을 갖추고 외위(外位)로 나가 있다가 조금 뒤에 각각 자기 자리로 나아갔다. **정리사**(**整理使**)가 뜰 한복판의 장막 바깥쪽에 악대(樂隊)를 벌여 세웠다. 의빈·척신·수행한 백관들은 융복 차림으로, 유생들은 청금(靑衿) 복장으로 각각 외위에 나아갔다.
행사 시작 2각 전에 내명부와 외명부가 각기 예복을 갖춰 입고 외위로 나아갔다. 인의(引儀)가 수행한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고 들어가 배위(拜位)로 나아가게 하였다.
행사 시작 1각 전에 여관 등이 모두 내합(內閤)으로 나아갔다. 여관이 무릎을 꿇고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조금 뒤에 또 무릎을 꿇고서 '바깥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자궁이 예복 차림으로 나오자 여관이 앞으로 인도하였다. 악대가 여민락 령(與民樂令)을 연주하였는데, 자리에 오른 다음 향로의 연기가 피어 오르자 연주를 그쳤다.
여집사가 내합(內閤)에 가서 무릎을 꿇고서 '대기하셔야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여관이 내명부와 외명부를 인도하여 배위(拜位)로 나아가게 했다. 여관이 '재배(再拜)'라고 말하자 악대가 낙양춘곡(洛陽春曲)을 연주하였다. 여관이 '국궁(鞠躬)' '재배' '흥(興)' '평신(平身)'이라고 외치는 데에 따라 내명부와 외명부가 몸을 굽히고 두 번 절을 하고 일어나고 몸을 펴니 음악이 멎었다. 여관이 내명부와 외명부를 인도하여 각각 시위(侍位)로 나아가게 하였다.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을 인도하고 들어가 배위(拜位)로 나아가게 하였다. 여집사가 무릎을 꿇고서 '바깥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상이 융복(戎服) 차림으로 나오자 악대가 여민락 령을 연주하였다. 여집사가 앞에서 인도하여 배위(拜位)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게 하니 연주를 그쳤다. 악대가 낙양춘곡을 연주하였다. 상이 몸을 굽혔다가 절을 두 번 하고 일어나서 몸을 펴자 음악이 그쳤다. 상이 무릎을 꿇었다. 여관이 휘건(揮巾)을 올리라고 외치니 **정리사**가 장막 밖으로 가서 휘건을 바쳤다. 악대가 여민락 령을 연주하였다. 내시가 휘건을 전해 받아 여관에게 주었는데 여관이 전해 받아 자궁의 자리 앞에 올리니 음악이 그쳤다.
음식상을 올릴 때에 악대가 여민락 만(與民樂慢)을 연주하고 음식상을 다 올리자 연주를 그쳤다. 꽃을 올릴 때에 악대가 여민락 령(與民樂令)을 연주하고 다 올리자 연주를 멈췄다. 상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폈다. 여악공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와 발 바깥쪽 한복판에 멈춘 뒤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북쪽을 향해 서서 어제(御製)인 장락장(長樂章)을 불렀는데, 그 내용에 이르기를,
"성대한 연회는 태평 시대에나 있는 법, 오늘날 태평 시대의 기상이 넘쳐 흐르도다. 그 기상을 묻노니 어떤 것인가. 노인성(老人星)이 중천에 떠 밝게 빛나네. 봄철 장락궁(長樂宮)에 노인들 모여들고, 화봉인(華封人)처럼 축하하러 부인들 참석했네. 긴긴 봄날 장락궁에서 술잔 올리며, 세 차례나 축원을 올리옵니다. 자손에게 끼쳐주신 어머님 은혜, 그 무엇이 이보다 높으오리까. 복록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며 찬란하게 빛나옵니다. 함지(咸池)의 북소리에 운문(雲門)의 거문고, 신선주(神仙酒) 따라 올리면서 해마다 축원하오리다." 하였다.

여집사가 상을 인도하여 발 밖에까지 이르자 여관이 이어 인도해서 자궁의 술그릇을 놓은 남쪽까지 가 북쪽을 향해 서게 하니 악대가 여민락 령을 연주하였다. 여관이 술을 따른 뒤 무릎을 꿇고서 상에게 바치니 상이 술잔을 받아 자궁의 자리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술잔을 여관에게 주었다. 여관이 술잔을 넘겨받아 자리 앞에 놓았다. 상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펴니 연주를 그쳤다.
여관이 상을 인도하여 발 밖에 이르니 여집사가 앞장서서 인도하여 배위(拜位)에 간 뒤 북쪽을 향해 서게 하였다. 상이 무릎을 꿇으니 여집사가 상의 배위 앞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꿇어앉은 뒤 치사(致詞)를 대신 읽었는데, 그 내용에,
“국왕 모(某)는 삼가 건륭(乾隆) 60년 윤2월 13일의 경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효강 자희 정선 휘목 혜빈(孝康慈禧貞宣徽穆惠嬪) 저하(邸下)께서는 우리 왕실의 아름다운 덕을 계승하시어 장수하는 복을 받으셨으니 복록은 자손에게 흘러 넘치고 경사로움이 어머님에게 미쳤습니다. 삼가 축하하는 자리에 모시고서 경건히 술잔을 따라 올리오니 어머님의 연세를 아는 이 기쁜 날 칭송하는 소리 높이높이 울려 퍼집니다.
아, 즐거운 이 잔칫날 만물이 모두 다 은혜를 입고, 화창한 봄날 맞이하여 하늘의 도우심에 보답합니다. 어머님은 더욱 오래 사시어 크나큰 복록 받을 것이며 태평 시대는 끝없이 이어져 가리이다. 경하하는 마음 누를 길 없어 삼가 만세를 기원하는 술잔을 올립니다.”
하였다.【예문관 제학 이병정(李秉鼎)이 지어 올렸다.】
상이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펴자 여집사가 상을 인도하여 발 밖에까지 이르렀다. 여관이 이어 인도하여 전각 안의 욕위(褥位)로 나아갔다. 상이 무릎을 꿇었다. 여관이 자궁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분부를 내리소서.’ 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서쪽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이에 분부를 내리기를 ‘전하와 경사를 함께 하겠다.’ 하고 자궁이 술잔을 드니 악대가 여민락의 천세만세곡(千歲萬歲曲)을 연주하였다. 여관이 나아가서 빈 술잔을 받아 자궁의 술그릇 탁자 위에 다시 놓자 음악이 그쳤다.
상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펴니 여관이 상을 인도하여 발 밖에까지 이르렀다. 여집사가 앞장서서 인도하여 배위(拜位)에 이르렀다. 상이 무릎을 꿇었다. 여집사가 외치기를 ‘세 번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하니, 상이 세 번 머리를 조아렸다. 또 외치기를 ‘천세(千歲)를 불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손을 마주 잡고 이마 위에 올리며 ‘천세’라고 하였다. 또 외치기를 ‘천세를 불러야 합니다.’ 하니, ‘천세’라고 하였다. 또 외치기를 ‘거듭 천세를 불러야 합니다.’ 하니, ‘천천세’라고 하였다. 천세를 부를 때마다 명부(命婦)와 여관(女官) 이하가 모두 선 자리에서 일제히 소리쳐 호응하고 악대가 낙양춘곡(洛陽春曲)을 연주하였다. 상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다시 일어나 몸을 펴니 연주가 그쳤다.
여집사가 상을 인도하여 발 밖에까지 이르렀다. 여관이 그 뒤를 이어 인도하여 내전 안 욕위(褥位)로 가서 서쪽을 향해 서게 하였다. 여집사가 의빈(儀賓)과 척신(戚臣)들을 나누어 인도해서 각각 자기 자리로 나아가게 하였다. 상이 무릎을 꿇자 **정리사**(**整理使**)가 수건을 바쳤다. 악대가 여민락 령(與民樂令)을 연주하였다. 수건을 바치고 나니 연주가 그쳤다.
음식상을 차례로 올리니 악대가 여민락 령을 연주하였다. 음식상을 다 올리자 연주를 그쳤다. 여관이 내명부와 외명부의 음식상을 차리고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의 음식상을 차렸다. 여관과 여집사와 산화(散花)를 담당하는 자들이 백관에게 술과 음식을 차리고 꽃을 뿌렸다. 백관이 자리에서 나와 술을 다 마신 다음에 네 번 절을 하였다. 인의(引儀)가 수행한 백관을 인도하여 나왔다.

자궁에게 탕(湯)을 올렸는데, 전해 받아 올리는 절차는 음식상을 올릴 때의 의례와 동일하였다. 악대가 여민락 만(與民樂慢)을 연주하다가 탕을 다 올리자 연주를 그쳤다. 첫번째 술잔을 올릴 때 '선도(仙桃)를 바친다[獻仙桃]'는 정재(呈才)를 연희(演戱)하고 악대가 여민락의 환환곡(桓桓曲)을 연주하였다.

여관이 상을 인도하여 자궁의 술 탁자 앞으로 나아갔다. 여관이 장수를 축원하는 술을 따른 뒤 무릎을 꿇고 상에게 올리니 상이 술잔을 받아 자궁의 자리 앞으로 나아갔다. 여관이 외치기를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였다. 상이 무릎을 꿇고 술잔을 여관에게 주니 여관이 건네받아 자궁의 자리 앞에 올렸다. 자궁이 술잔을 들어 다 마신 다음에 술잔을 여관에게 주었다.

여관이 무릎을 꿇고 술잔을 받은 다음에 상의 술 탁자 앞으로 가서 술잔에 술을 따라 자궁에게 바쳤다. 자궁이 술잔을 받아 여관에게 주니 여관이 무릎을 꿇고 술잔을 받은 다음 상에게 올렸다. 상이 무릎꿇고 술잔을 받아 다 마신 다음 잔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 술 탁자 앞에까지 오니 여관이 무릎을 꿇고 술잔을 받았다.

상이 자리로 돌아가 술잔을 돌리게 하였다. 여관이 내명부와 외명부에게 술잔을 돌리고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에게 술잔을 돌렸다. 상에게 탕을 올렸는데 건네받은 절차는 위에서의 의례와 같았다. 여관과 여집사가 분담하여 내명부·외명부 및 의빈·척신에게 탕을 공급했다. 정재(呈才)의 연희가 끝나면서 연주가 멎었다.

두번째 잔을 올릴 때 '금척(金尺)'이라는 정재와 '하늘의 밝은 명을 받고 황제의 은혜를 입었다[受明命荷皇恩]'는 정재를 연희하고 악대가 여민락의 청평악(淸平樂)을 연주하였다. 여관이 명부(命婦)를 인도하여 자궁의 술 탁자 남쪽으로 가서 북쪽을 향해 서게 하였다. 여관이 장수를 축원하는 술을 술잔에 따라 명부에게 주었다. 명부가 술잔을 받아 자궁의 자리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술잔을 여관에게 주었다. 여관이 건네받아 자궁의 자리 앞에 올리니 명부가 자리에 엎드렸다. 자궁이 술잔을 든 뒤 여관이 빈 술잔을 받아 명부에게 주니 명부가 술잔을 받아 자궁의 술 탁자 위에 다시 놓았다. 여관이 명부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였다.【세번째 잔부터 일곱번째 잔까지는 명부와 의빈·척신 중에서 자궁의 유지(有旨)를 받든 사람들이 차례로 술잔을 올렸는데, 그 절차는 위에서의 의례와 같았다. 의빈과 척신은 자궁에게 잔을 올린 다음에 상의 술 탁자로 가서 술을 따라 상에게 올렸는데, 상이 술잔을 들어 마신 다음 술잔을 주면 다시 술잔을 받아 술 탁자 위에 놓고 물러갔다.】 탕을 올리고 술잔을 돌리는 절차는 첫번째 잔을 올렸을 때의 의례와 같았다. 정재가 끝나면서 음악도 멈췄다.

세번째 술잔을 올릴 때 '포구락(抛毬樂)'이라는 정재(呈才)와 '무고(舞鼓)'라는 정재를 연희하고, 악대가 여민락(與民樂)의 오운개서조곡(五雲開瑞朝曲)을 연주하였다. 정재가 끝나자 연주도 멈췄다.

네번째 술잔을 올릴 때 '아박(牙拍)'이라는 정재와 '향발(響鈸)'이라는 정재를 연희하고, 악대가 천세만세곡(千歲萬歲曲)을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으로 번갈아가며 연주하였다. 정재가 끝나자 연주도 멈췄다.

다섯번째 술잔을 올릴 때 '학무(鶴舞)'라는 정재를 연희하고, 악대가 여민락의 유황곡(惟皇曲)을 연주하였다. 정재가 끝나자 연주도 그쳤다.

여섯번째 술잔을 올릴 때 '연화대(蓮花臺)'라는 정재를 연희하고, 악대가 여민락의 환환곡(桓桓曲)을 연주하였다. 정재가 끝나자 연주도 그쳤다.

일곱번째 술잔을 올릴 때에 '수명을 연장한다[壽延長].'는 정재를 연희하고, 악대가 여민

락의 하운봉곡(夏雲峰曲)을 연주하였다. 정재가 끝나자 연주도 그쳤다.
처용무(處容舞)를 추자 악대가 정읍악(井邑樂)과 여민락을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으로 번갈아 연주하였다. 첨수무(尖袖舞)를 추자 악대가 낙양춘곡(洛陽春曲)을 연주하였다. 정재가 끝나자 연주도 그쳤다.
여악공(女樂工) 두 사람이 나와 발[簾] 밖의 한복판에 이르러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서 북쪽을 향해 선 다음 상이 지은 관화장(觀華章)을 불렀는데, 그 내용에,
"자궁의 덕 순일함이여, 대지(大地)와 같아 표현하기 어려워라. 말없이 은혜 널리 베푸심이여, 태평 시대 열리게 도와주셨도다. 온갖 복록이 모여듦이여, 마치 강물처럼 흘러 넘치도다. 자손들 갈수록 번창함이여, 해마다 경사가 이어지도다. 북두성마냥 밝으심이여, 숭산(嵩山)처럼 높고 높도다. 보책(寶冊)에 상서(祥瑞)를 기록함이여, 봄날 잔치 열어 술을 따르도다. 아, 자궁의 덕 아름다워라, 이번에 회갑을 맞으셨도다. 화창한 이 시절 완상(玩賞)함이여, 만물이 어울려 화락하도다. 새로 지은 고을에서 기쁨을 누림이여, 집집마다 노랫소리 울려 퍼지네. 떠 오르는 저 해와 달처럼 천년토록 만년토록 오래 사소서."
하였다. 여악공이 노래를 마치고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여관이 자궁의 앞에 나아가고 또 상의 앞에 나아가서 상을 치웠다. 악대가 여민락 만(與民樂慢)을 연주하였다. 여관 및 여집사가 명부 및 의빈·척신의 상을 치웠다. 음악 연주가 그쳤다.
여관이 '일어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외쳤다. 여관이 상을 인도하여 발 밖에까지 이르자 여집사가 앞장서서 인도하여 배위(拜位)에 이르렀다.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을 인도해 내려와 배위로 나아가게 하였다. 악대가 낙양춘곡을 연주하였다. 상이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니 연주가 그쳤다. 여집사가 상을 인도하여 나가니 악대가 여민락령(與民樂令)을 연주하였다. 합문(閤門) 안에 이르니 연주를 그쳤다.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을 나누어 인도해서 나갔다.
여관이 내명부와 외명부를 나누어 인도해서 도로 절하는 자리로 나아가니 악대가 낙양춘곡을 연주하였다. 내명부와 외명부가 몸을 굽혀 두 번 절을 하고 몸을 펴니 연주를 멈췄다. 여관이 자궁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식이 끝났다고 아뢰었다. 여관이 내명부와 외명부를 나누어 인도해서 나갔다. 자궁이 자리에서 내려오자 악대가 여민락령을 연주하고, 다시 합문 안에 이르자 연주를 멈췄다. 상이 직접 연회를 베푸는 의절(儀節)을 정하였는데 모두 7칙(則)으로 되어 있었다.
○乙未/御**奉壽堂**, 進饌于**惠慶宮**. 前一日, 尙寢帥其屬, 設慈宮座於行宮內殿北壁南向, 印案於座東, 香案二於前楹左右. 設御座於慈宮座東, 拜位於階上北向, 褥位於殿內當中北向. 典贊設內外命婦侍位於前楹簾內, 北上相向, 拜位於殿前左右, 外位於庭中, 俱北向相對. 又設儀賓·戚臣侍位於前楹簾外左右, 北上相向, 拜位於殿前左右, 北上相對. 典儀設陪從百官宣饌位於**中陽門**外, 東西, 北上相向, 拜位於道之東西, 北向相對. 引儀設儀賓·戚臣外位於**中陽門**外, 陪從百官外位於**左翊門**外. 至是日, 女官設司贊·典賓·女官位於簾內, 典贊在其南稍後. 女執事設左右通贊及代致詞女執事位於階間, 贊唱在其南稍後分東西, 俱北上. 又設女伶先後唱樂章位於簾外北向, 女執事及呈才女伶位於東西偏階, 女執事分左右, 北上相向, 女伶北向相對執拍, 女伶又在其前, 女執事·女伶外位於庭中隔帳, 工人位於帳外. 女官設慈宮壽酒亭於前楹簾內近南, 御酒亭於壽酒亭之前在東, 命婦及儀賓·戚臣酒卓於侍位之南. 又設進花盤卓於簾內在東, 揮巾函卓次之, 散花盤卓於簾外在西, 花樽卓於陛上東西, 致詞案於御拜位之右. 時至, 整理大臣以下具戎服督諸衛, 陳列於殿門外庭, 儀仗於殿庭左右, 繖扇·靑蓋·紅蓋·旌節·鳳扇·雀扇各二於前楹簾外東西. 前三刻, 女官·女執事·女伶等各服其服, 就外位, 少頃各就位. **整理**

使陳鼓樂於庭中帳外，儀賓・戚臣・陪從百官以戎服，儒生以青衿服，各就外位．前二刻，內外命婦各具禮服，就外位．引儀分引陪，從百官入就拜位．前一刻，女官等俱詣內閤．女官跪，贊內嚴，少頃又跪，贊外備．慈宮具禮服，女官前導，樂作《與民樂令》，既陞座，鑪煙升，樂止．女執事詣內閤跪，啓中嚴．女官引內外命婦，入就拜位．女官曰再拜，樂作《洛陽春曲》．女官唱鞠躬・再拜・興・平身，內外命婦鞠躬・再拜・興・平身，樂止．女官引內外命婦，各就侍位．女執事引儀賓・戚臣，入就拜位．女執事跪，啓外辦．上具戎服出，樂作《與民樂令》．女執事前導，詣拜位北向立，樂止．樂作《洛陽春曲》，上鞠躬・再拜・興・平身，樂止．上跪．女官唱進揮巾，整理使詣帳外進巾．樂作《與民樂令》，內侍傳捧授女官，女官傳捧進于慈宮座前，樂止．進饌案，樂作《與民樂慢》，進訖樂止．進花，樂作《與民樂令》，進訖，樂止．上俯伏・興・平身，女伶二人進止簾外當中，分東西北向立，唱《御製長樂章》曰：

嘉會屬昇平，昇平今有象．厥象問如何?，老人中天朗．含飴駐我長樂春，祝聖徠女華封人．春長長樂酌斗，華祝至三．壽母翼子詒孫，功何嵬穰穰? 福祿光輝．戚池鼓，雲門琴，玉漿瓊液年年斟．

女執事導上至簾外，女官承引至壽酒亭南，北向立．樂作《與民樂令》，女官酌酒，跪進于上，上受爵詣慈宮座前，跪以爵授女官，女官傳捧置于座前，上俯伏・興・平身，樂止．女官導上至簾外，女執事前導，詣拜位北向立．上跪，女執事進上拜位前，北向跪，代致詞曰：

國王諱恭遇乾隆六十年閏二月十三日．孝康慈禧貞宣徽穆惠嬪邸下，嗣京室徽，膺海屋壽，福流文孫，慶邁魯母．恭陪于華，敬斟以斗，喜深知年，頌騰如阜．於樂斯讌，萬品咸囿，迎春之和，答天之祐．萱暉彌永，茀祿誕受，太平萬億，無疆悠久．不勝慶忭之至，謹上千千歲壽．【藝文提學李秉鼎製進．】

上俯伏・興・平身，女執事導上，至簾外，女官承引就殿內褥位，上跪．女官進慈宮座前跪曰：“宣旨．” 俯伏・興・西向跪．宣旨曰：“與殿下同慶，” 慈宮舉爵，樂作《與民樂》《千歲萬歲曲》，女官進受虛爵，復於壽酒亭，樂止．上俯伏・興・平身，女官導上至簾外，女執事前導至拜位．上跪，女執事唱三叩頭，上三叩頭．唱山呼，上拱手加額曰千歲，唱山呼，曰千歲，唱再山呼，曰千千歲．凡呼千歲，命婦及女官以下，皆於立位齊聲應之．樂作《洛陽春曲》，上俯伏・興・再拜・興・平身，樂止．女執事導上至簾外，女官承引就殿內褥位西向立，女執事分引儀賓・戚臣各就位．上跪，整理使進巾，樂作《與民樂令》，進訖，樂止．次進饌案，樂作《與民樂令》，進訖，樂止．女官設內外命婦饌卓，女執事設儀賓・戚臣饌卓．女官・女執事・散花執事者宣酒饌，散花于百官，百官離位飲訖四拜，引儀引陪從百官出．進湯于慈宮，傳捧如進饌案儀．樂作《與民樂慢》，進訖，樂止．第一爵，奏《獻仙桃》呈才，樂作《與民樂》《桓桓曲》，女官導上詣壽酒亭，女官酌壽酒，跪進于上，上受爵，詣慈宮座前．女官唱跪，上跪以爵授女官，女官傳捧，進于慈宮座前，慈宮舉酌進訖，以爵授女官．女官跪受爵，詣上酒亭，以盞酌酒，進于慈宮，慈宮受盞授女官，女官跪受盞進于上，上跪受盞，舉飲訖，仍執盞，俯伏・興・平身，至酒亭，女官跪受盞，上還就座．行酒，女官行內外命婦酒，女執事行儀賓・戚臣酒．進湯于上，傳捧如上儀．女官・女執事分供湯于內外命婦及儀賓・戚臣，呈才訖，樂止．第二爵，奏《金尺》呈才・受明命荷皇恩呈才，樂作《與民樂》《清平樂》，女官引進命婦，詣壽酒亭南，北向立．女官以爵酌壽酒，授命婦，命婦授爵，詣慈宮座前跪，以爵授女官，女官傳捧，進于慈宮座前，命婦俯伏．慈宮舉爵，女官受虛爵，以授命婦，命婦受爵，復於壽酒亭，女官引命婦還復位．【第三爵至七爵，命婦及儀賓・戚臣中，稟承慈旨，以次進爵如上儀．儀賓・戚臣則進爵于慈宮，次詣酒亭，酌酒進于上，上舉爵飲訖授之，還捧復于酒亭而退．】進湯行酒，如第一爵儀．呈才訖，樂止．第三爵，奏《拋毬樂》呈才・《舞鼓》呈才，樂作《與民樂》《五雲開瑞朝曲》，

呈才訖, 樂止. 第四爵, 奏《牙拍》呈才·《響鈸》呈才, 樂作鄕唐交奏《千歲萬歲曲》, 呈才訖, 樂止. 第五爵, 奏《鶴舞》呈才, 樂作《與民樂》《惟皇曲》, 呈才訖, 樂止. 第六爵, 奏《蓮花臺》呈才, 樂作《與民樂》《桓桓曲》, 呈才訖, 樂止. 第七爵, 奏《壽延長》呈才, 樂作《與民樂》《夏雲峯曲》, 呈才訖, 樂止. 處容舞進, 樂作鄕唐交奏《井邑樂》《與民樂》, 尖袖舞進, 奏《洛陽春曲》, 呈才訖, 樂止. 女伶二人進至簾外當中, 分東西北向立, 唱御製《觀華章》曰:

慈德之純, 厚載難名. 默運弘慈, 佑啓太平. 百祿是遒, 其至如川. 子孫振振, 吉慶年年. 如斗之邵, 如嵩之高. 瑤冊紀瑞, 春酒燕毛. 於休慈德, 撫玆花甲. 時觀于華, 物采匝匼. 樂此新邑, 謠頌戶增. 維萬維億, 日月恒升.

唱訖, 降復位. 女官進慈宮前, 又進上前撤案. 樂作《與民樂慢》, 女官及女執事撤命婦及儀賓·戚臣卓, 樂止. 女官唱可起, 女官導上出至簾外, 女執事前導, 至拜位. 女執事引儀賓·戚臣, 降就拜位, 樂作《洛陽春曲》, 上鞠躬·再拜·興·平身, 樂止. 女執事導上出, 樂作《與民樂令》, 至閤內, 樂止. 女執事分引儀賓·戚臣出, 女官分引內外命婦, 還就拜位, 樂作《洛陽春曲》, 內外命婦鞠躬·再拜·興·平身, 樂止. 女官進當慈宮座前, 跪白禮畢, 女官分引內外命婦出. 慈宮降座, 樂作《與民樂令》, 還至閤內, 樂止. 上親定進饌儀, 凡七則.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3일(을미) 1번째기사>

정치/왕실

7언 4운의 율시를 내리면서 화답시를 지어 올리라고 명하다

상이 칠언(七言) 4운(韻)의 율시(律詩)를 지어 내리면서 신하들에게 화답하는 시를 지어서 올리라고 명하였다.

○下御製七言四韻律, 命諸臣賡進.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3일(을미) 2번째기사>

정치/왕실

연회의 반열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비단 등을 주고 수원부 성 내외에 급복을 명하다

연회를 베풀 때 반열에 참여한 노인으로서 70세 이상이 되는 자 및 61세가 되는 사람들에게 각각 비단 1필(匹)씩을 하사하는 동시에 누런 명주를 주어 구장(鳩杖)에 매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 현륭원(顯隆園) 밑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2년 동안 더 급복(給復)해 주고 수원부(水原府) 성 내외에 사는 백성들에게 1년 동안 더 급복해 주도록 하였다**. 하교하기를,

"**장락당(長樂堂)**에서 술잔을 받들어 올리고 **낙남헌(洛南軒)**에서 술자리를 베풀면서 경건히 북두성 자루에 술을 붓고 남산(南山)처럼 장수하시기를 축원하였다. 이튿날에는 또 노인들을 섬돌과 뜰 사이에 불러 모아 자궁의 덕에 흠뻑 배부르게 하였으니 오늘 밤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아래에서 이미 화봉인(華封人)의 축하를 올렸으니 위에서 어찌 홍범구주(洪範九疇)에 입각한 선물을 아낄 수 있겠는가.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이하 나이 70세 이상인 노인들과 61세가 되는 사람들에게 각각 비단 1필씩을 하사하는 동시에 누런 명주를 주어 구장(鳩杖)에 맬 수 있도록 하고, 본부(本府)에서 연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각각 한 등급씩 가자해 주도록 하라.

한 고조(漢高祖)는 풍패(豊沛)에 대해서, 그리고 광무제(光武帝)는 남양(南陽)에 대해서 각각 탕목읍(湯沐邑)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부역을 면제시켜 주었었는데, 이 일이 국사(國

史)에 기록되어 아름다운 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더구나 이 화성(華城) 지역은 임금이 행차하여 머물렀던 곳인데다 선조의 묘소가 있는 곳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우리 자궁을 모시고 올 적에 길 양쪽으로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처럼 둘러섰었고 임금의 행차를 보는 기쁨과 임금을 가까이에서 보려는 정성을 안고서 곳곳마다 노래가 거리에 흘러넘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감회를 이야기하였으니, 만약 지금과 같은 때에 특별히 혜택을 베풀어주지 않는다면 장차 무슨 방법으로 이 지역의 부로와 자제들의 마음을 크게 위로해 줄 수 있겠는가. 앞서 이미 급복(給復)해 준 이외에 **현륭원** 밑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2년을 더 급복해 주도록 하고 성 안팎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도 1년을 더 급복해 주도록 하라.
그런데 남의 노인에게까지 은혜가 미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네 가지보다 먼저 행해야 하는 일로서 이것이 바로 선왕(先王)께서 확대 적용하여 은혜를 베풀던 인정(仁政)이었다고 하겠다. 이번의 일을 보건대 시기로 말하면 자궁께서 회갑이 되시는 해이고 절기로 말하면 따뜻한 봄철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때로서 자궁께서 건강하실 뿐더러 성대한 예식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므로 산천 역시 영광을 입고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이에 자궁의 마음을 우러러 체득하여 크나큰 은혜를 대대적으로 베풀어서 노인들을 일단 은혜롭게 대접한 뒤에 문관의 시험과 무관들의 훈련을 또한 사열할 것이다.
그러나 생**각건대** 저 누더기 옷을 입고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유독 같이 즐기고 기뻐하는 가운데에서 소외된다면 어찌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받들어 행하는 뜻이 될 수 있겠는가. 내일 **신풍루(新豊樓)**에 가서 사민(四民)에게 쌀을 나누어 주어 백성들을 구제하는 동시에 거리가 조금 먼 마을에는 승선(承宣)을 나누어 보내 창고를 열어서 먹여주도록 할 것이다. 지금 이때에 죽을 먹이고 전대를 채워줌으로써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격양가(擊壤歌)를 부르게 하는 것은 털끝만큼이라도 모두가 자궁께서 내려주시는 것이니, 백성이 아무리 식견이 없고 무지하다 하더라도 어찌 기쁜 마음으로 서로들 이야기하며 크나큰 은혜에 감격해 자궁의 덕을 칭송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술을 따르며 오래 사시기를 축원하는 것이 또한 나의 오늘 심정과 같지 않겠는가.
이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건대 인정(仁政)이란 은혜를 넓혀가는 데에 있을 따름이니, 맹자(孟子)가 말한 바 '이 마음을 들어 저쪽에 가해준다.' 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 하겠다. **그러니 이제 화성 한 고을에 시행한 것을 7도(道)와 양도(兩都)에 넓혀서 시행해야 하리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다. 만약 이번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화성 한 고을에만 미치고 팔도(八道)와 양도에는 미치지 않게 되거나 금년 1년만 이렇게 행하고 천년 만년토록 행해지지 않게 한다면**, 이것을 어찌 넓혀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정리소(整理所)를 설치한 예가 옛날에 언제 있기라도 했던가. 이는 참으로 번거로운 폐단을 없애면서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경상 비용을 축내지 않으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위로는 대내(大內)의 음식물 공급에서부터 중간으로는 수행한 관원들의 노자와 아래로는 군마(軍馬)와 여도(輿徒)의 식량·사료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리소**에서 마련해 내도록 한 것이니, 그래서 10만 꿰미의 돈을 특별히 내려주어 그런대로 충당하게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만한 액수를 가지고 이만한 일을 치뤄내자면 오히려 부족하지나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제 행차를 서울로 돌리려 하는 시점에서 수형(水衡)에 아직 남은 것이 있게 되었다. 이를 대농(大農)에 귀속시켜 몇 달치의 비용으로 쓰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전국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데에 쓰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 액수대로 곡물을 마련하여 '을묘년 **정리곡(整理穀)**' 이라 명명하고, 3백 주현(州縣)에

나누어 유치(留置)시킨 다음 매년 이자를 취해 늘려나갈 경우 거의 수만 포(包)에 이르게 될 것이니, 이것으로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자궁이 베푸는 은혜를 입게 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저축하여 영구히 전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이 곡물을 가지고 농사짓고 수확하여 공사(公私) 간에 모두 풍요롭게 쓰게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은혜를 넓혀 시행하는 뜻이 얼마나 크게 되겠는가.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으로는 그 뜻을 따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그 뜻을 따르는 것으로는 은혜를 널리 베푸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아, 그대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신하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알아서 잘 알아듣고 삼가 이 일을 준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命進饌時參班老人, 七十以上及六十一歲人, 各賜帛一匹, 仍予黃紬繫鳩杖. 園底居民, 加二年給復, 府城內外, 加一年給復. 敎曰: "奉觴長樂之堂, 置酒洛南之軒, 敬斟北斗, 拜獻南山. 翌又來爾群老于階于庭, 飽以慈德, 今夕以永. 下旣進華封之祝, 上豈惜箕疇之錫乎? 老人領議政洪樂性以下, 年七十以上及六十一歲人, 各賜帛一匹, 仍予黃紬, 以佐鳩杖之繫, 本府與宴者, 各加一資. 漢高之於豊沛, 光武之於南陽, 猶以湯沐邑特賜之復, 國史書之, 傳以爲美事. 矧玆**華城**之爲地, 鑾蹕之所駐臨, 珠丘之所奉安? 陪我慈宮而至, 夾路觀者, 堵墻如也, 瞻旄之喜, 就日之誠, 處處讙謠, 萬口同辭. 若在于今, 不別施惠澤, 將何以大慰是地父老子弟? 前此已給復外, 園底居民特加二年, 城內外居民加一年. 及人之老, 先此四者, 先王推恩之仁政也. 今行以其時, 則流虹回甲之年, 陽春布惠之序, 慈候康寧, 縟儀順成, 榮光所被, 山川增輝. 於是乎仰體慈心, 誕敷洪恩, 耆老已惠養矣, 文武亦試閱矣. 惟彼衣鶉形鵠者, 獨阻於同樂均歡之中, 則豈所以對揚天休之意? 明日御**新豊樓**, 頒米于四民賑民, 分命承宣, 就道里稍遠坊曲, 發廩以饋之. 此時之饘斯糜斯, 脫塡壑而爲擊壤, 秋毫皆慈宮之賜. 民雖不識不知, 豈不欣欣然相告, 含洪恩而頌慈德? 南山北斗之祝, 亦如予今日之心乎? 因此而思之, 仁政在乎推之而已. 孟子所謂擧斯心, 加諸彼者是爾. 今以**華城**一府, 推之七道兩都, 又可知矣. 今玆施惠, 只及於**華城**一府, 而不及於八道兩都, 只行於今年一年, 而不行於千年萬年, 是豈曰推之云乎? **整理所**之設, 古豈有哉? 誠欲祛煩而省弊, 錙銖不藉於經用, 上焉而內廚供給, 中焉而從班盤纏, 下焉而軍馬輿徒之糗糧芻豆, 皆令整理辦出, 此所以十萬緡錢之另行拮据者也. 以若數爻, 較若策應, 猶慮夫不足, 而鑾輿將旋, 水衡有贏. 與其歸之大農, 爲數月之用, 曷若覃施諸路? 稱此數作爲穀物, 名之曰乙卯**整理穀**, 分置三百州縣, 計年取剩, 衍而至幾萬萬包, 俾邦內黎庶, 咸被慈覆, 藏之無盡, 傳之悠久. 又以是穀, 耕之種之, 收之獲之, 以公以私, 如京如坻, 則推之義, 大矣哉! 愛親莫尙於順志, 順志莫尙於廣恩. 咨爾有司之臣, 知予至意, 明聽恪遵."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윤2월 13일(을미) 3번째기사>

정치/행정

화성의 축성공사를 감독한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다

화성(華城)의 축성 공사를 감독한 신하들에게 상을 내렸다. 총리사(摠理使)인 우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 호피(虎皮)를 하사하고, **감독한 신하로서 당상관인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심태(趙心泰)는 가자(加資)해 주고**, 도청(都廳) 이유경(李儒敬)에게는 안에서 갑주(甲冑)를 하사하고, **책응한 도청인 수원 판관(水原判官) 정동협(鄭東愜)에게는 준직(準職)을 제수하고**, 특별히 감독한 독성 중군(**禿城中軍**) 김후(金煦)는 곧수로 의망(擬望)케 하고, 부사(府使) 이방운(李邦運) 등에게 차등있게 시상하였다.

○施賞**華城城役**董工諸臣. 摠理使右議政**蔡濟恭**賜虎皮, 監董堂上**水原留守趙心泰**加資, 都廳李儒敬內賜甲冑, 策應都廳**水原判官**鄭東協準職除授, 別監董**禿城中軍**金煦閫帥差擬, 府使李邦運

等施賞有差.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3일(을미) 4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사민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기민에게 죽을 먹여주다

신풍루(新豊樓)에 거둥하여 사민(四民)에게 쌀을 나눠주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먹여주었다. 【수원부의 사민 5백 39구(口)에게 미곡 1백 98석(石) 10두(斗)를 주고, 진휼(賑恤) 대상인 백성 4천 8백 13구에게 미곡 1백 69석 9두(斗) 7승(升)과 소금 12석 12두 9승 9합(合)과 죽을 쑬 미곡 9석 9두 2승과 미역 9백 25립(立)과 간장 1석 12두 7승 4합을 주었다】

○丙申/御新豊樓, 賜四民米·饘飢民粥.【水原府四民五百三十九口, 米一百九十八石十斗, 賑民四千八百十三口, 米一百六十九石九斗七升·鹽十二石十二斗九升九合·粥米九石九斗二升·甘藿九百二十五立·艮醬一石十二斗七升四合】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4일(병신) 1번째기사>

정치/왕실

낙남헌에 거둥하여 양로연을 베풀다

낙남헌(洛南軒)에 거둥하여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었다.

하루 전날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를 행궁(行宮) 정전(正殿)의 북쪽 벽에 남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정리소(整理所)에서 악대(樂隊)를 앞뜰의 남쪽 가까운 곳에 북쪽을 향하여 진열해 놓고, 선전관이 깃발드는 자리를 서쪽 섬돌 위 동쪽 가까운 곳에 서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본 고을에서 노인들의 좌석을 낙남헌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였다.

행사 당일에 상이 낙남헌으로 가서 자리에 오르자 선전관이 깃발을 들었다. 그러자 악대가 여민락 령(與民樂令)을 연주하고 향로에 연기가 피어오르자 연주를 그쳤다. 근시(近侍)와 일을 집행하는 관원들이 먼저 사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

행차를 따라온 노인인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등 15인과 일반 서민인 노인 3백 74인이 차례로 뜰에 들어왔다. 찬의(贊儀)가 '국궁(鞠躬)' '재배(再拜)'를 외쳤다. '흥(興)' '평신(平身)'에 이르렀을 때 노인들이 지팡이를 놓고 몸을 굽혔는데 이때 악대가 낙양춘곡(洛陽春曲)을 연주하였다. 노인들이 절할 때 일좌(一坐)가 두 번 절하였는데 일어나 몸을 펴자 연주가 그쳤다.

인의(引儀)가 전(殿)에 올라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해서 동쪽과 서쪽 섬돌로 올라와 들어오려 할 즈음에 상이 이르기를,

"나도 노인들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좌탑(座榻)을 악차(幄次)의 앞에 설치함으로써 나이 많은 이를 높이는 뜻을 보여 주도록 하였다.

홍낙성·채제공(蔡濟恭)·김이소(金履素)·이명식(李命植)·이민보(李敏輔)·심이지(沈頤之)·이조원(李祖源)·서유신(徐有臣)·조윤형(曺允亨)이 차례차례 지팡이를 짚고 전각으로 올라왔다. 통례(通禮)가 무릎을 꿇고 상에게 아뢰면서 노인들을 위해 일어나라고 청하였다. 상이 탑(榻) 위에서 일어섰다가 도로 자리에 올라 앉았다. 그리고 누런 명주 수건을 나누어 주어 노인들의 지팡이 손잡이에 매게 하고 각각 비단 1필씩을 하사하였다.

악사(樂師) 2인이 동쪽과 서쪽 섬돌로 올라와 기둥 밖까지 와서 멈춘 뒤 북쪽을 향해 서서

화일곡(化日曲)을 불렀는데, 그 내용에,
“길고 긴 봄날, 지팡이 짚고 늙은이들 천천히 오네. 조정에서 뽑혀 온 신하도 있고 시골에서 온 노인도 섞여 있구나. 노인들 헝클어진 누런 머리칼, 임금이 웃으며 바라보시네. 그대들 어찌 알랴, 자궁이 내려주신 은택인 것을. 하늘의 복을 받은 우리의 자궁, 어느새 회갑을 맞이하셨네. 그 교화 두루두루 펼쳐졌나니, 집마다 나이 많은 늙은이일세. 임금님 어버이 뜻을 받들어 조상의 묘소를 찾아 왔어라. 성대한 연회 차려 드리니, 한 고을 온통 그 은혜 입었도다. 노인들 실컷 먹고 취하여 절하며 나름대로 정성 바치네. 바치는 그 정성 무엇이던가, 부디 오래 사시도록 비는 것일세.” 하였다.【우의정 **채제공**이 지었다.】
상이 거문고와 비파의 연주를 명하니, 악공과 가인(歌人)이 섬돌에 올라와서 먼저 천보(天保)를 연주한 다음에 관저(關雎)와 녹명(鹿鳴)을 연주하였다. **정리사**(**整理使**)가 수건과 술그릇을 올리니 악대가 여민락 령(與民樂令)을 연주하고 올리기를 마치자 연주를 그쳤다. 음식을 올리니 악대가 여민락 만(與民樂慢)을 연주하고 일을 진행하는 자들이 노인들의 음식을 차리자 연주를 그쳤다. 악대가 여민락 령을 연주하니 일을 진행하는 자들이 노인들에게 꽃을 뿌렸으며 그 일이 끝나자 연주도 그쳤다. 상이 이르기를,
“백발 노인들이 자리에 가득하고 검버섯 돋은 이들이 뜰을 온통 채웠으니, 이날 이 저녁이야말로 노인들 세상이라 하겠다. 어제 모두에게 꽃을 꽂아주기는 하였다마는 오늘 반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꽃을 하나씩 더 꽂아줌으로써 보통이 아닌 성대한 모임임을 알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정리사가 첫번째 잔을 올리려 하자 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채제공**이 아뢰기를, “이와 같은 경사스러운 모임을 맞이하여 선물을 주시는 은혜가 신들에게까지 미쳤으므로 구구하나마 오래 사시기를 축원하고 싶은 마음이 배나 더 절실해집니다. 술잔을 따라 올리며 축하드리는 의리를 따라서 만세를 불렀던 예(禮를 본받고 싶습니다.”
하니, 상이 좋다고 하였다. 홍낙성이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게 늙은이들 중에서 제일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오래 사시기를 축원하며 올리는 술잔을 신이 가장 먼저 바쳐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매우 좋다. 경이 맨 먼저 하고 그 다음은 우상 그 다음은 영돈녕, 그 다음은 판부사 이하 3중신(重臣)이 각각 한 잔씩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홍낙성이 잔을 올리며 만세를 부르니 악대가 낙빈악(樂賓樂)의 녹명(鹿鳴)·천보곡(天保曲)을 연주하였다. 상이 일어나서 잔을 받았다. **채제공**이 두번째 잔을 올리며 만세를 부르니 악대가 낙빈악의 관저(關雎)·작소(鵲巢)를 연주하였다. 김이소가 세번째 잔을 올리며 만세를 부르니 악대가 낙빈악의 남유가어(南有嘉魚), 남산유대곡(南山有臺曲)을 연주하였다. 이명식과 이민보와 심이지가 차례로 잔을 올리며 만세를 부르니 악대가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번갈아 연주하였다. **채제공**이 아뢰기를,
“오늘의 성대한 행사는 천 년을 가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태평성대에 늙은이들이 오래 산다는 말을 옛 글에서나 보다가 지금 다행히 직접 보게 되었으니, 기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장수하게끔 변화된 것도 자궁의 덕에 말미암은 것이고 노인들이 배불리 먹고 취하게 된 것도 우리 자궁께서 내려주신 것이니, 오늘 노인들이 술잔을 올리며 오래 살기를 축원하는 것 모두를 자궁의 덕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어 상이 직접 지은 시(詩) 한 편을 써서 내려 홍낙성에게 **낙남헌**(**洛南軒**)에 게시하도록 하고 연회에 참석한 신하들에게 화답하는 시를 지어 올리라고 명하였다. 음식을 하

사받은 노인들이 모두 일어나 춤을 추며 만세를 불렀다. 노인들의 음식 상을 치우라고 명하였다. 이에 남은 음식들을 각기 싸가지고 나갔다가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오니 악대가 낙양춘곡(洛陽春曲)을 연주하였다. 노인들이 절을 하자 일좌(一坐)가 재배를 하였으며 일어나 몸을 펴기를 처음 했던대로 하자 연주를 멈췄다. 통례(通禮)가 무릎을 꿇고서 의식이 끝났음을 아뢰었다.

○御**洛南軒**, 行養老宴. 前一日, 掖庭署設御座於行宮正殿北壁南向, **整理所**陳皷樂於前庭近南北向, 設宣傳官擧旗位於西階上近東西向, 本官設群老次於**洛南軒**東西. 至是, 上詣**洛南軒**陞座, 宣傳官擧旗, 樂作《與民樂令》, 爐烟升, 樂止. 近侍及執事官先行四拜, 隨駕老人領議政洪樂性等十五人·士庶老人三百七十四人以次入庭. 贊儀唱鞠躬·再拜, 至興·平身, 群老釋杖鞠躬, 樂作《洛陽春曲》, 拜, 一坐再拜, 至興·平身, 樂止. 引儀分引群老應陞殿者, 由東西階陞, 將入, 上曰: "予當爲群老興." 設座榻於幄次之前, 以示尊年之意. 洪樂性·**蔡濟恭**·金履素·李命植·李敏輔·沈頤之·李祖源·徐有臣·曺允亨以次扶杖陞殿. 通禮跪, 啓請爲群老興, 上興立於榻上, 還陞座. 分頒黃紬巾, 使群老繫杖頭, 各賜帛一段. 樂師二人陞自東西階, 進止楹外, 北向立, 唱《化日曲》曰:

化日遲遲, 鳩杖徐徐. 或抽朝籍, 或從村閭. 黃髮鬍鬢, 天笑以視. 汝等豈知? 寔慈宮賜. 慈宮荷天, 周甲載届. 用敷厥庶, 戶耆家艾. 王庸順志, 奉省珠丘. 旣進寶饌, 惠咸一州. 群老醉飽, 拜稽獻芹. 獻芹伊何? 北斗南山.【右議政**蔡濟恭**撰.】

上命奏琴瑟, 工歌登階, 先奏《天保》, 次奏《關雎》·《鹿鳴》. **整理使**進巾酒器, 樂作《與民樂令》, 進訖, 樂止. 進膳, 樂作《與民樂慢》, 執事者, 設群老饌, 樂止. 樂作《與民樂令》, 執事者, 散群老花訖, 樂止. 上曰: "厖眉皓首, 濟濟登筵, 黃耇台背, 于于盈庭. 此日此夕, 眞箇壽域. 昨日雖皆簪花, 今日參班者, 宜添一花, 以識不常有之盛會也." **整理使**將進第一爵, 樂作, 濟恭曰: "當此慶會錫類之恩, 至及於臣等區區之忱, 倍切崗陵之祝, 願遵稱兕之義, 以效山呼之禮矣," 上可之. 樂性曰: "臣忝居群老之首, 南山·北斗之巵, 臣當先進矣." 上曰: "卿言儘好. 卿其先之, 其次右相, 其次領敦, 其次判府事, 以下三重臣, 各進一爵, 可也." 樂性進爵山呼, 樂作《樂賓樂》《鹿鳴》·《天保曲》, 上興受爵. 濟恭進第二爵山呼, 樂作《樂賓樂》《關雎》·《鵲巢》. 履素進第三爵山呼, 樂作《樂賓樂》《南有嘉魚》·《南山有臺曲》. 命植·敏輔·頤之以次進爵山呼, 樂作鄕唐交奏, 濟恭曰: "今日盛擧, 千載所稀. 春臺壽域, 古聞其語, 今幸親見, 不勝懽忭矣." 上曰: "壽考之化, 由於慈德. 群老醉飽, 亦我慈宮之賜也. 今日群老之稱觴上壽, 皆歸之慈宮也." 仍書下御製詩一篇, 命樂性書揭于**洛南軒**, 命與筵諸臣賡進. 賜饌, 群老皆起舞, 呼千歲. 命撤群老饌, 各收褁膳餘而出, 俱復拜位. 樂作《洛陽春曲》, 群老拜, 一坐再至興·平身如初, 樂止. 通禮跪禮畢.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4일(병신) 2번째기사>

정치/왕실

옹성·장안문·방화수류정·용연 등을 두루 관람하다

상이 옹성(甕城)을 두루 관람하고 **장안문(長安門)** 누각에 올라갔다가 도로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으로 가서 **용연(龍淵)**을 굽어본 뒤에 도로 **낙남헌** 길을 따라 안으로 돌아왔다.

○上周覽甕城, 上**長安門**樓, 還詣**訪花隨柳亭**, 俯覽**龍淵**, 還從**洛南軒**還內.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4일(병신) 3번째기사>

정치/왕실

득중정에서 활을 쏘고 매화포를 관람하다

상이 **득중정(得中亭)**에서 활을 쏘고 매화포(埋火砲)를 관람하였다.
○御射于**得中亭**, 觀埋火砲.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4일(병신) 4번째기사>

정치/왕실
혜경궁을 모시고 행차를 서울로 돌리다
상이 **혜경궁**(**惠慶宮**)을 모시고 행차를 서울로 돌렸다. 사근(**肆覲**) 행궁에서 잠시 머물러 점심 수라를 들고 밤에 시흥(始興) 행궁에서 유숙하였다.
○丁酉/上陪**惠慶宮**回鑾, 晝停于**肆覲行宮**, 夕次始興行宮.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5일(정유) 1번째기사>

정치/왕실
행차가 시흥을 지날 때 부로를 불러 백성의 고통을 물어보다
상이 **혜경궁**을 모시고 용양(龍驤) 봉저정(鳳翥亭)에서 잠시 머물러 점심 수라를 들고 환궁하였다. 행차가 시흥을 지날 때 부로(父老)를 불러 보고 백성의 고통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하교하기를, "그냥 보통으로 행차가 지나가는 지역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풀 방도를 생각해 주기 마련이다. 그런데 더구나 오늘의 경우는 자궁의 행차를 모시고서 재차 시흥 행궁에서 묵기까지 하였고 돌아가는 길이 모두 편안하기만 한데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경사스럽고 다행스럽게만 느껴지는 나의 마음으로 볼 때 백성들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시흥 백성들을 위해 반드시 요역(徭役)을 견감해 주고 폐단을 제거해 줌으로써 자궁의 은혜를 펼쳐 보여주는 동시에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 더구나 행차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건대 그저 행차의 위의(威儀)를 구경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은택을 입고자 기대하는 심정들이라 할 것이다. 그들이 이미 행차를 바라보았고 나 역시 그들을 불러 물어보게 된만큼 정말 고질적인 병폐와 제거해야 할 폐단이 있다면 숨김없이 모두 진술토록 하라."
하고, 이어 지난해 추수 때 상환 기한을 연기시켜 주었던 환곡(還穀)을 일체 탕감해 주라고 명하였다.
○戊戌/上陪**惠慶宮**, 晝停于**龍驤鳳翥亭**, 還宮. 駕過始興, 召見父老詢瘼. 敎曰: "尋常駕過之地, 必思施惠之方, 況於今日陪奉慈駕, 再度經宿於始興行宮, 回鑾萬安, 以予慶幸之心, 何惜於民? 爲始興民, 必欲蠲其徭役, 祛其弊瘼, 以布慈恩, 以副民望. 況群民望幸之心, 非徒欣瞻羽旄也, 冀有沾溉也. 爾旣望幸, 予旣俯詢, 如有切痼之瘼·可祛之弊, 悉陳無隱." 仍命前秋還穀之停退者, 一倂蕩滅.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6일(무술) 1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부 성역 총리사 채제공에게 급복과 가자, 미륵현 지지대 등의 일을 유시하다
수원부 성역(城役)을 총리(摠理)한 대신 채제공(蔡濟恭)에게 유시하였다. "**이번에 화성(華城) 백성들에게 햇수를 늘려 급복(給復)해 주는 것과 노인들에게 가자(加資)하는 교지를 내려주는 일**에 대해서는 경이 조정에 돌아오기 전에 유수(留守)와 상의해서 즉시 효유(曉諭)하기도 하고 더러 나눠주기도 하도록 하라. 그리고 **현륭원(顯隆園)** 아래에 거주하는 백성들과 성곽 안팎에 사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경이 유수와 함께 가서 전교(傳敎)의 본뜻을 하나하나 효유해 주도록 하라.

매번 **현륭원**을 참배하고나서 돌아오는 길에 **미륵현(彌勒峴)**에 당도할 때면 고삐를 멈추고 먼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오래도록 떠나지 못한 채 나 자신도 모르게 말에서 내려 서성이곤 하였다. 이번 행차에서 **미륵현**의 윗쪽에 앉은 자리를 빙 둘러 대(臺)처럼 되어 있는 곳을 보고는 **지지대(遲遲臺)**라고 명명하였다. 이 뒤로는 행행(幸行)하는 노정(路程)에 **미륵현** 아래에다 지지대라는 세 글자를 첨가해 넣도록 할 일을 본부(本府)와 **정리소(整理所)**에서 잘 알아서 하도록 하라."

○諭摠理大臣**蔡濟恭**曰: "今番**華城**民人, 加年給復及老人加資官敎, 卿於還朝前, 與留守相議, 卽爲曉諭, 或頒給, 而園底城內外民人, 則卿與留守眼同, 以傳敎本意, 一一曉諭. 每於省園之路, 還到**彌勒峴**, 停轡遠瞻, 久而不能發, 自不覺下騎彷徨. 今幸見峴上環席地而臺者, 命其臺曰遲遲. 此後幸行路程**彌勒峴**之下, 添入**遲遲臺**三字, 令本府及**整理所**知悉."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윤2월 16일(무술) 2번째기사>

정치/행정

서유린을 홍문관 제학으로 삼다

서유린(徐有隣)을 홍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以徐有隣爲弘文館提學.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6일(무술) 3번째기사>

정치/행정

정리소의 대신·낭청·아전·장교·나졸 등 전원에게 차등있게 시상하라고 전교하다

하교하였다. "천 년을 가도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맞이하여 국조(國朝)에서 처음 행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그리하여 백관이 술잔을 올리고 노인들이 장수하기를 축원하였는데 행행(幸行)한 8일 동안 자궁의 행차가 편안하기 그지없었으니 이보다 더 큰 국가의 경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기쁘고 다행스럽기만 한 지금의 나의 심정으로 볼 때 자궁의 행차를 수행하고 호위한 사람들이라면 비록 말단 관리나 하인들이라 하더라도 모두 그 수고에 보답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더구나 **정리소**의 신하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또 나아가 **정리소**를 설치한 목적이 경상 비용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계속 조처해 나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백관을 관장하는 사무를 진행시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몇 개월 동안이나 명을 받들어 집행해 왔고 보면, 그 체모의 중대함이 **정리사**(**整理使**)를 으레 겸했던 경우와는 더더욱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낭청(郎廳)과 아전, 장교와 나졸(羅卒)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두가 있는 힘을 다하여 뛰어다니면서 각자 정성을 바쳤는데, 이것 역시 모두가 자궁의 덕이 미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니 자궁의 뜻을 받들어 보답하고 격려해야 할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어찌 일반적인 의전(儀典)만 따를 수 있겠는가.

총리(摠理)한 대신 의정부 우의정 **채제공(蔡濟恭)**과 술을 따라 올린 대신 의정부 영의정 홍낙성(洪樂性)과 광은 부위(光恩副尉) 김기성(金箕性)에게 각각 구마(廐馬) 1필(匹)을 면급(面給)하라. **정리소** 당상인 행 사직(行司直) 심이지(沈頤之)와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과 호조 판서 이시수(李時秀)와 행 부사직 서유대(徐有大)·서용보(徐龍輔)·윤행임(尹行恁)에게 각각 숙마(熟馬) 1필을 면급하라. 음식상을 담당한 당상인 경기 감사 서유방과 호조 판서 이시수와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심태(趙心泰)**와 행 부사직 서유대, 그리고 수건을 올린 당상인 행 부사직 서용보와 꽃을 올린 당상인 행 부사직 윤행임, 그리고 장악원 제조(掌樂

院提調) 심이지 등에게는 모두 반숙마(半熟馬) 1필을 사급(賜給)하라.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차등있게 시상하라."
○敎曰: "値千載難逢之會, 擧國朝初行之禮. 百僚稱觴, 群老獻年, 行幸八日, 鑾蹕萬安, 邦家之慶, 孰大於是? 以予此時欣幸之心, 凡在慈宮陪扈之屬, 雖一官一隷之微, 皆欲償其勞而同其慶, 況整理諸臣乎? 又況**整理所**之設, 不煩經費, 積有措置. 事務之管攝百司, 奉行之首尾數朔, 體貌之重, 尤非例兼**整理使**之比, 而郎吏·校卒, 擧皆殫竭奔走, 各效其誠, 亦莫非慈德所暨, 予所以對揚酬奬, 何循常典? 摠理大臣議政府右議政**蔡濟恭**·進酌大臣議政府領議政洪樂性·光恩副尉金箕性各廐馬一匹面給. 整理堂上行司直沈頤之·京畿監司徐有防·戶曹判書李時秀·行副司直徐有大·徐龍輔·尹行恁各熟馬一匹面給. 饌卓檢擧堂上京畿監司徐有防·戶曹判書李時秀·**水原留守趙心泰**·行副司直徐有大·進巾堂上行副司直徐龍輔·進花堂上行副司直尹行恁·掌樂提調沈頤之皆半熟馬一匹賜給, 其餘施賞有差."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6일(무술) 4번째기사>

2. 일성록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9일(신묘)
강궁을 나가기 전에 시위(侍衛)를 먼저 예합(詣閤)하게 하고 거행하는 모든 절차를 충분히 살피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현륭원(顯隆園)**에 거둥하기 위해 신하들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궁을 나가기 전에 먼저 자전(慈殿)께 배알(拜謁)할 것이니, 경들은 남아 기다리라. 시위는 먼저 예합하게 하고 반차(班次) 또한 정제(整齊)하여 모든 일을 곳에 따라 잘 검칙하여, 궁을 나갈 때 혼잡해지는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
○ 이어 말을 타고 수정전(壽靜殿)에 나아가 잠시 뒤에 영춘헌(迎春軒)에 돌아왔다. 병방승지(兵房承旨)는 앞으로 나아오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동가(動駕)할 때 거행하는 모든 절차가 오로지 군사방 승지(軍士房承旨)에게 달려 있으니, 일마다 감독하고 신칙하여 혹 소홀한 점이 없게 하라." 하고, 윤행임(尹行恁)에게 전교하기를, "이제 자궁(慈宮)을 모시고 **화성(華城)**에 나아가는데, 길은 거의 100리에 가까우며 날짜는 거의 8일을 넘을 듯하다. 이에 매우 기쁘면서도 불안하여 감히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모든 각 참(站)의 수라간(水刺間)에서 구들에 불을 붙이고 진찬(進饌)을 배설(排設)하는 것을 오의상(吳毅常), 이해우(李海愚) 등으로 하여금 나누어 간검(看檢)하게 하고, 백관(百官)의 반차와 군병(軍兵)의 대오(隊伍)를 만드는 것 및 그 밖의 절차들은 서영보(徐英輔), 이동선(李東善) 등으로 하여금 나누어 간검하게 하여, 충분히 살펴 혹시라도 방심하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강命出宮前侍衛先令詣閤擧行諸節十分詳審
목 **顯隆園**擧動入侍時敎曰出宮前當先往拜慈殿卿等留待侍衛先令詣閤班次亦爲整齊一應諸事隨處檢飭俾無出宮時雜還之弊○仍乘馬詣壽靜殿少頃還御迎春軒命兵房承旨進前敎曰動駕時擧行諸節專在於軍士房事事董飭罔或少忽敎尹行恁曰今陪慈宮詣**華城**道路則殆近百里日子則恰過八日慶忭之中予心洞洞不敢少弛凡在各站水刺房堗點火進饌排設令 吳毅常 李海愚等分排看檢百官班次軍兵作隊其餘諸節令徐英輔 李東善等分排看檢十分詳審毋或放心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9일(신묘)

강자궁을 모시고 **현륭원**에 나아갔다.

목○ 나는 곤룡포(袞龍袍)에 철릭(帖裏)을 입고 말을 탔으며, 자궁은 가교(駕轎)를 타셨는데, 두 군주(郡主)[88]가 탄 쌍교(雙轎)가 뒤에 있었다. 영춘문(迎春門)을 경유하여 돈화문(敦化門)으로 나와 숭례문(崇禮門)에 이르렀다. 전교하기를, "의장(儀仗)은 한강 변에 이른 뒤에 남아 있다가 궁으로 돌아올 때 또 한강 변에서 대령하라. 고취(鼓吹)는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에서 **진수정(眞水亭)**까지는 **장용 내영(壯勇內營)**이 대령하고 **진수정**에서 **화성**까지는 **장용 외영(壯勇外營)**이 대령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길 양쪽에서 구경하는 도민(都民)에 대해 금오(金吾)를 신칙하여 삼가 금지하지 말도록 하라. 나아가는 길에 향민(鄕民)들도 필시 대부분 이와 같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즐거이 바라보려는 뜻에서 그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상언(上言)이나 격쟁(擊錚)을 하려는 마음에서 그리할 수 있으니 또한 금지하지 말라." 하였다.

자궁의 가교와 어가(御駕)가 주교(舟橋)를 타고 홍살문(紅箭門)에 이르니 주교 대장(舟橋大將) 이한풍(李漢豐)이 대기치(大旗幟)를 영솔하고 작문(作門)에서 공경히 맞이하였다. 내가 말에서 내려 자궁의 가교 앞에 나아가 문후(問候)를 드리고 다시 말을 타고 출발하려 하였는데, 두세 사람을 태운 작은 배가 강물을 가로질러 지나고 있었다. 내가 이익운(李益運)에게 전교하기를, "많은 백성들이 난가(鑾駕)의 행렬을 즐겨 구경하여 산과 들을 가득 메워 떠들썩하게 구는 것은 타고난 천성에서 나온 것임을 참으로 알겠다. 그러므로 비록 금하지 말라고 했지만 주교가 지척에 있는 거리에서 어찌 감히 배를 타고 시끄럽게 지나갈 수 있는가. 기강과 크게 관계되는 일이니, 주교 대장을 기과(記過)하라."

하였다. 주교를 건너 **봉저정(鳳翥亭)**에 이르러 내가 말에서 내려 자궁의 가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심이지(沈頤之)가 낭청 김용순(金龍淳)을 이끌고 자궁의 오선(午膳)을 올렸는데 내가 하나하나 친히 살핀 다음 올렸다. 잠시 뒤에 심환지(沈煥之)가 군령(軍令)을 올렸다. 나는 군복(軍服)을 갖추고 자궁은 가교를 타시고 출발하였다. **만안현(萬安峴 만냥고개), 번대방평(蕃大坊坪), 문성동(文星洞)** 앞길을 경유한 다음, 내가 말에서 내려 자궁 앞에 나아가 문후를 드렸다. 윤행임에게 먼저 시흥현(始興縣)으로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검칙하라고 전교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내가 먼저 행궁에 나아가 친히 자궁께서 거처하실 곳의 구들이 어떠한지 살펴볼 터이니, 시위와 백관은 이전처럼 자궁의 가교를 모시고 병방 승지와 사관 1인만 뒤따라오라." 하였다. 이어 먼저 시흥현 문에 나아가 말에서 내려 **시흥당(始興堂)**에 들어가 두루 살펴보고 주방(廚房)에 나아가 진찬할 음식을 살펴본 뒤 다시 말을 타고 현문(縣門) 밖 막차(幕次)에 나아갔다.

전교하기를, "본영(本營)으로 당마(塘馬)를 안배하여 세우고 자궁의 가교가 어디쯤 오는지 차례차례 알려 오게 하라." 하였다. 자궁의 가교가 현문 밖에 이르자 내가 국궁(鞠躬)하였다가 평신(平身)하였다. 이어 말에 올라 자궁의 가교를 따라 **시흥당**에 나아가니, 심이지 등이 낭청 홍대영(洪大榮)을 거느리고 자궁의 석선(夕膳)을 올렸는데 내가 손수 받들어 올리기를 노량(鷺梁) 행궁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하였다. 잠시 뒤에 막차로 나왔다.

전교하기를, "날씨가 청명하고 자전의 체후도 평안하시니,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을 이루 표현하지 못하겠다. 오늘 구경 온 서울과 지방의 백성들이 담장처럼 늘어섰으니, 민심을 크

---

88) 두 군주(郡主) : 청연군주(淸衍郡主)와 청선군주(淸璿郡主)이다.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장녀와 차녀로, 각각 광은위(光恩尉) 김기성(金箕性), 흥은위(興恩尉) 정재화(鄭在和)에게 하가(下嫁)하였다.

게 알 만하다.” 하니, 서유방(徐有防)이 아뢰기를,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아이를 이끌고 와 난가(鑾駕)의 행렬을 다투어 바라보고 모두 성인의 효심을 우러러보았으니, 기쁜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하였다.

강陪慈宮詣**顯隆園**

목御衮龍帖裏乘馬慈宮御駕轎兩郡主雙轎在後由迎春門出敦化門至崇禮門敎曰儀仗則至江頭落後還宮時又於江頭待令鼓吹則自龍驤 鳳翥亭至眞水亭 壯勇內營待令自眞水亭至**華城**外營待令又敎曰都民夾路觀光者申飭金吾愼勿禁止前路鄕民必多如是而或出欣瞻之意或出望幸之心亦勿禁止也慈駕御駕乘舟橋至紅箭門 舟橋大將李漢豐領率大旗幟作門祇迎予下馬詣慈駕前問候還乘馬將進發有一小艇載三兩人橫流而過予敎李益運曰群黎百姓欣瞻羽旄漫山蔽野喧聒雜沓固知出於秉彝故雖令勿禁舟橋咫尺之地馬敢操舟戛過大闕紀網舟橋大將記過渡舟橋詣鳳翥亭予下馬隨慈駕入內沈頤之率郎廳金龍淳進慈宮午膳予一一親審以進少頃沈煥之進軍令予具軍服慈宮御駕轎進發由萬安峴蕃大坊坪文星洞前路予下馬詣慈宮前問候敎行恁先詣始興縣檢飭諸事仍敎曰予當先詣行宮親審慈宮所御房堗之如何侍衛及百官依前陪從於慈駕只兵房承旨 史官一人隨後仍先詣始興縣門降馬入始興堂周審詣廚房視膳還乘馬出縣門外幕次敎曰令本營排立塘馬慈宮駕轎前路次次知入慈駕到縣門外予鞠躬平身仍上馬隨詣始興堂頤之等率郎廳洪大榮進慈宮夕膳予手捧以進一如鷺梁行宮少頃出御幕次敎曰日氣淸和慈候萬康不勝慶幸今日京外之民人觀光者如堵如墻民情大可見也徐有防曰扶老携幼爭瞻羽旄咸仰聖人之孝不勝蹈舞之誠矣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9일(신묘)

강시흥 현령(始興縣令) 홍경후(洪景厚)를 3품직에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자궁을 모시고 본현에 경숙(經宿)하려고 하는데, 해우(廨宇 관아(官衙))를 새로 짓고 방사(房舍)가 편안하니, 지방관의 공로가 크다. 보답하고 권장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하니 시흥 현령 홍경후를 3품직에 제수하고 수향(首鄕), 수교(首校), 수리(首吏)는 첩가(帖加)를 작성해 주라. 그 나머지 교리(校吏)는 **정리소(整理所)**로 하여금 등급을 나누어 시상한 뒤 초기(草記)하게 하라.” 하였다.

강命始興縣令 洪景厚三品職除授

목敎曰陪慈宮將經宿本縣廨宇新建房舍安穩地方官之校勞大矣宜有酬勤之典始興縣令 洪景厚三品職除授首鄕首校首吏帖加成給其餘校吏令**整理所**分等施賞後草記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9일(신묘)

강예조 판서를 보내 부자(夫子 공자(孔子))의 영정(影幀)에 작헌례(酌獻禮)를 대신 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우리 부자의 영정을 모신 문묘(文廟)가 **화성**에 세워진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저 많은 선비를 이끌고 교궁(校宮)에 공경히 배알하고 사우(祠宇)를 삼가 바라보게 되었으니[89], 더욱 공자의 순수하고 밝은 덕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내일 대가(大駕)가 **화성**에 도착하는 때에, 예조 판서를 보내 작헌례를 대신 행하게 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제물(祭物)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 감사에게 연석(筵席)에서 하교한 것이 있다. 제관(祭官)은 전적(典籍) 공윤항(孔胤恒)을 대축(大祝)으로 삼고 내섬시(內贍寺) 관원(官員) 공윤동(孔胤東)과 **장용영** 초관(**壯勇營**哨官) 공술조(孔述祖)를 재랑(齋郎)과 축사(祝

89) 우리 …… 되었으니 : 이달 11일 문묘(文廟)에 전알(展謁)하러 가게 된 것을 말한다. 《日省錄 正祖 19年 閏2月 11日》

史)로 삼아 수향(受香)하게 하라." 하였다.

강夫子影幀命遣宗伯替行酌獻禮

목敎曰吾夫子影幀之妥建**華城**夫豈偶然率彼多士祗謁校宮而恭瞻祠宇益不禁江漢秋陽之思明日駕到**華城**日遣宗伯替行酌獻禮事分付該曺祭物已有筵敎於畿伯而祭官則以典籍 孔胤恒爲大祝 內贍寺官孔胤東 壯勇哨官 孔述祖爲齋祝使之受香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9일(신묘)

강민회묘(愍懷墓), 문정공(文貞公) 강석기(姜碩期)와 정경부인(貞敬夫人) 신씨(申氏)의 묘, 연령군(延齡君)의 묘, 명빈(褓嬪)[90]의 묘, 양녕대군(讓寧大君)의 묘, 후령군(厚寧君)의 묘, 수천군(秀泉君)·청기군(靑杞君)[91]·함천군(咸川君)의 묘, 창원군(昌原君)·덕진군(德津君)의 묘, 충현서원(忠賢書院), 김간(金榦)의 묘, **매곡서원(梅谷書院)**, **명고서원(明皐書院)**, **청해백(靑海伯)**의 사우(祠宇), **이고(李皐)**의 묘에 치제(致祭)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현륭원**에 공경히 배알하고 우리 자궁을 모셨는데, 날씨가 따뜻하고 화창하며 자궁의 체후 또한 편안하시니,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을 이루 형용할 수가 있겠는가. 예사롭게 난가가 지나가는 경우에도 감흥이 일어 뜻을 보이는 일이 있는데 더구나 올해이 행행(幸行)에 있어서랴. 시흥(始興)으로 길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저 상설(象設)[92]을 보니, 내 그리움이 그지없다. 15일에 승지를 보내 민회묘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헌관과 여러 집사들은 한식제(寒食祭) 때의 제관으로 하라. 문정공 강석기와 정경부인 신씨의 묘는 일국(一局)에 함께 있으니, 이어 이 헌관으로 하여금 같은 날 치제하게 하라. 종실(宗室)을 돈독히 하고 어진 이를 본받는 것은 나라의 급선무이다.

숙종(肅宗)의 빈어(嬪御)[93]는 열조(列祖)의 종영(宗英)이니 내가 친척으로 친하게 여기는 바이고, 양녕군(讓寧君)과 연령군의 지체는 더욱 달라야 하니, 비석이 눈에 들어오매 내 그리움이 더해진다. 도학(道學), 절의(節義), 훈업(勳業), 경술(經術)의 이름이 사서(史書)에 전해지고, 명망이 조야(朝野)에 높은 자의 경우에는 그 사당과 묘에 또한 모두 치제하게 하라.

시흥 지방의 연령군의 묘와 명빈의 묘에는 종신(宗臣)을 보내 내일 치제하게 하고, 양녕대군의 묘와 후령군의 묘에는 승지를 보내 내일 치제하게 하라. 수천군, 청기군[94], 함천군의 묘와 창원군의 묘, 덕진군의 묘에는 입시한 사관(史官)을 보내 내일 치제하게 하라, 태사(太師) 강감찬(姜邯贊), 장령(掌令) 서견(徐甄), 문충공(文忠公) 이원익(李元翼)이 함께 모셔진 충현서원에는 각신(閣臣)을 보내 또한 내일 치제하게 하라. 과천(果川) 행궁(行宮) 근처의 고 찬선(贊善) 김간의 묘에는 예조 낭청을 보내 난가(鑾駕)가 지나간 뒤 치제하게 하라. **화성** 지방의 선정(先正)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이 홀로 모셔져 있는 **매곡서원** 및 문효공(文孝公) 조익(趙翼)·문간공(文簡公) 조복양(趙復陽)·고 부제학 조지겸(趙持謙) 3대가 함께 모셔진 **명고서원**에는 승지를 보내 난가가 도착한 날 치제하게 하라. 청해백 양

90) 명빈(褓嬪) : 숙종의 후궁이자 연령군(延齡君) 이훤(李昍)의 생모인 박씨(朴氏)를 말한다.

91) 청기군(靑杞君) : 원문은 '靑妃'인데, 《홍재전서(弘齋全書)》 권23 〈수천군 정은(秀泉君貞恩) 청기군 표(靑杞君彪) 함천군 억재묘(咸川君億載墓) 치제문(致祭文)〉 등 다수 용례에 의거하여 '妃'를 '杞'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92) 상설(象設) : 능(陵)이나 원(園)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석물과 시설을 이른다.

93) 숙종(肅宗)의 빈어(嬪御) : 숙종의 후궁인 명빈(褓嬪) 박씨(朴氏)를 말한다.

94) 청기군 : 원문은 '靑妃'인데, 《홍재전서(弘齋全書)》 권23 〈수천군 정은(秀泉君貞恩) 청기군 표(靑杞君彪) 함천군 억재묘(咸川君億載墓) 치제문(致祭文)〉 등 다수 용례에 의거하여 '妃'를 '杞'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렬공(襄烈公) 이지란(李之蘭)의 사우에는 수가하는 장관(將官)과 아장(亞將) 중에서 헌관(獻官)으로 삼아 모레 치제하게 하라. **팔달산**주인(**八達山**主人) 이고의 묘에는 모레 아경(亞卿)을 보내 치제하게 하라. 제문(祭文)을 모두 지어 내려보내 예조와 경기 감영으로 하여금 통지하게 하라."
하였다. 어제(御製)를 써서 내렸다. 또 전교하기를,
"민회묘 및 문정공 강석기와 정경부인 신씨 묘의 치제관은 행 부사직(行副司直) 권평(權坪)이 나아가되 이미 한식제의 헌관이 되었으니 제문과 향축(香祝)을 시흥 객사에 받들어 남겨 두어, 수궁 승지(守宮承旨)[95]로 하여금 권평에게 알려 여기에 와서 배진(陪進)하게 하라. 양녕대군의 묘와 후령군의 묘에는 병조 참지 정약용(丁若鏞)을 가승지(假承旨)로 삼아 나아가게 하고, 연령군의 묘와 명빈의 묘에는 안춘군(安春君) 이침(李)이 나아가라. 청기군의 묘에는 사관(史官) 서준보(徐俊輔)가, 수천군과 함천군의 묘에는 사관 유원명(柳遠鳴)이, 창원군과 덕진군의 묘에는 사관 황기천(黃基天)이, 충현서원에는 도승지 이조원(李祖源)이, 고 참찬 김간의 묘에는 예조 정랑 백경해(白慶楷)가, 청해백 이지란의 묘(廟)에는 훈련도감 중군(訓鍊都監中軍) 윤득규(尹得逵)가, 팔달처사 이고의 묘에는 재신(宰臣) 조진관(趙鎭寬)이 나아가라." 하였다.

강命愍懷墓 文貞公 姜碩期貞敬夫人申氏墓延齡君墓禛嬪墓讓寧大君墓厚寧君墓秀泉靑妃 咸川君墓昌原君德津君墓忠賢書院金幹墓梅谷書院 明皐書院 靑海伯祠宇李皐墓致祭

목敎曰祇拜于園陪我慈宮日候暄暢起居康寧中心喜幸何可容喻尋常駕過之地猶有興感示意之擧況是年是行乎取路始興繄自今番瞻彼象設予懷無已十五日遣承旨行祭于愍懷墓 獻官諸執事用寒食祭官 文貞公 姜碩期 貞敬夫人申氏墓同在一局仍令此獻官同日致祭敦宗象賢有國先務肅祖之嬪御列祖之宗英予所親親讓寧延齡之地處尤當別異牲繫入瞩倍增我思越若道學節義勳業經術之名垂竹帛望隆朝野者若祠若墓亦宜一體酹侑始興地方延齡君墓禛嬪墓遣宗臣明日致祭讓寧大君墓與厚寧君墓遣承旨明日致祭秀泉靑妃 咸川君墓昌原君墓德津君墓遣入侍史官明日致祭姜太師徐掌令 李文忠竝享之忠賢書院遣閣臣亦於明日致祭果川行宮近處故贊善 金幹墓遣禮郎駕過後致祭**華城**地方先正宋文正獨享之梅谷書院及文孝公 趙翼 文簡公 趙復陽故副學 趙持謙三世竝享之明皐書院遣承旨致祭于駕到日靑海伯襄烈公 李之蘭祠宇隨駕將官亞將中爲獻官再明日致祭**八達山**主人李皐墓再明日遣亞卿致祭祭文竝撰下令該曹畿營知委書下御製又敎曰愍懷墓及文正公 姜碩期貞敬夫人申氏墓致祭官 行副司直 權坪進去而旣是寒食祭獻官祭文香祝奉留于始興客舍使守言承旨通于權坪來此陪進讓寧大君墓厚寧君墓兵曹參知 丁若鏞以假承旨進去延齡君墓禛嬪墓安春君棚進去靑杞君墓史官 徐俊輔進去秀泉君 咸川君墓史官 柳遠鳴進去昌原君 德津君墓史官 黃基天進去忠賢書院都承旨 李祖源進去故參贊 金幹墓禮曹正郎 白慶楷進去靑海伯李之蘭廟都監中軍 尹得逵進去**八達**處士李皐墓宰臣趙鎭寬進去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9일(신묘)

강창빈(昌嬪)의 묘에 승지를 보내 공경히 향사(享祀)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노량으로 길을 잡아 가니 선조(先祖)의 산소가 눈에 들어와 목릉(穆陵)에 대한 그리움이 바로 절실해졌다.[96] 창빈의 묘에 삼가 승지를 보내 공경히 향사하여 내

95) 수궁 승지(守宮承旨) : 원문은 '守言承旨'인데, 《일성록》의 다수 용례에 의거하여 '言'을 '宮'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96) 노량으로 …… 절실해졌다 : 선조(先祖)의 산소는 창빈(昌嬪)의 묘를 말하는 것으로, 창빈은 선조(宣祖)의 할머니이며 목릉(穆陵)은 선조(宣祖)를 가리킨다. 즉, 창빈의 묘를 지나면서 선조(宣祖)에 대한 그리움이 절실해짐을 말한 것이다.

가 올해 이 행차를 하여 선조를 추모하고 근본에 보답하려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창빈묘의 헌관은 전 승지 이당(李溏)을 가승지로 차하(差下)하고 패초(牌招)하여 나아가게 하라." 하였다.

강 昌嬪墓命遣承宣敬薦芬苾

목敎曰路出鷺梁松楸入望穆陵之思卽地倍切昌嬪墓謹遣承宣敬薦芬苾以寓予是年是行追遠報本之意又敎曰昌嬪墓獻官前承旨 李溏 假承旨差下牌招進去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9일(신묘)

강승지, 사관(史官), 각신(閣臣), 시위하는 신하들에게 선찬(宣饌)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승지들이 돌아가면서 야경(夜更)을 정하여 지키고, 시위는 잠시 물러가라." 하고, 이어 승지, 사관, 각신, 시위하는 신하들에게 선찬하였다.

○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자궁께서 하사한 것이니, 각기 그 은덕(恩德)을 배불리 받으라." 하였다.

강宣饌承史閣臣侍衛諸臣

목敎曰諸承旨輪回定更侍衛權退仍宣饌于承史 閣臣侍衛諸臣○口敎曰此慈宮所賜也其各飽德也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9일(신묘)

강입직

목검교대교 서유구(徐有榘)

검서관 이집기(李集箕)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0일(임진)

강비가 내렸다.

목○ 묘시(卯時)부터 미시(未時)까지 내린 비로 측우기의 수심이 1치 2푼이었다.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10일(임진)

강자궁(慈宮)을 모시고 시흥(始興)에서 **화성(華城)** 행궁(行宮)으로 나아갔다.

목○ 자궁께서 가교(駕轎)를 타고 출발하시어 내가 군복(軍服)을 갖추고 뒤를 따랐다. **대박산(大博山)** 앞 들판, **안양교(安養橋)**[97], **장산우(長山隅 장산모루)**, **청천평(淸川坪 맑은내들)**을 경유하였다. 내가 말에서 내려 자궁의 가교 앞에 나아가 문후(問候)를 드린 다음, 전교하기를, "**정리사(整理使)** 윤행임(尹行恁)은 먼저 주정소(晝停所)에 나아가 행궁의 여러 일을 정돈하라. 나는 먼저 **사근평(肆覲坪)** 주정소에 나아갈 터이니, 병방 승지와 사관(史官) 1인이 수가(隨駕)하라." 하였다. **원동천(院洞天)**을 경유하여 행궁의 **응란헌(凝鑾軒)**에 이르렀다. 구들을 두루 살피고, 잠시 뒤에 문밖 막차(幕次)[98]로 나왔다. 당마(塘馬)로 하여금 자궁의 가교가 어디쯤 오는지 급히 보고하게 하였다. 자궁의 가교가 이르자 이전의 의식과 같이 공경히 맞이하고 행궁에 따라 들어갔다. **정리사 서유방**(徐有防)·심이지(沈頤之)·이시수(李時秀)·서용보(徐龍輔)·윤행임과 낭청 이노수(李潞秀)가 자궁의 오선(午膳)을

97) 안양교(安養橋) : 원문은 '安陽橋'인데, 〈경기도시흥군읍지지도〉에 의거하여 '陽'을 '養'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京畿道邑誌 始興郡邑誌 京畿道始興郡邑誌地圖》

98) 막차(幕次) : 원문은 '墓次'인데, 《일성록》의 다수 용례에 의거하여 '墓'를 '幕'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올렸는데 내가 직접 살핀 뒤 받들어 올렸다. 내가 이르기를, “비록 비가 내리지만 행궁이 누추하고 허술하니, 자궁을 받들어 모시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경숙(經宿)하기는 어렵다. 또 백관(百官)과 삼군(三軍)이 축축한 한데서 지내는 것이 염려된다. 이곳에서 **화성**까지 거리가 30리(里)도 채 안 되니 오늘 나아갈 수 있겠다. 시위하는 군병은 속히 교대로 밥을 먹으라.” 하였다.

병조 판서 심환지(沈煥之)가 군령(軍令)을 올렸다. 내가 우구(雨具)를 갖추고 자궁의 가교를 따라 출발하였다. **미륵현(彌勒峴)**에 이르자, 비가 많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다. 내가 말에서 내려 자궁의 가교를 따라가며 친히 가교를 부축하였다. **미륵현** 아래에 이르러 다시 말을 탔다.

괴목정교(槐木亭橋)를 경유해 **진목정(眞木亭)**에 나아가니, **장용 외영(壯勇外營)**의 **친군위(親軍衛)**가 길 양쪽에서 난가(鑾駕)를 맞이하였다. **총리 대신(摠理大臣)** **채제공(蔡濟恭)**이 여령(女伶), 고취(鼓吹), 세악(細樂)을 거느리고 길 왼쪽에서 공경히 맞이하였다. 노차(路次)에 포장(布帳)을 설치하고 안에 막차를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내가 말에서 내려 자궁의 가교를 모시고 잠시 머물러 문후를 드렸다. **정리사**에게 미음다반(米飮茶盤)을 내오라고 명하여 내가 손수 자궁의 가교 안으로 받들어 올렸다. 다시 말을 타고 자궁의 가교를 모시고 출발하였는데, 고취와 여령이 전도(前導)하였다.

장안문(長安門)을 몇 리 정도 남겨 두고, **정리사** 윤행임에게 먼저 **화성 행궁**에 나아가 여러 일들을 정돈하라고 명하였다. 병조 판서 심환지에게 전교하기를, “경은 어전(御前)의 대중군(大中軍)[99]이다. 난가가 **화성** 성문에 도착하면, 응당 군문에 들어가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또 마땅히 주필(駐蹕)을 청해야 하니, 먼저 장신(將臣)이 영접(迎接)하는 곳에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막차가 길 왼쪽에 설치되자, 내가 갑주(甲冑)를 갖추고 다시 말을 타고 작문(作門) 밖에 도착하였다. 병조 판서 심환지가 무릎을 꿇고 기고(旗鼓)가 앞에 있다고 계품(啓稟)하고 주필하기를 청하였다. 내가 **장안문**으로 들어가 종가(鍾街)를 경유하여 행궁 **봉수당(奉壽堂)**에 이르렀다. 자궁의 가교를 따라 **장락당(長樂堂)**에 들어가니, **정리사** 서유대(徐有大)·심이지·서유방·이시수·서용보·윤행임이 자궁의 석선(夕膳)을 올렸는데 내가 친히 살펴 받들어 올렸다.

○ **장용 외사(壯勇外使)** **조심태(趙心泰)**에게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성부(城府)를 신축하면서 감독하고 신칙한 경의 공이 가상하다. 그 노고를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으니 다 잘한 것 중에서 미진한 것을 가지고 책면(責勉)해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 내가 **유여택(維輿宅)**에 나아가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오늘 군병들이 비를 맞게 되는 것이 비록 염려스러웠으나 나는 유독 비가 또한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이번 행행(幸行)은 지극히 성대한 행사이고 이 예는 큰 의절(儀節)이기에, 일마다 반드시 모두 원만하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어제 따뜻한 날씨에 이미 행행을 시작하였고 내일은 경례(慶禮)가 많을 것이다. **사근평** 행궁에서 여기 **화성**까지 불과 수십 리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서 잠깐 비가 오다가 곧 개어서 깨끗하게 길을 청소해 주었으니,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더구나 농사일이 시작될 즈음에 밭두둑을 적셔 주었으니 어찌 농부에게 기쁜 일이 되지 않겠는가.”

---

99) 대중군(大中軍) : 1749년(영조25)에 《병장속도설(兵將續圖說)》을 지어, 금위영을 나누어 오영(五營)의 제도처럼 만들고 병조 판서가 대중군이 되어 다 통솔하게 하였다. 이를 병조 용호영(兵曹龍虎營)의 제도라 한다. 《弘齋全書 卷13 序引》

하니, 이익운(李益運)이 아뢰기를, “이 비가, 얼음이 풀린 뒤 추맥(秋麥 가을보리)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사일(社日)[100] 전에 춘모(春牟 봄밀)를 파종하기를 재촉하니, 토맥(土脈)이 비옥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번에 비가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와서, 위로는 길을 깨끗이 해 주고 아래로는 만물을 적셔 주어 마치 대가(大駕)의 행차를 기다렸던 것처럼 온성 가득히 화기(和氣)를 조성해 주니, 참으로 또한 다행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모두 군장(軍裝)이 철릭(帖裏)에 비해 매우 편하다고 하지만 난가를 모시는 신하들이 어떤 사람은 군복을 입고 어떤 사람은 철릭을 입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혐의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원행(園幸)** 때 이미 원래 정해진 절후(節候)가 없다 하여, 군복을 단사(單紗)와 양겁(涼袷)으로 수시로 개조한다면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 뜻이 혹 폐단을 더하는 단서가 되지 않겠는가.” 하니, 이익운이 아뢰기를, “단사(緞紗)를 수시로 준비하면 사치스럽게 될까 염려스러울 뿐만이 아닙니다. 능행(陵行)에 수가할 때에도 군복을 사용하면 그래도 폐단을 없앨 수 있겠지만 단지 원행에서만 착용하고 능행에 철릭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복색이 하나 더해지는 결과가 되어 문제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참으로 지당하다.” 하였다.
강陪慈宮自始興詣**華城行宮**
목慈宮御駕轎進發予具軍服隨後由大博山前坪安陽橋長山隅淸川坪予下馬詣慈駕前問候訖敎曰**整理使** 尹行恁先詣盡停所整飭行宮諸事予將先詣**肆覲坪**晝停所兵房承旨及史官一人隨駕由院洞天詣行宮**凝璽軒**周審房堄少頃出御門外墓次令塘馬飛報慈駕前路慈駕至柢迎如前儀隨入**行宮整理使** 徐有防 沈頤之 李時秀 徐龍輔 尹行恁與郎廳李潞秀進慈宮午膳予親視饍奉進訖予曰雖有雨勢行宮草創淺露陪奉慈宮有難經宿且百官三軍之露處沾濕在所當念此距**華城**不滿一舍今日可以前進侍衛軍兵斯速食代兵判 沈煥之進軍令予御雨具隨慈駕進發至**彌勒峴**雨甚路滑予下馬隨慈駕親扶駕轎至峴底還乘馬由槐木亭橋詣**眞木亭**外營親軍夾路迎駕總理大臣 **蔡濟恭**率女伶鼓吹細樂祇迎于路左命於路次設布帳 內設幕次予下馬奉慈駕少駐問候訖命**整理使**進米飮茶盤予手奉進于慈宮轎內還乘馬陪慈駕進發鼓吹女伶前導未及**長安門**數里許命**整理使** 尹行恁先詣**華城行宮**整飭諸事敎兵曹判書沈煥之曰卿御前大巾軍也駕到**華城**城門當有入軍門節次亦當請駐蹕先詣諸將臣迎接所可也設幕次于路左予具甲冑還乘馬到作門外兵判 沈煥之跪啓稟旗鼓在前請駐蹕予入**長安門**由鍾街至行宮**奉壽堂**隨慈駕入**長樂堂整理使** 徐有大 沈頤之 徐有防 李時秀 徐龍輔尹 行恁進慈宮夕膳予親審奉進○命**壯勇外使** **趙心泰**入侍敎曰城府新創嘉卿董飭之功欲言其勞則言不可旣將取其盡善中未盡處加以責勉可乎○予御**維與宅**顧謂侍臣今日之雨軍兵沾濕雖可悶念然而予獨以爲雨亦不妨蓋此行至盛擧也是禮大儀節也事事不必求十分圓滿昨日和煙旣幸矣來日之慶禮將多矣自**肆覲行宮**距此**華城**不過數十里之遠乍雨旋晴以淸蹕路庸何傷乎況田事將始畦塍霑潤豈非農夫之慶耶李益運曰秋麥始安氷後之根春牟將催社前之種土脈之膏融此正其時今慈之雨不驟不徐上以爲淸道下以爲闓物融成滿城和氣有若待淸蹕者然誠亦幸矣予曰皆言軍裝之比帖裏甚便好而陪駕諸臣或着軍服或着帖裏非但有斑駁之嫌園幸旣無元定節候軍服之單紗涼袷隨時改造則除弊之意無或爲添弊之端耶益運曰緞紗之隨時準備非但有入奢之慮陵行隨駕亦用軍服則猶可爲除弊而只用於園行帖裏自如則添一服色亦不無掣礙矣予曰誠然矣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10일(임진)
강**화성 어사(華城御史)** 홍병신(洪秉臣)을 소견하였다.
목○ 내가 이르기를, “각 영(營)과 각 아문(衙門)은 과연 모두 정례(定例)를 따라 혹시라

100) 사일(社日) : 입춘(立春) 뒤 5번째 술일(戌日)을 말한다.

도 어긴 것이 없는가? 액속(掖屬)과 군병들은 과연 소란을 피우지 않았는가? 지방관 또한 백성을 부린 일이 없는가?"
하니, 홍병신이 아뢰기를, "이미 정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신칙하는 하교를 매우 자주 반복하여 내리셔서 안으로는 각 관사와 밖으로는 본부(本府)가 감히 어길 수 없었습니다. 연로(輦路)의 군민(軍民)은 실로 공급하느라 분주한 노고를 알지 못하였으나, 다만 간혹 금령(禁令)을 어기는 자가 한둘 있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거조(擧條)를 내어 엄히 처리하도록 하라." 하니, 홍병신이 아뢰기를, "8일에는 사복시의 거덜(巨達) 김봉태(金奉泰)의 짐바리 중에서 크고 작은 찬합(饌盒)을 적발하였고, 장용영의 사후군(伺候軍) 김명린(金明麟)이 지고 있던 반찬을 담은 대궤(大匱) 1건(件)을 적발하였습니다. 9일에는 좌열 별감과 우열 별감의 완자탕(鶩子湯) 큰 솥 하나를 적발하였고, 10일에는 무예별감 좌번과 무예별감 우번이 미리 차인(差人)을 보내 소를 도살하며 탕(湯)과 삶은 고기를 많이 준비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그 죄과를 범한 것이 통탄스럽고 놀랍기에 우러러 아룁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번은 비록 평상시와 다르고 죄를 범한 것 역시 대단할 것 없지만, 그 통탄스럽고 놀라운 죄범에 대해서는 심상하게 죄를 다스리고 말 일이 아니다. 검칙하지 못한 우두머리는 궁에 돌아온 뒤 별도로 엄히 다스리고, 죄를 범한 자 또한 조율(照律)하여 엄중히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그대가 금훤(禁喧)을 잘한다고 들었는데, 혹시라도 간과하지 말아서 끝까지 성과를 이루도록 하라." 하였다.
강召見華城御史 洪秉臣
목予曰各營各衙門果皆一遵定例無或違越掖屬軍兵輩果不作孽地方官亦無役民之事否秉臣曰非但已有定例前後飭敎極其申複內以各司外以本府無敢違越輦路軍民實不知供給奔走之勞而但或不無一二犯禁者矣予曰出擧條以爲嚴處之地也秉臣曰初八日司僕巨達金奉泰卜駄中捉得大小饌盒壯勇營伺候軍金明麟所負饌物大匱一件初九日所捉在右列別監鶩子湯一大鼎初十日所捉武藝別監左右番預送差人屠牛多備湯煮其所犯科極爲痛駭故仰達矣予曰今番雖異於常時所犯亦非大段其爲駭痛不可尋常決罪而止不能檢飭之頭目還宮後各別嚴治犯者亦爲照律重治仍敎曰聞汝善於禁喧無或放過俾有終始可也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10일(임진)

강모레 원소(園所)에 나아가 예를 행하고, 배정된 날짜는 약간 변통하고 조정하며, 유생의 입장(入場)은 우화관(于華觀)으로 하고, 문과와 무과의 방방(放榜)은 낙남헌(洛南軒)으로 하라고 명하였다.
목○ 이만수(李晩秀)가 아뢰기를, "자궁께서 며칠 동안 수고로이 거둥하시어, 신의 구구한 마음에 두렵고 염려스럽기가 그지없었는데, 잠시 뒤에 약원 도제조 홍낙성(洪樂性)이 신에게 말을 전해 오기를, 내일 가교가 행궁에 머물고 모레 전알(展謁)하면 정례(情禮)와 사세(事勢)가 모두 매우 흡족하고, 군령의 분배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신으로 하여금 전하여 아뢰게 하였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자궁께서 사흘 연속 피곤하셨으니, 과연 두렵고 염려된다. 또 먼저 가서 알성(謁聖)해도 정례에 문제 될 것이 없고 날짜를 안배하는 데에도 문제 될 것 것이 없으니, 그렇게 하교하겠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오늘 자궁의 가교를 무사히 모시고 화성에 도착하였는데, 여러 날 계속 피로하여 매우 두렵고 염려된다. 지금 들으니, 약원 도제조 또한 이러한 뜻으로 입

시하는 승지로 하여금 여쭙게 하였으니, 대신(大臣)의 말이 옳다. 모레 원소에 나아가 예를 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배정한 날짜를 대략 변통하고 조정한 이후에야 거행할 수 있다. 내일 먼저 알성하고, 알성을 행한 뒤에는 과장(科場)을 설치하여 인재를 시취(試取)하는 것 또한 내일 할 것이니, 이러한 내용으로 분부하라."
하고, 전교하기를, "내일 유생의 입장은 **우화관**에서 하고, 무소(武所)의 과장 설치와 문과와 무과의 방방은 **낙남헌**으로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승지는 차례로 시간을 정하여, **봉수당(奉壽堂)**에서 수직(守直)하고, 시위는 이전처럼 잠시 물러가라." 하였다.
강命再明日詣園所行禮排定日子略如闕狹儒生入場**于華觀**爲之文武放榜**洛南軒**爲之
목 李晩秀曰慈宮連日勞動區區下情不勝悚悶俄者藥院都提調 洪樂性送言於臣以明日則駕住行宮再明日展省情禮事勢俱甚便愜軍令分排亦無掣礙之意使臣輔聞矣予曰慈宮連三日勞攘果是悚悶且先行謁聖不害於情禮不礙於排日當下敎矣仍敎曰今日穩奉慈駕來至**華城**而多日勞攘甚爲悚悶今聞藥院都提擧亦以此意令入侍承宣提稟大臣之言果然再明日當詣園所行禮然則排定日子略加闕狹然後可以擧行明日先爲謁聖旣行謁聖則設科取人亦當在明日以此分付又敎曰明日儒生入場**于華觀**爲之武所設場及文武科放榜以**洛南軒**爲之又敎曰承旨輪回定更守直於**奉壽堂**侍衛則依前權退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0일(임진)
강입직
목검교대교 서유구(徐有榘)
겸검서관 성해응(成海應)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1일(계사)
강작문(作門)을 환위(環衛)하는 것을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고, 군병(軍兵)의 거취(去就)는 신전(信箭)으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병조가 전상(前廂)과 후상(後廂) 군병에 대해 나의 뜻을 여쭌 것으로 인하여, 전교하기를, "**장용영 외사(壯勇營外使)**는 친군위(親軍衛) 200인과 보군(步軍) 5개 초(哨)를 거느리고 선상(先廂)과 후상이 되게 하고, 그 나머지 마군(馬軍)과 보군은 그대로 남아 작문을 환위하라고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라. 자궁께서 이미 행궁에 머물고 계시니, 총관(摠管) 1원(員), 병조 당상 각 1원씩, 승지와 사관(史官) 각 1원씩은 머물고, 약원(藥院)은 도제조가 궁으로 돌아갈 때까지 행궁 문 안으로 들어와 머물라고 잘 알게 하라. 군병의 거취는 신전으로 거행하라." 하였다.
강命環衛作門各別嚴飭軍兵去就以信箭擧行
목因兵曹前後廂軍兵稟旨敎以外使率親軍衛二百步軍五哨爲先後廂其餘馬步軍兵仍留而環衛及作門各別嚴飭慈宮旣留行宮總管一員兵曹堂上各一員承史各一員留在而藥院則都提調還宮間入來留左行宮門內事使之知悉軍兵去就則以信箭擧行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11일(계사)
강**화성(華城)** 성묘(聖廟 공자묘(孔子廟))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목○ 군복(軍服)을 갖추고 말을 타고 나갔다. 승지 이조원(李肇源)에게 전교하기를, "그대는 시소 승지(試所承旨)가 되어 먼저 **우화관(于華觀)**에 나아가라. 유생은 먼저 입장하게 하고, 시관(試官)이 예를 행하는 것과 시제(試題)를 내거는 것은 내가 행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행하라. 알성(謁聖)할 때에 반열에 참석하는 유생은 태학(太學)에서 알성할 때 집사

유생(執事儒生)의 예(例)에 따라 예를 행한 뒤에 이어 수가(隨駕)하여 입장하게 하라."
하였다. **중양문(中陽門)**, **좌익문(左翊門)**, **팔달문(八達門)**을 경유하여 향교(鄕校) 문 밖에 이르렀다. 말에서 내려 명륜당(明倫堂) 대차(大次)에 들어가니, 유생은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백관(百官)은 수가하는 복색(服色)으로 성묘 문 밖에 반열을 이루었다. 내가 면복(冕服)으로 갈아입고 나가, 사배례(四拜禮)를 행한 다음 성묘 안으로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안으로는 태학과 밖으로는 향교가 있는데, 성묘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런데 동우(棟宇)는 이처럼 거칠고 누추하고, 단청(丹靑)은 이처럼 흐릿하며, 의자(椅子), 상탁(床卓), 포진(鋪陳), 노합(罏盒) 따위는 모두 형편없다. 성묘를 중시하고 사체(事體)를 높이는 도리에 있어서 이제 수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니, 대사성 이만수(李晩秀)가 아뢰기를, "성부(城府)를 신축하면서 미비한 일이 많아, 모든 것이 이처럼 소홀한 것이 혹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묘는 특별히 소중하고 더구나 향교를 친히 전알(展謁)하신 것은 드문 일이니, 수리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하였다.
내가 동쪽 계단으로 내려와서 반열에 참석한 유생에게 이르기를, "그대들은 모두 이번 정시(庭試)에 응시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화성**의 호적에는 들어 있으나 아직 세 번의 식년(式年)이 지나지 않은 자나 다른 읍의 유생으로 멀리 와서 반열에 참석한 자인가?" 하니, 이익운(李益運)이 아뢰기를, "뜰에 들어온 자는 모두 36인인데 그 가운데 2인은 용인(龍仁)에 거주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본부(本府)에 거주하고 있는데, 집을 짓고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세 번의 식년이 아직 지나지 않아 과거에 응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뜰에 있는 자는 이 지방 사람인지 다른 지방 사람인지, 호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말고, 모두 거안(擧案)을 받아들여서 응시하게 해 주되 시권(試券)의 비봉(祕封) 안에 '성묘 집사 유생(聖廟執事儒生)'이라고 쓰라." 하였다.
성묘 문 밖을 나와 내가 이만수 등에게 이르기를, "**원행(園幸)**하는 날 조정 신하들이 모두 군복이 더 편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승지와 사관이 조복(朝服)을 갖춰 입은 것을 보니, 보기에 좋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威儀)가 흘러넘쳐 보기에 군장(軍裝)으로 결속(結束)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였다.
이어 명륜당으로 나아갔다. 전교하기를, "오늘 성묘에 공손히 전알하고 예를 행하였는데, 이곳에서 그렇게 거행하는 것을 장구하게 해야겠다. 일전에 전내(殿內) 및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 종사(從祀)된 사람들에게까지 두루 고유(告由)한 것은 선후(先後)를 아는 것을 보인 것이다. 처음 시행하는 예에는 특별한 방도가 있어야 한다. 뜰에 들어온 집사 유생이 30여 인 되는데 모두 이번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아니나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전도(前導)한 태학 경수복(京守僕) 홍오번(洪五蕃)은 입학할 때 수복이었는데 또 전도하였으니, **정리소(整理所)**로 하여금 후하게 시상하게 하라. 향수복(鄕守僕)과 원역(員役)에 대해서도 시상하게 한 뒤 초기(草記)하게 하라. 예전에 향교의 성묘를 전알하였을 때 경적(經籍)과 노비, 전결(田結)을 교궁(校宮)에 하사하였으니, 이번에 그대로 따라 새로 간행한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내각(內閣)으로 하여금 어보(御寶)를 찍은 뒤 내려보내게 하라. 노비는 묘당으로 하여금 경신년(1740, 영조16) 고사[101]를 가져다 살펴 호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떼어 준 뒤 또한 초기하게 하라." 하였다.

---

101) 경신년 고사 : 영조가 경신년(1740, 영조16) 9월에 제릉(齊陵)·후릉(厚陵)에 거둥할 때 개성 성균관(成均館)에 들러 알성하였는데, 그곳에 노비가 적어 금천(金川), 평산(平山) 등 읍의 시노비(寺奴婢)를 사급(賜給)해 주었다.《承政院日記 英祖 16年 9月 3日》

문묘(文廟) 수복 홍오번에게 전교하기를, “그대는 내가 입학할 때 수복이었는데, 지금 또 **화성**에 따라와서 섭행하여 제향하는 날에 거행하고 알성하는 때에 전도하니, 별도로 노고에 보답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하는데 서리(胥吏)의 자급(資級)은 숭정대부(崇政大夫)보다 높을 수 없으니 법의 뜻이 그러하다. 그대는 지금 정헌대부(正憲大夫)이니, 우선은 한 자급을 미루어 두었다가 원자(元子)가 입학할 때를 기다리라. 먼저 미(米)와 포(布)를 시상하겠으니, 그대는 그리 알라.” 하였다.

군복으로 갈아입고 향교 문 밖으로 나가 말을 탔다. 이익운에게 하교하기를, “들으니, 본부의 향교에 예전에는 노비와 전결(田結)이 있었는데 주관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은 모두 산실(散失)되었다 하니 성묘(聖廟)의 모양이 누추하고 교속(校屬)들도 유지되기 어려운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선조(先朝) 경신년(1740, 영조16) 때 송경(松京 개성)에 가서 성묘를 전알할 때 노비를 사급(賜給)하였으니[102] 이 또한 그대로 따를 만하다. 경신년을 따른 전례가 이미 있으니, 전토(田土)와 노비 가리지 말고, 대신(大臣)에게 문의하여 호조로 하여금 헤아려 떼어 주라는 뜻으로 유사 당상(有司堂上)에게 말하라.” 하였다. **팔달문**, **좌익문**, **중양문**을 경유하여 **낙남헌(洛南軒)**으로 돌아왔다.

강詣**華城**聖廟展拜

목具軍服乘馬以出敎承旨 李肇源曰爾爲試所承旨先詣**于華觀**儒生則先令入場試官行禮及懸題待回鑾爲之謁聖時參班儒生則依太學謁聖時執事儒生例行禮後仍令隨駕入場由**中陽門** **左翊門** **八達門**至鄕校門外下馬入明倫堂大次儒生入就位百官以隨駕服色成班於聖廟門外予改具冕服以出四拜行禮訖詣廟內奉審予曰內以太學外以鄕校聖廟一也棟宇則如是樸陋丹靑則如是漫漶以至椅子床卓鋪陳罏盒之類俱不成樣其在重聖廟尊事體之道不可不及今修理矣大司成 李晩秀曰城府草創事多未遑凡百之若是疏忽庸或無怪而至慈聖廟所重自別況親謁鄕校事係稀有修改之政不容少緩矣予降自東階顧謂參班儒生曰今番庭試爾等皆是應赴之類乎抑或有入籍而未準式或有他邑儒生之遠來參班者乎李益運曰入庭者合爲三十六人而其中二人居在龍仁其餘則俱在本府而以築室年淺未準三式不得赴擧云矣予曰在庭者無論此境他境有籍無籍竝捧擧案許赴而封內書以聖廟執事儒生出廟門外予顧謂李晩秀等曰園幸之日廷紳皆言軍服之便好而今見承史之具朝服非爲觀美威儀濟濟其在觀瞻絶勝於軍裝結束因御明倫堂敎曰今日祗謁聖廟行禮此地此擧竝用長久之計而日前告由之遍及殿內兩廡從祀示人知所先後也創行之禮合有拔例之道入庭執事儒生爲三十餘人而皆非應試於今科者許令赴場前導太學京守僕洪五著以入學時守僕又爲前導令**整理所**從優施賞鄕守僕及員役亦令施賞後草記昔謁聖鄕校賜經籍奴婢田結于校宮令番仰述新印四書三經令內閣安寶下送臧獲令 廟堂取考庚申故事分付該曹磨鍊盡給後亦爲草記敎文廟守僕洪五著曰汝以予入學時守僕今又隨來**華城**擧行於攝享之日前導于謁聖之時宜有別般酬勞之典而胥吏資級無過崇政法意然也汝今正憲姑徐一資以待元子入學之時先施米布之賞汝其知之改具軍服出鄕校門外乘馬敎李益運曰聞本府鄕校舊有奴婢田結而主管無人今皆散失廟貌之樸陋校屬之難保專由於此先朝庚申幸松京謁聖廟賜而臧獲奴婢此亦可以仰述處也依庚申已例無論田土奴婢問議于大臣令度支商量畫給之意言于有司堂上由**八達門** **左翊門** **中陽門**還詣**洛南軒**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11일(계사)

강**낙남헌**에 나아가 문과와 무과의 정시(庭試)와 별시(別試)를 설행하고, 이어 과차(科次)와 방방(放榜)을 행하였다. 독권관(讀券官)은 좌의정 유언호(兪彦鎬), 행 사직 심이지(沈頤

102) 노비를 사급(賜給)하였으니 : 원문은 ‘賜而臧獲奴婢’인데, 앞뒤 문맥을 살펴 ‘而’를 ‘以’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之), 병조 판서 심환지(沈煥之), 행 사직 이병정(李秉鼎), 행 부사직 조진관(趙鎭寬), 이조 판서 윤시동(尹蓍東), 형조 판서 이재학(李在學), 공조 판서 이가환(李家煥)이다. 대독관(對讀官)은 행 부사직 채홍원(蔡弘遠), 병조 참지 정약용(丁若鏞), 행 부사직 임희존(任希存), 검교대교(檢校待敎) 서유구(徐有榘), 부수찬 최헌중(崔獻重), 병조 정랑 홍낙유(洪樂游), 부사과 이희갑(李羲甲), 교서관 정자(校書館正字) 조만원(趙萬元),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 조석중(曺錫中)이다. 고관(考官)은 판중추부사 이병모(李秉模), 호조 판서 이시수(李時秀), 행 부호군 이유경(李儒敬), 행 사직 서유대(徐有大)이다. 참고관(參考官)은 행 부사직 이유경(李儒慶), 부교리 서유문(徐有聞), 선전관(宣傳官) 이상일(李商一)·이유엽(李儒燁)이다.

목○ 융복(戎服)을 갖추고 어좌(御座)에 올랐다. 문과와 무과의 시관 및 응사(應射)할 사람이 자리에 들어와 사배(四拜)를 행하였다. 좌승지 이만수가 아뢰기를, "조만원은 대독관으로 낙점(落點)을 받았는데, 서울에서 미처 내려오지 못하였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만두게 하라." 하였다.

유언호가 아뢰기를, "**혜경궁(惠慶宮)**의 기후(氣候)가 어떠하십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한결같이 강녕하시니,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다." 하였다. 내가 심환지와 이병정에게 명하여 어제(御題)로 "삼가 천천세수를 올리는 부[謹上千千歲壽賦]"를 쓰게 하였다. 유언호에게 하교하기를, "이는 치사(致詞)하는 말이니, 그 점을 알아 잘 지으라는 뜻으로 응시하는 유생에게 효유(曉諭)하라. 시관은 이 시제(試題)를 가지고 **우화관**에 나아가 시권(試券)을 거두어 오라. 오시(午時)까지 제한하여 시제를 내걸고, 전교 절차는 시소의 승지로 하여금 전례대로 거행하게 하고, 시지(試紙)의 맨 위에 읍호(邑號)를 쓰는 것은 **정리사(整理使)**가 초기한 대로 하라." 하였다.

○ 병조가 시사(試射)에 필요한 여러 도구를 설치하고 대령하였다. 이익운이 무릎을 꿇고 계품(啓稟)하여, 시수(矢數)와 사원(射員)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이르기를, "무과 거자(擧子) 가운데 입격(入格)한 자의 궁시(弓矢)를 본부(本府)의 이교(吏校)가 빼앗아 갔다고 하니, 유수에게 분부하여 하나하나 찾아 주게 하고 만약 범한 자가 있거든 곧장 결박하여 원문(轅門) 밖에 대령시키라." 하였다.

○ 전교하기를, "오시가 이미 지났으니, 제한된 시간 내에 작성한 시권을 즉시 거두어서 들어와 이어 복장(覆帳)하고, 이미 시지의 맨 위에 각각 읍호를 쓰라고 하였으니 시권을 거둘 때 4개 읍의 시권을 구별하여 축(軸)으로 만들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독권관 민종현(閔鍾顯)은 탈(頉)이 있으니, 행 부사직 조진관이 대신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아직 숙배하지 않은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을 체차해 주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행 부호군 이유경과 행 부사직 홍인호(洪仁浩)를 가승지(假承旨)로 차하(差下)하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제한된 시간 내에 작성한 시권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이만수가 아뢰기를, "400여 장 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이번 방(榜)에서 다섯 사람을 취하라."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화성(華城)**에서 두 사람, 광주(廣州)·시흥(始興)·과천(果川)에서 한 사람씩 취하라." 하였다.

이병정이 아뢰기를, "시흥의 시권은 모두 8장인데 한 축(軸)도 채우지 못한 시권들 가운데에서 급제의 자격을 주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합당한 작품도 없으니 그만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미 4개 읍의 유생에게 과거에 응시하라고 명하고 또 각각 그 시지 위에 읍명(邑名)을 쓰게 하였는데, 4개 읍 중에 한 읍에서 입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필경 소외되었다는 탄식이 있게 될 것이고 또 똑같이 대해 주는 뜻도 아니고 명령을 미덥게 하는 도리도 아니게 된다. 시흥의 시권 가운데 조금 나은 시권 하나를 택하는 것 또한 안 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오태증(吳泰曾)에게 전교하기를, “이제 탁방(坼榜)하였으니, 편방(片榜)을 쓰고 정원의 하례(下隷)로 하여금 불러들여 진퇴(進退 신래 불림)하게 하라.” 하니, 서유방(徐有防)이 아뢰기를, “먼저 장적(帳籍)을 살펴 세 번의 식년(式年)이 지난 것이 확실한 뒤에야 불러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최지성(崔之聖)과 유성의(柳聖儀)는 이미 본부(本府)의 응제(應製)에 여러 번 입격하였으니, 그들이 세 번의 식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다. 한림(翰林)은 나가서 먼저 그들의 얼굴에 먹을 칠하여 진퇴하게 하라. 그 나머지 세 사람은 경기 감사와 각 지방관이 장적을 고찰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광주 부윤(廣州府尹) 서미수(徐美修), 시흥 현령(始興縣令) 홍경후(洪景厚), 과천 현감(果川縣監) 김이유(金履裕)가 아직 대령하지 않았다. 내가 이르기를, “3개 읍의 유적(儒籍)을 다만 색리(色吏)로 하여금 가지고 대령하게 하고 지방관은 애당초 대령하지 않아 누차 신칙하는 하교를 내린 상황에서도 간 곳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이러한 기강이 있는가. 모두 기과(記過)하고 대령하게 하라.” 하였다.

잠시 뒤에 또 전교하기를, “기과하라고 명한 이후에도 또 즉시 와서 대령하지 않았으니 더욱 놀랍다. 모두 잡아들이되 광주 부윤은 부절(符節)을 빼앗을 때에 또 지체할 것이니 직접 밀부(密符)를 반납하게 하라.” 하였다.

서미수가 전(殿)에 올라와 밀부를 반납하였는데 수기(手旗)를 말고 펼치지 않았다. 내가 이르기를, “수기를 말아 꽂은 것은 더욱이 대단히 놀랍다. 다시 기과하라.” 하였다. 이익운이 3개 읍의 수령을 잡아들일 것을 청하였는데, 내가 이르기를, “잡아들이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지방관이 유적을 가지고 대령하는 것이 본래의 전례이니, 다만 색리들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한 것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가 이미 크다고 하겠다. 또 신칙하는 하교를 내렸는데도 곧장 대령하지 않았으니, 구구절절 놀랍다. 서미수는 수기를 만채로 꽂은 것이 더욱 예의에 어긋난 일이니, 죄 위에다 또 다른 죄를 더한 것이라 이를 만하다. 엄하게 감처(勘處)해야 하지만 전에 없던 성대한 예(禮)를 앞두고 있으니 함께 경축하는 뜻에서 우선 참작하겠다. 앞으로는 모든 거행하는 일에 충분히 조심하여 혹시라도 다시 죄과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고, 이어 끌어내라고 명하였다. 서미수가 전(殿)에 올라와 부절을 받고 물러났다.

서유방이 아뢰기를, “신이 상세히 장적을 살펴보니, 시흥현 출신으로 입격한 유생 신백록(申百祿)은 본래 시흥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장적 가운데 성명(姓名)을 칼로 긁어내고 성명을 쓴 것이 두 식년의 호적이 모두 그러하니, 장적을 위조한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구나 녹명(錄名)할 때에 과거에 응시하는 단자를 그 본현(本縣)에서 두 번 올리고 두 번 물렸으니, 그가 법을 어기고 과거에 응시한 것이 매우 놀랍고 통탄스럽습니다. 우선 빼 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선비의 풍습이 놀랄 만하다. 몇 년 전 본부와 남한산성에서 시사(試射)할 때에 호적이 없는데도 입격하였다고 하여 방목(榜目)에서 제외시킨 경우가 이미 전례에 많다. 이 경우 역시 전례에 따라 시권을 빼 버리고, 다시 시흥현 시권을 고찰하여 한 사람을 택하여 탁명(坼名)하고 장적을 고찰한 뒤에 불러들이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장적을 고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처럼 지체되니, 어찌 지방관만 꾸짖겠는가.” 하고, 전교하기를, “경기 감사 서유방을 엄히 추고하라.” 하였다.
이병정이 아뢰기를, “8장의 시권 중에서 취하여 급제의 자격을 주는 것도 이미 구차한데, 지금 그중 하나를 빼 버리니 남은 7장의 시권에서 어떻게 합당한 작품을 택하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미 1개 부(府)와 3개 읍에 분배하였으니, 그 가운데 그나마 조금 괜찮은 한 사람을 취하여 방목 끝에 붙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다시 시권을 살피어 탁명하고 장적을 고찰한 뒤에 오태증이 섬돌 앞에 나아가 진퇴하게 하고 얼굴에 먹을 칠하였다. 문과와 무과의 방방(放榜)을 하라고 명하였다. 문과에서는 최지성 등 5인을 취하고 무과에서는 김관(金寬) 등 56인을 취하였다. 방방관(放榜官)이 문과와 무과의 제1명(第一名 장원급제자)을 부르고, 차례로 급제자의 이름을 부르자, 신은(新恩)이 모두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사배(四拜)하였다. 이만수(李晩秀)가 문과의 홍패함(紅牌函)을 취하여 이조 정랑에게 주고, 이익운이 무과의 홍패함을 취하여 병조 정랑에게 주었다. 문과와 무과의 거자(擧子)들이 무릎을 꿇자 홍패와 공복(公服)을 하사하였다. 술, 안주, 어사화(御賜花), 개(蓋), 무동(舞童)을 하사하는 것을 규례대로 하였다.

강御**洛南軒**行文武庭試別試仍行科次放榜 讀券官 左議政 兪彦鎬 行司直 沈頤之 兵曹判書 沈煥之 行司直 李秉鼎 行副司直 趙鎭寬 吏曹判書 尹蓍東 刑曹判書 李在學 工曹判書 李家煥 對讀官 行副司直 蔡弘遠 兵曹參知 丁若鏞 行副司直 任希存 檢校待敎 徐有榘 副修撰 崔獻重 兵曹正郎 洪樂游 副司果 李羲甲 校書正守 趙萬元 承文副正守 曺錫中 考官 判府事 李秉模 戶曹判書 李時秀 行副護軍 李儒敬 行司直 徐有大 參考官 行副司直 李儒慶 副校理 徐有聞 宣傳官 李商一 李儒燁

목具戎服陞座文武試官及應射人入就位四拜訖 左承旨 李晩秀曰趙萬元則蒙點對讀官而在京未及下來故敢達矣予曰置之彦鎬曰**惠慶宮**氣候何如予曰一向康寧萬萬欣幸予命煥之秉鼎書御題曰謹上千千歲壽賦敎彦鎬曰此致詞語也知此善作之意曉諭於應試儒生試官持此題詣**于華觀**捧券以來限以午時懸題傳敎節次令試所承旨依例擧行紙頭書邑號依**整理使**草記爲之○兵曹設試射諸具以待李益運跪啓稟矢數射員呼名予曰武擧子之入格者本府吏校奪取其弓矢云分付留守一一推給如有犯者直爲結縛待令于轅門外○敎曰午時已過限前試券卽爲收入因爲覆帳紙頭旣令各書邑名收券時以四邑試券區別作軸又敎曰讀券官 閔鍾顯有頃代行副司直 趙鎭寬爲之又敎曰未肅拜弘文提學許遞又敎曰行副護軍 李儒敬 行副司直 洪仁浩 假承旨差下予曰限前試券幾何李晩秀曰四百餘張敎曰今榜取五人仍敎曰**華城**二人廣州 始興 果川各一人秉鼎曰始興試券合爲八張賜第於不滿一軸之券事甚何如且無合作置之勿論恐好矣予曰旣命四邑赴擧各其紙頭亦令書邑名四邑之中一邑闕榜則必有向隅之歎亦非一視之意且非信令之道就其中擇其稍勝一券亦何不可敎吳泰曾曰令已圻榜書片榜令院隷呼入進退徐有防曰先考帳籍準三式無疑然後呼入似好矣予曰崔之聖 柳聖儀曾已屢捷於本府應製可知其準籍翰林出去先爲塗墨進退其餘三人則畿伯與各其地方官考籍以奏廣州府尹 徐美修 始興縣令 洪景厚 果川縣監 金履裕未及待令予曰三邑儒籍只令色吏領待而地方官則初不待令屢次飭敎之下尙不知去處安有如許紀綱一竝記過待令少頃又敎曰記過命下之後亦不卽來待尤爲駭然竝卽拿入而廣尹則奪符之際又將遲滯使之親納密符美修升殿納符而手旗捲而不展予曰卷插手旗尤萬萬駭然更爲記過李益運請拿入三邑守令予曰拿入予曰地方官之持籍待令自是已例只使吏輩替行者失職固已多矣又於飭敎之下不卽待令節節駭然徐美修則卷插手旗尤係失儀可謂罪上添罪事當重勘而當此無前之盛禮以同慶之意姑爲參酌此後凡百擧行十分操心無或更犯罪過仍命拿出美修升殿受符而退有防曰臣詳細考籍則始興縣入格儒生申百祿本非始興築室之人而帳籍之中刀擦姓名兩式皆然僞籍無疑況於錄名時赴擧單子自其本縣再呈再退則渠之冒法赴擧極其駭痛爲先拔去何如予曰士習可

駭年前本府及南城試射時以無籍入格而見拔者已例斑斑此亦依前拔去試券更考始興券擇取一人坼名考籍後呼入予曰考籍不甚難事而如是遲滯何但責地方官敎曰京畿監司 徐有防從重推考秉鼎曰八券之中取以賜第已涉苟艱今拔其一所餘者七何以擇合作乎予曰旣已分排於一府三邑取其中僅可者一人付諸榜末好矣更考券坼名考籍後吳泰曾就階前進退塗墨訖命文武科放榜文取崔之聖等五人武取金寬等五十六人放榜官唱文武科第一名以次唱名訖新恩皆入就位四拜晩秀取文科紅牌函授吏曹正郎 益運取武科紅牌函授兵曹正郎文武擧人跪分賜紅牌公服賜酒賜肴賜花賜蓋賜舞童如例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2월 11일(계사)

강장용 외사(壯勇外使)가 관장하는 친군위(親軍衛) 및 내영(內營), 본부에 있는 향군(鄕軍)은 모두 궁에 돌아온 뒤 각각 유엽전(柳葉箭)과 조총(鳥銃)을 시험 보여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장용 외사에서 관장하는 친군위와 보군(步軍)은 처음으로 경숙(經宿)하는 행행(幸行)에 수가(隨駕)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앉고 일어나며 말을 달리고 돌격하는 절차가 숙달되었으니 노력한 공로가 매우 크다. 더구나 이번 행행은 일의 체모가 자별(自別)하니, 내영과 본부에 있는 향군과 함께 모두 궁에 돌아온 뒤 장용 외사로 하여금 각각 유엽전과 조총 중 1기(技)를 시험 보이도록 하라. 입격한 수효를 장계(狀啓)로 보고하되 3발 이상을 맞힌 자들은 방목(榜目)이 작성된 뒤 시상하라. 조총 2발을 맞힌 자는 각각 목(木) 1필(疋)을, 유엽전 1발을 맞힌 자는 각각 전죽(箭竹) 300개를, 조총 1발을 맞힌 자는 각각 미(米) 2말을 외탕고(外帑庫)에서 바로 그들이 시소(試所)에 있을 때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命壯勇外使所管親軍衛及內營本府所在鄕軍皆於還宮後各試柳葉箭 鳥銃施賞

목敎曰壯勇外使所管親軍衛及步軍初當經宿之役而坐作馳突之節鍊達閑熟效勞最鉅況今番幸行事體自別與內營本府所在鄕軍皆於還宮後令外使各試柳葉箭 鳥銃中一技以其入格數爻狀聞而三中以上待榜目施賞銃二中各木一疋射一中各箭竹三百介銃一中各米二斗自外帑庫直爲分等施賞於渠輩在試所之時事分付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1일(계사)

강원소(園所)의 한식 제향을 행궁에서 전향(傳香)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원소의 한식 제향을 행궁에서 전향하라. 축문(祝文)은 문임(文任)을 패초(牌招)하여 특별히 지어 올리게 하고, 헌관은 광은부위(光恩副尉)로 하고, 재랑(齋郎)과 축사(祝史)는 수가하는 삼사(三司) 중에서 차출하여 보내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園所寒食祭享命當於行宮傳香

목敎曰園所寒食祭享當於行宮傳香矣祝文 令文任牌招別爲撰進獻官 光恩副尉爲之齋祝以隨駕三司中差送事分付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1일(계사)

강봉수당(奉壽堂)에 나아가 진찬(進饌)의 습의(習儀)를 행하였다.

목○ 내가 이르기를, "모레 진찬은 처음 있는 성대한 행사인데 거행하는 절차를 정식에 맞출지 여부는 전적으로 여령(女伶)에 달려 있다. 경기(京妓)는 막 상호도감(上號都監)을 거쳤으니 혹 숙련된 것 같기도 한데, 본부의 여령은 유수가 때때로 혹 음악을 익히게 하였더라도 경기와는 달라 정재(呈才) 등의 절차에 대해서 생소함을 면치 못할 듯하다. 오늘 방방

(放榜)을 일찌감치 행하였으니, 특별히 경들을 부른 것이다. 우선 이 뜰에서 차례대로 습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 전악(典樂)이 먼저 악기(樂器)를 설치하자, 도기(都妓) 2인이 서울과 지방의 여령 33인을 거느리고 동서로 나누어 늘어섰다. 먼저 헌선도(獻仙桃)[103]와 환환곡(桓桓曲)[104] 정재를 연주하였고 다음으로 몽금척(夢金尺)[105]과 하황은(荷皇恩)[106] 정재를 연주하였으며, 다음으로 포구락(抛毬樂)[107]과 무고(舞鼓)[108] 정재를 연주하였고, 다음으로 아박(牙拍)[109]과 향발(響鈸)[110] 정재를 연주하였으며, 다음으로 학무(鶴舞)[111]와 유황곡(惟皇曲)[112] 정재를 연주하였고, 다음으로 연화대(蓮花臺)[113]와 환환곡(桓桓曲)[114] 정재를 연주하였으며, 다음으로 수연장(壽延長)[115]과 하운봉곡(夏雲峯曲)[116] 정재를 연주하였고, 다음으로 처용(處容)[117]과 낙양춘곡(洛陽春曲)[118] 정재를 연주하였으며, 다음으로 선유락(船遊樂)[119]과 검무(劍舞)를

---

103) 헌선도(獻仙桃) : 고려 시대부터 전해 오는 당악 정재(唐樂呈才) 중 하나로 왕모(王母)가 선계(仙界)에서 내려와 왕에게 천세 영도(千歲靈桃)를 바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다.《국역 악학궤범 1 제3권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 당악 정재, 제4권 성종조(成宗朝) 당악 정재 도설(圖說)》

104) 환환곡(桓桓曲) : 조선 세종 때 창제된 악곡의 하나로 태조의 용맹스러움과 건국의 위업을 찬양한 곡이다. 태조 및 태조비의 혼전(魂殿)인 문소전(文昭殿) 제례의 제1실(第一室) 초헌악(初獻樂)으로도 연주되었다.《국역 악학궤범 1 제2권 성종조 속악부(俗樂部) 제악(祭樂)》

105) 몽금척(夢金尺) :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꿈속에서 신인(神人)에게 금척(金尺)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정도전(鄭道傳)에 의하여 조선의 창업(創業)을 기리는 노래로 만들어졌다.《국역 악학궤범 1 제2권 세종조의 수월용률(隨月用律), 제4권 성종조 당악 정재 도설》

106) 하황은(荷皇恩) : 당악 정재 중 하나로 세종이 명나라 황제에게 왕의 인준을 받아 온 백성이 기뻐한다는 내용이다.《국역 악학궤범 1 제4권 성종조 당악 정재 도설》

107) 포구락(抛毬樂) : 당악 정재 중 하나로, 송(宋)의 여제자대무(女弟子隊舞) 열 가지 중 하나이다. 음악의 반주 없이 죽간자(竹竿子)가 구호를 부르면, 기(妓) 16인이 반주 없이 합창하였다.《국역 악학궤범 1 제4권 성종조 당악 정재 도설》

108) 무고(舞鼓) : 원문은 '鼓舞'인데,《정조실록》19년 윤2월 13일 기사에 의거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무고는 정재(呈才) 때에 추는 북춤의 하나로 고려 시대 시중(侍中) 이혼(李混)이 영해(寧海)에서 귀양살이할 때 만들었다고 한다.《국역 악학궤범 1 제3권 고려사 악지 속악 정재(俗樂呈才)》

109) 아박(牙拍) : 향악 정재 중 하나로《고려사》〈악지(樂志)〉에는 동동(動動)으로 되어 있다. 송(宋)나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2인이 양손에 아박을 들고 치며 주로 동동의 노래를 부르면서 정읍만기(井邑慢機)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국역 악학궤범 2 제5권 성종조 향악(鄕樂) 정재 도의(圖儀)》

110) 향발(響鈸) : 향악 정재 중 하나로 놋쇠로 만든 향발이라는 작은 타악기를 좌우의 엄지손가락과 가운뎃손가락에 각각 하나씩 매고, 장단에 맞추어 치면서 추는 춤이다.《국역 악학궤범 2 제5권 성종조 향악 정재 도의》

111) 학무(鶴舞) : 고려 시대부터 전해 오는 향악 정재로《고려사》〈악지〉에는 연화대무에 학무가 보인다. 청학(靑鶴)과 백학(白鶴)이 연통(蓮筒)을 중심으로 춤을 추다가 연통을 쪼면 그 속에 숨어 있던 두 동녀(童女)가 나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국역 악학궤범 2 제5권 성종조 향악 정재 도의》

112) 유황곡(惟皇曲) : 문소전 제1실의 아헌악(亞獻樂) 및 덕종(德宗)의 혼전인 연은전(延恩殿) 초헌악으로 연주되었다. 황천(皇天)이 도와 조선의 대업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국역 악학궤범 1 제2권 속악 진설(陳設) 도설(圖說)》

113) 연화대(蓮花臺) : 고려 시대부터 전해 오는 당악 정재 중 하나로 신선계에서 연꽃에 실려 내려온 두 선녀가 임금의 덕에 감동하여 노래와 춤으로 보답한 뒤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국역 악학궤범 1 제3권 고려사 악지 당악 정재, 제4권 성종조 당악 정재 도설》

114) 환환곡(桓桓曲) : 원문은 '恒恒曲'인데,《정조실록》19년 윤2월 13일 기사에 의거하여 '恒恒'을 '桓桓'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15) 수연장(壽延長) : 고려 시대부터 전하는 당악 정재 중 하나로 상원(上元)에 군왕(郡王)에게 진주(進酒), 축수(祝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국역 악학궤범 1 제3권 고려사 악지 당악 정재, 제4권 성종조 당악 정재 도설》

116) 하운봉곡(夏雲峯曲) : 고려 시대 송나라에서 유입된 당악(唐樂)의 하나로 그윽한 집안에서 술과 여자와 함께 풍류를 즐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국역 고려사 제71권 지(志) 25》

117) 처용(處容) : 신라 헌강왕(憲康王) 때 인물인 처용의 탈을 쓰고 추는 춤이다. 역신(疫神)을 내쫓는 내용의 탈춤이다.《국역 악학궤범 1 제5권 성종조 향악 정재 도의》

연주하였다. 악장(樂章)을 선후(先後)로 부르기를 마치자, 자궁(慈宮)께서 여령에게 차등 있게 상을 하사하였다.

강御奉壽堂行進饌習儀

목予曰再明日進饌係是初有之盛擧擧行節次之中式與否都在女伶京妓則才經上號都監似或習熟而本府女伶則留守雖時或習樂異於京妓呈才等節似未免生疏今日放榜差早特召卿等第令此庭依次習儀○典樂先設樂器都妓二人率京鄕女伶三十三人分東西列立先奏獻仙桃桓桓曲呈才次奏夢金尺荷皇恩呈才次奏抛毬樂鼓舞呈才次奏牙拍響鈸呈才次秦鶴舞惟皇曲呈才次奏蓮花臺恒恒曲呈才次奏壽延長夏雲峯曲呈才次奏處容洛陽春曲呈才次奏船遊樂劒舞先後唱樂章訖慈宮賞賜女伶有次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11일(계사)

강정리소가 성묘(聖廟)에서 예를 행할 때 수고한 태학(太學) 수복(守僕)과 교노(校奴) 등에게 시상하겠다고 아뢰었다.

목○ 정리소가 아뢰기를, "화성부 성묘에 예를 행할 때 수고한 태학 경수복(京守僕) 홍오번(洪五蕃)에게 목(木) 1필(疋)과 포(布) 1필을, 향수복(鄕守僕) 최덕천(崔德天) 등 2명에게 각각 목 1필을, 교노 7명에게 각각 포 1필을 시상하겠습니다." 하였다.

강整理所以聖廟行禮時太學守僕校奴等施賞啓

목整理所啓言華城府聖廟行禮時太學京守僕洪五蕃木一疋布一疋鄕守僕崔德天等二名各木一疋校奴七名各布一疋施賞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1일(계사)

강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윤시동(尹蓍東)과 병조 판서 심환지가 나왔다.

목○ 전교하기를, "신은 정사(新恩政事)를 오늘 하라." 하였다.

○ 정내백(鄭來百)을 헌납으로 삼았다.

강有政 吏曹判書 尹蓍東 兵曹判書 沈煥之進

목敎曰新恩政事當日爲之○以鄭來百爲獻納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1일(계사)

강입직

목검교대교 서유구(徐有榘)

겸검서관 성해응(成海應)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12일(갑오)

강자궁(慈宮)을 모시고 현륭원(顯隆園)에 나아갔다.

목○ 내가 이만수(李晩秀)에게 전교하기를, "승지는 문이 열린 뒤에 향축(香祝)을 받들고 먼저 원소(園所)에 나아가 산신제(山神祭)를 먼저 설행(設行)하고 혼유석(魂遊石)에 제품(祭品)을 진설한 다음 자궁이 머무실 소차(小次)를 점검하고 난가(鑾駕)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라." 하였다. 때가 되자 내가 군복(軍服)을 갖추고 말을 탔고 자궁은 가교(駕轎)를 타시

---

118) 낙양춘곡(洛陽春曲) : 고려 시대부터 전하는 당악 정재 중 하나로 기영회(耆英會), 투호(投壺) 등에서 연주되었다.《국역 악학궤범 1 제2권 세종조(世宗朝)의 회례연의(會禮宴儀)》

119) 선유락(船遊樂) : 궁중 잔치 때 추던 춤의 하나로 채선(彩船)을 차려 놓고 배 떠나는 형상을 지으면서 기생들이 풍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進饌儀軌 卷1 樂章 呈才樂章》

고 나갔다. 이익운(李益運)에게 전교하기를, “정시(正時)가 이미 지났는데도 취라(吹螺)를 세 번 부는 것을 아직도 하지 않아 자궁의 가교가 궁을 나서는 것이 지체되었다. 선전관 무리의 거행이 너무나도 놀랍다. 계라 선전관(啓螺宣傳官) 유성규(柳星逵)를 우선 태거(汰去)한 뒤에 수어청(守禦廳)으로 하여금 구류(拘留)하게 하라. 승전 선전관(承傳宣傳官) 이동선(李東善) 역시 구류하라.” 하였다.

내가 자궁의 가교를 받들고 출발하였다. **중양문(中陽門)**, **좌익문(左翊門)**, **팔달문(八達門)**을 경유하여 **상류천점(上柳川店)** 앞에 도착하였다. 내가 말에서 내려 자궁의 가교 앞에 나아가 문후(問候)를 드렸다. 이익운에게 전교하기를, “자궁의 기후(氣候)가 행로(行路) 중에도 한결같이 강녕하시어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을 이루 표현하지 못하였는데, 방금 가교 앞에서 문후를 드릴 때 옥음(玉音)이 고르지 못하여 잠시 말씀을 하지 못하시니 자궁의 체후가 편치 않으시다는 것을 우러러 알게 되어 매우 걱정스럽다. 약방 제조(藥房提調)는 입시하고 의관(醫官) 강진삼(姜晉三), 장무관(掌務官) 진동수(秦東秀)를 대령하게 하라.”

하니, 제조 심환지(沈煥之)가 앞으로 나아왔다. 내가 이르기를, “경은 먼저 원소에 나아가 자궁께서 복용할 삼령다(參苓茶) 1첩(貼)을 곧장 달여서 대령하라.” 하였다. 진동수가 앞으로 나아왔다. 내가 이르기를, “그대는 먼저 원소의 재실(齋室)로 달려가 부제조와 함께 달이는 것을 감독하라.” 하였다.

잠시 뒤에 강진삼이 앞으로 나아왔다. 내가 이르기를, “방금 전 진동수에게 분부하였으니, 진동수에게 물어 그 말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혜경궁(惠慶宮)**께서 복용할 삼령다를 이전의 처방 가운데 인삼을 5푼 줄여서 달여 들이라.” 하였다. **하류천(下柳川)**, **황교(皇橋)**, **옹봉(甕峯)**, **대황교(大皇橋)**, **유첨현(逌瞻峴)**[120], **유근교(逌覲橋)** 앞길을 경유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신하들과 장관(將官) 이하는 모두 말에서 내리라.” 하였다. **만년제(萬年堤)**[121]를 경유하여 동구(洞口)에 이르렀다. 전교하기를, “군뢰(軍牢)는 영기(令旗)를 가지고 좌우로 나누어 서서 시위하여 사람과 말이 화소(火巢) 근처에 난입하여 수목(樹木)을 훼손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내가 먼저 재실 밖 막차(幕次)에 나아가 공경히 자궁의 가교를 맞이하였다. 자궁을 모시고 재실로 들어간 뒤, 내가 손수 삼령다를 받들어 자궁께 올렸는데 **정리사(整理使)**가 미음(米飮)을 올렸다.

내가 이르기를, “자궁의 체후가 좋지 않아 방금 삼령다를 올렸으니 미음은 복용하실 리가 만무하다. 우선 그만두라.” 하였다. 잠시 뒤에 내가 막차를 나와 참포(黲袍)에 오서대(烏犀帶)를 갖추고 소여(小輿)를 타고, 자궁은 지붕이 있는 소여를 타시고 원소에 나아갔는데, 두 군주(郡主)[122]가 따라왔다. 내가 이르기를, “승지와 사관(史官), 시위(侍衛)는 재실 문 밖에서 정돈하고 기다리라. 궁으로 돌아갈 때 **장용 외사(壯勇外使)**는 **외영(外營)**의 군병을 거느리고 선상(先廂)이 되고, 훈련대장(訓鍊大將)은 훈련도감(訓鍊都監)의 군병을 거느리고 후상(後廂)이 되게 하라.”

하니, 이익운이 신전(信箭)을 선전관에게 주기를 청하였다. 내가 자궁을 모시고 이어 원상

---

120) **유첨현(逌瞻峴)** : 원문은 ‘**通瞻峴**’인데,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등 다수 용례에 의거하여 ‘通’을 ‘逌’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21) **만년제(萬年堤)** :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에 있는 제방(堤防)으로, 경기도 기념물 제161호이다. 정조는 **현륭원(顯隆園)**과 **수원**시 신읍(新邑)의 경영을 위한 경제적 기반의 확보와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둔전(屯田)의 설치와 관개용수를 위한 제방을 쌓는 일, 상권에 대한 보호, 식림사업(植林事業)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를 베풀었는데, 이 **만년제**도 그중 한 가지이다. 1798년(정조 22)에 완성된 **만년제**는 **화산(花山)** **현륭원**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122) 두 군주(郡主) : 청연군주(淸衍郡主)와 청선군주(淸璿郡主)이다.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장녀와 차녀로, 각각 광은위(光恩尉) 김기성(金箕性), 흥은위(興恩尉) 정재화(鄭在和)에게 하가(下嫁)하였다.

(園上)에 나아갔다. 자궁의 가교가 포장(布帳) 안에 이르자마자 비통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시어 통곡하시는 옥음이 포장 밖에 이르렀다. 내가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는데도 눈물이 흘러 협시(夾侍)를 재촉해서 불렀다.
전교하기를, "자궁의 상심(傷心)이 이토록 심하니, 삼령다를 **정리소(整理所)**로 하여금 곧장 들이게 하라." 하니, **정리사**들이 삼령다를 달여서 올렸는데, 자궁께서 복용하지 않으신 채 옥음을 그치지 않으시어 나도 모르게 목을 놓아 통곡하였다. **정리사 서유방**(徐有防) 등이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모르고 포장 밖에서 큰 소리로 아뢰기를, "오늘 전하께서 마음을 가누기가 매우 어려우시겠지만, 어찌 자궁의 마음이 더 비통해지시고 자궁의 체후가 혹 손상되실 것은 생각지 않으십니까. 더구나 날이 이미 저물고 있으니 자궁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속히 궁으로 돌아가기를 명하소서."
하여, 내가 이르기를, "가교를 모시고 궁을 나설 때 자궁께서 서글픈 마음을 충분히 누르고 있다고 하교하셨는데, 이곳에 도착하여 보니 마음속에서 비통한 감정이 우러나와 나 또한 스스로 억제하기 힘든데, 자궁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는가."
하고, 이어 손수 찻잔을 받들고 복용하시기를 권하였다. 잠시 뒤에 자궁의 가교를 받들고 포장을 나와 홍살문(紅箭門) 밖에 이르렀다. 자궁께서 궁으로 돌아가자고 명하시고 한참을 원상을 바라보신 다음 비로소 난가(鑾駕)를 돌렸다. 재실에 도착하기 전에 전교하기를, "여러 관사(官司)는 미리 준비하라." 하였다.

강陪慈宮詣**顯隆園**

목予敎晩秀曰承宣待開門奉香祝先詣園所山神祭先爲設行陳設祭品於魂遊石宥檢慈宮小次以待駕到也時至予具軍服乘馬慈宮御駕轎以出敎李益運曰正時已過三吹尙不爲之以致慈駕出宮之遲滯宣傳官輩擧行萬萬駭然啓螺宣傳官 柳星逵爲先汰去後令守禦廳拘留承傳宣傳官 李東善亦爲拘留予奉慈駕進發由**中陽門** **左翊門** **八達門**至**上柳川**店前予下馬詣慈宮駕前問候敎益運曰慈宮氣候在途而一向康寧不勝慶幸矣俄於轎前問候之時玉音不調良久無發落慈體之欠安可以仰認誠萬萬悶迫藥房提調入侍醫官姜晉三 掌務官 叅東秀使之待令提調 沈煥之進前予曰卿先詣園所慈宮進御參苓茶一貼卽爲煎待東秀進前予曰汝先馳往園所齋室與副提調監煎小頃晉三進前予曰俄已分付於叅東秀問于東秀依其言擧行敎曰**惠慶宮**進服參苓茶前方中人參減五分煎入由下**柳川皇橋甕峯大皇橋通瞻峴** **逌覲橋**前路予曰諸臣及將官以下皆下馬由**萬年堤**至洞口敎曰軍牢持令旗分立左右侍衛人馬勿令攔入於火巢近處使樹木傷損也予先詣齋室外幕次柢迎慈駕陪慈宮入齋室後予親奉參苓茶進于慈宮**整理使**進米飮予曰慈候不調才進參苓茶米飮則萬無進御之理姑爲置之少頃予出幕次具黲袍 鳥犀帶乘小輿慈宮御有屋小輿詣園所兩郡主從予曰承史侍衛整待於齋室門外還宮時**壯勇外使**率外營軍爲先廂訓將率訓局軍爲後廂益運請信箭授宣傳官予奉慈宮仍詣園上慈駕才到布帳之內悲痛過節玉音至達於帳外予焦遑掩抑天淚汍瀾催喚夾侍敎曰慈宮之疚懷至此參苓茶令**整理所**卽爲入之**整理使**等煎進參苓茶慈宮不許進玉音不止予亦不覺放聲**整理使** 徐有防等焦遑罔措從帳外高聲奏曰今日殿下聖懷雖萬萬難抑豈不念慈懷之轉益悲疚慈候之或致損傷耶況日勢已晩寬慰慈心亟命回鑾焉予曰陪駕出宮之時慈宮以十分寬抑爲敎矣到此悲從中來予亦不能自抑況慈心乎仍手捧茶鍾勸進小頃奉慈駕出布帳至紅箭門外慈宮命回輿瞻望園上良久始回鑾未至齋室敎曰諸司預備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12일(갑오)

강자궁을 모시고 **봉수당(奉壽堂)**으로 돌아왔다.

목○ 내가 군복으로 갈아입고 말을 탔으며, 자궁은 가교를 타시고 재실 앞길에 이르렀다. 이익운이 백관(百官)이 삽우(揷羽)를 하기를 청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전에 **원행(園幸)**할 때에는 궁을 나가는 날부터 백관이 전례(前例)에 따라 삽우를 하였다가 **화성 행궁**에서 원소에 나아갈 때까지는 삽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별다례(別茶禮)를 대내에서 주관하여 행하였고, 자전(慈殿)이나 자궁께서 **경모궁**(**景慕宮**)에 친향(親享)을 하면 **경모궁**의 친향하는 예(例)에는 이미 재계(齋戒)에 대한 규례가 없으니, 백관이 삽우를 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이익운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원소에 나아가셨을 때 참포를 입으셨기에 백관이 감히 삽우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재계일의 규례를 쓰지 않는데 꼭 이와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후에 친히 제사하는 것이 아니면 전례대로 삽우를 하라고 예도감(禮都監)에 분부하라." 하였다. 내가 **만년제(萬年堤)**를 경유하여 동구 밖으로 나와 출발하였다. 전교하기를, "원소와 동구에서부터 숭례문(崇禮門)에 도착할 때까지 상언(上言)을 받아들이라."

하였다. **유근교**, **유첨현**, **대황교**, **옹봉**, **황교**[123]를 경유하여 **하류천**에 이르렀다. 포장을 길 좌측에 설치하고, 막차를 포장 안에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내가 자궁의 가교를 모시고 잠시 머물렀는데, **정리사 서유방** 등이 미음을 올려 내가 손수 받들어 자궁께 올렸다. 수가(隨駕)하는 각신(閣臣), 승지, 사관(史官)에게 선반(宣飯)하였다. 다시 말을 타고 자궁의 가교를 모시고 **상류천**, **매교(梅橋)**, **팔달문**, **좌익문**, **중양문**을 경유하여 **봉수당**에 이르렀다. 자궁을 모시고 **장락당(長樂堂)**에 들어갔다. 내가 이익운, 홍인호(洪仁浩)에게 상언에 대한 판부(判付)를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육조(六曹)의 장관이 모두 배종(陪從)하는 반열에 있으니, 내일 회계(回啓)하게 하라." 하였다.

강陪慈宮還詣**奉壽堂**

목予改具軍服乘馬慈宮御駕轎至齋室前路益運請百官插羽予曰從前園幸時自出宮曰百官依例插羽自**華城行宮**詣園所時除插羽而今番則別茶禮自內行之若慈殿慈宮親享**景慕宮**親享之例旣無齋令則百官之除插羽何也益運曰殿下詣園所時御黫袍故百官不敢插羽矣予曰不用齋則不必如此此後非親祭則依前插羽之意分付禮都監予由**萬年堤**出洞口外進發敎曰自園所洞口至崇禮門捧上言由**迪覲橋** **迪瞻峴** **大皇橋** **甕峯** 星橋至下**柳川**命設布帳於路左設幕次於布帳之內予陪慈駕少駐**整理使** 徐有防等進米飮予手捧以進于慈宮宣飯於隨駕閣臣 承史還乘馬陪慈駕由**上柳川** **梅橋** **八達門** **左翊門** **中陽門**詣**奉壽堂**陪慈宮入**長樂堂**予命益運 仁浩書上言判付敎曰 六曹長官皆在陪扈之班使之明日回啓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2일(갑오)

강임희후(任希厚)는 바로 목사(牧使)에 제수하고, 구응(具膺)은 승진시켜 서용(敍用)하며, 수복(守僕)들은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우리 자궁을 모시고 원침(園寢)에 와서 살피니 사모의 정을 더욱 가눌 길이 없었다. 원속(園屬)에게 의당 소중한 분을 위해 특별히 마음을 쓰는 거조가 있어야 하겠다. 영(令) 임희후는 어떤 집안의 사람인가.[124] 품계에 상관하지 말고 곧바로 목사에 제수하라. 구응은 이미 주목(州牧)을 지냈으니 승진시켜 서용하라. 본원(本園)의 수복과 향(香)을 모신 수복은 첩가(帖加)를 만들어 주고 묘궁(廟宮)의 수복은 넉넉하게 시상하라. 숙수(熟手), 수호군(守護軍), 산지기(山直), 원역(員役), 식목 감관(植木監官) 등은 등급을

123) **황교** : 원문은 '星橋'인데, 전사 과정의 오류로 보아 '星'을 '皇'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24) 영(令) …… 사람인가 : 임희후(任希厚)는 사서(司書) 등의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 사도세자(思悼世子)를 보필하였던 임성(任珹)의 아들이다.

나누어 시상하라. 이들 모두 **정리소**로 하여금 시상한 뒤 초기(草記)하게 하라.” 하였다.

강命任希厚直除牧使 具膺陞敍守僕等施賞

목敎曰奉我慈宮來省園寢孺慕益復莫逮園屬當有爲所重加意之擧令任希厚是誰家人也不拘階級卽除牧使 具膺已經州牧陞敍本園守僕陪香守僕帖加成給廟宮守僕從優施賞熟手守護軍山直員役植木監官等分等施賞皆令**整理所**施賞後草記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2일(갑오)

강**용주사(龍珠寺)**의 총섭(摠攝)과 수승(首僧)에게 첩가를 만들어 주고, 거접(居接)한 승려들에게 쌀말을 나누어 주는 것을 **정리소**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용주사의 총섭 사일(獅馹)과 수승 철학(哲學)에게는 첩가를 만들어 주라. 경술년(1790, 정조14) 용주사를 창건하였을 때[125] 거접한 승려 8명에게는 각각 미(米) 6말을, 경술년 이후에 와서 거접한 승려 21명에게는 각각 미 5말을 나누어 주라. 그 이후에 거접한 승려 10명에게는 각각 미 4말을, 17명에게는 각각 미 3말을, 8명에게는 각각 미 2말을 선혜청(宣惠廳)으로 하여금 나누어 주게 한 뒤에 본부의 대동조(大同條)로 회감(會減)하도록 하고 또한 **정리소**로 하여금 알고 거행한 뒤 초기하게 하라.” 하였다.

강命**龍珠寺**總攝首僧帖加成給居接僧米斗令**整理所**擧行

목敎曰**龍珠寺**總攝獅馹首僧哲學帖加成給庚戌創建時居接僧八名各米六斗庚戌以後來接僧二十一名各米五斗其後居接僧十名各米四斗十七名各米三斗八名各米二斗令惠廳以本府大同條會減亦令**整理所**知悉擧行後草記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2일(갑오)

강장대(將臺)에 나아갔을 때 장용 내사(壯勇內使)가 서울과 지방의 군병 각 1개 초(哨)를 거느리고 선상(先廂)이 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장대에 나아갔을 때 장용 내사가 서울과 지방의 군병 각 1개 초를 거느리고 선상과 후상(後廂)이 되게 하라. 그 나머지 수가하는 마군(馬軍)과 보군(步軍)은 그대로 행궁(行宮)에 남으라고 각 영문(營門)에 분부하라.” 하였다.

강命詣將臺時內使卒京鄕軍各一哨爲先廂

목敎曰詣將臺時內使卒京鄕軍各一哨爲先後廂其餘隨駕馬步軍兵仍留行宮事分付各營門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12일(갑오)

강**화성**의 장대에 나아가 성상(城上) 습조(習操)와 야간 습조를 친히 살피었다.

목○ 내가 이르기를, “복식과 의장(衣章)은 조정의 위의(威儀)와 크게 관계되니 비록 말단 관료라 하더라도 각각 기복(器服)을 갖추어 의문(儀文)을 어기지 말아야 하는데, 더구나 대관(大官)의 경우에랴. 모두 전례에 따라 갑주(甲冑)를 준비하라고 녹사(錄事)를 불러서 분부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전 승지 이유경(李儒敬)을 가승지(假承旨)로 차하(差下)하라. 오늘 성상 습조(習操)를 거행하는 것은 군사방 승지(軍士房承旨)의 일이니 병조 참지(兵曹參知) 정약용(丁若鏞)을 가승지로 차하하고 이어 수궁(守宮)하라고 명하라.” 하였다.

○ 내가 갑주를 갖추고 **낙남헌(洛南軒)**에 나아갔다. 하루 전날, **장용 외사(壯勇外使)** **조심**

---

125) 경술년 …… 때 : 정조가 **현륭원(顯隆園)**을 **화산**으로 옮긴 후 경술년인 1790년(정조14)에 갈양사(葛陽寺) 자리에 능사(陵寺)로서 **용주사(龍珠寺)**를 세웠다.《日省錄 正祖 14年 10月 7日》

태(趙心泰)가 나의 뜻을 여쭈어 군령(軍令)을 청하고 원문(轅門)에 내걸었다. 때가 되자 내가 행궁 문을 나와 **장춘각(藏春閣)** 앞길을 경유하여 장대에 이르러 단(壇)에 올랐다. 황문(黃門)의 기수(旗手)가 또 깃발을 교차시켜 작문(作門)의 출입을 막았다. 심환지(沈煥之)가 무릎을 꿇고 계품(啓稟)하여 문을 조금 열어 놓도록 하였다. 징을 세 번 울려 취타(吹打)를 그치게 하였다. 병조 판서가 먼저 참현례(參現禮)를 행하고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계품하여 단에 오르라고 호령하였다. 신포(信砲)를 쏘고 징을 울려 대취타(大吹打)하게 하고 문을 열었다. 심환지가 무릎을 꿇고 계품하여 깃발을 올리도록 하니 선전관이 계품하여 깃발을 올리라고 호령하였다. 북을 두드리고 꽹과리를 쳤으며 흰색의 큰 깃발을 세웠다. 각 방면(方面)의 성장(城將)들이 모두 응하여 포(砲)를 쏘았다. **외사(外使)**가 원문을 경유하여 종종걸음으로 들어와 참현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대(臺) 위에 그대로 남아 있으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대신(大臣) 이하는 입시하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여러 대신들은 모두 연로하여 근력(筋力)이 약하니, 참현례를 생략하고 입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홍낙성(洪樂性), 유언호(兪彦鎬), **채제공(蔡濟恭)**, 이병모(李秉模)가 앞으로 나아왔다. 홍낙성 등이 아뢰기를, "며칠 동안 연이어 수고롭게 이동하시었는데 성상의 체후가 어떠하십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나는 평상시와 다름없으나 경들은 연로한 대신들인데 며칠 동안 수고가 많아 매우 염려된다." 하니, 홍낙성 등이 아뢰기를, "**혜경궁**(**惠慶宮**)의 기후(氣候)는 어떠하십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한결같이 강녕하시니 천만다행이다." 하였다.
홍낙성이 아뢰기를, "수가하는 신하들이 기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실려 있는데 신들이 전혀 의문(儀文)을 몰라 거듭 번거롭게 하교하시게 하여 갑주를 대내에서 내려 주는 일까지 있게 되었으니, 신들은 매우 황송합니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이소(金履素))가 기복을 갖추지 못하여 감히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대신 한 명이 갑주를 갖추지 못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이 있겠는가. 영돈녕부사는 융복(戎服)을 갖추고 입시하라." 하니, 김이소가 앞으로 나아왔다. 내가 이르기를,
"들으니 영상(領相 홍낙성(洪樂性))이 먼저 **화성**에 나아간 다음 날 성(城)을 순찰하였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며칠 전 바람이 부는데도 온 성을 돌았으니, 근력이 왕성하다고 할 만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들으니 우상(右相 **채제공**) 또한 지난번 큰바람이 불었는데도 종일 장대에 올랐다고 하던데, 근력이 왕성한 것을 어찌 다만 영상에게만 양보할 수가 있겠는가."
하니, 홍낙성이 아뢰기를, "신이 이 땅을 여러 번 지나갔는데도 이와 같이 보장(保障)이 되는 땅인지 몰랐다가, 이번에 둘러싼 형세와 처음 시작하는 공역(功役)을 보고서 비로소 하늘이 만들어 낸 높은 산이 오늘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지(城池)가 비록 평지(平地)라고는 하지만 그 에워싼 형세가 은연중에 사방을 견고하게 막고 있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아 공격하고 수비하는 것이 모두 편하여 바로 삼남(三南)의 요충지(要衝地)요, 삼보(三輔)[126]의 요해지로 적당하니, 이곳을 버리고 성부(城府)를 어디에 설치하겠습니까. 그런데도 400년 동안 비워 두고 설치할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우리 왕조가 평화로운 지가 오래되어 무력을 쓰지 않고 문교(文敎)를 닦은 데서 비롯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하께서 진실로 문무(文武)를 겸비(兼備)하고 편안한 가운데에서도 위태로울 것을 염려하시어, 이에 그 지리(地利)를 이용하여 성지(城池)를 경영하여 세우셨으니, 참으로 이

126) 삼보(三輔) : 한(漢)나라 때 도성인 장안(長安)을 경조(京兆), 풍익(馮翊), 부풍(扶風) 세 구역으로 나누고 삼보라 하였는데, 여기서는 서울 근교 지방을 가리킨다.

른바 만세토록 길이 의지할 터가 되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처음에는 **현륭원(顯隆園)**이라는 중히 여기는 바를 조성하는 일로 인하여 오랫동안 생각하여 마침내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만약 이로운 지리(地理)를 갖춘 형세를 얻지 못하였다면 또한 어찌 경솔하게 설치하여 이와 같이 장대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모든 일은 늘 사람에게 역량이 없을까를 염려하는 법이니, 어찌 뜻이 있는데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공역(工役)이 매우 거대하고 방략(方略)이 몹시 어려웠으며 또 우리나라 사람이 성곽(城郭)의 제도에 익숙하지 않았는데도 이처럼 빨리 완성하였으니, 이 또한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바는 아니다."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이번 공역에서 결단하고 완성하시어 구획하고 경영하는 것을 모두 친히 전수하셨으니 신들이 실로 몹시 찬탄하고 우러러 공경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적임자를 얻은 뒤에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번에 **장용 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감동(監董)하여 빨리 하지도 느리게 하지도 않고, 거의 몸소 판삽(版鍤)을 잡다시피 하면서 그 수고를 꺼리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성첩(城堞)과 우뚝 솟은 성루(城樓)를 보아도 그가 마음을 다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경이 총괄하여 다스린 노고 또한 많다고 할 수 있다."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신이 그 사이에서 무슨 수고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한결같이 정성스런 충정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경이 일찍이 고인(古人)이 **화성**의 형국에 대해 논한 것을 연석(筵席)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겠다."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선인(仙人)의 춤추는 소맷자락 형세이며, 옥녀(玉女)가 거문고를 타는 모양 이라고 예부터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앉아 굽어보면 은연하게 노선(老仙)이 소맷자락을 펼럭이는 듯, 미인이 거문고를 타는 듯합니다. 성부(城府)의 제도가 지금 거의 두루 갖추어졌는데도, 마을이 아직도 즐비하게 늘어서지 못하였으며 재화(財貨)가 아직도 샘물처럼 유통되지 못하여 왕도(王都)의 웅장하고 화려한 규모가 2, 3년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니, 축성(築城)하고 나면 이것이 참으로 걱정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애초에 염려했던 것으로 볼 때 이와 같이 실마리를 잡은 것만도 역시 다행이라 하겠다. 읍(邑)과 도(都)를 이루는 것은 아직 1년, 3년의 순서가 있으니 지금 이후로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방도를 차례로 점차 갖추면 몰려드는 백성이 적을까 근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하니, 유언호가 아뢰기를, "새로 조성한 초기라, 집칸들이 비록 넓지 않고 초가지붕이 비록 아름답지 않지만, 별이나 바둑알처럼 넓게 펼쳐져 있고 1만 호의 촌락이 고르게 나열되어 온 성의 사면(四面)에 빈 땅이 거의 없습니다. 시정(市井)과 인가(人家)가 엄연히 하나의 큰 도회(都會)를 이루었으니, 읍을 옮긴 지 10년도 되기 전에[127] 관청 건물과 민가가 이처럼 이루어진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심환지가 무릎을 꿇고 계품하여 길에 매복시킬 군사들을 떠나보내도록 하고, 선전관이 계품하여 신포(信砲)를 쏘라고 호령하였다. 각 방면에 10명씩 각각 삼안총(三眼銃)과 기화(起火) 등의 기물 등을 들고 성을 나가 나누어 매복하였다. 쟁수(錚手)가 징을 울리자, 각 방면에서 일체 응하여 포를 쏘고 매복시킬 군사들을 보냈다. 내가 이유경(李儒敬)에게 이르기를,

---

127) 읍을 …… 전에 : 1789년(정조13)에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묘를 당시 **수원** 읍치(邑治)인 **화산(花山)**으로 이장하면서, 이곳에 있던 읍치를 지금의 **팔달산(八達山)** 밑으로 옮겼다.《日省錄 正祖 13年 7月 15日, 16日》

"행궁이 가까우니 포성(砲聲)이 높아서는 안 된다. 신포를 삼혈총(三穴銃)으로 대신하여 총수(銃手)로 하여금 성 서북 모퉁이에 포를 쏘게 하라." 하였다. 심환지가 계품하여 성문을 닫도록 하니, 선전관이 계품하여 성문을 닫으라고 호령하였다. 신포를 쏘고 징을 울려 취타하고 함성을 질렀다. 천아성(天鵝聲)을 불고 숙정포(肅靜砲)를 쏘니 각 방면에서 일체 응하여 포를 쏘았다. 내가 노대(弩臺)에 올라 둘러본 다음 전교하기를, "성의 제도가 이와 같은 뒤에야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성첩(城堞)을 좌우로 연이어 지어 그 끝을 알 수 없으니, 설사 성에 적이 닥치더라도 무슨 수로 넘보겠는가. 중간에 치성(雉城)을 두어 서로 마주 보며 진압한다면, 10명의 군사만으로 지킨다 하더라도 수백, 수천의 무리를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들으니 이 성의 제도와 모양이 진주성(晉州城)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 곳이 이처럼 지극히 아름다운지는 보장하지 못하겠다. 옹성(甕城)은 또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제도인데 구운 벽돌로 견고하고 치밀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벽돌을 구워 만들 때 마침 추위를 만나서 비록 충분히 견고하지는 못하지만 연약하여 쉽게 부서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장대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각신(閣臣), 승지와 사관(史官), 시위하는 신하들에게 선반(宣飯)하라고 명하였다. 이만수에게 명하여 어제시(御製詩)를 써서 내리게 하였는데, 그 시에,

현륭원을 지켜 수호하는 것을 중히 여겼고 / 拱護斯爲重
재용을 허비하지도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네 / 經營不費勞
성은 평지와 아득히 멀고 / 城從平地迥
성루는 먼 하늘 의지해 높도다 / 樓倚遠天高
수많은 성가퀴는 규모가 장대하고 / 萬堞規模壯
삼군은 의기가 호쾌하네 / 三軍意氣豪
대풍가 한 곡조를 연주하니 / 大風歌一奏
붉은 태양이 조복(朝服)에 서리는구나 / 紅日在鱗袍

하였다. 배종하는 신하들로 하여금 화답하여 지어 올리게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성상 습조를 속히 거행하라." 하였다.
동면(東面)에서 길에 군사를 매복하고 포를 쏘고 기화를 들어 경보하자, 하면(下面)의 성장(城將) 또한 포를 쏘고 기화를 들었다. 선전관이 계품하여 동면에서 조련하라고 호령하였다. 신포를 쏘고 해당 방색(方色)의 큰 깃발을 세웠다. 북을 두드리고 천아성을 불고 깃발을 점검하였다. 동서의 유병(遊兵)들이 고함을 지르고 나는 듯이 달려와 응원하였다. 동서에서 적이 100보(步) 이내에 당도하였다고 보고하자, 자체적으로 호령하여 낭기(狼機)와 조총(鳥銃)을 교대로 쏘았다. 또 적이 50보 이내에 당도하였다고 보고하자, 사수(射手)들이 일제히 발사하였다. 선전관이 계품하여 북을 두드리고 꽹과리를 치고[128] 신포를 쏘았다. 동서에서 적이 성 아래에 당도하였다고 보고하자, 성 위에서 돌을 던졌다. 적이 이미 패하여 달아났다고 보고하고, 또 적이 달아나 소굴로 돌아갔다고 보고하였다. 남면(南面)의 조련과 북면(北面)의 조련도 앞의 의주대로 하였다. 삼면(三面)에서 일제히 조련하는 것 역시 앞의 의주대로 하였다.
야간 습조는 한결같이 주간 습조를 따라 하였다. 선전관이 계품하여 횃불을 붙이라고 호령

128) 꽹과리를 치고 : 원문은 '鳴囉'인데, 《일성록》의 다수 용례에 의거하여 '囉'를 '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하였다. 신포를 쏘고 기화 3자루(枝)를 들고 횃불 4자루(柄)를 붙이자, 각 방면에서 일체 응하여 포를 쏘고 기화를 들고 횃불을 붙였다. 선전관이 계품하여 횃불을 점검하라고 호령하고 포를 쏘자, 각 방면에서 일체 응하여 포를 쏘고 횃불을 점검하고 함성을 모두 세 차례 질렀다. 또 계품하여 횃불을 눕히라고 호령하고 포를 쏘자, 각 방면에서 일체 응하여 포를 쏘고 횃불을 눕혔다.

심환지가 계품하여 깃발을 내리도록 하였다. 또 계품하여 등불을 매달도록 하니, 각 성첩에서 일시에 등불을 매달고 성안의 인가(人家)에서 문 위에 각각 등불 1잔(盞)씩 매달아 놓았다. 선전관이 계품하여 휴식을 취하라고 호령하였다. 신포를 쏘고 꽹과리를 치자, 각 방면에서 일체 응하여 포를 쏘았다.

심환지가 계품하여 기경(起更 초경(初更))하도록 하여 북을 두드리고 종을 쳤는데 종은 징으로 대신하였다. 선전관이 계품하여 정경(定更)을 하도록 하고 신포를 쏘고 천아성을 불었다. 경고(更鼓)를 한 차례 치고 딱따기를 치자[129] 각 방면에서 일체 딱따기를 치고[130] 서로 호응하여 한 바퀴 돈 다음 다시 시작하였다. 2경은 1경 때의 의주대로 하였다. 선전관이 계품하여 주화(走火)를 들라고 크게 호령하였다. 주화를 드는 일을 끝내고 함성을 세 차례 질렀다.

이전처럼 수경(守更)을 하였는데, 5경이 되자 선전관이 계품하여 등불을 내리도록 하였다. 신포를 쏘고 징을 세 번씩 치자, 각 방면에서 일체 등불을 내렸다. 심환지가 계품하여 성문을 열도록 하였다. 징을 울려 대취타하고 성문을 열었다. 심환지가 계품하여 길에 매복시킨 군사들을 철수시키도록 하였다. 또 계품하여 성에서 내려오도록 하자, 각 성의 군병들이 성에서 내려왔다. 선전관이 계품하여 장일호(掌一號)를 하게 하였다. 징의 가장자리를 울리자 기치(旗幟)들이 세 줄로 나누어 섰다. 또 계품하여 장이호(掌二號)를 하게 하였다. 내가 말을 타고 **낙남헌**으로 돌아왔다.

강御**華城**將臺親閱城操夜操

목予曰服餙衣章大關朝廷儀威雖在末官庶僚各具器服無違儀文況大官乎竝令甲胄如例招致錄事分付又敎曰前承旨 李儒敬 假承旨差下今日城操擧行軍士房之事兵曹參知 丁若鏞 假承旨差下仍命守宮○予具甲胄出御**洛南軒**前一日**壯勇外使 趙心泰**稟請軍令懸之轅門時至予出行宮門由**藏春閣**前路到將臺登壇黃門旗手又桿作門 沈煥之跪啓稟小開門鳴金三下吹打止兵曹判書先行參現宣傳官跪啓稟升壇號令放信砲鳴金大吹打開門煥之跪啓稟升旗宣傳官啓稟升旗號令擂鼓鳴鑼起大白旗各面城將一體應砲外使由轅門趨入參現予曰仍留臺上予曰大臣以下入侍予曰諸大臣皆老矣節力爲難除參現入侍可也樂性 彦鎬 濟恭 秉謨進前樂性等曰連日勞動聖體若何予曰予則一樣而卿等以年老大臣連日勞樣殊可念也樂性等曰**惠慶宮**氣候何如予曰一向康寧萬幸樂性曰隨駕諸臣之當具器服旣在五禮儀而臣等專昧儀文屢煩下敎至有甲胄內下之擧臣等萬萬惶悚矣領敦則以器服之未備不敢入來矣予曰一大臣之未具甲胄庸何傷乎領敦則以戎服入侍履素進前予曰聞領相先詣**華城**之翌日巡城云然否濟恭曰數昨風日之中能遍周一城節力可謂康旺矣予曰聞右相亦於向日大風登將臺終日云節力之尙旺豈可獨讓於領相乎樂性曰臣之行過此地者不啻屢遭而猶不知爲如此保障之地今見形便之周遭功役之經始始知爲天作之高山有待於今日也城池雖曰平地其拱抱之勢隱然有四塞之固不高不低攻守皆便政當三南之要衝儼爲三輔之控扼則城府之設捨此奚適而四百年曠置曾不思設施者寔由我

---

129) 딱따기를 치자 : 원문은 '拍鳴'인데, 《일성록》 정조 19년 2월 9일 기사를 참조하여 '拍'을 '柝'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30) 딱따기를 치고 : 원문은 '拍鳴'인데, 《일성록》 정조 19년 2월 9일 기사를 참조하여 '拍'을 ''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朝昇平之久而偃修之致也今我殿下允文允武居安思危迺營迺築迺城迺池因其地利眞所謂萬歲永賴之基也予曰當初因寢園所重之地積費商量乃有此經始而若不得地利形便則亦豈可輕先設施若是之張大乎凡事每患人無力量豈有有志而不成者乎雖然工役甚鉅方略至難且我國之人不習城郭之制而如是速就亦非予始料之所及也濟恭曰凡慈工役惟斷乃成區劃經始無不親授臣實贊歎欽仰之萬萬然能得其人然後可以擔荷大事今此外使終始董役不疾不徐殆若身操版鍤而不憚其勞城堞之堅固雉樓之突兀亦可見悉心殫竭矣予曰卿之總理之勞亦云多矣濟恭曰臣何嘗校勞於其間而只有愚衷之憧憧矣予曰卿嘗以古人之論**華城**形局者言於筵席而予未記得矣濟恭曰以仙人舞袖形玉女彈琴案自古稱傳而坐此俯臨則隱然若老仙之張袖美人之橫琴矣城府之制今幾周備而閭井尙不得櫛比利貨尙不得泉流王都壯麗之規姑難責成於數三年經始之餘是甚可悶予曰以當初所料若是就緖亦云幸矣成邑成都尙有一年三年之序從今以往利用厚生之道次第漸備則繈至輻湊之民不患其不多矣彦鎬曰新造草創間架雖不闊大茅茨雖欠華美星羅碁布萬落均排一城四面幾無空地市井人烟儼成一大都會移邑未滿十年公廨民舍之如是成就豈其易乎煥之跪啓稟發伏路兵宣傳官啓稟號令放信砲每面十名各領三眼銃起大等器出城分伏錚手鳴金各面一體應砲發伏路予謂儒敬曰行宮密邇砲聲不可高信砲代以三穴令銃手放砲於城西北隅煥之啓稟閉城門宣傳啓稟閉城門號令放信砲鳴金吹打吶喊吹天鵝聲放肅靜砲各面一體應砲予登弩臺周覽訖敎曰城制如是然後方可謂備矣連堞橫築莫見其底設有迫城之賊何以詗察間置雉城壓之相望則十夫守之可敵城下百千之衆矣聞此城制樣晉州城似之而未保其能如是盡美矣甕城則又我國初有之制但未知燔甓能堅緻否也**心泰**曰燔造之際適値寒節雖不得十分堅固亦不至軟脆易碎矣予進御將臺命宣飯于大臣閣臣 承史侍衛命晩秀書下御製詩曰拱護斯爲重經營不費勞城從平地迥樓倚遠天高萬堞規模壯三軍意氣豪大風歌一奏紅日在鱗袍令陪從諸臣賡進予曰城操斯速擧行東面伏路放砲擧起大報警下面城將亦放砲擧起火宣傳官啓稟東面操號令放信砲立該方色大旗擂鼓吹天鵝聲點旗東西游兵吶喊飛趨應援東西報賊到百步內自主號令狼機鳥銃輪放又報賊至五十步射手齊發宣傳官啓稟擂鼓鳴囉放信砲東西報賊到城下城上打石報賊已敗退又報賊遁回巢南面操北面操如上儀三面齊操亦如上儀夜操一依晝操儀宣傳官啓稟演炬號令放信砲擧起火三枝燃炬四柄各面一體應砲擧起火燃炬宣傳官啓稟點炬號令放砲各面一體應砲點炬吶喊共三次又啓稟仆炬號令放砲各面一體應砲仆炬煥之啓稟落旗又啓稟懸燈各堞一時懸燈城內人家門上各懸燈一盞宣傳官稟休息號令放信砲鳴鑼各面一體應砲煥之稟起更發擂撞鍾鍾以金代之宣傳官稟定更放信砲吹天鵝聲打更鼓一次拶鳴各面一體拶鳴相映一遍周而復始二更儀如一更宣傳官稟走火大號令走火畢吶喊三次如前守更至五更時 宣傳官稟落燈放信砲鑼鼓三通各面一體落燈煥之啓稟開城門鳴金大吹打開城門煥之稟收伏路又稟下城各兵下城宣傳官稟掌一號鳴金邊旗幟分立三行又稟掌二號予乘馬還詣**洛南軒**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2일(갑오)

강내일 자궁께 진찬(進饌)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내일 **봉수당**(**奉壽堂**)에서 자궁께 진찬할 것이니, **정리소**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 하였다.

강命明日進饌慈宮

목敎曰明日當於**奉壽堂**進饌于慈宮令**整理所**知悉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2일(갑오)

강가전(駕前)의 취타수(吹打手) 등을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가전의 취타수 및 호령(號令)을 맡은 차비 내취(差備內吹)에게는 해당

조(曹)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시상한 뒤 초기하게 하라. 본부의 순뢰(巡牢)와 대기수(大旗手)로서 가전에서 전도(前導)한 자에게는 규례대로 취수(吹手), 차지 장교(次知將校)와 함께 시상하라. 정식대로라면 경기 감영에서 시상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정리소**로 하여금 분급(分給)한 뒤 초기하게 하라." 하였다.

강命駕前吹打手等施賞

목敎曰駕前吹打手及號令差備內吹令該曹考例施賞後草記本府巡牢大旗手駕前前導者依例與吹手次知將校施賞依定式當自畿營施賞而今番則令**整理所**分給後草記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12일(갑오)

강**화성**의 성역(城役)에 수고한 이들에 대해 비(碑)를 세워 사실을 기록하고, **정리사** 이하에게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화성**의 성역을 결심하고 성을 쌓으면서 경상 비용을 번거롭게 축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년 겨울 이후에 우선 천천히 하면서 재물을 모은 뒤에 다시 시작하려 했던 것도 모두가 내 스스로는 균평한 뜻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남쪽과 북쪽의 성루(城樓) 및 수각(水閣)·장대(將臺) 등을 보니, 날아갈 듯 아름답고 장대하며 성가퀴와 망루가 우뚝하니 어찌 삼보(三輔)의 중요한 요새지만 될 뿐이겠는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비석을 세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일을 감독한 여러 사람들의 성명을 나열하여 만년토록 역사에 기억되도록 하라. 대체로 본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낫다. 더구나 이번 행행(幸行)은 본래 소중히 여겼던 것이 있어서이니 먼저 논상을 시행하고 다시 숙련된 사람에게 맡겨 그 일을 완성하기를 요구하라. 그렇게 해야 바라보는 자를 고무시키고 애쓴 자를 편히 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총리사(摠理使)인 우의정 **채제공(蔡濟恭)**은 대표피(大豹皮) 1벌을 사급하고, 감동 당상(監董堂上)인 **화성 유수(華城留守) 조심태(趙心泰)**가 기유년(1789, 정조13)부터 7년간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노고를 다한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니 특별히 가자하라. 도청(都廳) 이유경(李儒敬)은 대내(大內)에서 내린 갑주(甲冑) 1벌을 먼저 사급하고, 책응 도청(策應都廳)인 **수원 판관(水原判官)** 정동협(鄭東協)은 준직(準職)을 제수하라. 별감동(別監董)인 **독성 중군(禿城中軍)** 김후(金焞)는 곤수(閫帥) 중에 임기가 거의 다 된 자를 개차(改差)하고 그 후임에 의망하라. 칠곡 부사(漆谷府使) 이방운(李邦運), 전 부사 조한진(曺翰振), 김해 부사(金海府使) 김처한(金處漢)은 그 이력에 따라, 승전 선전관(承傳宣傳官)을 승진시켜 서용(敍用)하는 예(例)에 의거하여 조용(調用)하라. 전 군수 조운상(趙雲祥)과 전 오위장(五衛將) 이태협(李泰協)·황기정(黃基定)은 승진시켜 서용하라. 전 현감 신백록(申百祿)은 **장용영(壯勇營)**으로 하여금 우선 **친군위장(親軍衛將)**의 자리를 비우고 계하(啓下)받도록 하라. 전 현감 정우태(丁遇泰)는 수령으로 조용하고, 감동 비장(監董裨將)인 수사(水使) 이표연(李杓然)은 이미 곤수의 자리에 있으니 숙마(熟馬) 1필을 사급하라. 전 부사 김낙순(金樂淳)은 승진시켜 서용하고, 전 부사 서유건(徐有建)과 전 현감 윤예기(尹芮基)는 모두 3품을 거쳤으니 오위장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하비(下批)하라. 전 군수 홍채주(洪采疇)는 옹성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것인데도 벽돌을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더구나 나이가 70에 가깝고 사람도 진실하니 당상관인 선전관에 의망하여 들이라. 간역 장관(看役將官) 신섬(申暹)과 김백빈(金百彬)에게는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고 김혁(金爀)에게는 대내에서 내린 후궁(帿弓) 1장(張)을 사급하라. 그 나머지 장교(將校)와 원역(員役), 공장(工匠) 등은 별단(別單)에 판하(判下)한 대로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되 상격(賞格)은 호조와 선혜청

(宣惠廳)에서 가져다 쓰고, **정리소**가 구관(句管)하여[131] 궁으로 돌아오는 날 상을 나누어 주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命**華城城役**竪碑紀實**整理使**以下施賞

목敎曰**華城城役**之決意築斯其費不煩於經用昨冬以後亦欲姑徐而鳩財復始者皆自以爲秤稱中出來而今行見南北城樓 水閣 將臺等處翬飛輪奐雉譙崢嶸豈特三輔關防之重稍待事功之告竣竪碑紀其實列書董功諸人姓名以爲萬年不朽之資大抵所見勝於所料況今玆之行自有府重先施論賞之擧更以手熟者仍責其成可期聳瞻息肩之道總理使 右議政 **蔡濟恭** 大豹皮一令賜給監董堂上**華城留守** **趙心泰**自己酉七年奔走殫竭其勞則近所罕有特爲加資都廳李儒敬先給內下甲胄一令策應都廳**水原判官** 鄭東協準職除授別監董 **禿城中軍**金煜 閫師瓜近人改差擬其代漆谷府使 李邦運前府使 曺翰振金海府使 金處漢隨其履歷依承傳宣傳官陞敍例調用前郡守 趙雲祥前五衛將 李泰協 黃基定陞敍前縣監 申百祿令該營爲先親軍衛將作闕啓下前縣監 丁遇泰守令調用監董裨將水使 李杓然旣在閫帥 熟馬一匹賜給前府使 金樂淳陞敍前府使 徐有建前縣監 尹芮基皆經三品五衛將作窠下批前郡守 洪采疇甕城之制我國初有而造甓堅緻且況年近七十人亦純實堂上宣傳官擬入看役將官申暹 金百彬臾馬一匹賜給金爀內下帳弓一張賜給其餘將校員役工匠等依別單判下分等施賞而賞格則取用於戶惠廳**整理所**勿管還宮日待令以爲頒賞之地事分付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2일(갑오)

강입직

목검교대교 서유구(徐有榘)

겸검서관 성해응(成海應)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3일(을미)

강**봉수당**(**奉壽堂**)에서 진찬(進饌)하였다.

목○ 때가 되어 융복(戎服)을 갖추고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쪽으로 서서 재배례(再拜禮)를 행하였다. 의빈(儀賓)과 척신(戚臣), 배종(陪從)한 백관(百官), 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가 모두 마련한 의주(儀註)대로 예(禮)를 행하였다. 여집사(女執事)가 대신 치사(致詞)를 아뢰기를,

"국왕 모(某)는 삼가 건륭(乾隆) 60년 윤2월 13일의 경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효강자희정선휘목혜빈 저하(孝康慈禧貞宣徽穆惠嬪邸下)께서는 왕실의 아름다운 덕을 계승하시어 오래오래 장수하는 복을 받으셨습니다. 복록은 자손에게 흘러넘치고 경사로움이 자궁(慈宮)께 미쳐 삼가 축하하는 자리에 모시고서 공경히 술잔을 따라 올립니다. 자궁께서 장수하심에 매우 기쁘오니 칭송하는 소리 언덕처럼 드높습니다.[132]

아, 즐거운 이 잔치에 만물이 모두 조화롭고 화창한 봄날을 맞이하여 하늘의 도우심에 보답합니다. 자궁은 더욱 장수하시어 성대한 복록을 크게 받으시어 태평 시대를 유구하게 하소서. 경하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눌 수 없어 삼가 천천세수(千千歲壽)를 기원하는 술잔을 올립니다."

하고, 손을 모아 이마에 대고 산호(山呼)를 외쳤다. 상식(尙食)이 축수(祝壽)하는 술을 따

131) 구관(句管)하여 : 원문은 '勿管'인데,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9월 10일 기사에 의거하여 '勿'을 '句'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32) 칭송하는 …… 드높습니다 : 원문은 '頌膽如阜'인데, 《정조실록》 19년 윤2월 13일 기사에 의거하여 '膽'을 '騰'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라 무릎을 꿇고 올려, 내가 술잔을 받고 자궁 저하 자리 앞에 나아갔다. 진작(進爵)과 진찬(進饌), 진탕(進湯)을 마련한 의주대로 행하였다. 음악을 연주하여 정재(呈才)를 하였다. 여관(女官)과 전찬(典贊)이 예가 끝났다고 아뢰었다.

강進饌于**奉壽堂**

목時至具戎服詣拜位北向立行再拜禮儀賓戚臣陪從百官內外命婦皆行禮如儀訖女執事代致詞曰國王某恭遇乾隆六十年月日孝康 慈禧 貞宣 徽穆 惠嬪邸下嗣京室徽膺海屋壽福流文孫慶邁魯母恭陪于華敬斟以斗喜深知年頌謄如阜於樂斯宴萬品咸囿迎春之和答天之佑萱暉彌永茀祿誕受太平萬億無疆悠久不勝慶忭之至謹上千千歲壽拱手加額唱山呼尙食酌壽酒跪進余受爵詣慈宮邸下座前行進爵進饌進湯如儀樂作呈才訖女官典贊白禮畢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3일(을미)

강**중양문**(**中陽門**) 밖에서 백관에게 선찬(宣饌)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찬반(饌盤)을 나누어 줄 때 **정리사**(**整理使**) 1인은 문밖에 나가 점검하고 승지와 병조 판서는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을 엄히 신칙하여 혼잡하고 시끄러운 폐단이 없게 하라. 산화(散花)를 거행할 때에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각의 하리, 정원의 하리, 결속 색리(結束色吏)로 하여금 백관에게 선찬, 선온(宣醞), 산화하고 삼군(三軍)의 하례(下隷)에게까지도 그렇게 하여, 모두 삽화(揷花)하게 하라." 하였다.

강宣饌百官於**中陽門**外

목敎曰饌盤分宣之際**整理使**一人出門外看檢承旨及兵判另飭東西班俾無滾雜喧擾之弊散花時亦如之令閣吏院吏結束色吏宣饌宣醞散花於百官以至三軍輿儓莫不揷花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13일(을미)

강진찬연(進饌宴)에 참석한 영의정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장락당(長樂堂)**에서 축수의 술잔을 받들어 올리고 **낙남헌(洛南軒)**에서 술자리를 베풀면서 공경히 북두(北斗) 자루에 술을 따르고 남산(南山)처럼 장수하시기를[133] 축원하였고, 다음 날 또 너희 노인들을 섬돌과 뜰로 불러들여 자궁의 덕에 배부르게 하였으니, 오늘 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아래에서 이미 만수무강하기를 송축하였는데, 어찌 봉록(俸祿)을 내려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노인으로서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이하 70세 이상 된 사람 및 61세가 된 사람들에게 각각 비단 한 필을 하사하고, 또 황주(黃紬)를 주어 구장(鳩杖)에 맬 수 있게 하라. 본부(本府)에서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각각 한 자급을 가자(加資)하라.

한 고조(漢高祖)는 풍패(豐沛)에 대해서, 광무제(光武帝)는 남양(南陽)에 대해서 탕목읍(湯沐邑)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특별히 복호(復戶)를 하사하였는데, 이는 국사(國史)에 기록되어 아름다운 일로 전해지고 있다. 더구나 이 **화성** 지역은 난가(鑾駕)가 머물렀던 곳이며 능침(陵寢)이 봉안된 곳이 아닌가. 우리 자궁을 모시고 올 적에 길 양쪽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장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임금의 행차를 바라보는 기쁨과 임금을 가까이에서 보고자 하는 정성으로 곳곳마다 노랫소리가 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칭송하였다. 그러니 지금 만약 특별한 은택을 베풀지 않는다면 장차 어떻게 이 지역의 부로(父老)와 자

133) 남산(南山)처럼 장수하시기를 : 《시경》 〈천보(天保)〉에 '여(如)' 자를 아홉 번 사용하여 임금의 복록과 장수를 송축한 내용이 나오는데, "남산과 같이 장수하여 이지러지지도 무너지지도 않기를 바란다. [如南山之壽 不騫不崩]"라고 하였다.

제(子弟)를 위로하겠는가. 전에 이미 급복(給復)한 이외에 원침(園寢) 아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2년을 더 급복하고, 성 안팎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1년을 더 급복하라.
남의 노인들에게 은혜가 미치게 하는 것을 이 사민(四民)[134]에게 우선했던 것은 은혜를 미루어 넓힌 선왕의 인정(仁政)이다. 이번 행행(幸行)은 그 시기가 자궁의 회갑을 맞이하는 해이고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절기인데, 자궁의 기후(氣候)가 편안하시어 성대한 의식을 순조롭게 거행하였으니, 영광을 입어 산천(山川)이 빛을 더하게 되었다. 이에 자궁의 마음을 우러러 본받아 크나큰 은혜를 크게 베풀어서, 기로(耆老)가 이미 은혜로운 보살핌을 받았으며 문과와 무과도 이미 시열(試閱)하였다.
그런데 저 누더기를 걸치고 파리한 자들만 유독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대열에 끼지 못한다면 어찌 하늘의 아름다움을 받들어 행하는 뜻이 되겠는가. 내일 **신풍루(新豐樓)**에 나아가 사민과 진민(賑民)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승지에게 명하여 길이 조금 먼 마을로 나누어 가서 창고를 열어 먹이도록 하라. 지금 이때에 먹여 주고 입혀 주면, 구덩이에서 벗어나[135] 격양가(擊壤歌)를 부르게 되리니, 털끝만 한 것까지 모두 자궁께서 내려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백성들이 비록 무식하고 무지하다 한들 어찌 기뻐하며 서로 알려서 크나큰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인자한 덕을 칭송하지 않겠으며, 남산과 북두성처럼 장수하시기를 또한 내 심정과 같이 축원하지 않겠는가.
이로 생**각건대**, 인정(仁政)은 은혜를 미루어 나가는 데 있을 뿐이니, 맹자(孟子)가 이른 바 "이 마음을 들어서 저기에 놓는다."라는 것이 이것이다. 지금 **화성** 한 부(府)를 미루어 보면 한 도(道)를 알 수 있고, 한 도를 미루어 본다면 7개 도와 양도(兩都)를 알 수 있다. 이번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화성** 한 부에만 미치고 팔도와 양도에 미치지 않으며, 단지 올해만 시행하고 천년만년토록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 어찌 미루어 나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리소를 옛날에도 설치하였던가. 실로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폐단을 줄이고자 해서 아주 적은 돈도 경상 비용을 축내지 않고, 위로는 대내의 음식 공급, 중간으로는 배종하는 신하의 노자, 아래로는 군마(軍馬)와 여도(輿徒 마부(馬夫))들의 식량과 사료(飼料)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리소**에서 마련하였으니, 이것이 10만 민(緡)의 전(錢)을 별도로 준비한 까닭이다. 책응(責應)하는 데 있어 그 수효가 부족할까 걱정했었는데, 이제 난가를 돌리려 하는데 수형(水衡 내탕고(內帑庫))에 남은 돈이 있다. 호조로 돌려서 몇 달간의 경비로 쓰기보다는 차라리 여러 지방에 베푸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 액수대로 곡물을 마련하여 '**을묘 정리곡(乙卯整理穀)**'이라고 이름 짓고, 300개 주현(州縣)에 나누어 두어, 매년 이자를 늘려 나가 수만 포에 이르게 하라. 이로써 나라 안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자궁이 베풀어 주는 은택을 입어 끝없이 마음에 품고 유구히 전하게 하라. 또 이 곡식으로 농사를 짓고 수확하여 공적으로 사적으로 산더미처럼 축적한다면 미루어 나가는 뜻이 크게 될 것이다.
어버이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뜻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고, 뜻을 따름에 있어서는 은혜를 넓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아, 너희 유사(有司)의 신하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알아서 명심하여 듣고 삼가 준행(遵行)하도록 하라."하였다.

강與宴領議政以下施賞有差

목敎曰奉觴長樂之堂置酒洛南之軒敬斟北斗拜獻南山翌又徠爾群老于階于庭飽以慈德今夕以永下

134) 사민(四民) :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를 말한다.
135) 구덩이에서 벗어나 : 원문은 '塡壑'인데,《정조실록》19년 윤2월 13일 기사에 의거하여 '塡' 앞에 '脫'을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旣進華封之祝上豈惜箕疇之錫乎老人領議政 洪樂性以下年七十以上及六十一歲人各賜帛一匹仍予黃紬以佐鳩杖之繫本府與宴者各加一資漢高之於豐沛 光武之於南陽猶以湯沐邑特賜之復國史書之傳以爲美事矧玆**華城**爲地鑾蹕之所駐臨珠邱之所奉安陪我慈宮而至夾路觀者堵墻如也瞻旄之喜就日之誠處處讙謠萬口同辭若在于今不別施惠澤將何以大慰是地父老子弟前此已給復外園底居民特加二年城內外居民加一年及人之老先此四者先王推恩之仁政也今行以其時則流虹回甲之年陽春布惠之序慈候康寧縟儀順成榮光所被山川增輝於是乎仰體慈心誕敷洪恩耆老已惠養矣文武已試閱矣惟彼衣鶉形鵠者獨阻於同樂均歡之中則豈所以對揚天休之意明日御**新豐樓**頒米于四民賑民分命承宣就道里稍遠坊曲發廩以饋之此時之饘斯糜斯塡壑而爲擊壤秋毫皆慈宮之賜民雖不識不知豈不欣欣然相告舍洪恩而頌慈德南山北斗之祝亦如予今日之心乎因此思之仁政在乎推之而已孟子所謂擧斯心加諸彼者是已今以**華城**一府推之一道可知一道而推之七道兩都可知矣今玆施惠只及於**華城**一府而不及八道兩都只行於今年一年而不行千年萬年是豈曰推之云乎**整理所**之設古豈有之哉誠欲祛煩而省弊錙銖不籍於經用上馬而內府供給中馬而從官盤纏下馬而軍馬輿徒之糗糧芻豆皆令**整理所**辦出此所以十萬緡錢之另行拮據者也以若數爻較若策應猶慮夫不足而鑾輿將旋水衡有贏與其歸之大農爲數月之用曷若覃施諸路稱此數作爲穀物名之曰乙卯**整理穀**分置三百州縣計年取剩衍而至幾萬萬包俾邦內黎庶咸被慈覆藏之無盡傳之悠久又以是穀耕之種之收之獲之以公以私如京如坻則推之義大矣哉愛親莫尙於順志順志莫尙於廣恩咨爾有司之臣知予至意明聽恪遵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3일(을미)

강**혜경궁**(**惠慶宮**)께서 복용할 삼령다(蔘苓茶)를 달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혜경궁**께서 복용할 삼령다를 이전의 처방에서 인삼을 5푼 줄여서 1첩을 달여 들이라." 하였다.

강 **惠慶宮**進服蔘苓茶命煎入

목敎曰**惠慶宮**進服蔘苓茶前方中人蔘減五分一貼煎入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3일(을미)

강진찬연에 참석한 내빈과 외빈에게 옷감과 음식물을 사급(賜給)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고(故) 판서 조엄(趙曮)의 처 홍씨(洪氏)가 80의 나이로 진찬의 반열에 나아와 참석하였고, 더구나 이 사람은 자궁의 고모(姑母)이니 옷감과 음식물을 외탕고(外帑庫)로 하여금 보내 주게 하라." 하였다.

○ 또 전교하기를, "고 참판 홍낙인(洪樂仁)의 처 민씨(閔氏),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홍용한(洪龍漢)의 처 송씨(宋氏)는 모두 70의 나이로 아무 탈 없이 왔으니, 옷감과 음식물을 외탕고로 하여금 보내 주게 하라." 하였다.

○ 또 전교하기를, "동지돈녕부사 홍준한(洪駿漢)·홍용한·홍낙신(洪樂信)·홍낙임(洪樂任), 도정(都正) 홍낙륜(洪樂倫)에게 옷감과 음식물을 외탕고로 하여금 보내 주게 하라." 하였다.

강賜與宴內外賓衣資食物

목敎曰故判書 趙曮妻洪氏八耋之年進參於進饌之列況是慈宮之姑母衣資食物令外帑庫輸送○又敎曰故參判 洪樂仁妻閔氏同敦寧 洪龍漢妻宋氏俱以七十之年無恙往來衣資食物令外帑庫輸送○又敎曰同敦寧 洪駿漢 洪龍漢 洪樂信 洪樂任 都正 洪樂倫衣資食物令外帑庫輸送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13일(을미)

강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윤시동(尹蓍東), 병조 판서 심환지(沈煥之)가 나왔다.

목○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심태(趙心泰)**에게 자헌대부(資憲大夫)를 가자(加資)하는 것으로 하비(下批)하였다. 병비(兵批)가 김후(金煦)를 전라 좌수사(全羅左水使)로 삼았다.

강有政 吏曹判書 尹蓍東 兵曹判書 沈煥之進

목 **水原留守** **趙心泰**加資憲下批兵批以金煦爲全羅左水使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3일(을미)

강입직

목검교대교 서유구(徐有榘)

검서관 이집기(李集箕)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4일(병신)

강**신풍루(新豐樓)**에 나아가 사민(四民)에게 쌀과 죽을 사급하였다.

목○ 융복(戎服)을 갖추고 삽우(揷羽)를 하고서 말을 타고 나가 **신풍루**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어좌(御座)에 올랐다. 쌀을 하사하고 죽을 쑤어 주었다.

○ 전교하기를, "본부(本府)의 사민과 기민(饑民)의 수가 4819인이다. 쌀을 사급할 때 승지를 나누어 보내라고 이미 명을 내렸다. 가승지(假承旨) 이유경(李儒敬)은 사창(社倉)에, 조진관(趙鎭寬)은 산창(山倉)에, 홍인호(洪仁浩)는 해창(海倉)에 가서 먼저 어제 내린 전교(傳敎)를 낱낱이 효유(曉諭)하여 자궁(慈宮)의 은혜를 알게 하라. 쌀을 하사하고 죽을 쑤어 주는 것은 한결같이 친림(親臨)하는 것처럼 하여, 혹시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라. 성안팎의 사민과 진민(賑民)에 대해서는, 내가 **신풍루**에 친림하여 나누어 주도록 하겠다." 하였다.

○ 전교하기를, "기민과 사민에게 죽을 쑤어 주고 쌀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일제히 거행하되, 미포(米包)를 먼저 **신풍루** 아래에 실어다 두어, 나누어 줄 때에 혼잡하게[136] 되는 일이 없도록 정돈하고 대령하라. 날이 아직 일러서 혹 미처 오지 않은 자가 있을 것이니, 차례로 잘 알아보고 한 사람도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강御**新豐樓**賜四民米粥

목具戎服插羽乘馬出至**新豐樓**下馬陞座賜米饘粥○敎曰本府四民饑民其數爲四千八百十九人也賜米時分送承旨已有成命假承旨 李儒敬往社倉趙鎭寬往山倉洪仁浩往海倉先以昨下傳敎一一曉諭俾知慈恩賜米饘粥一如親臨無或遺漏也城內外四民及賑民予當親臨於**新豐樓**頒賜矣○敎曰饑民四民之饘粥賜米一齊擧行而米包先爲輸置樓下頒給之際無得宣褰整齊以待日色尙早或有未及來者次次知悉俾無一夫之或漏也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14일(병신)

강**신풍루**에 전좌(殿座)할 때 훈련대장(訓鍊大將)이 기고(旗鼓)를 거느리고 환위(環衛)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신풍루**에서 쌀을 나누어 주기 위해 전좌할 때 훈련대장이 본국(本局)의 보군(步軍) 1개 초(哨)와 **장용 외영(壯勇外營)**의 보군 1개 초를 거느리고 십자가(十字

136) 혼잡하게 : 원문은 '宣雜'인데, 《일성록》의 다수 용례에 의거하여 '宣'을 '喧'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街)[137] 앞길에서 기고를 거느리고 작문(作門)을 환위하라.” 하였다.

강命新豐樓殿座時訓將率旗鼓環衛

목敎曰新豐樓賜米殿座時訓鍊大將率本局步軍一哨壯勇外營步軍一哨千守街前路率旗鼓環衛作門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4일(병신)

강낙남헌(洛南軒)에 전좌할 때 장용 외사(壯勇外使)가 기고를 거느리고 환위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낙남헌의 양로연(養老宴)에 전좌할 때 장용 외사가 기고를 거느리고 작문을 환위하라.” 하였다.

강命洛南軒殿座時壯勇外使率旗鼓環衛

목敎曰洛南軒養老宴殿座時壯勇外使率旗鼓環衛作門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4일(병신)

강진찬(進饌)할 때 일을 거행한 본부의 비장(裨將)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진찬할 때 일을 거행한 본부의 비장 최효민(崔孝閔)은 계사(計士)이니 해당 아문(衙門)으로 하여금 고품(高品)에 부료(付料)하게 하고, 나동욱(羅東郁), 황도언(黃道彦)은 유수(留守)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처리하여 노고에 보답하게 하라. 정중주(鄭重周)는 의약동참(議藥同參)의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조용(調用)하고, 한명철(韓命喆)은 상으로 가자(加資)하라. 그 나머지 감관(監官)과 색리(色吏) 등은 외탕고(外帑庫)에서 별단(別單)에 판하(判下)한 대로 시상하고, 그중에 가장 수고를 많이 한 하리(下吏)는 첩가(帖加)하라.” 하였다.

강進饌時擧行本府裨將以下施賞有差

목敎曰進饌時擧行本府裨將崔孝閔卽計士令該衙門高品付料羅東郁 黃道彦令留守從便區處酬勞鄭重周 議藥同參待窠調用韓命喆賞加其餘監官色吏等自外帑庫依別單判下施賞其中首勞之吏帖加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4일(병신)

강혜경궁(惠慶宮)께서 복용할 삼령다(蔘苓茶)를 달여서 올리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혜경궁께서 복용할 삼령다를 이전의 처방대로 1첩을 달여서 들이라.” 하였다.

○ 잠시 뒤에 낙남헌으로 돌아왔다.

강 惠慶宮進服蔘苓茶命煎進

목敎曰惠慶宮進服蔘苓茶依前方一貼煎入○少頃還御洛南軒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14일(병신)

강낙남헌으로 나아가 양로연을 거행하였다.

목○ 융복을 갖추고 말을 타고 낙남헌으로 돌아와 말에서 내려 어좌에 올랐다.

○ 전교하기를, “도승지(都承旨 이조원(李祖源))는 노인들 중 한 사람이니 내려가 반열에 참석하라. 수가(隨駕)한 노인인 영의정 등 15인과 화성의 노인인 이석조(李奭祚) 등 384인은 양로연에 참석하라.” 하였다.

---

137) 십자가(十字街) : 원문은 ‘千字街’인데,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부편(附便) 2 전교(傳敎)〉에 의거하여 ‘千’을 ‘十’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 전교하기를, “내가 노인들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니, 좌탑(坐榻)을 악차(幄次) 앞에 설치하여 연로한 이를 높이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우의정 **채제공(蔡濟恭)**, 영돈녕부사 김이소(金履素), 판중추부사 이명식(李命植), 판돈녕부사 이민보(李敏輔), 수어사 심이지(沈頤之), 도승지 이조원(李祖源), 대사간 서유신(徐有臣), 호조 참판 조윤형(曺允亨)이 차례로 지팡이를 짚고 전(殿)에 올랐다. 내가 그들을 위해 일어나 좌탑 위에 선 다음, 다시 어좌에 올랐다. 황건(黃巾)을 나누어 주어 노인들로 하여금 지팡이 위에 묶게 하였다.
음악이 연주되자 **정리사(整理使)** 윤행임(尹行恁)이 아뢰기를, “연상(宴床) 1좌(坐)를 자궁께 바치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좋다. 바로 들이라. 집사(執事)는 산화(散花)하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긴 눈썹에 백발노인들이 연석(筵席)에 연이어 오르고, 노란 얼굴 불룩한 배를 가진 노인들이 뜰을 가득 채웠으니, 이날 이 자리는 참으로 수역(壽域)이라 하겠다. 어제 비록 모두 꽃을 꽂았지만 오늘 반열에 참석한 자들은 꽃 한 가지를 더하여 늘 있지 않은 성대한 연회임을 표시하라.” 하였다.
○ 전교하기를, “본부에 집을 짓고 사는 노인들 중 호적이 없어 양로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 몇 사람인가? 유수로 하여금 의장대(儀仗隊) 밖에 불러들이도록 하고 비록 구경하는 사람 중에도 노인이 있거든 어디서 왔는지, 나이가 몇인지를 묻지 말고 온 자들을 막지 말고 술과 고기를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노인들이 모두 일어나 춤을 추고 천세(千歲)를 불렀다.
강御**洛南軒**行養老宴
목具戎服乘馬還至**洛南軒**下馬陞座○敎曰知申 卽群老中一人下去參班隨駕老人領議政等十五人**華城**老人李奭祚等三百八十四人與宴○敎曰予當爲群老興設坐榻於幄次之前以示尊年之意領議政 洪樂性 右議政 **蔡濟恭** 領敦寧 金履素 判府事 李命植 判敦寧 李敏輔 守禦使 沈頤之 都承旨 李祖源 大司諫 徐有臣 戶曹參判 曺允亨以次扶杖陞殿予爲興立於榻上還陞座分頒黃巾使群老繫杖顯樂作**整理使** 尹行恁啓言宴床一坐欲獻慈宮而等待矣予曰好矣卽爲進入執事散花予曰胥眉皓首濟濟登筵黃耇鮐背于于盈庭此日此席眞個壽城昨日雖皆簪花今日參班者宜添一花以識不常有之盛會也○敎曰本府築室老人之以無藉不得與宴者幾人令留守招入仗外雖於觀光之中如有老人不問遠邇多少來者勿拒分饋酒食群老皆起舞呼千歲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14일(병신)
강**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으로 나아갔다.
목○ 군복(軍服)을 갖추고 말을 타고 **낙남헌**에서 **방화수류정**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걸어서 층제(層梯)에 올랐다. 내가 이르기를, “우리나라 성의 제도가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주위를 담으로 둘러싸는 것에 불과하여 원래 옹성(甕城)과 치첩(雉堞)의 제도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 **화성**은 성지(城池)이자, 초루(譙樓 망루(望樓))이며 포루(砲樓)이다. 위치가 치밀하고 하나하나 법도에 맞으니 억지로 흠을 찾더라도 조금도 문제 삼을 것이 없다. 만약 **장용 외사**가 성심으로 해 나가지 않았다면 불과 1년 만에 공역이 거의 실마리를 잡아 가는 것이 가능했겠는가. 비록 어제 성상(城上) 습조(習操) 때 말하였지만, 본부의 군오(軍伍)가 이미 조련(組練)한 군졸이 아니라 그때그때 충정(充定)된 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성정군(城丁軍)이 기화(起火)를 들고 응하여 포(砲)를 쏘아 **친군위(親軍衛)**가 앉거나 일어서며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모두 형식에 맞게 되었다. 주장(主將)이 적임자가 아니었다면, 창졸간에 어찌 혹 이와 같을 수 있었겠는가. 내가 그들의 공적을 가상하게 여긴

다. 끝까지 소홀히 하지 말고 즉시 완공을 아뢸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강御訪花隨柳亭

목具軍服乘馬自洛南軒至亭下馬步上層梯予曰我東城制無論京外不過周遭繚垣而止元無甕城雉堞之制而今此華城城池也譙樓也砲樓也位置縝密鑿鑿中窾强覓疵類小無如何若非外使誠心做去不過周歲之頃工役之幾盡就緒安能乃爾雖以昨日城操言之本府軍伍旣非組練之卒不過臨時充定者而城丁軍擧火應砲親軍衛之坐作進退俱能依樣如非主將之得其人則倉卒之間豈或如是予嘉乃績終始無怠俾卽奏工也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4일(병신)

강득중정(得中亭)에 나아가 시사(試射)하고 매화(埋火)[138]를 구경하였다.

목○ 소포(小布)에 5순(巡)을 쏘아 24발을 맞혔고, 장혁(掌革)에 1순을 쏘아 3발을 맞혔으며, 유엽전(柳葉箭) 1순에서 3발을 맞혀 4분(分)을 얻고, 2순에서 2발을 맞혔다.

○ 대(臺)에서 내려오니, 화전(火箭) 하나가 유성(流星)처럼 날아가고, 온 사방에서 화포(火砲)가 땅속에서 용솟음쳤다.

강御得中亭試射觀埋火

목小布五巡二十四矢掌革一巡三中柳葉箭一巡三中四分二巡二中○自臺下一點火箭走若流星百道火砲從地中聳出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14일(병신)

강수원 중군(水原中軍) 김후(金煦)를 잉임(仍任)하였다.

목○ 화성 유수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본부가 외영(外營)으로 승격된 뒤 마군(馬軍)인지 보군(步軍)인지, 정군(正軍)인지 보군(保軍)인지 막론하고, 변통하여 그대로 두거나 줄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지만 아직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으니, 생무지에게 맡긴다면 수습하고 제도를 정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전 중군 김후를 지금 우선 잉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命水原中軍 金煦仍任

목 華城留守 趙心泰啓言本府陞爲外營之後無論馬步正軍與保軍變通存減不一其端今纔釐正而姑未就緒若付之生手將無以收拾定制前中軍金煦請今姑仍任允之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4일(병신)

강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윤시동(尹蓍東), 병조 판서 심환지(沈煥之)가 나왔다.

목○ 김낙순(金樂淳)을 길주 목사(吉州牧使)로 삼았다. 병비(兵批)가 조한진(曺翰振)을 영종 첨사(永宗僉使)[139]로, 황기정(黃基定)을 군산 첨사(群山僉使)로, 이동협(李東協)을 백령 첨사(白翎僉使)로 삼았다.

강有政 吏曹判書 尹蓍東 兵曹判書 沈煥之進

목以金樂淳爲吉州牧使兵批以曺翰振爲永宗僉僉使 黃基定爲群山僉使 李東協爲白翎僉使

---

138) 매화(埋火) : 폭발물을 매설하는 일 또는 그 폭발물을 말한다. 폭발물은 폭발하면서 불덩이가 유성(流星)보다 빠르게 달려 나가고 소리가 진동하여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므로, 지포(紙炮)·화포(火炮)와 함께 불꽃놀이에 이용되었다.

139) 영종 첨사(永宗僉使) : 원문은 ‘永宗僉僉使’인데 ‘僉’ 1자를 연문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4일(병신)

강입직

목검교대교 서유구(徐有榘)

검서관 이집기(李集箕)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5일(정유)

강자궁(慈宮)의 가교(駕轎)를 모시고 시흥현(始興縣) 행궁으로 돌아와 유숙하였다.

목○ 내가 군복을 갖추고 말을 탔다. 자궁께서 가교를 타고 **복내당(福內堂)**에서 나와 **좌익문(左翊門)**·신풍문(新豐門 **신풍루(新豐樓)**)·좌군영(左軍營)과 우군영(右軍營)의 앞길·종가(鍾街)를 경유하였다. **장안문(長安門)** 밖에 이르러, 길 왼쪽에서 공경히 맞이하는 문무관과 신은(新恩)에게 화개 무동(華蓋舞童)을 거느리고 자궁의 가교 앞에서 동서로 나누어 전도(前導)하라고 명하였다. 5리에 이르러 뒤처졌다. 진목정교(**眞木亭**橋 여의교(如意橋)) 앞에 이르러, 내가 말에서 내려 자궁의 가교 앞에 나아가 문후를 드리고 노차(路次)에 청포장(靑布帳)을 설치하였다. 내가 자궁의 가교를 모시고 잠시 머물러 직접 미음다반(米飮茶盤)을 자궁 앞에 올렸다. **장용 외사(壯勇外使) 조심태(趙心泰)**를 소견(召見)하고 전교하기를, "경이 이미 군대를 이끌고 이곳까지 이르렀으니 수가(隨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뒤처졌다가 군영으로 돌아가라." 하였다.

이어 **정리사(整理使)** 윤행임(尹行恁)에게 먼저 사근평(**肆覲坪**) 행궁에 나아가 구들을 점검하고 여러 일들을 정칙(整飭)하라고 명하였다. 뒤이어 내가 먼저 사근평 행궁에 나아갔다. 말에서 내려 응란헌(**凝鑾軒**)에 들어가 자궁께서 묵으실 정당(正堂)과 주방을 직접 살폈다. 문밖 막차에 나아가 각무 차사원(各務差使員)인 광주 부윤(廣州府尹) 서미수(徐美修), 시흥현령(始興縣令) 홍경후(洪景厚), 과천 현감(果川縣監) 김이유(金履裕)에게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보고할 만한 고을의 폐단과 백성의 고충이 있으면 일일이 주달(奏達)하라." 하니, 서미수 등이 아뢰기를, "은택이 두루 퍼져 백성들이 모두 편안합니다. 주달할 만한 폐단과 고충이 없습니다." 하였다.

자궁의 가교가 도착하였다. 내가 공경히 맞이한 뒤에 말을 타고 자궁의 가교를 따라 정당에 들어가 오선(午膳)을 올렸다. 조금 뒤에 내가 말을 타고 자궁의 가교를 모시고 나와 원동(院洞 원골)·청천평(淸川坪 맑은내들)·장산우(長山隅 장산모루)를 경유하였다. 안양교(安養橋)[140] 앞길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자궁의 가교 앞에 나아가 문후를 드리고 노차에 청포장을 설치하였다. 자궁의 가교를 모시고 잠시 머물러 직접 미음다반을 올렸다. 이어 말을 타고 대박산(大博山) 앞 들판을 경유하였다. 먼저 시흥 행궁에 나아가 자궁께서 묵으실 정당과 주방을 두루 살핀 뒤 말을 타고 막차를 나왔다. 자궁의 가교가 도착하여 공경히 맞이한 뒤, 말을 타고 자궁의 가교를 따라 행궁에 들어가 석선(夕膳)을 올렸다.

강陪慈駕還次始興縣行宮

목予具軍服乘馬慈宮御駕轎自**福內堂**出由**左翊門** 新豐門左右軍營前路鍾街至**長安門**外予命文武新恩之柢迎路左者率華蓋舞童分東西前導於慈宮駕前至五里落後至**眞木亭**橋前予下馬詣慈駕前問候設靑布帳於路次予陪慈駕少駐親進米飮茶盤于慈駕前召見**壯勇外使** **趙心泰**敎曰卿旣領軍到此不可隨駕自此落後還營仍命**整理使** 尹行恁先詣**肆覲坪**行宮看檢房堗整飭諸事予仍先詣**肆覲坪**行宮下馬

---

140) 안양교(安養橋) : 원문은 '安陽橋'인데, 읍지(邑誌)에 의거하여 '陽'을 '養'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京畿道邑誌》《始興郡邑誌》《京畿道始興郡邑誌地圖》

入凝璽軒親審慈宮所御正堂及廚房出御門外幕次命各務差使員 廣州府尹 徐美修 始興縣令 洪景厚 果川縣監 金履裕入侍敎曰如有邑弊民瘼之可以登聞者一一奏達也美修等曰惠澤傍流民皆安堵無弊瘼之可達者矣慈駕至予柢迎後乘馬隨慈駕入正堂進午膳少頃予乘馬陪慈駕出由院洞淸川坪長山隅至安陽橋前路下馬詣慈駕前問候設靑布帳於路次奉慈駕少駐親進米飮茶盤仍乘馬由大博山前坪先詣始興行宮周審慈宮所御正堂及廚房乘馬出幕次慈駕至柢迎後乘馬隨慈駕入行宮進夕膳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5일(정유)

강입직

목검교대교 서유구(徐有榘)

겸검서관 성해응(成海應)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6일(무술[141])

강자궁(慈宮)의 가교(駕轎)를 모시고 궁으로 돌아왔다.

목○ 내가 승지 이익운(李益運)에게 이르기를, "지방관으로 하여금 경내의 부로(父老)와 백성들을 거느리고 연로(輦路) 중 환히 트인 곳에서 대령하여 어가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군복을 갖추고 말을 타고서 자궁의 가교를 모시고 나왔다. 문성동(文星洞) 앞길에 이르자, 시흥 현령(始興縣令) 홍경후(洪景厚)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길 왼쪽에 공경히 부복하고 있었다. 내가 말을 멈추고 전교하기를, "어가가 보통 지나가는 지역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풀 방도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오늘은 자궁의 가교를 모시고 재차 시흥 행궁에 묵기까지 하였고 궁으로 돌아가는 길이 모두 편안하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경사스럽고 다행으로만 느껴지는 이 마음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시흥 백성들을 위해 반드시 요역(徭役)을 견감하고 폐단을 제거해 줌으로써 자궁의 은혜를 펼쳐 보이고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더구나 행차를 바라보는 백성들은 그저 즐겁게 행차의 위의(威儀)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요 은택을 기대하는 마음도 갖고 있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너희는 이미 행차를 바라보았고 나는 이미 물어보았으니, 고질적인 병폐와 제거해야 할 폐단이 있다면 숨김없이 모두 진달하라."

하니, 백성들이 아뢰기를, "다행히 요순(堯舜) 같은 임금님을 만나 태평한 세상에 태어나 늙어 가니, 먹고 입는 것 어느 하나도 모두 임금님의 은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천지 같고 부모님 같으신 우리 임금님이 계시니 오두막에서 황발(黃髮)을 드리우고 늙어 가는 저희는 밤낮으로 감읍할 뿐입니다. 임금님께 아뢰어 번거롭게 할 만한 무슨 질고(疾苦)가 있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런 말은 겉치레로 하는 인사말이다. 너희는 모두 나의 적자(赤子)이다. 그런데도 매번 은택을 두루 펴지 못하니, 마음에 늘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깊은 구중궁궐에서는 오두막의 질고를 자세히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어가 앞에서 말하도록 하여 그동안 듣지 못했던 폐단을 들음으로써 행차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심정에 보답하고자 생각한 것이다. 너희는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났는데도 어찌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며 선뜻 말하려 하지 않는가. 주저하지 말고 다시 진달하라." 하였다. 이익운이 백성들에게 이 하교를 선포하고 돌아와 아뢰기를, "백성들에게 두루 유시(諭示)하니, 모두들 별다른 폐단이 없어서 하문하시는데도 감히 아뢰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호역(戶

141) 무술 : 원문은 '戊辰'인데, 간지가 바르지 않아 '辰'을 '戌'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役)으로 바치는 계초(鷄草)를 때로 1년에 두 번씩 징수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폐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잘한 잡역(雜役)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 없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본현(本縣)의 갑인년(1794, 정조18) 정퇴조(停退條) 환곡과 군향(軍餉)을 탕감해 주고, 부세(賦稅)를 줄여 주고 요역을 견감해 줄 방도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강구하여 초기(草記)하도록 하라고 특별히 전교를 내렸다. 그리고 유사 당상(有司堂上) 이시수(李時秀)에게 이 전교를 백성들에게 읽어 주어 유시하라고 명하고, 이어 이시수로 하여금 유시하게 하기를, "지난날 특별한 은혜를 두루 베풀지 못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이곳에 행차하였으니, 어찌 별도로 나의 뜻을 보여 주는 조처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난가을 환곡 중 정퇴조를 모두 탕감한다. 호역은,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방백과 수령들에게 관문(關文)을 보내어 물어서, 폐단을 줄이고 견감하는 방도를 특별히 강구하여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 매년 정월의 행차에 연로(輦路)의 백성들이 눈을 치우고 길을 닦는 폐단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금년부터는 원행(園幸) 날짜를 봄가을 농한기로 정하니, 이 또한 백성을 위하는 고심에서 나온 것이다. 이후 매년 행차가 지나갈 때마다 민정을 자세히 살펴 폐단에 따라 대처할 방도를 구할 것이니, 너희는 모두 그리 알라." 하였다. 백성들이 모두 고무되어 물러갔다. 백성 중에 식량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이익운에게 그의 나이를 물어보라고 명하자, 대답하기를, "61세입니다." 하였다.

이익운이 아뢰기를, "아무리 무지몽매한 백성이라고는 하나, 그 바라는 말을 드러내 놓고 하니 백성들의 습속이 가증스럽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지나치기는 지나치다. 그러나 이미 그의 나이를 물었으니, 어찌 헛되이 물러가게 하겠는가. 그가 원하는 대로 쌀을 제급(題給)하고, 외람된 죄는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이어 이시수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관악(鸛嶽 관악산(冠岳山))이 저기에 있구나. 바라보니 인가가 있는 듯한데, 자하동(紫霞洞)이라는 곳인가?"

하니, 이시수가 아뢰기를, "관악의 동서남북에 모두 자하(紫霞)가 있는데[142], 경관이 수려합니다. 저기 산줄기 따라 집이 있는 곳이 바로 남자하(南紫霞)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그 가운데 고(故) 장신(將臣)의 계정(溪亭)이 있다고 들었다." 하니, 이시수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연주대(戀主臺)는 어디인가?" 하니, 이시수가 아뢰기를, "관악 정상에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이어 그곳을 떠나 출발하였다. 번대방평(蕃大坊坪)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자궁의 가교 앞에 나아가 문후를 드렸다. 문후를 드린 뒤 만안현(萬安峴 만냥고개)을 경유하여 먼저 노량(鷺梁) 행궁에 나아갔다. 잠시 후에 문밖의 막차(幕次)로 나아갔다. 당마(塘馬)로 하여금 자궁의 가교 앞길에 급히 보고하게 하였다. 자궁의 가교가 이르러 앞의 의식과 같이 공경히 맞이하였다. 자궁의 가교를 따라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에 들어갔다. **정리사**(**整理使**)가 자궁의 오선(午膳)을 올려 내가 직접 살피고 올렸다. 주교사 도청(舟橋司都廳) 이홍운(李鴻運)을 소견(召見)하였다. 자궁께서 내리신 비단 1필을 사공과 격군(格軍)에게 차등 있게 상으로 나누어 주고, 또 내려 주신 찬탁(饌卓)을 노량 별장에게 하사하였다. 잠시 후에 병조 판서 심환지(沈煥之)가 군령을 올렸다. 내가 시신(侍臣)들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지난번에 반나절 비가 내리기는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연일 화창한 날씨가

142) 관악의 …… 있는데 : 1795년(정조19) 당시 관악산 동서남북 네 곳에 자하동(紫霞洞)이 있었는데, 남자하(南紫霞)는 지금의 안양 쪽이고, 서자하(西紫霞)는 삼성산(三聖山) 삼막사(三幕寺) 일대, 북자하(北紫霞)는 서울대학교 쪽, 동자하(東紫霞)는 과천 쪽이다.

계속되었고 자궁의 기체가 줄곧 강녕하셨다. 이제 궁으로 돌아와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참으로 천만다행이다." 하니, **정리사** 심이지(沈頤之) 등이 아뢰기를, "10일에 내린 비는 반나절에 지나지 않았고, 14일에는 또 잔치 뒤에 내렸습니다. 궁을 나올 때나 돌아갈 때나 모두 날씨가 화창하여 하늘이 도우신 듯하니, 신들 또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내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궁을 나온 날부터 원자(元子)가 매일 두 차례씩 문후를 여쭈는 서신을 보냈다. 지금 또 서신이 이르렀으니, 경들은 한번 보도록 하라." 하고, 이어 두 장의 종이를 꺼내 보여 주었다. 그중 하나에는 "**봉수당**(**奉壽堂**)에서 진찬례(進饌禮)를 행하고 **낙남헌**(**洛南軒**)에서 양로연(養老宴) 베푸시니, '산호 산호 재산호 천세 천세 천천세[143]' 소리 귓가에 들립니다.[144]" 라고 하였고, 다른 하나에는 "오늘 배알하게 되었으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돌려 가며 읽고 일어나 아뢰기를, "삼가 예필(睿筆)을 보니, 실로 우리 동방의 무궁한 복입니다." 하였다.

궁으로 돌아올 때가 되어 융복(戎服)으로 갈아입고 말을 탔다. 자궁께서 가교(駕轎)를 탔다. 주교(舟橋 배다리)에 이르자 선전관이 꿇어앉아 계품(啓稟)하였다. 승선포(乘船砲), 행선포(行船砲), 개금(開金), 대취타(大吹打)를 모두 궁을 나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하였다. 내가 중홍살문(中紅箭門)에 이르렀을 때 주교사 당상 서용보(徐龍輔)를 불러 이르기를,

"8일 동안 대기하느라 사공과 격군이 밤낮으로 애쓴 노고 또한 많다고 할 것이다. 금년에 처음 온 자는 미(米 쌀) 4말을, 여러 해 동안 온 자는 미 3말을 지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이르기를, "배가 오늘 내려가면 삼남(三南)의 조운(漕運)을 두 번 할 수 있는가?" 하니, 서용보가 아뢰기를, "문제없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배를 출발시키는 것은 하루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 내일 주교를 철거하는 대로 내려보내 조금이라도 뱃사람들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이어 출발하여, 주교·만천(蔓川)·나업산(羅業山) 앞길을 경유하여 숭례문(崇禮門)으로 들어왔다. 돈녕부 앞길에 이르러 이익운이 계엄 풀기를 청하여 그대로 따랐다. 돈화문(敦化門), 건양문(建陽門)을 경유하여 보정문(保定門), 만팔문(萬八門)으로 들어와 대내로 돌아왔다.

강陪慈駕還宮

목予謂承旨 李益運曰令地方官率境內父老民人待令于輦路通曠處以待駕過具軍服乘馬陪慈駕以出至文星洞前路始興縣令 洪景厚領民人祗伏路左予駐馬敎曰尋常駕過之地必思施惠之方況於今日陪奉慈駕再度經宿於始興行宮回鑾萬安以予慶幸之心何惜於民爲始興民必欲蠲其繇後祛其弊瘼以布慈恩以副民望況群民望幸之心非徒欣瞻羽旄也冀有沾漑也爾旣望幸予旣俯詢如有切痼之瘼可祛之弊悉陳無隱民人等曰幸逢堯舜之君生老太平之世一衣一食一飮一口皆我帝力天地也父母也蓬門蓽戶之中垂黃戴白之類晝夜感泣而已有何疾苦之可以仰煩天聽者乎予曰此等之說卽爾輩外面人事也爾等皆吾赤子而每患恩澤之不能博施心常忸焉況九重深邃蔀屋疾苦無由詳知故於咫尺駕前導之使言思欲聞所不聞之弊以若群民望幸之情爾輩逢此可言之會豈可嚴畏囁嚅不敢發言乎愼勿咨且更爲陳達益運以下敎宣布於群民回奏曰遍論群民皆言別無弊瘼故俯詢之下不敢仰奏而最是戶役鷄草之屬或至一年再徵大爲民弊外此瑣細之雜役亦不無稱冤云矣予以本縣甲寅停退條還餉蕩減省賦蠲繇

143) 천천세 : 원문은 '三千歲'인데, 《진찬등록(進饌謄錄)》의 진찬의(進饌儀)에 따라 '三'을 '千'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44) 산호 산호 …… 들립니다 : 진찬의에 따르면, 전찬(典贊)이 "산호(山呼)"라고 창(唱)하면 진찬소(進饌所)의 당상과 낭청이 두손을 맞잡아 이마에 대고 "천세(千歲)"라고 하고, 또 "산호"라고 창하면 다시 "천세"라고 하며, "재산호(再山呼)"라고 창하면 "천천세(千千歲)"라고 한다. 이때 당상과 낭청이 "천세"라고 할 때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천세"라고 한다. 《進饌謄錄 萬慶殿翌日夜讌儀》

之方令廟堂講究草記事別下傳敎命有司堂上李時秀讀諭傳敎於民人等仍使時秀諭曰他時不能遍施非常之惠而今年則始幸此地豈無別般示意者乎故前秋還穀之停退條一竝蕩減戶役則使備局關問於方伯邑倅省弊蠲役之方另加講究當善爲區處每歲正月之幸輦路民人之掃雪治道爲弊不些故始自今年園幸日子定以春秋農隙此亦出於爲民之苦心此後頻年駕過詳採民情當有隨弊捄藥之道爾等各知悉民皆鼓舞而退有一民願受食物予命益運問其年對曰六十一歲矣益運曰雖是愚氓其言顯有希覬民習可惡矣予曰濫則濫矣旣問其年豈令徒然退去依其願題給米斗猥越之罪令本官治之仍顧謂時秀曰鸛嶽在彼望之略有人烟是所稱紫霞洞者乎時秀曰鸛嶽之東西南北皆有紫霞而泉石絕勝彼依山而屋者卽南紫霞 也予曰其中聞有故將臣溪亭矣時秀曰然矣予曰戀主臺在何處時秀曰在鸛嶽絕頂云矣仍進發至蓄大坊坪下馬詣慈駕前問候訖由萬安峴先詣鷺梁行官少頃出御門外幕次令塘馬馳報慈駕前路慈駕至柢迎如前儀隨慈駕入**龍驤鳳翥亭** **整理使**進慈宮午膳予親審以進召見舟橋都廳 李鴻運慈宮內下錦緞一疋因分賞沙格有差又下饌卓賜鷺梁別將少頃兵曹判書 沈煥之進軍令予顧謂侍臣等曰向者半日之雨果啓連日淸和之候慈宮體度一向康寧今將回鑾入城誠萬慶幸**整理使** 沈頤之等曰初十日之雨不過半日十四日之雨又在讌後出還宮時日候輒皆淸和天若有助臣等亦不勝歡忭矣予笑曰元子自予出宮日每日再上書問候今又書至卿等其見之仍出示二紙其一曰**奉壽堂**進饌**洛南軒**養老山呼山呼再山呼千歲千歲三千歲其一曰今日拜謁伏喜伏喜諸臣傳玩起而奏曰伏覩睿筆實我東方無彊之福矣還宮時至改具戎服乘馬慈宮御駕轎至舟橋 宣傳官跪啓稟乘船砲行船砲開金大吹打竝如出宮儀予至中紅箭門召謂舟橋堂上徐龍輔曰八日等待之頃沙格輩之晝宵勞苦亦云多矣今年初來者給四斗米年久者給三斗米又曰船隻及今下去則三南漕轉可以再運否龍輔曰無慮矣予曰船隻發送不容一日少綾自明日撤橋下送無或使船人輩濡滯也仍進發由舟橋 蔓川羅業山前路入崇禮門至敦寧府前路益運請解嚴從之由敦化門 建陽門入保定門 萬入門還內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16일 (무술)[145]

강**총리 대신(摠理大臣)** **채제공(蔡濟恭)**과 유수 **조심태(趙心泰)**에게, **화성(華城)** 백성들에게 급복(給復)하는 햇수를 늘려 주고, 노인들에게 가자(加資)하는 관교(官敎)를 나누어 주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이후의 행행(行幸)하는 노정에는 '**미륵현(彌勒峴)**' 아래에 '**지지대(遲遲臺)**'라는 글자를 첨가해 넣고, 본부(本府)에서 수라(水剌)를 마련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더 떼어 줄 방도를 헤아려서 보고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금번 **화성** 백성들에게 급복하는 햇수를 늘려 주는 것과 노인들에게 가자하는 관교를 내려 주는 일에 대해, 경은 조정으로 돌아오기 전에 유수와 상의해서 즉시 효유하거나 나누어 주도록 하라. 그리고 **현륭원(顯隆園)** 주변과 성 안팎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경이 유수와 함께 가서 전교의 본뜻을 하나하나 효유해 주도록 하라.

매번 **현륭원**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륵현**에 당도할 때면 고삐를 멈추고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오래도록 떠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말에서 내려 서성이곤 하였다. 이번 행차에서 **미륵현** 위에 둥그런 자리가 만들어져 대(臺)와 같이 보이는 것을 **지지대(遲遲臺)**라고 명명하니, 이후 행행하는 노정에는 '**미륵현**' 아래에다 '**지지대**'라는 세 글자를 첨가해 넣도록 본부와 **정리소(整理所)**로 하여금 잘 알게 하고, 경 또한 이 뜻을 잘 알라. 본부에서 수라를 마련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정리소**에서 회감(會減)했더라도 거행한 일이 허다해서 필시 구차한 일이 많았을 것이니, 경은 올라올 때 더 떼어 줄 방도를 헤아려서 초기하라." 하였다.

강命總理大臣 **蔡濟恭**與留守 **趙心泰**諭**華城**民人加年給復頒給老人加資宮敎此後行幸路程**彌勒峴**

145) 무술 원문은 '戊辰'인데, 간지가 바르지 않아 '辰'을 '戌'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下添入**遲遲臺**本府水刺所用酌量加劃之道以聞

목敎曰今番**華城**民人加年給復及老人加資官敎卿於還朝前與留守相議卽爲曉諭或頒給而園底城內城外民人則卿與留守眼同以傳敎本意一一曉諭每於省園之路還到**彌勒峴**停轡遠瞻久而不能發自不覺下騎彷徨今幸見峴上環席地而臺者命其臺曰遲遲此後幸行路程**彌勒峴**之下添入**遲遲臺**三字令本府及**整理所**知悉卿亦知此意本府水刺所用雖有**整理所**會減許多擧行必多有局且之事卿於上來時酌量加劃之道草記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6일(무술)[146]

강갑인년(1794, 정조18)에 정퇴해 준 시흥현(始興縣)의 환곡과 군향(軍餉)을 탕감해 주고,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부세(賦稅)를 줄여 주고 요역을 면제해 줄 방도를 강구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우리 자궁이 탄 가교(駕轎)를 모시고 편안히 다녀왔다. 이틀 밤을 시흥(始興) 행궁에서 유숙하였는데, 고을은 시원스레 뚫려 있었고 길도 사통팔달이었다. 함께 경하하고 기쁨을 나눌 사람이 어찌 장리(長吏)와 이교(吏校)뿐이겠는가. 본현 백성들에게 갑인년에 정퇴해 준 1년 치 환곡과 군향을 특별히 모두 탕감해 주고, 묘당으로 하여금 부세를 줄여 주고 요역을 면제해 줄 방도를 강구하여 초기하게 해서 행차를 바라보는 저들의 뜻에 부합하게 하라." 하였다.

강蕩減始興縣甲寅還餉停退條令廟堂講究省賦蠲徭之方以聞

목敎曰陪我慈駕穩往穩返再經宿於始興行宮邑是通運路亦康莊其所以同慶識喜者豈獨在於長吏吏校本縣民人甲寅一年停退條還餉特爲一竝蕩減省賦蠲徭之方令廟堂講究草記以副渠輩望幸之意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6일(무술)[147]

강정사가 있었다. 이조 참판 황승원(黃昇源)이 나왔다.

목○ 서유린(徐有隣)을 홍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강有政 吏曹參判 黃昇源進

목以徐有隣爲弘文提學

정조19년 을묘(1795,건륭 60) 윤2월16일 (무술)[148]

강**총리 대신 채제공**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천 년에 한 번도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맞이하여 국조(國朝)에서 처음 행하는 예(禮)를 거행하였다. 백관이 술잔을 올리고 노인들이 장수하기를 축원하였는데, 행행한 8일 동안 행차가 편안하기 그지없었으니 이보다 더 큰 국가의 경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기쁘고 다행스럽기만 한 지금 내 마음에, 자궁의 행차를 수행하고 호위한 사람들이라면 미천한 관원이나 하인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 노고에 보답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더구나 **정리소**의 신하들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또 더구나 **정리소**를 설치한 목적이 경상 비용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계속 조처해 나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여러 관사를 관장하는 사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몇 개월 동안 봉행하였으니, 그 체모의 중함은 **정리사(整理使)**를 예겸(例兼)했던 경우와는 더더욱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리고 낭

146) 무술 : 원문은 '戊辰' 인데, 간지가 바르지 않아 '辰' 을 '戌' 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47) 무술 : 원문은 '戊辰' 인데, 간지가 바르지 않아 '辰' 을 '戌' 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48) 무술 원문은 '戊辰'인데, 간지가 바르지 않아 '辰'을 '戌'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청(郎廳)과 하리(下吏), 장교(將校)와 군졸에 이르기까지 모두 있는 힘을 다하여 뛰어다니면서 각자 정성을 바친 것 또한 모두 자궁의 덕이 미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니 자궁의 뜻을 받들어 보답하고 격려해야 할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어찌 일반적인 의전(儀典)만 따를 수 있겠는가.

총리 대신 의정부 우의정 **채제공**에게는 사복시의 말 1필을 면급(面給)하고, **정리사** 행 사직(行司直) 심이지(沈頤之),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 호조 판서 이시수(李時秀), 행 부사직(行副司直) 서유대(徐有大)·서용보(徐龍輔)·윤행임(尹行恁)에게는 각각 숙마(熟馬) 1필을 면급하라. 도청(都廳)인 부사과(副司果) 홍수영(洪守榮)과 **원소참(園所站)** 낭청인 **현륭원 영(顯隆園令)** 구응(具膺)은 이미 주목(州牧)을 지냈으니 다시 외직을 제수하고, 시흥참(始興站) 낭청인 부사과 홍대영(洪大榮), **사근참(肆覲站)** 낭청인 부사과 이노수(李潞秀), 노량참(鷺梁站) 낭청인 판관 김용순(金龍淳)은 모두 승진시켜 서용(敍用)하라. **화성부(華城府)** 행궁 진찬(進饌) 때 찬탁검거 당상(饌卓檢擧堂上)인 경기 감사 서유방·호조 판서 이시수·**수원부 유수 조심태(趙心泰)**·행 부사직 서유대, 진휘건 당상(進揮巾堂上)인 행 부사직 서용보, 진화 당상(進花堂上)인 행 부사직 윤행임,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 심이지(沈頤之)에게는 각각 반숙마(半熟馬) 1필을 사급(賜給)하라. 진작 재신(進爵宰臣)인 의정부 영의정 홍낙성(洪樂性)과 광은부위(光恩副尉) 김기성(金箕性)에게는 각각 사복시의 말 1필을 면급하고, 치사 대거 승지(致詞對擧承旨)인 이만수(李晩秀)와 이익운(李益運)에게는 각각 대내에서 내린 표피(豹皮) 1벌(令)을 사급하라. 찬의(贊儀) 조명사(趙明師)는 가자(加資)하고, 인의(引儀) 최정(崔珽)과 김동람(金東覽)은 수령에 제수하고, 허속(許曯)과 조덕부(趙德敷)는 6품으로 올리도록 하라. 여령(女伶)·전악(典樂)·악공(樂工)·숙수(熟手) 등에게는 별단에 판하(判下)한 대로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라. 사복시 제조 이시수에게는 반숙마 1필을 사급하고, 내승(內乘) 오의상(吳毅常)과 구강(具絳)에게는 각각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라. 첨정(僉正) 조진규(趙鎭奎)는 외직에 승진시켜 서용하고, 판관 한대유(韓大裕)는 부사(府使)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조용(調用)하라. 마의사복(馬醫司僕) 이하 이례(吏隷)와 견마배(牽馬陪) 등에게는 별단에 판하한 대로 시상하고, **정리소 책응 감관(策應監官)**인 전(前) 오위장(五衛將) 변세의(卞世義)와 행 부호군(行副護軍) 홍낙좌(洪樂佐)는 수령에 제수하라. 장교·원역(員役)·군병(軍兵) 등에게도 별단에 판하한 대로 시상하라고 분부하라. 이 가운데 가자하는 것으로 하비(下批)한 것은 모두 금일 정관(政官)을 패초하여 정사를 열어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금번의 상전(賞典)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겸하였다 하더라도 중복하여 받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금번 자궁의 동가(動駕) 때 **사근평(肆覲坪)** 주정소(晝停所)의 지방관인 광주 부윤(廣州府尹) 서미수(徐美修)에게는 반숙마 1필을 면급하고, 대령 교리(待令校吏)는 **정리소**에서 시상하라. 경기 감사 서유방에게는 대표피(大豹皮) 1벌을 사급하고, 역(驛)의 인마 차지(人馬次知)인 찰방(察訪) 이응엽(李應曄)은 수령의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조용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주교(舟橋)가 숫돌같이 평평하였으니,[149] 자궁의 가교를 모시고 물을 건넌 노고가 얼음 위를 건너갈 때보다 배나 더하였다. 어찌 별도로 시상하는 조처가 없을 수 있겠는가. 주교 당상 서용보에게는 표피(豹皮) 1벌을 사급하고, 도청(都廳) 이홍운(李鴻運)은 곤수(閫帥)의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차출하여 보내라. 노량 별장 김중옥(金重玉)은 가자

149) 주교(舟橋)가 숫돌같이 평평하였으니 : 《시경》 〈대동(大東)〉에 "주나라 길이 숫돌 같으니, 곧기가 화살 같도다.[周道如砥 其直如矢]"라는 구절이 보인다.

하고, 감관(監官)과 영장(領將)은 변장(邊將)이나 군문(軍門) 중에 차례로 조용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자궁의 행차를 모신 나인(內人)과 중관(中官)·액정서(掖庭署)의 하속(下屬) 등은 판하한 대로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라고 **정리소**에 분부하라." 하였다.
○ 별단은 다음과 같다.
정리소의 교졸(校卒)인 교련관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왕도원(王道源)·정도관(鄭道寬)과 한량(閑良) 성봉문(成鳳文)이고, 별무사(別武士)는 전 만호(萬戶) 강한범(姜漢範)이다. 상가(賞加)하였다. 교련관은 절충장군 김진철(金鎭喆), 출신(出身) 여현장(呂鉉長), 한량 최도흥(崔道興)이고, 별무사는 출신 임복기(林福起) 등 3인과 한량 한대언(韓大彦)이고, 뇌자(牢子)는 20명, 순령수(巡令手)는 32명, 등롱군(燈籠軍)은 12명, 복지기(卜直)는 6명, 우구지기(雨具直)는 2명이다.
전교하기를, "이미 시행한 서총대 시사(瑞蔥臺試射)에서는 물론이요, 대비교(大比較) 때에도 군병의 경우 한 발 이상 맞히면 별도로 뽑고, 장교는 해당 영(營)으로 하여금 각각 목(木) 1필을 주게 하라. 가의대부(嘉義大夫) 최상린(崔祥麟)은 첩가(帖加)를 만들어 주고, **정리소** 패장(牌將)인 자헌대부(資憲大夫) 김덕상(金德尙)은 상가(賞加)하고, 가선대부(嘉善大夫) 윤득신(尹得莘)은 변장(邊將)의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즉시 조용하라." 하였다.
정리소의 원역(員役)인 도청 서리(都廳書吏)는 장운익(張雲翼)·김윤문(金允文)이고, **노량참 서리(鷺梁站書吏)**는 윤인환(尹仁桓), **시흥참 서리(始興站書吏)**는 이후근(李厚根)이다. 첩가(帖加)하였다. 도청 서리는 유원영(柳元榮) 등 4인, **노량참 서리**는 지원규(池元逵), **시흥참 서리**는 이성각(李聖珏) 등 3인, **사근참 서리(肆覲站書吏)**는 최도식(崔道植) 등 2인, **원소참 서리(園所站書吏)**는 윤용득(尹龍得) 등 2인이다. 서사(書寫)는 조언식(趙彦植)이고, 고지기(庫直)는 3명, 사령(使令)은 5명, 문서지기(文書直)는 4명, 사환군(使喚軍)은 9명, 대령 서리(待令書吏)는 이상렴(李尙濂) 등 2인, 군사(軍士)는 1명이다.
전교하기를, "이상은 각 해당 입역 아문(立役衙門)으로 하여금 등급을 나누어 넉넉하게 상을 준 뒤에 초기하게 하라. 숙수(熟手) 중 편수(邊首)는 이름을 물어 첩가하고, 나머지 숙수는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라." 하였다.
별수가 장관(別隨駕將官) 오의상(吳毅常) - 가후(駕後)의 내빈노인 차지(內賓老人次知)이다. ○ 점화 차지(點火次知)였다. ○ 자궁의 수라간 차지이다. ○ 먼저 가서 검칙(檢飭)하였다. -과 이해우(李海愚) - 자궁의 수라 차지(水刺次知)이다. ○ 먼저 가서 검칙하였다. ○ 내빈 차지였다. ○ 진찬(進饌) 때 배설하는 여러 일을 맡았다. -에게 각각 반숙마(半熟馬) 1필을 사급(賜給)하였다. 서영보(徐英輔), - 반차(班次)를 검칙하였다. ○ 내빈의 출입을 검칙하였다. - 이석(李晳), - 자궁의 의대롱 차지(衣襨籠次知)이다. ○ 먼저 가서 검칙하였다. - 전대중(全大重) - 잡물 차지(雜物次知)이다. ○ 나인(內人)의 말과 짐바리를 검칙하였다. ○ **장락당(長樂堂)**의 파수(把守)를 검칙하였다. ○ 나인 차지(內人次知)이다. ○ 여령고악 차지(女伶鼓樂次知)이다. -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였다. 이광익(李光益), - 수라 차지이다. ○ 가후(駕後)의 입판군복판 차지(笠板軍服板次知)이다. - 이희(李爔), - 수라 차지이다. ○ 가후의 입판군복판 차지이다. - 조기(趙岐) - 진지 차지(進止次知)이다. ○ 진찬 때 제사를 배설하였다. ○ 가전(駕前)의 반차를 검칙하였다. -에게 각각 반숙마 1필을 사급하였다. 이동선(李東善), - 가전의 반차를 검칙하였다. - 강세중(姜世重), - 복태출납 차지(卜駄出納次知)이다. - 이용(李溶), - **복내당(福內堂)**의 파수이다. - 변상규(卞尙圭), - **유여택(維與宅)**의 중문 파수이다. - 이관성(李觀誠), - **유여택**의 북문

파수이다. - 이승보(李昇普) - **유여택**의 북문 파수이다. -에게 각각 상현궁(上弦弓) 1장(張)을 사급하였다. 식목 차사원(植木差使員)인 안성 군수(安城郡守) 조윤식(曺允植)은 승진시켜 조용하고, 전 첨사 장세환(張世紈)은 변장의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조용하였다. 배가(陪駕)한 나인과 상궁 3인에게는 각각 주(紬 명주) 1필과 목(木 무명) 1필을 사급하고, 시녀 10인에게는 각각 주 1필을, 하나인(下內人) 12인과 양궁(兩宮) 나인 도합 6인에게는 각각 목 1필을 사급하였다. 배가한 별감 20인에게는 각각 목 1필을 사급하였다. 중관(中官) 7인에게는 각각 대내에서 내린 궁시(弓矢) 1부(部)를 사급하고, 협시 중관(挾侍中官) 2인에게는 각각 반숙마첩(半熟馬帖) 1척(隻)을 사급하였다. 입번 내관(入番內官) 2인에게는 각각 대내에서 내린 현궁(弦弓) 1장(張)을 사급하였다. 수가(隨駕)한 사알(司謁) 이덕봉(李德鳳) 등 4인과 당별감(唐別監) 8인에게는 각각 목 2필을 사급하였다. 중금(中禁) 2인에게는 목과 포(布)를 각각 1필씩 사급하였다. 배설방(排設房)의 조라치(照羅赤) 2인에게는 목 1필을 사급하고, 서방색(書房色)의 조라치 1인에게는 포 1필을 사급하였다. 위내(衛內) 배설방 군사 4명과 전명청(傳命廳) 군사 2명에게는 각각 목 1필을 사급하고, 가교(駕轎)를 수가(隨駕)한 내사복시와 외사복시의 마의사복(馬醫司僕) 1인에게는 목과 포를 각각 1필씩 사급하였다. 서리 2인 중 1인에게는 목 2필을, 1인에게는 목 1필을 사급하고, 이마(理馬) 2명과 양마(養馬) 2명에게는 각각 목 1필을 사급하였다. 연지기(輦直) 1명, 초군(梢軍) 8명, 공초군(空梢軍) 4명, 우구지기(雨具直) 1명, 가교(駕轎) 5쌍의 견부(牽夫) 10명, 좌견 역자(左牽驛子) 5명, 역자(驛子) 10명에게는 각각 목 1필을 사급하였다. 수가한 내사복시와 외사복시의 원역(員役)인 마의사복 1인에게는 미(米) 3말을, 서리 18인 중 1인에게는 목 2필을, 17인에게는 각각 미 3말을 사급하였다. 이마 6명, 양마 17명, 연지기 1명에게는 각각 미 2말을 사급하고, 견마배(牽馬陪) 11명 중 1명에게는 미 1섬(石)과 목 1필을, 10명에게는 각각 미 3말을 사급하였다. 제원(諸員) 13명, 거덜(巨達) 12명, 내사복시 견부 45명, 외사복시 견부 132명, 역자 38명, 쌍교(雙轎) 우견 역자(右牽驛子) 12명, 공군(貢軍) 82명, 낭청이 거느린 4명에게는 각각 미 2말을 사급하였다. 모두 내탕고에서 내려 주었다. **화성(華城)**에서 찬안상(饌案床)의 숙설(熟設)과 배상(排床)을 맡은 차비(差備)인 비장(裨將) 최효민(崔孝閔)은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고품(高品)으로 부료(付料)하게 하고, 나동욱(羅東旭) 등 2인은 가장 수고하여 유수로 하여금 편리한 쪽으로 수용(收用)하게 하였다. 정중주(鄭重周)는 의약동참(議藥同參)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조용하고, 한명철(韓命喆)은 상가(賞加)하였다. 감관(監官) 이도문(李道文) 등 4인에게는 각각 주(紬) 1필을 사급하고, 서리 나은술(羅殷述) 등 2인은 첩가(帖加)하였다. 박지대(朴之大) 등 30인에게는 각각 목(木) 2필을 사급하고, 수라반과(水剌盤果)의 숙설과 배상을 맡은 차비인 비장 조봉양(趙鳳陽) 등 4인에게는 각각 주 1필을 사급하였다. 전 판관 이방억(李邦億)은 예전 자리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잉임(仍任)하였다. 서리 나만륜(羅萬倫) 등 3인과 고지기(庫直) 1명에게는 목과 포를 각각 1필씩 사급하였다. **화성**의 진찬 때 악공인 집사 전악(執事典樂) 김응삼(金應三)과 박보원(朴輔元)은 첩가하였다. 양로연의 선창 전악(先唱典樂)인 유경윤(柳敬潤) 등 2인에게는 각각 백목(白木) 1필·목 1필·포 1필을 사급하였다. 필률(觱栗) 손봉욱(孫鳳郁) 등 16인, 대금(大笒) 최오장(崔五章) 등 7인, 퉁소 황득중(黃得重) 등 2인, 당적(唐笛) 임희창(林喜昌) 등 3인, 혜금(嵇琴) 홍삼득(洪三得) 등 8인, 장고(杖鼓) 김삼득(金三得) 등 5인, 교방고(敎坊鼓) 오대손(吳大孫) 등 4인에게는 각각 목 2필과 포 1필을 사급하였다. **화성**의 진찬 때 내영(內營)의 아세악수(兒細樂手) 조도야지(曺都也之) 등 6인에게는 목 2필과 포 1필을 사급하였다. **화성**의 진찬 때 여령(女伶)인 경기(京妓) 덕애(德愛) 등 16명, 향기(鄕妓) 계섬(桂蟾)

등 15명, 향동기(鄕童妓) 복혜(福惠) 등 2명에게는 각각 백목 1필·목 1필·포 1필을 사급하였다.

강 總理大臣 **蔡濟恭**以下施賞有差

목敎曰値千載難逢之會擧國朝初行之禮百僚稱觴群老獻年行幸八日鑾蹕萬安邦家之慶孰大於是以予此時欣幸之心凡在慈宮陪扈之屬雖一官一隷之微皆欲償其勞而同其慶況整理諸臣乎又況**整理所**之設不煩經費積有措置事務之管攝百司奉行之首尾數朔體貌之重尤非例兼**整理使**之比而卽吏校卒擧皆殫竭奔走各效其誠亦莫非慈德所暨則予所以對揚酬奬何循常典總理大臣 議政府右議政 **蔡濟恭**厩馬一匹面給**整理使** 行司直 沈頤之 京畿監司 徐有防 戶曹判書 李時秀 行副司直 徐有大 徐龍輔 尹行恁各熟馬一匹面給都廳 副司果 洪守榮 園所站郎廳令具膺已經州牧更除外職始興站郎廳 副司果 洪大榮 **肆覲站**郎廳 副司果 李潞秀 鷺梁站郎廳 判官 金龍淳竝陞敍**華城府**行宮進饌時饌卓檢擧堂上京畿監司 徐有防 戶曹判書 李時秀 **水原府留守** **趙心泰** 行副司直 徐有大進揮巾堂上行副司直 徐龍輔進花堂上行副司直 尹行恁 掌樂提調 沈頤之各半熟馬一匹賜給進爵宰臣議政府領議政 洪樂性 光恩副尉金箕性各厩馬一匹面給致詞對擧承旨 李晩秀 李益運各內下豹皮一令賜給贊儀 趙明師加資引儀 崔珽 金東覽守令除授許曦 趙德敷陞六女伶典樂樂工熟手等依別卑判下分等施賞司僕寺提調 李時秀半熟馬一疋賜給內乘 吳毅常 具絳各兒馬一疋賜給僉知 趙鎭奎外職陞敍判官 韓大裕 府使待窠調用馬醫司僕以下吏隷牽馬陪等依別卑判下施賞**整理所**策應監官前五衛將 卞世義 行副護軍 洪樂佐守令除授將校員役軍兵等亦依別卑判下施賞事分付其中加資下批皆令今日政官牌招開政擧行又敎曰今番賞典一人雖兼數事毋得疊受又敎曰今番慈宮動駕時**肆覲坪**晝停所地方官廣州府尹 徐美修半熟馬一匹面給待令校吏自**整理所**施賞京畿監司 徐有防大豹皮一令賜給驛人馬次知察訪 李應曄守令待窠調用又敎曰舟橋如砥奉慈宮行幸而駕水之功倍於駕氷時豈可無別般延賞之擧舟橋堂上徐龍輔豹皮一令賜給都廳 李鴻運 閫帥待窠差遣鷺梁別將 金重玉加資監官領將邊將或軍門次次調用事分付又敎曰慈宮陪駕內人及中官掖屬等依判下分等施賞事分付**整理所**○別單**整理所**校卒敎鍊官折衝王道源 鄭道寬閑良成鳳文別武士前萬戶 姜漢範賞加敎鍊官折衝金鎭喆出身呂鉉長閑良崔道興別武士出身林福起等三人閑良韓大彥牢子二十名巡令手三十二名燈籠軍十二名卜直六名雨具直二名敎以旣於瑞葱臺試射所當勿論而大比較時軍兵則一中以上別爲抄出將校則令該營各給木一疋嘉義崔祥麟帖加成給**整理所**牌將資憲金德尙賞加嘉善尹得莘邊將待窠卽爲調用**整理所**員役都廳書吏 張雲翼 金允文 鷺梁站書吏 尹仁桓 始興站書吏 李厚根帖加都廳書吏 柳元榮等四人鷺梁站書吏 池元逵 始興站書吏 李聖玨等三人**肆覲站**書吏 崔道植等二人園所站書吏 尹龍得等二人書寫趙彦植庫直三名使令五名文書直四名使喚軍九名待令書吏李尙濂等二人軍士一名敎以以上令各該立役衙門分等從優施賞後草記熟手邊首問名帖加其餘熟手分等施賞別隨駕將官吳毅常 駕後內賓老人次知○點火次知○慈宮水刺間次知○先詣檢飭 李海愚 慈宮水刺次知○先詣檢飭○內賓次知○進饌時排設諸事各半熟馬一匹賜給徐英輔 班次檢飭○內賓出入檢飭李晳 慈宮衣襨籠次知○先詣檢飭 全大重 雜物次知○內人馬及卜馱檢飭○**長樂堂**挹守檢飭○內人次知○女伶鼓樂次知各兒馬一匹賜給李光益 水刺次知○駕後笠板軍服板次知 李燧 水刺次知○駕後笠板軍服板次知 趙岐 進止次知○進饌時排設諸事○駕前班次檢飭各半熟馬一匹賜給李東善 駕前班次檢飭 姜世重 卜馱出納次知 李溶 **福內堂**挹守 卞尙圭 **維與宅**中門挹守 李觀誠 **維與宅**北門把守 李昇普 **維與宅**北門把守各上弦弓一張賜給植木差使員 安城郡守 曹允植陞敍調用前僉使張世紘邊將待窠調用陪駕內人尙宮三人各紬一疋木一疋賜給侍女十人各紬一疋賜給下內人十二人兩宮內人合六人各木一疋賜給陪駕別監二十人各木一疋賜給中官七人各內下弓矢一部賜給挾侍中官二人各半熟馬帖一隻賜給入番內官二人各內下弦弓一張賜給隨駕司謁 李德鳳等四人唐別監八人各木二疋賜給中禁二人各木布各一疋賜給排設房照羅赤二人木一疋賜給書房色照羅赤一人布一疋

賜給衛內排設房軍士四名傳命廳軍士二名各木一疋賜給駕轎隨駕司僕內外寺　馬醫司僕一人木布各一疋賜給書吏二人內一人木二疋一人木一疋賜給理馬二名養馬二名各木一疋賜給輦直一名梢軍八名空梢軍四名雨具直一名駕轎五雙牽夫十名左牽驛子五名驛子十名各木一疋隨駕司僕內外寺員役馬醫司僕一人米三斗書吏十八人內一人木二疋十七人各米三斗理馬六名養馬十七名輦直一名各米二斗牽馬陪十一名內一名米一石木一疋十名各米三斗諸員十三名巨達十二名內寺牽夫四十五名外寺牽夫一百三十二名驛子三十八名雙轎右牽驛子十二名貢軍八十二名郎廳所率四名各米二斗賜給竝內下**華城**饌案床熟設排床差備裨將崔孝閔令該衙門高品付料羅東旭等二人最勞令留守從便收用鄭重周 議藥同參待窠調用韓命喆賞加監官李道文等四人各紬一疋書吏羅殷述等二人帖加朴之大等三十人各木二疋賜給水刺盤果熟設排床差備裨將趙鳳陽等四人各紬一疋賜給前判官 李邦億前窠待窠仍任書吏羅萬倫等三人庫直一名各木布各一疋賜給**華城**進饌時樂工執事典樂金應三朴輔元帖加養老宴先唱典樂 柳敬潤等二人各白木一疋木一疋布一疋賜給鵝栗 孫鳳郁等十六人大笒 崔五章等七人洞簫 黃得重等二人唐笛 林喜昌等三人稽琴 洪三得等八人杖鼓 金三得等五人敎坊鼓 吳大孫等四人各木二疋布一疋賜給**華城**進饌時內營兒細樂手曹都也之等六人木二疋布一疋賜給**華城**進饌時女伶京妓德愛等十六名鄕妓桂蟾等十五名鄕童妓福惠等二名各白木一疋木一疋布一疋賜給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6일(무술)[150]

강자궁께서 **정리소** 당상과 낭청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목○ 9일 노량참(鷺梁站)에 주정(晝停)하였을 때, 당상 심이지(沈頤之)·서유방(徐有防)·이시수(李時秀)·서유대(徐有大)·윤행임(尹行恁)에게 각각 화주(禾紬) 1필을 사급하고, 서용보(徐龍輔)에게는 흉배수(胸背繡) 1건(件)을, 본참(本站) 낭청 홍수영(洪守榮)에게는 화주 2필을 사급하였다. 서리 최도식(崔道植) 등 2인에게는 각각 면주(綿紬) 1필을 사급하고, 도청 서리(都廳書吏) 장운익(張雲翼) 등 6인에게는 면주 2필을 도급(都給)하고, 조윤식(曺允植)·장세환(張世紈)에게는 각각 면주 1필을 사급하였다.

○ 시흥참(始興站)에 유숙하였을 때, 당상 심이지·서유방·이시수·서유대·서용보·윤행임에게 각각 낭자(囊子) 1부(部)를 사급하고, 본참 낭청 홍대영(洪大榮)에게는 화주 2필을 사급하였다. 서리 이후근(李厚根) 등 3인에게는 각각 면주 2필을 사급하고, 도청 서리 장운익 등 6인에게는 면주 4필을 도급하였다. 본현(本縣)에서 대령한 장교 11인과 색리(色吏) 15인에게는 각각 목 1필을 본소(本所)에서 내주도록 하였다.

○ 10일 **사근평참**(**肆覲坪**站)에 주정하였을 때, 본참 낭청 이노수(李潞秀)에게 화주 2필을 사급하였다. 서리 노수일(盧守一) 등 2인에게는 각각 면주 2필을 사급하고, 도청 서리 장운익 등 6인에게는 면주 2필을 도급하였다. 광주(廣州)에서 대령한 장교와 색리 등 도합 12인에게는 각각 목 1필을 사급하였다.

○ 원소참(園所站)에 머물렀을 때, 본참 낭청 구응(具膺)에게 화주 1필을 사급하였다. 서리 김치덕(金致德) 등 2인에게는 각각 주(紬) 1필을 사급하고, 도청 서리 장운익 등 6인에게는 주 1필을 도급하였다. **현륭원** 영(**顯隆園令**)인 구응·임희후(任希厚)에게는 각각 수침(繡枕) 1부(部)를 사급하고, 감관(監官) 2인에게는 각각 주 1필을, 경수복(京守僕) 6인에게는 각각 목 1필을, 향수복(鄕守僕) 4인에게는 각각 목 1필·부채 1자루, 모자 1닢(立)을 사급하였다. 수호군(守護軍) 50명에게는 각각 목 1필·부채 1자루를 사급하고, 산지기(山直) 70명과 원역(員役) 4명에게는 각각 목 1필을 사급하였다. 식목 차사원(植木差使員)인 남양 부사(南陽府使) 이익진(李翼晉), 진위 현령(振威縣令) 오재두(吳在斗), 용인 현감(龍仁縣監) 서이

150) 무술 : 원문은 '戊辰'인데, 간지가 바르지 않아 '辰'을 '戌'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수(徐理修), 양성 현감(陽城縣監) 정주(鄭柱), 안산 군수(安山郡守) 조중첨(趙重瞻)에게 각각 단낭(緞囊) 1부를 사급하였다. 식목 차사원인 조윤식(曺允植)에게는 유록광주(柳綠廣紬) 관디(冠帶)감 1필, 남주(藍紬) 1필, 단학 흉배(單鶴胸褙) 1쌍을 사급하고, 장세환(張世紈)에게는 남아랑초(藍阿浪綃) 철릭(天翼)감 1필, 주 1필을 사급하였다. 감관 노대철(盧大喆)에게는 남생주(藍生紬) 1필·목 1필을 사급하였다. 위장(衛將) 이익현(李益鉉) 등 2인에게는 각각 황낭(黃囊) 1부를 사급하고, 원역 3인에게는 각각 목 1필을 사급하였다. 승려인 총섭(摠攝) 사일(獅馹)에게는 목 1필과 호초(胡椒) 5되를 사급하고, 유료승(有料僧)인 철학(哲學) 등 30명에게는 각각 부채 1자루와 호초 2되를, 승려 계홍(戒洪) 등 35명에게는 각각 호초 2되를 사급하였다.

○ 16일 궁으로 돌아온 뒤에, 총리 대신인 우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 분홍쌍문초(粉紅雙紋綃) 1필과 남경광주(藍輕光紬) 2필을 사급하였다. 당상인 심이지·서유방·이시수에게는 각각 분홍쌍문초 1필과 남경광주 2필을 사급하고, 서유대에게는 남운문사(藍雲紋紗) 1필과 남생주 1필을, 서용보에게는 쌍학 흉배(雙鶴胸褙) 1쌍을, 윤행임에게는 유록갑사(柳綠甲紗) 1필과 남운문사 1필을 사급하였다. 낭청인 홍수영(洪守榮)에게는 초록생주(草綠生紬) 1필과 남주(藍紬) 1필을 사급하고, 구응·홍대영·이노수에게는 각각 초록쌍문초(草綠雙紋綃) 1필과 남주 1필을, 김용순(金龍淳)에게는 초록숙초(草綠熟綃) 1필과 남주 1필을 사급하였다. 감관(監官)인 변세의(卞世義)·홍낙좌(洪樂佐)에게는 각각 남숙초(藍熟綃) 1필과 주 1필을 사급하였다. 서리 장운익 등 16인에게는 각각 목 1필과 부채 2자루를 사급하고, 서사(書寫) 1인, 고지기(庫直) 3명, 사령(使令) 5명, 문서지기(文書直) 3명에게는 각각 목 1필과 부채 1자루를 사급하였다. 사환군(使喚軍) 9명에게는 각각 포(布) 1필을 사급하고, 장교인 정도관(鄭道寬) 등 11인에게는 각각 목 1필과 포 1필을 사급하였다. 뇌자(牢子) 20명에게는 각각 목 1필을, 복태(卜駄) 4명에게는 각각 포 1필을, 순령수(巡令手) 32명에게는 각각 목 1필을, 복지기(卜直) 3명에게는 각각 포 1필을, 등롱군(燈籠軍) 13명에게는 각각 목 1필을 사급하였다.

강慈宮施賞于整理堂郎以下有差

목初九日晝停鷺梁站時堂上沈頤之 徐有防 李時秀 徐有大 尹行恁各禾紬一疋賜給徐龍輔胸背繡一件賜給本站郎廳洪守榮禾紬二疋賜給書吏崔道植等二人各綿紬一疋賜給都廳書吏 張雲翼等六人綿紬二疋都給曹允植 張世紈各綿紬一疋賜給〇宿所始興站時堂上沈頤之 徐有防 李時秀 徐有大 徐龍補 尹行恁各囊子一部賜給本站郎廳洪大榮禾紬二疋賜給書吏李厚根等三人各綿紬二疋賜給都廳書吏 張雲翼等六人綿紬四疋都給本縣待令將校十一人色吏十五人各木一疋自本所出給〇初十日晝停**肆覲坪**站時本站郎廳李潞秀禾紬二疋賜給書吏盧守一等二人各綿紬二疋賜給都廳書吏 張雲翼等六人綿紬二疋都給待令廣州將校色吏合十二人各木一疋賜給〇次園所站時本站郎廳具膺禾紬一疋賜給書吏金致德等二人各紬一疋賜給都廳書吏 張雲翼等六人紬一疋都給園令具膺 任希厚各繡枕一部賜給監官二人各紬一疋賜給京守僕六人各木一疋賜給鄕守僕四人各木一疋扇子一柄帽子一立賜給守護軍五十名各木一疋扇子一柄賜給山直七十名員役四名各木一疋賜給植木差使員 南陽府使 李翼晉 振威縣令 吳在斗 龍仁縣監 徐理修 陽城縣監 鄭柱 安山郡守 趙重瞻各緞囊一部賜給植木差使員 曹允植柳綠廣紬冠帶次一疋藍紬一疋單鶴胸褙一雙賜給張世紈藍阿浪綃天翼次一疋紬一疋賜給監官盧大喆藍生紬一疋木一疋賜給衛將李益鉉等二人各黃囊一部賜給員役三人各木一疋賜給僧總攝 獅馹木一疋胡椒五升賜給有料僧哲學等三十名各扇子一柄胡椒 二升賜給僧戒洪等三十五名各胡椒二升賜給〇十六日還宮後總理大臣 右議政 **蔡濟恭**粉紅雙紋綃一疋藍輕光紬二疋賜給堂上沈頤之 徐有防 李時秀各粉紅雙紋綃一疋藍輕光紬二疋賜給徐有大藍雲紋紗一疋藍生紬一

疋賜給徐龍輔 雙鶴胸褙一雙賜給尹行恁柳綠甲紗一疋藍雲紋紗一疋賜給郎廳洪守榮草綠生紬一疋藍紬一疋賜給具膺 洪大榮 李潞秀各草綠雙紋綃一疋藍紬一疋賜給金龍淳草綠熟綃一疋藍紬一疋賜給監官卞世義 洪樂佐各藍熟綃一疋紬一疋賜給書吏張雲翼等十六人各木一疋扇子二柄賜給書寫一人庫直三名使令五名文書直三名各木一疋扇子一柄賜給使喚軍九名各布一疋賜給將校鄭道寬等十一人各木一疋布一疋賜給牢子二十名各木一疋賜給卜馱四名各布一疋賜給巡令手三十二名各木一疋賜給卜直三名各布一疋賜給燈籠軍十三名各木一疋賜給

정조 19년 을묘 (1795, 건륭60) 윤2월 16일(무술[151])

강입직

목검교대교 서유구(徐有榘)

겸검서관 성해응(成海應)

151) 무술 : 원문은 '戊辰'인데, 간지가 바르지 않아 '辰'을 '戌'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제8차 1796년(정조 20) 1월 20일~24일(3박 4일)

1. 조선왕조실록

화성/행궁

현륭원에 배알하려고, 화성 교귀정을 지나 행궁에 이르러 밤을 지내다

장차 현륭원(顯隆園)에 배알하려고 어가가 화성(華城) 교귀정(交龜亭)에 이르러 우의정 윤시동에게 이르기를,

"관개(灌溉)하는 이익이 크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 못을 파면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앞들판에서 수확한 것이 이미 1천 곡(斛)이 되었다."

하고는, 인하여 정자[亭]를 '영화(迎華)'로, 야(野)를 '관길(觀吉)'로, 평(坪)을 '대유(大有)'로, 도랑[渠]을 '만석(萬石)'으로 각각 명명하고 비석을 세워 기록하도록 명하였다. 행궁(行宮)에 이르러 밤을 지냈다.

○丁卯/將謁顯隆園, 駕至華城交龜亭, 謂右議政尹蓍東曰: "灌溉之利, 不已博乎? 自鑿斯池也, 未過一年, 前坪所收, 已爲千斛." 仍賜亭名曰迎華, 野曰觀吉, 坪曰大有; 渠曰萬石, 命伐石以識之. 至行宮經宿.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1796) 1월 20일(정묘) 1번째기사>

정치/왕실

현륭원에 전배하고 작헌례를 행하다

현륭원에 전배(展拜)하고,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상이 작헌례를 마치고는 부복하여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가리고 목메여 흐느끼자, 따라간 신하들이 모두 놀라고 슬퍼하며 서로 번갈아가면서 상께 억제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상이 오열하면서 이르기를,

"나의 지극한 슬픔이 어느 때인들 그렇지 않을까마는, 오늘의 이 예(禮)에야 더욱 어찌 감정을 참을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대개 전년이 장헌 세자(莊獻世子)의 주갑(周甲)이었고, 이날이 탄신이었기 때문이다. 인하여 친히 현륭원 주변의 안팎을 살피고서 저녁 무렵에 행궁으로 돌아와 밤을 지냈다.

○戊辰/展拜于顯隆園, 行酌獻禮. 上旣獻酌, 俯伏流涕, 掩抑失聲. 從臣莫不驚愴, 迭請寬抑, 上嗚咽曰: "予之至慟, 何時不然, 而是日是禮, 尤何忍爲情?" 蓋前年莊獻周甲, 而是日誕辰也. 仍親審局內外, 迫暮還行宮經宿.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21일(무진) 1번째기사>

화성/원행

전교하여 군에 충정된 자의 요역을 돈으로 대신 받고 환곡을 면제해 주다

전교하였다. "이 해가 무슨 해이며 오늘이 무슨 날인가. 원(園)에 배알하고 나니 사모하는 마음을 펼 곳이 없다. 어버이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 도리야 어찌 백성들을 품어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있겠는가. 더구나 모든 사람을 차별없이 사랑하는 정사에 병(兵)과 민(民)에 응당 차이가 있을 수 없거니와, 이번 행차에서 군용(軍容)을 보건대, 입방(入防)하는 보군(步軍)의 훈련 동작이 익숙하여 내영(內營)의 단련된 군병과 다름이 없으

므로, 정예함을 귀히 여기는 분명한 증험을 더욱 알 수가 있었다. 26초(哨)를 13초로 만들어 도태된 자를 모두 보미군(保米軍)에 충정하였는데, 부세가 번거롭고 요역이 고되니 실로 불쌍하다. 게다가 바치는 쌀이 새로 증가된 자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수신(守臣)에게 분부하여 돈으로 대신 받아들이는 것을 정식으로 삼게 하라. 본부의 면리(面里)의 가장 오래된 환곡은 신해년과 임자년 두 해의 것이라 하니, 역시 수신으로 하여금 징수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원(園) 밑에 사는 백성과 성안에 사는 호구는 원을 보호하는 장벽과 같으므로 인화(人和)를 우선으로 삼아야 하니, 이들에게는 당년조의 환모(還耗)를 특별히 제해 주어라. **작년에 자전(慈殿)의 행차가 화성에 오실 때에 시흥·과천·광주 세 고을을 거치게 되었는데,** 주정(晝停)의 이수(里數)가 조금 먼 곳에는 그 사이에 소찬(小饌)을 올리고 행전(行殿)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자전께서 민폐를 진념하신 마음을 따른 것인데, 행차가 멈춘 곳에 백성들이 모두 대(臺)를 쌓아 표시했으니 민정(民精)이 감동된 것이다. 그들을 불러서 바치지 못한 누적된 포흠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 보아라. 말 곡식이나 되 곡식 정도가 혜택이 되기에는 부족하나, 그래도 모른 체하고 지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도신과 수신은 연교(筵敎)에 의해서 독촉하지 말도록 분부하라."

○敎曰: "是年何年, 今日何日? 拜園餘慕, 無處可伸. 親心爲心之道, 豈有過於懷保與字恤? 況一視之政, 兵民無間, 而今行見軍容, 入防步軍坐作進退之閑熟, 無異於內營團鍊之兵, 益知貴精之明證, 而卄六哨爲十三哨, 汰者皆充保米軍, 賦煩役苦, 實所矜閔. 且係新增納米者乎? 分付守臣, 以錢代捧, 以爲式. 本府面里最久條舊還餉, 爲辛亥·壬子兩年云, 亦令守臣勿徵. 園底之民·城內之戶, 控護也·保障也, 人和爲先, 此類當年還耗, 特爲除給. 昨年慈駕來臨**華城**也, 路出始·果·廣三邑, 以晝停里數之稍間, 間進小饍, 不設行殿, 卽順慈心之軫民弊, 而駐駕之處, 民皆築臺以表之, 民情可感. 招問渠等, 以未納之積逋幾許. 斗斗升升, 不足爲惠, 而尙有勝於默然看過, 道·守臣依筵敎勿督事分付."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1796) 1월 21일(무진) 2번째기사>

정치/군사

동장대에서 무예를 시험하고 군사를 사열하고 매화포를 구경하다

상이 행궁에 있었다. **동장대(東將臺)**에 나아가 무예를 시험하고 군사를 사열하고 매화포(埋火砲)를 구경하였다. 상이 군용(軍容)이 엄히 정돈된 것을 가상히 여겨 유수 **조심태**에게 구마(廐馬)를 하사하고, **장용사(壯勇使)** 김지묵이 73세 나이로 과녁을 명중했다 하여 호피(虎皮)를 내렸다.

○己巳/上在行宮. 御**東將臺**, 試藝閱武, 觀埋火砲. 上嘉軍容之整嚴, 賜留守**趙心泰**廐馬. **壯勇使**金持默, 年七十三, 射中的, 賜皐比.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22일(기사) 1번째기사>

정치/군사

화성에 봉대를 설치하고, 소나무가 잘 자라는 30리 위치에 표지를 세우다

화성에 봉대(烽臺)를 처음으로 설치하고, 또 명하여 화성 해변의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을 30리로 한정하여 의송산(宜松山)으로 정해서 표지를 세우고 금하여 기르도록 했는데, 모두 유수 **조심태**의 말을 따른 것이다.

○創置**華城**烽臺, 又命**華城**海邊宜松處, 限以三十里, 定爲宜松山, 立標禁養. 竝從留守**趙心泰**之言也.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1796) 1월 22일(기사) 2번째기사>

정치/왕실

길에서 만난 가난한 늙은 백성에게 웃옷과 바지를 보내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길에서 한 백성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지게에다 그 어머니를 지고 구부리고 기어갔다. 그 형상을 보니 의상(衣裳)이 초라하여 몸도 가리지 못하였다. 그 나이를 물으니 1백 세에 가까워 이미 본부의 판관에게 부쳐서 웃옷과 바지를 만들어 주게 하였다."
하고는, 인하여 도신에게 명하여 부여(扶餘) 본 고장으로 내려보내게 하였다.
○敎曰: "輦路有一民人之負機其母, 匍匐傴僂者. 見其狀, 衣裳不能蔽體, 問其年, 爲近百. 已令付之本府判官, 造給衣袴." 仍命道臣, 下送扶餘本土.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22일(기사) 3번째기사>

행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뜻을 밝히다

상이 행궁에 있었다. 전교하기를, "일찍 동가(動駕)할 날에 신령스런 비가 부슬부슬 내리니 느긋해진 내 생각이 배나 망설여짐을 느낀다. 그대로 이곳에서 머물겠으니, 유도 대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하였다.
○庚午/上在行宮. 敎曰: "靈雨濛濛於星言夙駕之日, 遲遲我思, 倍覺躕躇. 仍宿此處, 令留都大臣知悉."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23일(경오) 1번째기사>

정치/왕실

승지에게 조광조의 치제를 명하고, 봉사손 조국인을 초사에 등용케 하다

전교하였다. "선정(先正)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의 사판(祠版)이 본부 안의 행궁(行宮)에서 서로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있는데, 몇 칸 모옥(茅屋)이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 아, 선정의 도학(道學)으로 성조(聖朝)를 만나 당시 융숭한 지우(知遇)를 받은 것이 실로 천재일우의 성대한 기회였기에 내가 매양 그 유서(遺書)를 열람할 때면 여러번 되풀이하여 탄상(歎賞)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더구나 지금은 정학(正學)이 날로 묵어가고 사풍(士風)이 점차 투박해지는데, 어떻게 선정 같은 사람을 얻어 함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지척(咫尺)에 주필(駐蹕) 하니 내 감상이 배나 더한다. 승지를 보내 날짜를 가려서 치제(致祭)하고, 그의 봉사손(奉祀孫) 조국인(趙國仁)은 해조로 하여금 초사(初仕)에 조용(調用)하도록 하라. 또 듣건대 사판(祠版)을 벽에 두어 예의를 갖추어 제사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옛날 정공(鄭公)의 집을 속환(贖還)한 것을 《당사(唐史)》에서 아름답게 일컬었으니, 수신에게 분부하여 집 한 채를 사서 향화를 받들게 하라."
○敎曰: "先正文正公趙光祖祠版, 在於本府之內行宮相望之地, 而數椽茅屋, 風雨不庇. 噫! 以先正道學, 遭際聖朝, 當時契遇之隆, 實爲千載盛會, 予每閱遺書, 未嘗不三復歎賞. 況今正學日蕪, 士風漸渝. 安得如先正者, 與之共國? 咫尺駐蹕, 倍增予感. 遣承旨卜日致祭, 其奉祀孫國仁, 令該曹初仕調用. 且聞祠版, 藏之壁間, 無以備儀受祭. 贖還鄭公之宅, 《唐史》稱美. 分付守臣, 買第一區, 俾奉香火."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23일(경오) 2번째기사>

정치/왕실

승지에게 오언 율시 1편을 내리고 환궁하다

환궁하였다. 행궁에서 출발하여 **지지대(遲遲臺)**에 나아가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지난번 내가 갈 때에는 빨리 갔었는데, 이번 내가 올 때에는 발걸음이 더디기만 하니 그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하겠는가." 하고는, 인하여 오언 율시 1편을 내리고, 여러 신하들에게 화답하여 올리게 했다. 그 시에,

혼정 신성의 그리움 다할 길 없어
오늘 또 화성에 와 보니
궂은 비는 침원에 부슬부슬 내리고
이 마음은 재전을 끝없이 배회하누나
어찌하여 사흘 밤을 잤던고
아버님 영정을 모셨기 때문일세
더디고 더딘 걸음에 고개 들어 바라보니
오운이 저 멀리서 일어나누나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경진년 온천(溫泉)에 행행하실 때 군복(軍服)을 입으셨다는 것이 의주(儀註)에 실려 있고 모사(模寫)한 초본 하나도 역시 그 때의 복색(服色)인데, 매양 미처 옮겨 모사하지 못해 【영정(影幀)의 초본 색이 바래서 감히 옮겨 모사하지 못한 것이다】 마음에 간절하였다. 기유년 이후로는 원행(園幸) 때에 반드시 군복을 입은 것은 대개 추술(追述)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辛未/還宮. 自行宮進發, 御**遲遲臺**, 上顧謂承旨曰: "昔我往矣, 載馳載驅, 今我來思, 行道遲遲, 有誰會予心乎?" 仍下五言律詩一篇, 命諸臣賡進. 詩曰: "晨昏不盡慕, 此日又**華城**. 霢霂寢園雨, 徘徊齋殿情. 若爲三夜宿, 猶有七分成. 矯首遲遲路, 梧雲望裏生." 又敎曰: "庚辰溫幸, 御軍服, 在於儀註, 模寫一本, 亦以其時服色, 而每以未及移摸, 【影幀草本色渝, 不敢移摸】 耿耿于中. 己酉以後, 園幸必用軍服, 蓋出於追述之意也."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1796) 1월 24일(신미) 1번째기사>

정치/왕실

환궁하던 중 만천의 성문이 닫혀 길에 머물게 되니 담당 관원을 파직하다

상이 돌아오다 만천(蔓川)에 이르러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성문이 먼저 닫혀 있어 어가가 노차(路次)에 머물게 되었으므로, 수궁 승지(守宮承旨) 신기(申耆)·이경운(李庚運), 병조 참의 이우진(李羽晋)을 파직하였다. 그런데 옥당의 여러 신하들이 차자를 올려 그들을 찬배하기를 청하니, 따랐다. 인하여 유도 대신 영돈녕부사 김이소(金履素)를 파직하였다.

○上還到蔓川, 日已暮, 城門徑閉, 駕駐路次. 罷守宮承旨申耆·李庚運, 兵曹參議李羽晋職. 玉堂諸臣箚請竄配, 從之. 仍罷留都大臣領敦寧府事金履素職.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24일(신미) 2번째기사>

2. 일성록

정조 20년 병진 (1796, 가경1) 1월 20일(정묘)

강어가가 **화성(華城)** 행궁에 머물렀다.

목○ 내가 군복을 갖추고 가교(駕轎)를 타고 만팔문(萬八門), 보정문(保定門), 숭지문(崇智門), 집례문(集禮門), 건양문(建陽門), 숙장문(肅章門), 진선문(進善門), 돈화문(敦化門)을 나가 숭례문(崇禮門) 밖에 이르러 가교에서 내려 말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 주교(舟橋)에 이르렀다. 선전관이 무릎 꿇고 승선포(乘船砲)를 쏘겠다고 계품(啓稟)하였다. 어가가 주교를 탔다. 선전관이 무릎 꿇고 행선포(行船砲)를 쏘겠다고 계품하였다. 개금(開金)하여 대취타(大吹打)하니, 각 영(營)에서 모두 포를 쏘고 기화(起火)를 들며 취타하여 이에 호응하였다. 용저정(龍翥亭)과 봉비정(鳳飛亭) 앞길을 거쳐 문성동(文星洞) 앞길에 이르니, 길가에 돌을 쌓아 만든 대(臺)가 있었는데 대의 좌우에는 두 그루의 회나무를 심어 놓았다. 내가 말에서 내려 한참 동안 서성이다가 승지에게 이르기를, "여기는 내가 작년에 자궁(慈宮)을 모시고 잠시 쉬던 곳이다." 하였다.

시흥현(始興縣)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행궁으로 들어가 잠시 동안 주정(晝停)하다가 말을 타고 출발하였다. 과천(果川)을 지나니 남상면(南上面)의 촌리(村里)에 또 돌을 쌓아 만든 대가 있었다. 내가 말에서 내려 대 위로 나아가 승지에게 명하여 마을의 부로(父老)를 불러 대를 쌓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 작년에 어가가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마을 백성들이 대를 쌓아 표지(標識)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폐막이 있느냐고 물으니 없다고 대답하였다. 내가 승지에게 명하여 경기 감영의 영리(營吏)를 불러 물어보고 연로(沿路)에 대를 쌓은, 여러 곳에 사는 백성들 중에 만약 체납된 환곡을 바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수효가 얼마인지를 상세히 기록하여 들이게 하였다. 안양 발참(安養撥站)에 이르러 내가 말에서 내려 새로 지은 발소(撥所)에 들러 각신, 승지와 사관들에게 선찬(宣饌)하고,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거리의 원근을 따지면 이곳도 충분히 주정소가 될 만하다."

하니, 정례 당상 서용보(徐龍輔)가 아뢰기를, "마을의 주막이 10여 호(戶)에 불과하여 배종(陪從)하는 백관을 수용할 수 없으니, 조금 기다렸다가 취락이 완성되어야 주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잠시 후에 내가 말을 타고 출발하여 **진목정(眞木亭)**에 이르니,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길가에 마중 나와 배알(拜謁)하기에 내가 승지에게 명하여 그를 위로하게 하였다. 교귀정(交龜亭)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잠시 정자 위에 올라갔다. 정자는 기둥이 대략 10여 개이고 사면이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바로 작년에 새로 지은 것이다. 앞으로 큰 못을 굽어보는데, 못에는 채방(彩舫)이 떠 있었다. 평야는 드넓고 논밭은 두둑을 따라 착착 정비되어 있었다. 몇 해 전 전교[152]에서 북성(北城) 밖의 척박한 땅을 그 깊이를 살펴 1장(丈) 혹은 반 장을 파서 씨앗 100곡(斛)쯤 뿌릴 수 있는 경계(經界)를 헤아려 정하고 둔전을 설치하라고 한 것이 바로 여기를 가리킨 것이다.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을 소견하고 내가 윤시동에게 이르기를, "관개(灌溉)의 이로움이 대단히 크지 않은가. 이 못을 파고 나서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앞 평야에서 수확하는 것이 이미 1000여 포(包)라고 한다."

하고, 이어 정자 이름을 '영화(迎華)'라고 지어 주었는데 매년 **화성** 사람들이 여기에서 취화(翠華)를 맞이한다는 뜻이고, 들을 '관길(**觀吉**)'이라 한 것은 '내려와 뽕나무가 적당한가를 관찰하니 점괘에 길하다 하더라.[153][降觀于桑 卜云其吉]'라는 뜻을 취한 것이고, 평(坪)을 '대유(大有)'라 하고 도랑을 '만석(萬石)'이라 한 것은 모두 풍년이 들기를

152) 몇 해 전 전교 : 1794년(정조18) 11월 1일, **화성(華城)** 성역(城役)을 감독하는 여러 신하들에게 내린 윤음(綸音)을 말한다. 《正祖實錄 18年 11月 1日》

153) 내려와 …… 하더라 : 《시경》 〈정지방중(定之方中)〉의 한 구절인데, 토질이 좋다는 뜻이다.

빈 것이다. 유수(留守)에게 명하여 돌을 채취해 다듬어서 그 이름들을 기록하게 하고, 곧 말을 타고 출발하여 **장안문(長安門)**을 거쳐 행궁으로 들어가 말에서 내려 **봉수당(奉壽堂)**에 나아가 어좌에 오르니, **화성 유수** 이하 장관(將官)과 수가한 장관 이하가 규례대로 참현례(參現禮)를 행하였다.

강駕次**華城行宮**

목予具軍服乘駕轎出萬八門 保定門 崇智門 集禮門 建陽門 肅章門 進善門 敦化門至崇禮門外降轎乘馬前詣至舟橋 宣傳官跪啓稟乘船砲駕乘舟橋 宣傳官跪啓稟行船砲開金大吹打各營皆放砲擧起火吹打以應之由龍翥鳳飛亭前路至文星洞前路路傍有築石而臺者臺之左右植以雙檜予下馬盤桓久之謂承旨曰此予昨年陪慈駕小憩處也至始興縣降馬入行宮晝停少頃乘馬進發過果川南上面村里又有築石而臺者予降馬御臺上命承旨招問村中父老築臺者誰對以昨年停鑾之所故村民築臺以識之予問弊瘼對以無有予命承旨招問京畿營吏沿路築臺諸處居民中如有舊還未納者數爻多寡詳錄以入至安陽撥站予降馬歷臨新建撥所宣饌于閣臣 承史謂諸臣曰計程遠近此亦足爲晝停所矣定例堂上徐龍輔曰村店不過十餘戶陪從百官無以容接稍待完聚可議晝停矣少頃予乘馬進發至**眞木亭** 左議政**蔡濟恭**迎謁路榜予命承旨 勞之至交龜亭降馬暫臨亭上亭可十餘楹四面周以短垣卽昨年新建也前臨大池池中泛以采舫坪野遼闊田疇錯互年前傳敎中北城外斥鹵之壤相其淺深鑿得一丈或半丈量定約播百斛之經界設爲屯田者卽指此也召見右議政 尹蓍東予謂蓍東曰灌溉之利不已博乎自鑿斯池未過一年前坪所收已爲千餘包云矣仍賜亭名曰迎華謂每歲華人迎翠華於此也野曰**觀吉**取降觀于桑卜云其吉之義也坪曰大有渠曰萬石皆祈年也命留守伐石以識其名遂乘馬進發由**長安門**入行宮降馬御**奉壽堂**陞座**華城留守**以下將官及隨駕將官以下參現如例

정조 20년 병진 (1796, 가경1) 1월 20일(정묘)

강좌의정 **채제공**에게 원소(園所)에 먼저 나아가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내일 친제(親祭) 때 아헌관(亞獻官)으로 경이 차임되기를 바란다고 하니, 편리한 대로 먼저 나아가라.' 라는 내용으로 사관을 보내 좌의정에게 전유(傳諭)하게 하라." 하였다.

강命左議政 **蔡濟恭**先詣園所

목敎曰明月親祭時亞獻官卿欲求差云從便先詣事遣史官傳諭于左議政

정조 20년 병진 (1796, 가경1) 1월 20일(정묘)

강원소의 전알(展謁) 때 수가(隨駕)하는 군병을 어떻게 할지 묻는 병조의 초기(草記)에 대해 판하(判下)하였다.

목○ 병조가 아뢰기를, "내일 원소의 전알 때 수가하는 군병은 어느 영(營)의 마군과 보군 몇 개 번(番) 몇 개 초(哨)로 신전(信箭)을 기다려 시위(侍衛)합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장용 외사(壯勇外使)**가 내영(內營)의 경군(京軍)과 향군(鄕軍) 각 1개 초, 어영청의 향군 1개 초와 입방군(入防軍) 3개 초를 거느리고 선상(先廂)이 되고, 어영대장이 금군 30인, 선기대(善騎隊) 1개 초, 훈국의 마병 1개 초, 외영(外營)의 친군위와 별군관 200인을 거느리고 후상(後廂)이 되고, 장용대장이 내영과 외영의 마군과 보군, 금군, 어영군과 장용위 가전(駕前)과 가후(駕後)를 거느리고 유영(留營)하는 장용위 40인으로 가전과 가후에 각 20인씩을 도령(都領)하고 수가하라." 하였다.

강判下兵曹園所展謁時隨駕軍兵取稟草記

목 兵曹啓言明日園所展謁時隨駕軍兵以何營馬步軍幾番幾哨待信箭侍衛乎敎以壯勇外使率內營京鄕軍各一哨御營鄕軍一哨入防軍三哨爲先廂御將率禁軍三十人善騎隊一哨訓局 馬兵一哨外營親軍衛別軍官二百人爲後廂壯勇大將率內外營馬步軍禁軍御營軍及壯勇衛駕前駕後都領留營壯勇衛四十人駕前駕後各二十人隨駕

정조 20년 병진 (1796, 가경1) 1월 20일(정묘)

강이유경(李儒敬)과 채홍원(蔡弘遠)을 가승지로 차임하였다.

목○ 목(目)이 없는 기사임

강以李儒敬 蔡弘遠差假承旨

목

정조 20년 병진 (1796, 가경1) 1월 20일(정묘)

강유여택(維與宅)에서 우의정 윤시동, 원행정례 당상(園幸定例堂上) 이시수(李時秀)·서용보·윤행임(尹行恁) 및 경기 감사 김문순(金文淳), 광주 유수(廣州留守) 서유린(徐有隣), 화성 유수 조심태(趙心泰), 판관 홍원섭(洪元燮)을 소견하였다.

목○ 내가 이르기를, "경기 감영에서 떼어 준 환조(還租)의 모조(耗條)를 1섬당 1냥 5전씩으로 값을 정하였다고 하는데, 상정가(詳定價)와 비교하면 값을 올린 것이 3전이다. 대체로 듣건대 기내(畿內)의 곡가가 다른 도에 비하여 조금 비싸기 때문에 1냥 5전은 애당초 과중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조정에서는 상정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3전을 깎아 주면 아전이나 백성을 막론하고 혜택이 클 것이니, 조정의 손실이야 어찌 아까워할 것이 있겠는가."

하니, 윤시동 등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이렇게까지 하교하시니 누군들 흠앙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 곡식은 전적으로 원행 때 필요한 데 쓰는 것인데 모조의 값을 깎아 주면 경용(經用)이 넉넉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듯하니, 달리 처리할 방도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며칠 전 호서 여러 읍의 환곡이 넉넉하지 못하여 경납전(京納錢) 6만 냥을 떼 주어 환곡에 보태게 한 일이 있는데 모조는 아직 구획할 곳이 없었다. 이것도 유사(有司)인 여러 당상이 상의하여 처리하라."

하고, 내가 또 이르기를, "무릇 원행 때는 경비를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내가 고심하는 부분인데, 배종하는 관원들의 노자를 매번 호조와 선혜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꼭 2천 수백 냥이 된다. 이것도 달리 구획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들이 상의하여 나에게 물어 처리하라." 하였다.

강召見右議政 尹耆東園幸定例堂上李時秀 徐龍輔 尹行恁及京畿監司 金文淳 廣州留守 徐有隣 華城留守 趙心泰 判官 洪元燮于維與宅

목予曰畿營所劃下還租耗條每石一兩五錢定價云而較諸詳定之價增價三錢蓋聞畿內穀價比他道稍貴故一兩五錢初非濫重云而朝家則當以詳定爲準今將除減三錢毋論吏民爲惠則大矣朝家所失何足惜哉耆東等曰聖敎及此孰不欽仰而第此穀專爲園幸時需用則耗條減價恐有經用不贍之慮不可無從他區處之道矣予曰日前爲湖西諸邑還穀之不數京納錢六萬兩有所劃給使之添還而耗條則姑無區劃處此亦與有司諸堂商議區處也予又曰凡於園幸時不煩經費卽予苦心而從官盤纏每自戶惠廳上下者恰爲二千數百兩此亦宜有從他區劃之道卿等商確稟處也

정조 20년 병진 (1796, 가경1) 1월 20일(정묘)

강입직

목검교대교 서유구(徐有榘)

검서관 이욱수(李旭秀)

제9차 1797년(정조 21) 1월 29일~2월 1일(2박 3일)

1. 조선왕조실록

현륭원을 전알하기 위해 용양봉저정·시흥을 거쳐 화성 행궁에 유숙하다

상이 **현륭원(顯隆園)**을 전알하기 위하여 어가(御駕)가 숭례문(崇禮門) 밖에 이르렀을 때 관왕묘(關王廟)에 들러 수직관(守直官)을 변장(邊將)으로 파견할 것을 명하였다.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에 이르러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출발하여 시흥(始興)의 주정소(晝停所)에 머물렀다가 저녁에 **화성 행궁**(**華城行宮**)에 유숙하였다.

○庚午/上, 將謁**顯隆園**, 駕發至崇禮門外, 歷臨關王廟, 命守直官邊將差送. 至**龍驤鳳翥亭**少駐, 還發晝停于始興, 夕次**華城行宮**.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1월 29일(경오) 1번째기사>

정치/왕실

정조가 수원 화성을 순행하고 행궁에 돌아오다

상이 성을 순행하였다. **화양루(華陽樓)** 북쪽에서 시작하여 **화서루(華西樓)**를 지나 공심돈(空心墩)에 이르러 각신(閣臣)과 승지에게 이르기를,

"공심돈은 우리 동국(東國)의 성제(城制)에서는 처음 있는 것이다. 여러 신하들은 마음껏 구경하라."

하였다. **장안문(長安門)**을 지나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에 이르러 조그만 과녁을 설치하고 임금이 화살 삼순(三巡)을 쏘아 삼시(三矢)를 맞힌 뒤 각신(閣臣)과 장신(將臣)에게 짝지어 활을 쏘라고 명하였다.

상이 정자 아래에서 백성들이 꽉 둘러서서 구경하는 것을 보고 **수원부 유수 조심태(趙心泰)**에게 명하여 그중에 활을 잘 쏘는 자를 뽑아서 활쏘기를 시험하게 한 다음 1등을 한 1인에게 바로 전시(殿試)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풍악을 내려서 보내었다. 여러 신하들에게 술을 내리고 임금이 칠언 소시(七言小詩)를 지은 뒤 여러 신하들에게 화답하여 올리라고 명하였다.

광주 유수(廣州留守) 서유린(徐有隣)에게 이르기를,

"고 정승 유성룡(柳成龍)이 말하기를, '훈련 도감에서 경기 지방에 둔전(屯田)을 설치하고 훈국의 군사 1만 명 중 5천 명은 서울에서 조련하고 5천 명은 둔전에 나가 경작하게 하여 군대와 농사가 서로 의지하는 의의를 살려야 한다.' 고 하였는데, 그 취지가 매우 좋았으나 중지되어 실행되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애석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장용영(壯勇營)**에 대하여 이 제도를 대략 모방해 경기의 고을에 향군(鄕軍)을 설치하여 일영 오사(一營五司)의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대개 서로 빙 둘러싸고 수레바퀴와 덧방이 서로 도와주는 것과 같이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던 것이다. 원소(園所)에 행차할 때 본부(本府)의 5개 초군(哨軍)만으로 돌아가며 어가를 따르게 할 경우 항오(行伍)가 단약(單弱)하고 군용(軍容)이 미비하다. 그래서 수어청의 출진(出鎭)하는 군제를 바로잡아 고칠 때 여정(餘丁) 8백여 인이 남기에 연(輦)이 지나가는 광주(廣州)·시흥·과천 및 **화성**의 속읍(屬邑)인 용인(龍仁)·안산(安山) 등지의 길에 6개 초(哨)를 설치하였다가 어가가 지나갈 때 징발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어청의 소관으로 선혜청에 떼어 놔둔 쌀 1천 석과 돈 3천 냥을 본영(本營)에 갈라 주어 상번(上番)하는 군인의 급료에 쓰게 하고, 이어서 향군이 있는 각 고을에 둔전을 설치하여 그 세입(稅入)으로 군인들이 왕래할 때의 양식과 의복의 비용으로 삼으려 하였다. 먼저 산 토지에서의 소출이 군수(軍需)로 들어가는 비용에 맞먹는가?"
하니, 유린이 대답하기를,
"광주 둔전의 수입은 부족할 염려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더 사들여야만 수입과 쓰임이 비로소 같게 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본영(本營)에 향군(鄕軍)을 설치한 것은 그 의의가 있다. 최초에 양근(楊根)·가평(加平)·지평(砥平)에 먼저 2개의 초(哨)를 내었는데, 이는 둔전이 군인들의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군대와 농사가 서로 의지할 수 있다. 파주(坡州)에 또 1개의 초를 내었는데 양근 등 세 고을의 예를 적용하려 하였으나 토지가 너무 적고 군인들도 각처에 흩어져 있어서 가까이 있는 자는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자는 스스로 지을 수 없다. 이것은 벌써 세 고을의 예와는 좀 달라진 것이다. 그 뒤 또 양주(楊州)에 1개의 초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모든 일은 대뜸 세력이 있는 백성들에게 동요되고 만다. 양주에는 서울의 사대부 토지가 많아서 사들이기로 결정하여 값을 치르기도 전에 반드시 먼저 소란이 일어날 것이므로 부득이 우선 늦추면서 차츰 시작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경기 감영의 무조(貿租)할 것 중에서 약간의 돈을 떼어내어 경기 고을의 환모(還耗)를 바꾸어서 1개 초군(哨軍)을 먹일 방도로 삼았다. 그 뒤 고양(高陽)에 또 1개의 초를 두고 총융청의 법외(法外)의 보군(保軍)을 참작해 감한 뒤 거두어들인 신전(身錢)의 여분으로 먹일 방도를 삼았으며, **그 뒤 또 수원에 5개의 초를 설치하고 3만 냥의 공화(公貨)를 나누어주어 해도(該道)의 좁쌀 1만 석을 사들여서 모곡을 취하여 먹이도록 하였다.**
대체로 양주·고양·수원의 군대를 먹이는 데에 쓰이는 군수(軍需)의 조달 방법은 그 명분이 나의 본래의 뜻이 아닐 뿐 아니라, 또한 최초에 양근 등의 고을에 설치하였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바로잡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공사간(公私間)의 용도를 모곡으로 시작하는 것은 크게 좋지 않은 방법이다. 쥐나 새가 축낸 모곡을 관장(官長)이 주관하는 것도 이미 매우 구차한 일인데 하물며 나라이겠는가. 이것을 한번 바로잡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동장대(東將臺)에 나아가 대에 올랐다. 상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나라의 성제(城制)가 고루(固陋)하여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본래부터 치첩(雉堞)의 제도가 없었다. 그런데 정승 김종서(金宗瑞)가 쌓은 종성(鍾城)의 성제가 유일하게 중국의 제도를 대충 모방하였는데, 그 형상이 규형(圭形) 같고 안이 상당히 넓고 위는 처마를 얹은 듯하여 내려다보기에 편리하다. 그러나 이 역시 치첩의 제도만은 못하다. 대개 옛날의 성 제도는 치첩으로 첫째를 삼았을 것인데, 우리 나라의 성은 전체가 둥글어서 모서리가 없다. 그래서 성 위에 담벼락처럼 죽 둘러서서 지켜야만 비로소 적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새로 쌓은 성은 처음으로 치첩의 제도를 도입하여 거리를 계산하고 따로 모서리를 만들어 성 전체를 싸안았으므로, 매 치첩에 두서너 사람만 세우더라도 좌우를 살피기에 편리하여 적의 동태를 엿보기 쉽고, 밑에서 쳐다보면 도리어 치첩을 지키는 사람의 수를 분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제야 우리 나라도 성의 제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초루(譙樓)나 돈대(墩臺) 등속은 가끔 엉뚱한 모양만 낸 것 같아서 실용에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유수(留守)와 도청(都廳) 이유경(李儒敬)이 다투어 논란하던 것으로 결국 도

청의 주장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지만 나의 본뜻은 아니다."
하였다.

각건대(角巾臺) 앞길을 거쳐서 창룡문(蒼龍門)의 곡성(曲城) 밖으로 나가 남수문(南水門)의 초돈(譙墩) 윗길을 지나 팔달문(八達門)에 이르러서 문루(門樓)에 올라 쉬고는 서장대(西將臺)에 이르러 대 뒷쪽의 소랑(小廊)에 들러서 신하들에게 식사를 베풀었다.

밤에는 장대(將臺)에 올라 연거(演炬)를 관람하였다. 선전관이 꿇어 엎드려서 아뢰고 나서 신포(信炮) 세 발을 터뜨리고 횃불 세 개를 붙여서 올리자 대 위에서 네 개의 횃불을 올리면서 모든 성가퀴에서 일제히 횃불을 올렸다. 호포(號炮)를 한 방 터뜨리고 천아성(天鵝聲)을 불고는 횃불을 점호하며 납함(吶喊)하기를 세 차례 하였다. 그리고는 지금(止金)으로 일호(一號)를 장(掌)하고 이호를 장한 뒤 연거가 끝났다.

행궁에 돌아와서 하교하기를,

"**화성 서장대**에서 오늘 밤 훈련은 생략하고 연거(演炬)별로 호령만 실시하였지만 응접(應接)함이 격식에 맞고 구율(彀率)에 차착(差錯)이 없었다. 더구나 이들은 모두 이 성의 정군(丁軍)으로 단속이 잘 된 입방군(入防軍)과는 더욱 다르다. 그런데도 이처럼 잘 익숙히 훈련되었으니, 장수에 적임자를 얻은 효과를 보게 되어 매우 가상하나 이것은 오히려 여사(餘事)이다. 그리고 조련이 있기 전에 새 성을 두루 둘러보았는데 공로가 크고 많다. 어찌 말을 달려 전쟁한 공로에 뒤지겠는가. **화성 유수 조심태(趙心泰)**에게 특별히 전지와 백성을 떼어준다. 성첩이 완성되었으므로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집집마다 부유하게 하고 사람마다 화락하게 하는 것[戶戶富實 人人和樂]'의 여덟 글자이다. 잘살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묘당의 여러 신하들과 강구하여 마련하는 중이다. 그리고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또한 사람을 화락하게 하는 한 방법이니, 성 안팎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당년의 군향곡(軍餉穀)과 환곡(還穀)에 대한 모곡(耗穀)을 특별히 면제해 주어 그들의 기대하는 마음에 부응토록 하라."
하였다.

○上巡城. 自**華陽樓**北, 巡歷華西樓, 至空心墩, 謂閣臣承旨曰: "空心墩, 卽我東城制之初有者. 諸臣可縱觀之." 歷**長安門**至**訪花隨柳亭**, 設小的, 御射三巡, 獲三矢, 命閣臣將臣耦射. 上, 見亭下民庶環擁瞻旄, 命**水原府留守趙心泰**, 選其能射者試射, 取居魁一人, 許赴殿試, 賜樂出送. 宣醞于諸臣, 御製七言小詩, 命諸臣賡進. 謂廣州留守徐有隣曰: "故相柳成龍謂: '訓鍊都監, 宜開屯於京畿地方, 而訓局軍萬名中五千名, 在京操鍊, 五千名赴屯耕作, 以爲兵農相寓之義.' 其意甚好, 而寢不行, 誠可惜也. 予於**壯勇營**, 略倣此規, 設置鄕軍於畿邑, 爲一營五司之制, 蓋出於環連拱抱輔車相須之意也. 園幸時, 只以本府五哨軍, 輪回隨駕, 則行伍單弱, 軍容未備. 守禦廳出鎭軍制釐正時, 有餘丁八百餘名, 故設六哨於輦路所經廣州·始興·果川及**華城**屬邑龍仁·安山等地, 駕過時使之徵發陪扈. 仍以守廳所管惠廳除留米一千石, 錢二千兩, 劃屬本營, 以爲上番軍支放之需, 仍設置屯田於鄕軍所在之各邑, 以其稅入, 爲其軍來往時糧饌及服色之費矣. 先買土地, 所出果與軍需容入, 相當乎?" 有隣曰: "廣州屯田所(需)〔收〕, 有不足之慮, 如干加買, 然後所收與容入, 始可相當矣." 上曰: "本營鄕軍之設施, 意義有在. 最初楊根·加平·砥平, 先出二哨, 而此則屯田在於渠輩門前, 故足爲兵農相寓. 坡州又出一哨, 欲用楊根等三邑之例, 則土地甚少, 且軍人散在各處, 近者雖自治田, 遠者不能自作. 此則已稍異於三邑之例矣. 其後又置楊州一哨. 而我國凡事, 輒爲大民所撓. 楊州則多有京華士夫之土地, 決買給價之前, 必先紛撓, 不得已姑徐之, 以爲漸次經始之計. 而就畿營貿租條中, 劃出若干錢, 貿取畿邑還耗, 以爲一哨軍接濟之道. 其後又置高陽一哨, 以摠戎廳法外保軍量減後, 所收之身錢餘者, 爲接濟之道, 其後又置**水原**五哨, 劃給三萬兩公貨, 貿取該道小米萬

石取耗, 而使之接濟. 大抵楊州·高陽·水原軍接濟之需, 其名色非但非予之本意, 亦不及於最初楊根等邑設施之規, 容俟來頭, 不可不釐正. 而凡公私需用之必着手於耗穀者, 大非好道理. 雀鼠之耗, 官長之主管, 已極苟且, 況朝家乎? 此不可不一番釐正矣." 詣東將臺, 御臺. 上, 謂諸臣曰: "我國城制固陋, 勿論京外, 元無雉堞之制. 獨故相金宗瑞所築鍾城城制, 略倣華制, 其形如圭, 內頗空闊, 上如加簷, 便於頻視. 而猶不如雉之爲制. 蓋古之城制, 當以雉堞爲第一, 而我國之城, 則全體周圓, 無模稜. 故埤埤堞堞, 環立守之, 然後始可禦賊. 而今此新城, 創爲雉制, 計以步數, 別成廉角, 環包體城, 每雉雖立數三人, 便於左右望, 而易以覘賊, 自下視之, 亦不分守堞人之多少. 今而後, 我國始可曰有城制. 但譙樓墩臺之屬, 往往有近於奇巧, 不適實用. 此則留守與都廳李儒敬爭難, 畢境都廳之說得行, 非予之本意也." 由角巾臺前路, 出蒼龍門曲城外, 歷南水門譙墩上路, 至八達門, 御門樓暫憩, 至西將臺, 御臺後小廊, 宣飯于諸臣. 夜御將臺, 觀演炬. 宣傳官跪啓稟, 放信炮三聲, 擧起火三枝, 臺上燃四炬, 各埤一時燃炬. 擧號炮一聲, 吹天鵝聲, 點炬吶喊, 共三次. 止金掌一號, 掌二號演炬畢. 還行宮, 敎曰: "華城西將臺, 今日夜操, 爲其省略, 只行演炬別號令, 而應接若式, 彀率不差. 況此類皆是城丁軍, 尤異於入防軍. 團束其能如是, 鍊熟可見, 將得其人之效, 雖甚可嘉, 猶屬餘事. 且於操前, 遍觀新城, 勞多功鉅. 豈讓汗馬? 華城留守趙心泰, 特賜田民. 城堞旣完, 目今第一義, 卽戶戶富實, 人人和樂八箇字. 富之之術, 方與廟堂諸臣講磨. 而蠲惠之方, 亦屬人和中一事, 城內外居民, 當年餉與還, 特竝除耗, 以副渠輩望幸之情."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1월 29일(경오) 2번째기사>

현륭원에 나아가 작헌례를 올리고 저녁에는 화성 행궁에 머물다

현륭원(顯隆園)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올렸다. 상이 원사(園司) 조용진(趙用鎭)에게 이르기를, "능원(陵園)의 제도에 더러 왼쪽을 비워 놓고 동봉(同封)하지 않는 일도 있으나, 나는 남다른 정리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후일에 상례(常例)를 따르지 않으려고 회격(灰隔)은 만석(蔓石)까지만 하고 복부형(覆釜形) 이상은 당초에 석회를 쓰지 않아서 왼쪽은 곧 전지(全地)이다. 그런데 난간석(闌干石)이 더러 작은 틈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용진이 아뢰기를, "석물(石物)은 오른쪽에 힘을 썼기 때문에 왼쪽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난간석이나 병풍석 등에 대하여 선조(先朝)의 금령(禁令)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무엇이든지 최고의 제도를 쓰려다 보니 준수하지 못하였다."하였다. 이어 지경 안에 심은 나무를 두루 돌아보고 성황산(城隍山) 밑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여러 신하들에게 식사를 하게 했다. 저녁에는 화성 행궁에 머물렀다.
○辛未/詣顯隆園, 酌獻禮. 上, 謂園司趙用鎭曰: "陵園之制, 雖或虛左, 未嘗同封, 而予則情理有所自別. 故爲日後, 欲不用常例, 灰隔只限蔓石, 覆釜形以上, 初不用石灰, 左邊卽是全地. 而闌干石或有微隙, 何也?" 用鎭曰: "石物, 用力於右邊, 故左邊亦不得不然." 上曰: "闌干屛風等石, 雖有先朝禁令, 而以予無不用極之意, 不得遵守矣." 仍周審局內植木, 至城隍山下, 設帟幕, 宣飯于諸臣. 夕次華城行宮.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1월 30일(신미) 1번째기사>

원향 때의 집사관은 화성의 판관 등 조관 중 차출하도록 명하다

이제부터 원향(園享) 때의 집사관(執事官)은 화성의 판관·중군(中軍)과 영화 찰방(迎華察訪) 및 성 내외의 문·음·무(文蔭武)의 조관(朝官)으로 통틀어 차출하되, 왕래할 때 노자

를 알맞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도록 명하였다.
○命自今園享時執事官, 以**華城判官**·中軍·**迎華察訪**及城內外文蔭武朝官, 通融塡差, 往來量給盤纏, 著爲式.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1월 30일(신미) 2번째기사>

화성·시흥 등에 어사로 파견한 심상규 등을 만나 범법자의 처리를 명하다
이보다 앞서 심상규(沈象奎)·여준영(呂駿永)·정만석(鄭晩錫)을 **화성**·광주·과천·시흥 고을의 어사로 파견하여 행차 때 연로(沿路)의 폐해를 살피게 하였었는데, 이때에 와서 복명하였다. 상이 그들을 불러 보고, 범법한 서예(胥隷)들을 해당 관사에 회부하여 법에 따라 다스리도록 명하였다.
○先是, 以沈象奎·呂駿永·鄭晩錫, 差**華城**·廣州·果川·始興邑御史, 使廉察幸行時沿路弊瘼, 至是復命. 上, 召見命犯科胥隷等, 付攸司科治.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1월 30일(신미) 3번째기사>

좌의정 채제공을 봉수당에서 불러 보다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을 **봉수당(奉壽堂)**에서 불러 보았다. 제공이 아뢰기를, "그저께는 성을 순시하고 어저께는 국내를 두루 살펴보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성상의 몸이 고단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대왕께서 50년 동안 실천하신 검소한 덕이 어떠하였으며, 권태해질 보령(寶齡)에 이르러서도 정사에 부지런하심이 어떠하였던가? 내가 우러러보고 직접 들은 바이다. 이를 계술(繼述)하고자 한결같이 마음을 가다듬었다. 근년 이래로는 두려운 마음이 날로 더하여 자신에게 매우 각박하게 대접하고 감히 안일하게 지내지 못하였으며, 일상 생활과 의복에서도 혹시나 안일하고 사치스러워질까 걱정하였다. 그런데 더구나 능원을 전알하는 행차나 산성을 돌아보는 일을 어찌 힘든다고 꺼릴 수 있겠는가. 옛날 효묘(孝廟) 때에 후원(後苑)에 척뇌당(滌惱堂)을 지어 놓고 내구마(內廐馬)를 타고 내시에게 고삐를 잡게 하고 이 당에 왕림하는 것을 거의 일과처럼 하셨다. 이는 밖으로 수수(蒐狩)하는 거둥은 없었지만 안으로는 실로 노고를 익히려는 생각에서 나왔던 것이다. 우리 열성조(列聖朝)에서 말타기를 통하여 노동을 익히지 않은 분이 없었으며, 이를 가법(家法)으로 삼았다. 내가 항상 이를 체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한 점이 많다. 금원에서 군무(軍務)로 전좌(殿座)할 때 반드시 말을 타는 것도 선조(先朝)의 고사를 따르고자 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루 종일 말을 타도 고단한 줄을 모른 것이다." 하였다.
○壬申朔/召見左議政**蔡濟恭**于**奉壽堂**. 濟恭曰: "再昨巡城, 昨日局內周審, 勞動旣多, 聖體不瑕有損?" 上曰: " 先大王五十年儉德何如, 及至倦勤之齡, 勤政何如? 予所仰覩而承聆者. 思欲繼述, 一念憧憧. 近年以來, 戒懼之心, 日甚一日, 自待甚薄, 罔敢自逸, 而至於起居服飾之節, 惟恐或涉於暇豫侈大. 況於謁園之行, 巡山巡城, 豈或憚勞乎? 昔在孝廟朝, 作滌惱堂於後苑, 御內廐馬, 使中官執轡往臨是堂, 殆若日課者然. 外雖無蒐狩之擧, 內實出習勞之意. 惟我列聖朝, 無不以習勞於跨馬, 爲家法. 予欲體而每多不逮. 凡於禁苑, 以戎事殿座, 必騎馬者, 亦欲追先朝故事也. 以故雖終日御馬, 不知其爲勞耳."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2월 1일(임신) 1번째기사>

화성 행궁을 떠나 장안문·영화역·지지대 등을 거쳐 창덕궁에 돌아오다

상이 **화성 행궁**을 떠나 장안문 안에 이르러 성 안의 부로(父老)들을 불러 위로하였다. **영화역(迎華驛)** 앞길에 이르러 찰방 이오진(李五鎭)을 불러 보고 이르기를, "우관(郵館)이 완공되고 민호(民戶)가 즐비하니 너의 힘이다."
하고, 이어 수령으로 제수할 것을 명하였다. **지지대(遲遲臺)**에 이르러 잠깐 머물렀다가 사근 행궁(**肆覲行宮**)과 안양 역참을 지나 시흥 행궁의 주정소(晝停所)에 들러 경기 관찰사 이면응(李冕膺)과 지방관 김사희(金思羲)를 불러 보았다.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에 이르러 주교사(舟橋司) 당상 정민시(鄭民始)를 불러 보고 주교사에 소속된 장교와 이속(吏屬)·선인(船人) 등에게 상을 내렸다. 저녁에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上, 自**華城行宮**進發, 至**長安門**內, 招城內父老慰諭之. 到**迎華驛**前路, 召見察訪李五鎭謂曰: "郵館已成, 民戶櫛比, 爾之力也." 仍命守令除授. 至**遲遲臺**少駐, 歷**肆覲行宮**, 安養撥所, 晝停于始興行宮, 召見京畿觀察使李冕膺·地方官金思羲. 至**龍驤鳳翥亭**, 召見舟橋司堂上鄭民始, 命舟橋屬校吏船人等施賞. 夕還昌德宮.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2월 1일(임신) 2번째기사>

2. 일성록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1월 29일(경오)
강대궐을 출발하여 **화성(華城)**에 나아갔다.
목○ 삼엄(三嚴)을 알리는 북을 치자, 군복을 갖추고 교(轎)를 타고 만팔문(萬八門), 보정문(保定門), 숭지문(崇智門), 집례문(集禮門), 건양문(建陽門), 숙장문(肅章門), 진선문(進善門), 돈화문(敦化門)을 나가 숭례문(崇禮門) 밖에 이르렀다. 남관왕묘(南關王廟)에 들러 재배례(再拜禮)를 행하였다. 수직한 관원을 변장(邊將)으로 차출하여 보내고 수복(守僕) 등은 규례를 살펴 시상하라고 명하고 동관왕묘(東關王廟)의 수직관과 수복에 대해서도 일체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내가 남관왕묘(南關王廟)의 문 밖으로 나가 말을 타고 출발하였다. 주교(舟橋)에 이르자, 병조 판서 이득신(李得臣)이 무릎 꿇고 승교포(乘橋砲)[154]를 쏘기를 계청하였다. 선전관이 무릎 꿇고 계품(啓稟)하여 신포(信砲) 3발을 쏘자, 이득신이 무릎 꿇고 기(旗)를 올리기를 계청하였다. 선전관이 무릎 꿇고 계품하여 신포 1발을 쏘고 뇌고(擂鼓)와 꽹과리를 치기를 모두 세 번 하였으며, 횃불 1자루(枝)를 발사하고, 징을 두 번 울려 대취타(大吹打)를 하고 북을 두드리며 기를 흔들었다. 어가(御駕)가 주교를 건너자, 선전관 1원이 뒤처져 있다가 여쭈지 않고 하교포(下橋砲) 3발을 쏘고 또 1발을 쏘았으며, 뇌고와 꽹과리를 치기를 모두 세 번 하고 기를 내렸다. 내가, 가후 선전관(駕後宣傳官)은 신전(信箭)을 가지고 선상(先廂)인 훈련대장에게 주어 수령하게 하고, 보군(步軍) 2개 초(哨)는 먼저 가서 시흥(始興) 행궁(行宮)에 빙 둘러 작문(作門)하고 대장도 작문 밖에 머무르며, 후상(後廂)인 **장용영** 보군을 기다려 합쳐 모두 빙 둘러 호위하라고 명하였다.
강進發詣**華城**
목鼓三嚴具軍服乘轎出萬八門 保定門 崇智門 集禮門 建陽門 肅章門 進善門 敦化門至崇禮門外歷臨關王廟行再拜禮命守直官邊將差送守僕等考例施賞而東廟守直官守僕一體爲之予出南廟門外乘馬進發至舟橋 兵曹判書 李得臣跪啓請乘橋宣傳官跪啓稟放信砲三聲得臣跪啓請陞旗宣傳官跪

154) 승교포(乘橋砲) : 원문은 '乘橋'인데, 《일성록》 정조 15년 1월 16일, 17년 1월 16일, 21년 8월 19일 기사에 의거하여 '橋' 뒤에 '砲'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啓稟放信砲一聲擂鼓鳴鑼共三通擧起火一枝鳴金二聲大吹打點鼓點旗駕渡舟橋 宣傳官一員落後除取稟放下橋砲三聲又放一聲擂鼓鳴鑼共三通落旗予命駕後宣傳官持信箭祗受於先廂訓將步軍二哨先往環衛作門於始興行宮大將亦於作門外留住待後廂壯勇營步軍合幷環衛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1월 29일(경오)

강시흥 행궁에서 주정(晝停)하고 오시(午時)가 되자 어가가 **화성 행궁**에 머물렀다.

목○ 어가가 시흥현(始興縣)에 이르렀을 때 날이 채 밝지 않았으므로 말에서 내려 행궁으로 들어갔다. 승지 이익운(李益運)이 아뢰기를, "판중추부사 이병모(李秉模)가 성도화리(成桃花里)에 이르러 낙마(落馬)하여 중상을 입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니, 반열을 정돈할 대신(大臣)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륭원** 제향의 종헌관(終獻官)을 변통해야 합니다."

하여, 내가 즉시 수가하는 의관(醫官)을 보내어 병세를 묻고 오게 하라고 명하였다. 동이 튼 뒤에 내가 선전관에게 전교하기를, "장용대장이 거느리는 선기대(善騎隊) 1개 초(哨)와 마병(馬兵) 1개 초, 금군 50명을 선상으로 삼고, 훈련대장이 거느리는 선기대 1개 초와 가후 금군(駕後禁軍) 40명을 후상으로 삼으며, 가전 별초(駕前別抄), 좌익대(左翼隊), 우익대(右翼隊), 장용위(壯勇衛)의 좌열(左列)이 가전 별초의 신지(信地)에서 행진하고, 장용위의 우열(右列), 난후군(攔後軍), 본영의 경보군(京步軍)과 향보군(鄕步軍) 및 훈련도감의 보군 2개 초는 각 해당 당상 장관이 거느리고서 후상의 후미에서 수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삼엄을 알리는 북을 치자, 말을 타고 출발하였다. **만안교(萬安橋)**에 이르러 교역감동인(橋役監董人) 신형(申泂)·서의린(徐毅麟)·서협수(徐浹修)를 소견(召見)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새로 만든 다리가 견고하여 걱정할 것이 없는가?" 하니, 신형 등이 아뢰기를, "이번에는 전에 비해 상당히 완고(完固)합니다." 하여, 내가 신형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화성** 성역에서 어떤 일을 맡았으며 어떤 상을 받았는가?"

하니, 신형이 아뢰기를, "**장안문(長安門)**의 성 700보와 **동장대(東將臺)**의 간역(看役)을 신이 하였고, 받은 상전은 오위장(五衛將) 및 실동지(實同知)입니다."

하여, 내가 **화성**에 가서 대령하라고 명하고, 서의린과 서협수에게 전교하기를, "다리를 지금 다시 완성하였으니, 그대들은 전날에 일을 잘못 처리한 죄를 속죄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 바친 첩가(帖加)는 예조로 하여금 다시 만들어 주게 하겠다."

하였다. **안양평(安養坪)**에 이르렀을 때 길가에 대(臺)를 쌓은 곳이 있었다. 을묘년(1795, 정조19) 봄에 내가 자전(慈殿)을 모시고 행행할 때 연로에서 쉬던 곳인데,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돌을 쌓아 대를 만든 것이었다. 말에서 내려 잠시 쉬다가 내가 이익운에게 이르기를, "'이 판부사(判府事 이병모(李秉模))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잘 조섭하라.' 라는 내용으로 사관을 보내어 전유하게 하라. 종헌관은 광은부위(光恩副尉 김기성(金箕性))로 고쳐 부표(付標)하라. 좌상이 노인이라서 수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나아가게 하였으니 궁으로 돌아갈 때에도 뒤처지게 해야 한다. 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상이 강나루에 와서 대령하여 압반(押班)하라는 뜻으로 승지가 서면(書面)으로 알리라."

하였다. 조금 뒤에 말을 타고 출발하여 **지지대(遲遲臺)**에 이르렀다. **장용영 외사** **조심태(趙心泰)**가 친군위(親軍衛) 200명과 입방군(入防軍) 5개 초, 별군관(別軍官) 100명을 거느리고 지지대 아래에 주둔하여 선상의 전열(前列)이 되었다. 장안문 밖에 이르러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길 왼쪽에서 공경히 맞이하였다. 사관을 보내어 내려오는 길이 편안하였는지 묻게 하였다. 이어서 여기에서부터 압반하여 수가하게 하였다. 또 장안문에 들어갈 때 영접하는 절차는 모두 하지 말고 협수장(挾守將)만 성상(城上)에서 무릎을 꿇고 맞이하라고 명하

였다. 이어서 장안문, 좌우 군영의 앞길, 신풍루(新豐樓), 좌익문(左翊門), 중양문(中陽門)을 거쳐 말에서 내려 봉수당(奉壽堂)으로 나아갔다. 장용영 내사와 외사 및 여러 장관들이 참알(參謁)하는 것은 모두 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강晝停于始興行官晌午駕次華城行宮

목駕到始興縣天色未明降馬入行宮承旨 李益運奏判府事 李秉模到成桃花里落馬重傷不得前進云非但無押班大臣園享終獻官合有變通之道予命卽遣隨駕醫官問病以來開東後予敎 宣傳官曰壯勇大將率善騎隊一哨馬兵一哨禁軍五十爲先廂訓將率善騎隊一哨駕後禁軍四十爲後廂駕前別抄左右翼隊壯勇衛左列駕前別抄信地作行右列攔後本營京鄕步軍及訓局步軍二哨各該堂上將官率領後廂尾局隨行事分付鼓三嚴乘馬進發至萬安橋召見橋役監董人申洞 徐毅麟 徐浹修予曰新造之橋果能堅固無慮否洞等曰今則比前頗完固矣予謂洞曰爾於華城之役幹何事被何賞洞曰長安門城七百步及東將臺看役臣爲之而所被賞典則五衛將 及實同知矣予命來待於華城敎毅麟 浹修曰橋今更成爾等可贖前日不善幹事之罪還納之帖加當令該曹更爲成給矣至安養坪路傍有築臺處乙卯春予陪慈駕幸行時沿路所憩處居民築石以臺之者也下馬少憩予謂益運曰李判府卽爲還第善攝之意遣史官傳諭終獻官則以光恩副尉改付標左相則老人也難於隨駕故旣令先詣還宮時亦當使落後右相趁還宮前來待江頭以爲押班之意承旨書報也少頃乘馬進發到遲遲臺 壯勇外使 趙心泰率親軍衛二百入防軍五哨別軍官一百留待于臺下爲先廂之前列至長安門外左議政 蔡濟恭祗迎路左遣史官問其下來安穩仍令自此押班隨駕又命入長安門時迎接節次幷除之只挾守將城上跪迎仍由長安門左右軍營前路新豐樓 左翊門 中陽門降馬御奉壽堂命內外使及諸將官參謁幷除之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1월 29일(경오)

강화성을 순시하고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에 나아가 활쏘기 3순(巡)을 하여 3발을 맞히고 어제시(御製詩) 칠언소시(七言小詩)를 짓고 신하들에게 화답시를 짓도록 명하였다.

목○ 군복을 갖추고 소여(小輿)를 타고 유여택(維與宅)에서 남행각(南行閣) 대문을 나가 서장대(西將臺)에 나아갔다. 여러 각신들 및 승지 이익운·이조원(李肇源), 장용위 제조 이시수(李時秀), 병조 판서 이득신(李得臣), 외사(外使) 조심태, 광주 유수(廣州留守) 서유린(徐有隣), 경기 감사 이면응(李冕膺)이 모두 따랐다. 화양루(華陽樓) 북쪽에서 순행하여 화서루(華西樓)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다시 여를 타고 공심돈(空心墩) 앞길에 이르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공심돈의 제도는 바로 우리나라 성(城)의 체제에서는 최초의 것이다. 층계가 우회하여 어가가 올라가기 불편하니 보고 싶은 신하들은 머물렀다가 들어가 구경하고 오라." 하였다.

장안문에 이르러 여에서 내렸다. 문루(門樓)에 나아가 성 안과 밖의 민가를 굽어보았다. 조심태에게 이르기를, "영화역(迎華驛)의 관사(官舍)가 새로 완성되고 민가도 상당히 즐비하니 매우 다행스럽다. 민가가 대략 몇 호이며 우관(郵館)의 칸수는 얼마인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관사는 40여 칸이고 새로 유입한 민호가 50호입니다." 하였다.

내가 문루에서 내려가 여를 타고 화홍문(華虹門)을 지나 여에서 내렸다. 방화수류정에 나아가 유엽전(柳葉箭) 3순을 쏘아 3발을 맞혔다. 이시수·조심태·이익운·이득신 및 일제학(一提學) 정민시(鄭民始), 직제학 이만수(李晩秀), 화성부 판관(華城府判官) 홍원섭(洪元燮)이 활을 쏠 때 배종(陪從)하였다. 활쏘기를 마치고 방화수류정 위로 돌아왔다. 전교하기를, "정자 아래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활을 쏠 수 있는 자는 시사(試射)에 참가하게 하되 10인으로 한정하라." 하였다.

선천(宣薦)인 한량(閑良) 이승덕(李升德)이 2발을 맞히고, 장용영 향군 임득재(林得才)가 1

발을 맞혔다. 내가 이르기를, “많은 무사 중에 10인으로 한정하였으니 여기에 들어간 자는 충분히 초시(初試)에서 2발을 맞힌 것이 된다. 이는 본래 회시(會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규정에 해당하나, 무술을 숭상하는 정사로 볼 때 특례로 시행하는 은전이 있어야 한다.”
하고, 이어서 이승덕은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사악(賜樂)하여 내보내며, 이득재는 외탕고(外帑庫)에서 활 1장(張)을 주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신하들에게 선찬(宣饌)하고 선온(宣醞)하였다. 내가 절구(絶句) 1수를 지어 소서(小序)를 달고 이만수에게 쓰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성을 순시하고 방화수류정에 이르러 활을 쏘아서 무(武)를 숭상하는 뜻을 보인다. 내가 마침 세 번 정곡을 맞혔는데, 내사와 외사도 각각 그와 같았으므로, 셋째 구절에서 《주례(周禮)》 〈오사(五射)〉의 전주(箋註)를 인용하여 사실을 기록하기를,

봄날 성을 두루 보았으나 해 아니 기울었고 / 歷遍春城日未斜
작은 정자의 경치는 한결 맑고 아름답네 / 小亭雲物轉晴佳
어가는 신묘한 삼련[155]의 보고에 이력이 났고 / 鑾旂慣報參連妙
만 그루 버들 아래 나는 화살 꽂 같네 / 萬柳陰中箙似花

하였다. 사관을 보내어 좌의정 **채제공**에게 전하게 하고 차운(次韻)하여 화답시를 지어 바치게 하라. 자리에 있는 신하들도 화답시를 짓게 하라.” 하였다.
내가 서유린에게 이르기를, “고(故) 상신(相臣) 유성룡(柳成龍)이 ‘훈련도감은 경기 지방에 둔전(屯田)을 만들어 훈국의 군사 1만 명 중에 5천 명은 서울에서 조련하고 5천 명은 둔전에 가서 경작하게 하여 군대와 농사가 서로 의지하는 제도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 뜻은 매우 좋았으나 폐지되어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애석하다. 내가 **장용영**에 이런 규구를 대략 모방해 기읍(畿邑)에 향군(鄕軍)을 설치하여 한 군영에 오사(五司)의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대개 둘러싸고 서로 도와주는 것과 같이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현륭원(顯隆園)**에 행행할 때 본부(本府)의 군병 5개 초만으로 돌아가며 수가하게 할 경우 대오가 단약(單弱)하고 군용(軍容)이 미비하다. 그래서 수어청(守禦廳)이 출진(出鎭)하는 군제를 바로잡아 고칠 때 여정(餘丁) 800여 명이 있었으므로 연로(輦路)가 지나는 광주(廣州)·시흥(始興)·과천(果川) 및 **화성**의 속읍(屬邑)인 용인(龍仁)·안산(安山) 등지에 6개 초를 설치하였다가 어가가 지나갈 때[156] 징발하여 배종(陪從)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어청이 관리하는 선혜청의 제류미(除留米) 1000섬과 돈 3000냥을 본영(本營)에 떼어 주어 상번군(上番軍)의 급료로 쓰게 하고, 이어서 향군이 있는 각 고을에 둔전을 설치하여 그 산출로 군사들이 왕래할 때의 양식과 의복을 마련할 비용으로 삼도록 하였다. 먼저 산 토지의 산출이 군수(軍需) 비용에 상당한가?” 하니, 서유린이 아뢰기를, “광주 둔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족할 염려가 있으므로 약간 더 사들인 뒤에야 들어가는 비용과 같게 될 것입니

155) 삼련(參連) : 고대에 사례(射禮)를 행할 때 사용한 다섯 가지 활쏘기 법 중 하나로, 화살 하나를 먼저 쏜 뒤에 화살 셋을 연속해서 쏘는 것을 말한다. 《周禮 地官 保氏 五射》
156) 수어청(守禦廳)이 …… 때 : 정조가 즉위 초에 수어청과 총융청(摠戎廳)을 통합할 뜻을 보인 뒤 1795년(정조19) 9월에 이르러 수어 경청(守禦京廳)을 혁파하고, 수어사(守禦使)를 남한산성(南漢山城)에 출진(出鎭)시켜 광주 유수(廣州留守)로 삼은 일을 가리킨다. 수어청은 별도의 군제(軍制) 없이 800명의 표하군(標下軍)만으로 오위에 속해 있고 수어사는 본래 남한산성을 통제하는 직임이나 일 년에 두 차례 출진하므로,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경기 백성들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경청을 혁파하고 수어사가 출진하게 한 것이다. 《承政院日記 正祖 2年 6月 4日》 《국역 국조보감 제74권 정조조 6》 《日省錄 正祖 19年 8月 18日, 9月 11日》

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본영(本營)에 향군을 설치한 속뜻이 매우 원대하다. 최초에 양근(楊根)·가평(加平)·지평(砥平)에 먼저 2개 초를 내었는데, 이는 둔전이 군인들의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와 농사가 서로 의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파주(坡州)에 또 1개 초를 내어 양근 등 세 고을의 예를 적용하려 하였으나 토지가 너무 적고 군인들도 각처에 흩어져 있어서 가까이 있는 자는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자는 스스로 지을 수 없으니, 이것이 세 고을의 예와는 약간 다른 이유이다. 그 뒤에 또 양주(楊州)에 1개 초를 설치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모든 일이 번번이 힘 있는 백성에 의해 시끄럽게 되기 마련인데 양주는 서울에 사는 사대부의 토지가 많아서 사기로 정하고 값을 치르기도 전에 반드시 먼저 소란이 일어나므로, 어쩔 수 없이 우선 천천히 두고 보면서 차차 시작할 생각이다. 경기 감영에서 조(租 벼)를 살 몫에서 약간의 돈을 떼어 내 기읍 환곡의 모조(耗條)를 사들여 1개 초의 군사가 살아갈 방도로 삼았다. 그 뒤에 또 고양(高陽)에 1개 초를 설치하고 총융청의 규정 이외의 보군(保軍)을 참작해 감한 뒤 거두어들인 신전(身錢)의 여분으로 군사들이 살아갈 방도로 삼았으며, 그 뒤에 또 **수원**에 5개 초를 설치하고 3만 냥의 공화(公貨)를 떼어 주어 해당 도(道)의 소미(小米 좁쌀) 1만 섬을 사들여서 모곡을 취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였다.
대체로 양주·고양·**수원**의 군대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용은, 그 명색이 나의 본래 취지가 아닐 뿐 아니라 최초에 양근 등의 고을에 시행하였던 규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앞으로 바로잡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공사간(公私間)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모곡(耗穀)으로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방도이다. 작서모(雀鼠耗 모곡(耗穀))를 관장(官長)이 주관하는 것도 매우 말이 되지 않는데 하물며 나라에서 주관하는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나의 본래 취지는 이른바 모조를 곧바로 내주려는 것이었는데, 모곡을 받는 것도 오히려 부족하여 심지어 시가(市價)가 어떤지를 논하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백성과 이익을 다투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모곡을 발매하라고 명을 내리면 영읍에서는 혹 이것을 핑계로 사욕을 채우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이 일은 한번 바로잡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조금 뒤에 여를 타고 **동장대(東將臺)**에 나아갔다. 여에서 내려 **동장대** 위에 올랐다.
내가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성의 제도가 고루하여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본래부터 치첩(雉堞)의 제도가 없었다. 그런데 고 상신 김종서(金宗瑞)가 쌓은 종성(鍾城)의 방식이 유일하게 중국의 제도를 약간 본떠서 형태가 홀과 같아 안이 상당히 넓고 위에는 처마를 얹은 듯하여 내려다보는 데 편리하나 치첩의 제도만은 못하였다. 대개 옛날의 성 제도는 치첩을 제일로 여겼을 것인데, 우리나라의 성은 전체가 둥글고 모서리가 없기 때문에 성 위의 살받이와 성가퀴마다 빙 둘러서 지켜야만 적을 방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쌓은 성은 처음으로 치첩의 방식을 사용하여 거리를 계산해서 따로 모서리를 만들어 체성(體城)을 둘러쌌기 때문에 치첩마다 두서너 사람만 세우더라도 좌우를 살피기에 편리하여 적의 동태를 엿보기 쉽고, 밑에서 쳐다보아도 치첩을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이제야 우리나라도 성의 제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초루(譙樓)나 돈대(墩臺) 등은 이따금 불필요하게 힘을 쓴 곳이 있어 기교를 부린 데 가까우니, 본 취지에는 대단히 맞지 않는다. 이는 유수(留守)가 도청(都廳) 이유경(李儒敬)과 논쟁하다가 결국 도청의 주장대로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다고 한다." 하였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오늘 저녁에는 **서장대(西將臺)**에 나아가 횃불 붙이는 것을 시험할 것이니, 외사는 그리 알라." 하였다. **조심태**가 주대군(駐隊軍)은 수가(隨駕)하는 군병 중에서

어느 영의 군병 몇 개 초(哨)로 거행할지 아뢴 데 대해, 내가 입방군(入防軍) 2개 초로 하라고 명하였다. 여를 타고 **각건대**(**角巾臺**) 앞길을 거쳐서 **창룡문**(**蒼龍門**)의 곡성(曲城) 밖으로 나가 **남수문**(**南水門**)의 초돈(譙墩) 윗길을 지나 **팔달문**(**八達門**)에 이르러 여에서 내렸다. 문루(門樓)에 올라 잠시 쉬었다. 여를 타고 **서장대**에 이르러 여에서 내렸다. **서장대** 뒤쪽의 소랑(小廊)에 나아가 신하들에게 선반(宣飯)하였다.

강巡城御**訪花隨柳亭**射的三巡獲三矢御製七言小詩命諸臣賡韵

목具軍服乘小輿自**維與宅**出南行閣大門詣**西將臺**諸閣臣及承旨 李益運 李肇源 壯勇提調李時秀兵曹判書 李得臣外使**趙心泰** 廣州留守 徐有隣 京畿監司 李晃膺皆從自**華陽樓**北巡至華西樓少憩復乘輿至空心墩前路謂諸臣曰空心墩制度卽我東城制中初有者也層梯迂迴不便御駕登臨諸臣之欲見者留入觀玩而來至**長安門**降輿御門樓俯覽城內外民舍謂**心泰**曰**迎華驛**官廨新成民家亦頗櫛比甚可幸也民家大約幾戶郵館間數亦幾何**心泰**曰官舍四十餘間新入民戶五十家矣予下樓乘輿歷華虹門降輿御**訪花隨柳亭**射柳葉箭三巡三中時秀 **心泰** 益運得臣及一提學 鄭民始 直提學 李晩秀 **華城判官** 洪元燮陪射射訖還御亭上敎曰亭下觀光人中能射者許入試射限以十人宣薦閑良李升德二中壯勇鄕軍林得才一中予曰萬武之中限以十人參於此數者優可爲初試二中自是會試規矩其在尙武之政宜有拔例之典仍命升德直赴殿試賜樂出送得才令外帑庫給弓一張仍宣饌宣醞于諸臣予口拈一絕弁之以小序命晩秀書之曰巡城至**訪花隨柳亭**射的以示尙武之意予適三獲內外使亦各如之第三句引用周禮五射髽註以記實歷遍春城日未斜小亭雲物轉晴佳鑾旂慣報參連妙萬柳陰中簇似花遣史官往傳左議政 **蔡濟恭**使之步韻賡進在筵諸臣亦令賡進予謂有隣曰故相柳成龍謂訓鍊都監宜關屯於京畿地方而訓局軍萬名中五千名在京操鍊五千名赴屯耕作以爲兵農相寓之義其意甚好而寢不行誠可惜也予於**壯勇營**略倣此規設出鄕軍於畿邑爲一營五司之制蓋出於環連拱抱輔車相須之意也園幸時只以本府五哨軍輪回隨駕則行伍單弱軍容未備守禦廳出鎭軍制釐正時有餘丁八百餘名故設六哨於輦路所經廣州 始興 果川及**華城**屬邑龍仁 安山等地駕過時使之徵發陪扈仍以守廳所管惠廳除留米一千石錢三千兩劃屬本營以爲上番軍支放之需仍設置屯田於鄕軍所在之各邑以其所出爲其軍來往時糧饌及服色之費矣先買土地所出果與軍需容入能相當耶有隣曰廣州屯田所需有不足之慮如干加買然後所收與容入始可相當矣予曰本營鄕軍之設施微意甚遠最初楊根 加平 砥平先出二哨而此則屯田在於渠輩門前故足爲兵農相寓而坡州又出一哨欲用楊根等三邑之例則土地甚少且軍人散在各處近者雖自治屯田遠者不能自作此則已稍異於三邑之例矣其後又置楊州一哨而我國凡事輒爲大民所撓楊州則多有京華士夫之土地決買給價之前必先紛撓不得已姑徐之以爲漸次經始之計而就畿營貿租條中劃出若干錢貿取畿邑還耗以爲一哨軍接濟之道其後又置高陽一哨以總戎廳法外保軍量減後所收之身錢餘者爲接濟之道其後又置**水原**五哨劃給三萬兩公貨貿取該道小米萬石取耗而使之接濟大抵楊州 高陽 **水原**軍接濟之需其名色非但非予之本意亦不及於最初楊根等邑設施之規容俟來頭不可不釐正而凡公私需用之必着手於耗穀者大非好道理雀鼠之耗官長之主管已不成說況朝家乎予之本意則所謂耗條欲直爲出給而取耗之猶不足甚至於論及市直之高下此豈非與民爭利之歸乎況有發賣耗穀之令則營邑或有藉此濟私之弊此事不可不一番釐正矣少頃乘輿詣**東將臺**降輿御臺上予曰我國城制固陋勿論京外元無雉堞之制獨故相金宗瑞所築鍾城城制略倣華制其形如圭內頗空闊上如加簷便於頫視而猶不如雉之爲制蓋古之城制當以雉堞爲第一而我國之城則全體周圓無模稜故埒垛堞堞環立守之然後始可禦賊而今此新城創爲雉制計以步數別成廉角環包體城每雉雖立數三人便於左右望而易以覘賊自下視之亦不分守堞人之多少今而後我國始可曰有城制而但譙樓墩臺之屬往往有不緊用工之處近於奇巧大非本意此則留守與都廳李儒敬爭難而畢竟都廳之說得行故如是云矣仍敎曰今夕當御**西將臺**試演炬外使知悉**心泰**奏駐隊軍以隨駕軍兵中何營軍幾哨擧行予命入防軍二哨爲之乘輿由**角巾臺**前路出**蒼龍門**曲城外歷**南水門**譙墩上路至**八達門**降輿登樓少憩乘輿至**西將臺**降輿御

臺後小廊宣飯于諸臣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1월 29일(경오)

강서장대에서 횃불 붙이는 것을 관람하였다.

목○ 밤 초경(初更)에 내가 서장대에 나아갔다. 선전관이 무릎 꿇고 계품하여 신포 3발을 쏘고 횃불 3자루(枝)를 불을 붙여 올렸다. 대 위에서 4개의 횃불을 붙이자 모든 성가퀴에서 일제히 횃불을 붙이고 호포(號炮) 1발을 쏘고 천아성(天鵝聲)을 불었다. 횃불을 점검하고 세 차례 함성을 지르고 징 울리기를 멈췄다. 손바닥을 한 번 쳐서 신호하고 손바닥을 두 번 쳐서 신호하였다.[157] 내가 말을 타고 서장대 앞길을 나가 신풍루, 좌익문, 중양문을 거쳐 행궁으로 돌아왔다.

강觀演炬于西將臺

목夜初更予御將臺宣傳官跪啓稟放信砲三聲擧起火三枝臺上燃四炬各埰一時燃炬擧號炮一聲吹天鵝聲點炬吶喊共三次止金掌一號掌二號予乘馬出將臺前路由新豊樓 左翊門 中陽門還行宮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1월 29일(경오)

강내일 원소(園所)에 전알할 때 외사가 친군위(親軍衛) 100인과 입방(入防)한 보군 3개 초를 거느리고 선상이 되고 내사가 선기대 1개 초와 경보군(京步軍) 1개 초를 거느리고 수가하며, 그 밖의 내영과 외영 및 훈국의 군사는 훈련대장이 모두 거느리고 행궁에서 주둔하라고 명하였다.

목○ 병조가 아뢰기를, "내일 원소에 전알할 때 수가하는 군병은 어느 영의 마군과 보군 몇 번 몇 개 초로 신전(信箭)을 기다려 시위합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외사가 친군위 100인과 입방한 보군 3개 초를 거느리고 선상이 되고, 내사가 선기대 1개 초와 경보군 1개 초를 거느리고 수가하며, 향군 4개 초 중에서 100명을 덜어 내 후상으로 삼고, 금군 및 가전, 가후의 각 30인이 수가하라. 그 밖의 내영군과 외영군, 훈국의 군사는 훈련대장이 모두 거느리고 행궁에서 주둔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命明日園所展謁時外使率親軍衛一百人入防步軍三哨爲先廂內使率善騎隊一哨京步軍一哨隨駕其外內外營及訓局軍訓將 都領留駐行宮

목 兵曹啓言明日園所展謁時隨駕軍兵以何營馬步軍幾番幾哨待信箭侍衛乎敎以外使率親軍衛一百人入防步軍三哨爲先廂內使率善騎隊一哨京步軍一哨隨駕鄕軍四哨中除出百名爲後廂禁軍及駕前駕後各三十人隨駕其餘內外營軍訓局軍訓將 都領留住行宮事分付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1월 29일(경오)

강화성 유수 조심태(趙心泰)에게 전지(田地)와 백성을 내려 주고 성내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당년조 향곡(餉穀)과 환곡(還穀)에 대한 모곡을 특별히 면제해 주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 '화성 서장대에서 오늘의 야간 습조(習操)를 생략하고 연거 별호령(演炬別號令)만 실시하였지만 응접(應接)이 규식에 맞았고 활 당기는 법도도 어긋남이 없었다. 더구나 이들은 모두 성정군(城丁軍)으로 단속시킨 입방군(入防軍)과는 더욱 다른데 이처럼

157) 손바닥을 한 번 …… 신호하였다. : 《국역 만기요람》 〈군정편1 조점(操點) 성조(城操)〉에 "1일 전에 조련패(操鍊牌)를 단다. 기일(期日)에는 손바닥을 한 번 쳐서 신호하면 밥을 짓고, 손바닥을 두 번 쳐서 신호하면 조련에 참가할 군병이 무기를 가지고 성에 오르고, 대병(隊兵)은 중군대(中軍臺) 아래에 주류(駐留)해서 서로 마주 보고 진을 친다."라고 하였다.

숙련되었으니, 장차 적임자를 뽑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매우 가상하기는 하나 이것은 오히려 여사(餘事)이다. 그리고 습조하기 전에 새 성을 두루 둘러보았는데, 수고가 많고 공로가 큰 것이 어찌 말을 달려 전쟁하여 세운 공로보다 못하겠는가. **화성 유수** **조심태**에게 특별히 전지와 백성을 떼어 주라. 성첩이 완성된 이상 지금 제일 급한 것은 바로 「집집마다 부유하고 사람들이 화합하는 것[戶戶富實 人人和樂]」이다. 부유하게 하는 방법은 지금 묘당의 여러 신하들과 강구하여 마련 중이다.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도 사람들이 화합하게 하는 방법 중 한 가지이니, 성 안팎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당년의 향곡과 환곡에 대한 모곡을 특별히 면제해 주어 그들의 기대하는 마음에 부응토록 하라.' 라고 유수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 호조 판서 이시수가 아뢰기를, "**화성 유수** **조심태**에게 전지와 백성을 사급(賜給)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몇 결(結)과 몇 구(口)로 정하여 지급합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전(田) 3결과 노비(奴婢) 각 2구를 사급하라." 하였다.

강命**華城留守** **趙心泰**錫以田民城內居民當年餉與還特除其耗

목敎曰**華城** **西將臺**今日夜操爲其省略只行演炬別號令而應接若式穀率不差況此類皆是城丁軍尤異於入防軍團束其能如是鍊熟可見將得其人之效雖甚可嘉猶屬餘事且於操前遍觀新城勞多功鉅豈讓汗馬**華城留守** **趙心泰**特賜田民城堞旣完目今第一義卽戶戶富實人人和樂八箇字富之之術方與廟堂諸臣講磨而蠲惠之方亦屬人和中一事城內外居民當年餉與還特竝除耗以副渠輩望幸之情事下諭于留守○戶曹判書 李時秀啓言**華城留守** **趙心泰**田民賜給事命下矣以幾結幾口定給乎敎以田三結奴婢各二口賜給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1월 29일(경오)

강입직

목대교 이존수(李存秀)

검교대교 서유구(徐有榘)

검서관 이광규(李光葵)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1월 30일(신미)

강**현륭원(顯隆園)**에 나아가 친제(親祭)를 행하였다.

목○ 군복을 갖추고 말을 타고 **중양문**(**中陽門**), **좌익문**(**左翊門**), **신풍루(新豐樓)**를 나가 좌우 군영의 종가(鍾街) 앞길에 이르렀다. 승지에게 전교하기를, "광주 유수 및 각 고을의 차사원은 모두 제향하는 반열에 참석하였는가?" 하니, 승지 이익운이 전례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능행(陵幸)이나 원행(園幸) 때에 이웃 능침의 집사들이 모두 반열에 참석하는데 고례(古例)가 바로 그러하니, 지금부터는 반열에 참석하게 하라." 하였다.

팔달문(**八達門**)을 거쳐 **안녕리(安寧里)** 앞길에 이르러 식목 차사원(植木差使員)인 과천 현감(果川縣監) 김이유(金履裕), 시흥 현감(始興縣監) 김사희(金思羲), 안산 군수(安山郡守) 이노재(李魯在), 진위 현령(振威縣令) 윤응현(尹應鉉), 양성 현감(陽城縣監) 오경원(吳慶元), 광주 판관(廣州判官) 김이호(金履鎬), 남양 부사(南陽府使) 백사근(白師謹)을 소견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외남산(外南山)의 역소(役所)는 지금 어떠하며, 나무를 심은 뒤에 소견 또한 어떠한가?" 하니, 김이유 등이 아뢰기를,

"역소도 완고하고 심은 나무도 모두 울창하여 숲을 이루었습니다."

하였다. 내가 김사희와 김이유에게 전교하기를,

“동가할 때 두 고을의 군사를 대령하게 하였고 이미 각 고을에서 활쏘기를 시험 보이게 하였으니, 상전(賞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科擧)의 시관(試官)을 내어 2원을 갖춘 뒤에야 거행할 수 있다. 시흥의 시소(試所)는 시흥 현감이 상시관(上試官)이 되고 과천 현감이 참시관(參試官)이 되며, 과천의 시소는 상시관과 부시관을 서로 바꾸어 월과(月課) 1차 대신에 날을 나누어 시취하여 별단(別單)으로 아뢰라.” 하였다.

내가 또 이르기를, “안산(安山)·용인(龍仁)의 등롱군(燈籠軍)과 성정군에게 활쏘기를 시취하라고 **화성 유수**에게 하교하였으니, 시취하고 상을 나누어 준 뒤에는 즉시 풀어 보내라.” 하였다. **만년제**(**萬年堤**)에 이르러 승지에게 전교하기를, “왼쪽 한 산등성이에 겉흙이 벗겨진 곳이 있으니 식목 수령으로 하여금 보토(補土)하게 하라고 수복(守僕)을 불러들여 분부하라.” 하였다.

재실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봉안각(奉安閣)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에 재실로 들어갔다. 각신(閣臣) 등이 어진(御眞)의 대봉심(大奉審)을 마련된 의주(儀註)대로 행하였다. 잠시 뒤에 내가 익선관(翼善冠)에 참포(黲袍)와 오서대(烏犀帶)를 갖추고 원소에 나아갔다.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판위(版位)에 나아가 재배(再拜)하였다. 이어서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향을 올리고 술잔을 올린 뒤 판위로 돌아와 재배하였다. 아헌례(亞獻禮)와 종헌례(終獻禮)를 마련된 의주대로 행하였다. - 아헌관은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고, 종헌관은 광은부위(光恩副尉) 김기성(金箕性)이다. - 내가 원상(園上)에 나아가 봉심하고 두 손을 맞잡은 채 석물(石物) 안팎을 세 바퀴 돌았다. 이어서 원사(園司) 조용진(趙用鎭) 및 별간역(別看役)인 용인 현감(龍仁縣監) 정우태(丁遇泰)는 앞으로 나아오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능원(陵園)의 제도에는 더러 왼쪽을 비워 놓더라도 봉분(封墳)을 함께하는 일이 없다.[158] 그러나 나는 남다른 정리가 있기 때문에 후일을 위해 상례(常例)를 쓰지 않으려고 하여 회격(灰隔)은 만석(蔓石)까지만 하고 복부형(覆釜形) 이상은 당초에 석회를 쓰지 않아서 왼쪽은 곧 온전한 땅이다. 그런데 난간석(闌干石)에 더러 작은 틈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정우태가 아뢰기를, “석물은 오른쪽에 힘을 썼기 때문에 왼쪽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난간석이나 병풍석 등에 대하여 선조(先朝)의 금령(禁令)이 있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려는 나의 뜻으로 인해 준수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강詣**顯隆園**行親祭

목具軍服乘馬出**中陽門** **左翊門** **新豊樓**至左右軍營鍾街前路敎承旨曰廣州留守及各邑差使員皆參享班乎承旨 李益運對以無例予曰陵園幸行隣陵諸執事皆爲參班古例卽然自今爲始使之參班由**八達門**到**安寧里**前路召見植木差使員 果川縣監 金履裕 始興縣監 金思羲 安山郡守 李魯在 振威縣令 尹應鉉 陽城縣監 吳慶元 廣州判官 金履鎬 南陽府使曰師謹予曰外南山役處今則何如而植木後所見亦何如履裕等曰役處完固而植木亦皆蓊鬱成林矣予敎思羲 履裕曰動駕時待令兩邑軍已令各其邑試射放而不但有賞典當出科擧試官備二員然後可以擧行始興試所則始興倅爲上試官 果川倅爲參試官 果川試所則相換爲上副試官而月課一次代分日試取別單以啓予又曰安山 龍仁燈籠軍城丁軍試射放已爲下敎於華留試取頒賞後卽爲解送也至**萬年堤**敎承旨曰左邊一麓有土皮脫落處令植木守令補土之意招入守僕分付也至齋室下馬入奉安閣少頃入齋室閣臣等行御眞大奉審如儀少頃予具翼善冠 黲袍烏犀帶詣園所陞自東階就版位再拜仍詣神位前上香獻酌訖還就版位再拜行亞獻禮終獻禮如

158) 능원(陵園)의 …… 없다 : 국법에 합릉(合陵)을 할 경우는 모두 같은 능선에 봉분만 다르게 하였던 것을 말한다. 《국역 홍재전서 제58권 잡저(雜著)5 천봉(遷奉) 제5》

儀 亞獻官 左議政 **蔡濟恭** 終獻官 光恩副尉金箕性 予詣園上奉審拱趨三周于象設內外仍命園司趙用鎭及別看役 龍仁縣監 丁遇泰進前敎曰陵園之制雖或虛左未嘗同封而予則情理有所自別故爲日後欲不常例灰隔只限蔓石覆釜形以上初不用石灰左邊卽是全地而闌干石或有微隙何也遇泰 曰石物用力於右邊故左邊亦不得不然矣予曰闌干屛風等石雖有先朝禁令而以予無不用極之意不得遵守矣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1월 30일(신미)

경국내(局內)를 두루 상세히 살펴보고 행궁으로 돌아왔다.

묵○ 소차(小次)로 돌아와 군복으로 갈아입고 신하들에게 선반하였다. 내가 걸어서 홍살문으로 나가 말을 탔다. **만년제** 위를 거쳐 **수유평(水由坪)**을 지나 봉조봉(**鳳朝峯**) 아래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두루 살펴보았다. **화성부** 판관 홍원섭(洪元燮)은 앞으로 나아오라고 명하고 북쪽 산기슭에 나무를 심은 곳을 가리키며 하교하기를, "이 산기슭은 어느 고을에서 나무를 심었는가?" 하니, 홍원섭이 아뢰기를, "안산에서 맡아서 나무를 심은 곳이나 이 산기슭을 넘으면 남양(南陽)에서 심은 곳입니다." 하였다.

잠시 뒤에 말을 타고 고개 하나를 넘으니 바로 봉조봉 중턱이었다. 말을 멈추고 8개 고을에서 나무를 심은 것을 두루 살펴보았다. 남산(南山) 바깥 쪽을 거쳐 서발현(西發峴)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잠시 쉬었다. 안성 군수(安城郡守) 조윤식(曺允植)에게 하교하기를, "이 고개는 어느 고을에서 나무를 심었는가?" 하니, 조윤식이 아뢰기를, "신해년(1791, 정조 15)에 신이 진위(振威)를 다스릴 때 심은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양성(陽城) 경계에 있는 사석(沙石)으로 된 산은 어떻게 해서 나무를 잘 심었는가?" 하니, **화성 유수 조심태**가 아뢰기를, "사석을 약간 파내고 흙을 보충하고서 그 위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아직 쑥쑥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하였다. 조금 있다가 말을 타고 **만년제** 아래에서 **용주사(龍珠寺)** 뒷길을 거쳐 **성황산(城隍山)**에 올랐다. 말에서 내려 막차(幕次)에 나아가 신하들에게 선반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작년에 거의 모두 순심(巡審)하였으니 오늘은 여기에서 행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하니, 병조 판서 이득신이 아뢰기를, "오늘 지나온 길이 모두 높고 경사졌는데 성상께서 이처럼 수고로이 거둥하셨으니 삼가 염려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산을 순행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곤한 줄도 모르겠다." 하였다.

이어서 말을 타고 **작현(鵲峴)** 길을 따라 **안녕리** 뒷길을 나와 **상류천(上柳川)**에 이르렀다. 말을 세우고 이익운에게 하교하기를, "등계 공인(燈契貢人)은 대령하였는가?" 하니, 이익운이 아뢰기를, "**팔달문**에 대령해 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대가(大駕)가 지난 뒤에 등간(燈竿)을 차례로 거두어 행궁에 도로 바친 뒤에 용인과 안산의 등군(燈軍)을 즉시 돌려보내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이익운이 아뢰기를, "연등으로 횃불을 대신하니, 이용하는 법이 매우 편리하고 비용도 매우 줄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기인(其人)이 공물(貢物)을 마련할 때 공명첩(空名帖) 10여 개를 더 지급한 것은 조정에서 그들을 진념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나 공인이 살아가는 밑천이 된다. 그러므로 대체로 능과 원에 행행할 때에는 동쪽으로는 돌곶이[石串], 서쪽으로는 홍제원(弘濟院), 남쪽으로는 강나루에 이르기까지 모두 거가(炬價)를 지급하지 않고 스스로 마련하게 하였다. 그러나 원행 때는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4, 5백 자루(柄) 이상이 되므로 특별히 폐해를 끼칠까 염려하였다. 대개 횃불을 세우는 법은 좌우의 길가에 둘씩 마주 세우는데 근래 비용을 줄이려는 뜻에서 빗겨서 마주하여 나눠 세워서 왼쪽에 세웠

으면 오른쪽은 없애고, 오른쪽에 세웠으면 왼쪽은 없애서 대략 300자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租 벼)를 살 몫으로 300냥을 내주었고, 궁으로 돌아갈 때는 궁에서 나올 때 쓰고 남은 것으로 150냥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았다. 이번에도 이대로 준행하는가?" 하니, 이익운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노량을 지난 뒤에는 연등으로 횃불을 대신하는 방법이 과연 좋다. 첫해에 들어간 것이 3000여 냥인데 이듬해에는 3분의 2가 줄었고, 한 번 만들어 두고서 여러 해 사용하다가 기한이 차면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마련하니, 횃불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하면 10분의 7, 8은 줄어든 것이다. 또 횃불은 빨리 타 버리지만 등은 오랫동안 밝힐 수 있고, 횃불은 자루마다 한 사람을 쓰지만 연등은 3개에 한 사람을 쓰니, 이 또한 연등을 쓰는 방식의 편리하고 좋은 점이다. 올해부터는 물력을 별도로 구획하는 방도가 있지만, 이번에는 고군(雇軍)을 쓰지 않으려고 하였으므로 노량에서 시흥까지는 노량의 아병(牙兵) 및 시흥과 과천의 향군을 쓰고, **화성 행궁**에서 **유천**까지는 안산과 용인의 향군을 쓰고 식가(食價)를 주었다. **정리소 당상(整理所堂上)**은 고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곤란하게 여기고 고군과 향군을 반씩 섞어서 쓰려고 하였으나 대체로 들어가는 것이 많아도 3000냥은 넘지 않으니, 향군이 아니더라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하였다. **팔달문**, **신풍루**, **좌익문**, **중양문**을 들어와 행궁으로 돌아왔다.

강周諗局內還詣行宮

목還御小次改具軍服宣飯於諸臣予步出紅箭門乘馬由**萬年堤**上歷**水由坪**至**鳳朝峯**下下馬周覽命**華城判官** 洪元燮進前指北麓植木敎曰此麓則何邑所植也元燮曰安山所掌植木而踰此麓則南陽所植矣少頃乘馬踰一峴卽**鳳朝峯**中腰也駐馬周覽八邑植木由南山外至西發峴下馬少憩敎安城郡守 曺允植曰此峴植木何邑爲之允植曰辛亥年臣待罪振威時所植也予曰陽城境沙石之山何以則善爲植木耶**華城留守 趙心泰**曰略爲鑿去沙石以土補之植松其上而姑未及苗長矣少頃乘馬自**萬年堤**下由**龍珠寺**後路登**城隍山**下馬御幕次宣飯於諸臣予曰昨年幾皆巡審今日則欲自此還行宮矣兵曹判書 李得臣曰今日所經歷道路無不高截欹仄而聖體若是勞動不勝區區伏慮矣予曰巡山之行係是不可已故亦不知疲矣仍乘馬由**鵲峴**路出**安寧里**後路至**上柳川**立馬敎益運曰燈契貢人待令耶益運曰待令於**八達門**矣予曰大駕過後燈竿次次收取還納行宮後龍仁 安山燈軍卽爲還送事分付益運曰燈之代炬其法甚便而其費甚省矣予曰其人貢物磨鍊時加給空名十數者出於朝家軫念之意而作爲貢人聊賴之資故凡於陵園幸行東至石串西至弘濟院南至江頭皆不給炬價使之自備而園幸時則特念貽弊最不多入猶不下四五百柄蓋植炬之法左右路傍兩兩對立而近以省費之意斜對分立左植則減右右植則減左約入三百柄故以貿租條三百兩出給還宮時以出宮時所用之有餘只給一百五十兩作爲定式今亦依此遵行否益運曰然矣予曰露梁以後則以燈代炬其法果好初年所入爲三千餘兩翌年減三分之二一番造置用之屢年及其限滿始乃改備比炬之費十減七八且炬則速爇而燈則耐明炬則每炬用一人而燈則三燈用一人此亦燈法之便好者也自今年物力有別船區劃之道而今番欲不用雇軍自露梁至始興則用露梁牙兵及始興果川鄕軍自**華城行宮**至**柳川**則用安山 龍仁鄕軍而給食價矣整理堂上以雇價之多入爲難欲以雇軍鄕軍參半用之而大抵所入多不出三千兩則雖非鄕軍亦可支用矣入**八達門** **新豊樓** **左翊門** **中陽門**還行宮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1월 30일(신미)

강유여택(維與宅)에서 각신들 및 **화성 유수** **조심태**, 암행 어사 여준영(呂駿永)·정만석(鄭晩錫)·심상규(沈象奎)를 소견하였다.

목○ 내가 이르기를, "개성부(開城府)에 분봉상시(分奉常寺)를 두고 그 적전(籍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제릉(齊陵)과 후릉(厚陵)의 자성(粢盛)을 공급하고, 강화(江華)에도 분봉상

시를 두어 장녕전(長寧殿)의 자성을 공급하는데, 경공(京貢) 중에는 강화에서 바치는 공물 명색이 있다.[159] 기유년(1789, 정조13) 이후로 모든 원소(園所)에서 쓸 것은 경비를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 하여 내탕전(內帑錢)을 내어 원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그 토지의 소출을 관부(官府)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원소의 비용에 공급하게 하고 원속(園屬)을 농사짓는 자로 삼았으며, 그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규모를 이미 정하였다. 제향에서 쓰는 것은 분봉상시의 규식을 아직 정하지 않았으므로 실로 이제는 정식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성역을 거행한 뒤로 해마다 공장(工匠)의 부역이 있었으므로 두세 칸짜리 공해(公廨)도 세우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앞으로 다시 헤아릴 것이다." 하고, 이어서 직제학 이만수에게 이르기를, "경은 태상시의 제조를 맡고 있는데, 제향에 들어가는 물종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이만수가 아뢰기를, "신이 수정해 온 홀기(笏記)가 있으나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원소의 배향을 매년 하는 것으로 상례를 삼고 자전을 모시고 가는 것은 10년에 한 번으로 정하여 영구히 행하게 하였는데, 모든 공급을 계산하면 비록 외탕고(外帑庫)가 있더라도 힘을 나눠 공급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내수사에서 재력을 구획하여 토지를 사 두고 그 토지의 소출로 수가(隨駕)하는 중관(中官)과 궁인(宮人), 액례(掖隷)에게 공급하는 재원으로 삼고, 이어서 분사(分司)를 설치한다면 관부의 하속에게도 이익이 가게 될 것이다. 새로 건설하려고 한다면 어느 곳에 해야겠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본부의 관청 서쪽에 빈 땅 4, 5십 칸이 있으니 그곳에 세울 수 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번에도 공사하는 것은 실로 어려우니 다시 헤아려 보아야 한다." 하였다.

내가 또 이르기를, "입방군의 복색(服色)은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신이 대략 계획해 처리하여 부내(府內)에 둔전을 설치하였는데 금년에 거둔 것이 500여 포(包)이니, 10년이 지나면 소출 곡물이 5000포 내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바꾸면 1만여 냥이 될 것이고 충분히 분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들이 입방할 때의 복색은 또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주의(周衣)를 입고 위에 호의(號衣)를 입습니다." 하여, 내가 어제 지은 어제시를 좌상으로 하여금 베껴 쓰게 하고 써서 오거든 판액에 새겨서 게시하라고 명하였다.

또 어제시 3편을 써서 내리고 사관에게 좌의정에게 전하라고 명하고 좌의정에게 이르기를, "경이 **화성**에 대해 지은 시가 있다고 하니, 내가 반드시 화답해 보내겠다. 지난겨울 성역을 거행한 뒤로 경이 지은 시에 내가 아직 화답시를 지을 겨를이 없었다. 모든 일은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지어 보내는 것이다." 하였다.

이어서 암행 어사들은 앞으로 나아와 법을 어긴 자들을 아뢰라고 명하여 암행 어사들이 아뢰기를 마쳤다. 내가 이르기를, "세 어사가 **화성**과 시흥에서 붙잡은 것이 아니고 모두 노량 초참(初站)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어찌 특교를 내려 안렴(按廉)하게 한 뜻이겠는가. 모두 용서하라. 그중에 사적으로 도살한 사람은 경기 감사로 하여금 법을 살펴 엄히 처리하게 하고, 포도청 종사관이 초기하여 감죄하게 하라. 정만석과 여준영은 여기에서부터 다시 염탐하고 살펴 시흥참(始興站)에서 대령하라." 하였다.

---

159) 강화(江華)에도 …… 있다 : 1776년(정조 즉위년) 5월에, 호조 판서 정홍순(鄭弘淳)이 만녕전(萬寧殿)의 영정을 장녕전(長寧殿)으로 옮겨 봉안한 후에 쓸 제물(祭物)을 강화의 기인미조(其人米條)로 마련하되 경공(京貢)으로 만들어 지급하고, 만녕전의 점화(點火)에 소용되는 소목가(燒木價)도 마땅히 이 미조(米條)로 획급하여 보내기를 청하였는데, 정조가 윤허하였다. 《日省錄 正祖 卽位年 5月 18日》

내가 선전관에게 전교하기를, “내일 궁으로 돌아갈 때에 훈련대장은 **장용영** 경군 2개 초와 본국의 보군 1개 초를 거느리고 하교하거든 먼저 시흥의 주정참(晝停站)에 나아가라. 장용대장은 마병 1개 초와 선기대 2개 초를 거느리고 선상이 되고, 외사(外使)는 친군위와 입방군을 거느리고 후상이 되어 장안문 밖에 이르면 계엄을 풀라. 금군 별장은 **장용영**과 광주(廣州)의 향군 1개 초와 훈국의 보군 1개 초, 수가 금군 50인을 거느리고 후상이 되라고 신전(信箭)으로 분부하라.” 하였다.

강召見諸閣臣及**華城留守** **趙心泰** 暗行御史 呂駿永 鄭晩錫 沈象奎于**維與宅**

목予曰開城府有分奉常寺以其籍田所出供齊厚陵粢盛江華亦有分寺以供長寧殿粢盛而京貢中有江華貢物名色矣自己酉以後凡係園所所用必欲不煩經費出內帑錢買園底土地以其所出藏之府庫以供園所之用以園屬爲作者爲渠沾漑之端規模已定至於祭享所用未設分寺之規實欲及今定式而城役以後無年無工匠之役雖數間公廨有難營建從當有更商者矣仍謂直提學 李晩秀曰卿提擧 太常矣祭享所入物種當爲幾何晩秀曰臣有笏記修正以來者而未及驟思矣予曰予之拜園歲以爲常而奉慈駕之幸定以十年一度以至億萬年凡所以供給支計者雖有外帑亦有不可不分力接濟處若自內需司區劃財力買置土地以其所出爲隨駕中官宮人掖屬接濟之資仍設分司則於府屬亦或有沾漑之益如欲創建則當於何處耶**心泰**曰本府官廳西邊有空地四五十間可於此處營建矣予曰此亦工役實難亦當更商爲之矣予又曰入防軍服色何以爲之耶**心泰**曰臣略有經紀設屯田於府內今年所收爲五百餘包若至十年則穀當爲五千包內外以此作錢當爲萬餘兩足可以分排也予曰渠輩入防時服色亦何以爲之耶**心泰**曰着周衣而上着號衣矣予命昨日御製詩令左相繕寫待書來入刻揭板又書下御製詩三篇命史官傳於左議政曰聞卿有**華城** 所作之詩則予必和送昨冬城役後卿之所作予尙未暇和韻凡事貴有始終故今玆製送矣仍命暗行御史等進前奏犯科人訖予曰三繡衣所捉不在於**華城** 始興而具不出露梁初站是豈特敎按廉之意乎竝分揀其中私屠人令畿伯照法嚴治捕廳從事官令草記勘罪晩錫 駿永則自此更爲廉察待令於始興站予敎宣傳官曰明日還宮時訓將率壯勇京軍二哨本局步軍一哨待下敎先詣始興晝停站壯勇大將率馬兵一哨善騎隊二哨爲先廂外使率親軍衛入防軍爲後廂到**長安門**外當解嚴禁軍別將率壯營 廣州鄕軍一哨訓局步軍一哨隨駕禁軍五十人爲後廂事信箭分付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1월 30일(신미)

강이번부터 **현륭원**에 제향할 때의 집사관(執事官)은 **화성** 판관, 중군(中軍), **영화 찰방**(**迎華察訪**) 및 **화성** 안팎의 문관·음관·무관 출신의 조관(朝官)을 통틀어 채워 차임하고 왕래할 동안의 노자를 헤아려 지급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으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현륭원**에 제향할 때의 집사관은 매번 가까운 고을 수령으로 채워 차임하여 백성들과 고을에 조금이나마 폐단이 되었으니, 바로 소중한 분을 위하는 본래의 취지가 아니다. 이후로는 본부의 판관과 중군, **영화 찰방** 중에서 통틀어 채워 차임하고, 구차할 때에는 성 안팎과 근처의 문관·음관·무관 출신의 조관 중에서 채워 차임하되 제관에 차임하는 것은 본부에서 주관하고 본부 안의 공해에서 재숙(齋宿)하며, 왕래할 동안 노자를 헤아려 지급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으라. 헌관(獻官)을 채워 차임하는 일도 그러하나, 이는 전사관(典祀官)과 겸 대축(兼大祝)을 채워 차임하는 일과 함께 추후에 다시 정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런 내용으로 분부하라.” 하였다.

강命自今園享時執事官以**華城判官**中軍**迎華察訪**及城內外文蔭武朝官通融塡差往來量給盤纏著爲式

목敎曰園享時執事官每以近邑守令塡差爲民邑一毫弊端卽非爲所重之本意此後本府判官中軍**迎華察訪**中通融塡差若至苟且之時城內外近處文蔭武朝官中塡差而差祭本府主管齋宿於府內公廨往來

量給盤纏事定式獻官塡差事亦然此則當與典祀官兼大祝塡差事追後更有定式以此分付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1월 30일(신미)

강**영화역(迎華驛)**을 처음 설치할 때 구획할 물력(物力) 중에 호남과 영남의 규정 이상 더 분급한 환곡의 모조(耗條)는 환곡으로 분급하여 모조를 취하여 필요한 때에 발매하라고 명하였다.

목○ **화성 유수 조심태**가 아뢰기를, "**영화역**을 처음 세울 때 들어갈 물력에 대해 2만 냥을 구획하라는 명을 받들었습니다. 비국에서 호남과 영남이 작년에 규정 이상 더 분급한 환곡의 모조 각 3000섬씩을 이미 구획하였으나 지금은 시가가 내려가고 절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으니, 일단 돈으로 바꾸지 말고 환곡으로 분급하여 모조를 취하게 하였다가 필요한 때에 발매하여 원가에 맞추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命**迎華驛**創設時所劃物力湖南 嶺南加分耗條使之還分取耗待時發賣

목 **華城留守 趙心泰**啓言**迎華驛**創設物力伏奉二萬兩區劃之命自備局以湖南 嶺南昨年加分耗條各三千石式已爲區劃而顧今市直低下節序漸晩請姑勿作錢使之還分取耗以爲待時發賣俾準元價之地從之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1월 30일(신미)

강원관(園官) 및 수복, 원속(園屬) 등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이어서 **외정리소**(**外整理所**)에서 거행하는 것으로 《원행정례》에 기록하고, 경수복(京守僕), 향실(香室)의 수복도 규례를 살펴 시상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현륭원** 관원은 대내(大內)에서 내린 궁전(弓箭) 1부(部)를 규례대로 사급하고, 수복과 원속 등은 전례를 살펴 등급을 나눠 시상하라. 이번부터는 **외정리소**에서 거행하는 것으로 《원행정례》에 기록하도록 하고, 정례 당상(定例堂上)으로 하여금 그리 알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경수복, 향실의 수복도 **외정리소**에서 규례를 살펴 시상하게 하라." 하였다.

○ **장용영** 외영이 아뢰기를, "삼가 근년에 호조에서 거행한 예에 따라 원소의 수복 4명과 경수복 2명, 향실 수복 1명, 서원(書員) 1인, 수호군(守護軍) 50명에게는 각각 목(木 무명) 1필을, 고지기 1명, 안산(案山)의 산지기 70명에게는 각각 포(布) 1필을, 봉상시 서원 1인, 고지기 1명, 숙수(熟手) 2명에게는 각각 목 1필을 주며, 식목 장교(植木將校) 노대철(盧大喆)에게는 목 2필과 포 1필을 모두 **외정리소**에서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겠습니다." 하였다.

강園官及守僕園屬等施賞有差仍命自**外整理所**擧行事載之定例京守僕香室守僕亦令考例施賞

목敎曰園官內下弓箭一部依例賜給守僕園屬等考例分等施賞自今番**外整理所**擧行事載之定例事令定例堂上知悉又敎曰京守僕香室守僕亦令**外整理所**考例施賞○壯勇外營啓言謹依近年自戶曹擧行之例園所守僕四名京守僕二名香室守僕一名書員一人守護軍五十名各木一匹庫直一名案山直七十名各布一匹奉常寺書員一人庫直一名熟手二名各木一匹植木將校盧大喆木二匹布一匹竝自**外整理所**分等施賞矣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1월 30일(신미)

강입직

목대교 이존수(李存秀)

검교대교 서유구(徐有榘)
검서관 이광규(李光葵)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2월 1일(임신)

강봉수당(奉壽堂)에서 우의정 **채제공(蔡濟恭)**을 소견하였다.

목○ **채제공**이 아뢰기를, "신은 이번 행행(行幸)에 대해서 걱정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삼가 생각해 보니, 궁을 나서기 전에는 잠들지 못했고 어가(御駕)가 **화성(華城)**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한낮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조용히 조섭(調攝)하시다가 밤새도록 수고로이 거둥하고 곧바로 성(城)을 순심(巡審)하고 연거(演炬)하시느라 다시 밤이 깊었습니다. 어제는 또 원소(園所)에 전알(展謁)하여 친향(親享)하시고 하루 종일 산을 순심한 뒤에 깊은 밤에 궁으로 돌아오셨으니, 한편으로는 성상(聖上)의 옥체가 지나치게 힘들 것을 걱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성인(大聖人)의 왕성한 원기가 범상한 사람과는 매우 다른 것을 기뻐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선대왕께서 50년 동안 검소(儉素)한 덕이 어떠하셨으며 정사에 싫증이 날 만한 연세에 이르렀는데도 정사에 근면한 것이 어떠하셨던가. 내가 우러러 바라보고 받들어 들었던 바였다. 그 덕을 계승하고 가슴에 새겨서 일찍이 밥 한 끼를 먹고 숨 한 번 쉬는 동안에도 느슨히 하지 않고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근래에는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날로 심해져서 나 자신을 대하기를 더욱 박하게 하여 하루도 감히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기거(起居)와 복식(服飾)의 일까지 혹시라도 한가하고 사치한 데 이를까 두려워하였는데 하물며 원소(園所)에 전알하는 행차와 산을 순심하고 성을 순심하는 일이 모두 그만둘 수 없는 일임에야 어찌 수고로움을 꺼리고 편의를 도모하겠는가. 어제 산을 순심할 때에는 도로가 구불구불하여 말을 돌려세우기가 어려웠는데도 고달픈 줄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욱더 정신이 났으니 평소에 수고롭게 움직이는 것이 편안히 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징험할 수 있었다.

옛날 효묘조(孝廟朝)께서 후원(後苑)에 척뇌당(滌惱堂)을 짓고 내구마(內廐馬)에 올라 중관(中官)으로 하여금 고삐를 잡게 하고 이 당(堂)에 왕림하기를 거의 일과처럼 하신 것은 밖으로는 수렵(狩獵)하는 일을 없앴으나 안으로는 실로 수고로움을 익히는 뜻을 드러내신 것이다. 척뇌당에는 어제 현판(御製懸板)이 있어서 우리 열성조(列聖朝)께서 말을 타고 수고로움을 익히기를 가법(家法)으로 삼지 않으신 분이 없다. 내가 이것을 체행하고자 하였으나 매번 미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러 금원(禁苑)에서 융사(戎事)로 전좌(殿座)할 때나 활쏘기를 할 때에 반드시 말타기를 한 것도 선조(先朝)의 고사를 따르기 위해서였다. 이 때문에 비록 종일토록 말을 타더라도 힘든 줄을 몰랐던 것이다."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아 대단히 감탄합니다. 그러나 성인(聖人)의 혈기(血氣)도 때로는 쇠하니 그렇다면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성상의 혈기는 쇠하지 않아 마치 하늘의 운행이 굳건한 것과 같으니 더욱 천만으로 기쁘고 다행으로 여깁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근래에는 융장(戎裝)을 하면 문무(文武)를 막론하고 모두 조승(助繩)을 쓰는데 이는 옛 법이 아니다. 그래서 병조 판서 및 정원으로 하여금 금지하게 했던 것이다."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조승하는 법은 근래에 생겼는데 금해야 하는 것이므로 무과(武科) 시험 때마다 수색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매년 원행(園幸) 때마다 내가 반드시 경(卿)의 시(詩)에 화답하여 보냈는

데 작년 겨울 성역(城役) 이후 경이 지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미처 화답하여 보내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제 화답하여 보냈는데 경은 그것을 보았는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신의 거친 글이 매번 친히 화답하는 글을 받으니 신은 그지없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전하께서는 성리학을 공부하고 성인의 학문에 고명(高明)하셔서 신이 진실로 늘 흠앙(欽仰)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장에 있어서도 천고(千古)에 탁월하시니 더욱 공경하고 찬탄합니다." 하였다.

강召見左議政 **蔡濟恭**于**奉壽堂**

목 濟恭曰臣於今番行幸憂喜交中伏想出宮之前未及就睡駕到**華城**日尙未午靜攝之餘達夜勞動旋卽巡城演炬至於更深昨又謁園親享竟日巡山侵夜回鑾旣憂聖體之過於勞攘且喜大聖人氣度之康旺迥異於凡常矣予曰先大王五十年儉德何如及至倦之齡勤政何如予所仰覩而承聆者思欲繼述服膺未嘗暫弛於一飯一息之頃而近年以來戒懼之心日甚一日自待甚薄罔敢自逸至於起居服飾之節惟恐或涉於暇豫侈大況於謁園之行巡山巡城俱是不可已之事豈或憚勞而占便乎昨日巡山時道路迂廻難容旋馬而非但不知勞憊神氣還覺有勝可驗勤勞之愈於便逸矣昔在孝廟朝作滌惱堂於後苑御內廐馬使中官執鞚往臨是堂殆若日課者然外雖無蒐狩之擧內實出習勞之意堂有御製懸板惟我列聖朝無不以習勞於跨馬爲家法予欲仰體而每多不逮凡於禁苑以戎事殿座之時及射的之時必爲騎馬者亦欲追先朝故事也以是之故雖終日御馬不知其爲勞耳濟恭曰聖敎如此伏切感歎然而聖人之血氣有時而衰則亦有行不得處今我聖上血氣不衰有若天行之健尤萬萬慶幸矣予曰近來戎裝無論文武皆用助繩此非古法故今兵判及政院禁之矣濟恭曰助繩之法自近古有之而係是當禁故每於武試有搜驗之規矣予曰每年園幸予必和送卿詩而昨冬城役後卿之所作予未及和送凡事宜有始終故昨果和韻以送卿果見之耶濟恭曰臣之蕪句每荷雲章之俯和臣不勝且榮且感殿下於性理工夫聖學高明則臣固常欽仰而傍及詞章卓越千古尤萬萬欽誦矣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2월 1일(임신)

강신형(申泂)을 청성 첨사(淸城僉使)로 삼았다. 구전 정사로 차출한 것이다.

목○ 전교하기를, "성을 쌓는 역사(役事)와 주교(舟橋)를 가설하는 역사에 많은 공로를 바쳤으니, 이조로 하여금 동지중추부사 신형을 관서(關西) 지방의 첨사에 구전 정사로 의망하여 들이게 하라." 하였다.

강以申泂爲淸城僉使 口傳也

목敎曰城役橋役效勞旣多同知 申泂 關西 僉使令該曹口傳擬入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2월 1일(임신)

강**화성(華城)** 행궁(行宮)에서 출발하였다. 성 안 백성들을 **장안문(長安門)** 안으로 불러 유시(諭示)하였다.

목○ 삼엄(三嚴)을 치자 내가 군복(軍服)을 갖추어 말을 타고 **좌익문**(**左翊門**)과 **신풍루(新豐樓)**를 나가 장안문 안에 이르렀다. 성안 백성들을 불러들이도록 명하고 승지로 하여금 유시하게 하기를, "성역이 완성되었으니 성안에 거처를 정한 백성들에게 물자가 풍부하고 인구가 많아지게 해 주는 것이 이제부터 할 일이다. 물자가 풍부하고 인구가 꽉 차도록 할 대책을 내가 지금 밤낮으로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동안 수고하였으니 금년의 환향(還餉)에 대한 모환(牟還)부터 시작하여 모두 모조(耗條)를 면제해 주겠다. 너희들은 그리 알고 생업을 편안히 즐기라. 너희들이 전에 살던 고을에서 이주해 와 아직 뿌리를 내리

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조금도 마음을 늦추지 못하는 점이다."
하니, 수십 수백으로 무리를 지은 백성들이 손을 모아 감사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아뢰기를, "신들이 해마다 은혜를 입어서 모두 안도하고 있는데 지금 또 환향의 모조를 덜어 주시는 은택을 받으니 매우 감축(感祝)하며 무슨 말을 진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강由**華城行宮**進發招諭城內民人于**長安門**內

목鼓三嚴予具軍服乘馬出**左翊門** **新豐樓**到**長安門**內命招入城內民人使承旨諭之曰城役旣完城內尊居之民富庶蕃殖卽次第事也其富實之策予方宵旰講究而爾等亦旣勞矣今年還餉自牟還爲始竝許除耗爾等知悉安業樂生爾等自舊邑移來之後尙未着根此予所以一念之不弛也民人等十百爲群攢手齊聲曰臣等年年沾恩擧皆安堵而今又承還餉蠲耗之澤萬萬感祝不知所達矣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2월 1일(임신)

강어가(御駕)가 장안문 밖에 도달하여, 좌의정 **채제공**은 **화성**으로 도로 들어갔다가 며칠 뒤에 올라오라고 하유(下諭)하였다.

목○ **채제공**이 길옆에서 공경히 맞이하므로, 전교하기를, "우상(右相 윤시동(尹蓍東))은 조정에 나와 압반(押班)해야겠지만, 경은 어제 이미 압반하느라 바빴는데 오늘 또 어찌 수고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뜻으로 사관을 보내 좌의정에게 전유하고 이 길로 성안에 도로 들어갔다가 며칠 뒤에 올라오라는 말도 함께 전유하게 하라." 하였다.

강駕到**長安門**外諭左議政 **蔡濟恭**還入**華城**數日後上來

목 濟恭祇迎路傍敎曰右相當爲出來押班卿則昨旣驅馳於押班今日又何可勞攘此意遣史官傳諭于左議政自此還入城內數日後上來事一體傳諭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2월 1일(임신)

강어가가 **영화역(迎華驛)** 앞길에 도달하여 찰방 이오진(李五鎭)을 소견하고, 이오진을 수령에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목○ 내가 이오진에게 이르기를, "지금 보니, 우관(郵館)이 완성되고 민호(民戶)가 즐비한 것은 모두 그대의 힘이었다. 들어와 사는 민호의 수가 얼마이며 모든 일들이 차츰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 않은가?"
하니, 이오진이 아뢰기를, "원래 거주하던 민호가 두 집이었고 새로 들어온 민호가 53호입니다. 관아의 건물은 40여 칸인데 모두 이미 낙성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앞으로 이주해 올 민호는 또 얼마쯤 되겠는가?" 하니, 이오진이 아뢰기를, "며칠 안으로 10여 호가 외지로부터 이주해 올 것이고 해동(解凍)이 되면 또 수십 호가 이주해 오겠다고 합니다." 하였다.
○ 전교하기를, "**영화역**의 신관(新館)이 매우 정치(精緻)하다. 우관과 민가가 즐비할 뿐만이 아니어서 길에서 바라보니 큰 관촌(官村)을 이루었다. 이는 모두 해당 찰방이 일에 재능이 있고 일을 잘 이해한 결과이다. **영화역** 찰방 이오진을 수령에 제수하고 우관의 규모(規模)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차임하여 보내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강駕到**迎華驛**前路召見察訪 李五鎭命五鎭守令除授

목予謂五鎭曰今見郵館已成民尸櫛比皆爾之力入接之戶數幾何而凡節漸至成樣否五鎭曰原居之民二家新入者爲五十三戶衙舍則四十餘間皆已告成矣予曰來頭民戶之移來者又當爲幾許五鎭曰近日十餘戶自外處入來解凍則又當有數十戶入來者云矣○敎曰迎華新館旣甚精緻郵治屋廬不啻櫛比途中望見成一大官村此皆該察訪幹務解事之致**迎華察訪** 李五鎭守令除授待郵治規模稍定差送事分付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2월 1일(임신)

강지지대(遲遲臺)와 사근(肆覲) 행궁(行宮)과 안양(安養)의 발소(撥所)에서 주필(駐蹕)하고, 시흥(始興) 행궁에서 주정(晝停)하였다.

목○ 만석거(萬石渠) 앞길을 경유하여 지지대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대(臺) 위로 나아가서 각신(閣臣)과 승지와 사관에게 선찬(宣饌)하였다. 후상(後廂)인 광주 향군(廣州鄕軍) 2개 초(哨)를 사근참(肆覲站)에 먼저 나아가게 하여 광주 유수에게 넘겨주어서 환위(環衛)하고 작문(作門)하다가 어가 행렬이 도착한 뒤에 그곳에서 계엄을 풀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 선전관에게 명하여, 여기서부터 뒤에 남는 외영(外營)의 장교와 포교와 포졸 등을 모두 불러들이게 하여 사찬(賜饌) 한 합(盒)을 나누어 주라고 하였다. 조금 있다가 말을 타고 출발하였다.

사근참에 이르러 행궁에 나아가 선전관에게 전교하기를, "광주 향군은 여기서부터 계엄을 풀되 내사(內使)의 명령을 기다릴 필요 없이 유수가 스스로 주관하여 신전(信箭)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계엄을 풀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조금 있다가 말을 타고 출발하였다. 안양참(安養站)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발소에 나아가 각신과 승지와 사관과 병조 판서를 소견하고 선찬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이 참(站)에 나무 심는 일을 이미 하교하였다. 지금 심은 것을 보니 엉성한데 말이 되는가. 올봄부터 시작하여 각별히 나무를 심으라는 뜻으로 발장(撥長)에게 특별히 신칙하라." 하였다. 이어서 말을 타고 출발하였다. 대박산평(大博山坪)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잠시 쉬었다. 다시 말을 타고 출발하여 시흥현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행궁으로 들어갔다.

강駐蹕于**遲遲臺肆覲行宮**安養撥所晝停于始興行宮

목由萬石渠前路至**遲遲臺**下馬御臺上宣饌于閣臣承史命後廂廣州鄕軍二哨先詣**肆覲站**領付廣州留守爲環衛作門而歷臨後自其所解嚴又命宣傳官外營將校捕校卒等之自此落後者皆令招入賜饌一盒使之分饋少頃乘馬進發至**肆覲站**御行宮敎宣傳官曰廣州鄕軍當自此處解嚴不必待內使之令留守自主張待信箭卽爲解嚴事分付少頃乘馬進發至安養站下馬御撥所召見閣臣 承史 兵曹判書宣饌予曰此站植木事旣有下敎而見今所植零星是豈成說乎自今春爲始各別植木之意另飭撥將也仍乘馬進發至大博山坪下馬少憩復乘馬進發至始興縣下馬入行宮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2월 1일(임신)

강시흥 행궁에서 경기 감사 이면응(李冕膺)과 지방관 김사희(金思羲)를 소견하였다.

목○ 내가 김사희에게 이르기를, "을묘년(1795, 정조19)에 민역(民役)을 면제해 주라고 한 일은 준행(遵行)하였는가?" 하니, 김사희가 아뢰기를, "절목을 만들어 준행하였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안양에 동(垌)을 축조한 곳은 개간(開墾)하였는가?" 하니, 김사희가 아뢰기를, "이미 축조한 곳 가운데 종자 10여 섬을 파종할 수 있는 곳은 이미 개간하였고 개간하지 못한 곳이 또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하니, 이면응이 아뢰기를, "동을 축조한 뒤에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안양에 거주하는 백성이 겨우 11호였는데 지금은 31호가 되었으니 앞으로 민호가 점차 불어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이면응이 아뢰기를, "**화성 유수**의 말을 들으니, 동가(動駕)할 때 만든 연로(沿路)의 교량들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훼손되는 대로 보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

의 생각으로는 비록 이 고을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예컨대 **군포천교(軍布川橋)나 염불교(念佛橋)** 등은 장마로 물이 불어나면 분명히 모두 떠내려가서 교량을 만드는 데 든 재원만 흐지부지 잃게 될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만약 장마로 물이 불어나지 않으면 교량을 철거하지 않는 것이 백성들에게 이득이라고 할 것이다." 하니, 이면응이 아뢰기를, "예컨대 함흥(咸興)의 만세교(萬歲橋)는 매번 5월 장마로 물이 불어날 때 철거하였다가 장마철을 지낸 뒤에 다시 설치합니다. 이 예를 따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금년에는 우선 철거하지 말고 장맛물이 불어날 때 떠내려가는지를 시험해 보아서 내년부터 다시 정식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기유년(1789, 정조13) 이후로 원행(園幸)의 용도에 관계되는 것은 반드시 경비를 번다하게 하지 않고자 하여, 임자년(1792)에 3만 5000냥의 돈을 경기 감영에 떼어 주고 조(租) 2만 6000섬을 사서 여러 고을에 나누어 두어 백성들의 양식을 넉넉하게 해 주고 그 환곡의 모조를 취해서 원행할 때 각 참(站)의 제반 지출의 재원에 대비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무조조(貿租條) 명색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돈으로 바꿀 때에 고가(高價)를 받으면 백성들에게 손해가 되니 도리어 소중하게 여기는 분을 위하는 뜻이 아니고, 헐값을 받으면 거행하는 교리(校吏)들에게 혜택을 줄 재원이 없게 된다. 그래서 한결같이 시가(市價)를 따라 취하고 상정례(詳定例)에 따라 상납하게 하였다. 그러고서 만약 남는 것이 있으면 약간을 떼어 내어 교리에게 주고 그 나머지 수량을 모두 회외곡(會外穀)에 기록하여 감영의 용도로 쓰게 하였다. 이렇게 규모(規模)가 이미 만들어졌으므로 우선은 폐단이 생기지 않았으나 매번 원래의 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감사가 자비(自備)한다고 하고는 대부분 공용(公用)으로 회록(會錄)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원행 때 경기 감영에서 진배할 모든 조항을 **외정리소(外整理所)**로 이송(移送)하였는데 감영의 용도에 과연 남는 것이 있었는가?"

하니, 이면응이 아뢰기를, "예전에 비록 감사가 자비한다고 말했으나 공용으로 공용에 보탠 것에 지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이 마련해 낸 것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본래부터 남는 것이 있어서 감영의 용도에 보탰을 뿐만 아니라 경기 감영의 공용이 앞으로 조금 넉넉해질 가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치미(儲置米)의 경우, 전에는 선혜청에서 회감(會減)하여 계속 이관해 왔기 때문에 농간을 막을 수 없었고 매년 소용된 것으로 번번이 8000섬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근래에는 경기 감영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속을 염려가 없어서 작년에 받아들인 것으로 말하면 예년의 배가 되었고 회감한 숫자는 7000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루어 보면 매년 남는 것이 4, 5백 섬을 밑돌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강召見京畿監司 李晃膺地方官金思羲于始興仃宮

목予謂思羲曰乙卯年有民役除給之事其果遵行耶思羲曰成節目遵行矣予曰安養築垌處其已起墾耶思羲曰已築者可播十餘石種已爲起墾而未及起墾者又餘其半矣晃膺曰築垌後民利甚大故前則安養居民僅爲十一戶今則爲三十一戶來頭民戶之漸次增聚可知矣晃膺曰聞華留言沿路橋梁之動駕時造成者仍不撤去隨傷隨補爲好云而臣意則雖以此邑言之如軍布川橋念佛橋若當潦水必皆漂去以致橋財之闕失矣予曰如無潦水則橋之不撤亦云利於民矣晃膺曰如咸興之萬歲橋每於五月潦水之際撤去過潦後更設依此爲之似好矣予曰今年姑不撤去試其潦水時漂去與否自明年更爲定式好矣予曰己酉以後凡係園幸需用必欲不煩經費壬子年劃給三萬五千兩錢於畿營貿租二萬六千石分置列邑以裕民食糶雜取耗以備園幸時各站諸般支用之資此所謂貿租條名色也蓋其作錢之際取高價則有害於民反非爲所重之意取歇價則亦無擧行校吏沾漑之資故一從市直而取之以詳定例上納如有贏餘則除出若

干屬之校吏其餘盡數載錄於會外以爲營用規模已成姑不生弊而每以元數不足之故監司稱以自備多以公用會錄今則園幸時進排諸條皆爲移送外整理所營用其果有贏餘者耶冕膺曰雖曰監司自備不過以公補公初無自己辦出者而況今則贏餘自在有補營用矣且畿營公用來頭有稍饒之望儲置米前則自惠廳會減轉轉移來故不能防奸每年所用動費八千石近來則畿營主管爲之故無見欺之慮如昨年所入倍於常年而會減之數不過七千石以此推之每年所餘似不下四五百石矣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2월 1일(임신)

강시흥현의 전정(田政)에 있어서 세금을 덜어 주는 방법을 도백과 해당 수령이 좋은 쪽으로 조처하라고 명하였다.

목○ 시흥 현령 김사희(金思羲)의 소회에, "본현의 전정이 가장 큰 민폐입니다. 그동안 계속 탈급받지 못하여 구초불(舊初不)[160]의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매년 천번(川反)과 포락(浦落)을 이룬 곳까지 함께 계산하면 무려 135결(結)이나 됩니다. 매번 대개장(大槩狀)을 마감할 때 영구히 탈급하지 못하고 으레 올해의 재결에 넣었으나 재결의 총수를 기준 숫자에 맞추어 청하느라 탈급을 받아 낼 길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결의 분배가 구차해져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방도를 강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신이 부임한 초기에 대략 조사하여 탈급받은 것이 겨우 60결쯤이었고 그 나머지 75결은 아직도 탈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만약 다시 샅샅이 조사한다면 비록 찾아내는 것이 몇 결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역이 원래 편소(褊少)한 데다가 강에 연한 두 면(面)은 또 한눈에 보아도 시초(柴草)나 기를 땅이니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고통이 절실하고 긴박하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진달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경기 감사도 아는 바를 진달하라." 하니, 이면응이 아뢰기를, "경기 고을 가운데 오래된 재결(災結)의 명색이 없는 읍이 거의 없는 지경이어서 갑자기 하나하나 조사하여 탈급해 주기 어렵습니다. 양전(量田) 또한 갑자기 의논하기 어려우니 우선 해당 고을부터 특별히 사진(査陳)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가 막 시작되었으니 우선은 가을걷이를 기다려 거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이미 듣고서도 어찌 묵혀서 황무지가 되도록 둘 수 있겠는가. 폐단을 구제하는 계책은 옛것을 탈급해 주고 새것을 조사하는 일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 우선적으로 세금을 덜어 주는 방법을 올가을부터 고을 수령과 함께 좋은 쪽으로 조처하라." 하였다.

강命始興縣田政蠲稅之方道伯與該倅從長措處

목 始興縣令 金思羲所懷以爲本縣田政最爲民瘼而流來未蒙頉非但舊初不之厥數夥然竝計各年之成川浦落至爲一百三十五結之多每當概狀磨勘之時不得永頉例入今災而災總準數請得其勢末由分俵因此苟簡實惠難究自臣待罪之初略有查得者僅爲六十結其餘七十五結尙在未蒙頉之中今若更加查櫛雖不知所得之當爲幾許結而地方自來褊少沿江二面又是一望柴草之場則其所釐正旣甚難便月下民隱且係切緊故敢此仰達矣敎曰畿伯亦陳所見李冕膺曰畿邑舊災名色殆乎無邑無之猝難一一查頉量田亦不可遽議先從該邑另加查陳恐合便宜而見今農作方始姑待秋成擧行似好矣敎曰旣聞之後豈可一任其陳荒乎捄弊之策無過於頉舊查新而先從蠲稅之方自今秋與邑倅從長措處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2월 1일(임신)

강행궁에서 암행 어사 정만석(鄭晩錫)·여준영(呂駿永)을 소견하고 좌변포도대장 이한풍(李

160) 구초불(舊初不) : 여러 해 전부터 경작하지 않고 묵히는 논밭을 말한다.

漢豐)을 추고하였다. 이어 장표(掌標)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해당 관청에서 감죄(勘罪)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암행 어사 여준영이 아뢰기를, “신이 연로(沿路)에서 적간할 때 좌변포도청 종사관의 종인(從人)인 최경철(崔景哲)을 보니 장표도 없이 위내(衛內)에 들어왔으므로 감히 이것을 우러러 진달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해당 대장은 추고하고, 장표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감죄하게 하라.” 하였다.

강召見暗行御史 鄭晩錫 呂駿永于行宮推左捕將 李漢豊仍命無標人令該廳勘罪

목 暗行御史 呂駿永啓言臣於沿路摘奸時見左捕廳從事官從人崔景哲無掌標入衛內故敢此仰達矣敎以該大將推考無標人令該廳查實勘罪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2월 1일(임신)

강시흥 행궁에서 출발하여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에서 주필하면서 주교 당상(舟橋堂上) 정민시(鄭民始)와 도청(都廳) 구명원(具明遠)을 소견하였다. 주교 도감관(舟橋都監官) 김진욱(金振郁)을 변장(邊將)에 제수하고 그 나머지 영장(領將)과 감관(監官) 등은 내일 시상하게 하고, 수직(守直)한 선인(船人)들은 선혜청으로 하여금 쌀말을 나누어 지급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삼엄(三嚴)을 치자 내가 말을 타고 나갔다. 선전관에게 전교하기를, “훈련대장이 본국(本局)의 마병 1개 초(哨)와 보군 1개 초를 거느리며, 장용대장이 경보군(京步軍) 2개 초와 선기대(善騎隊) 1개 초를 거느리고 선상(先廂)이 되라. 금군 별장이 금군을 거느리고 궁을 나올 때의 신지(信地)대로 대오를 지어 행군하라. **장용영 좌사(壯勇營左司)**가 선기대 1개 초와 본영의 향군(鄕軍) 1개 초, 훈국의 보군 1개 초를 총괄하여 거느리고 후상(後廂)이 되라.” 하였다.

또 승지에게 전교하기를, “능원(陵園)에 행행할 때 말을 타고 말에서 내리는 것은 능소(陵所)와 원소(園所) 및 **화성(華城)** 행궁에서만 계청(啓請)하고 그 밖에 연로의 참(站)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후로는 이 하교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이어 출발하여 장안현(長安峴)을 거쳐 만안현(萬安峴) 앞길을 버리고 북쪽의, 예전에 닦은 길을 따라 노량(露梁)으로 나아갔다. 말에서 내려 용양봉저정에 나아가 주교 당상 정민시에게 영장과 감관 등을 거느리고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내가 정민시에게 하교하기를, “주교(舟橋)를 건설한 선척이 7개월을 대령하였으니 수고했다고 할 것이다. 노고에 보답하는 방도가 어떠해야 그들의 소원에 부응할 수 있을지를 영장 등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니, 영장 등이 아뢰기를, “좋은 고을의 세곡을 저희들이 처음 실어 오도록 정식을 삼아 주셨으니 선인(船人)들이 이미 만족하고 있어 달리 진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선혜청의 곡자(斛子)가 매우 크므로 봉납할 때 폐단이 많습니다.”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선혜청의 곡자(斛子)는 한결같이 놋쇠로 만들었습니다. 구곡자(舊斛子)와 신곡자(新斛子)가 있었는데 구곡자가 깨지면서 조금 남징(濫徵)하는 폐단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 내가 선혜청에 분부하여 각별히 바로잡으라고 명하였다.

○ 전교하기를, “주교를 설치하는 역사(役事)를 기다린 것이 이미 7개월이 넘었다. 도감관은 주교를 설치하는 첫 역사 때부터 공로를 바친 것이 많으니 변장에 제수하라. 그 나머지 마땅히 시상해야 하는 영장과 감관 등은 내일 대령하게 하고 수직한 선인들은 선혜청에서 쌀말을 분급하도록[161] 분부하라.” 하였다.

---

161) 분급하도록 : 원문은 ‘分紛’인데,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紛’을 ‘給’으로

강由始興行宮進發駐蹕于**龍驤鳳翥亭**召見舟橋堂上鄭民始都廳具明遠命舟橋 都監官 金振郁邊將除授其餘領將監官等明日施賞守直船人令惠廳分給米斗

목鼓三嚴予乘馬以出敎宣傳官曰訓鍊大將率本局馬兵一哨步軍一哨壯勇大將率京步軍二哨善騎隊一哨爲先廂禁軍別將率禁軍依出宮時信地作行壯營 左司把總率善騎隊一哨本營鄕軍一哨訓局步軍一哨爲後廂又敎承旨曰陵園幸行時乘馬下馬只於陵所園所及**華城行宮**啓請其外沿路站則不必爲之此後依此下敎擧行也仍進發由長安峴捨萬安峴前路從北邊舊作路詣露梁下馬御**龍驤鳳翥亭**命舟橋堂上鄭民始率領將監官等入侍予敎民始曰舟橋船隻之七朔等待亦云勞矣酬勞之方何如則可以副其願問于領將等以奏領將等奏曰好邑初載旣爲定式船人之願亦已滿足無他仰陳者而惟惠廳斛子甚大故捧納時多有弊矣民始曰惠廳斛子一依鍮斛造成而有新舊斛故舊斛罅破有稍濫之弊矣予命分付該廳各別釐正○敎曰舟橋之役等待已過七朔都監官自舟橋初役時效勞旣多邊將除授其餘領將監官當施賞明日待令守直船人自惠廳分紛米斗事分付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2월 1일(임신)

강궁으로 돌아왔다.

목○ 삼엄을 치자 승지에게 표신(標信)과 신전(信箭)을 보내서 돈의문(敦義門) 및 흥인문(興仁門)을 그대로 열어 두었다가 수가하는 군병 및 관광 나온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문을 도로 닫으라고 명하였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승교포(乘橋砲)를 세 번, 신포(信砲)를 한 번 울리겠다고 계품(啓稟)하였다. 북 치고 꽹과리 치기를 모두 세 번 하니 깃발을 올리고 기화(起火) 한 자루를 들어 북을 두드리며 깃발을 흔들었다. 내가 교(轎)를 타고 주교를 건넜다. 선전관 1원(員)이 뒤에 남았다가 하교포(下橋砲) 및 깃발 내리는 절차를 어떻게 할지 묻지 말고 거행하며, 주사 대장(舟師大將) 및 수가 군병은 그곳에서 계엄을 풀라고 명하였다. 숭례문(崇禮門), 돈화문(敦化門), 건양문(建陽門)을 거쳐 보정문(保定門), 만팔문(萬八門)으로 들어와 대내(大內)로 돌아왔다.

강還宮

목鼓三嚴命承旨送標信信箭仍留敦義門及興仁之門隨駕軍兵及觀光人出送後還閉宣傳官跪啓稟乘橋砲三聲信砲一聲擂鼓鳴鑼共三通升旗擧起火一枝點鼓點旗予乘轎渡舟橋命宣傳官一員落後下橋砲及落旗節次除取稟擧行舟師大將及隨駕軍兵卽其地解嚴由崇禮門敦化門建陽門入保定門 萬八門還內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2월 1일(임신)

강병조 및 장용 외영(壯勇外營)이 취타수(吹打手)와 뇌자(牢子) 등에게 시상한 것으로 아뢰었다.

목○ 병조가 아뢰기를, "하교하신 대로 용호영(龍虎營)의 취타수인 이인창(李仁昌) 등 46명에게 각기 목면 1필을 시상하였습니다." 하였다.

○ 장용 외영이 아뢰기를, "하교하신 대로 어전(御前)에 대령한 뇌자 29명과 순령수(巡令手) 26명, 취고수(吹鼓手) 52명에게는 각기 목 1필과 포 1필을, 대기수(大旗手) 46명에게는 각기 목 1필을, 전명 순령수(傳命巡令手) 2명에게는 각기 목 2필과 포 1필을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였습니다." 하였다.

강 兵曹及壯勇外營以吹打手牢子等施賞啓

목該曹啓言依下敎龍虎營吹打手李仁昌等四十六名各木綿一疋施賞矣○該營啓言依下敎御前待令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牢子二十九名巡令手二十六名吹鼓手五十二名各木一疋布一疋大旗手四十六名各木一疋傳命巡令手二名各木二疋布一疋分等施賞矣

정조 21년 정사 (1797, 가경2) 2월 1일(임신)

강입직

목대교 이존수(李存秀)

검교대교 서유구(徐有榘)

검서관 이광규(李光葵)

제10차 1797년(정조 21) 8월 15일~19일(4박 5일)

1. 조선왕조실록

선원전에서 다례를 행하고 장릉으로 가는 도중 연로 백성의 고통을 묻다

선원전(璿源殿)에서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상이 장릉(章陵)으로 가던 도중에 어가(御駕)가 숭례문(崇禮門) 밖에 이르자 관왕묘(關王廟)에 들리고, 양천(陽川) 행궁(行宮)에서 주정(晝停)하였다. 경기 관찰사 이재학(李在學)과 지방관 오태언(吳泰彦)과 각무 차사원(各務差使員) 오정원(吳鼎源) 등을 불러 보고 연로(沿路) 백성들의 고통을 물었다. 오태언이 아뢰기를,

"양천은 강가의 낮은 지방이라서 매양 물에 잠기는 근심이 많으니, 세월이 오래되자 떨어져 나간 토지가 29결(結)이나 되며, 정미년 이후로 점차 부치지 못하게 된 것이 49결(結)이나 되는데도 모두 재결(災結)에 포함되지 못하고 간혹 생판으로 징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니, 상이 세월이 오래되어 떨어져 나간 토지는 그 부세(賦稅)를 특별히 감면하고 정미년 이후에 떨어져 나간 것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부세를 감면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辛亥/行茶禮于璿源殿. 上, 將詣章陵, 駕至崇禮門外, 歷臨關王廟, 晝停于陽川行宮. 召見京畿觀察使李在學, 地方官吳泰彦, 各務差使員吳鼎源等, 詢沿路民瘼. 泰彦奏: "陽川以濱江汚下之地, 每多水沈之患, 年久汰落爲二十九結, 丁未以後, 漸次未付爲四十九結, 而竝未入災, 間多白徵." 上, 命年久汰落, 特蠲其稅, 丁未以後汰落, 令道臣, 更査蠲稅.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8월 15일(신해) 1번째기사>

장릉을 배알하고 김포 행궁에 가면서 김수동 등의 묘에 치제하다

상이 고(故) 상신(相臣) 김수동(金壽童)·김응남(金應南)·심수경(沈守慶)·김익(金熤)의 무덤이 어가가 지나가는 길가에 있다는 말을 듣고, 하교하기를,

"고 영의정 김수동은 중흥 때를 당하여 위아래로 두루 다스렸으니 노성(老成)의 전형을 상상하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무덤이 고을에서 7리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한다. 고 우의정 김응남은 황제 앞에서 정책을 주달하여 칭찬을 받기에 이르렀고 중간에 군사에 관한 소임을 담당하면서 임기응변하였으니, 호종(扈從)한 공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고 우의정 심수경은 김응남과 동시의 명 재상으로 국가의 일에 근로하였는데 그들의 무덤이 또한 행차하는 길가에 있다고 한다. 세 대신의 무덤에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고, 고 영의정 김익의 무덤에도 그 아들인 중신(重臣) 김재찬(金載瓚)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제신(諸臣)이 물러갔을 때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 신광리(申光履)가, 역적 인(裀)이 위리(圍籬)를 뛰쳐나간 일로 치계(馳啓)하니, 상이 그 장계를 물리쳤다. 이에 대신·경재(卿宰)·각신·승지·삼사(三司)의 제신이 번갈아가며 면대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오시(午時)가 지난 뒤에 상이 비로소 양천(陽川)의 행궁(行宮)으로부터 말을 타고 출발하였다. 우의정 이병모가 말 앞에 나아가 아뢰기를, "오늘날 조정 신하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또 섬의 역적이 위리를 뛰쳐 나간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두려워서 어찌 할 바

를 모르고 있으니 사태가 너무도 위급하기만 합니다. 신이 비록 변변치 못하나 대신의 직에 있는 이상 일이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므로 의리상 일각도 지체할 수가 없어 곧장 환배(還配)하라는 뜻으로 방금 강화 유수에게 분부하였습니다만, 또한 감히 다급히 우러러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환배하라는 청을 어서 윤허해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이 일단 환배를 청하였으니 나도 윤허한다. 비국(備局)에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비답을 받은 뒤에야 문적(文蹟)을 작성하고 문적이 있은 뒤에야 거행할 수 있습니다." 하고, 승지 이익운(李益運)이 아뢰기를, "설사 문적이 있다 하더라도 죄인을 유사(有司)에게 회부하지 않으면 신들이 장차 어떻게 거행하겠습니까." 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고 마침내 출발하여 2, 3리(里)를 갔다. 이익운 등이 따라가면서 아뢰기를, "대신이 주달한 말에 비답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는 내용으로 비지(批旨)를 써서 반포하라고 명하였다. 대사간 김달순(金達淳), 집의 이기양(李基讓), 부수찬 한치응(韓致應) 등이 소회를 진달하고, 배소(配所)로 잡아 돌려보내는 동시에 원계(原啓) 안에서 청한 바를 윤허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대신의 청을 따랐다." 하였다.

천등현(天登峴)에 이르러 본 고을의 부로(父老)들을 불러 보고 고통을 물었다. 장릉(章陵)에 이르러 작헌례(酌獻禮)를 친히 행한 다음 능에 나아가서 봉심(奉審)하고, 승지에게 이르기를, "산의 형세가 비단을 펼친 듯하고 청룡(靑龍)과 백호(白虎)가 양쪽에서 호위하여 기세가 길게 멀리 뻗었으니 만년의 큰 복이 실로 여기서 기인하였다." 하였다.

재실(齋室)로 돌아와서 능안 부원군(綾安府院君)의 후손 구규석(具圭錫) 등과 비변사 당상 이서구(李書九) 등을 불러 보았다. 상이 이서구에게 하문하기를, "선조(先朝) 갑인년6331) 에 장릉에 행행하셨을 때에 연로(沿路)에 조세를 감면한 혜택이 어떠하였는가?"

하니, 이서구가 대답하기를, "연로의 고을에는 대동미(大同米) 2두를 모두 감면하였고, 본 지방에는 정퇴(停退)한 그 해의 봄 대동미를 특명으로 탕감하였습니다. 대동미를 감면하는 것은 진실로 큰 혜택이기는 하나 전지가 없는 백성은 혜택을 고루 입지 못합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혹 요역(徭役)을 감면하기도 하고 혹은 예전 환곡(還穀)을 감면하기도 하는 것이 혜택을 널리 베푸는 방도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가을에 행행하여 장릉(章陵)을 배알(拜謁)하는 것은 우리 영고(寧考)의 갑인년의 성적(聖蹟)을 우러러 계술(繼述)하려는 것이다. 자리에 나아가 예를 행하니 이미 슬퍼져 감회가 일어난다.

삼가 생각건대, 매년 남전(南殿)을 참배할 적에 제3실(室)의 수용(睟容)을 공손히 보면 마치 친히 말씀을 듣는 것만 같았다. 지금 와서 상설(象設) 앞에서 주선하니 혼령의 오르내림이 더욱 가까워서 지척에 임하신 것 같다. 간절한 소원을 조금 펴니 슬픔과 기쁨이 함께 이른다. 내가 여기에서 더욱 느껴지는 바가 있다. 배알하는 일을 봉행한 끝에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니, 큰 강의 남쪽에 높은 산이 천연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용이 오르고 봉황새가 날아 올라가는 듯하고, 강물이 빙 둘러서 빛나고 있다. 이미 이어지면서 멀리 뻗었으며 험준하지 않으면서 높으니, 아름다운 기운이 어린 바이고 길한 운세가 발원(發源)된 바로서 억만년토록 무궁한 복을 받게 될 형세라 하겠다.

우리 장릉(長陵)의 지극한 효성이 위로 하늘에 사무쳐서 마침내 이 기막힌 명당 자리를 내려주셨다. 그리하여 먼저 부장(祔葬)하는 예를 경영하고 능을 옮김으로써 우리의 태산 반석과 같은 크나큰 터전을 열게끔 하셨다. 이날 이 땅에 마땅히 이 감회를 적고 이 뜻을 표시

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릉(本陵)의 국구(國舅)의 집은 공신의 집인 동시에 외척의 집이기도 하니, 대대로 우례(優禮)를 받는 것이 다른 외척의 집에 비할 바가 아니다. 능안 부원군(綾安府院君) 구사맹(具思孟)과 서원 부부인(西原府夫人) 신씨(申氏)의 묘소에 근시(近侍)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집의 봉사손(奉祀孫)은 당연히 조용(調用)해야 하나 나이가 차지 않았으니 어느 때인들 할 수 없겠는가. 직계파(直系派)인 유학(幼學) 구규석(具圭錫)을 본릉 능관(陵官)에 단부(單付)하라. 그리고 본릉의 능관 홍석(洪)은 승서(陞敍)하고, 참봉 한백연(韓百衍)은 승륙(陞六)시키고, 수복(守僕)·수호군(守護軍) 등에게는 넉넉하게 시상하라. 본군의 지방관 홍대협(洪大協)에게는 대내에서 내리는 녹피(鹿皮) 1령(令)을 사급(賜給)하고, 도백(道伯) 이재학(李在學)에게는 표비(豹皮) 1령을 전례에 의하여 사급하도록 하라.
부로(父老)들에게는, 고을에 가면 고통을 물어보겠지만 우선 1년 동안 급복(給復)해 주되 근례(近例)에 따라 환향(還餉)의 모곡(耗穀)을 대신 감면하도록 하라. 이 고을의 오래된 환곡이 소민들의 뼈에 사무치는 폐해가 된다는 것을 익히 들었다. 향곡(餉穀)·환곡(還穀)을 막론하고 오래된 환곡으로 이름 지어진 것은 호방 승지(戶房承旨)가 읍민을 모아서 그 문서를 가져다가 불에 태움으로써 일분의 폐해라도 제거하도록 하라. 그리고 갑인년 행행 때의 의장(儀仗)의 아름다움을 보고 오늘날까지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70, 80 이상인 조관(朝官)·사인(士人)·서인은 각각 한 자급(資級)씩 올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재실(齋室)에서 출발하여 장차 김포군(金浦郡)으로 나가려 하였다. 이때 외정(外廷)에서는 역적 인(裀)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우의정 이병모가 어가 앞에 나아와 아뢰기를, "조금 전에 아뢴 것에 대해 이미 비답을 받기는 하였으나, 신들이 추환(推還)하지 못하는 것을 강화 유수가 또한 어떻게 찾아내어 잡아가겠습니까. 신들이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승지 조진관 등이 번갈아가며 속히 유사(有司)에게 회부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엄숙하고 공경해야 할 자리에서 이렇게 번거롭게 한단 말인가." 하였다. 은행교(銀杏橋)에 이르러 경기 관찰사 이재학과 지방관 홍대협을 불러 보고 길가의 부로(父老)에게 고통을 물어보도록 명하였는데, 모두 오래된 환곡이라고 대답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하교한 바가 있다."
하였다. 어가가 김포 궁문 밖에 이르러 진무영(鎭撫營)의 호위 군사를 점열(點閱)하고 진무사 신광리(申光履)에게 호피 1령(令)을 하사하였다. 저녁에 김포 행궁에서 묵었다.
○上, 聞故相臣金壽童·金應南·沈守慶·金煜墓, 在駕過路傍, 敎曰: "故領議政金壽童, 時際中興, 上下彌綸, 老成典型, 如可想見, 今聞其墓, 在邑七里之近. 故右議政金應南, 敷奏帝庭, 至蒙褒美, 間任中權, 隨機應變, 不但執靷之勞而已. 故右議政沈守慶, 以同時名相, 勤勞王事, 其衣履之藏, 亦在蹕路. 三大臣墓, 遣禮官致祭, 故領議政金煜墓, 亦遣其子重臣金載瓚致祭." 諸臣旣退, 江華府留守申光履, 以逆裀, 跳出圍籍, 馳啓, 上, 却其啓. 於是大臣·卿宰·閣臣·承旨·三司諸臣, 迭求對, 不許. 日過午, 上, 始自陽川行宮, 乘馬進發. 右議政李秉模進馬前奏曰: "今日廷臣, 罪通于天, 又見島逆跳出之擧. 驚遑罔措, 間不容髮. 臣雖無似, 職忝大官, 事關國家安危, 義不可一刻忉泄, 直以還配之意, 今方分付於江華留守處, 而亦不敢不疾聲仰達. 伏乞亟允還配之請." 上曰: "卿等旣請還配, 予亦許之. 自備局擧行可矣." 秉模曰: "承批然後, 始成文蹟, 有文蹟然後, 始可擧行." 承旨李益運曰: "設有文蹟, 罪人不出付有司, 臣等將何以擧行乎?" 上, 不聽, 遂進發行數里. 益運等且行且奏曰: "大臣奏語,

不可無批.” 上, 命以依爲之, 書頒批旨. 大司諫金達淳·執義李基讓·副修撰韓致應等, 陳所懷, 請命押還配所, 仍許原啓中所請, 批曰: “已從大臣之請矣.” 至天登峴, 召見本縣父老詢瘼. 至章陵親行酌獻禮, 詣陵上奉審, 謂承旨曰: “山形如列錦綺, 龍虎拱衛, 氣勢綿遠, 萬年洪祚, 實基於此矣.” 還御齋室, 召見綾安府院君後孫具圭錫等, 備邊司堂上李書九. 上問書九曰: “先朝甲寅, 章陵幸行時, 沿路蠲惠事如何?” 書九對曰: “沿路邑則竝減大同米二斗, 本地方則其年春大同停退者, 特命蕩減矣. 大同蠲減, 固是大惠, 而無田之民, 不能均蒙惠澤. 臣意則或蠲徭役, 或蠲舊還, 可爲廣惠之道.” 敎曰: “秋幸之祇謁章陵, 蓋欲仰述我寧考甲寅聖蹟也. 踐位行禮, 已不勝怵焉興感. 竊念每歲南殿展拜, 恭瞻第三室睟容, 恍若親奉聲咳. 今來周旋於象設之前, 陟降孔邇, 咫尺如臨. 誠願粗伸, 愴喜交竝. 小子於此, 尤有感焉者. 將事之餘, 登獻延覽, 大江之南, 天作高山, 龍騰鳳翥, 襟帶輝映. 旣綿而遠, 不峻而高, 佳氣之所凝精, 吉祥之所發源, 萬億年無疆. 惟休我長陵朝達孝至誠, 上格皇穹, 遂下此金粟珠岡. 先營周祔之禮, 移奉軒舄之藏, 以啓我泰山磐石之丕丕基也. 是日是地, 宜有識是感, 表是意之擧. 本陵國舅家, 爲勳爲戚, 世受優禮, 非他戚家之比. 綾安府院君具思孟·西原府夫人申氏墓, 遣近侍致祭. 其家奉祀孫, 當爲調用, 而年未滿, 何時不可爲? 直派幼學具圭錫, 本陵官單付. 本陵官, 令洪陞敍, 參奉韓百衍陞六, 守僕·守護軍等, 從優施賞. 本郡地方官洪大協, 內下鹿皮一令賜給, 道伯李在學, 豹皮一令, 依例賜給. 父老等臨郡也, 當詢問疾苦, 而爲先給復一年, 依近例代蠲還餉之耗. 是邑舊還之爲小民切骨之瘼, 聞之熟矣. 無論餉還, 名以舊還者, 戶房承旨聚會邑民, 取其簿燒火, 俾除一分之瘼. 仰瞻甲寅幸行時羽旄之美, 而至今在者, 朝官士庶年七八十以上, 各加一資.” 上, 自齋室進發將詣金浦郡. 時外廷未知逆祼在處, 右議政李秉模進駕前奏曰: “俄者所達, 雖已承批, 臣等之所不能推還者, 沁留亦何以推去? 臣等到此, 萬萬罔措矣.” 承旨趙鎭寬等, 迭請亟付有司, 上曰: “於穆肅敬之地, 乃有此煩聒耶?” 至銀杏橋, 召見京畿觀察使李在學·地方官洪大協, 命詢疾苦于路傍父老, 皆以舊還對, 上曰: “已有所敎矣.” 駕到金浦宮門外, 點閱鎭撫營環衛軍, 賜鎭撫使申光履虎皮一令. 夕次金浦行宮.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8월 15일(신해) 2번째기사>

유배지를 이탈한 인의 일을 논의하고, 조헌·윤우신 등을 치제하게 하다

대신·경재(卿宰)·승지·각신(閣臣)·삼사(三司)의 제신(諸臣)이 면대(面對)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경기 관찰사 이재학이 면대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시임(時任)·원임(原任) 각신이 재차 상차(上箚)하여 속히 압송(押送)을 명하라고 청하고, 여러 승지가 아뢰어 속히 대신(大臣)·대신(臺臣)의 청을 윤허하라고 청하고, 삼사의 제신이 아뢰어 속히 아침에 하교한 대로 섬의 배소(配所)로 압송해 보내는 동시에 삼사의 원계(原啓)의 청을 따를 것을 청하였으나 모두 보지 않았다. 우의정 이병모가 경재를 거느리고 합문(閤門)에 엎드려서 아뢰기를,

“신들이 강화의 보고를 잇달아 접하건대 섬에 유배된 역적이 뛰쳐나간 자취가 김포에 이르러 끊어지고 말았다 합니다. 이는 신들이 모두 알 뿐만 아니라 실로 군민(軍民)이 모두 함께 본 사실입니다. 도로 유배보내라는 청을 윤허하셨으니 받들어 주선할 수 있을 듯도 합니다만, 강화부에서는 형세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묘당에서도 어떻게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외면상으로는 신들의 소청을 윤허하였으나 실은 윤허하지 않으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습속이 참되지 못함을 민망히 여겨 일찍이 성(誠)이라는 한 글자에 간절히 마음을 쓰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강화의 역적 한 가지 일에 있어 지나친 거조

가 없었던 바는 아니었으나 또한 일찍이 왔으면 왔다고 말하고 돌아갔으면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환하게 밝히셨기 때문에 그가 돌아감에 미쳐서는 백관과 만백성이 금석(金石)처럼 봉행하였습니다. 그 근심은 지나친 거조가 정말 비상함에서 나온 것에 있을 뿐이었지 흉인의 종적이 향한 곳을 알지 못함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 유수의 보고를 보니, 어리둥절하여 그 단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배소로 돌려보내려 해도 사세가 미치지 못하고 지휘도 할 수 없는 것은 앞서 진달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 신들이 어찌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행궁(行宮)의 합문(閤門)에서 이런 거조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속히 밝은 명을 내리시어 섬의 배소로 돌려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아침에 경들의 말을 윤허한 것은 분란을 그치게 하려 함이었지 윤허한 뒤에 아끼거나 막으려고 해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조가(朝家)에서 상관할 바가 아닌데, 경들이 복합(伏閤)하니 이 무슨 거조인가. 이미 백일(白日)에 날아서 올라간 것이 아닌 바에는 참으로 이른바 '다만 이 산속에 있을 뿐이다.[只在此山中]' 라는 것인데, 도리어 어리둥절하다는 등의 말을 계사(啓辭) 안에 어려움 없이 쓰는 것은 정말 어떻다 하겠는가." 하였다.

이병모 등이 재차 진계(陳啓)하니, 비답하기를, "금방 돌려보냈다. 이미 보낸 뒤에 만 사람이 모두 보았으니 경들은 물러가도록 하라."

하자, 이에 제신이 물러갔다. 승지를 보내어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의 우저 서원(牛渚書院)과 정헌공(貞獻公) 윤우신(尹又新)·문열공(文烈公) 윤섬(尹暹)·충강공(忠康公) 윤형갑(尹衡甲)·충간공(忠簡公) 윤계(尹棨)의 무덤에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하교하기를,

"문열공 조헌의 도덕과 절의는 해와 달처럼 밝게 빛나므로 그 유집(遺集)을 열람할 적마다 나도 모르게 경건한 마음이 일어나곤 한다. 지난해 김 문정공(金文正公)을 문묘(文廟)에 올려 제향할 적에 어찌 혹시라도 그 사이에 취하고 버리며 높이고 낮춤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는가. 다만 아울러 거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걸려 잊혀지지 않는다. 듣건대 그를 제향하는 서원이 여기에서 바라다 보이는 거리에 있다 하니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정헌공 윤우신·문열공 윤섬·충강공 윤형갑·충간공 윤계의 일문(一門)의 충절은 항상 개연(愾然)히 흠모하던 바이다. 지금 그 묘소를 지나가면서 어찌 뜻을 보이는 거조가 없을 수 있겠는가. 선조(先朝) 갑인년의 고사에 의거하여 치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大臣·卿宰·承旨·閣臣·三司諸臣求對, 不許. 京畿觀察使李在學求對, 不許. 時原任閣臣, 再上箚請, 亟命押送, 諸承旨陳啓, 請亟允大臣·臺臣之請, 三司諸臣陳啓, 請亟依朝者下敎, 押還島置, 仍從三司原啓之請, 竝不省. 右議政李秉模率卿宰, 伏閤陳啓曰: "臣等連接沁都之報, 島逆跳出之跡, 止於金浦而止. 則非但臣等之所共知, 實軍民之所共覩者. 還配之許請, 若可以奉而周旋, 而沁營事勢之所未及, 廟堂指揮之所未到. 是則殿下, 外許臣等之請, 而實無異於不許也. 殿下憫習俗之不誠, 未嘗不惓惓於誠之一字. 故雖於沁逆一事, 過擧之無所不有, 而亦未嘗不來則曰來, 還則曰還. 洞然無有然疑之阻, 故及其還也, 百官萬民, 奉如金石. 其憂只在於過擧之出萬萬非常, 不在於凶跡之莫知去向. 而今觀沁留之報, 怳惚莫知其端倪. 今雖欲使之還配, 事勢之所不及, 指揮之所未到, 如前所陳. 臣等安得不冒萬死, 作此擧措於行宮之閤乎? 伏乞亟降明命, 還發島置." 批曰: "朝許卿等之言者, 所以息紛也, 許之以後, 非斬也, 亦非防也. 此非朝家之所知, 卿等之伏閤, 是何擧措乎? 旣非白日飛昇, 眞所謂只在此山中, 則反以怳惚等語, 無難措辭於啓中者, 萬萬如何矣?" 秉模等, 再陳啓, 批曰: "今方還送. 旣送之後,

萬目皆覩, 卿等其退去." 諸臣乃退. 遣承旨, 致祭于文烈公趙憲牛渚書院, 貞獻公尹又新·文烈公尹暹·忠康公尹衡甲·忠簡公尹棨墓. 敎曰: "文烈公趙憲道德節義, 炳若日月, 每閱其遺集, 不覺起敬. 昨歲金文正之躋享文廡也, 豈或取舍軒輊於其間而然也? 第以未能竝擧, 尙今介介于中. 聞其俎豆之所, 距玆蒼莽云, 遣承旨致祭. 貞獻公尹又新·文烈公尹暹·忠康公尹衡甲·忠簡公尹棨, 一門忠節, 常所愾欽. 今過其墓, 豈無示意之擧? 依先朝甲寅故事, 致祭.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8월 15일(신해) 3번째기사>

김포 군수와 과천 현감을 불러 고을의 폐단을 묻고, 화성으로 출발하다

김포 군수(金浦郡守) 홍대협(洪大協)과 과천 현감(果川縣監) 김이유(金履裕)를 불러 보고 고을의 폐단과 백성의 고통을 물어보았다. 홍대협이 아뢰기를,

"본군의 민호(民戶)는 1천여 호에 지나지 않는데 군액(軍額)은 1천 7백여 명이니, 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도신(道臣)과 상의하여 품처(稟處)하도록 명하였다. 김이유가 아뢰기를,

"개울이 되어버린 옛날 재결(災結) 13결(結)이 영재(永災)6337) 에 들어가지 않아서 해마다 생판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탕감하도록 명하였다. 상이 **화성(華城)**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김포 행궁에서 출발하였다. 수찬 한치응(韓致應)이 도중에 차자를 올리기를,

"어제의 일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바로 환송(還送)한 것은 만 사람이 눈으로 본 바라고 확답하셨으므로 신들이 감히 믿지 않을 수 없어 모두 즉시 물러갔었습니다. 그런데 물러나서 들으니 분위기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밤부터 새벽까지 또한 한 사람도 돌려보낸 일에 대해 들어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교외의 황벽(荒僻)한 처소에서 홀로 역적 놈과 안온히 밤을 지냈는데, 대신·각신(閣臣)·삼사·시위(侍衛)의 신하는 태연히 사처(私處)에 물러가 거처하고 있었으니, 오늘날 신하의 분의(分義)가 쓸어낸 듯 다 없어졌습니다. 신들의 죄는 죽어도 남음이 있으니, 처분을 내려 신들의 불충(不忠)한 죄를 다스리도록 하소서. 만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여러 신하들이 대면을 청하며 합문(閤門)에 엎드려 있지 않는 날이 없을 것이니, 어서 삼사의 소청대로 전형(典刑)을 분명히 바루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어가가 능곡리(能谷里)에 이르러 머물러서 조금 쉬었다. 승지가 아뢰기를,

"대신이 옥당(玉堂)의 차자의 말과 관련하여 감히 반차(班次)에 태연히 있지 못하겠다 하여 산반(散班)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가를 수행하는 대신은 오직 한 사람뿐인데, 이처럼 의리를 내세워 피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였다. 낮에 부평(富平) 행궁에서 쉴 때 지방관 윤광석(尹光碩)을 불러 보고 조금 뒤에 출발하여 안산(安山)의 행궁으로 향하려 하면서 하교하기를,

"숙원(淑媛) 조씨(趙氏)의 묘소가 화유귀주(和柔貴主)의 무덤과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예전 일을 돌이켜 생각하니 어찌 슬픈 감회를 견딜 수 있겠는가. 어가가 지나갈 때에 내시(內侍)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여천위(驪川尉) 민자방(閔子芳)은 선릉(宣陵)6338)의 의빈(儀賓)으로서 그 묘소가 어가(御駕)가 지나는 길 옆에 있고, 영신군(永新君)과 함원군(咸原君)은 모두 효령 대군(孝寧大君)의 후예로 그 묘소가 바라다 보이니, 또한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고 영의정 문간공(文簡公) 이천보(李天輔)가 수립한 우뚝한 공로를 내가 어찌 차마 잊겠는가. 지금 그 묘소가 있는 고을을 지나가니, 헌걸차게 조정에 출사하던 의용(儀容)을 마치 엄숙하게 앞에서 보는 것만 같다. 어가를 멈춰 출발을 늦추고 치유(致侑)의 제문(祭文)을 부르는 대로 쓰게 하여 그 손자인 대교(待敎) 이존수(李存秀)를 보내 유제(侑祭)하도록 하라. 고(故) 중신(重臣) 이문원(李文源)은 바로 훌륭한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조정에서 벼슬할 적에 시속을 따르지 않았고 지위가 정경(正卿)에 이르렀는데도 아직까지 시호(諡號)가 내려지지 않았으니, 곧 본가로 하여금 속히 시장(諡狀)을 지어 홍문관으로 이송(移送)하도록 하라."

○壬子/召見金浦郡守洪大協·果川縣監金履裕, 詢邑弊民瘼. 大協奏: "本郡民戶, 不過千餘, 而軍額一千七百餘名, 宜亟釐正." 上, 命與道臣相議稟處. 履裕奏: "成川舊災十三結, 未入永災, 年年白徵." 上命蕩減. 上, 將詣**華城**, 由金浦行宮進發. 修撰韓致應, 路中進箚曰: "昨日之事, 尙何言哉? 殿下以卽已還送, 萬目所覩質言矣, 臣等不敢不信, 竝卽退去. 而退而聞之, 則曾無影響, 自夜至曉, 亦無一人聞知其還送之擧, 此何事也? 郊次蕘僻之地, 乃獨與逆竪, 穩處經夜, 而大臣·閣臣·三司·侍衛之臣, 晏然退處私次, 今日臣分, 掃地盡矣. 臣等之罪, 死有餘罪, 乞賜處分, 以靖臣等不忠之罪. 萬目所未睹之前, 卽無非群下請對伏閤之日, 亟依三司所請, 明正典刑." 不允. 駕至能谷里, 駐蹕少憩. 承旨奏: "大臣以玉堂箚語, 不敢晏然於班次, 以散班作行." 上曰: "隨駕大臣, 只有一人, 而如是引義, 誠慨然矣." 晝停于富平行宮, 召見地方官尹光碩, 少選, 進發, 將向安山行宮, 敎曰: "淑媛趙氏之墓, 與和柔貴主墳山相近, 撫念疇昔, 豈勝愴感? 駕過時遣內侍致祭. 驪川尉閔子芳, 以宣陵儀賓, 墓在鑾路之傍, 永新君·咸原君, 俱以孝寧之後, 其松楸入望, 亦遣官致祭. 故領議政文簡公李天輔, 樹立之卓犖, 予何忍忘之? 今過其邱墓之鄕, 頎然羽儀之容, 若肅在前. 駐駕遲發, 呼寫致侑之文, 遣其孫待敎李存秀侑祭. 故重臣李文源, 乃父之子. 其立朝不隨俗, 位躋正卿, 尙未易名, 卽令本家, 速撰諡狀, 移送弘文館."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8월 16일(임자) 1번째기사>

인천을 거쳐 안산 행궁에 이르고, 역적 인의 문제로 이병모를 파직하다

본부(本府, 부평부)의 부로(父老)를 길가에서 불러 보고 고통을 물어 보았다. 민회빈(愍懷嬪)의 묘소에 이르러 헌작례(獻酌禮)를 행하고, 승지를 보내어 문정공(文貞公) 강석기(姜碩期)의 묘소에 치제(致祭)하게 하는 한편 전조(銓曹)에 명하여 그 사손(祀孫)을 녹용(錄用)하도록 하였다. 어가가 인천(仁川) 경내를 지나갈 때 하교하기를, "우리 나라의 방현령(房玄齡)과 두여회(杜如晦)로 세상에서 황희(黃喜)와 허조(許稠)를 추대하는데, 소하(蕭何)의 약속(約束)을 준행한 조참(曹參)처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 준 이로는 고(故) 정승 하연(河演)을 또한 그 중의 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다. 그 묘도(墓道)가 행차가 지나는 길의 근처에 있다 하니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다년간 정승의 직책을 맡아 선대왕(先大王)의 건극(建極)의 정치를 선양(宣揚)하고, 염담(恬淡)한 지조와 단아(端雅)한 도량으로 성대하게 현량한 보좌가 되어 양세(兩世)의 영의정으로 있었으니 더욱 드물고 특이한 일이라 할 만하다. 고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의 묘소에 승지를 보내어 치유(致侑)하도록 하라.

고 상신(相臣) 김치인(金致仁)은 아직도 시호가 내려지지 않았다 하니, 평소에 예우하던 마음으로 볼 때 어찌 섭섭하지 않겠는가. 홍문관으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고 똑같이 치제하도록 하라. 신하가 성군(聖君)을 만나 마음이 맞은 경우가 예로부터 어찌 한이 있겠는가마는 우연히 거리에서 만난 것은 고 참찬(參贊) 구종직(丘從直)보다 성대한 일이 없다. 현명한

사람을 임용한 성덕(聖德)을 아직까지도 칭송하고 있다. 지금 듣건대 그 묘소가 이곳에서 멀지 않다 하니,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어가가 안산(安山) 행궁에 이르니 때는 이미 밤이었다. 우의정 이병모가 길가에서 지영(祗迎)하고, 앞에 나아가 말을 막고 말고삐를 잡아당기며 울면서 아뢰기를,
"어제 저녁에 돌려보냈다는 성상의 하교를 신이 받기는 하였습니다마는, 경기 감영의 보고와 강화 유수의 장계가 하나도 도착하지 않고 있으니, 이 어찌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일이 아니겠습니까. 종묘 사직의 안위(安危)가 호흡 사이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이미 정녕히 말하였다. 어찌 혹시라도 경을 속이겠는가. 그런데 경이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인가." 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차라리 왕의 말을 믿지 않는 죄를 받을지언정 신은 죽어도 감히 물러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은 어찌하여 지나친 거조를 취하는가. 국가의 체통과 신하의 분의에 크게 관계된다."
하고, 마침내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병모가 물러난 뒤에 다시 차자를 올려 섬에 정배한 역적을 배소로 도로 보내는 명을 분명히 내리라고 청하였으나, 회답하지 않았다.
○召見本府父老於路左, 詢問疾苦. 至愍懷墓, 行奠酌禮, 遣承旨致祭于文貞公姜碩期墓, 命銓曹, 錄用其祀孫. 駕過仁川境, 敎曰: "我朝房·杜, 世推黃·許, 而遵何約束, 民以寧臺, 故相河演, 亦其一也. 聞其墓道, 在輦路近地云, 遣承旨致祭. 多年秉軸, 對揚先大王建極之治, 恬操雅量, 蔚爲良佐, 兩世元輔, 尤可謂稀異. 故領議政金在魯墓, 遣承旨致侑. 故相金致仁, 尙未易名云, 以平日禮遇之心, 寧不有歉? 其令弘文館, 從速擧行, 一體致祭. 人臣遭逢, 從古何限, 而邂逅遇巷, 未有盛於故參贊丘從直. 立賢之聖德, 尙今莊誦. 今聞其墓不遠於是地, 遣官致祭." 駕到安山行宮, 時已侵夜. 右議政李秉模, 祗迎路左, 進前遮馬, 挽轡泣奏曰: "昨夕還送之聖敎, 臣雖奉承, 而畿營之報, 沁都之啓, 無一來到, 此豈不萬萬罔措? 宗社安危, 迫在呼吸矣." 上曰: "予旣丁寧爲言. 豈或欺卿? 而卿乃不信予言耶?" 秉模曰: "寧伏不信王言之罪, 臣死且不敢退矣." 上曰: "卿何過擧? 大關國體臣分矣." 遂命罷職不敍. 秉模旣退, 復上箚, 請明降島逆還配之命, 不報.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8월 16일(임자) 2번째기사>

안산 행궁을 출발하여 현륭원에서 작헌례를 행하고 수원 행궁에서 머물다
하교하기를, "정안 옹주(貞安翁主)와 정정 옹주(貞正翁主)는 모두 장릉(章陵)6343) 의 동기(同氣)인데, 정안 옹주는 금양위(錦陽尉)와, 정정 옹주는 진안위(晋安尉)와 합장하였다. 본릉(本陵)을 참배하고 또 이곳을 지나가는 일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내시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승평 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金瑬)는 인조 대왕을 옹립한 공과 경국제세(經國濟世)의 계책으로 성대히 중흥의 명신이 되었다. 듣건대 그 묘소가 이 고을에 있다 하니,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자신이 폐부(肺腑)와 같은 지친(至親)의 처지에 있으면서 성조(聖祖)의 즉위 초 청명(淸明)한 치화(治化)를 주밀히 도와 걸출하게 국가의 주석(柱石)이 되었으니, 서평 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韓浚謙)과 회산 부부인(檜山府夫人) 황씨(黃氏)의 묘소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우리 나라에 본디 현명한 국구(國舅)가 많으나, 문장과 공업(功業)의 성대함으로는 신풍 부

원군(新豊府院君)만한 이가 없다. 숭릉(崇陵)6345) 어필(御筆) 신도비(神道碑)의 성대한 유적을 추모하니 배나 슬픈 생각이 든다. 고 부원군 장유(張維)와 영가 부부인(永嘉府夫人) 김씨(金氏)의 묘소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그리고 고 판서 장선징(張善澂)에게도 똑같이 치유(致侑)하도록 하라."
하였다. 안산 행궁에서 출발하면서 사관(史官)을 보내어 우의정 이병모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비록 국가의 체통으로 처분하였으나, 경의 본정은 고심(苦心)에서 나온 것이기에 전지(傳旨)를 특령으로 환수(還收)한다. 이제 바야흐로 원소(園所)6346) 로 나아가니, 경은 들어와서 반열에 참여하라."
하였다. 어가가 **수원(水原)** 관문 밖 5리 지점에 이르러 길가의 부로(父老)를 불러 고통을 물어보니, 모두 묵은 환곡이 폐해가 된다고 말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명하여 위유(慰諭)하게 하기를,
"조정에서 알아서 선처할 것이니 각각 믿고서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라."
하였다. 낮에 **수원 구포(鷗浦)**에서 쉬면서 친히 지은 제문(祭文)을 내리며 이르기를,
"용백사(龍柏祠)는 곧 제갈 무후(諸葛武侯)6347) 와 호 문정(胡文定)6348) 을 주향(主享)하여 배식(配食)하는 곳인데, 충간공(忠簡公) 윤계(尹棨)가 이곳에서 살신성인(殺身成仁)했기 때문에 종향(從享)하고 있다. 시대는 달라도 의리는 똑같아 사람으로 하여금 감회를 자아내게 한다. 지방관은【용백사는 남양(南陽) 지방에 있는데 구포(**鷗浦**)와 접경하고 있다.】 이미 승지를 지냈으니, 이 제문을 가지고 가서 읽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고 영의정 홍언필(洪彦弼)은 본디 사류(士類)로서 한 세상의 명신이 되었고, 그 아들 영의정 홍섬(洪暹)은 정직한 도와 아담한 인망으로 또 정승의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그 대부인(大夫人)이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였으므로 '공손히 정경 대부인의 복록을 생각하니, 천상은 알기 어렵거니와 인간 세상에선 듣지 못했네. 순일(純一)한 덕으로 삼종지도(三從之道) 행했는데 그 모두 영상 자리 올랐고, 94살 향수하니 수성(壽星) 또한 높도다.' 라는 시구가 시인의 가영(歌詠)에 들어가기까지 하여 오늘날까지 전송(傳誦)되고 있다. 두 대신의 묘소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아담한 지조는 오늘날 흔히 얻기가 쉽지 않다. 고 좌의정 이복원(李福源)의 묘소에 그 아들 내각 직제학(內閣直提學) 이만수(李晩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내시를 보내어 신빈(愼嬪)6349) 의 묘소에 치제하도록 하였다. 어가가 **수원** 신음천(新音川)에 이르러 잠시 쉬고 화소(火巢)의 경계를 경유하여 옛 서문로(西門路)를 따라 **현륭원(顯隆園)**에 이르러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도승지 조진관(趙鎭寬)이 향로를 받들어야 하는데 오지 않자 집례(執禮) 이기양(李基讓)을 동부승지로 특별히 제수하여 향로를 받들게 하고 원상(園上)에 나아가서 봉심(奉審)하였다. 소차(小次)6350) 에 나아가서 각신(閣臣)·승지·사관(史官)에게 밥을 내렸다. 저녁에 **수원 행궁**에 머물렀다.
○癸丑/敎曰: "貞安翁主·貞正翁主, 俱是章陵同氣, 貞安與錦陽, 貞正與晋安同岡. 展謁本陵, 又過此地, 事若不偶. 遣內侍致祭." 又敎曰: "昇平府院君金鎏, 攀附之功, 經濟之策, 蔚然爲中興名臣. 聞其墓在是邑云, 遣承旨致祭. 身居肺腑之親, 密贊聖祖一初淸明之化, 傑然爲國柱石, 西平府院君韓浚謙·檜山府夫人黃氏墓, 遣承旨致祭. 我朝固多賢國舅, 而文章功業之盛, 未有如新豐. 追惟崇陵御筆神道之盛蹟, 一倍愴想. 故府院君張維·永嘉府夫人金氏墓, 遣承旨致祭. 故判書張善澂, 一體侑之." 自安山行宮進發, 遣史官, 諭右議政李秉模曰: "雖以國體處分, 卿之本情, 出於苦心, 傳旨特令還收. 今方進詣園所, 卿其入來參班." 駕到官門

外五里, 召路傍父老, 詢問疾苦, 皆言舊還爲弊. 上, 命承旨慰諭曰: "朝家自當善處, 其各恃而安業." 晝停于水原鷗浦, 下親撰祭文曰: "龍柏祠, 卽諸葛武侯·胡文定主亭配食之所, 而忠簡公尹棨, 以成仁之地, 從與享之. 異代一義, 令人激感. 地方官【龍栢祠在南陽地, 與鷗浦接界.】旣經承旨, 持此祭文, 宣讀行祭." 又敎曰: "故領議政洪彦弼, 自是士類, 爲世名臣, 其子領議政洪暹, 以直道雅望, 又躋台司. 而其大夫人尙康旺, '恭惟貞敬大夫人, 天上難知世未聞. 一德從三上台峻, 百年除六壽星尊' 之句, 至入詩人之詠, 尙今傳誦. 兩大臣墓, 遣承旨致祭. 雅操今日未易多得. 故左議政李福源墓, 遣其子內閣直提學李晩秀致祭." 又命遣內侍致祭于愼嬪墓. 駕到水原新音川少憩, 由火巢界, 取古西門路, 至顯隆園, 行酌獻禮. 都承旨趙鎭寬, 當奉爐而未至, 特除執禮李基讓同副承旨, 奉爐, 詣園上奉審. 出御小次, 宣飯于閣臣·承·史. 夕次水原行宮.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8월 17일(계축) 1번째기사>

부평에서 안산까지의 지름길을 우회하게 만든 지방관을 치죄하게 하다
부교리 홍낙유(洪樂游), 부수찬 한치응(韓致應)이 연명(聯名)하여 상차하기를, "행행하는 일이 있을 적마다 민폐를 줄이고 민력을 견감(蠲減)하는 데에 관계되는 방도에 마음을 극진하게 쓰지 않음이 없었으니, 도신과 수령이 된 사람은 진실로 성상의 생각을 우러러 체득하여 백성의 고통을 살펴서 조금이라도 폐해를 끼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로에서 본 바로 징험해 보면 혹 바라다보이는 가까운 지점을 늘여 30리 길로 만들기도 하였고, 혹 지름길을 광막한 들판으로 돌아나가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도로의 원근이 아주 다르고 연로(輦路) 역참의 배정이 너무 길게 되어 어제 여위(輿衛)의 행차가 밤이 되도록 우회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송구하고 민망한 일이라 할 것인데 소민이 도로를 수리할 즈음에 삽질하는 노고와 여러 날의 비용이 또 어떠했겠습니까. 신들의 생각으로는, 작년 겨울 도로를 수리할 때의 도신과 수령을 모두 견책하여 삭직(削職)하는 벌을 시행하는 것을 단연코 그만둘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부평참(富平站)이 안산(安山)까지 명색은 40리이나 실은 거의 배나 되었다. 당해 도신과 지방관을 치죄하는 일을 그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副校理洪樂游·副修撰韓致應聯名上箚曰: "每當行幸之時, 凡係省民弊蠲民力之道, 靡不用極, 爲道臣守令者, 固當仰體聖念, 俯察民隱, 毋或一毫貽弊. 而以今番沿路所見驗之, 則或莽蒼之地, 迤爲一舍之程, 或捷徑之路, 繞出曠漠之野. 道路遠近太懸, 輦路排站太長, 以致昨日輿衛之行, 至有侵夜迂回之境. 此已萬萬悚悶, 而小民治道之際, 畚鍤之勞, 曠日之費, 其當如何? 臣等謂昨冬治道時, 道臣守令, 竝施譴削之典, 斷不可已也." 批曰: "富平站之於安山, 名雖四十里, 實則幾倍. 當該道臣地方官勘罪事, 依施."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8월 17일(계축) 2번째기사>

낙남헌에서 무사들에게 활쏘기를 시험하고 시상하다
낙남헌(洛南軒)에 나아가서 본부(本府)의 무사에게 활쏘기를 시험보여 차등 있게 시상하고, 각무 차사원(各務差使員)을 불러 보았다.
○甲寅/御洛南軒, 試本府武士射施賞有差, 召見各務差使員.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8월 18일(갑인) 1번째기사>

김포·안산 등의 구환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제술 등의 시험을 지시하다

득중정(得中亭)에 나아가 작은 표적을 설치하고 왕이 다섯 차례 쏘았는데 화살 8발이 맞았다. 여러 장신(將臣)에게 편을 갈라서 활을 쏘도록 명하였다. 상이 경기 관찰사 이재학(李在學)에게 이르기를,

"행차가 지나온 고을 가운데 김포는 구환(舊還)6352) 을 탕감하였고, 안산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천과 부평의 제읍(諸邑)은 어떻게 혜택을 베풀어야 하겠는가?"

하였다. 승지 이익운(李益運)이 아뢰기를,

"남양 부사의 말을 들으니, 민정(民情)이 모두 구환의 감면을 원하나, 외람되이 감히 아뢰지 못한다 합니다."

하고, 장용 내사(壯勇內使)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근래 외읍의 환곡은 분부를 받들어 정퇴(停退)한 것도 있고 그대로 수납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혼동하여 구환이라 일컫고 있는 등 너무도 뒤죽박죽입니다. 감면하는 절차를 차라리 간략하게 할지언정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환곡에서 모곡(耗穀)을 받는 것이 모두 백성에게서 나온다. 백성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너무 많은데, 어찌 구환의 감면을 아끼겠는가."

하고, 하교하기를,

"이번에 장릉(章陵) 참배를 인하여 다행히 한 해 안에 재차 원침(園寢)을 배알(拜謁)하게 되었는데, 경유한 길이 과천·시흥·김포·부평·인천·안산·광주·남양·**수원** 등 모두 10개 고을이다. 우리 백성의 혜택을 바라는 마음을 생각하건대 어찌 한갓 의장(儀仗)의 성대함만을 바라보게 할 수야 있겠는가.

김포는 처음 역참에서 묵을 때 선조(先朝) 갑인년6353) 이후로 처음인 점을 감안하여 이미 특별히 혜택을 베풀었고, 양천도 감면하는 조처가 있어서 구환(舊還) 중 가장 오래된 연조(年條)의 것을 탕감하였다. 부평·안산의 구환은 가장 오래된 1년 조를 탕감하고, 당년의 환곡(還穀)에 대한 모곡을 특별히 면제하라. 인천·남양은 비록 행차가 지나가기만 한 고을이나 처음으로 의장을 본 곳이다. 지나간 곳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구환으로서 문서에 실려 있는 것은, 원근을 논하지 말고 지방관이 백성을 모아 놓고 효유한 뒤에 문권(文券)을 불태우라. 시흥·과천·광주만 유독 누락시킬 수는 없다. 하물며 처음 지나간 곳인데 또한 어찌 달리하겠는가. 출궁(出宮)과 환궁(還宮) 때 행차가 지나간 곳의 백성이 지고 있는 구환은 또한 그 문권을 불태우도록 하라. 구포(**鷗浦**) 역시 처음 지나간 곳인데 기유년6354) 이후로 백성들의 편중된 노고가 많았다. 구환은 문권을 불태우고 환모(還耗)는 탕척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뜻을 보이도록 하라. 행차가 지나간 지방의 벼가 혹 짓밟힌 곳이 있으면 해당 도로 하여금 곡식 소출(所出)의 수량만을 환산해 주도록 하라.

그리고 유생은 제술(製述)에 응시하고 장교와 군졸은 활 쏘기를 시험 보게 하되 지난해 하교한 대로 거행토록 하라." 하였다.

○御**得中亭**, 設小的, 御射五巡, 獲八矢. 命諸將臣耦射. 上, 謂京畿觀察使李在學曰: "輦過邑金浦, 則蕩滅舊還, 安山亦當如之. 而仁·富諸邑, 當如何施惠?" 承旨李益運曰: "聞南陽府使言, 民情擧願蠲滅舊還, 而猥不敢奏云矣." 壯勇內使鄭民始曰: "近來外邑還穀, 有奉旨停退者, 有仍未捧者, 而混稱舊還, 淆亂甚矣. 蠲減之節寧略, 不可濫." 上曰: "還穀取耗, 皆出於民. 取於民, 亦已多矣, 何靳於舊還蠲減乎?" 敎曰: "今因章陵展拜, 幸於一歲中, 再謁園寢, 而路出果川·始興·金浦·富平·仁川·安山·廣州·南陽·**水原**, 凡爲十邑. 以吾民望幸之心, 豈容使之徒瞻羽旄? 金浦初當宿站, 於先朝甲寅之後, 已拔例施惠, 陽川亦有蠲惠之

擧, 而舊還最久年條蕩減. 富平·安山舊還最久一年條蕩減, 當年還耗特除. 仁川·南陽, 雖曰輦過邑, 卽初見羽旄之地也. 所過處民人所負舊還之載於還簿者, 無論遠近, 令地方官, 聚會民人, 曉諭後燒券. 始興·果川·廣州, 不可獨漏. 況有初過之處, 亦豈異同? 出還宮時, 輦路民人之所負舊還, 亦令燒券. **鷗浦**亦初過之地, 而己酉以後, 民人等自多偏勞. 舊還則焚券, 還耗則蕩滌, 以示特加軫念之意. 輦路地方禾穀, 或有踐踏處, 令該道折給所出之數. 儒生應製, 校卒試射, 依昨年下敎擧行."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8월 18일(갑인) 2번째기사>

김이영을 보내어 행차가 지나간 고을의 민정을 염찰하게 하고 보고받다

이에 앞서 사관(史官) 김이영(金履永)을 보내어 행차가 지나간 고을의 민정(民情)을 염찰(廉察)하게 하였는데, 이때 와서 복명하여 아뢰기를, "양천은 지형상으로 충분히 관개(灌溉)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해마다 빈번히 수몰되어 진황(陳荒)이 서로 바라보이는 형편인데 부세(賦稅)는 여전합니다. 수령이 이따금 생판으로 징수하는 것이 민망할 경우 혹 3분의 1을 나누어 징수하기도 하고 혹 절반을 나누어 징수하기도 합니다. 비록 일구어 경작할 수 있는 묵밭이 있더라도 한 조각 땅을 일구자마자 전세(全稅)가 이록(移錄)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꺼려서 손을 대는 것을 이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묵은 땅이 되면 다시 개간될 희망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전지를 다시 측량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정(仁政)은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주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하물며 백성의 소원이 이와 같으니 어찌 서서히 할 수 있겠는가. 고을 수령에게 엄히 신칙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부평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생판으로 징수하는 폐단이 양천(陽川)과 대체로 같습니다. 그런데 연전에 전지를 다시 측량할 때에 예전의 묵밭에 대해서는 부세를 감면하는 것이 많았으나 현재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늘려서 책정하는 폐단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숫자가 너무 중하여 백성이 감당하지 못하므로 전지를 버리고 경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묵밭에 대한 부세를 징수할 곳이 없게 되자 민간에 나누어 징수하여 그 부세를 충당한다 합니다. 백성의 큰 고통치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연전에 다시 측량하던 때에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한 해당 수령에 대해서는 도백으로 하여금 이름을 지적하여 장문(狀聞)하게 하고, 현재의 수령으로 하여금 미루지 말고 속히 다시 측량하도록 하라." 하였다.

○先是, 遣史官金履永, 廉察輦過邑民情, 至是, 復命啓言: "陽川地形, 灌溉不饒, 而水沈頻年, 陳荒相望, 而賦稅自如. 守令往往悶其白徵, 則或三分一分徵, 或折半分徵. 雖有可以陳起之地, 片土纔理, 全稅移錄, 故人皆憚之, 莫利下手. 一陳之地, 永無復墾之期. 民情皆願改量." 上曰: "仁政莫先於經界. 況民願若此, 尤豈可虛徐? 嚴飭邑倅擧行." 又啓言: "富平則虛卜白徵之弊, 與陽川大同. 而年前改量之時, 舊陳雖多蠲稅, 時起未免增卜. 卜數旣重, 民不堪當, 捨田不耕者多. 故陳田之稅, 徵出無處, 則分徵民間, 以充其稅云. 民瘼之大, 恐無大於此." 上曰: "年前改量, 有名無實該倅, 令道伯指名狀聞, 更令時倅, 無敢推托, 從速改量."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8월 18일(갑인) 3번째기사>

이병모가 대죄하니, 사관을 보내어 대죄하지 말고 반열에 참여하게 하다

우의정 이병모가 부옥(府獄)에서 대죄(待罪)하니, 사관을 보내어 돈유(敦諭)하기를, “그때의 처분은 곡진하게 경을 위하여 짐짓 조정해 줌으로써 고집하는 바가 펴지게 하는 동시에 나라의 기강도 펴지게 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다가 곧바로 명을 환수(還收)했고 보면 경의 입장에서도 넉넉하게 의거할 바가 있게 되었고 공사(公事)에 있어서도 매우 원만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다니 이는 경에게 바라던 바가 결코 아니다. 안심하고서 대죄하지 말고 곧 반열에 참여하라.” 하였다.

○右議政李秉模胥命府獄, 遣史官敦諭曰: “伊時處分, 出於曲爲卿, 俾有節拍, 使所執伸而兼欲國綱伸也. 旋卽收還之後, 在卿綽有依據, 在公亦甚便圓. 尙此逡巡者, 甚非所望於卿. 安心勿待命, 卽爲參班.”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8월 18일(갑인) 4번째기사>

어가를 수행한 장신에게 군병을 위로하게 하고, 선부들의 노역을 풀어주다

어가를 수행한 장신(將臣)에게 명하여 군병을 위로하게 하였다. **화성 행궁**을 출발하여 **지지대(遲遲臺)**에 이르러서 조금 쉬고, 다시 출발하여 시흥 행궁에서 주정(晝停)하였다. 도중에 용양(龍驤) 봉자정(鳳翥亭)에 들러 하교하기를, “연로(輦路)가 지나가게 되는 길을 손꼽아 보니 슬픔과 감회가 더욱 간절하다. 육신사(六臣祠)·사충사(四忠祠)·노강서원(鷺江書院)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주교(舟橋)에 이르러 주교 당상(舟橋堂上)에게 이르기를, “선부(船夫)가 1년에 두 차례나 부역을 당하니 노고가 매우 심하다. 오늘 즉시 풀어 보내어 생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乙卯/命隨駕將臣, 勞問軍兵. 自**華城行宮**進發, 至**遲遲臺**少憩, 還發晝停于始興行宮. 歷臨龍驤鳳翥亭, 敎曰: “輦路過前, 指點咨嗟, 曠感采切. 六臣·四忠祠·鷺江書院, 遣承旨致祭.” 至舟橋, 謂舟橋堂上曰: “船夫一年再役, 勞苦甚矣. 卽日解送, 俾勿失業.”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8월 19일(을묘) 1번째기사>

환궁하여 84건의 상언에 판하하다

환궁(還宮)하여 84건의 상언(上言)에 판하(判下)하였다.

○還宮, 判下上言八十四度.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8월 19일(을묘) 2번째기사>

안홍국에 대한 《충무공전서》의 기록을 상고하여 이를 바로잡게 하다

용인(龍仁)의 유학(幼學) 안석광(安錫光)이 상언(上言)하기를, “신의 6대조 안홍국(安弘國)은 힘껏 싸우다가 만력(萬曆) 정유년 6월 19일 안골포(安骨浦) 앞 나루에서 한 몸을 바쳤는데, 《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에는 ‘통제사(統制使) 원균(元均)과 7월 15일 한산도(閑山島)의 군진(軍陣)이 무너질 때에 같이 죽었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죽은 것은 같으나 싸우다가 죽은 것과 군진이 무너져서 죽은 것은 아주 다릅니다. 뜻을 두었던 일이 이로 인하여 묻혀버리고 공적이 이로 말미암아 없어졌으니, 삼가 바라건대 특명으로 《충무공전서》에 고쳐 기록하게 해 주소서.”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힘껏 싸우다가 죽은 것이나 군진이 무너져서 죽은 것이나 죽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용맹함과 비겁함은 판이합니다. 지명과 날짜가 이처럼 서로 틀리니, 당초 책을 편집한 신하로 하여금 사적을 다시 상고해서 사실대로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내각(內閣)으로 하여금 공사(公私)의 문적을 다시 고증하게 한 뒤 바

로잡아야 하거든 바로잡도록 하라.” 하였다.
○龍仁幼學安錫光上言: “臣六代祖弘國, 力戰身殉, 在於萬曆丁酉六月十九日安骨浦前津, 而《忠武全書》, 以爲與統制使元均, 同死於七月十五日閑山島軍潰之時. 等是死也, 而戰亡軍潰, 逈自不同. 志事因是而湮晦, 功績由是而昧沒, 伏乞特命改錄於《忠武全書》.” 禮曹啓言: “力戰而殉, 與軍潰而死, 等是死也, 勇怯判異. 地名月日, 若是相左, 請令當初編書之臣, 更攷事蹟, 從實釐正.” 敎曰: “令內閣, 更考公私文蹟, 如可釐正, 釐正.”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8월 19일(을묘) 3번째기사>

2. 일성록

8월 15일

강詣璿源殿行茶禮

목時至具翼善冠 袞龍袍乘輿由萬寧門至眞殿門外降輿詣眞殿行禮訖出眞殿門外乘輿由萬寧門還齋所

강動駕

목具戎服乘輿出內閣門降輿乘馬出敦化門由榮禮門至南關王廟門外下馬詣廟內行禮仍詣御筆碑閣奉審訖命東南關王廟守直官邊將除授守僕等考例施賞出廟門乘馬至靑坡下馬乘駕轎至丹橋宣傳官跪啓稟行船砲開金大吹打各營皆放砲吹打以應之由**龍驤鳳翥亭**前路至陽川縣行宮天尙未明仍敎宣傳官持信箭分付畿伯大駕已過地方斥堠伏兵更不待信箭使之隨卽解送

강晝停于陽川行宮召見地方官吳奉彦 京畿監司 李在學及各務差使員 都差使員 楊州牧使 吳鼎源 句檢差使員 豊德府使 金珠淵植炬差使員 長湍府使 趙義鎭待令馬差使員 平丘察訪 成殷柱

목予謂泰彦曰今此幸行能無民邑之貽弊者否泰彦曰道路修治自朝家皆給雇價故別無民弊矣予曰如斗小邑初當臨幸行宮凡節無不修擧予甚嘉尙仍命承旨 李益運書御製詩一篇敎曰本倅繕寫刻揭行宮而下方以奉敎書書之也又敎曰地方官退去率邑中父老待令於通廣處也

강命故領議政 金壽童故右議政 金應南 沈守慶墓遣禮官致祭

목敎曰故領議政 金壽童時際中興上下彌綸老成典型如可想見今聞其墓在邑七里之近豈無示意之擧故右議政 金應南敷奏帝庭至蒙褒美間任中權隨機應變不但執靹之勞而已故右議政沈守慶以同時名相勤勞王事其衣履之藏亦在蹕路三大臣墓遣禮官侑以酒果分付陽川地方官備待祭文卽令知製敎製進

강命故領議政 金熜墓遣其子重臣致祭

목敎曰距陽川數里之地隔江而兆者卽故領相 金熜之墓云雖非此邑之境輦路相望宜有侑祭之擧回鑾後遣其子重臣致祭祭文路中已有親締者以此本用之事分付

강命陽川縣舊初不二十九結特爲頃給平倉餉還加定一百五十石勿令分給

목 陽川縣監 吳泰彦所懷陽川以濱江污下之地每多水沈之患年久初不付爲二十九結丁未以後漸次未付亦爲四十四結合爲七十三結而皆未入災至於白徵故每年災傷摘奸時右項七十三結不得已給災

故新未付及當年被災者每致不得俵災此乃第一民瘼也旣承下詢故敢達矣敎以始興卽年年駕過地方而今春該倅之有此請不得許施以其一視之道有難獨許以啓紛紜之弊至於本邑蕞爾十室賦繁役重而今番臨幸又是設邑之初有欲副民人望幸之情當從爾奏所請舊初不二十九結特爲頓給丁未初不則令道臣更爲査頓俾知別施軫念之意又所懷北漢平倉餉還邑邑皆有而本邑以貪甚之故自初私受旣多而定式分俵之數爲四百石至於甲寅歉歲又加請一百五十石受來不過一時救飢之計而仍作恒分之數則每戶所受餉還幾爲一石許自本縣報于總戎廳請減加受之數而旣有巡營狀請定式之事總廳不得自下擅減云此爲民瘼之最甚者敎以北漢平倉穀加定還一百五十石令廟堂分付總使勿爲分給

강命陽川縣監 吳泰彦外職陞敍
목(刀削)(刀削)(刀削)臣貫

강召見本縣父老於路左
목駕到天登峴陽川縣令 吳泰彦率民人來待予曰今番駕過在爾等可謂千載一時如有切痼之弊悉陳無隱民人等以舊初不平倉穀事仰告一如縣令言予曰此則已諭於該倅舊初不則令道臣査頓平倉穀則令總使除減此外如有可告者陳達也民人等曰當此樂歲歡欣自得而惟此兩弊又蒙蠲減之聖澤實無外此非分之望矣

강詣章陵行親祭
목至章陵洞口下馬乘輿入齋室改具翼善冠黫袍烏犀帶乘輿出齋室至紅箭門外降輿就位行禮仍行親祭如儀 亞獻官 右議政 李秉模 終獻官 光恩副尉金箕性 大祝 檢校 待敎 沈象奎 詣陵上奉審訖予敎陵官 韓百衍曰陵所內案果是何山百衍曰惠養山而近而濃媚者卽峨眉峯也予曰案對山形如列錦綺龍虎拱衛氣勢綿遠萬年洪祚實基於此矣

강還至紅箭門外乘輿還齋室命自陵洞口至崇禮門捧上言
목

강召見綾安府院君後孫具圭錫等七人于駕前幼學具宜錫 具永世 具永秀業儒具敬和 具基錫 具義錫
목予敎圭錫曰爾家於國舅爲直孤耶圭錫曰爲八代孫矣予曰具氏中府院君凡爲幾人圭錫曰府院君爲三人矣予曰爾是綾安直孤而且年老今番山訟何能獨不干涉圭錫曰自初不詳其事實故不爲干涉矣予曰爾當除本陵寢郎今日入直也予命承旨 洪仁浩書御製詩一篇敎曰使右相繕寫揭板於齋室也

강遞差承旨 李益運以李海愚代之前望也
목(刀削)靑嚴

강召見有司堂李書九于齋室
목予謂書九曰陵幸時蠲惠前例其果考見耶書九曰先朝甲寅年章陵行幸時治道邑竝站邑竝減秋大同二斗地方官則其年春大同停退者特命蕩減己亥年英陵 寧陵行幸時則驪利廣三邑減賦以還耗代減而山城軍餉勿拘其後永陵 光陵行幸時皆減耗己酉年章陵行幸時則交河民人當年田租特減其半壬癸以前舊還竝許蕩減高陽 坡州亦減舊還矣予曰今番亦何以則爲好耶書九曰大同停減自是已行之舊例而無田結之民則不能均惠若蠲徭給代或蕩減舊還則似爲廣惠之道矣予曰金浦則舊還爲幾何書九曰壬

寅條爲九百八十三石而其後則未及考見矣予曰更爲考出當有下敎矣書九曰俄者大臣諸臣有所陳達雖蒙依爲之之批旨而臣則以爲自止雖許群情自下末由擧行決知其如此而强請承批反歸於不誠之科行宮陪扈之際相率煩瀆尤涉惶悶何不念此而亟降明旨耶予曰予則許之而已此爲朝廷也爲大臣也更有何煩請者乎書九曰備局何以推送沁留何以推去群情轉益迷惑矣予命退出

강命綾安府院君具思孟直洮具圭錫本陵官單付本陵令 洪▣陞敍參奉 韓百▣陞六首守僕帖加守僕及守護軍京守僕分等施賞地方官洪大協 鹿皮一令京畿監司 李在學 豹皮一令賜給本邑舊還燒其簿朝官士庶年七八十以上加一資

목敎曰秋幸之祇謁章陵蓋欲仰述我寧考甲寅聖蹟也踐位行禮已不勝怵焉興感竊念每歲南殿展拜恭瞻第三室睟容恍若親奉警咳今來周旋於象設之前陟降孔邇咫尺如臨誠願粗伸愴喜交幷小子於此尤有感焉者將事之餘登巘延覽大江之南天作高山龍鳳騰驤襟帶輝暎旣綿而遠不峻而高佳氣之所凝精吉祥之所發源萬億年無彊維庥蓋惟我長陵朝達孝至誠上格皇穹遂卜此金粟珠岡先營周裕之禮移奉軒舄之莊以啓我後泰山磐石之丕丕基也是日是地宜有識是感表是意之擧本陵國舅家爲勳爲戚世受優禮非他戚家之比綾安府院君具思孟西原府夫人韓氏平山府夫人申氏墓遣近侍致祭其家奉祀孫當爲調用而年未滿何時不可爲直洮幼學具圭錫本陵官見窠令該曹單付仍令今日入直本陵官令洪▣陞敍參奉 韓百衍陞六首守僕帖加其餘守僕及守護軍與京守僕從優分等施賞本郡地方官洪大協內下鹿皮一令賜給道伯 李在學 豹皮一令依例賜給父老等臨郡也當詢問疾苦而爲先給復一 年依近例代蠲還餉之耗是邑舊還之爲小民切骨之瘼聞之熟矣無論餉還名以舊還者戶房承旨聚會邑民取其簿燒火俾除一分之瘼仰瞻甲寅幸行時羽旄之美而至今在者朝官士庶年七八十以上各加一資回鑾後令畿伯狀聞後下批

강以具圭錫爲章陵參奉 單付也

목

강遞承旨 趙鎭寬 金履翼以洪明浩 尹致性代之竝前望也

목(刀削)前承舌

강召見金浦郡父老於路左

목駕到銀古橋 京畿監司 李在學 金浦郡守 洪大協率民人來待予曰初來此邑問爾疾苦爾等其悉陳之民人等曰別無他弊最是平倉米之添給舊還上納之多數爲切痼之瘼矣予曰舊還則俄有所下敎已令蕩減乎倉米當詳問本倅而善處爾其知之更陳他弊也民人等曰年久陳田亦有白徵之弊矣予曰此則當付之本倅俾卽量田矣

강駕次金浦郡行宮

목駕到金浦官門外點閱鎭撫營環衛軍訖入行宮

강以南公轍爲兵曹參知 口傳也命前承旨 趙鎭寬 李益運 金履翼令該曹口傳付軍職使之參班

목(刀削)承靑(刀削)卿宰承旨到試承(刀削)

강命承旨 宋銓遞差宣傳官 趙運永拿處仍命銓令該曹口傳付軍職使之參班

목懸燈時不以起火號令擧行以取稟爲之也

강命前承旨 趙鎭寬 李益運 金履翼前參知 尹致性竝仍任
목

강命文烈公趙憲 牛渚書院 貞獻公尹又新 文烈公尹暹 忠康公尹衡甲 忠簡公尹棨墓遣承旨致祭
목敎曰文烈公趙憲道德節義炳若日月每閱其遺集不覺起敬昨歲金文正之躋享文廡也豈或取舍軒輕於其間而然也第以未能竝擧尙今介介于中聞其俎豆之所距玆蒼莽云遣承旨致祭祭文當親撰矣○敎曰貞獻公尹又新 文烈公尹暹 忠康公尹衡甲 忠簡公尹棨一門忠節常所愾欽今過其墓豈無示意之擧依先朝甲寅故事致祭

강命鎭撫使 申光履 虎皮一令賜給從事官中軍通津府使 領軍將官將校壯義旅標下軍兵及本營所管斥堠伏兵等試射放狀聞
목敎曰鎭撫使率壯義旅環衛經夜矣保障重地在常時其所撫恤宜加自別則勞軍若此豈無慰悅之道亦於沁都初有之擧鎭撫使 申光履內下虎皮一令賜給從事官中軍通津府使 領軍將官及將校壯義旅標下軍兵等還營後試射放一中以上狀聞鎭撫營所管斥堠伏兵等亦爲試射放狀聞頒賞則待判下令各其地方官擧行待明曉卽爲放軍事分付

8월 16일
강召見金浦郡守 洪大協 果川縣監 金履裕于行宮
목

강命金浦郡 平倉米中新定二百五十石勿令分給江都米耗條事令廟堂稟處軍丁不緊額數査汰令道臣稟處
목 金浦郡守 洪大協所懷本郡平倉米事果爲一邑之痼弊民間之最難堪者而渠輩之願亦云九百餘石盡數移送雖不可爲追後分定之數顒望變通云矣敎以分付總戎廳勿給新定之數二百五十石又所懷本邑米還自來數多之中江都米耗條之無論豐歉納于江都者每石之價其數夥然若當豐稔之歲則殆乎倍直民皆以此爲切痼之瘼矣敎以令廟堂從長稟處又所懷本郡民戶不過千餘而軍額則通計良私至於一千七百餘名之多兒弱之參錯其間其勢不得不然其所捄弊之道不容少緩今因下詢仰達矣敎以黃白從當分遣繡衣摘奸而軍多民少何異於使之勒充乎爲先以其査汰不緊額數之道與道臣相議稟處

강蠲減果川縣舊災十三結零
목 果川縣監 金履裕所懷本縣有成川成江舊災十三結零者不入永頓故歉歲每以當年災幷報豐年不免白徵實爲民弊矣敎以本邑尤異於他邑已施於一時駕過之陽川者何靳於年年行幸地方乎十三結持爲蕩減事令廟堂分付道臣

강自金浦行宮進發修撰 韓致應進箚子賜批
목具戎服乘馬以出右議政 李秉模進前問候仍欲有所達未及發予曰路次非陳達之地且況有昨夕所敎乎秉模曰臣但當奉若金石矣承旨 李益運進致應箚子予曰此豈進箚之地乎致應進曰願家批旨矣予曰以省箚具悉書出也其箚曰昨(刀削)(刀削)

강晝停于富平行宮召見地方官富平府使 尹光碩

목(刀削)

강命淑媛趙氏墓和柔貴主墓遣內侍致祭驪川尉閔子芳 永新君 咸原君墓遣官致祭故領議政 李天輔墓遣其孫待敎 李存秀侑祭故重臣李文源令本家速撰謚狀移送弘文館

목敎曰淑媛趙氏之墓與和柔貴主墳山相近撫念疇昔豈勝感愴駕過時遣內侍致祭祭文親撰○敎曰驪川尉閔子芳以宣陵儀賓墓在鑾路之傍永新君 咸原君俱以孝寧之後其松楸入望幷令駕過時設祭以所下祭文讀之獻官隨駕官中差送○敎曰故領議政 文簡公李天輔樹立之卓犖予何忍忘之今過其邱墓之鄉頎然羽儀之容若肅在前駐駕遲發呼寫致侑之文遣其孫待敎 李存秀侑祭故重臣李文源乃父之子其立朝不隨俗位躋正卿尙未易名卽令本家速撰謚狀移送弘文館

강自行宮進發召見本府父老於路左

목具戎服乘馬駕到五里程命地方官率父老入侍予曰爾等初經行幸乎民人等曰設邑後初經矣予曰爾等有疾苦之可言者乎民人等曰壬寅舊還爲一千三百餘石此爲民弊矣予曰列邑舊還無處無之又奏他弊也民人等曰北漢還穀近年加劃之數甚夥然今爲四百餘石此是民弊矣予曰當令善處矣有一民人曰本邑軍多故自多黃白簽丁之弊矣予曰此則罪在邑倅矣民人等曰邑倅盡心査正近無此弊彼民之奏妄矣予顧謂承旨曰彼言直而此言詐矣敎曰今月內當送繡衣如有一丁見捉則本倅當嚴處矣進發至二十里許駐馬少憩於路次命諸承旨進前賜酒饌刀削(刀削)

강詣愍懷墓行奠酌禮命故相姜碩期墓遣承旨致祭其奉祀孫令該曹問名草記

목敎曰駕過洞外象設入望而初欲遣官一拜亦可矣愍懷墓歷謁仍爲行祭該房知悉百官參班置之執事官以承旨 閣臣 玉堂中塡差祭文親撰展禮本墓誠罕有之擧旣拜之後宜有識喜之道況其墳山在於局內年前聞其松杉亂鬱無人禁除云付之地方官修治今於歷過之時豈可空還故相文貞公 姜碩期墓持此親撰祭文以侑之獻官則承旨進去依思陵例致祭同爲設行於愍懷墓行祭時其奉祀孫令該曹問名草記守衛官當窠差職守僕守護軍依例施賞○乘馬至墓所紅箭門內下馬就位行奠酌禮敎曰故相姜文貞子孫之來待者皆令入參行禮訖詣墓上審視還入齋室(刀削)

강命故領議政河演金在魯墓遣承旨致祭故相金致仁令弘文館議謚一體致祭故參贲丘從直墓遣官致祭

목駕過仁川境敎曰我朝房杜世推黃許而遵何約束民以寧壹故相河演亦其一也聞其墓道在輦路近地云故領議政河演墓遣承旨致祭祭文以呼寫本往讀之多年秉軸對揚先大王建極之治恬操雅量蔚爲良佐兩世元輔尤可謂稀異故領議政 金在魯墓承旨往侑因此思之故相金致仁尙未易名云以平日禮遇之心寧不有歉其令弘文館從速擧行一體致祭○敎曰人臣遭逢從古何限而邂逅遇巷未有盛於故參贊 丘從直立賢無方之聖德尙今莊誦向年以落仕最久人調用嗣孫泰垕矣今其墓不遠於是地云特爲遣官致祭祭文令知製敎製進

강命植炬差員考喧都事記過待令

목駕到石田里距安山郡未及七里日已向暮命送令旗於各營懸燈號令除取稟擧行以炬火之不卽待令命植炬 差使員 長湍府使 趙義鎭記過以觀光人之路上雜沓命考喧都事 李湘記過竝使之待令於安山郡

강駕次安山行宮

목(刀削)(刀削)

강命右議政 李秉模施不敍之典
목敎曰駕前擧措大非所望於此大臣者國綱所在寬恕反失於正右議政 李秉模亟施不敍之典

강命京畿監司 李在學記過拿入禁府都事李湘長湍 府使 趙義鎭 安山郡守 王道常義鎭決棍湘道常分揀
목命記過待令差使員及禁府都事拿入敎湘曰昏夜動駕何等嚴重而觀光之人雜沓於駕過咫尺之地右列則羅將輩登山禁止而左列則何獨不然也湘對曰當禁不禁臣誠死罪予曰爾之除拜不甚久遠故特爲分揀明日以後各別惕念也敎義鎭曰日暮之後不卽植炬以燈籠行一馬場許此何國體莫重動駕之時名以植炬差員而擧行如此乎義鎭對曰見過去紅令旗誤聞知委認以明曉燃炬而今夕則停之故致有此不卽擧行之擧矣益運請依法命除數杖用大棍至五度命拿出送令旗於京畿監司敎曰今日植炬擧行非但萬萬駭然例於駕前左右列立禁喧校卒使之檢飭而安山無一人待令監司爲先記過明日若又如此當嚴處以此分付仍命安山郡守 王道常拿入敎曰安山雖殘豈無一校卒而乃敢如是不飭乎禁都旣以新除分揀汝亦除拜不久且是地方官故特爲分揀明日則惕念擧行可也

강召見楊州牧使 吳鼎源 金浦郡守 洪大協 仁川府使 黃運祚 始興縣令 鄭致綏 果川縣監 金履裕 安山郡守 王道常于行宮
목予曰如有邑弊民瘼之可奏者各爲陳奏也鼎源曰別無可達者矣大協曰今番蠲減旣是曠蕩之恩一邑民人有何更望至於如干舊初不之類雖曰民弊亦可自下區處非可陳聞於朝家者矣予曰以年年新起或有充給之道耶大協曰新起則年年加報無復餘結矣運祚曰臣則除拜屬耳無所詳知者而槪聞總廳還穀九百餘石爲民弊云矣予曰還宮後詳細探察如有可以陳達者則以鑄所書役自多上來之時其時來奏也致綏曰姑無新弊之可達者矣道常曰臣以新除之故未及知而舊還最久條一千餘石爲大弊云矣予曰通廣處率父老來待(刀削)

8월 17일

강命貞安翁主 貞正翁主 錦陽尉 晉安尉墓遣內侍致祭昇平府院君金鎏墓西平府院君韓浚謙檜山府夫人黃氏墓新豊府院君張維永嘉府夫人金氏墓幷遣承宣致祭
목敎曰貞安翁主貞正翁主俱是章陵同氣貞安與錦陽貞正與晉安同岡展謁本陵又過此地事若不偶竝以親撰侑詞遣內侍致祭○敎曰昇平府院君金鎏攀附之功經濟之策蔚然爲中興名臣聞其墓在是邑云遣承宣致祭祭文親撰以下○敎曰身居肺腑之親密贊我聖祖一初淸明之化傑然爲國柱石其立朝事功之塗人耳目者卽亦餘事西平府院君韓浚謙檜山府夫人黃氏墓遣承旨致祭○敎曰我朝固多賢國舅而文章功業之盛未有如新豊追惟崇陵御筆神道之盛蹟一倍愴想故府院君張維永嘉府夫人金氏墓遣承旨致祭故判書 張善澂一體侑之

강命右議政 李秉模不敍傳旨特爲還收
목敎曰雖以國體處分卿之本情出於若心傳旨特爲還收仍傳命召今欲進詣園所卽爲入來參班事遣史官傳諭于右相

강自安山行宮進發召見本郡父老於路左晝停于**鷗浦**
목三吹後具戎服乘轎出安山郡門至五里程駐蹕招入邑中父老下詢疾若民人等曰近値豐歲民皆樂生

而但以豐燈之故壬寅丙午條舊還皆爲捧納則其數至於千餘石此雖民間當納之物而不能無難捧之患矣予曰竝當有善處之道爾等退去好在進發至長長峴駐蹕少憩史官 洪樂浚傳諭於右議政回來(刀削)予乘馬進發到**鷗浦**御幕次命蛟龍旂以下各差備侍衛路上留住駕前駕後先往御將留住處聽其指揮涎間路先到信地不待號令下馬喫飯

강命龍柏祠令地方官行祭故領議政 洪彦弼 洪暹墓遣承宣致祭故左議政 李福源墓遣直提學 李晩秀致祭愼嬪墓遣內侍致祭

목敎曰龍柏祠卽諸葛武侯 胡文定主享配食之所而忠簡 尹榮以成仁之地涎與享之異代一義令人激感地方官旣經承旨持此祭文宣讀行祭○敎曰故領議政 洪彦弼自是士類爲世名臣其子領議政 洪暹以直道雅望又躋上台年過懸車而其太夫人尙康旺恭惟貞敬大夫人天上難知世未聞一德涎三上台峻百年除六壽星尊之句至入詩人之詠尙今傳誦兩大臣墓道遣承宣致祭地方官旣經承宣仍令受香進去○敎曰雅操今日未易多得內閣直提學 李晩秀馳省故左議政 李福源墓仍爲致祭○敎曰愼嬪墓距府治五里而近云遣內侍致祭

강召見**水原留守** 徐有隣于幕次仍爲進發

목予謂有隣曰今日詣園所後日勢似未晩軍兵之勞不可不念欲仍詣**華城行宮**如何有隣曰日勢則無慮而今日入抵**華城**則非但軍兵之休息事多有便好矣命賜諸臣飯少頃改具軍服乘馬進發到新音川下馬少憩由火巢界取古西門路命先後廂軍兵竝由外路先詣各其信地承史閣臣引儀 通禮及祭官外百官皆先詣大路御前前排挾馬挾輦軍若干名外俱由外路先往內營鄕軍三哨先送古西門外把守外營鄕軍三哨草峯文侍郎 **大皇橋**前路各一哨把守予到古西門內左議政 **蔡濟恭**業已先詣柢迎於路左予曰卿亦好來否濟恭曰臣則少無憊損而俄者柢迎時自不覺瞻望天顔已切欣喜之忱矣予曰昨日事聞之乎濟恭曰朝紙尙未得見矣予曰此非長語之地矣仍進詣園所戶曹判書 金華鎭柢迎於路左予曰老人好來否華鎭曰善爲下來矣

강詣**顯隆園**行親祭

목駕至齋室門外下馬入齋室改具翼善冠 黧袍烏犀帶乘便輿出齋室挾門至紅箭門外降輿就位行親祭如儀 亞獻官 左議政 **蔡濟恭** 終獻官 光恩副尉金箕性 大祝 檢校待敎 沈象奎 仍詣園上奉審還御小次宣閣臣 承史飯命二提學 沈煥之 檢校待敎 沈象奎奉審奉安閣○敎曰今詣園所而日勢尙未晩軍兵露處之弊宜念今日當宿**華城**以此分付

강以李基讓爲承旨 新資也

목親祭時行初獻禮都承旨 趙鎭寬當奉爐而未及入來基讓以執禮就位仍除承旨使之先奉爐後謝恩榻敎則使之行禮後書出○敎曰承旨前望單子入之待下批牌招奉爐後謝恩

강命園官以下令**外整理所**考例施賞

목敎曰園官內下筒箇各一部賜給守僕守護軍京守僕等令**外整理所**考例施賞○壯勇外營啓言謹奉傳敎宗廟守僕李昌彬 **景慕宮**守僕安孝達香室守僕金斗樞本園守僕金在勤等四人書員金元浹等二人守護軍崔克純等五十名各木一匹庫直金漢濟案山直禹順泰等七十名各布一匹自**外整理所**依定例分等施賞

강駕次**華城行宮**

목自小次改具軍服出紅箭門外乘馬進發到**鵲峴**駐蹕池邊敎內外使等曰疏鑿斯池貯之以水則灌溉之利顧不多歟外使徐有隣曰非但民蒙灌溉之利此爲園所水口則亦似有符於堪輿之理矣予曰周回當爲幾何御將 **趙心泰**曰爲八百餘尺而不下富平斗登坰矣予謂安城郡守 曺允植曰是役若不與今番驪州陵役相値則其成豈拖至今日耶此後植木時善爲之也仍取**龍珠寺**後路命承旨 閣臣及翰注外皆先詣於**萬年堤**以待詣**城隍山**後峯下馬少憩還乘馬出**安寧里**後路入**八達門**由左右軍營前路**新豊樓**入**左翊門中陽門**下馬御**壯南軒**內外使以下竝以次參見命領軍未及入來將領司命除之予曰今日則承史諸臣早竝退休而閉門以下節次依前擧行

강 副校理 洪樂游 副修撰 韓致應陳箚論昨冬治道時道臣守令賜批

목箚略曰每當行幸之時凡係省民弊蠲民力之道靡不用極飭敎申嚴分遣繡衣考察貽弊之擧其在道臣守令之道固當仰體聖念俯察民隱凡諸用民力之節俾絕一毫爲弊之端固所當然而以今番沿路所見驗之則或莽蒼之地迤爲一舍之程或捷徑之路繞出曠邈之野由是之故道里遠近太懸輦路排站太長以致昨日輿衛之行至有侵夜迂回之境此而悚悶已不勝言且彼小民治道之際畚鍤之勞曠日之費其當如何事之寒心莫此爲甚臣等謂昨冬治道時當該道臣守令查出捧現告竝施譴削之典斷不可已也批以富平站之於安山名雖四十里實則幾倍當該道臣地方官勘罪事依施

8월 18일

강御**洛南軒**行本府武士試射召見左議政 **蔡濟恭** 壯勇內使鄭民始外使徐有隣 御營大將 **趙心泰** 京畿監司 李在學 南陽府使 李景溟 廣州判官 金啓濂 龍仁縣令 丁遇泰 振威縣令 尹應鉉 陽城縣監 吳慶元 帳殿試官 壯勇內使鄭民始外使徐有隣 壯勇前把總 李格 **東將臺** 試官前外使**趙心泰** **禿城中軍**金煟親軍衛別將 金益彬

목具軍服陞座**壯勇外使**跪啓升旗仍開場命試官行禮除之敎曰今日試射依內試例爲之**洛南軒**親臨處所則試官內外使及堂上將官一員爲之 **東將臺**則前外使及**禿城中軍**親軍衛別將內營將官二員進去仍命城內外武士試取於**東將臺**園底武士帳殿試取入格以一中以上擧行予敎民始曰場外柳樹下陰翳處多有代射者云環衛哨官一人率鄕軍作門於其傍以爲外打點之地好矣予敎濟恭曰聞卿於中秋夜登**西將臺**云然否濟恭曰伊日夜登**東將臺**翌夜又登**西將臺**月色甚好矣予曰老人節力無難於登陟否濟恭曰空心墩諸處亦爲登覽層梯迂回制度甚奇巧矣予曰此皆李儒敬所爲而俱是不緊用工處矣濟恭曰登其上便於覘賊亦不害爲城堞美制矣予謂守令等曰如有民弊其各陳達景溟曰待罪未久不能詳知而六千戶之民軍丁則爲五千人此爲可悶矣予曰軍丁之弊到處皆然誠爲難處矣啓濂等皆曰別無民弊矣予敎遇泰曰龍仁隨駕軍皆令作統知之耶鄕軍所在邑倅許爾等以此言及也

강命還宮日子以明日進定

목敎曰**華城**宿所旣進定一日今日亦已試射還宮日子以明日進定此意成送有旨於留都大臣

강諭右議政 李秉模

목 政院啓言卽者議政府錄事來言右議政 李秉模以爲罪負至重不敢抗顔於陪班義分都虧轉益惶懍席稿郡獄之外恭俟鈇鉞之誅云仍納命召何以爲之敎以安心參班事更遣史官傳諭仍傳命召

강御射于**得中亭**

목予射貫革五巡貫二中邊七中命壯勇內外使畿伯御將皆入射予敎畿伯 李在學曰今番行幸過十邑金浦則蕩滅舊還安山亦當如之而仁富以下諸邑當何以爲之耶承旨 李益運曰南陽府使則以爲舊還之請

減非筵奏之事故不敢陳達於下詢之時云矣內使鄭民始曰近來外邑有因傳敎停退條仍未捧條而竝稱舊還舊還名色亦甚不分明略略減給似好矣予曰還之取耗皆出於民取於民亦已多矣何靳減給舊還乎畿伯出去各邑實數考出以待也

강召見隨駕閣臣 壯勇內外使畿伯 御將于**維與宅**

목予曰墓陳防塞稍久矣而今欲許陳則何如耶內使鄭民始曰今不可復許且關由戶曹然後始可許陳而誰敢以此上達乎予曰二直提學家大臣墳山亦有當入不入之陳云大臣墳山與他自別此則許之何如耶外使徐有隣曰曾亦聞知而甚悶然矣係是大臣墳山且以沿路賜祭恩出特例則恐無不可矣民始曰固知此家之切迫而法典所在則正一品墳山不過九十步其外則雖樵牧等事亦不許禁況此事須有告達之人然後方可施恩而旣非輦路所親覽處則無端自上施恩不成事例矣予曰卿言亦是矣予曰留守 判官廩俸之不能成樣姑舍支放之資每患不足云四都中 廣州稍裕耶有隣曰大同爲儲置田稅爲添餉故四都中廣州爲稍勝矣予曰京畿廳米移劃事果何如有隣曰此爲一千五百石米在**華城**得之甚幸而自惠廳視之則直爲九千兩錢失之亦難堪若有涖他區劃之道則大同依前上納似好矣御將 **趙心泰**曰船馬貰則已自**華城**取用矣予曰金浦軍丁自古爲難云何以爲然耶畿伯 李在學曰軍丁之難無邑不然實無通變之道故今番沿路詢問之下民人所對皆以舊初不爲言而亦不敢以軍丁爲言矣民始曰舊初不三字民雖愚妄以爲言道伯豈敢筵達乎若以舊初不輒加蕩減則戶曹元帳付漸將見縮矣予曰卿言是矣今番沿路之詢問也民情多詐至若富平民黃口簽丁之說始因愚直而發終乃極口粧撰海曲之民尙如是矣予又曰總廳還餉皆願不受最是難堪矣在學曰施惠中有還耗除減處而如餉穀**整理穀**之類不可除耗矣予曰整理之穀初雖出於覃惠之意還多之邑反有其害及今盡賣未知如何民始曰勿論此穀彼穀外邑穀簿之漸縮誠悶然若値歉歲民之賴活專係官穀而近來繡衣之歸陳邑弊輒以還穀爲言隨卽蕩減今幾無多矣畿民之不願總還者亦皆歉歲請得非自官勒分而旣食之後又復如此矣

강命陽川縣舊還最久年條蕩滌富平 安山舊還最久年條蕩滌當年還耗特除仁川 南陽 始興 果川 廣州舊還無論遠近燒券**水原鷗浦**舊還亦爲燒券還耗蕩滌輦路禾穀踐踏處折給所出之數儒生應製校卒試射放依昨年下敎擧行

목敎曰今因章陵展拜幸於一歲中再謁園寢而路出果川 始興 金浦 富平 仁川 安山 廣州 南陽 **水原** 凡爲十邑以吾民望幸之心豈容使之徒瞻羽旄畫站宿站召問邑中父老只過地方之邑召問邑宰或因民人之言付之道臣稟處或因守宰之奏許令廟堂回啓而金浦初當宿站於先朝甲寅之後民人等拔例另施陽川亦有蠲惠之擧而老人加資亦依筵敎施行舊還最久年條蕩減富平 安山舊還最久一年條蕩滌當年還耗特除仁川 南陽雖曰輦路邑卽初見羽旄之地也所過處民人所負舊還之載於還簿者無論遠近令地方官抄出聚會民人曉諭後燒券始興 果川 廣州不可獨漏況有初過之處亦豈異同出還宮時輦路民人之所負舊還燒券依仁川 南陽例爲之其中**水原**則**鷗浦**亦爲初過之輦路而己酉以後民人等自多偏勞舊還則焚券還耗則蕩滌以示特爲軫念之意輦路地方禾穀或有踐踏處令該道折給所出之數事令廟堂行會儒生應製校卒試射放依昨年下敎擧行事亦爲分付

강命**鷗浦**之南陽接界地新還一體除耗

목 京畿監司 李在學啓言今此蠲惠之澤普被十邑民情想必鼓舞而**水原鷗浦**之民亦蒙舊還焚券新還除耗之恩矣**鷗浦**乃是**水原** 南陽接界之地而南陽地方亦入於今番輦路故仰達矣涖之

강命園幸時本府吏屬出入衛內者章標五十箇自備局頒給分排使喚

목 **水原留守** 徐有隣啓言幸行時本府吏屬之出入衛內者今春爲始頒給內營章標五十五箇使之擧行

矣今番則以內營章標之所關不輕內使往復於臣以二十箇停當其言誠有意見而因此有掣礙者吏屬之衛內各處出入之數以各項差役言之雖令減省多至五十餘人而二十人佩持內營章標者外以無章標見阻於衛內揆以事勢不可不變通內營章標外備局所頒章標五十箇報備局取來竝與內營章標量其緊歇分排則重事面備使喚之道似皆得宜故仰達矣從之

강試射入格人等施賞有差

목予曰依此別單啓下入格人皆招入頒賞而本府判官率領分給米則五人所受十斗盛之一包以給而每包皆入縮米一斗○園底武士柳葉箭入格別單閑良金墨碩等二人邊二中各木一疋兪贊柱等九人邊一中各布一疋**東將臺**分所隨駕將官哨官出身鄭履權邊二中弓一張帽子一立 柳聖台等三員邊一中各帽子二立別軍官出身李鎭遠左別親軍衛出身李德恒邊二中貫一中以上邊將除授左別親軍衛閑良金煥鼎邊二中貫一中直赴殿試閑良表萬信邊三中直赴會試右別親軍衛閑良蔡光國貫二中弓矢一部別軍官出身尹逸載右別親軍衛閑良孔學東貫一中邊一中各弓箭一部別軍官出身尹行默等四人左別親軍衛前萬戶 牟應獜等十三人邊二中各弓一張帽子一立別軍官出身牟景郁等六人貫一中各弓一張別軍官出身宋聖奎等四十九人邊一中各箭竹五十介○府內城外近處武士試射閑良邊涉貫一中邊一中木一疋布一疋閑良洪昌郁邊二中木一疋閑良金一孫等二十一人邊一中各米二斗○隨駕哨官及伏兵將別軍官 柳葉箭一巡入格別單伏兵將別軍官出身徐春光邊三中筒箇一部金鼎秀 金重伯邊二中各弓一張帽子一立哨官前都事 洪格出身趙廷彥伏兵將別軍官出身李東燁等五人邊一中各帽子一立○隨駕將校柳葉箭一巡入格別單隊長趙仲接邊二中弓一張帽子一立守堞軍官 崔千東 等二人隊長李雪云金貫一中各弓一張知穀官全怛一等二人旗牌官 金仁祿別武士李東植 守堞軍官 崔時大等二人前銜出身徐景運等三人閑良朴東老等二人別破陣朴東殷等三人隊長李成得等五人邊一中各帽子二立○隨駕各色軍兵砲放入格別單細樂手文有軍邊三中木二疋布二疋吹鼓手金得伊貫一中邊一中木一疋布一疋細樂手禹命才等九名邊二中各木一疋帽子一立入防軍姜好仁等三十二名邊一中各布一疋

강命陽川 富平量田嚴飭擧行金浦田稅中陵復戶濫捧之弊卽爲矯革

목沿路摘奸史官 金履永啓言陽川則一境地形灌溉不饒而水沈頻年陳荒相望而賦稅自如守令往往悶其白徵則或三分一分徵或折半徵或全數徵逐年靡常雖或有可以陳起之地片土纔理全稅移錄故人皆憚之莫利下手一陳之地永無復墾之期此爲大同稱冤之端而民皆以改量爲願云故仰達矣敎以仁政莫先於經界況民願若此云則尤豈可虛徐嚴飭邑倅擧行之意令廟堂 分付道臣又啓言富平則虛卜白徵之弊與陽川大同而年前改量之時舊陳雖多蠲稅時起未免增卜卜數旣重民不堪當捨田不耕者多故陳田之稅徵出無處則分徵民間以充其數云民瘼之大者似無過此故仰達矣敎以年前改量之有名無實該倅事極爲駭然令道臣指名狀聞更令時倅無敢推托使之從速擧行使小民得免白徵疊徵而若是下敎之後如渠有聲績之倅者萬一遲緩當加等嚴處以此嚴飭又啓言金浦則田稅之屬于陵復戶者陵軍自初濫捧轉成謬規一結所納平斗通量恰爲二十五六斗而亦皆精鑿民爲不便云故仰達矣敎以令道臣嚴飭矯弊

강召見**華城留守** 徐有隣 御營大將 **趙心泰**于行殿

목予曰城址家垈給卜事其果聞之乎有隣曰聞御將言城址犯入結卜已爲懸頉於概狀中不必更論以民家家垈言之公田所坐之稅自在勿論至於私田賭地如數備給於土主云矣予曰私田結數幾何**心泰**曰踏驗之前未詳其數而約爲十餘結內外矣予曰然則留守卽令踏驗後以其實數往復戶曹免稅也有隣曰雖免稅原土價當給之矣予曰從時價區處可也予曰廣州聲串北方兩面劃屬事果何如有隣曰在**華城**誠好矣予曰兩面民人頗願屬云信然而民丁多寡亦何如耶**心泰**曰軍丁未能的知多寡而似爲千餘名至於民情則當饒之民必厭之而小民似樂赴矣有隣曰御將謂以幷月谷面劃屬爲好云而臣於待罪廣州時見之

此爲貧殘之面只有士夫故亦有許多弊端得之亦無益矣大抵此兩面在廣州大關得失在前松洞日用兩面劃屬後軍錢結米所捧者自朝家以本府還上加分耗條給代之故民戶所受還穀比前稍多此甚難便今此兩面軍丁也結捧也還上也細細詳探其裏面然後從長稟處好矣予曰然則詳探更稟也大同米事更爲入量乎有隣曰俄者筵退後與惠堂多般商量而本府捧置大同條外更無着手處矣予曰數爲幾何有隣曰爲一千五百石矣予曰以此米及錢三千兩分排於留守 判官則可以支過乎有隣曰然則足以措手矣予曰雖如是磨鍊猶未及廣留矣**心泰**曰如是措施則留守 判官廩俸足以成樣而但一營公用條無所屬處此非細憂矣予曰所謂公用條果是何許名色必泰曰不可以某某名色指的仰陳而一營軍務許多名色無非緊關臣之待罪時雖創設策應庫以條一營需用而歲入不過數千兩故將無以塗抹矣有隣曰前以此事屬煩警咳而凡百設施雖不及統營支放等節規統營約以折半措處然後可以成大營門規度矣予曰向來統營新設之屯能善就云以此移屬則何如**心泰**曰聞將善就云誠甚多幸以此移屬非不好矣而當初特命設屯爲統營救弊之道則統營事勢亦屬當念聞肅川補民垌外又設中垌周回甚廣今方次第起墾所收不些姑無屬處此卽其時邑倅自條築垌者故於官於民無所相關此若屬之**華城**則似好矣有隣曰此垌事臣亦聞之而本城近處若費數三萬兩或開渠或築垌則民蒙灌溉之惠公獲水利之稅而可期千餘包歲入云矣**心泰**曰非但無射力亦涉迂闊不可輕試矣臣於待罪時大有屯下已建屯舍設置屯屬使之管檢者蓋有所斟量而**八達山**西坪鑿一大渠而貯水又於**八達門**外上下**柳川**之間廣開堤堰引貯活水則實爲城邑水口之關銷亦可有助於地理而坪野水田之沾溉足以旱乾無慮故必欲設施而因射力不足有意莫遂矣予曰當入幾何有隣曰將近萬兩矣予曰無論此處彼處設屯一欵從後更商而聞黃州設屯處數三浦民輩以其船泊處之見阻於築垌之後興訛造謗必欲破壞乃已云民習誠可痛必爲申飭俾令成就好矣**心泰**曰向因廣海兵使往復而知之黃牧方捉囚懲礦使之如前修築云矣予曰此處沈醫之節不可不留意矣**心泰**曰今年軍器已沈百甕醬而別庫所沈亦爲四五千石矣有隣曰臣於南城見之所謂千石醬盡成塵土便屬無用此蓋不爲分給而一沈之後任其奸僞故及其年久自然如此此亦不出分給之例一任拋置則又將如南城矣**心泰**曰臣爲是慮半留半分之意已成節目其若按而行之自可永久收效矣予曰**華城**城門欲仍留或開門則將何以擧行耶此當有一定之式問于該曹以入承旨 李益運曰問於兵曹則以爲年前幸行時有留門之敎而其時則城未盡築故只以信箭仍留而今則城已完與前自別當依京城門例以標信及信箭擧行矣

강諭右議政 李秉模勿待命卽爲參班

목 政院啓言卽者議政府錄事來言右議政 李秉模以爲連伏奉還傳命召之命有不敢仍處遠地進伏**華城府**獄之外參俟嚴訣云仍納命召何以爲之敎以伊時處分出於曲爲卿俾有節拍使所執伸而兼欲使國綱伸也旋卽收還之後在卿綽有依據在公亦甚便圓尙此遠巡者甚非所望於卿安心勿待命卽爲參班事遣史官傳諭仍傳命召〇假注書 具得魯書啓以爲臣敬奉聖敎馳往傳諭于右議政 李秉模 **華城府**獄待命所則以爲臣雖無狀粗識義分豈敢以日前處分爲一毫自引之端而伏況今下恩批至敎以成其節拍又諭以伸其執守臣抱此聖言雖卽日溝壑萬萬無餘憾矣第臣却顧逡巡終不敢爲抗顔周行之計者實有所不獲已者存焉謹當以載罪從事之例隨蹕路之塵於陪扈之外進伏郊垌冒入文字略暴危若之情云矣敎以卿何如彼乎不獲已云者必爲未徹之臺言而此等處雖使古之大臣當之受以爲謝之不暇設欲一番陳箚陪扈義重還宮以前決非卿言私之時待卿承膺還官此意更爲傳諭〇假注書 具得魯書啓以爲臣敬奉聖敎傳論于右議政 李秉模所住處則以爲深夜宣批仰貽酬應已是臣罪上添罪而至於末端之敎有萬萬不敢承聞者驚惶震懍顚倒參班之不暇更何仰達云矣

강命城門留門時以信箭祇受於兵判令票令旗信箭祇受於外使各令將校眼同開門

목敎曰城門留門當有定式定式前先以信箭祇受於兵判又以令票令旗信箭送于外使處祇受後兵判與外使各以將校眼同開門後待出去之人出去還閉後還納事分付兵判及外使

강 水原軍器新備修補監董以下施賞有差

목前留守 趙心泰別單以爲今春以親軍衛甲冑造成事伏奉湖南船儲置米四千石劃給之命與本道道臣往復商確從長發賣辦錢二萬兩甲冑之緞及三升件如數新備器械中火器手弩火車及旗幟金鼓之最緊要者先卽造成外此弓矢銃刀之朽鈍鏽澁者一齊修改竝區別後聞而該庫內監裨將折衝具錫夏專管擧行火器牌將前內營教鍊官金昌倫外營教鍊官 安文欽 甲冑牌將閑良李鍾泰前禁軍金懿琡火車牌將閑良池瑞旭該庫外監官校嘉善林俊昌 李弼載等分掌董役各人等效勞亦涉可尙工匠內營軍表德運御營廳軍權正倫俱以邊首之役勤勞甚多宜有激勸之道火藥自明春行將搗製而本庫表乏射力以其餘錢買得屯土於海西 殷票縣定稅三百二十兩而作爲歲入以備搗砧時雇丁資自今年爲始會錄會減等節一併關由之意校報內營矣〇新備秋鎗鐵大碗口中碗口中威遠砲迅雷砲虎蹲砲各一坐信砲三坐二號佛狼機一坐四號佛狼機五號佛狼機各二坐別黃字銃筒玄字銃筒各一坐勝字銃筒五坐水鐵震天雷五坐飛震天雷一百坐威遠砲二十坐正鐵大威遠砲中威遠砲各一坐鍮鐵二號子砲十門四號子砲四十門五號子砲一百二十五門三眼銃七門正鐵四號子砲八十二門五號子砲一百二十八門要鉤槍六十二柄烽臺分上槍二十柄四門挾刀十二柄龍頭偃月刀四柄軍兵匙子二千箇馬鐵一千五十部菱鐵一百五十箇牙里金五十五雙各色大緞大旗幟三十八面紅漢府緞令巡視旗藍漢府緞令巡視旗各四十面藍二廣緞令巡視旗三十八面四城將手旗四面參陣五哨哨官 手旗五面禾紬塘報旗十面門旗角旗各八面城將認旗四面城將神旗雉總認旗各八面雉總神旗十六面參陣五哨方色旗七十一面綿細私習大旗幟三十八面白大旗試閱旗校藝旗各一面城將師字旗四面城哨官認旗 手旗各十六面埰長旗一百四十八面塘報旗十二面黃染木試閱旗校藝旗各一面靑染木擧旗紅染木擧旗各二十五面白木擧旗十面大靑布令巡視旗二十面白布城上把守旗七十五面各色大緞甲衣十一領頭口十一頂三升長甲衣四十九領頭口四十九頂三升短甲衣一百領頭口一百頂二廣緞城將號衣四領綿細城哨官號依十六領〇七色軍所着秩鴉靑木甲狹袖二百三十領靑染木甲掛子鴉靑木單狹袖各一百五十二領靑染木單狹袖鴉靑木單掛子各二十領靑染木單掛子一百五十二領紅染木掛子十二領黃染木號衣一百二十二領靑三升甲掛子紅染三升甲掛子各四十六領鴉靑麻布狹袖靑染苧布掛子各三十六領藍禾細戰帶三百十六件藍綿細戰帶一百三十六件冒緞戰巾八十六頂綿細各色戰巾二頂戰笠三百二十二立紅氈笠六十頂靑轉羽四十八箇靑紙油衫五十領紙油衫三百七十一領十三哨方色木號衣一千四百六十九領參陣五哨軍靑染木單狹袖六百三十領馬軍紙油衫二百七十一領步軍紙油衫三百七十八領哨油苫九十浮技藝軍蟒龍衣六領戰巾十頂倭襪十件火車十三輛一窩蜂二百八十四柄涉板二十六坐手弩弓一百張弓弦四百八十箇箭一萬五百箇弩機一百坐 交子弓家三百箇弓絃二百箇環刀熟麻纓子三千箇平軍幕六件靑邊帳幕三浮軍幕紙雨備九浮鐵燈籠二十六雙各旗幟銅絲籠六十坐各旗幟紙雨備六百四十一件火藥木桶一百箇刀斗一千蘆貫耳箭十四枝令箭十三枝藍禾紬令箭雨備靑紙貫耳雨備各一件鉦八坐鋸二坐嗜哱囉五坐書龍鼓六十坐行鼓二十五坐長鼓二坐號笛五雙喇叭三雙細點子木大角各一雙螺角二雙水牛皮大砲匣二箇煮硝大釜五坐水鐵丸九百七十箇次大箭八箇〇禁火器械秩大鎌三十柄釜子二十柄小時郎十五柄木桶十五坐柳篋二十坐汲水柳瓢子二十坐層梯五機〇修補秩烏銃一千四十二柄環刀五千三十柄交子弓六百張銅鎬一百七十坐長鼓鉦各三坐敎以軍器新備之數若是夥然監董內監折衝具錫夏已經實僉知令該曹相當窠收用閑良李鍾泰亦令兵曹及禁御兩營中收用看役閑良池瑞旭前銜將校金昌倫 三營中相當校任差定府校嘉義林俊昌 安文欽令外營收用邊首二名帖加成給其餘吏屬等令外帑庫分等施賞〇訓鍊都監啓言謹依水原府軍器新備修補數爻別單判付看役前銜將校金昌倫本局旗牌官權差〇御營廳啓言水原府軍器新備修補監董內監閑良李鍾泰本廳敎鍊官加設差下〇禁衛營啓言水原府軍器新備修補看役閑良池瑞旭別武士有窠差定

강 忠淸監司 韓用和狀罷藍浦縣監 尹愭仍請前縣監 權襼冒禁創設祠院之罪令攸司稟處
목狀啓以爲藍浦縣監 尹愭牒呈內縣監五月到任聞前縣監創建失子影堂於新安面武夷峰下自春始役至夏而成七月奉安影幀又有士論亦因前縣監倡議營建彝齋白頤正之祠於其傍大典通編有外方祠院冒禁創設之律近來更有申禁揭洋之事實有不稟朝家之嫌至若朱夫子影堂則守護之院生亦宜有一定之額報來矣蓋凡祠院影堂之私自創設通編禁條至爲嚴重揭洋飭敎又極申明則今此創設事極驚駭以朱子影幀還安於前日所奉處白頤正祠卽爲毁撤之意嚴飭追後到付該縣監牒呈內營題辭意分付儒生則儒生等諉以祭享迫近不卽擧行云前縣監之不有朝禁擅自營建已極可駭時縣監則不卽論報任其造成終又不遵營飭徒事漫漶亦甚駭然該縣監 尹愭爲先罷黜前縣監 權襼冒禁創設之罪竝令攸司稟處當初建祠發論之儒生等自臣營照法嚴處計料

8월 19일
강召見左議政 **蔡濟恭** 右議政 李秉模 戶曹判書 金華鎭于行殿
목予謂濟恭曰今將還發而必欲趁未暮還宮卿則何時當還濟恭曰下情必欲隨駕而萬無自力之望雖數日之間甚覺悵慕矣予曰戶判亦欲使之落後故有此召見予曰右相今番事過矣卿以忠憤所激雖有伊日事而予則爲卿地欲出節拍卿何過引耶秉模涕泣對曰恩敎至此今又鸞駕臨發臣於此時不敢更有所達矣

강命先後廂京軍門馬步軍以還官後試射放事令各該將臣曉諭仍令勞問
목敎曰今番行幸程道名雖二百里其實過三百里有餘而軍兵之勞若可謂初有先後廂京軍門馬步軍還宮後試射放以爲慰悅之地事令各該將臣曉諭後仍令勞問

강自**華城行宮**進發御**遲遲臺**
목三吹後具軍服乘馬出**中陽門** **左翊門** **新豊樓**由左右軍營前路出**長安門**至萬右渠北岸命外營大旗幟落後敎曰爾等有應受之賞格耶承旨李 益運轉奏曰各給木一匹云矣予曰善爲退去駕到遲遲峴下馬少憩于臺上分給酒饌於外營校卒之落後者

강晝停于始興行宮
목自**遲遲臺**乘馬進發至本縣下馬御行宮

강駕臨**龍驤鳳翥亭**
목自始興行宮乘駕轎至鷺梁行宮降轎御**龍驤鳳翥亭**

강遣承旨致祭于六臣四忠祠鷺江書院
목敎曰前已致侑而輦路又過其前指點咨嗟曠感深切六臣四忠祠及鷺江書院遣承旨致發發文當親撰

강還宮召見領府事 洪樂性留都大臣金履素于駕前
목具戎服乘馬還發宣傳官跪稟升橋砲三聲又信砲三聲擂鼓鳴鑼共三通升旗擧起火一枝開金大吹打到舟橋至中紅箭門召見舟橋都廳具明遠敎曰船人之一年再役勞苦甚矣卽日解送俾爲船運之地也仍命宣傳官一員下橋砲及落旗節次除取稟擧行以信箭解送元隨駕軍兵自江頭留陣軍兵分作先後廂入崇禮門至儲慶宮 洞口領府事 洪樂性柢迎於路左命入時樂性曰展省陵園聖慕克伸多日勞動回鑾萬安下情不勝欣喜矣予曰果爲好往好還矣至敦寧府前路命留都大臣入侍履素曰四日之內往還二百餘

里勞動若此聖體若何予曰一樣矣履素曰今番萬萬驚心而路次故不敢以長語仰陳矣予曰然矣仍命承旨出標信解嚴入敦化門由建陽門 保定門入萬八門還內

제11차 1798년(정조 22) 2월 1일~5일(4박 5일)

1. 조선왕조실록

화성의 행궁에 갔다가 몸이 편찮아지다

대가가 **화성(華城)**의 행궁(行宮)에 갔다. 상이 편찮으시자, 대신·각신·약원 등이 안부를 물으며 **유여택(維與宅)**에 입시하였다. 좌의정 **채제공**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조종(祖宗)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으신다면 어찌 예절에 구애되어 성체 보호하시는 도리를 생각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재전(齋殿)인데 성상의 행차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원소(園所)만 바라보시어도 성상의 사모하시는 마음을 이미 풀으셨을 것인데, 어찌 꼭 재소(齋所)까지 나아가시어 몸소 작헌(酌獻)의 예를 행하신 다음에야 정성을 폈다고 이르겠습니까. 내일 있을 전배(殿拜)를 우선 정지하시고, 성상의 기후가 쾌차하시기를 기다려서 곧바로 환궁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매년 이 행차 때마다 일찍이 한 번이라도 무병하게 왕래한 적이 있었던가. 사세가 그러지 않을 수 없는데, 어찌 몸이 불편하다 하여 번번이 물려 행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원침(園寢)을 참배하는 것에 관계되는 일인데, 어찌 감히 일호라도 겉치레로 할 수 있겠는가. 병이 만일 억지로 하기 어렵다면 곧바로 환궁하는 것도 안될 것이 없겠지만 만일 억지로라고 할 만하다면 기왕 이곳에 와놓고 감히 몸소 전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배의 날짜를 우선 물려 정하라." 하였다.

○乙未朔/駕詣**華城行宮**. 上候未寧, 大臣·閣臣·藥院承候, 入侍于**維與宅**. 左議政**蔡濟恭**曰: "聖上, 以陟降之心爲心, 則豈可拘於禮節, 不思所以保嗇之道乎? 此地便是齋殿, 鑾蹕戾止, 瞻望珠丘, 聖慕已伸, 何必駕詣齋所, 躬行酌獻, 然後謂之展誠乎? 明日展拜, 姑爲停止, 待聖候復常, 直爲回鑾好矣." 上曰: "每年此行, 何嘗有無病往來之時乎? 事勢不能不然, 何可以氣不平, 番番退行也? 事關拜園, 何敢一毫或涉於文具? 如難强, 直爲回鑾, 無所不可, 如可强, 旣到此地, 敢不躬展? 日字姑爲退定."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2월 1일(을미) 1번째기사>

예조 판서 조상진을 화성의 교궁에 보내 석채를 행하게 하다

예조 판서 조상진(趙尙鎭)을 **화성**의 교궁(校宮)에 보내어 석채(釋菜)를 행하게 하였다. 대체로 이날 밤이 마침 석채를 행할 때였으므로, 이 명이 있었던 것이다.

○遣禮曹判書趙尙鎭, 行釋菜于**華城**校宮. 蓋是夜, 適値釋萊, 有是命.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2월 1일(을미) 2번째기사>

암행 어사 임한호 등에게 연로(輦路)의 민폐를 알아오도록 하다

암행 어사 임한호(林漢浩)·정만석(鄭晩錫)을 나누어 파견하여 연로(輦路)의 민폐를 염탐하게 하였다.

○丙申/分遣暗行御史林漢浩·鄭晩錫, 廉察輦路民弊.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2월 2일(병신) 1번째기사>

화성의 백성들에 대한 전세 감면을 의논하다

유사(有司) 제신(諸臣)을 행궁에서 소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침(園寢)을 받들어 모셔온 지가 지금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 부(府)와 이곳 백성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베풀지 못한 것이 어찌 나의 본의이겠는가. 성지(城池)가 아무리 튼튼할지라도 결국 민심이 절로 성(城)을 이루는 것만은 못한 것이니, 민심이 튼튼해진 다음에야 공호(拱護)를 오로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주(楊州)·고양(高陽) 등 능침 모신 곳들에 대하여 열성조에서 전세(田稅) 감면의 혜택을 내려주신 것이 또한 오늘날에 내가 우러러 계승해야 할 한 가지 일이다. 그런데 모곡을 면제해주는 한 가지 일은 생각해온 지 이미 오래인데도 아직껏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을묘년, **정리곡(整理穀)**을 설치할 때에 이것을 **화성**에 붙여서 모곡을 면제해주고자 하였으나, 여러 의논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득이 각도에 나누어주고 말았었다. 그런데 정리곡을 설치한 것이 비록 자혜(慈惠)를 널리 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3백여 주군(州郡)에 포치(布置)해 두고 보면, 이것을 거두어들이고 나누어주는 즈음에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이런 명색(名色)을 가지고 일호라도 폐단을 끼치는 단서가 있게 되면 이는 대단히 나의 본의가 아니다. 애당초 정리곡이라 이름하였고 보면 다시는 모곡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내가 처음에 이를 설치한 뜻이다. 그러니 이제 이 곡식을 서로 전환(轉換)시켜 본부(本府)의 곡식 이름을 정리곡으로 고쳐서 인하여 그 모곡을 면제해 주어서, **화성** 한 부(府)로 하여금 영원토록 모곡의 명색이 없도록 한다면 **화성**의 백성들에게 막대한 혜택이 될 것이다."
하였는데, 제신 중에 혹자는 '모곡 전체를 감해야 한다.'고 말하고, 혹자는 '지출을 계속 대기가 어려우니 의당 모곡의 절반만 감해야 한다.'고 말하여, 의논이 일치하지 않았다.
○召見有司諸臣于行宮. 上曰: "陪奉園寢, 今爲十年, 尙無惠澤之及於是府是民者, 此豈本意也哉? 城池雖完, 終不若衆心之成城, 民心固然後, 拱護可專. 楊州·高陽等陪奉陵寢處, 列聖朝蠲除田稅之惠澤, 亦是今日之仰述之一端. 除耗一事, 入量者已久, 尙未能斷而行之. 乙卯**整理穀**設置時, 欲爲屬之**華城**, 仍欲除耗而因諸議不一, 不得已分給各道. 本事雖出廣慈惠之意, 布置三百州郡, 斂散之際, 不無弊端, 因此名色而有一毫貽弊之端, 則大非予本意. 名以**整理穀**, 則不復取耗者, 乃予設置之初意也. 乃以此穀, 互相轉換, 本府穀名, 改以整理, 仍除其耗, 使**華城**一府, 永無耗穀名色, 則在華民爲莫大之惠矣." 諸臣或言 '當減全耗', 或言 '支放難繼, 當減半耗', 議不一.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2월 2일(병신) 2번째기사>

화성의 백성들에 대해 환곡에 대한 모곡이 없도록 하다
제신이 안부를 묻고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을묘년, 정리곡을 설치할 적에 이것을 **화성**에 붙여서 모곡을 면제해주려고 하였으나, 여러 의논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를 각도에 나누어주고 말았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자혜를 널리 펴는 뜻이라고는 하나, 3백여 주군에서 거두어들이고 나누어주는 즈음에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이는 대단히 나의 본의가 아니다. 지금 이 곡식을 모조리 본부에 붙여서 **화성부**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환곡(還穀)에 대한 모곡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대신 이하 모두가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서경(西京) 시대는 옛 시대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혜택을 베푸는 데 있어 매양 전조(田租)의 절반을 감해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 달라서, 토지를 소유한 자는 거개가 부호이기 때문에 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서민에게는 미치지 않

는다. 그러니 지금의 사세로 말하자면 반드시 모곡을 면제해주는 것만이 오로지 서민의 혜택이 될 것이다." 하였다.
○丁酉/諸臣承候入侍. 上曰: "乙卯整理穀設置也, 欲屬之華城, 仍除其耗, 因諸議不一, 分給各道. 雖曰廣慈惠之意, 三百州郡, 斂散之際, 不無貽弊, 大非予本意. 今以此穀, 盡屬本府, 使華城一府, 永無還穀之耗何如?" 大臣以下皆稱善. 上曰: "西京去古未遠, 故爲民施惠, 輒減田租之半. 今則異於是, 有田者率多豪富, 故減租之惠, 不及於小民. 以今言之, 必除其耗, 然後還耗之除, 專爲小民之惠矣."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2월 3일(정유) 1번째기사>

화성의 백성들에게 모곡을 면제해 주도록 하다
하교하였다. "본부에서 원침을 받듦으로부터 나 소자(小子)는 부여잡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비통함을 안고서도 날마다 몸소 가서 쇄소(灑掃)를 점검하여 신혼(晨昏)의 정성을 펴는 것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오직 이 부(府)의 백성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길이 재수(宰樹)를 바라보며 함께 원침을 수호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이 부를 제향(帝鄕) 같이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이곳 백성들을 친구 대우하듯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조세를 감면하는 정사는 빈부(貧富)간에 똑같이 시행하기 어렵고, 백성에게 호역(戶役)을 면제해주는 것은 고금이 각각 그 사의(事宜)가 다른지라, 오직 조적(糶糴)의 모곡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인화(人和)의 계책을 삼노라. 그러니 이제부터는 화성의 환곡(還穀)과 향곡(餉穀)을 아울러 정리곡이라 일컫고 인하여 그 모곡을 면제해주되, 이곳이 유사(留司)로 승격이 된 이후로 백성들이 곡식이 많이 출납되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수령들로 하여금 거두고 낼 때 이 뜻을 알아서 하게 할 것이다."
○敎曰: "自奉園寢於本府, 予小子抱莫攀靡逮之慟, 而不能日日躬檢灑掃, 以展晨昏之誠. 惟府之群黎百姓居是地, 長瞻宰樹, 共護珠丘, 予安得不視是府如視帝鄕, 待是民如待故人? 然減租之政, 貧富難以竝施, 賜復於民, 古今各異, 其宜惟糶糴之除耗, 爲人和之策. 自今華城還餉, 竝稱整理穀, 仍除耗穀, 而陞爲留司以後, 民以穀多爲苦, 令守令, 知此意斂散."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2월 3일(정유) 2번째기사>

수원의 중군을 차출하다
수원(水原)의 중군(中軍)을, 곤수(閫帥)나 방어사(防禦使)를 이미 지낸 사람으로 차출하도록 명하였다.
○命水原中軍, 以已經閫帥防禦使人差出.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2월 3일(정유) 3번째기사>

원침 밑의 화소(火巢)로 들어간 민전에 대해, 백성들의 피해를 보상하다
원침 밑의 화소(火巢)로 들어간 민전(民田)으로서 3, 4차에 걸쳐 새로 한계를 정한 것에 대하여 그 값을 더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앞서 화소로 꺾여 들어간 민전에 대해서는 그 값을 갑절로 지급했었는데, 그후 새로 한계를 정할 때는 유사가 값의 기준을 앞서와 같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상이 그 사실을 듣고 특별히 더 지급하도록 명한 것이다.
○命園底民田之入於火巢, 三四次定界者, 加給只直. 先是, 民田之折入火巢者, 倍給其直, 其後新定界時, 有司準直不如前, 至是, 上, 聞之, 特命加給.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2월 3일(정유) 4번째기사>

김후를 황해도 병마 절도사로 삼다

김후(金煦)를 황해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以金煦爲黃海道兵馬節度使.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2월 3일(정유) 5번째기사>

유도소로 가는 군호를 선전관으로 하여금 받들어 가도록 하다

병조 판서 이시수(李時秀)가 말하기를, "미리 계하(啓下)한 군호(軍號)는 오늘까지로 끝나니, 내일 이후 3일 간의 군호는 의당 여기에서 계하하여 유도소(留都所)로 봉송(封送)해야 하는데, 금군을 시켜 가져가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호의 사체는 지극히 중하고도 비밀하여 병부(兵符)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제승 전령패(制勝傳令牌)로 명령을 전하되, 의당 선전관을 시켜 받들고 가도록 해야지 어찌 금군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명하여 전령(傳令) 한 장을 써서 선전관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가서 유도 대신 및 훈련 대장·어영 대장에게 전하도록 하게 하고, 또 군호를 봉(封)한 것을 내리면서 전교하기를, "군호를 봉하여 내리노니, 대신은 전령의 말뜻에 의거하여 수궁 승지(守宮承旨)에게 전해서, 그로 하여금 병조의 낭청에게 패(牌)를 발하여 날짜를 나누어서 반포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兵曹判書李時秀曰: "軍號之預爲啓下者, 止於今日, 自明日以後, 三日軍號, 當自此中啓下, 封送於留都, 所令禁軍持去乎?" 上曰: "軍號事體至重且秘, 無異兵符, 故以制勝傳令, 當使宣傳官奉往, 豈可付之禁軍乎?" 仍命書傳令一度傳給宣傳官, 使之往傳于留都大臣及訓御將, 又下軍號封, 敎曰: "封下軍號, 大臣依傳令, 辭意傳于守宮承旨, 發牌兵曹郎廳, 排日頒布."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2월 3일(정유) 6번째기사>

광주 성내 교리들의 봉급을 오로지 환곡에 의존하던 폐단을 바로잡다

상이 이르기를, "근자에 듣건대, 광주에 진(鎭)이 나간 이후로 속읍(屬邑)에 분치(分置)한 환곡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대체로 성내(城內) 교리(校吏)들의 봉급을 오로지 환곡에 의존하는데 원곡(原穀)이 점차 모축나게 되자 산성(山城)의 환곡 5천 석을 20개 읍에 나누어 유치하고 이를 남성향곡(南城餉穀)이라 한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즈음에 기읍(畿邑)이 폐단을 입는 것이 또한 의당 북한산성 환곡의 폐단과 같이 될 것이니, 일찌감치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다."

하니, 우의정 이병모가 말하기를, "이 곡식을 각읍에 나누어 유치하여 모곡을 받아 돈으로 만든 것은, 포곡 징수를 막고 교리들의 봉급을 충당하려는 데서 나온 것인데, 이로 인해 민폐가 이미 많고 작간할 수 있는 길이 층층으로 생기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상께서도 이미 그 사실을 환히 아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원곡 절미(折米) 5천여 석을 도내(道內) 유고(留庫)에 소속시키고, 기영(畿營)으로부터 아무 곡식[某樣穀] 가운데 모조(耗條) 3백 석을 해마다 상정가(詳定價) 9백 냥으로 환산하여 바꿔서 편의에 따라 광주로 이송하고, 부족수 2백 석의 대금에 대해서는, 연전에 진(鎭)이 나갔을 때 쓰고 남은 쌀 2백 석을 우선 수신(守臣)에게 붙여둔 것이 있으니, 이것으로 보충을 하면 여유가 작작하겠습니다. 이 폐단을 바로잡는 방도는 아마 이 방도보다 나을 것이 없을 듯합니다. 요즘에 듣건대, 호서(湖西)에 바꾸어 둔 남성향곡 5천여 석도 그 폐단이 경기 각읍과 다름이 없다고 하니, 그 또한 이상의 예에 의거하여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上曰: “近聞廣州出鎭之後, 屬邑有公置之還, 蓋因城內校吏, 支放專賴餉還, 原穀漸耗, 乃以山城穀五千石, 分定於二十邑, 謂之南城餉穀. 如是之際, 畿邑受弊, 又當如北漢還上之弊, 不可不趁卽釐正.” 右議政李秉模曰: “此穀之分置各邑, 取耗作錢者, 出於杜反逋充支放, 民弊已多, 奸竇層生. 聖敎已俯燭. 自今以後, 元穀折米五千餘石, 屬之道內留庫, 自畿營某樣穀中, 耗條三百石, 每年以詳定價九百兩, 從便移送於廣州, 二百石不足之代, 則年前出鎭時有用餘米二百石之姑付守臣者, 以此充補, 綽有餘裕. 矯捄之道, 恐無出此. 近聞南城餉穀五千餘石立之換在湖西者, 爲弊與畿邑無異云, 亦依右例釐正宜矣.” 從之.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2월 3일(정유) 7번째기사>

현륭원 행행시 광주에 향곡(餉穀)을 첨가했던 민폐를 바로잡다

경기 관찰사 이재학(李在學)이 아뢰기를, “**현륭원** 행행시에, 광주에 향곡을 첨가한 것이 열읍의 민폐가 되었다 하여 특별히 바로잡으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비국이 원곡 절미 5천여 석을 도내 유고에 소속시키고, 아무 곡식 가운데 모조 3백 석을 해마다 상정가로 바꾸어서 기영(畿營)으로부터 편의에 따라 광주에 이송할 일로 관문을 발송하여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곡을 모조리 유고에 소속시키고서 다른 곡식으로 돈을 만든다면 명색(名色)이 서로 바뀜으로써 작간의 폐단이 생기기가 쉽고, 나누어 주거나 유치하는 일 또한 장애됨이 많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기필코 다른 곡식으로 명색을 바꿀 것이 아니라, 원곡을 가지고 관례대로 조적(糶糴)을 하여 그 모곡을 받아서 돈을 만드는 것이 좋으리라 여깁니다. 그런데 원곡 절미 5천여 석에 대한 모조를 만일 3백 석으로 정한다면 모조리 나누어주거나 절반만 나누어주거나 간에 그 숫자가 워낙 서로 맞지 않으니, 이 또한 편리하지 못한 폐단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하여, 도내 각읍에 소재한 광주에서 보태준 향조(餉租) 1만 3천 석을 해마다 절반은 유치하고 절반은 나누어주어, 그에 대한 모조로 절미 2백 60석을 받아들이되, 각읍으로부터 상정가에 의거하여 1석마다 3냥씩으로 돈을 만들어 해부(該府)로 이송하고, 부족수인 절미 40석에 대해서는 해부에서 좋은 방도를 따라 조처하도록 한다면 적법(糴法)을 엄중히 할 수 있고, 민폐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말이 매우 옳으니, 여기에 의거하여 하라.”하였다.
○京畿觀察使李在學啓言: “園幸時以廣州添餉穀之爲列邑民弊, 特下釐正之命. 而備局以元穀折米五千餘石, 屬之道內留庫, 就某樣穀中耗條三百石, 每年以詳定價, 自畿營從便移送事, 發關行會矣. 元穀盡爲留庫, 而以他穀作錢, 則名色互換, 奸弊易生, 分留亦多掣礙. 臣意則不必以他穀換名, 以元穀依例糶糴, 取耗作錢. 而元穀折米五千二百石, 耗條若以三百石爲定, 則盡分與半分之間, 其數不得相當, 此亦爲難便之端. 自今爲始, 道內各邑所在廣州添餉租一萬三千石, 每年半留半分, 取其耗條, 折米二百六十石, 自各邑依詳定價, 每石三兩式作錢, 移送於該府, 而不足折米四十石, 自該府從長措處, 則糴法可嚴, 民弊可休矣.” 上曰: “所奏甚是, 依此爲之.”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2월 3일(정유) 8번째기사>

현륭원에 나아가 친제를 행하다

상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므로, **현륭원**에 나아가 친제(親祭)를 행하고 **현륭원** 위를 봉심한 다음, **화성**의 행궁에 돌아와 머물렀다.
○戊戌/上候漸復, 詣**顯隆園**, 行親祭, 奉審園上, 還次**華城行宮**.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2월 4일(무술) 1번째기사>

화성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다

전교하였다. "**화성** 성지(城址)의 가기(家基)로서 납세(納稅)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납세를 해온 곳 및 화소(火巢)에 추가로 경계가 정해진 전토로서 관천고(筦千庫)에 소속되고도 미처 면세를 받지 못한 곳을 아울러 면세해주도록 하라."

○敎曰: "**華城**城址家基之不當納稅而出稅者, 及追定界火巢田土之屬於筦千庫而未及免稅處, 竝免稅."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2월 4일(무술) 2번째기사>

화성 이외의 제도에 유치한 정리곡(整理穀)들을 모두 상진청에 소속시키다

명하여 **화성** 이외의 제도(諸道)에 유치한 정리곡들을 모두 상진청(常賑廳)에 소속시켜, 해당 청으로 하여금 관례대로 조적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비변사의 아뢴 말에 따른 것이다. 【심도(沁都)의 경우는 상진청이 없으므로, 군향(軍餉)을 더 만들도록 명하였다.】

○命**華城**外諸道所置**整理穀**, 屬之常賑穀, 令該廳, 依例糶糴, 從備邊司啓也.【沁都則無常賑穀, 故命添作軍餉.】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2월 4일(무술) 3번째기사>

제도에 있던 수성 정리곡을 비국의 구관곡(句管穀)으로 옮겨 만들다

명하여 제도에 소재한 수성 정리곡(修城**整理穀**)을 비국의 구관곡(句管穀)으로 옮겨 만들고, 비국의 구관곡이 없는 고을은 명색을 바꾸어 다른 고을에 합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상이 '정리곡은 이제 이미 이환(移換)되어 당초에 설치했던 이른바 수성 정리곡이 본의의 명색이 아니므로 이를 거행하기에 현란스럽고 폐단도 한두 가지가 아니니, 이제 변통하는 때를 당하여 좋은 방도에 따라 구처(區處)하라.' 고 전교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묘당이, 이를 비국의 구관곡으로 옮겨 만들어 제도에 행회(行會)하여 수성 정리곡으로 명칭되는 것이 다시는 각도 각읍에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며 그렇게 하기를 청하니, 이를 윤허한 것이다.

○命諸道所在修城**整理穀**, 移作備局句管穀, 其無備局句管穀邑, 換名合錄於他邑. 上, '以**整理穀**, 今旣移換, 所謂修城**整理穀**之當初設置, 非本意名色, 眩於擧行, 貽弊不一其端, 及今變通, 從長區處' 爲敎. 至是廟堂請移作備局句管穀, 行會諸道, 俾知修城**整理穀**名之, 更無所在於各道各邑爲宜, 允之.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2월 4일(무술) 4번째기사>

화성의 석채 때, 반열에 참여했던 유생들을 시상토록 하다

좌의정 **채제공**에게 명하여 **화성**의 석채(釋菜) 때 반열에 참여했던 유생들을 시취(試取)하고 차등있게 시상하도록 하였다.

○己亥/命左議政**蔡濟恭**, 試取**華城**釋菜時, 參班儒生, 施賞有差.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2월 5일(기해) 1번째기사>

환궁하다

환궁(還宮)하였다.

○還宮.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2월 5일(기해) 2번째기사>

2. 일성록

2월 1일

강駕詣**華城行宮**

목鼓三嚴具軍服乘轎出萬八門 保定門由建陽門 敦化門至崇禮門外歷臨關王廟行再拜禮命守直官邊將差送守僕等考例施賞而東廟守直官守僕等一體爲之仍乘轎進發至舟橋 宣傳官啓稟渡涉號令如例少駐**龍驤鳳翥亭** 宣傳官啓稟落旗予曰出宮時有毛具下敎而不爲傳之當該司謁令留都所決棍後降定哨軍至始興縣行宮晝停命鳴鑼單擺開摔鈸等節次至還宮竝除取稟擧行壯勇大將率鄕軍二哨善騎隊二哨爲先廂禁將率兵馬一哨爲後廂龍虎營亦爲後廂訓局步軍二哨壯營京步軍二哨上番軍一哨使之落後從便待令於信地少頃進發至**肆覲坪**雪意頗緊命侍衛軍兵雨具從便爲之至**眞木亭**前路**壯勇外使** 徐有隣率親軍衛別軍官及入防軍四哨出待仍作先廂之前列駕入**長安門**由鍾街左右軍營前路**新豐樓** **左翊門**入維與門降轎仍御行宮命旗幟取稟等節依例擧行予謂承旨 李益運曰予氣甚憊背寒咳嗽尤爲難堪明日拜園恐難如期爲之矣益運曰朝者歷臨南廟時仰聆玉音仰認有外氣已不勝下情之煩悶今承下敎症候有添萬萬焦灼矣俄於閤外見大臣閣臣爲承候來待矣予曰今則不可酬應難以召接卽爲出去分付外使與園官祭物姑勿熟設祭官勿爲等待分付兵曹詣園時先後廂軍及各樣軍兵去就姑勿磨鍊軍令亦勿入之更待下敎也

강召見左議政 **蔡濟恭** 右議政 李秉模 藥房提調 沈煥之 副提調 徐龍輔及隨駕諸閣臣于**維與宅**

목承候也○濟恭曰伏聞入侍承宣之言聖體有欠安之節下情不勝驚慮卽今諸節若何予曰膈痰凝結又有寒氣往來似疝非疝誠爲可悶矣秉模曰今日風雪甚爲不佳以致聖候愆和下情萬萬憂悶矣煥之曰水刺之節若何予曰膈痰如是凝滯姑未進御矣內閣提學 鄭民始曰近以日氣寒冷之故外間輪行之感亦多有之而今日晩後風雪尤爲乖常此時觸冒安得不致此症候下情萬萬悶迫矣予曰非但今日觸冒自去月念間膈氣往來甚覺不平今日動駕非不欲更退數日而軍兵之旣聚旋退亦甚可悶不得已出宮矣濟恭曰軍兵之弊雖曰可悶比之聖躬調攝輕重果何如也此等處每念節宣之方下情甚爲悶迫矣予曰卿等亦庶幾知之乎每年此行何嘗有無病往來之時乎非特外氣而已情理與事勢不能不然何可以氣少不平之故番番退行也煥之曰醫官方入來使之診候後議定湯劑何如予曰不必診脈使之各陳所見議定當進之劑可也仍命醫官 李周憲 李惟鑑 朴宗潤招入議藥 周憲曰今此症候痰爲主而外氣尤緊不換金正氣散依本方進御似好矣宗潤曰藿香正氣散似勝矣惟鑑曰正氣散本方中白朮代入蒼朮白茯苓代入赤茯苓進御似勝矣予曰諸醫只知外氣不知病源故其言如此矣予意則小靑龍湯似好更問于諸醫可也周憲等曰果好矣予仍敎曰進御加減靑龍湯一貼煎入煥之曰今番隨駕諸醫雖於御醫中蒙點而皆未免生疏莫重御藥不可率爾議定首醫 康命吉使之催促出來好矣予曰朝於**龍驤鳳翥亭**已令出來似當匪久來到矣民始曰然則姑俟首醫之來更爲議定似好矣予曰俄下榻敎今姑置之濟恭曰臣等俄於閤外有所講確者矣上候雖是一時微感旣如是未寧晩來風日又甚寒冷明日之必爲和暢有未可知目今群下之所仰望者豈有過於調護聖躬而聖上亦以陟降之心爲心則尤豈可拘於禮節不思所以保嗇節宣之道乎此地便是齋殿鑾蹕戾止瞻望珠邱聖慕已伸矣何必駕詣齋所躬行酌獻然後方可謂之展誠乎明日展拜姑爲停止更待數日聖候之夬復常度自此直爲回鑾似好矣秉模曰臣亦俄與僚相爛熳商確而如是爲定於情於禮少無未安矣予曰事關拜園何敢一毫或涉於文具病如難强則雖直爲回鑾無所不可如或可强則旣到此地何敢不躬展此則當觀勢有所下敎展拜日子則姑爲退定好矣民始曰展拜日子旣有更待下敎之命各

司各營盤纏糧米葛豆當依丙辰年例竝自**外整理所**更爲磨鍊上下乎予曰唯

강命明日**顯隆園**親祭更待下敎爲之
목

강命藥院提調隨駕閣臣明日入侍
목 藥院提調及隨駕諸閣臣更爲承候請對有是命

2월 2일

강召見左議政 **蔡濟恭** 右議政 李秉模 藥房提調 沈煥之 副提調 徐龍輔及諸閣臣于**維與宅**
목大臣閣臣承候藥院請診也○濟恭等曰夜間靜攝中聖候若何予曰膈氣尙未夬降姑待數日欲爲强作矣濟恭曰旣已動駕於此地則雖未行禮而心香之上格誠意之流通實與躬享無異觸寒勞動必有添損之慮多日滯留殿宮之遠外貽憂亦必不細少待聖候之差勝仍卽回鑾是臣區區之望也予曰更當觀勢有所下敎而如可强則豈可不親行乎予之今番諸症實由於遇災修省之餘恐懼之心自不能已心旣不安病隨而發蓋恐懼修省自恐懼修省保嗇身心自保嗇身心而因彼損此亦有愧於學力之不足矣煥之曰康命吉今已待令濟劑當爲議定矣予曰湯劑別無可用者矣仍命醫官 康命吉招入議藥 命吉曰感候雖緊只是外氣善爲調攝無致觸寒則自當有康復之效湯劑則姑待夕間更議似好矣

강命園所設布帳待令守令及植木守令等竝退去
목

강命傳香承旨馳詣文廟奉審摘奸
목釋菜在明也

강特遣禮曹判書 趙尙鎭行釋菜于本府校宮命分獻官以閣臣 玉堂分差
목敎以今夜適値釋菜本府校宮遣宗伯行祀分獻官亦以隨駕閣臣 玉堂中分差○予敎承旨 李泰永曰祝文則左相旣經留守使之撰出可也

강命巡監軍及初二日入直局別將 把總 哨官 內三廳 禁衛營把總 哨官守門將以前受點人至回鑾前擧行
목 承旨 李益運啓言謁園旣有退行之命回鑾亦當差退日子矣巡監軍及初二日入直局別將 把總 哨官 內三廳 禁衛營把總 哨官守門將似當以前受點人擧行而自下不敢擅便敢此仰達從之

강命留陣留營軍兵去就以文跡擧行之意諭留都大臣
목 承旨 李益運啓言留陣留營軍兵去就雖以信箭指揮不可無文跡請以此意成送有旨于留都大臣處從之

강命兵曹判書 李時秀等爲試官行試射于**講武堂**兼察壯勇大將 **趙心泰**等爲試官行砲放于**東將臺**
목敎以試射試所**講武堂**爲之試官 兵曹判書 李時秀 宣傳官 金益彬 親軍衛別將 曺允彬爲之砲放試所**東將臺**爲之試官兼察壯勇大將 **趙心泰** 別軍職 李溏 **禿城中軍** 金焞爲之分詣試所後一中以上榜目修啓

강召見御史 林漢浩 鄭晩錫于**維與宅**

목予曰爾等來此後有所執捉者乎晩錫曰只有待令之命未承廉察之敎故來時道路雖或周視而亦不敢如例探察矣予曰本府地方甚廣海面峽村民弊疾苦無以詳知爾輩分往各別詳探還宮後書啓而雖費多日儘勿草率一一知來可也

강召見大臣閣臣 藥院提調及**壯勇外使** 徐有隣 兼內使 **趙心泰**于**維與宅**仍詢問本府還穀除耗便否及外營軍丁移換釐正之方命園幸沿路本營兵軍糧以價本換用本營儲留米園所賭地粗輸納便宜使外使擧行

목大臣閣臣承候藥院請診也○左議政 **蔡濟恭**等曰午間聖體候若何予曰姑未夬愈湯劑方欲一試矣仍敎曰進御桂苓飮一貼煎入予曰本府陞營後以還穀之數多民弊不些云然否有隣曰本府民戶爲一萬五千新舊還各穀不過四萬一千餘石則以穀較民不甚爲弊矣予曰左相亦曾經留守其時果何如濟恭曰臣之待罪時亦不知穀多之爲弊矣予曰己酉以後作穀添餉果爲幾許**心泰**曰庚戌癸丑兩年貿租一萬五千一百九十二石零僧倉米一千石太五百石矣予曰比前果爲夥然留庫各穀數爲幾許乎有隣曰通境內各倉留庫不過米一千一百石零租太二千餘石矣予曰留穀之數若是些少由於耗條之支放而城餉豈不可多積乎且分還不以大中小戶分等均分致有小民之弊矣有隣曰留庫之些少專由於盡分取耗而且以分還之法言之自來不均通一境還戶不過數三千戶俱是貧殘之類而外此不受者稱以饒戶行賂見免已成謬例自今年使判官略加釐正卽今當受之戶似近四千矣且城內留庫之太零星已極疏虞又從以庫舍不足至有倉庭露積之弊以倉廩而較之城池太不相稱年前以倉材有斫置於龍仁 廣州等地者方謀輸運營造而事力自多不逮誠甚可悶矣予曰陪奉園寢今爲十年荏苒因循尙無仁政惠澤之及於是府是民者此豈本意也哉城池雖完終不若衆心之成城民心固然後拱護可專必欲使其安生樂業者不獨爲民情之胥悅蓋爲所重而然楊州 高陽等陪奉陵寢處列聖朝蠲除田稅之惠澤亦是今日仰述之一端而除耗一事入量者已久而尙未能斷而行之矣乙卯**整理穀**設置時欲爲屬之**華城**仍欲除耗而因諸議之不一不得已分給各道本事雖出於廣慈惠之意布置三百州郡斂散之際不無弊端因此名色而有一毫貽弊之端者大非予本意而名以**整理穀**則不復取耗者乃予設置之初意也今以此穀互相轉換本府穀名改以整理仍除其耗使**華城**一府永無耗穀名色則非但華民爲莫大之惠四方行旅皆有欲出其塗之心矣諸臣各陳所見也濟恭曰頃者城役之纔畢自上以人民富實之策有所講究賤臣常語于心曰聖上爲華民深恩厖澤無所不暨今若更求惠政則莫大於還上之除耗不但目下之言足聽聞書之史冊光明正大且四方之民擧皆轉相告諭曰**華城**一府永不收耗云爾則其將繈至輻湊如水就下一歲二歲樂赴爭集將見邑居之不能容矣今承下詢只有欽頌奉承而已更有何他辭乎右議政 李秉模曰今此除耗之命實出曠絕之恩而第支放之難繼停退之難便恐不無窒礙之慮若有某樣區處之道則雖斷而行之亦無所不可矣有隣曰除耗之恩可謂曠絕千右而右相之言亦出經遠之謨全耗半耗間正合商量處之矣內閣提學 鄭民始曰全減耗條事係難愼畿邑又異嶺湖雖隣邑米條無推移之道支放之需無以充補設有錢邊區劃作米之際爲弊又多臣意則今番先除半耗更觀前頭方許準減似爲便當矣**心泰**曰除耗之擧專爲所重不必分而二之以全耗處分似好矣濟恭曰必減全耗然後言足聽聞半耗之減反不如不減矣予曰宣廟朝以前姑無論在前則各道多三司穀分留適宜耗之會錄於公者少穀簿比今甚少留庫倍多民亦不以爲苦近來還穀之弊無非盡分取耗之害且本府以關防所重儲穀之方亦不可不留意今若除耗則不必勒分而分留之數自當如貳矣況天地間所生只有此數一境內米穀亦只有此數不在官則在民自官旣不取耗則不言之中民食亦當自裕亦豈非益下之大政乎民始曰只除耗條而他役若不輕歇則四方之樂赴亦未可必矣濟恭曰他役亦豈可不輕歇而耗條全減擧措尤爲光明矣民始曰來頭亦有合施惠澤之時如甲子年是也今番則姑減半耗以待他日更思區處之道亦未晩矣予曰左相之言旣如是相合而此等事之有異同之論亦是美事支放之需亦不

可不念**整理廳**既命互換則**華城**穀之換給於各道者收其耗條似可相當於支放之用而又以外營軍政事有所提及者始興　果川　安山　龍仁　振威五邑之劃屬**華城**一則拱護仙寢一則捍衛王京其所設施亦爲不輕而各邑軍丁有名無實趁今釐正之時從長裒多益寡汰其束伍之虛簿換於該邑各項正軍或京納收布軍爲可又或於移錄之守總軍曾前納米者中爲新設之哨事甚便好卿等退爲相議也予曰本府之民無論大小皆令得其所爲可而陞留營之後三鄉所只置一人竝與倉監聊賴之道無霑漑之路此甚可矜矣廣州前例則何如有隣曰只有座首一窠矣予曰卿其講究霑漑之方也自有可施之道矣予曰以己酉年效勞除蔭職者臘政無故作散云其知之乎**心泰**曰金燾之作散臣果聞之矣此人卽辛亥年工房鄉所而以守直之勞蒙恩矣予曰如設倉之以校代鄉處侵虐小民不問可知還給鄉人一以慰鄉人之心一以除還民之弊可也**心泰**曰捧羅之節比鄉監時似勝云矣有隣曰臣亦聞之而社倉屬里多有大民之居生者故興訛造訕每由於此等處矣予曰本營軍兵始興站軍糧分給米不以除留之米上下必是**外整理所**設置後以名色之各異只令該倅以該所錢貿置故不得不取用於還穀而穀品則麤劣軍兵苦之且於春正之際亦爲民弊此一款斯速釐正可矣民始曰園幸沿路俱有貯留米而自本營句管之致不爲合錄於**外整理所**軍糧之麤劣民情之稱苦卽必然之事此後自**外整理所**勿爲給價於該郡以價本換用本營除留米爲好矣予曰卿言好矣依此定式可也予曰大有屯之辛勤設置專爲府民務本之政而以其創設之初凡事姑未定規筦千庫所管園租則取其半大有屯依此例爲可且作米之以二十斗租捧八斗米而精舂準捧爲弊不些云趁此時改定賭地務從輕歇以爲小民受惠之地在所不可已者矣**心泰**曰臣之待罪本府時未及定給賭地者設屯旣屬耳新墾之土沃瘠未分且斗落大小亦難斷定則擬俟若而年立規而然矣賭地定給之際若務歸輕歇則校吏官隸輩從中受田更給半作潛自射利難保其必無此亦十分商量處矣有隣曰賭地之畓園軍之作弊滋甚校吏官隸之效尤決是必有之弊且稿草所捧親軍衛入防時及城內積訥等處爲用甚繁盡作賭地之後稿草更無所出此甚難便矣予曰旣有民怨不可不從速釐正更當下敎矣築城及官府基址異於家垈當免稅而有未及爲之者昨年來此時欲爲召問父老而除給矣因民人之未及待令未果今番則亦當下敎矣予曰**萬年堤**疏鑿一以爲所重一以爲民田還宮後當始役而役民一款外使則當用民力云況堤堰之役自是民事其所役民亦無所不可而財力已有措置者待下送從長經紀期於農作前準役可也此堤之役有石築之論蓋近處拾石便當比之編結之糜費事半功倍云矣　有隣曰臣姑未知利害而其所爲弊猶勝於編結矣**心泰**曰臣與差員等屢回爛商而堤面木根之交錯草根之盤縈殆無隙地翦之伐之爲功甚難且南北一百九十餘步東西九十餘步分數開方以作十區或十餘區先從一區到底疏濬然後軍丁多寡日子遲速始可出假令而石築之論臣意則終未知十分恰好蓋限二仞新濬之堤若施石築則必多難便故諸議亦以若欲石築如長臺石者井井密排然後庶可以完固不然則反不如編結云矣且各處堤堰之被莎種樹初無石築處矣民始曰堤堰石築臣亦赤見樹根之盤錯倍勝於石築多種楡柳以完爲度似好矣予曰東五陵洞口堤堰見之乎有隣　民始曰臣等俱見之矣**心泰**曰臣則未能詳見而交河之長陵洞口堤堰年前亦嘗看審而亦不石築矣予曰陵所洞口無論大小俱有貯水之堤堰此堤之役係是不可已而亦不無助於堪輿矣予謂有隣曰園所賭地租輸納城底爲弊不些云卿亦聞之否有隣曰遠者幾爲三十里近亦二十里不無爲弊而私穀之作者輩出浦三十里則自來通行之例矣**心泰**　曰僧徒賭地百餘石從其所願使之捧留僧倉從時價作錢以納而當初不無付之園官之議爲慮後弊使之輸納邑底而今果有稱冤云矣予曰若設倉於**龍珠寺**近處從便捧上如內營各屯所捧設倉之例則似好外使參量事情從便爲之可也予曰初定火巢內田畓給價幾十倍再三次亦如之聞其後新加定火巢內田畓價或有不均處云此亦追給爲可**心泰**曰臣未及聞之而再昨年加定時臣果量其境界而所入土地擧皆瘠薄雖私相賣買其價不甚高矣予曰無論如此如彼前後皆給厚價則今番何必較計乎限一千兩加給則民情必洽然外使依此擧行可也予曰海西　黃州外營所管靑龍浦築堌事民習之頑悍固無論旣云有弊則不可無闊狹右相則民習可惡云而雖十分當爲之地順民心爲可付之黃海兵營好矣**心泰**曰今則開中梁利水道九老堌民之前以水沈稱怨者今已妥帖民又應募坌集次第耕播限以今年亦將畢墾到今出給甚可惜矣予曰當初完築自**華城**不費一力則今何必持難

乎**心泰**曰自**華城**果無用力而一付之於黃兵以待其完固亦無不可矣予曰親軍衛之弊多入聞擧懷厭避之意云此豈成說乎**心泰**曰臣自創設之初節目間事無不與聞蓋其揀選之法極爲申嚴自非不得已有故者外切勿許頃及其代定使各該正領望報該將該將報別將 別將轉報大將以此定式無或撓改而左右列正領之以久勤除邊將者已爲二人則亦必多樂赴之類今此弊端未知何爲而然矣予曰親軍衛之設置蓋倣禁旅意非偶然而今纔五六年人物之孱劣軍裝之渝弊已無可言弊亦滋甚云此必是正領書員輩從中操縱之致卿與外使相議明日爲先招問渠輩所願揀擇去就革去謬習期於蘇弊而抄定之法一依禁旅例嚴其保擧則奸弊何敢容乎**心泰**曰臣謹當依下敎與外使相議爲之而親軍衛料條雖難輕議至於走馬太爲不足每年各限數十匹抄出能走馬設置走馬廳如禁御兩營騎士之例使之輪回入直於行宮以備緩急出用似好矣予曰筵退後相議別成節目以爲遵行之地二哨中一哨分置屬邑則士馬之强壯與道里之均適必勝於專責本府矣予曰除耗一事最是大政自此事先爲擧行其餘諸條亦爲次第釐正好矣煥之曰湯劑進御亦已有頃今則膈候之升降比前何如予曰姑未有動靜矣仍敎曰進御桂苓飮前方中桂枝減五分貝母加五分一貼更爲煎入

강命遣吏郎摘奸諸執事淸齋與否

목 社壇春享儲慶宮 毓祥宮 延祐宮 文禧廟祭享在再明也予謂承旨 李益運曰社壇享事在明宵忠勳府堂上率忠贊衛進去陪奉位版及行事後修掃等節各別看審事成送有旨于守宮承旨處

2월 3일

강召見左議政 **蔡濟恭** 右議政 李秉模 藥院提調 沈煥之 副提調 徐龍輔隨駕諸閣臣及**壯勇外使** 徐有隣 兼內使 **趙心泰** 京畿監司 李在學有司堂上李時秀 趙鎭寬于**維與宅**詢問本府還穀除耗後支放給代之方

목大臣閣臣承候藥院請診也○濟恭等曰夜間調攝中聖體候若何予曰今則比昨差勝明當行禮再明則當還宮矣謁園之擧苟或有妨於調攝之節則强而爲之反近於人事上諸議之迭請還宮予亦不以爲非矣卽者慈宮有所下敎若曰行幸禮重今此動駕本爲謁園展誠今若徑爲回鑾則人固不能盡知其出於十分愼攝而八方瞻聆反易驚惑且直爲還宮雖若爲目下調理之道以無窮之聖慕旣還之後每以誠禮之未展耿耿缺然于中或反致膈候之添加多日調攝以待平復必行謁園之禮爲好云慈敎旣如是諸節今亦頓勝享事之親將固無處矣濟恭等曰伏承慈敎實出尋常萬萬臣等之憂只在目前而慈慮之卓越至及日後臣不勝欽頌贊歎第聖候姑未夬復明日日氣亦未可知更加調攝實是區區之望也予曰明日若不行禮則非但更無吉日軍兵百官之多日滯留亦甚可悶予之筋力亦有自量者存蹔時往來何必爲慮乎予謂濟恭等曰支放給代之道其果何以料量耶濟恭等曰依下敎以**整理穀**耗條相換磨鍊而不足之數又以勅需米耗條磨鍊給代諸議亦幾歸一矣予曰其數相當耶內閣提學 鄭民始曰本府還餉分給者爲三萬四千六百餘石折米爲一萬八千五百餘石故耗條米爲一千八百五十石其中諸般支放等一千二百四十石則折價五兩當爲六千二百餘兩排朔六百九石餘則折價當爲三千四十餘兩矣**整理穀**每年耗約爲一千餘石此則折價三兩當爲三千兩有餘與彼排朔條相當而少不足勅需耗條一千八百石折價四兩當爲七千餘兩與彼支放條相當而多有餘矣有隣曰本府米價踊貴貿取絕難故皆以五兩磨鍊矣予曰以五兩貿米能無不足之患耶民始曰彼以三兩四兩而此以五兩折長補短似無不足之歎矣予曰府內可得千石耶**心泰**曰營本府大同米排朔條六百石及大有屯穀折米三百石而外營應下中推移一百石則可爲千石之穀矣予曰本府之中如可得千石則甚爲便當矣卿等旣爛熳商確必當善爲區處矣當以除耗一事書下傳敎而凡係**華城**還餉皆以**整理穀**爲名諸道則仍無**整理穀**名色屬之常賑或備局更不以**整理穀**三字爲貽弊之端則事事圓好矣濟恭曰除耗之擧非但言足聽聞以有耗也故還分多還分多故爲害於民今旣無耗則願者與之不願者勿與還弊亦從此可祛矣且支放給代或慮貿米之爲弊而如彼區處秩秩有序不勝幸甚矣民始

曰諸道**整理穀**一竝以常賑區處好矣有隣曰今而後斷當半留半分城內留庫當爲萬石矣予曰保障之地尤合峙穀大抵此擧專出爲所重之本意而若或因是而有弊於他邑則豈可乎哉在學曰他邑別無貽害之事矣予曰西京去古未遠故爲民施惠輒減田租之半今則異於是有田者率多豪富故減租之惠不及於小民至若還耗之除專爲小民之惠澤矣予又曰諸道**整理穀**今旣移換矣所謂修城**整理穀**之當初設置非予本意不但名色之眩於擧行籍此貽弊亦不一其端及今同時變通從長區處爲好矣鎭寬曰除耗處分甚盛擧也但來頭必有停退蠲減之時則國穀之漸就耗縮亦不可不念古人亦有田租減半之例臣意則以半耗蠲除似合於經遠之謨矣予曰異同之論固爲好矣而今旣以全耗爲定有難更議

강命以明日詣園所行禮再明三明間還宮
목敎曰明詣園所行禮還至行宮再明三明間還宮以此分付○兵曹判書 李時秀曰軍號之預爲啓下者止於今日自明日以後三日軍號當自此中啓下封送於留都所當令禁軍持去乎予曰當使宣傳官持去矣時秀進軍令予敎承旨 李益運曰明日詣園時香官則陪香先詣可也予又曰軍號事體至重且秘無異兵符故以制勝傳令宣傳官奉往豈可付之禁軍乎仍命書傳令一度傳給宣傳官使之往傳于留都大臣及訓御將又下軍號封敎曰封下軍號大臣依傳令辭意傳于守宮承旨發牌兵曹郎廳排日頒布訓御將代領諸節亦依傳令辭意爲之事分付

강命明日詣園所時東西班留駐**大皇橋**近處
목敎曰明日詣園所時東西班**大皇橋**近處留駐

강命傳香承旨馳詣社稷奉審摘奸受香諸處一體奉審摘奸
목 社稷春享及儲慶宮 毓祥宮 延祐宮 懿昭墓文禧廟祭享在明也

강命廣州餉穀折米五千餘石屬之道內留庫自畿營某樣穀中耗條三百石每年以詳定價移送廣州二百石不足之代以年前出鎭時用餘米付守臣者充補以革移轉畿邑之弊餉穀五千石換在湖西者依右例一體釐正
목予曰近聞廣州出鎭之後屬邑有分置之還蓋因當初城內校吏支放專以餉還聊賴故其弊至於原穀之漸耗前廣留欲矯此弊痛革城內民給還之規而山城還五千石分定於二十邑謂之南城餉穀以充支放之需矣如是之際畿邑受弊又當如北漢還上之弊矣敎以廣州分司後城餉五千石之移轉畿內二十邑者雖出於不得已之擧而近聞移轉各邑耗條作錢之際不無受弊之端云不可不趁卽釐正矣左議政 **蔡濟恭**曰廣州餉穀之移轉各邑者其所爲弊果無異於北漢城餉之弊伏聞聖敎不勝欽頌及今變通則畿邑民惠恐無大於此矣右議政 李秉模曰此穀之分置各邑取耗作錢者蓋出於杜反逋之宿弊補支放之需用而斂散之際民弊已多執錢之時奸竇層生伏奉聖敎已入俯燭矣及今釐正在所不已自今以後元穀折米五千餘石屬之道內留庫自畿營某樣穀中耗條三百石每石每年以詳定價九百兩從便移送於廣州二百石不足之代則年前出鎭時有用餘米二百石之姑付守臣者以此充補綽有餘裕矯捄之道恐無出此令道臣往復擧行似合事宜近聞南城餉穀五千餘石之換在湖西者其所爲弊與畿邑無異云亦依右例一體釐正尤有合於仰體聖念之道故竝此仰達從之

강有政 吏曹判書 閔鍾顯進
목以尹寅基 鄭厚成爲掌令 沈晉賢爲右尹 訓鍊都監都提調 **蔡濟恭** 禁衛營都提調 金履素相換以金魯巖爲宣傳官 金煜爲黃海兵使

강命**水原中軍**以閫帥 防禦使以上有履歷人擇差
목敎以**水原中軍**勿拘常格以閫帥 防禦使以上有履歷人今日政各別擇差

강再政
목以柳文植爲**水原中軍**

강試射放入格人頒賞于**維與宅**仍召見藥院提調 沈煥之 副提調 徐龍輔
목 藥院請診也○予曰頒賞尙未畢閉門姑勿爲之先爲懸燈煥之等曰夕間聖體調攝之節若何予曰今已向差不必入診矣旋命先退予敎壯勇兼內使 **趙心泰**曰鄕軍先以路遠處軍兵磨鍊明日還詣行宮後先爲解送也又敎曰挾輦軍四十名未明先詣駕前後各三十壯勇衛左右列各三十隨駕事分付**心泰**曰外營入防軍環衛依前知委擧行之意約束於外使處而外山麓樹木茂密處逐虎軍以幾名磨鍊乎予曰以五十名磨鍊可也又敎曰軍兵去就皆送信箭斯速擧行而內外使則旣已親承下敎不必更送信箭矣又敎曰明日詣園所時外營旗鼓**八達門**落後還詣行宮時待令於**梅橋**可也親軍衛閑良申龍大等以次頒賞訖命親軍衛正領等進立階下敎曰親軍衛之特置意蓋有在而近聞奸弊多端人皆厭避而其所爲弊之端一一陳達而有闕塡代之時誰爲主管亦爲直陳也正領等對曰二百親軍衛散在各處而其中家在外村之類去營下爲百里或七八十里一月一赴之際人馬之久留糧資之多辦實多艱窘之弊此所以或有厭避也塡代之時則正領與書員同選可合之人矣予曰許多弊瘼專由書員之容奸該別將亦以其見欺於書員之故方欲嚴處況爾等旣在三正九領之列固當預求可合之人以爲臨時充定之地而乃與書員符同作奸一境之內可合於親軍衛者書員輩何以知之書員云云爾旣發口其所作弊之狀若不一一直告則當爲嚴棍取服斯速仰對無敢一毫欺隱也正領等對曰正領擇可合人以授書員書員報于該將別無從中作奸之事矣予曰近來充定之規大異於當初入屬之時此專是從中作奸之致而朔試射賞格間亦有不能受去者云此非書員之弊而何若非書員之弊則乃是爾等正領之弊也今若更問徒涉屑越且値齋日明日行禮還宮後令內外使合坐嚴問若又欺隱當另加嚴處今日則姑令退去而此後塡闕之規令外使爛商釐正以此意分付○柳葉箭入格別軍官出身徐命仁等三人邊二中各弓一張帽子一立金彝鍾等三人貫一中各木一疋林萬泰等七人邊一中各布一疋左列親軍衛出身申龍大等二人邊二中各筒箇一部閑良李賢郁邊三中直赴殿試申千碩等二人貫二中直赴會試左列親軍衛閑良李弘龍貫一中邊一中直赴會試右列親軍衛直赴李明漢貫一中邊一中弓一張長箭一部左列親軍衛出身金致元等十二人邊二中各弓一張帽子一立左列親軍衛閑良金昌輝等七人貫一中各木一疋左列親軍衛前主簿 李光春等三十五人邊一中各布一疋賜給○鞭葯入格左列親軍衛前主簿 李光春等九十五人六中各木一疋左列親軍衛嘉善金允台等五十五人五中各布一疋左列親軍衛前萬戶 全希祥等十八人四中各帽子一立馬鐵一部左列親軍衛閑良鄭得重等六人三中各帽子一立左列親軍衛出身金孝三等十五人二中各帽子一立左列親軍衛閑良崔一光等六人四中馬橫馬鐵一部左列親軍衛閑良金成奎等三人三中馬橫馬鐵一部左列親軍衛閑良朴喜寬一中身病馬鐵一部賜給○砲放入格左哨入防軍禹錫圭邊二中木一疋帽子一立前哨入防軍金岳只貫一中木一疋左哨入防軍朴其五同等十二名邊一中各木一疋賜給

강命承旨飭諭御史 徐有聞 呂駿永使之各別廉察
목予敎承旨 李益運曰御史 徐有聞 呂駿永差送時前後下敎何等申複而專不致察甚至於今日使不佩掌標者雜在於衛內外而視若不見一不執捉有若戲劇者然是豈成說乎況渠輩公然出入於作門而多率下隷反爲弊端亦甚可駭御史則不可決棍令備局差假備邊郎使之各別廉察還宮日待令於始興而若或如前不勤則當決棍嚴處招致兩人以筵敎立庭責諭而若或不善隱身現形於作門近處則執留後來告之意竝爲分付於作門哨官 御史掌標則只給三箇其餘二箇則使之還納而無掌標帶隷令畿伯今日內柙送

京中可也

강命明日詣園時壯勇內使率善騎隊京鄕步軍訓局馬步兵爲先廂外使率親軍衛步軍爲後廂禁軍別將精抄禁軍隨駕其餘軍兵禁衛大將都領留駐行宮

목 兵曹以明日園所展謁時先後廂軍兵及行宮留待軍兵取稟敎以壯勇內使率善騎隊一哨京鄕步軍二哨訓局馬兵五十名訓局步軍一哨爲先廂外使率親軍衛一哨步軍二哨爲後廂禁軍別將精抄禁軍三十人隨駕其餘軍兵竝留駐行宮禁衛大將都領各營軍兵留駐

강命特敎頒給之下**壯勇營**者內使主管知委外營然後外營擧行仍著爲式

목 壯勇外內營啓言卽者祗受傳令內外營則難以統轄京外軍門其所擧行每多遺漏昨日炭空石之或給或不給可以知之除非各該營按例爲之者外此後凡有特敎分給內使主管知委外營然後外營擧行事命下矣臣等謹依成命隨駕各營軍兵炭空石未及受去之類詳細査出一從式例每十名空石三立炭一斗二升一一分給而此後園幸時謹以此傳令內辭意載之外內營謄錄以爲永久遵行

강命**華城**還餉竝稱**整理穀**仍除耗條令守臣斂散毋令居民以穀多爲苦園底民田之入於火巢三四次定界者加給其直大有屯如意垌賦繁役重處從長區處俾有益下之政親軍衛亦爲釐正**萬年堤**役待回鑾後卜日經始必趁農作前告竣

목敎曰自奉園寢於本府今焉爲十年予小子抱莫攀靡洎之慟而不能日日躬檢灑掃以展晨昏之誠惟府之群黎百姓居是地長瞻宰樹共護珠丘予安得不視是府如視帝鄕待是民如待故人然於十年之間荏苒因循何事近於仁政何政可以便民減租之政貧富難以竝施賜復於民古今各異其宜惟糶糴之除耗爲人和之策乙卯**整理穀**之竝置**華城**除耗糶糴卽予當初本意而未果爲者聞其穀總庶可排比自今**華城**還餉竝稱**整理穀**仍除耗穀而陞爲留司以後民以穀多爲苦令守臣知此意斂散園底田土之入於火巢處初準十倍之直再亦如之三四次定界也與初再相反此亦量宜加給而大有設屯如意築垌亦出爲民足食之意近聞賦繁役重此亦當爲益下之政俾卽從長措處親軍衛之特置實倣羽林衛之例而將不致察吏緣爲奸亦依筵敎別般釐正至於**萬年堤**役所重上爲園寢下爲民生疏導之費當有內下回鑾後卜日經始必趁農作前告竣凡此數條爲園寢拱衛之道推以及於民生之樂業自餘擧行付之廟堂條列知委

2월 4일

강駕詣園所召諭路傍父老

목辰初三刻三吹時至予具軍服乘轎以出左議政 **蔡濟恭**等曰靜涉之餘侵早勞動聖候若何予曰今則漸至差復矣仍進發出**八達門**命承旨 李益運招路傍父老民人等諭曰陪奉園寢今已十年予之視爾輩比他日自別必欲施之以諸道所無之例所以有還餉之除耗也俄下傳敎已詳言之還宮後當令守臣字字曉諭爾等預知此意永思樂業之方益盡拱護之誠也此外城內家垈之免稅園底土價之加給至於大有屯筦千庫等處皆有釐弊之事而比之還耗此皆小事矣爾等之中有**長安門**外北屯耕食之民乎民人等曰多有耕食者矣予曰當初起墾專爲爾輩目下所收已爲千石非不爲幸而賦繁役重爲弊多端捧納之際鞭扑狼籍云已令留守另加釐弊如有他瘼一一詳陳也民人等曰荷此曠前之惠澤感祝之外更何所達而但屯畓之可種二斗之地而或有以三斗捧稅者可種四斗之地而或有以五斗捧稅者此未免有弊矣予曰此則已命更爲打量矣更有可陳之弊乎民人等曰無他弊瘼之可達者矣予命本府判官 金思羲進前敎曰還穀無耗八路之所未有而本府之民自有所重**整理穀**之必欲除耗乃予本意故事雖難愼斷而行之矣本府還餉穀多爲弊一戶所受至爲數石而聞爾頗能釐正云今又除耗則願受者與之不願受者不必分給糶弊從此可蘇耶思羲曰旣除耗又以從願許分則糶糴之際似無他弊矣予曰大有屯之闢荒作畓專爲校吏及府民之

生利而校吏輩有名無實云果無着實作農之道耶思義曰本府校吏常時使役甚繁果無勤農之暇矣予曰屯畓落種斗數之爽實果如民人之所達而汝亦知其事實乎思義曰當初打量間或不均果有石多實少之說而臣亦得聞矣駕到**甕峯**降轎乘馬進發至園所下馬乘輿入齋室

강行親祭仍奉審園上

목時至改具黪袍 烏犀帶出齋室東門乘小轎詣紅箭門外降轎詣版位行禮如儀 獻官 左議政 **蔡濟恭** 終獻官 右議政 李秉模 贊禮 禮曹判書 趙尙鎭 大祝 應敎 李翊模 仍詣園上奉審予曰屛風石罅隙比前尤顯然矣內閣提學 鄭民始曰以封內虛左之故用力有不同自致有罅隙矣予曰左邊屛風石有滲水之痕何也招入別看役 丁遇泰下詢遇泰曰每當下雪時左邊偏得朝陽故雪水流下以致如此矣予曰石物則制度如長陵而反有勝焉其工不下於崔天若矣其時丁遇泰有夢兆而得此石云爾尙思之否遇泰曰夢有一神人告之曰**花山**璞中有玉覺而求之果得四箇大石於頑石之中如璞中之玉今此魂遊石及長明燈皆是石也予命招入安城郡守 曹允植敎曰園上所見處植木已成茂密而火巢稍遠處猶有稀疏之歎石串及洪範山麓更加播植則好矣允植曰洪範山麓則土不宜松故多播橡實今旣茁長若至春晩葉生則所見當甚好矣仍還御碑閣後小次命左議政 **蔡濟恭** 右議政 李秉模入侍敎曰除耗傳敎昨夜書下卿等見之耶濟恭曰除耗一事實是大政有光簡册矣予曰異同之論固無怪焉而勒分之弊自可永祛矣修城**整理穀**事右相亦善爲草記區處而不必別出名色只屬之備局句管好矣內閣提學 鄭民始曰雖不別出名色例以年條區別如今年所創則名之曰戊午穀矣予曰然則便是別出名色矣大抵**整理穀**之分置八道意在所重而以其事體之不輕也故吏緣爲奸不無藉賣恐動之弊今而後無以**整理穀**一事少貽民弊則誠爲好矣須爲從便善處趁卽草記可也仍命宣饌於大臣承史 閣臣及兵曹判書 別雲劍侍衛訖命閣臣二員奉審于奉安閣改舖袱褥之有頉者

강御齋室召見諸閣臣及園令 徐直修 宋厚淵

목予敎厚淵曰爾於先正爲幾代孫乎厚淵曰爲五世孫矣予曰爾等入直時爲其人客之率置特設一料窠矣今果有率來之人乎直修等曰不敢率來矣予曰旣有下敎無論門客或子弟此後則必爲率來也仍宣饌於園官及諸執事予敎一提學 鄭民始曰舟橋何時撤去而可及於三南之漕運否民始曰回鑾之後當卽撤排而優可及之矣予曰顧瞻樹木春意已爛熳矣今年植木之政更爲加意也又敎曰**萬年堤**疏鑿之功不可不留意灌溉之益大旱不竭其下之田皆成沃土豈不爲民生日用之大利乎民始曰近來灌溉之不通專由下流之壅閼若有器械之便利則工後不必多入如欲專靠人功則亦難卒就矣

강命自園所洞口至**八達門**捧上言

목

강命園官及留守地方官等弓矢豹虎皮依例賜給

목敎以園官令 徐直修 宋厚淵內下弓矢各一部留守 徐有隣內下豹皮一領地方官判官 金思義內下虎皮一領竝依例賜給守僕守護軍山直等亦令**外整理所**考例施賞○壯勇外營啓言京守僕二名香室守僕一名園所守僕四名書員二人守護軍五十名四山監官四人各木一匹庫直一名案山直七十名各布一匹依定例自**外整理所**分等頒給

강還次**華城行宮**

목鼓三嚴予乘轎進發至**迨瞻峴**降轎乘馬兵曹判書 李時秀 承旨 李益運 檢校待敎 沈象奎等進前奏曰晩來風勢頗緊觸冒可慮伏願還御駕轎焉予曰轎內鬱熱左右瞻眺之際傍入之風反甚於馬上矣仍進

發由**八達門**入**左翊門** **中陽門**還御**維與宅**

강命**壯勇外使**所領馬步軍園所店往來之類卽令做飯後先爲解嚴下送今番陣上出用五哨入防軍竝除一年入防
목敎曰勞軍莫若今番外使所領馬步軍兵中園所站往來之類卽今做飯後先爲解嚴下送今番陣上出用五哨入防軍竝除一年入防事分付外使處

강命明日還宮時各營待信箭出待津頭
목敎曰明日當爲還宮分付各營待信箭出待津頭事留都大臣知悉○命宣傳官 趙運永持信箭標信傳于留都大臣明日待信箭出來時仍以此信箭擧行而大臣祗受信箭後往留陣都領午後出至鍾街前路柢迎訓將則今日在北營明日午前言送留都大臣後率隨駕軍兵出來津頭御將則今日宿留陣明日率舟轎器具與訓將同爲出來事分付仍往龍虎營解出挾輦軍也

강 惠陵忌辰祭香室單子命守宮承旨代押
목

강命當日所捧上言梗槪仰奏後各令該曹該道稟處御史等執頉者使之決放仍飭御史 呂駿永廉察**迎華驛**弊還宮後復命
목予敎承旨 李益運曰御史四人今在何處益運曰林漢浩 鄭晩錫姑不入來徐有聞 呂駿永則方在作門外云矣予曰分付作門使之入送而問其執頉與否使之決放呂駿永則**迎華驛**設置後聞多新弊云使之詳細廉察還宮後復命可也

강命此後幸行經宿時**左翊門**下鑰事著爲式
목

강命**華城**城內城址家基及追定界火巢田土之屬於筦千庫者竝免稅後狀聞
목敎曰**華城**城內如城址家基等不當納稅而出稅未及免稅者及追定界火巢田土之屬於筦千庫者旣納賭地又應公稅而未及免稅處竝免稅後狀聞事分付守臣

강命本府校宮釋菜時執事及參班諸生待題下應製園底府內武士試射應射將校等外別試柳葉箭一巡於武士等一中以上依書下賞格頒給後啓聞
목敎曰本府校宮釋菜之遣宗伯行祭卽初有之擧執事及參班諸生成冊明日收捧別單馳啓待題下應製以爲分等施賞之地園底府內武士等欲爲試射而因調攝未果爲矣試射應射將校等外別試柳葉箭一巡於武士等再三明間試取一中以上依書下賞格以外帑庫所在者頒給後啓聞事分付外使○書下賞格柳葉箭貫二中以上後錄別單貫邊弓矢邊二中弓箭貫一中箭竹七十箇邊一中箭竹六十箇

강命**華城**御前待令校吏軍兵與陣上待令將校標下軍待還宮後卽爲試射放外使所領軍兵**長安門**外解嚴親軍衛別軍官入防軍等卽於解嚴處所各送其家
목敎曰因調攝留宿行宮者爲四夜本府校吏軍兵之勞苦鉅矣御前待令校吏軍兵雖施賞卽不過按例與陣上待令將校標下軍明日還宮後卽爲試射放榜目修啓而外使所領軍兵**長安門**外解嚴親軍衛別軍官入防軍等卽於解嚴處所各送渠家事分付守臣處

강命吏曹郎廳申後追呈省記者分揀

목 政院啓言今日吏曹省記呼申稍久之後始爲追呈事體所在萬萬未安當該郎廳所當重勘而本院請推外無他罰何以爲之敎以分揀

강 壯勇外營以內外營各軍門隨駕將官將校軍兵糧饌馬太各司盤纏二日條分給啓

목 壯勇外營啓言內外營各軍門隨駕將官將校軍兵等糧米饌價馬太及各司盤纏二日條合米一百三十五石八斗八升太三十五石四斗六升錢一千八百八十九兩二錢六分依**整理所**磨鍊自**外整理所**分給

강命**華城**外諸道所置**整理穀**屬之常賑穀令該廳依例糶糴**華城**除耗之代從後稟處

목 備邊司啓言今此**整理穀**之竝置**華城**除耗糶糴有以仰**華城**之故置此穀名穀名之自有所重故特除其耗不但**華城**民庶鼓舞歡欣抑亦中外膽聆孰不欽頌從今以後整理爲名之穀只在**華城**更無一包之散在他道者則諸道所置**整理穀**不可不及今區處一倣屬之常賑穀令該廳依例糶糴**華城**除耗之代已與道守臣有所商確請從後稟處允之○備局行會諸道跋辭以爲乙卯**整理穀**設置所重果何如而諸道斂散之際多不善於擧行吏緣爲奸官連其謗貽弊於民不一其端此豈當初創置之本意也哉朝家深軫此狀今於園幸駐蹕之日特命**華城**還餉換作**整理穀**諸道所在**整理穀**則竝屬之常賑穀從今以後諸道更無**整理穀**名色諸般弊端不祛自革民之蒙惠如新受賜到關卽時詳細知委於道內各邑乙卯**整理穀**從實數盡爲移錄於常賑穀不須別爲儲置一依常賑原穀通融糶糴擧行形止卽爲狀聞

강命諸道所在修城**整理穀**移作備局句管穀

목 備邊司啓言諸道**整理穀**今旣移換於**華城**餉穀所謂修城**整理穀**名色亦卽從長區處事伏奉筵敎矣此穀設始時在下擧行未能諦悉聖旨强作名色不但各邑眩於某穀之爲何穀籍此貽弊不一其端今此聖敎寔出於祛其混雜之穀名永杜侵欺之奸弊自今爲始諸道所在修城**整理穀**移作備局句管穀而備局句管中名色亦自不一此則隨其道之所在句管穀名自本司消詳行會修城**整理穀**則無邑不在而備局句管穀則非是邑邑皆有者此等處換名合錄於備局句管穀所在邑使諸道曉然知修城**整理穀**名之更無所在於各道各邑爲宜以此措辭分付於八道及三都道守臣處諸道中北關正穀本少事多難便以其穀數換置他道實合方便請亦以此意一體分付允之○備局行會諸道跋辭以爲修城**整理穀**名色今若仍置則奸弊之滋長穀名之混淆難保其必無自朝家深軫長遠之謨至有區處之命諸道所在修城**整理穀**竝作備局句管穀之某穀三南軍作米京畿 江原道 備邊司穀平安道補城庫穀海西管餉會外穀北關 備局句管穀廣州軍餉依例糶糴道內如有備局穀素無之邑必須移付於備局穀所在之處準其數交換其名色使之以類相從位置不紊從今以後無論乙卯條修城條凡以**整理穀**爲名者**華城**一府外他處則無之之意曉告守宰俾各知悉擧行形止亦卽狀聞

강 領府事 洪樂性陳疏乞解藥院之任賜批

목疏略曰夜間靜攝玉體諸節夬臻天和而末由卽承起居益切煎菀臣寒痰留結脅間萬無蠢動之路情禮俱闕義分都虧此時藥院之任不可不備員伏乞亟遞臣所帶內局都提調仍治臣曠職虧分之罪批以今則差勝卿其安心仍命遣史官傳諭

2월 5일

강書下御題命左議政 **蔡濟恭**試取本府校宮釋菜時參班諸生

목以太牢祀孔子爲賦題命諸生應製

강命自**長安門**至崇禮門捧上言
목

강駕發**華城行宮**少駐**遲遲臺**至淸川坪御築臺處招諭附近民人分饋果酒
목卯正三刻三吹訖予具軍服乘轎出左議政 **蔡濟恭** 右議政 李秉模 藥院提調 沈煥之等進前問候予曰今朝諸節益勝矣敎濟恭曰今番本府校宮釋菜參班儒生使之應製而書題則已書置卿須落留出榜上送再明間上來可矣仍進發禁衛大將率休息馬兵五十訓步軍一哨爲先廂內使率休息善騎隊一哨原環衛鄕軍一哨休息京軍一哨挨接先廂之後禁軍別將率禁軍及駕後爲後廂予到萬石渠前路降轎少憩予指左傍水田敎承旨等曰此是大有屯初是陳荒之地今成沃畓矣仍命召入外營將校使指陳大有屯之從某至某爲幾里對曰自前望大山之名通山者至**長安門**外過十里矣予乘馬進發矣**遲遲臺**下馬少憩諸閣臣進前問候予曰比朝尤勝矣予曰領府事箚批還宮後使史官傳諭予命招入外營前排校卒之落後者分饋酒肴以送予曰回還時則必欲徐徐作行宣傳官知此意擧行而前排先爲進發可也予至淸川坪下馬御築臺處招入近臺民人敎曰乙卯年慈駕少駐處爾等築而爲臺民情大可見矣予庸嘉之仍命分饋藥果壺酒

강命沿路校吏將卒試射放時廣州則留守試取始興 果川則兩邑地方官眼同試取柳砲中從自願一巡三中以上別單修啓畿營隨駕之類亦爲準此
목敎曰今番幸行往還日子稍遲以致沿路校吏之等待將卒之使役勞苦甚多廣州則留守試取始興 果川則兩邑地方官眼同試取柳砲中從自願一巡而一中米二斗或布一疋二中三斗或木一疋三中以上別單修啓事分付畿伯及廣留而畿營隨駕之類準此事一體分付

강晝停于始興縣仍進發至鷺梁津頭召見領府事 洪樂性于駕前少駐于**龍驤鳳翥亭**召見京畿監司 李在學 果川縣監 金鋼 始興縣令 尹守翼
목午正三刻三吹訖予具軍服乘馬進發壯勇大將 率善騎隊二哨先來京軍二哨上番軍一哨爲先廂禁將率先來步軍一哨馬軍五十挨接先廂之後禁軍別將率都監馬兵五十步軍一哨爲後廂駕至文星洞命攔後軍年多者限二十名抄出落後過數里敎承旨 李益運曰路傍見重臣鄭好仁之柢迎今始知其自鄕上來矣明日必爲靈壽閣肅拜之意傳及可也駕到鷺梁津頭領府事 洪樂性柢迎於路左予命入侍樂性曰自伏承玉候之久和下情焦菀而以臣病狀旣不能躬進候班今聞已向平復回鑾萬安不勝慶忭敢此來詣欣瞻耿光矣予曰今則快愈矣卿須從龍驤鳳翥亭夾門以入休憩也仍詣龍驤鳳翥亭敎曰依當初磨鍊以龍驤鳳翥亭少駐擧行可也益運曰旣以少駐磨鍊侍衛皆令上來何如予曰唯益運曰京畿監司 李在學 果川縣監 金鋼 始興縣令 尹守翼竝依下敎待令矣予命入侍敎曰俄者傳敎見之耶營屬及兩邑校吏軍卒從願射砲而日子則分日耶兩守令互爲參試其中連十年往來者別爲抄錄以納也在學曰非但隨駕如道路橋梁監官之類亦當別錄耶予曰然矣仍宣饌于承史 閣臣侍衛諸臣

강駕發龍驤鳳翥亭至鍾閣刖路召見留都大臣金履素由敦化門還宮
목申初三刻三吹訖兵曹判書稟陞橋炮又稟陞旗宣傳官請渡涉號令竝如例予改具戎服帖裏乘馬渡舟橋留陣營軍出待津頭前後廂依出宮時例擧行予入崇禮門至鐘閣前路命留都大臣入侍領敦寧 金履素曰其間玉候欠和遠外下情焦菀以過矣予曰今則夬愈矣仍命承旨送宣傳官持信箭分付各營解嚴兵曹判書 李時秀曰今明日軍號自**華城**已有啓下封送於留都者而今旣還宮更爲自本曹啓下而已送之軍號自政院還入宜矣予曰依此爲之可也駕入敦化門由建陽門 保定門 萬八門還內

제12차 1799년(정조 23) 8월 19일~21일(2박 3일)

1. 조선왕조실록

헌릉에 행차하여 제사하고 시를 짓다

헌릉(獻陵)에 행차하였다. 관왕묘(關王廟)를 둘러본 뒤에 주교(舟橋)에 이르러 칠언근체시(七言近體詩) 두 수를 지었다. 영묘(英廟) 무자년 상이 동궁에 있을 때 어가를 모시고 헌릉을 참배하러 갔는데 용주(龍舟)로 광나루를 건너면서 시를 지은 적이 있었다. 이 때에 와서 옛일을 회상하여 그 당시의 운자로 시를 짓고 신하들에게 화답하여 올릴 것을 명하였다. 과천(果川) 행궁에 당도하니 날이 아직 새지 않아 군병들에게 조금 휴식을 취하라고 명하였다. 아침해가 돋을 때 헌릉에 나아가 직접 제사를 지내고 재실로 들어가 또 칠언 율시 한 편을 지었는데, 역시 무자년 당시의 운자였다. 신하들이 또 다시 화답하여 올린 뒤에 과천 행궁으로 돌아와 머물렀다.

○乙巳/幸獻陵. 歷臨關王廟, 至舟橋, 製下七言近體詩二首. 英廟戊子, 上在春宮陪駕謁獻陵, 龍舟渡廣津, 嘗有賦詩. 至是追感昔事, 用其韻以賦, 命諸臣賡進. 至果川行宮, 天未明, 命軍兵少憩. 平明, 詣獻陵親祭, 入齋室, 又製七言律詩一篇, 亦戊子韻也. 諸臣復賡進, 還次果川行宮.

<정조실록 52권, 정조 23년 8월 19일(을사) 1번째기사>

헌릉 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보좌한 민제의 후손을 품계를 올리도록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헌릉 대왕께서는 거룩하고 신성하며 학문과 무예를 겸비하신 분으로 오제 삼왕(五帝三王)을 이어 표준을 세우고 이경 팔도(二京八道)를 쓰다듬어 가정으로 삼으셨다. 창제한 것은 하늘땅에 견줄 만하고 업적은 금석처럼 공고하여 산천의 신령도 기꺼이 떠받들고 동물과 식물, 곤충까지도 소생시켜 준 은덕을 길이 입음으로써 우리에게 억만년토록 끝없이 이어갈 복을 굳게 터잡아주셨으니, 생민(生民)과 하무(下武) 같은 시라도 그 공덕을 충분히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나는 선대왕의 복록을 이어받고 역대 조상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익히 배워 그것을 잊지 않고 한층 더 빛내야겠다고 다짐하여왔다. 때마침 비석을 세워 사적을 새기는 일이 사록(沙鹿)의 옛터에서 있었으니, 일이 마치 오늘날을 기다린 것만 같아 경사스럽고도 다행스럽다.

지난날 선대왕 무자년에 어가를 모시고 본 능에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32년이 지난 지금 비로소 다시 선침(仙寢)을 참배하고 아울러 제사를 드린 것이다. 문무 석상(文武石像) 사이를 맴돌고 있노라니 불현듯 지난날 선대왕께서 공역을 친히 살피실 때 아침 수라를 권해 올리던 일이 떠오르는데 그때의 자세한 사실은 반드시 사관의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각 그리운 마음이 한층 더 새로워짐을 느낀다.

삼가 생각건대 국초(國初) 태종께서 즉위하기 전에 제릉(齊陵) 을 관진(觀津)의 명당자리에 모실 때 풍수가가 제의하기를 '이 자리에다 모시면 후손이 하늘의 해·달·별처럼 영원히 번창할 것이다.' 하였는데, 마침내 유태씨(有邰氏) 의 외손으로 태어나 풍수(豊水)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아, 유신씨(有莘氏)와 도산씨(塗山氏) 가 국가에 끼친 공은 남궁씨(南宮氏)나 산의생(散宜生) 보다도 월등히 높다 하겠다.

오늘날 고마운 정성을 표시하는 일은 마땅히 근본을 먼저 찾아야 한다. 여흥 부원군 문 도

(文度) 민제(閔霽)와 삼한 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송씨(宋氏)의 묘소에 정경(正卿)을 보내 제사를 지내주도록 하라. 그 봉사손 민백전(閔百全)은 선대왕 때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가 등용하는 성대한 조치로 인해 말단의 벼슬을 지낸 일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벼슬살이를 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어제 여양 부원군(驪陽府院君) 봉사손이 대답한 말을 들으니, 여흥 부원군의 집안에 백전의 손자가 있는데 나이가 20세가 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 이름은 민치검(閔致儉)이라고 하였다. 본 능의 재랑(齋郞)을 의망할 때 그의 품계를 올려 그 자리에 보임하도록 하라."

○敎曰: "恭惟我獻陵朝聖神文武, 繼五帝三王而立極, 撫二京八域而爲家. 製作侔天地, 功烈範金石, 山川神祇, 咸用欣戴, 動植肖蜕, 永賴昭蘇, 鞏基我萬億年悠久無疆之福, 《生民》·《下武》之詩, 蓋不足以形容. 顧小子迪綏先王之茀祿, 聰明烈祖之彝訓, 於戲不忘, 思戢用光. 際玆貞珉之顯刻, 乃在沙麓之舊基, 事若有待, 且慶且幸. 昔在先朝戊子, 陪大駕行禮於本陵, 今三十有二年之後, 始復更謁仙寢, 仍又行禮. 周旋象設之間, 怳若勸進朝饍於親視工役之時, 其詳必在於記注. 此時孺慕, 益覺如新. 而竊念國初潛龍, 奉齊陵於觀津吉岡也, 堪輿建言而卜年. 可齊三光, 遂自有郃之室, 誕成豐水之績. 於是乎莘·塗之有勳庸於國家, 遠邁於南宮·散宜之上矣. 今來伸誠, 當先推本. 驪興府院君文度閔公霽, 三韓國大夫人宋氏墓, 遣正卿致祭. 其奉祀孫閔百全, 因先朝記錄之盛典, 得沾一命矣, 其後未聞祿仕. 昨聞於驪陽祀孫所對, 驪興家知有百全之孫, 年過二十者, 而其名致儉云. 差擬於本陵齋郞時, 齋郞陞品, 其窠調用."

<정조실록 52권, 정조 23년 8월 19일(을사) 2번째기사>

헌릉 대왕을 알현한 일로 제사에 참여한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도록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오늘은 곧 내가 옛날 어가를 모시고 온 이후 처음으로 알현한 날이다. 마땅히 경사로운 일에 상을 내리는 조치를 오늘 제사에 참가한 신하들에게 실시해야겠다."

하고, 아헌관(亞獻官) 좌의정 이병모(李秉模)와 우의정 이시수(李時秀)에게는 숙마(熟馬) 1필씩을 그들을 마주 대하여 직접 내주고, 찬례(贊禮) 예조 판서 서용보(徐龍輔)에게는 숙마 1필을 하사하고, 예방 승지(禮房承旨) 이집두(李集斗)는 가의 대부(嘉義大夫)로 승진시키며, 대축(大祝) 부응교 이정운(李貞運), 통례(通禮) 서유문(徐有聞), 집례 홍낙유(洪樂游) 등은 모두 통정 대부로 승진시킬 것을 명하였다. 훈련 대장 서유대(徐有大)는 옛날 이 능에 행차했을 때 승지로 어가를 수행하였다 하여 자헌 대부로 승진시켰다.

○敎曰: "今日, 卽昔年陪駕後初覲之日也. 當有慶賚之擧, 及此溫恭之列." 仍命亞獻官左議政李秉模·右議政李時秀, 各熟馬一匹面給, 贊禮禮曹判書徐龍輔, 熟馬一匹賜給, 禮房承旨李集斗陞嘉義, 大祝副應敎李貞運·通禮徐有聞·執禮洪樂游竝陞通政. 訓鍊大將徐有大, 以昔年是陵承宣隨駕, 陞資憲.

<정조실록 52권, 정조 23년 8월 19일(을사) 3번째기사>

창빈묘에 제사드리고 덕흥 대원군묘에 제례토록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오늘 새벽 주교(舟矯)를 건너올 때 송추(松楸)가 눈 안에 들어왔다. 몇해 전에 묘소에 제사를 지내드린 적이 있는데 금년은 그분의 환갑이 다시 돌아온 해이므로 강타(江沱와 규목(樛木)의 칭송이 생각난다. 자손에게 복록을 길이 누리게 하였고 나라에 끼치신 공이 크니, 내가 어찌 감히 목묘(穆廟)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아 그 공을 기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승지를 보내 이 제문을 가지고 가서 창빈묘에 제사를 지내드릴 것이며, 대원군(大院君)의 봉사손이나 직계손 중에서 이름을 알아본 뒤에 현재의 목릉 참봉은 임시로 군

직에 붙여두고 그 후임으로 오늘 인사행정에 의망하여 그로 하여금 내일 제례에 참가하고 그대로 재소(齋所)로 들어가 숙직하게 하라."
○敎曰: "曉過舟橋, 松楸入眺. 年前雖致告侑, 而今年卽周甲, 又重回之歲也, 追念《江沱》《樛木》之頌. 福履永綏, 功大邦家, 予小子敢不以穆廟之心爲心, 以敉寧前烈乎? 遣承宣, 奉此祭文, 行祭于昌嬪墓所, 而大院君奉祀直泒中問名, 穆陵參奉權付軍職, 其代今日政擬入, 使之明日往參祭禮後, 仍爲入直齋所."
<정조실록 52권, 정조 23년 8월 19일(을사) 4번째기사>

정병을 뽑아 행차 수행자 외에는 모두 행궁에 머물도록 전교하다
사근평(肆覲坪) 행궁에서 잠깐 머물러 쉬면서 전교하기를, "밥을 먹기 전에 **화성(華城)**에 도착할 수 있다면 참배하는 것을 어찌 내일로 미룰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장용영(壯勇營)**을 내영과 외영으로 설치한 것은 그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병을 뽑아 행차를 수행시키고 나머지는 다 행궁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한다면 또한 매우 편리하겠다. 오늘 그냥 원소(園所)로 가서 참배하였다. 이렇게 한다면 궁궐로 돌아가는 것도 내일에 있게 될 것이니, 이런 뜻을 도성에 남아 있는 대신으로 하여금 알고 있도록 하라." 하였다.
○丙午/晝停于肆覲坪行宮, 敎曰: "飯前可到華城, 則豈可遲待來日乎? 且壯勇內外營之設置, 卽爲所重. 若令抄精隨駕, 餘皆仍留行宮, 亦甚便好. 今日仍行園所展謁. 若此則還宮, 亦當在明日, 此意亦令留都大臣知悉."
<정조실록 52권, 정조 23년 8월 20일(병오) 1번째기사>

헌륭원에 가서 제례를 한 후 화성 행궁에 돌아와 머물다
행차가 **화성 행궁**에 머물렀다가 그대로 **헌륭원**으로 가서 몸소 제례를 행한 다음 **화성 행궁**으로 돌아와 머물렀다.
○駕次華城行宮, 仍詣顯隆園, 行親祭, 還次華城行宮.
<정조실록 52권, 정조 23년 8월 20일(병오) 2번째기사>

수궁 대장 김재찬을 파직하다
수궁 대장(守宮大將) 김재찬(金載瓚)을 파직하고 홍양호(洪良浩)로 교체하였다. 재찬이 올린 장계에 종사관의 성명을 잘못 썼기 때문이다.
○罷守宮大將金載瓚職, 以洪良浩代之. 載瓚, 狀啓誤書從事官姓名故也.
<정조실록 52권, 정조 23년 8월 20일(병오) 3번째기사>

궁궐로 돌아오다
궁궐로 돌아왔다.
○丁未/還宮.
<정조실록 52권, 정조 23년 8월 21일(정미) 1번째기사>

2. 일성록

8월 19일

강駕次果川縣行宮

목前夜子時鼓三嚴具戎服乘轎出協陽門敎以今日出宮時替馬所依先朝戊子獻陵行幸時例南廟洞口爲之兵曹判書自替馬所先爲進去于舟橋承接所出敦化門 宣傳官跪啓稟招搖旗三行分立又啓稟行鼓進發至崇禮門外宣傳官啓稟吹螺鳴金二下大吹打至南關王廟洞口命歷臨至廟門外降轎詣廟內行禮命兩廟守直官及守僕考例施賞改具軍服出廟門乘馬至舟橋 兵曹判書 李在學啓請放陞橋砲宣傳官啓稟渡涉號令如例製下七律七絶各一首命諸臣賡進由**龍驤鳳翥亭**前路至果川縣行宮天尙未明宣傳官啓稟鳴鑼吹單擺開等節如例

강詣獻陵行親祭

목天明三吹具戎服乘馬進發訓將率馬軍二哨步軍三哨爲先廂禁軍別將率禁軍百人信地如前作門壯勇大將率善騎隊二哨京鄕軍各一哨龍虎營尾局作行內營堂上將官率鄕軍二哨爲後廂至獻陵洞口下馬乘輿入齋室改具翼善冠 黕袍 烏犀帶乘輿出齋室至紅箭門外降輿就位行禮仍行親祭如儀 亞獻官 左議政 李秉模 終獻官 右議政 李時秀 贊禮 禮曹判書 徐龍輔 執禮 副司果 洪樂游 大祝 副應敎 李貞運 至紅箭門外乘輿還齋室製下七律一首命諸臣賡進與上二詩竝戊子前韻也

강還次果川縣行宮

목改具軍服出齋室門外乘馬至陵洞口敎曰自陵所洞口至園所洞口自園所洞口至崇禮門捧上言進發壯勇大將率馬步軍爲先廂禁軍信地作行訓鍊大將率馬步軍爲後廂還詣果川縣行宮

강命驪興府院君閔霽三 韓國大夫人宋氏墓遣正卿致祭府院君後孫致儉差擬獻陵齋郎昔年陪從人行護軍 徐有大加資**華城留守** 徐有隣衣資食物輸送仍施獻官以下及畿伯廣留地方官等賞典有差

목敎曰恭惟我獻陵朝聖神文武繼五帝三王而立極撫二京八域而爲家制作侔天地功烈範金石山川神祇咸用欣戴動植肖蜳永賴昭蘇鞏基我萬億年悠久无疆之福生民下武之詩蓋不足以形容顧小子迪綏先王之茀祿聰明烈祖之彝訓於斁不忘思輯用光際玆貞珉之顯刻乃在沙麓之舊基事若有待且慶且幸昔在先朝戊子陪大駕行禮於本陵今於三十有二年之後始復更謁仙寢仍又行祭周旋象設之側怳若勸進朝膳於親視工役之時其詳必在於記注此時孺慕益覺如新而竊念國初龍潛奉齊陵於觀津吉岡也堪輿家建言而卜年可齊三光遂自有郃之室誕成豐水之績於是乎華塗之有勳庸於國家遠邁於南宮散宜之上矣今來伸誠當先推本驪興府院君文度閔公霽三韓國大夫人宋氏墓遣正卿致祭其奉祀孫閔百全因先朝記錄之盛典得沾一命矣其後未聞祿仕昨聞於驪陽祀孫所對驪興家知有百全之孫年過二十者而其名致儉云差擬於本陵齋郎時齋郎當陞品其窠調用今日卽昔年陪駕後初覲之日也當有慶賴之擧及此溫恭之列亞獻官 左議政 李秉模 終獻官 右議政 李時秀各熟馬一匹面給贊禮 禮曹判書 徐龍輔其先重臣以司書隨予來此其子今以贊禮擧行半熟馬一匹賜給禮房承旨 李集斗 大祝 副應敎 李貞運 通禮 徐有聞 執禮 洪樂游竝加資典祀官 執尊 齋郎 祝史 祭監 監察各兒馬一匹賜給贊儀引儀各加一資資窮者代加本陵官令孔允東陞敍參奉 金命淵陞六守僕守護軍等取考戊子年例別爲施賞事分付京鄕守僕及本陵守護軍中如有更爲擧行於今番人帖加成給爲所重旣示意矣又有起感者昔年拜是陵之幸訓將以承宣隨駕而今又參班豈不貴乎行護軍 徐有大加資以宮官陪從而今又參班者亦只是華留一人而與訓將事猶有輕重**華城留守** 徐有隣令該曹衣資食物輸送畿伯 廣留及地方官等依例豹皮 鹿皮等物以內下者施賞今日賞典皆令今日下批政官牌招開政○吏批啓言戊子年獻陵幸行時京守僕李昌彬本資乃是崇政更無可加之資何以爲之敎以從自願免賤

강遣承旨致祭于昌嬪墓所仍命大院君奉祀直派中擬穆陵參奉

목敎曰曉過舟橋松楸入眺年前雖致告侑而今年卽周甲又重回之歲也追念江沱椓木之頌福履永綏功大邦家予小子敢不以穆廟之心爲心以敉寧前烈乎遣承旨奉此祭文行祭于昌嬪墓所而大院君奉祀直派中問名穆陵參奉權付軍職其代今政擬入使之明日往參祭禮後仍爲入直齋所追後肅拜

강拿處承旨 洪義浩
목奠酌時做錯也

강遞承旨 金達淳
목

강有政 吏曹參判 李書九進
목以徐有聞 洪樂游爲承旨 尹序東爲司諫 金銑爲獻納 閔致儉爲獻陵參奉 李民植爲穆陵參奉 致儉 民植竝初仕也

강遞承旨 洪樂游以李貞運代之前望也
목敎曰奉命承旨許遞前望單子入之待下批牌招察任

강召見華城留守 徐有隣 廣州留守 金思穆 京畿監司 徐鼎修及廣州判官 華城屬邑守令各務差使員于行宮 坡州牧使 李近胄 長湍府使 趙義鎭 龍仁縣令 丁遇泰 安山郡守 金鍒 振威縣令 鄭致愚 廣州判官 朴彬源 始興縣令 尹守翼 果川縣監 金鋼
목予曰各邑年事果爲何如而近日東風能無傷損否諸倅一一仰奏近胄等曰各穀均豐而別無最晩移之未發穗者故東風不至甚害矣遇泰曰本邑田畓總爲三千七百餘石落其中六十餘石落以少水根之故最爲晩移而亦已發穗矣予曰三晝三夜豈非大風而沿路所見果無傷損何也有隣曰郊外則風勢減於京中矣守翼曰此時東風便是例吹此後若善爲日氣則別無大段受傷之慮矣予曰龍仁治道之費皆以受價否遇泰曰昨春所治皆已會減而昨秋橋梁之費未及爲之矣予曰畿伯知此意使之盡數受價好矣予曰屬邑軍丁之減額代充者果皆便好否有隣曰振威一邑外別無弊端云矣予曰各別惕念俾無一毫弊端也予敎思穆曰本府有何弊瘼思穆曰別無大弊矣有隣曰本府城內之還皆移城外此一事稍爲弊瘼矣予曰束伍軍貌樣何以如是有隣曰此亦艱辛成得者雖面操若能續續行之則庶有修明之效以其所費之甚多每每持難矣予曰若能小加收拾則必不至於如是矣

강命振威縣軍丁闕額限三百名勿拘許頃
목 壯勇外使 徐有隣啓言頃以振威軍丁闕額事特伏奉限三百名往復該守令釐正之命矣其間已有所往復者俄又於祇迎班詳問其言則八達隊一百九十五名更爲減額則可以排比塡充云該縣令今適入侍且有言端故敢此仰達從之敎以雖過二百或至三百勿拘許頃以爲眞箇人和之一助

강重推長湍府使 趙義鎭命兼營將守令手旗之用五色帶者嚴禁
목 承旨 鄭尙愚啓言兼營將守令之手旗帳殿無敢用五色帶而今此長湍府使 趙義鎭 手旗以五色帶爲之有若將臣藩臣之手旗制樣者殊涉未安請從重推考敎以令兵曹分付此後嚴禁

8월 20일
강晝停于肆覲坪行宮

목平明三吹具軍服乘馬出果川縣行宮壯勇大將率京鄕步軍善騎隊爲先廂禁軍別將率馬兵禁軍爲後廂至**肆覲坪**下馬入行宮

강命以今日行園所展謁明日還宮
목敎曰飯前可到**華城**則豈可遲待來日乎且壯勇內外營之設置卽爲所重若令抄精隨駕餘皆仍留行宮亦甚便好今日仍行園所展謁若此則還宮亦當在明日此意亦令留都大臣知悉隨駕東西班下**柳川**前路祗迎事分付○敎以明日還宮時軍兵及擧行皆依節目爲之事留都大臣及留都大將　舟師大將　兵曹堂上守宮承旨知悉

강駕詣**華城行宮**
목乘馬出**肆覲坪**行宮至**眞木亭**　**壯勇外使**率親軍衛三番別軍官八十人步軍五哨爲先廂之先廂由**長安門**詣行官

강詣**顯隆園**行親祭
목具戎服乘馬出**華城行宮**　壯勇內使率善騎隊二哨親軍衛一番京鄕軍各一哨爲先廂外使率親軍衛一番內營鄕軍二哨京軍一哨爲後廂挾輦軍四十名先詣園所洞口待候龍旗內吹**大皇橋**前路留駐進發出**八達門**至園所齋室門外下馬入齋室命原任直閣　金勉柱　檢校直閣　沈象奎　檢校待敎　李存秀奉審奉安閣改具翼善冠　黕袍　烏犀帶乘便輿出齋室至紅箭門外降輿就位行親祭如儀　亞獻官　左議政　李秉模　終獻官　右議政　李時秀　大祝　應敎　韓用鐸　仍詣園上奉審命守僕守護軍等令**外整理所**依例施賞京守僕令該曹考例施賞還御小次改具軍服乘便輿巡審局內至**城隍山**宣饌于諸臣

강還次**華城行宮**
목乘馬還發至**大皇橋**前路日已暮宣傳官啓稟懸燈令由**八達門**還御行宮

강召見**華城留守**　徐有隣　外營總制　柳文植　判官　金思羲　**迎華察訪**　李元膺于維與宅
목予敎文植曰本府軍政旣令總制專任近來軍制果能就緖耶文植曰束伍軍之排鋪略已成樣而亦無疊役之弊矣予曰朝者動駕時見之則長樂隊頗能成樣矣有隣曰本府人大抵皆能善使焉矣予曰外營將校輩軍裝諸具之外裏衣俱皆解明此亦可見侈濫之習何爲而如是乎文植曰衣服之間果多濫習而所侈者只是外具至於行陳兵書等實事都不能熟習極可悶矣予敎元膺曰本驛諸弊今果何如元膺曰虛戶之弊今果無之而菁好驛合驛後一站驛路爲七十里之遠故不無弊端今若分置則似爲便好矣予曰此果無弊耶有隣曰果爲便好而以五六戶之難以充額爲拘礙之端矣予曰本驛馬戶總爲幾何元膺曰三十五戶矣予曰無論某條經綸必須另加釐弊期有實效也

강召見前京畿監司　李在學于行宮疏放果川囚金錫疇
목予曰果川　金錫疇事容有可疑之端適又經宿本邑此時疏放爲可問于時伯以爲不可闊狹該倅多主輕議仍言前伯意見卿意何如在學曰此獄旣有要害傷處又是辜限之內故雖以重獄體之意至於錄啓而若其可疑之端非止一二蓋裵平順被打後往來於十里場市而讎人之米亦爲負來果被重打則必無是理可疑者一也其死果由於被打則臨死之言何以爲必爲巫事鉤得讎人之意托於家人乎可疑者二也平順病重之時其至親諸人與錫疇盃酒團欒少無痛嫉之意及其死後始使其奴告官可疑者三也病死之說雖非行檢時所出而家內繼痛之狀屍親亦不得全然掩諱可疑者四也大抵獄情肯緊專係詞證而此獄則無一參見被打之說只憑屍親之口而屍親亦云只聞其聲則可謂未具之獄也許多疑端如右所陳故臣與推官

果以傳輕之意有所酬酢而亦欲一番警咳於筵席矣今因下詢敢以迷見仰達矣敎以然則依卿議從輕而駕過前使之疏放

강罷守宮大將 金載瓚職以洪良浩代之

목 留都大臣 沈煥之狀啓以爲兩日狀啓守宮從事官以金履載登啓今伏聞履載有頉代卽以南履翼改望啓下而臣之矇然不察以履載連爲修啓者萬萬惶悚伏俟嚴勘敎以勿待罪事回諭蓋是守宮大將牒報之連爲錯書而然使南履翼行巡以金履載修報者豈不駭然之甚乎當該大將金載瓚罷職分提調 洪良浩爲守宮大將

강命**華城**還穀中小麥限三分二作租

목 **水原判官** 金思羲啓言本府民弊屢蒙軫念前後惠澤與天無極俯詢之下別無可以仰達者而第還上中有小麥名色數爲九百餘石而民皆言不便減耗特恩之後猶有圖避受還之弊者未必不由於此此而變通可以永久無弊敢此仰達予曰留守之意何如**水原留守** 徐有隣曰昨年以後雖愚蠢之民本府還穀豈曰有弊而獨此小麥一種皆願釐正地方官之意在於盡數作租而流來穀簿之一切除去亦所當念限三分二特許作租民惠亦云不些矣從之

강命**華城**軍民家統改修以式年爲準

목 外營總制 柳文植啓言本府軍民家統才已就緒比之啓下節目不至牴牾而第念許多軍兵塡代相續遷徙無常若令續續爲之不無騷擾之慮或間一年或間兩年則疏密得宜事勢便當故敢此仰達予曰外使之意何如外使徐有隣曰家統成出時臣亦與總制爲之爛商而姑無好道理矣昨於果川行宮登筵時以五邑軍民家統待式年修籍無妨之聖敎不擾從實無過於此本府軍民家統改修之節亦以式年爲準似合事宜矣從之

강 全羅右水使 林栽洙以邊將褒貶啓本馳啓

목 於蘭萬戶 黃閏銓鎭屬雖愛松政宜警中加里浦僉使 金尙興偏聽吏校何惜年老智島萬戶 李文成民訟何與棍警猶寬竝下

8월 21일

강駕發**華城**

목平明三吹具軍服乘馬出**華城行宮** 壯勇內使率京軍哨善騎隊二哨訓局步軍二哨馬兵一哨爲先廂訓局步軍一哨壯營鄕軍三哨訓將 都領爲後廂壯勇衛左列爲翼隊兵曹判書率右列爲攔後**壯勇外使**率外營馬步軍爲先廂之先廂**長安門**外落後至**遲遲臺**下馬少憩進發

강晝停于果川縣行宮

목

강駕臨**龍驤鳳翥亭**

목乘馬出果川縣行宮 壯勇內營鄕軍二哨訓局步軍一哨壯營堂上將官率領爲後廂訓將率馬兵一哨步軍二哨爲先廂壯勇大將率京軍二哨善騎隊二哨亦爲先廂詣**龍驤鳳翥亭**少憩

강命舟橋船人抽籤依一年兩行例爲之

목敎以船人輩爲園幸年年勞役不些且今年與再昨年再度造橋無異舟橋抽籤依一年兩行例爲之事分付

강還宮

목改具戎服乘馬出**龍驤鳳翥亭** 兵曹判書啓請陞橋砲又啓請升旗過舟橋 宣傳官啓稟渡涉號令如例入崇禮門至鍾閣前路命宣傳官持信箭分付留陣營勞問軍兵後仍爲解嚴以宣傳官 李吉會不卽待令行步慢蹇拿入仍命出付御將嚴棍十五度後降定軍伍敎曰還宮時當由萬寧門自內展拜眞殿該房知悉入敦化門由摛文院入萬寧門

강詣璿源殿展拜

목

강命廣州留守 金思穆記過判官 朴彬源拿處

목 承旨 鄭尙愚啓言行幸時自地方官多定校吏嚴禁雜人輦路地名高聲以告卽各邑應行之例而今日大駕過廣州境時此等應行之事全不擧行雖以禁雜人言之本府則旣有捕校而其所禁飭反不如他邑至有民人從田路無難鳴錚於駕過咫尺之地者誠極駭然該府留守從重推考判官所當重勘而本院請推之外無他可施之罰何以爲之敎以留守記過判官拿處

강重推兵曹判書 李在學

목 承旨 鄭尙愚啓言今日信箭宣傳官 李吉會之咫尺帳殿行步慢蹇擧措駭然纔已處分矣近來宣傳官擇擬之飭敎果何如則以此等人換差於行幸之時者大是不審請兵曹判書從重推考從之

제13차 1800년(정조 24) 1월 16일~18일(2박 3일)

1. 조선왕조실록

현륭원에 가서 친히 제사지내고 재실에서 유숙하다

현륭원에 가서 친히 제사지내고 재실에서 유숙하였다.

○己巳/詣顯隆園親祭, 留宿于齋室.

<정조실록 53권, 정조 24년 1월 16일(기사) 1번째기사>

대신들이 현륭원에서 재실로 돌아갈 것을 주청하다

현륭원에 가서 두루 돌아보고는 상이 엎드려 땅을 치면서 자신도 모르게 목메어 울먹이므로, 대신과 각신이 번갈아 재실로 돌아갈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상이 흐느끼며 이르기를, "금년의 경례가 나에게 있어 그 얼마나 큰 일인가. 경사를 당하여 선대를 추모하는 중에 크나큰 아픔이 북받쳐 올라서 그러는데, 어찌 차마 나더러 진정을 하란 말인가." 하고, 인하여 또 차마 들을 수 없는 전교를 계속 내리면서 몹시 목메어 흐느꼈다. 그러자 정민시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경사를 만나 추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신들 또한 어찌 모르겠으며, 전하의 지극한 효성으로 또한 어찌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이때 반열에 있던 여러 시위하는 신하들이 허겁지겁 원릉으로 올라왔다. 화성 유수(華城留守)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경사를 고하는 오늘을 당하였으니, 성대히 하늘을 오르내리는 선왕의 영혼도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만일 하늘을 오르내리는 선왕의 마음을 전하의 마음으로 삼으신다면 어찌 상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또 흐느끼며 이르기를, "어느 해, 어느 날인들 추모하지 않았으랴마는, 금년의 경우는 나의 심정이 더욱 다른 바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스스로 억제하겠는가." 하고, 인하여 손으로 땅을 쳤다. 이때 대신과 각신은 좌우에서 상을 부축하였고, 약방 제조는 차를 올리며 마시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심기가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야 차를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시수가 아뢰기를, "이러한 즈음에는 가슴속을 진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니, 바라건대 조금 드소서." 하였으나, 상이 또 뿌리치고 들지 않으므로, 심환지 등이 아뢰기를, "아침 기후가 차갑고 땅 기운도 매우 냉한지라, 신들의 마음은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이시수가 아뢰기를, "신들 또한 성상의 끝없는 추모의 심정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날째 수고로이 거둥하시어 계속 잠까지 이루지 못하시는 이 즈음에 또 이렇게 하시다가는 성상의 몸에 반드시 탈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속의 격한 기운이 만일 다시 더치기라도 한다면 어찌 천만번 민박(悶迫)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정민시는 아뢰기를,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는 일상적인 규례를 돌아볼 겨를이 없으니, 신들이 또 죽을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이어 심환지와 이시수가 상의 좌우로 나누어 서서 겨드랑이를 부축하여 일어나기를 번갈아 계속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금 쉬었다가 곧 내려가겠다." 하였다. 조금 뒤에 상이 목메어 흐느끼며 이르기를, "내가 아무리 완악하고 잔인한들 오늘조차 어찌 차마 내려가겠는가." 하니, 심환지 등이 울면서 아뢰기를,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런 차마 들을 수 없는 하교를 하십니까. 마음 졸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신들에 대해서는 아예 말할 겨를도 없거니

와, 유독 선왕의 영혼께 걱정 끼쳐드림은 생각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상이 또 손으로 땅을 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계속 차마 들을 수 없는 하교를 내리자, 심환지 등이 또 울면서 부액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혼자 일어서겠다.” 하고, 일어나 겨우 한두 발자국을 가서는 또 울며 엎드려 흐느꼈는데, 그 후로도 이러기를 또 수차 되풀이하였다. 그러자 이시수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비록 조금 쉬었다가 내려가겠다고 하교하셨지만, 이 자리에서는 추모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 더욱 마음을 억제하시기 어려우니, 삼가 바라건대 잠시 재실로 돌아가소서.” 하였는데, 이렇게 하기를 또 한참 지나서야 상이 비로소 일어났다. 그러자 제신들이 또 앞으로 나아가 상을 부액하고 내려온 다음 작은 가마를 타고 재실로 돌아왔다.
○庚午/詣園上周審, 上, 俯伏叩地, 不覺失聲, 大臣閣臣, 迭請還齋室. 上, 嗚咽曰: “今年慶禮, 在予爲何等大事也? 遇事興慕之中, 有至痛之在中者, 將何忍使予按抑乎?” 仍又連下不忍聞之敎, 而掩抑不能成聲. 鄭民始曰: “聖心之遇慶興慕, 臣等亦豈不仰認, 而以殿下達孝, 何不能抑情乎?” 侍衛諸臣之在班者, 皆顚倒上來. **華城留守**徐有隣曰: “當此告慶之日, 洋洋陟降, 亦必悅豫. 殿下若以陟降之心爲心, 則何可疚懷乎?” 上, 又嗚咽曰: “何年非追慕, 何日非追慕, 而今年則予之情事, 尤有自別, 予何以自抑乎?” 仍以手叩地. 大臣閣臣, 左右扶持, 藥房提調請進茶飮, 上曰: “予氣少定然後, 可進茶飮矣.” 李時秀曰: “如是之際, 膈氣必難定, 伏乞暫爲進御焉.” 上, 又却而不御, 沈煥之等曰: “朝候旣寒, 地氣又甚冷, 臣等之心, 誠不勝萬萬罔措矣.” 時秀曰: “臣等亦豈不知聖慕之無窮? 而多日勞動, 連爲失睡之際, 又如此, 玉候必致愆和. 膈氣若復添劇, 則豈不萬萬悶迫乎?” 民始曰: “到此地頭, 常例有不暇顧, 臣等又將犯死罪矣.” 煥之·時秀分詣左右, 請扶腋以起, 迭請不已, 上曰: “少休則當下去矣.” 少頃, 上又嗚咽失聲曰: “予雖頑忍, 今日又何忍下去乎?” 煥之等泣奏曰: “殿下何爲此不忍聞之敎也? 臣等之焦迫罔措, 固不暇言, 而獨不念陟降之貽憂乎?” 上, 又以手叩地, 涕淚汍瀾, 連下不忍聞之敎, 煥之等又泣請扶腋, 上曰: “予當起立矣.” 行纔一二步, 又泣伏嗚咽, 如是者又數回. 時秀曰: “殿下雖少休爲敎, 而卽地興慕, 尤難抑情, 伏願暫還齋室焉.” 如是者又有頃, 上, 始起. 諸臣又進前扶腋以下, 乘小轎, 還御齋室.
<정조실록 53권, 정조 24년 1월 17일(경오) 1번째기사>

어가가 화성 행궁을 출발하여 환궁하다
어가가 **화성**의 행궁(行宮)을 출발하여 시흥의 행궁에서 주정(晝停)을 한 다음 환궁하였다.
○辛未/駕發**華城行宮**, 晝停于始興行宮, 還宮.
<정조실록 53권, 정조 24년 1월 18일(신미) 1번째기사>

2. 일성록

1월 16일
경詣**顯隆園**親祭經宿于齋室
묵前一日夜二更具軍服乘駕轎出萬八門 集禮門由建陽門出敦化門路由鐘街出崇禮門歷臨南廟行禮乘馬進發渡舟橋至始興行宮下馬入行宮平明具軍服乘駕轎出行宮數里許降轎乘馬至軍浦川下馬御野次召見居民詢瘼少頃乘馬進發至**華城行宮**少駐乘駕轎出行宮至細**柳川**降轎乘馬至齋室下馬入齋室改具翼善冠 黯袍乘便輿出齋室詣園所降輿詣丁字閣行親祭仍詣園上奉審乘輿還入齋室

1월 17일

강行辭園禮

목詣園上奉審予曰彼入望者是胎峯乎園令趙學春曰然矣予曰今則白虎邊樹木亦甚茂密矣學春曰今則殆無可種之隙矣予曰今番植木可謂善成而近則無虎患耶學春曰近頗有之矣予曰樹木之叢密如此安得無是慮而屛風石近亦有濕氣乎學春曰凍解之時其偏得朝陽處每如此矣予曰缺落處近則何如學春曰昨年亦有缺落之痕而卽爲修補矣予曰石品甚好此皆鶯峯之所出乎一提學 鄭民始曰魂遊屛風石長明燈文武二石皆得之於鶯峯矣予曰闕干石傍之所刻牧丹蓮花等屬此皆銀匠所刻乎民始曰此則刻手之爲也予復周審一回民始曰山上朝氣頗寒伏願趁卽還御焉予曰今當下去行才數步予嗚咽掩抑不能自定承史諸臣皆蒼黃罔措民始曰何又如是乎伏乞少加按住焉予不答仍俯伏叩地不覺失聲左議政沈煥之 右議政 李時秀與諸閣臣上來迭請還齋室煥之曰殿下何不以禮制情而有此擧乎時秀曰此日此地聖慕雖切而亦何不仰念殿官之貽慮乎民始曰昨旣經宿於園所慈殿慈宮聞殿下還詣行宮之報然後始可弛慮殿下何不念及於此而任情至此乎如是者良久予嗚咽下敎曰今番慶禮在予爲何等大事也遇事興慕之中又有至痛之在中者將何忍使予按抑乎仍又連下不忍聞之敎而掩抑不能成聲民始曰聖心之遇慶興慕臣等亦豈不仰認而以殿下達考何不能抑情乎侍衛諸臣之在班者皆顚倒上來**華城留守**徐有隣曰當此告慶之日洋洋陟降亦必悅豫殿下若以陟降之心爲心則何可若是疚懷乎予又嗚咽下敎曰何年非追慕何日非追慕而今年則予之情事尤有自別予何以自抑乎仍以手叩地諸臣益黃黃罔措大臣閣臣左右扶持藥房提調 李秉鼎請進茶飮予曰予氣少定然後可進茶飮矣時秀曰如是之際膈候必難定伏乞暫爲進御焉予又却而不御煥之等曰朝候旣寒地氣又甚冷臣等之心誠不勝萬萬罔措矣時秀曰臣等亦豈不知聖慕之無窮而多日勞動連爲失睡之餘又如此玉候必致愆和膈氣若復添劇則豈不萬萬悶迫乎民始曰到此地頭常例有不暇顧臣等又將犯死罪矣煥之 時秀分詣左右請扶掖以起迭請不已予曰少休則當下去矣少頃予又嗚咽失聲曰予雖頑忍今日又何忍下去乎煥之等泣奏曰殿下何爲此不忍聞之敎也臣等之焦迫罔措固不暇言而獨不念陟降之貽慮乎予又以手叩地涕淚汍瀾連下不忍聞之敎煥之等又泣請扶掖予曰予當起立矣行纔一二步又泣伏嗚咽如是者又數回時秀曰殿下雖少休爲敎而卽地興慕尤難抑情伏願暫還齋室焉如是者又有頃予始起諸臣又進前扶掖以下乘小轎還御齋室

강 藥院請對命退去

목 政院啓言藥房三提調爲承候請對矣敎以今旣下來卿等退去

강大臣閣臣請對命退去

목 政院啓言左議政 沈煥之爲承候請對矣敎以今旣下來退去又啓言時原任閣臣爲承候請對矣敎以退去

강命園令趙學春陞敍參奉 朴宗珩陞六京鄕守僕及園軍等考例施賞

목敎曰經宿而還園官陞敍京鄕守僕及園軍等考例令**整理所**施賞參奉陞六其代令該曹口傳擬入○壯勇外營啓言謹奉傳敎京守僕二名香室守僕一名園所守僕四名書員二人守護軍五十名植木監官一人四山監官四人**萬年堤**監官一人除本仕敎鍊官一人台峯監官一人各木一疋庫直一名山直七十名台峯山直一名各布一疋依定例自**外整理所**分等頒賞

강召見檢校提學 鄭民始于齋室

목

강命故相臣 李福源墓地免稅
목前宣惠廳堂上 鄭民始啓言故相臣 李福源墳墓在於南陽府而坐地旣係元帳每年未免納稅云大臣山地之不得入陳恐有欠於優禮之道令該曹許以入陳似合事宜矣敎以然則免稅

강駕次**華城行宮**經宿
목具軍服乘馬出齋室至**講武堂**舊基周審仍至星皇山下馬入幕次宣飯於閣臣 承史乘馬還發入**八達門**重陽門下馬入行宮

강召見京畿監司 徐鼎修 果川縣監 金鋼 始興縣令 尹守翼 **迎華察訪** 李元膺于維與宅
목

강命**迎華驛**許貸公貨事及驛屬復戶米移付稍近邑海門站 康福站馬位田收稅付之本驛開川站移設事竝令廟堂稟處
목 **迎華察訪** 李元膺所懷本驛新設之後坐於土地之尠少生理未免淡薄雖自昨年因朝令耕食北屯若干田畓而終涉苟艱各樣公貨中三千兩限十年許貸每年以三百兩還報則十年內可以盡報而庶爲聊賴之道驛屬所受食復戶米多在遠邑亦難輸來補糧就其最遠邑移付稍近邑則在元數別無加減在渠輩實爲資益此在惠廳從便移付之如何而已南陽海門站 安城康福站俱是僻路別無使星往來兩站馬戶移付本驛之後餘在猶爲五戶此姑權罷位田則收稅付之本驛以補公用至於陽城開川站移設振威邑內事先定馬位畓相換始可以移設擬與該地方官爛商便宜後更議於本府及巡營以爲稟處之地而旣伏承下詢竝此仰達矣敎以令廟堂稟處

강命廣州留守 金思穆 判官 金履裕記過分揀
목敎曰廣州留守 判官記過分揀牌招受符

강 迎接都監以勅行二十六日入京事及京外宴享庭排茶啖等事停免啓
목該都監啓言卽接遠接使上送路程記則勅使今月十五日申時渡江以二十六日入京停當云以此日入京之意移文于遠接使而各該司及三道 開城府亦爲知委路程記正書以入又啓言卽接遠接使移文則今此勅使上來時京外宴享及庭排茶啖軍威軍歌舞童游觀牛馳駱牛別雌牛軒架儺禮甁花城門結綵城門砲上下馬砲一幷停免禮樂軍樂陳而不作入京日當以吉服行禮云依此擧行之意分付諸道及各該司軍威軍勿爲待令之意請亦爲分付總戎使 廣州留守處允之

1월 18일
강召見左議政 沈煥之 右議政 李時秀于駕前
목承候也

강以金箕弼爲**顯隆園**參奉 口傳也
목

강駕發**華城行宮**晝停于始興行宮
목具軍服乘駕轎發行宮出**長安門**至大有坪降轎乘馬命**華城**軍兵落後還送至**遲遲臺**下馬御幕次宣饌諸臣至安養站少駐宣饌諸臣乘馬進發至里許有民舍失火送軍兵救火至始興行宮晝停

강還宮

목乘馬出行宮至**龍驤鳳翥亭**少駐改具戎服乘駕轎渡舟橋入崇禮門路由鐘街至敦化門外降轎乘馬入敦化門 建陽門 集禮門由萬八門還內